

2014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보고서

Report of the commission of inquiry on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2014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보고서

Report of the commission of inquiry on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2014 유엔 인권이사회

#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보고서

본 보고서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요청으로 통일연구원에서 번역했습니다.  
보고서(Report of the commission of inquiry on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와  
상세보고서(Report of the detailed finding of the commission of inquiry on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를 모두 수록하였습니다.



## 유엔 총회

배포: 일반  
2014년 2월 7일

원문: 영어

### 인권이사회

제25차 회기

의제 4

인권이사회의 주의를 필요로 하는 인권 상황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

### 요약

이 보고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권조사위원회의 주요 조사결과와 권고사항을 담고 있음.\*

\* 보다 상세한 조사결과에 대해서는 A/HRC/25/CRP.1을 참조할 것.





# 목차

	문단	쪽수
<b>I. 개요</b> .....	1~2	1
<b>II. 임무 및 조사 방법</b> .....	3~23	2
A. 북한의 비협조 .....	9~11	3
B. 조사 방법 .....	12~20	4
C. 보고된 침해 사례평가를 위한 법체계 및 입증의 정도 .....	21~22	6
D. 피해자 증언 기록 보관 .....	23	6
<b>III. 조사위원회의 주요 조사결과</b> .....	24~73	7
A. 사상, 표현 및 종교의 자유 침해 .....	26~31	7
B. 차별 .....	32~37	9
C. 이동 및 거주 자유 침해 .....	38~45	11
D. 식량권 및 관련 생명권 침해 .....	46~55	13
E. 자의적 구금, 고문, 처형 및 정치범수용소 .....	56~63	15
F. 외국인 납치 및 강제실종 .....	64~73	17
<b>IV. 반인도범죄</b> .....	74~79	20
<b>V. 결론 및 권고사항</b> .....	80~94	22
부록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지도자 및 조선노동당 제1비서 김정은과의 서신 .....		33
부록 2. 중국과의 서신 .....		37



## I. 개요

1. 유엔 인권이사회는 2013년 3월 21일 채택한 결의 22/13호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하 북한)에 대한 인권조사위원회(COI: Commission of Inquiry)의 설립을 결정하였다. 결의 22/13호에서 인권이사회는 북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조직적이며 광범위하고 중대한 인권 침해 실태를 조사할 임무를 조사위원회에 부여하였고, 특히 반인도범죄에 해당할 수 있는 침해에 대한 완전한 책임규명(full accountability) 보장을 염두에 두도록 하였다.

2. 2013년 5월 7일 유엔 인권이사회 의장은 마이클 커비(호주), 소냐 비셰르코(세르비아), 그리고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마르주끼 다루스만(인도네시아)을 조사위원으로 임명하였고, 마이클 커비는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지명되었다. 조사위원회는 인권이사회가 적절한 조치를 위해 조사위원회의 보고서를 유엔의 모든 관련 기관 및 사무총장에게 제출하기로 결정한 것을 유념하면서 인권이사회 이사국들이 부여한 임무를 이행하였다.

## II. 임무 및 조사 방법<sup>1</sup>

3. 조사위원회의 임무는 유엔 인권이사회 결의 22/13호 제5항에 명시되어 있으며, 이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2013년 보고서 제31항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다.<sup>2</sup> 위원회는 두 개의 항을 함께 고려, 북한의 조직적이며 광범위하고 중대한 인권 침해를 조사할 임무를 부여받은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특히 아래의 구체적 인권 침해 사안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였다:

- 식량권 침해
- 정치범수용소 관련 모든 인권 침해 사항
- 고문 및 비인간적 대우
- 자의적 체포 및 구금
- 각종 차별, 특히 기본적 인권과 자유에 대한 조직적인 박탈 및 침해 속에 이루어진 차별
- 표현의 자유 침해
- 생명권 침해
- 이동의 자유 침해
- 외국인 납치를 포함한 강제실종

4. 조사위원회는 위 아홉 가지 사안 이외에도 이들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기타 인권 침해 사례도 조사하였다.

5. 나아가 조사위원회의 임무는 아래 3가지의 상호 연계된 목표도 포함하였다:

- (a) 북한의 인권 침해 사례들의 조사 및 기록화;
- (b) 인권 침해 피해자 및 가해자의 증언 수집 및 기록화;

<sup>1</sup> 위원회의 활동방법 및 임무해석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A/HRC/25/CRP.1의 II 번 참조.

<sup>2</sup> A/HRC/22/57.

(c) 책임 소재 파악.

6. 조사위원회는 성차에 기초한(gender-based) 인권 침해 사례, 특히 여성에 대한 폭력에 집중하였다. 또한 이러한 인권 침해가 여성과 아동을 포함한 특정 집단에 끼치는 영향에도 주목했다.

7. 유엔 인권이사회 결의 22/13호의 제5항은 조사 활동의 시간적 범위를 북한이 존재했던 기간 중 어느 특정 범위에 국한하지 않았다.

8. 조사위원회는 임무 수행 범위를 북한 영역 내에서 벌어진 인권 침해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에서 자행한 납치와 같이 북한 당국의 관할권 밖에서 벌어진 침해도 포함한다고 보았다. 조사위원회는 또한 북한 내의 인권 침해를 인과적으로 가능케 했거나 그 직접적인 결과물인 다른 인권 침해 사례도 검토하였으며, 그에 대해 다른 국가가 어느 정도까지 관련 책임을 지는지에 관해서도 조사하였다.

## A. 북한의 비협조

9. 유엔 인권이사회 결의 22/13호에서 인권이사회는 북한 당국에 조사위원회의 인권 침해 사례 조사에 대한 충분한 협조, 조사위원들에 대한 제한 없는 방북 허용, 조사위원들의 임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정보 제공을 촉구했다. 결의 22/13호의 채택 직후 북한은 결의안을 “완전히 거부하며 무시할 것”이라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했다. 북한은 2013년 5월 10일자로 유엔 인권이사회 의장에게 발송한 서한에서 “완전히 그리고 단호히 조사위원회를 거부한다”고 밝혔다. 유감스럽게도 조사위원회가 수차례 접촉을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북한의 입장은 현재까지 변하지 않고 있다.

10. 북한은 조사위원회의 거듭된 방북 허용과 인권 상황에 대한 정보 제공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III장 참고).

11. 조사위원회는 구체적인 조사결과(A/HRC/25/CRP.1)를 북한 당국에 제공하였으며, 북한측의 의견 및 수정 사항을 요청하였다. 북한의 가장 심각한 인권 우려 사항, 특히 반인도범죄에 대한 주요 조사결과를 북한의 최고지도자인 김정은에게 보내는 서한에 포함시켰다(부록1 참고). 조사위원회는 이 서한에서 국제형사법 하의 지도부 및 상급자 책임 원칙에 주목하였다. 조사위원회는 북한의 최고지도자에게 반인도범죄를 방지 및 억제하고, 가해자들을 기소하여 재판에 회부할 것을 촉구했다.

## B. 조사 방법

12. 북한에 대한 접근의 제약 때문에, 조사위원회는 투명하고 적법한 과정과 피해자들 및 증인들의 신변이 보장된 공청회를 통해 직접 증언들을 확보하였다. 증인 및 전문가들 중 80명 이상이 공개적으로 증언하였으며, 큰 용기를 필요로 하는 매우 상세하고 구체적이며 중요도 높은 정보를 제공하였다.

13. 공청회는 서울(2013.8.20~24), 동경(2013.8.29~30), 런던(2013.10.23), 워싱턴(2013.10.30~31)에서 열렸다.<sup>3</sup> 조사위원회는 공청회에서의 발언을 위해 북한 당국자들을 초청하였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

14. 조사위원회 및 사무국 직원들은 북한의 인권 피해자 및 기타 증언자들과 240차례가 넘는 비공개 면접도 수행했다.

15. 2013년 7월 조사위원회는 유엔의 모든 회원국 및 관계자들에게 서면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했으며, 현 보고서가 마무리될 당시 80개의 보고서가 접수되었다.

16. 조사위원회는 대한민국(이하 한국), 일본, 태국, 영국, 미국을 공식 방문했다.

---

<sup>3</sup> 모든 공청회의 영상기록물과 원고는 조사위원회의 웹사이트([www.ohchr.org/EN/HRBodies/HRC/CoIDPRK](http://www.ohchr.org/EN/HRBodies/HRC/CoIDPRK))에서 제공되고 있다.

17. 조사위원회는 현지 조사를 수행하고 정부 관계자 및 현지 전문가들과의 협의를 위해 중국을 방문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요청을 2013년 7월에 있었던 실무급 회의에서 전달하였다. 조사위원회는 중국 정부에 북·중 접경지역에 대한 접근 허가를 요청했다. 2013년 11월 7일 조사위원회는 중국 방문을 재차 요청하였다. 2013년 11월 20일 주제네바 중국대표부는 특정 국가에 대한 임무에 관한 중국 정부의 입장, 특히 한반도 관련 입장을 감안할 때 조사위원회를 초청할 수 없을 것이라고 사무국에 통보하였다. 2013년 12월 16일자 후속 서신에서 조사위원회는 중국에 거주하는 북한의 주민 및 아동들의 실태, 북한으로의 강제송환 및 이와 관련된 북한과의 협력, 인신 매매 및 기타 조사위원회의 임무와 관련된 사항들에 대한 정보를 요청하였다.

18. 조사위원회는 다수의 유엔 기구 및 기타 인도주의 기구와 함께 일하였다. 여타 기구 및 관계자들이 관련된 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입장이었다는 점을 유감으로 생각한다. 조사위원회는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의 지원에 감사를 전한다. 조사위원회는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북한 내 인권 침해를 낱낱이 기록한 여러 NGO들로부터 귀중한 도움을 받았다.

19. 북한을 방문해 조사할 수 없었던 것 이외에 조사위원회가 직면했던 가장 커다란 조사의 어려움은 증언자들이 보복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었다. 북한 밖에서 거주 중인 잠재적 증언자들 중 대다수가 가족의 안전에 대한 우려와 북한 당국이 여전히 자신들을 비밀리에 감시하고 있다는 판단 하에 비공개 조건 하에 서조차 증언하는 것을 두려워하였다.

20. 조사위원회는 인권 침해의 피해자 및 증언자들의 신변 보호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였다. 조사위원회는 인권 침해의 피해자 및 목격자, 그 외 조사위원회 활동에 협조를 한 사람들을 보호할 일차적 책임은 그들의 거주국과 국적국에 있음을 상기하고자 한다. 따라서 조사위원회는 인권이사회 이사국이 필요시 이들에 대한 추가적 보호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촉구한다.

### C. 보고된 침해 사례 평가를 위한 법체계 및 입증의 정도

21. 조사위원회는 북한의 인권 상황을 평가함에 있어서 북한이 가입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아동권리협약,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 등에 명시되어 있는 의무에 주로 의거하였다. 또한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조사위원회는 국제난민법 및 국제인권법에 명시되어 있는 강제송환 금지의 원칙을 포함한 다른 국가들의 관련 의무도 고려하였다. 반인도범죄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분석은 국제형사관습법 및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 상 정의에 근거하였다.

22. 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는 증거의 “합리적인 근거(reasonable grounds)” 기준에 기초하였다. 조사위원회는 합리적이고 통상 기준의 사리 분별이 가능한 사람이라면 어떤 사건이나 일련의 행위가 일어났다고 믿을 만큼 다른 자료와 일치하고 신빙성 있는 정보를 확보했다는 확신이 섰을 때, 그러한 사건이나 행위가 일어났다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 D. 피해자 증언 기록 보관

23. 개별 가해자와 연관된 정보를 포함하여 조사위원회가 입수한 모든 정보는 전자 데이터베이스에 기밀화 되어 저장되어있다. 조사위원회는 위원회의 사무국 역할을 수행하는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에 데이터베이스 상의 자료들에 대한 접근권한을 허가할 권한을 부여했다. 자료에 대한 접근권한은 범죄와 기타 침해 행위에 대한 책임구명을 보장하거나, 인권 침해에 대한 진실을 밝히거나, 또는 특정 개인이나 기관에 대한 유엔의 제재를 이행하는 등의 목적을 위해 신뢰할 수 있는 조사를 수행할 임무가 있는 당국에게 부여된다. 자료에 대한 접근은 증언자나 정보제공자가 동의하고 자료의 보호 및 운영상의 우려사항이 적절히 고려된 경우에 한하여 이루어진다.



### Ⅲ. 조사위원회의 주요 조사결과

24. 조사위원회는 북한에 의해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가 자행되었으며 지금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고 본다.<sup>4</sup> 많은 경우 인권 침해는 북한 정책에 기반을 둔 반인도범죄에 해당한다. 이러한 인권 침해의 주요 가해자는 조선노동당의 핵심 기관, 국방위원회와 북한의 최고지도자의 효과적인 통제 아래 활동하고 있는 국가안전보위부, 인민보안부, 조선인민군, 검찰소, 재판소, 조선노동당의 관료들이다.

25. 조사위원회는 북한의 현재 인권 상황이 한반도의 역사적 경험으로 인해 형성된 것임을 강조한다. 유교적 사회 구조와 일제 강점기의 경험은 오늘날 북한의 지배적인 정치구조와 문화에 일정부분 영향을 미쳤다. 한반도의 분단과 6·25전쟁의 엄청난 참상, 그리고 냉전의 여파는 북한이 내부의 억압을 정당화하는 데 사용하는 고립주의적 태도와 외부 세력에 대한 혐오감을 낳았다. 북한에서 자행되고 있는 인권 침해의 특수성 및 전반적인 규모는 유일 최고지도자, 정교한 지도 이념, 그리고 중앙 계획 경제에 기초하고 있는 유일 정당 정치 체제의 본질을 분석함으로써 더욱 쉽게 이해될 수 있다.<sup>5</sup>

#### A. 사상, 표현 및 종교의 자유 침해

26. 북한의 역사를 통틀어 가장 독특한 특성 중 하나는 국가가 정보를 완전히 독점하고, 조직화된 사회생활을 철저히 통제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조사위원회는 북한에서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및 언론·표현·정보·결사의 자유도 거의 완전히 부정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

4. 또한 A/HRC/25/CRP.1의 IV장 참조.

5. 앞의 A/HRC/25/CRP.1의 III장 참조.

27. 북한에서 국가는 주민들에게 유년기부터 최고지도자(수령)에 대한 공식적인 개인숭배와 절대적 복종을 하도록 만드는 사상교양체계를 운영하여 공식 이념과 체제 선전으로부터 벗어난 어떠한 사상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북한에서 정치 선전은 일본, 미국, 한국을 포함한 북한의 적대세력 및 그 국민에 대한 민족적 증오심을 조장하는 데 사용된다.

28. 연령대를 막론하고 북한 주민의 거의 모든 사회적 활동은 조선노동당에 의해 통제되고 있다. 주민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조선노동당 산하 사회단체를 통해 국가는 주민들을 감시하고 그들의 일상 활동을 지시한다. 또한 정치체제나 최고지도자에 대한 어떠한 비판적인 표현도 허용하지 않을 정도로 북한 주민들의 생활은 국가의 감시에 놓여있다. 북한 주민들은 모든 “반국가적” 활동이나 당국에 대한 반대 의사 표명에 대해서도 처벌을 받는다. 북한 주민들은 다른 주민이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다고 의심될 경우 고발하면 포상을 받는다.

29. 북한 주민들은 독립적으로 제공되는 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으며, 북한에서 허용된 유일한 정보제공자는 당국의 통제를 받는 매체뿐이다. 텔레비전 시청 및 라디오 청취, 그리고 인터넷 접속은 엄격히 제한되어 있으며, 모든 대중매체의 내용은 빈틈없는 검열을 거치며 조선노동당의 지령에 부합해야 한다. 전화 통화는 도청당하며, 주민들의 경우 대부분 북한 내부로만 전화할 수 있다. 북한 주민들은 외국 방송을 시청하거나 청취하면 처벌받으며, 여기에는 외국 영화나 드라마도 포함된다.

30. 시장의 활성화와 정보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한국과 중국으로부터의 정보 및 매체 유입이 증가함에 따라 북한에서도 대량의 외부 정보 유입이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북한 당국의 정보 독점은 북한 내부로 흘러 들어오는 외부 정보와 북한 주민들이 정치 선전 외에 알고 싶은 “진실”에 대한 호기심으로 인해 위기를 맞게 되었다. 북한 당국은 정기적인 단속과 처벌 강화를 통해 정보 독점을 유지하고자 한다.

31. 북한 당국은 수령에 대한 개인숭배에 이념적으로 도전하고, 국가의 통제 밖에서 사회적·정치적으로 조직 및 교류할 수 있는 발판을 제공한다는 이유로 기독교의 전파를 특히 심각한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다. 당국의 통제를 받는 몇몇 교회를 제외하고 기독교인들은 종교 활동이 금지되며 박해를 받고 있다. 기독교 신자들은 적발되면 가혹한 처벌을 받으며, 이는 종교의 자유에 대한 침해인 동시에 종교에 대한 차별 금지를 위반하는 것이다.

## B 차별

32. 북한은 스스로를 모든 분야에 있어서 평등, 비차별 그리고 공평한 권리를 부여하는 국가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실제로 북한은 차별이 뿌리깊이 자리잡고 있는 심각하게 계층화된 사회로 이러한 차별은 비록 시장의 활성화와 기술의 발달로 인한 사회·경제적 변화를 통해 다소 완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존재하고 있다. 북한에는 당국이 조장한 차별이 만연해 있으나, 점차 변화를 겪고 있다. 북한 사회에서의 차별은 ‘성분’ 제도라 불리는 차별 시스템에 뿌리를 두고 있다. 성분 제도는 국가가 지정한 사회 계급과 출생에 따라 주민들을 분류하며, 정치적 견해 및 종교도 고려의 대상이 된다. ‘성분’에 의한 차별은 북한 사회에 똑같이 만연한 남녀차별과 동시에 이루어진다. 비록 국가에 의한 시정의 움직임이 있지만 장애인에 대한 차별도 행해지고 있다.

33. ‘성분’ 제도는 거주 장소, 주거 형태, 직업, 교육(특히 대학), 식량 배급량 및 심지어는 배우자 선택까지 북한 주민의 생활의 거의 모든 면을 결정하는 데 있어 가장 결정적인 요소였다. 이러한 ‘성분’ 제도 하의 전통적 차별은 최근 북한 내 시장경제가 점점 확산되고 외화를 포함한 화폐의 영향으로 주민들이 경제·사회·문화적 권리를 더 많이 누릴 수 있게 됨에 따라 복잡하게 변화되었다. 기초 공공 서비스가 붕괴되거나 돈을 지불해야만 누릴 수 있게 된 상황에서 재산이 없고 유리한 ‘성분’도 아닌 주민 상당수는 점점 소외되고 추가적인 차별을 겪고 있다.

34. 북한에서 공식적인 평등을 보장하고자 한 초기의 개혁에도 불구하고 성 평등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사회 모든 분야에서 아직까지 여성에 대한 차별이 만연해 있다. 실제 남성 주도의 북한 당국은 경제적으로 지위가 높아지는 여성과 취약 계층에 해당하는 여성 모두를 희생양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 대우는 오히려 증가할 수 있다. 1990년대 기근 당시 많은 여성들이 생계를 위해 개인적으로 장에 나와 물건을 팔기 시작했다. 그러나 북한 당국은 여성이 주도권을 쥐고 있는 시장에 많은 제재를 가했다. 북한에서 성 차별은 여성에게만 뇌물이나 벌금을 내게 하는 형태를 띠기도 한다. 최근에는 북한 여성들이 이러한 부당한 처우에 저항하거나 거부하는 사례가 있었다.

35. 그러나 여성의 경제적 지위 향상에 걸맞은 사회·정치 영역에서의 발전이 뒤따르지 못하였다. 북한에서는 아직까지도 뿌리 깊은 가부장제와 여성에 대한 폭력이 지속되고 있다. 순수하고 순결한 조선 여성이라는 성적 고정 관념을 유지시키기 위해 여성들에 대해 노골적으로 차별적 제한을 부과했다. 북한 사회 전역에 여성에 대한 성폭력 및 성별기반 폭력이 만연해 있다. 피해 여성들은 북한 당국으로부터도 어떠한 보호나 지원 서비스, 또는 법적 구제도 받지 못한다. 정치 영역을 볼 때, 여성은 당 고위 간부급 중 오직 5%만 차지할 뿐이며 중앙 정부 관료 중 10%만이 여성이다.

36. 여성에 대한 차별은 다양한 인권 침해 상황과 맞물려 여성들을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한다. 식량권 및 이동의 자유에 대한 침해는 여성들을 인신매매에 노출시키고 점점 성매매 및 매춘으로 몰고 갔다. 표현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한 원천적인 봉쇄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불평등한 대우를 받는 현실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제약으로 인해 북한 여성들은 세계 여타 지역의 여성들처럼 집단행동을 통해 권리를 주장할 기회를 박탈당하였다.

37. 일정 정도의 차별은 어느 사회에나 존재하지만, 북한은 공식적 차별 제도를 운영해 개개인의 인권 향유에 매우 심각한 악영향을 끼쳤다. 북한 당국의 이례적인 주민 통제 범위를 감안하여 볼 때, 이러한 공식적인 차별은 주민들의 생활 전반에

영향을 끼친다. 북한에서 차별은 지도층이 대내외적 잠재 위협으로부터 주민에 대한 통제권을 유지시킬 수 있는 주요 수단이다.

### C. 이동 및 거주 자유 침해

38. 사상 주입과 사회 계층에 따른 차별 제도는 주민들이 외부 세계는 물론이고 내부적으로도 서로 접촉할 수 없도록 고립화하는 정책을 통해 강화되고 유지되며, 이는 주민들의 이동의 자유 전반을 침해하는 것이다.

39. 북한 주민들은 국가에 의해 어디서 살고 일할지를 강요당함으로써 선택의 자유를 침해받고 있으며, ‘성분’에 따른 차별이 바로 이러한 국가의 강제적 거주지 및 근로 장소 지정을 결정하는 주된 요소이다. 이러한 조치는 북한을 사회·경제적은 물론 물리적으로도 분열된 사회로 만들었다. 당국에 충성을 바치는 사람들은 환경이 보다 좋은 장소에서 거주하고 일할 수 있는 반면 정치적으로 의심을 받는 주민들 및 그 가족들은 소외된 지역으로 좌천된다. 북한 당국에 가장 충성하여 혜택 받은 이들만 거주하는 평양의 특별한 위치가 이러한 차별 제도를 입증하고 있다.

40. 북한 주민들은 당국의 공식 허가 없이 그들의 주거 지역에서 일시적으로 이탈하거나 북한 내 다른 지역으로 여행조차도 할 수 없다. 이러한 정책은 서로 이질적인 생활수준을 유지하고, 정보의 흐름을 제한하며, 국가의 통제력을 극대화하려는 목적에 의한 것으로서 사회적, 가족적 유대를 희생시키고 있다.

41. 북한 당국은 평양의 “순수”하고 때묻지 않은 이미지를 관리하기 위하여 가족 구성원 한 명이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거나 정치적으로 잘못이 있는 경우 그 가족 전체를 조직적으로 수도로부터 추방해 버린다. 먹을 것을 찾아 평양이나 기타 도시로 몰래 들어오는 다수의 부랑아들도 같은 이유로 체포하여 그들의 원래 지역으로 강제로 돌려보낸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방치되거나 강제로 보호시설에 수용되기도 한다.

42. 북한 당국은 일반 주민들이 해외로 여행하는 것을 사실상 완전히 금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이들이 자국을 떠날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국경지대의 엄중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북한 주민들은 위협을 무릅쓰고 탈북하고 있으며, 주로 중국으로 도주하고 있다. 만일 도망 중 붙잡히거나 강제복송되면 북한의 당국자들은 이들에게 조직적으로 학대 및 고문을 가하며, 장기적이고 자의적인 구금을 시키고, 경우에 따라 신체 내부 수색 중에 이루어지는 성폭력까지 서슴지 않는다. 임신한 채로 강제송환된 탈북 여성들은 보통 강제로 낙태되며, 강제송환된 여성이 낳은 영아들도 살해된다. 이러한 조치는 외부인과 피가 섞인 북한 아동에 대한 인종차별적 태도에 근거한 것이며, 또한 북한을 떠나 중국 남성들과 접촉한 것으로 의심을 받는 북한 여성들에 대한 처벌을 위해 이루어진다. 한국 국적 인사나 기독교인과 접촉한 것이 발각된 북한 주민은 정치범수용소로 강제 “실종”되거나 일반 감옥에 구금되며, 경우에 따라 즉결 처형되기도 한다.

43. 강제복송당한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는 중대한 인권 침해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북한에서 불법으로 국경을 넘어온 주민들을 강제송환하는 정책을 엄격히 실행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북한이탈주민들이 경제적이고 불법적인 이주민이라는 관점 하에 이러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북한이탈주민들은 학대를 피해 탈출한 난민이나 현장 난민(refugees sur place)으로 인정받아야 함이 마땅하며, 따라서 국제적 차원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북한이탈주민들을 강제복송하는 중국은 국제난민법 및 인권법에 명시되어 있는 강제송환 금지의 원칙을 준수할 의무를 위반하고 있다. 어떤 경우에는 중국 당국자들이 체포된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정보를 북한의 보안 담당자들에게 제공하기도 하는 것으로 보인다.

44. 북한에서의 여성에 대한 차별과 낮은 지위, 강제송환 가능성으로 인해 탈북여성들은 인신매매의 위협에 더욱 취약하다. 많은 북한 여성들이 강제결혼이나 축첩 등으로의 착취 또는 강압적 매춘을 목적으로 중국으로 혹은 중국 내에서 강제로 혹은 사기를 당해 인신매매된다. 북한 출신 어머니로부터 태어난 대략 이만 명 정도의 아이들이 현재 중국에 거주하고 있다. 이 아동들은 어머니가 북한으로 강제송환

되는 위험을 무릅쓰지 않는 한 출생등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출생 신고, 국적, 교육, 보건 등의 권리를 누리지 못한다.

45. 북한은 타국에 특별히 연관되거나 타국에 관해 주장할 권리가 있는 국민들이 그 곳으로 돌아가거나, 특정 시설을 이용하여 오래도록 헤어졌던 가족과 상봉할 권리를 존중할 의무를 계속해서 위반해왔다. 북한이 한국에 살고 있는 가족들과의 접촉 및 소통을 차단하는 조치는 국제인권법에 명시되어 있는 국가의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다. 이러한 위반은 자의적이며 잔혹하고 비인도적인 것이다. 이러한 점은 특히 이미 합의된 이산가족 상봉을 고령의 상봉대상자들에 대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취소한 사례에서 잘 드러난다.

#### D. 식량권 및 관련 생명권 침해

46. 북한에서 식량권, 생명권 및 굶주림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는 단순히 식량 부족과 상품에 대한 접근성에 대한 논의로 국한될 수 없다. 북한 당국은 주민들에 대한 통제의 수단으로 식량을 사용하고 있으며, 지도층은 정권 유지를 위해 중요시되는 사람들을 우선시하고 있다.

47. 식량이 필요한 사람에게서 식량을 몰수하고 강탈하여 다른 계층의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것은 이러한 논리에 따른 것이다. 북한 당국은 '성분' 제도에 기초하여 식량에 대한 접근 및 배분에 차등을 둔다. 또한 평양과 같은 특정 지역에 더 많은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북한 당국은 취약 계층의 어려움 역시 신경 쓰지 않고 있다. 조사위원회는 북한 아동들의 만성적인 영양 부족과 그 장기적인 후유증을 특히 염려하고 있다.

48. 북한은 1995년에 처음으로 국제사회에 구호를 요청하기 훨씬 전부터 악화되어 가는 식량 상황을 감지하고 있었다. 1980년대 말부터 국가 통제 하에 있는 식량 생산 및 배급제는 주민들에게 충분한 식량을 제공하지 못했다. 투명성, 책임성 규명

및 민주적 기관의 부재, 표현·정보·결사에 대한 자유의 제한으로 인해 당의 지시에 부합하는 방안을 넘어서는 경제적 해결책이 도입되지 못하였다. 북한 당국은 주민에 대한 통제권을 상실할 것을 두려워하여 경제 및 농업 체제의 개혁을 회피하였다.

49. 북한의 기근 당시에는 정권 유지를 위해 이념적 사상교육이 이루어졌으며, 이는 주민들의 굶주림을 심각하게 악화시켰다. 정보의 은폐로 인해 북한 주민들은 와해되어 버린 중앙배급체계에 대한 대안을 찾을 수 없었다. 이로 인해 국제적 지원이 연기되어 더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주민들에게 충분한 식량을 공급하지 못하는 무능함에도 불구하고, 북한 당국은 식량을 구하기 위해 국내외에서 이동하거나 비공식 시장에서 거래 또는 일을 하는 등의 주요 생계유지 수단 사용을 사실상 범죄화하는 법제 및 통제 수단을 유지했다.

50. 기근이 최악으로 치달은 시기조차도 북한은 인도적 고려에 부합하지 않는 조건을 내세움으로써 식량 구호를 방해했다. 국제 인도지원 단체들은 북한 당국으로부터 인도주의 원칙에 반하는 제한을 받았다. 또한 당국은 원조 기구들이 북한의 인도적 필요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원조 분배상황을 모니터링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북한 당국은 부랑아를 포함하여 가장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주민들과 지역에 대한 인도적 접근을 거부했다.

51. 북한은 굶주리는 주민들에게 식량을 공급하기 위해 자국의 가용 자원이 허용하는 최대한도를 동원할 의무를 저버렸다. 주로 무기 개발 및 핵 프로그램에 사용되는 군사적 목적의 지출이 항상 우선시되었으며, 이는 식량 위기 때에도 예외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당국은 불균형적으로 대규모인 군대의 사병들에게 조차 식량을 공급하지 못하였다. 최고지도자가 직접 관리하는 개별 기금을 포함한 대규모의 국가 자원은 굶주리는 주민들에게 식량에 사용되기 보다는 사치품과 개인송배를 위해 쓰였다.

52. 북한은 또한 구금시설에서 수감자들을 통제하고 처벌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굶



주리게 하였다. 이로 인해 많은 정치범 및 일반 수감자들이 사망하기도 했다.

53. 조사위원회는 북한에서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식량권 침해의 증거를 발견했다. 당시 식량 상황에서 국가가 통제할 수 없었던 요인이 미친 영향을 인정하면서도, 조사위원회는 북한 당국과 지도층의 결정, 작위 및 부작위로 인해 적어도 수십만 명이 죽었고, 생존자들 또한 영구적인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입었다고 본다.

54. 북한의 고도로 중앙집권적인 의사 결정체계에서는 생산 및 배급 등 식량과 관련된 결정, 정부 예산의 분배, 그리고 인도적 지원 및 국제 원조의 사용에 관련된 결정 등이 최종적으로 소수 관료 집단에 의해 이뤄지며, 그들의 결정에 의해 영향을 받는 주민들은 이들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단이 없다.

55. 1990년대부터 상황이 바뀌긴 하였으나, 북한에는 영양 부족과 굶주림이 여전히 만연해 있다. 아사자도 계속해서 보고되고 있는 실정이다. 조사위원회는 식량권 및 굶주림으로부터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규와 정책을 포함한 구조적 문제들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점에 우려하고 있으며, 이러한 구조적 문제들은 대규모 기아 상태의 재발을 야기할 수 있다.

## E. 자의적 구금, 고문, 처형 및 정치범수용소

56. 북한의 경찰과 보안 요원들은 중대한 인권 침해에 해당되는 폭력 및 처벌을 조직적으로 행사한다. 이는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여 현재의 북한 당국과 이를 뒷받침할 이념에 대한 어떠한 도전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이루어진다. 여기에 관련된 기관이나 관계자들은 이러한 인권 침해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처벌도 받지 않는다.

57. 구금, 처형 및 실종을 포함한 북한의 중대한 인권 침해는 북한 보안 기관의 다양한 하위 조직이 고도로 중앙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발생한다. 국가안전보위부,

인민보안부 및 인민군 보위사령부는 정기적으로 정치범 혐의로 기소된 사람들을 자의적으로 체포하거나 장기간 독방에 감금시킨다. 가족들은 이들의 행방이나 운명에 대해 전혀 알 수 없다. 따라서 정치범으로 수감된 사람들은 강제실종의 피해자가 된다. 피의자를 행방불명 처리해버리는 것은 주민들에게 공포감을 주입하고자 하는 의도적 장치이다.

58. 고문 사용은 북한 내 심문 과정에서 고질적으로 일어나는 행태이며, 이는 특히 정치범죄 관련 사건에서 두드러진다. 수감된 피의자들을 고의적으로 굶기거나 비인도적인 환경 하에 두으로써 이들이 자백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죄를 덮어씌우도록 한다.

59. 중대한 정치범죄에 연루된 자들은 재판이나 사법 절차 없이 정치범수용소(‘관리소’)로 “사라져 버린다”. 그곳에서 그들은 독방에 감금되며, 가족은 그들의 생사 조차 확인할 수 없다. 예전에는 연좌제에 따라 북한 당국이 정치범의 가족 모두(조부모 및 3대를 포함)를 정치범수용소로 보냈다. 이러한 사례는 아직까지 존재하지만, 과거에 비해 감소하는 추세이다.

60. 북한의 정치범수용소에서는 고의적 굶주림, 강제노동, 처형, 고문, 성폭행, 처벌에 의해 부과되는 생식권 박탈, 강제낙태 및 영아 살해 등으로 인해 수감자의 수가 점차 감소해왔다. 조사위원회는 지난 50년간 이러한 수용소에서 수십만 명의 정치범들이 죽어갔을 것으로 추정한다. 북한의 정치범수용소(‘관리소’)에서 수감자들에게 가해지고 있는 끔찍한 참상은 20세기 전체주의국가의 수용소에서 벌어졌던 비극과 유사하다.

61. 북한 당국자들은 정치범수용소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지만, 전직 경비병, 수감자 및 수용소 인근 거주자들의 증언을 통해 이는 거짓임이 드러났다. 또한 위성사진을 통해서도 북한의 정치범수용소가 계속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치범수용소와 수감자들의 수는 사망자 및 일부 석방된 사람들로 인해 다소 감소하

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8만 명에서 12만 명 사이의 정치범들이 아직까지 4개의 대규모 정치범수용소에 수감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62. 북한의 일반 감옥 체계에서도 중대한 인권 침해가 이루어지고 있다. 여기에는 노동교화소 및 다양한 단기 강제노동 수감 시설이 포함된다. 수감자의 대다수가 재판 없이 감옥으로 보내지거나 국제법에 명시된 공정한 법적 절차를 무시한 재판을 받은 채 자의적으로 구금된 피해자이다. 또한 많은 일반 수감자들은 사실상 정치범이며, 이들은 국제법에 부합하는 실질적인 이유가 없이 수감되어 있다. 일반 감옥에 있는 수감자들은 고의적 굶주림이나 불법 강제노동에 조직적으로 동원된다. 경비병 및 동료 수감자들에 의한 고문, 성폭행,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자의적인 가혹행위가 광범위하고 처벌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63. 북한 당국은 국가 정책에 따라 종종 심각한 범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치범죄 혹은 기타 범죄에 대한 책임을 물어, 재판을 통해서 또는 재판 없이, 공개적 혹은 비밀리에 처형을 집행한다. 정기적으로 공개처형을 하는 이유는 일반 주민들에게 당국에 대한 공포감을 조성하기 위해서이다. 공개처형은 1990년대에 가장 많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오늘날까지 없어지지 않고 있으며, 2013년 후반엔 정치적 동기 에 의한 공개처형이 갑자기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 F. 외국인 납치 및 강제실종

64. 1950년 이래 북한은 국가의 정책이라는 명목 하에 타국 국민들을 조직적으로 납치하고 송환하지 않음으로써 대규모 강제실종 사태를 초래하였다. 다른 국가에서 북한으로 납치되어 “강제실종선언”의 정의상 강제실종의 피해자가 된 사람의 수는 이동을 포함하여 20만 명을 훌쩍 넘었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 정확한 피해자 수 추산을 위해서는 북한으로부터 추가적인 정보가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65. 다른 나라와 더불어 살기를 원하는 민족국가가 타국의 주권과 국제법상 외국인

의 권리를 무시하는 위와 같은 행위를 저지르는 것은 정상이라 할 수 없다.

66. 대부분의 납치와 강제실종은 6·25전쟁 및 1959년에 시작된 일본으로부터의 조직적인 한인 이주와 연관이 있다. 그러나 한국, 일본 및 여타 국가의 수백 명의 사람들 또한 1960년대와 80년대 사이 북한으로 납치되었다. 최근 북한은 자국 주민 및 한국 국민 수 명을 중국에서 납치하였다.

67. 북한은 납치 및 체포를 위해 육해군 및 정보 요원들을 동원하였다. 이러한 작전들은 최고지도자 차원에서 승인되었다. 강제실종 피해의 대다수는 북한 당국을 위한 노동력 및 기타 기술 제공을 목적으로 이뤄진 것이며, 일부 피해자들은 간첩 및 테러 활동에 투입되었다. 유럽, 중동 및 아시아에서 납치된 여성들은 역시 다른 나라에서 온 남성들과 강제결혼을 당하였다. 이는 이 남성들이 북한 여성들과 접촉하여 혼혈 아동을 낳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다. 납치된 여성들 중 일부는 성적 착취를 당하기도 하였다.

68. 강제실종자들 중엔 자발적으로 북한 내로 이동한 자도 있으며, 물리적인 강압 또는 거짓 설득을 통해 납치된 자들도 있으나, 어느 경우든 모두 결과적으로 북한을 떠날 권리를 박탈당하였다. 또한 그들은 자유와 북한 내에서 자유롭게 이동할 권리도 박탈당하였으며, 법적으로 인격체로 인정받을 권리도 빼앗기고, 고문 및 그 밖에 잔혹하고,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를 받지 않을 권리도 상실하였다. 강제실종된 모든 사람들은 삼엄한 감시 하에 관리되고 있으며, 교육이나 취업의 기회를 거부당하고 있다.

69. 북한에 의해 강제실종된 한국 국민과 일본 출신 한인들은 그들의 출신 및 배경 때문에 차별을 받고 있다. 그들은 “적대 계층”으로 분류되어 외딴 지역의 농장이나 광산에서 강제노동에 투입되고 있다. 이들 중 상당수가 북한에서 낮은 사회적 지위로 인해 1990년대 기근의 타격을 가장 먼저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

70. 한국인이 아닌 납치 피해자들은 삼엄한 통제를 받는 구역에 격리되어 북한 사회·경제적 생활에 통합되지 못했다. 그들은 근로권, 거주·이전·이동의 자유를 박탈당했으며, 본인이나 자녀를 위한 교육 선택권도 갖지 못하였다.

71. 북한 밖에 있는 가족 및 외교적 보호를 행사하고자 하는 외국 정부들은 이들 피해자들의 운명과 행방에 대한 정보를 일관되게 제공받지 못했다. 실종자들의 가족들은 고문 및 기타 잔인하고 비인도적이며 굴욕적인 대우를 받아 왔다. 이들은 진실을 알 권리를 포함하여 인권 침해에 대해 효과적으로 구제받을 권리를 박탈당했으며, 실종된 부모 및 자녀들은 가족생활을 누릴 권리를 빼앗겼다.

72. 북한은 정보 요원이 13명의 일본인들을 납치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국제적 납치 관행을 한 번도 적절히 부인한 적도 없다. 1990년대 이래 북한의 정보 요원들은 중국 영토 내에서 여러 명을 납치한 바 있으며, 이 중에는 중국 및 한국 국적자도 있고, 적어도 한 사례는 과거에 일본 국적을 소유한 사람도 포함되어 있다.

73. 조사위원회의 판단으로는 앞서 언급한 피해자들 거의 전원이 실종 상태로 남아 있다. 이들과 이들의 가족에 대한 인권 침해가 지속되고 있으며, 이러한 인권 침해로 인한 충격과 고통은 형언할 수 없다.

## IV. 반인도범죄

74. 유엔 인권이사회 결의 22/13호에 따라, 조사위원회는 인권 침해에 대한 북한 당국의 책임을 규명하기 위해 임무를 수행했다. 특히 이러한 인권 침해 사례들이 반인도범죄에 해당하는지를 조사했다. 조사위원회는 사법 기구도, 검찰 기관도 아니기에 개인의 형사 책임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릴 수는 없다. 그러나 조사위원회는 자신의 조사 결과가 권한 있는 국내·국제 사법 기관이 범죄 수사에 착수할 수 있을 만큼의 반인도범죄가 저질러졌다는 합리적인 근거를 구성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할 수 있다.

75. 이러한 기준으로 보았을 때, 조사위원회가 수집한 증언 및 기타 정보에 근거하여 판단한 결과 북한 내에서 반인도범죄가 저질러졌으며, 이는 북한의 최고위층이 수립한 정책에 따른 것이다.<sup>6</sup>

76. 이러한 반인도범죄는 절멸, 살인, 노예화, 고문, 구금, 성폭행, 강제낙태 및 기타 성폭력, 정치·종교·인종·성차별적 근거에 따른 박해, 주민의 강제이주, 강제실종, 그리고 고의적으로 장기적 기아를 유발하는 비인도적 행위 등을 포함한다. 조사위원회는 나아가 북한 내에서 반인도범죄가 지속되고 있는 이유는 그러한 반인도범죄의 핵심에 자리잡고 있는 북한의 정책, 제도 및 불처벌(impunity) 양태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이라고 판단한다.

77. 북한 정권 및 정치체제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되는 모든 주민에 가해지는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공격의 일차적 대상은 바로 정치범수용소 및 기타 구금시설에 있는 수감자, 탈북하려는 자, 기독교인 및 기타 체제 전복적 영향을 들여오는 것으로 간주되는 자들이다. 이러한 공격은 ‘성분’을 기초로 한 차별적 분류 체계 등 주민 일

---

<sup>6</sup>. A/HRC/25/CRP.1의 V장 참조.

만을 대상으로 정치적 동기에 의해 자행되는 보다 광범위한 인권 침해 유형에 녹아 들어있다.

78. 또한 조사위원회는 특히 1990년대 당시 굶주리는 주민들에 대해 반인도범죄가 이루어졌다고 판단한다. 이러한 범죄는 주민의 식량권을 침해하는 결정 및 정책에 기인하는데, 이는 현 정치체제를 지탱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민 대다수의 굶주림과 아사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지한 상태에서 실시되었다.

79. 마지막으로, 조사위원회는 북한의 노동력 및 기타 기술 보급을 위해 조직적으로 납치되거나 본국으로 송환되지 않은 외국인들에게 반인도범죄가 저질러지고 있다고 판단한다.

## V. 결론 및 권고사항

80.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가 북한의 정부, 기관 및 당국자들에 의해 이루어졌고 현재도 이루어지고 있다. 조사위원회가 조사한 인권 침해 사례들은 많은 경우 반인도범죄를 구성한다. 이는 단순히 국가의 월권 수준이 아니라 정치 체제의 필수 요소로서, 북한이 주장하는 설립 이상(ideals)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져 있다. 북한에서 벌어지는 인권 침해의 심각성과 규모, 그리고 본질은 현대 사회의 어떤 국가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20세기의 정치학자들은 이러한 종류의 정치 조직을 전체주의국가라고 분류하였다. 이러한 국가는 소수의 권력 집단이 권위적인 지배를 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주민들의 생활의 모든 부분을 장악하며 정권에 대한 공포심을 주입시킨다.

81. 북한은 전체주의국가의 많은 특성을 보인다. 한 개인이 이끄는 일당 통치는 현 최고지도자가 “김일성주의-김정일주의”라고 일컫는 정교한 지도 이념에 기반을 두고 있다. 북한 당국은 유년 시절부터 사상을 주입시키고, 공식 이념에 의심을 품는 모든 정치적·종교적 의견을 억압하며, 주민들의 이동 및 타국민과는 물론 북한 주민들끼리도 소통을 통제함으로써 주민들에게 이러한 지도 이념을 내재화시킨다. 성별과 ‘성분’에 따른 차별을 통해 정치 체제에 대한 도전을 만들 가능성이 거의 없는 엄격한 사회구조가 유지된다.

82. 식량접근에 대한 북한 당국의 독점은 주민들의 정치적 충성심을 강요하기 위한 중요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다. 식량은 현 정치 체제의 생존에 유용한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분배된다. 북한 주민들의 당국에 대한 전적인 식량 의존은 최근 세계 역사상 최악의 기근 사례 중 하나로 이어졌다. 북한 당국자들은 최근 들어서야 시장이 더 이상 완전히 통제될 수 없다는 사실을 가까스로 받아들이게 되었다. 그러나 북한은 식량권을 실현하는 완전한 개혁이 아닌, 주민들의 굶주림을 불필요하게 야기할 수밖에 없는 비효율적 경제 생산방식 및 자원의 차별적 분배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83. 북한 정치체제의 핵심은 감시, 강압, 공포, 처벌을 전략적으로 사용하여 어떠한 반대 의견도 표현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대한 정치·안보 기구이다. 공개처형과 정치범수용소로의 강제실종은 북한 주민이 정권에 복종하도록 공포심을 주는 최종 수단이다. 북한 당국의 폭력은 당국 주도의 외국인 납치 및 강제실종으로 외부에 드러나게 되었다. 이러한 국제적 강제실종은 그 강도와 규모와 본질에 있어서 유례가 없는 것이다.

84. 오늘날 북한은 정치적, 경제적 그리고 기술적 면에 있어서 급변하는 세계정세 속에 있다. 이러한 변화는 북한 내부의 점진적인 사회적 변화를 위한 기회를 제공한다. 이에 대응하여 북한 당국자들은 해외로부터 유입되는 “체제 전복적인” 악영향을 단속하기 위해 심각한 인권 침해를 행하고 있다. 이러한 외부로부터의 영향은 한국 및 기타 외국의 드라마나 영화, 단파 라디오 방송 및 이동 전화로 대표된다. 같은 이유로 북한 당국은 주민들이 탈북하여 자신의 인권을 행사하는 것을 막기 위해 폭력과 처벌을 조직적으로 사용한다. 중국으로부터 강제송환된 사람들은 대개 고문, 자의적 구금, 즉결처형, 강제낙태 및 기타 여러 형태의 성폭력으로 고통 받는다.

85. 조사위원회가 기록한 북한의 오랜, 그리고 현재도 이루어지고 있는 조직적이며 광범위한 인권 침해 사례들은 국제법상의 반인도범죄를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높은 기준에 부합한다. 북한의 인권 침해 가해자들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고 있다. 북한은 인권 침해 가해자들을 기소하여 재판할 국제적 의무를 이행하려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가해자들은 북한 당국의 정책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86. 북한이 유엔 회원국으로서 인류의 양심에 충격을 주는 범죄를 포함하는 정책을 수십 년간 추구해 왔다는 사실은 국제공동체의 대응이 부적절하지 않았는지 의문을 제기한다. 북한 당국이 자국 주민을 보호하는 데에 명백하게 실패한 만큼, 국제사회는 반인도범죄로부터 북한의 주민들을 보호할 책임이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특히 이러한 책임은 아직까지 미해결된 6·25전쟁의 유산, 그리고 한반도 분단에 있

어 국제사회, 특히 강대국들이 한 역할에 비추어 볼 때 반드시 받아들여져야 한다. 이러한 불행한 유산은 돌파구를 찾기 어려운 북한의 인권상황을 설명할 뿐만 아니라 효과적인 대응책이 왜 지금 절실한지를 알려준다.

87. 유엔은 북한에서 반인도범죄를 저지른 주요 가해자들에게 책임을 엄중히 물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는 방안과 유엔이 특별재판소를 설립하는 방안 등이 있다. 책임을 규명하는 신속한 조치와 함께, 북한과 인권에 대한 대화를 강화해야 하고, 시민 간 교류를 통해 더 많은 변화를 모색해야 하며, 남북한 화해 의제가 수립되어야 한다.

88. 조사결과 및 결론을 바탕으로 조사위원회는 아래와 같은 권고를 하고자 한다.

89. 조사위원회는 북한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a) 북한의 최고지도자와 조선노동당의 권력에 견제와 균형을 도입하도록 지체 없이 근본적인 정치적·제도적 개혁을 실행한다; 이러한 개혁은 독립되고 공정한 사법부, 다당제, 그리고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에 의해 선출된 지방 및 중앙 차원의 의회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인권 침해에 관련된 장교단 전체를 조사하고, 조선인민군의 역할을 외부위협으로부터의 국가 방어로 제한함으로써 안보분야를 개혁한다; 국가안전보위부를 해체하고 사회안전성(현 인민보안부)을 투명하고 민주적인 감시하에 둔다. 북한의 저명한 사회 인사로 구성된, 독립된 헌법 및 제도 개혁 위원회를 설립하여 위의 과정을 지도해야 하며, 이러한 위원회는 적합한 국제 전문가들의 지원을 받아야 한다.

(b) 북한은 조사위원회가 동 보고서에 서술한 정치범수용소를 포함하여 인권 침해의 존재를 인정하여야 한다; 국제 인도지원 단체 및 인권 감시 요원에게 정치범수용소 및 살아남은 피해자에 대한 즉각적인 접근을 허용하여야 한다; 모든 정

치범수용소를 해체하고 모든 정치범을 석방하여야 한다; 추적이 쉽지 않은 모든 실종자들의 행방에 대한 구체사항을 밝혀야 한다.

- (c) 북한의 형법 및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반국가”, “반민족” 범죄라는 애매한 표현을 없애고,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명시된 공정한 재판 및 적법절차를 보장받을 권리를 명시하여야 한다; 국제법상 불법인 고문 및 기타 비인간적 심문에 대한 금지와 처벌에 관한 북한의 형법 및 형사소송법 규정을 시행하여야 한다;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수감자들이 인간적 조건 하에 있을 수 있도록 일반 수감 체제를 개혁하여야 한다; 연좌제로 보복하는 행위를 중단하여야 한다; 수형자의 가족에 대한 강제이전 관행을 즉각 폐지하여야 한다;
- (d) 사형의 선고 및 집행에 대한 일시 중단을 즉각 선포·실시하며, 추후 사형제 규정 및 집행을 부당한 지체 없이 폐지하여야 한다;
- (e) 독립적 신문 및 기타 매체의 설립을 허용하여야 한다; 북한 주민들이 인터넷, 대중 매체, 국제 통신수단, 그리고 다른 나라의 대중 문화를 포함한 외국 방송 및 출판물을 자유롭게 접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그리고 조직활동 및 사상교육 강제 참여를 폐지하여야 한다;
- (f) 인권 및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을 보장하는 교육을 도입하여야 한다; 국가적, 인종적 또는 정치적 증오를 부추기거나 전쟁을 선동하는 어떠한 선전이나 교육 활동도 모두 없애야 한다;
- (g) 기독교인 등 모든 종교인들이 처벌, 보복, 감시에 대한 공포 없이 독립적이고 공개적으로 종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 (h) 북한 주민들의 정치적 충성도 및 그 가족의 사회·정치적 배경을 근거로 교육 및 취업 등에 있어 차별을 두는 관행을 종식해야 한다; 이웃감시제도(‘인민반’),

기밀 공민등록자료 및 기타 효과적인 사법적, 민주적 관리를 벗어나 정치적 억압을 목적으로 하는 개인에 대한 모든 감시를 중단하여야 한다; 과거에 했던 광범위한 감시 활동을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주민들의 공민등록자료 열람을 허용하여야 한다;

- (i) 여성들에게 사회생활 및 구직에서 남성과 동등한 기회를 보장하는 것 등을 통해 성평등을 보장하는 조치를 즉각 취하여야 한다; 여성에 대해 차별적 영향을 미치는 법제, 규율, 그리고 관행을 뿌리 뽑아야 한다; 가정 폭력, 당국자들 및 국가 기관이 행하는 성폭력 및 성별에 근거한 폭력 등 여성에 대한 모든 종류의 폭력에 대응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여성 인신매매에 즉각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여성이 이러한 인권 침해에 취약하도록 만드는 구조적 원인에 대처하여야 한다;
- (j) 북한 주민들이 차별 없이 식량권 및 기타 경제적·사회적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여성과 취약계층, 예컨대 부랑아·노인·장애인의 고충에 특별히 주목해야 한다; 민주적 참여, 선정(good governance) 및 비차별에 기반을 둔 농업·경제·금융 정책을 증진시켜야 한다; 그리고 자유 시장경제 활동, 대내외 무역, 그리고 북한 주민들에게 생계 수단을 제공하는 여타 독립적 경제 행위를 합법화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 (k) 북한 지도부 및 군부와 보안 기관의 과거 지출에 비추어, 군인을 포함한 주민들이 굶주림으로부터 벗어나고 필수적인 최소 기준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국가재정의 우선순위를 재정비하여 자원을 사용하여야 한다;
- (l) 주민들의 식량권 보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을 지체 없이 요청하여야 한다; 국제 인도지원 단체들이 효과적 모니터링 등을 위해 모든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롭고 제한 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인도적 지원을 부적절한 목적으로 불법 전용하는 당국자들에게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

- (m) 북한 일반 주민들에게 사실상 해외 여행을 금지하는 조치를 폐지하여야 한다; 불법 월경을 범죄화하지 말고,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국경관리 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 국경 시대에서의 사살 명령을 중단하여야 한다; 중국으로부터 강제송환된 사람들을 정치범으로 간주하거나 감금, 처형, 고문, 자의적 구금, 고의적 굶주림, 불법 신체 내부 수색, 강제낙태, 그리고 기타 성폭력의 피해자로 만드는 것을 중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당국이 강제적으로 거주지와 직장을 정하고 지정된 거주지 외 국내지역으로 여행할 경우 허가증 발급을 요구하는 제도를 폐지하여야 한다;
- (n) 납치되거나 강제실종된 사람들의 가족들 및 그 출신국에게 그들의 생사 및 (생존시) 소재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생존자 및 그들의 자손들이 즉시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그들의 가족 및 본국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사망자의 유해를 파악하여 본국으로 송환하여야 한다;
- (o) 주민들이 그들이 가고 싶은 곳으로 여행하거나 이민 가는 방법 등을 통해 이산가족이 상봉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들에게 우편, 전화, 이메일 및 여타의 통신수단 등 감시받지 않는 연락 수단을 즉각 제공하여야 한다;
- (p) 반인도범죄에 책임이 있는 혐의자들을 기소하여 법정에 세워야 한다; 이 과정을 감독할 특별 검사를 임명하여야 한다; 피해자 및 그들의 가족들에게 자신들이 겪었던 인권 침해의 진실을 포함하여, 적절하고 신속하며 효과적인 배상 및 구제책을 제공하여야 한다; 시민 주도 하에 인권 침해에 대한 진실을 확보할 수 있는 과정을 개시하여야 한다; 성인 및 아동들에게 인권과 민주적 통치에 대한 국내·국제법과 관행에 대한 포괄적인 교육을 제공하여야 한다; 그리고 전환기 사법 조치에 대한 국제사회의 자문 및 지원을 요청하여야 한다;

- (q) 조사위원회의 보고서 및 유엔 총회와 인권이사회와 관련 결의안, 보편적 정례 인권검토(UPR)와 인권 협약 기구 및 특별절차 수임자의 보고서에 제기된 모든 종류의 인권 침해를 중단하고 인권 우려사항에 대응하는 즉각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 (r) 강제실종협약, 장애인권리협약,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 그리고 국제 노동기구의 핵심 협약을 지체 없이 비준하여야 한다;
- (s) 위에 언급된 권고사항을 이행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와 기타 유엔 기관들의 현장기반 조직과 기술지원을 즉각 받아들여야 한다.

90. 조사위원회는 중국과 관련국에 아래와 같이 권고한다:

- (a) 강제송환금지의 원칙을 존중하고, 이에 따라 국제 인권 감시 기구가 북한의 인권 상황이 현저하게 개선되었다고 확인할 때까지 북한으로 어떠한 북한이탈 주민도 강제로 송환하는 것을 그만두어야 한다; 국제사회의 보호가 필요한 북한이탈주민들에게 망명 및 여타 항구적 보호조치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들이 중국 사회에 완전히 통합되고, 차별로부터 충분히 보호받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중국에서 살고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어떤 사람과 연락을 취하고 어떤 활동을 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북한 보안 기관에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 북한이탈주민들이 북한에서 온 사람들에게 국적을 부여하거나 기타 보호를 제공하고자 하는 어떠한 국가와도 자유롭게 외교·영사 접촉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 (b) 유엔 난민최고대표사무소 및 기타 인도주의 기구가 동 외교·영사 접촉을 필요로 하는 모든 북한 주민들에게 완전하고 제한 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c) 국제난민법상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고 북한이탈주민들을 인신매매로부터 효과

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유엔의 기술지원을 요청하여야 한다;

- (d) 인신매매에 대한 피해자 중심적이고 인권 기반적인 접근법을 채택하여야 한다; 이는 피해자가 자신이 있는 국가에 체류하고, 여기에서 법적 보호 및 교육·직업·의료의 기회 등 해당 국가 시민들과 동등한 공공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를 갖는 것을 포함한다;
- (e) 중국 국민과 결혼하거나 아이를 가진 북한의 여성과 남성의 지위를 정규화하여야 한다; 이렇게 태어난 아동들이 중국 국적을 얻고 출생 신고를 할 수 있으며, 교육 및 보건 서비스에 차별 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 (f) 중국 영토 내에서 북한의 요원들이 납치를 계속하지 못하도록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단속된 납치범들을 기소하고 적절히 처벌하며, 이를 지시한 사람들을 본국으로 인도하여 법에 따라 재판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중국 정부는 북한 최고지도자 및 고위급 관료들에게 북한이탈주민 납치, 중국 국적을 받아야 하는 아동 살해, 강제송환된 탈북 여성들에 대한 강제낙태, 그리고 기타 중국으로부터 송환된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권 침해 문제를 제기하여야 한다.

91. 조사위원회는 남북 주민들이 남북한 화해 의제를 위한 단계별 남북대화를 활성화할 것을 권고한다. 남북대화는 친선 스포츠 경기, 학술·재계 교류, 북한 청년들을 위한 장학 및 직업 실습 사업, 학생 간 교류, 적십자 등 시민 단체 간의 교류, 전문가 및 여성 단체 등의 교류, “자매도시” 관계 수립, 궁극적으로 교통 및 통신망 재건을 통해 활성화될 수 있다.

92. 조사위원회는 북한 주민들이 정보를 교환하고 해외경험을 접할 수 있도록, 남북한 정부 및 시민 단체들이 문화, 과학, 스포츠, 선정(good governance), 경제 개발 등 분야에서 인적 대화 및 교류기회를 촉진할 것을 권고한다. 북한과 관련국들은 국제인권법상 관련 의무와 부합하지 않는 수준으로 여행 및 타국인과의 접촉을 범

죄화하는 조치 등 인적 접촉에 대한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여야 한다.

93. 조사위원회는 또한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각국 정부, 재단 및 관련 기업들이 시민단체의 활동에 더 많은 지원을 할 것을 권고한다. 북한의 인권 상황을 기록하고 동 실태에 대한 정보를 각국에 방송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 등을 포함한다. 궁극적으로, 적절한 시점에 이러한 재단 및 기업들은 북한의 발전과 주민들의 생활 개선, 인권 개선을 위한 일관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관련 정부들과 협력하여야 한다.

94. 국제공동체 및 유엔과 관련하여 조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 (a)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의 인권 실태를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여야 한다. 안전보장이사회는 또한 반인도범죄에 대해 가장 큰 책임이 있는 것으로 드러난 자들을 겨냥한 제재를 채택하여야 한다. 북한 주민들의 비참한 사회·경제적 상황을 감안할 때 조사위원회는 북한 일반 주민들이나 북한의 경제 전체를 겨냥한 안보리 또는 양자 차원의 제재는 지지하지 않는다;
- (b) 유엔 총회 및 인권이사회는 조사위원회보다 앞서 만들어진 북한에 대한 국별 인권 모니터링 및 보고 메커니즘의 활동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이는 유엔 사무총장 및 인권최고대표의 정기 보고서,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북한의 인권 상황 관련 임무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메커니즘은 특히 반인도범죄에 대한 책임규명 임무에 중점을 두어야 하며, 조사위원회의 권고 사항 이행에 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 (c) 유엔 총회 및 인권이사회는 전적인 지원을 받는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특히 반인도범죄에 해당할 정도로 심각한 북한의 인권 침해 사안들에 대한 책임성 규명을 돕는 조직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조직은 조사위원회가 이룩한 자료축적 및 증거수집을 바탕으로 설립되어 데이터베이스를 확장시켜나가야 한다. 또한



이는 적합한 인력이 배치되어 인권 피해자들 및 증언자들을 지속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현장에 기반한 조직이어야 한다. 인권 보고 메커니즘의 업무를 알리고 관련 이해 당사자들이 제공한 정보를 안전하게 보존하는 기능 외에, 이러한 조직은 유엔이 반인도범죄에 대해 가장 큰 책임을 지고 있는 가해자들을 기소하거나 책임을 묻는 기능을 수행하도록 도와야 한다;

- (d)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북한과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간의 협력을 지속해야 하며, 이를 통해 북한에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고 인권 옹호 이니셔티브를 증진시켜야 한다.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주도하는 전략의 이행과 현재 보고서에 설명된 북한의 국제 납치와 강제실종 문제를 일관되고 지체 없이 다루기 위해 유엔의 모든 인권 메커니즘을 포괄하는 전략 이행을 지원해야 한다. 유엔 회원국들은 이 전략의 이행을 위해 모든 협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 (e)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이 보고서에 명시된 권고 사항들의 이행을 인권이사회 및 기타 관련 유엔 기구들에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 (f) 유엔 인권이사회는 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와 권고사항들로부터 국제사회의 관심이 멀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북한 주민들이 너무나 심각한 고통을 겪었고 아직까지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국제공동체 전체가 공동으로 대응할 책임을 지고 있다;
- (g) 유엔 사무국과 산하기구들은 공동의 “인권 우선(Rights Up Front)” 전략을 조속히 채택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서 이 보고서에 기록된 인권 사안들을 포함한 인권적 우려들이 모든 북한관련 활동에서 효율적으로 고려되고 다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유엔은 북한에서 반인도범죄가 재발하거나 지속되지 않도록 이 전략을 즉시 적용하여야 한다. 이러한 전략으로 유엔 사무총장이 안전보장이사회에 북한 인권 상황을 회부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

- (h) 북한과 역사적으로 가까운 관계에 있는 나라들, 주요 원조 공여국들 및 잠재적 공여국들, 그리고 6자 회담의 틀 안에서 북한과 관계하고 있는 나라들도 모두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인권 상황 개선을 주도할 인권협의체를 만들어야 한다.
- (i) 관련국들은 북한에 식량 지원이나 기타 다른 인도적 지원을 경제·정치적 압박 수단으로 활용해서는 안된다. 인도적 지원은 비차별주의를 포함한 국제 인도주의 및 인권원칙에 부합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지원은 오로지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인도적 접근과 관련 모니터링이 적절히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만 중단되어야 한다. 북한에 대한 양자·다자 지원을 하는 당사국들은 북한이 적절한 인도적 접근과 관련 모니터링을 보장하게 하도록 함께 노력하여야 한다;
- (j) 북한이 즉각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국제법에 명시되어 있는 모든 의무를 저해하지 않고, 6·25전쟁의 당사자들이었던 유엔과 관련국들은 고위급 정치 회담을 열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고위급 회담의 참여자들은 합의되는 선에서 모든 당사자들이 인권 및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 등 유엔 헌장의 원칙 준수를 약속하는 최종적인 전쟁의 평화적 해결 문서를 비준할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역내 국가들은 협력을 강화해야 하고, 헬싱키 프로세스의 선례를 따르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 부록 1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지도자 및 조선노동당 제1비서 김정은과의 서신

유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권조사위원회

2014년 1월 20일

김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지도자 및 조선노동당 제1비서 귀하께

2013년 7월 16일 송부한 저의 서신에 이어 저는 국제연합(유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권조사위원회의 조사위원장 자격으로 다시 서신을 보내드립니다. 우리 조사위원회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설립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특히 반인도 범죄에 해당할 수 있는 인권침해에 대해 온전한 책임성을 규명하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심각하고 광범위하며 조직적인 인권 침해를 조사하는 임무를 부여 받았습니다. 조사위원회는 조사 기간 동안 인권 침해 피해자 및 목격자의 증언을 청취한 공청회, 비공개 면담, 그리고 기타 관계자가 제공한 자료를 토대로 수집한 풍성한 정보들을 세밀하게 분석함으로써 조사 활동을 완수하였습니다.

우리 조사위원회는 공청회에 참석, 동참하여 줄 것을 반복적으로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귀하의 정부가 조사위원회와의 협력 기회에 응하지 않은 것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또한 우리가 계속해서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조사위원회를 귀국에 초청하지 않은 것과, 귀하의 정부가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어떠한 인권 관련 정보도 제공하지 않은 사실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조사위원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및 기관, 그리고 당국자들에 의해 조직적이며 광범위하고 심각한 인권 침해가 자행되어 왔으며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위원회가 조사한 인권침해 중 다수 사례가 반인도

범죄에 해당하였습니다. 이 서신의 종합 부록은 조사위원회의 세부 발견 사항을 기록하고 있으며, 이 발견 사항은 앞서 언급한 결론을 구체화하고 뒷받침합니다. 반인도범죄를 범하거나, 지시하거나, 요구하거나, 방조하거나, 동조하거나, 사주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모든 당국자는 국제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지며, 법에 따라 처벌받아야만 할 것입니다.

비록 반인도범죄에 직접 연루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군 지휘관은 본인이 실제적인 지휘와 통제 하에 있는 군대가 반인도범죄를 저질렀을 때 제대로 통제를 하지 못한 상황, 즉 (1) 지휘관이 당시 정황으로 미루어 휘하 세력이 그러한 범죄를 저지르거나 저지르려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나 알아야 했을 때, 그리고 (2) 지휘관이 그러한 범죄가 발생하는 것을 자신의 권한 내에서 모든 합리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억제하지 못했거나, 이러한 사건을 조사 및 당사자를 기소할 권한이 있는 당국에 고발하지 않았을 때 반인도범죄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민간인 상급자도 (1) 그의 실제적인 책임 및 통제 하에 있는 직원이 반인도범죄를 저질렀다는 명백한 정보를 알았거나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무시했거나, (2) 그러한 범죄가 발생하는 것을 자신의 권한 내에서 모든 합리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억제하지 못했거나, 이러한 사건을 조사 및 당사자를 기소할 권한이 있는 당국에 고발하지 않았을 때 반인도범죄에 대한 개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지도자, 조선노동당 제1비서, 당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그리고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서의 귀하의 권한을 고려하여, 본 조사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조사 결과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1. 조사위원회는 국가안전보위부, 인민보안부, 조선인민군, 검찰소, 사법부 및 조선노동당 당국자가 반인도범죄를 저질렀거나 현재까지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여기에 소속된 직원들은 조선노동당, 국방위원회, 그리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지도자의 실제적인 통제 하에 있는 중심 기관에

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때때로 귀하의 개인적인 통제 하에 활동하고 있다고도 추론할 수 있습니다.

2. 조사위원회는 정치범수용소(관리소) 및 기타 구금시설에 수감되어 있는 사람들, 탈북자들, 기독교 신자들, 그리고 기타 체제 전복적인 영향을 가진 것들을 반입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반인도범죄가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이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정치 체제 및 지도 세력에 대해 위협을 가한다고 여겨지는 사람들 모두에 대한 당국의 조직적이며 광범위한 탄압의 일부로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탄압은 북한 일반 주민들이 경험한 정치적 목적의 대규모 인권 침해에 속하며, '성분'에 기초한 사회 계급 차별 제도도 이에 포함됩니다.
3. 조사위원회는 또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명목상 필요한 노동력을 보충하고 기술을 얻기 위해 대한민국, 일본, 그리고 기타 다른 국가 사람들을 조직적으로 납치하거나 송환을 거부하는 등 반인도범죄를 저질렀거나, 아직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이들은 지속적으로 강제실종의 희생양이 되고 있습니다. 이들의 자유를 박탈하고 실종자들의 운명과 행방에 대해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당국자들에게는 비록 그들 자신이 직접 납치나 송환 거부에 참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4. 조사위원회는 북한의 굶주리는 주민들에게 반인도범죄가 자행되어 왔고, 현재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이 범죄는 인류보편적 권리인 식량권을 침해하는 결정 및 정책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 정권은 식량권 침해가 기아를 악화시키고 더 많은 사람들을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온전히 인식하고 있음에도 정권유지를 위해 이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반인도범죄를 야기하는 많은 정책들은 아직도 유지되고 있으며, 이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인도적 상황에 대해 고의적으로 믿을만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도움이 필요한 주민들에 대한 자유롭고 제약 없는 국제 인도적 지원의 접근을 부인하고, 국가의 자원 및 식량을 차별적으로 분배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조사위원회는 귀하가 권한을 가진 모든 합리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이러한 범죄가 더 이상 일어나는 것을 예방하거나 억제하고, 이미 일어난 반인도범죄에 대한 적절한 조사와 기소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러한 점에 있어서 조사위원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기관 및 당국자들이 앞서 언급한 반인도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들을 파악하고 기소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조사위원회는 귀하를 포함하여 이 서신과 조사위원회의 보고서에 나와 있는 반인도범죄의 가해자들의 책임을 규명하기 위해 유엔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할 것을 권고할 것임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조사위원회의 최종 보고서가 2014년 3월 17일경에 제네바의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될 것임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 이전에 주제네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표부에 보고서의 최종본 사본을 제공해 드릴 계획입니다.

만일 귀하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당국자 여러분, 그리고 북한의 주민들께 도움이 된다면 저를 포함하여 저희 조사위원회는 평양으로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귀하 측만 허락한다면 언제든지 북한을 방문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방문은 귀하 및 당국자, 주민들이 모든 조사과정과 결론 도출 이유에 대해 직접 듣고, 조사위원회의 보고서, 조사 내용 및 권고 사안에 대해 질문 및 답변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조사위원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향후 온전한 인권보장을 확보하기 위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조사위원회는 이번 기회로 귀하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존경을 표합니다.

/서명/  
마이클 커비  
위원장

## 부록 2

### 중국과의 서신

유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권조사위원회

2013년 12월 16일

우하이타오 주제네바 중국대표부 대사 귀하께

이 서한은 조사위원회가 중국 방문을 위해 귀 정부의 동의를 구하고자 했던 2013년 11월 7일자 서한의 후속입니다. 조사위원회는 2013년 11월 20일 전화 통화로 유엔 사무국에 중국 정부가 위원회의 중국 방문을 허가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통보한 것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조사위원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공화국)과의 관계를 직접 담당하는 중국 당국자들과, 중국의 공식적인 입장에 대해 언급해 줄 수 있었을 전문가들을 만나 협의할 기회를 제공받지 못하게 된 것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조사위원회는 또한 중국의 옌벤 조선족 자치주를 방문하여 구치소 및 기타 구금 시설에 수감되어 있는 공화국 주민들과 중국 내 공화국 주민들의 지위와 관련하여 활동하고 있는 교회 및 기타 단체들을 면담하지 못하게 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귀하께서 잘 아시다시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권조사위원회는 현재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할 최종 보고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중국 방문은 조사위원회가 중국과 관련되어 있고, 조사위원회의 임무에 해당하는 특정 사실들을 검증하고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조사위원회는 아래에 명시된 심각한 우려 사항들과 이 서한의 부록에 나열된 구체적인 질문에 대해 확인하고자 하였습니다.

조사위원회는 귀 정부의 대표들로부터 중국은 중국 영토로 허가 없이 입국하는 공화국 주민들을 경제적 이주민으로 분류하며, 이들에게 난민지위 검토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달받았습니다. 우리는 비록 일부는 인도적인 이유로 예외적으로 처리되지만, 이러한 사람들이 공화국으로 송환되어야 한다는 것이 귀 정부의 입장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현재 조사 단계에서 최종 결론을 내리기는 부적절하지만, 이제까지 수집된 증언 및 기타 정보에 의하면 중국으로 국경을 넘는 많은 공화국 주민들은 종교, 또는/그리고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이나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이유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또한 공화국으로 강제송환된 사람들은 대개 고문 및 자의적 구금을 당하며, 일부는 성폭행, 강제실종, 즉결 처형 및 기타 중대한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조사위원회는 또한 중국인 아버지를 두고 있는 공화국 영·유아들의 강제낙태 및 살해 사례들에 대한 정보도 다수 입수하였습니다. 조사위원회는 송환된 주민들이 공화국으로 돌아갔을 때 이러한 침해를 당하지 않도록 중국 정부가 어떠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했는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에서 언급한 송환 조치는 고문을 받을 위험이 있다는 상당한 근거가 있는 다른 국가로 추방, 귀환("인도"), 송환하지 않아야 하는 의무를 중국이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의무는 중국이 1988년 10월 4일 비준한 국제고문방지협약 제3조로부터 나옵니다. 공화국으로의 송환은 또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33조에 반하는 것으로, 공화국 주민이 특정 종교를 믿고 있거나/그리고 특정 사회단체에 소속되어 있거나, 또는 어떤 정치적 의견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이들을 생명과 자유가 위협받는 곳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또한 심각한 인권 침해를 받을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확실한 근거가 있는 국가로 사람들을 추방하지 않을 의무도 국제 관습법 요건으로부터 도출됩니다.

아직 조사위원회의 조사 활동이 종료되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입수된 정보는



공화국 당국자들이 중국으로부터 송환된 북한 주민들에 대해 반인도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입증합니다. 또한 어떤 경우에는 중국 정부 관계자들이 송환되는 공화국 주민들의 연락처 및 행동 등에 대한 정보를 공화국 당국자들과 공유했을 것이라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도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 교환은 중화인민공화국公安부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가안전보위부 간에 체결된 국경 통제 관련 협약들에 상당 부분 근거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조사위원회는 이러한 정보 제공이 송환된 공화국 주민들을 고문, 강제실종, 그리고 즉결 처형의 위협에 더욱 노출시킨다는 점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화국 주민들이 기독교 교회 측이나 대한민국 국민과 연락했다는 정보나, 대한민국으로 가려고 시도했다는 정보일 경우에는 더욱 그러합니다. 조사위원회는 귀 정부가 탈북 주민들의 송환과 이들에 대한 정보교환이 공화국에서의 반인도범죄 자행을 촉진시키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경우 반인도범죄의 지원 및 동조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당국자들에게 주지시킬 것을 촉구합니다.

이제까지 수집된 정보에 의하면, 중국으로 오는 많은 공화국 출신 여성들이 인신매매되어 강제결혼을 당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성매매를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조사위원회는 중국이 인신매매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가해자들을 파악하고 기소하기 위해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화국 주민들을 송환하는 정책과, 송환된 사람들이 공화국에서 겪는 중대한 인권 침해로 인해 많은 여성들이 인신매매 범죄를 당국에 신고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조사위원회는 인신매매의 피해자들을 포함하여, 중국 남성과의 사이에서 아이를 출산한 공화국 여성들이 체포되어 북한으로 송환된 사람들 중에 포함되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조사위원회는 북한 출신 어머니와 중국인 아버지를 둔 아동들이 만 명에서 이만 오천 명 사이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아동들은 대부분 어머니의 불법 체류 신분 때문에 등록되기 어렵게 되어 있고, 따라서 사실상 무국적 상태인 것으로 보입니다. 조사위원회는 중국이 의무교육법에 국적이거나 인

중에 관계 없이 자국 내 모든 아동에게 9년의 의무교육 기간을 명시해 놓은 것을 주목했습니다. 그러나 조사위원회가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공화국 여성이 출산한 중국 아동들이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아동의 이름을 등록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지만, 이러한 경우 부모가 즉각 체포되어 송환될 것이라는 두려움으로 인해 대다수의 아동들이 학교에 다닐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습니다.

조사위원회는 또한 공화국 요원들이 중국 영토 내에서 활동하며 공화국 주민들 및 이들을 지원하는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려 하고 있다는 증거들을 받았습니다. 일부 경우, 이 요원들은 심지어 공화국 주민들을 납치하고, 최소 한 명의 대한민국 국적자를 납치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사위원회는 어떤 경우 중국 공안 관리들이 납치 대상이 된 개인에 대해 경고함으로써 납치를 예방한 긍정적인 조치를 취하였다는 정보를 접하였습니다.

조사위원회는 귀 정부가 상기 우려들 및 이 서한의 부록에 나열된 질문들에 대해 2013년 12월 30일까지 답변하여, 귀 정부의 답변들이 조사위원회가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할 보고서에 반영될 수 있게 된다면 고맙겠습니다.

저의 깊은 경의를 귀하께 전해 드립니다.

/서명/  
마이클 커비  
위원장

## 첨부

1. 중국으로 허가 없이 들어오는 모든 공화국 주민들을 불법 경제 이주민으로 규정하고 이에 따라 이들이 망명을 신청하거나 난민 지위를 신청할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귀국의 입장을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이것이 귀 정부가 취한 정확한 입장이 아니라면 공화국 주민들에 대한 중국의 정책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2. 조사위원회는 1986년 중국이 공화국과 “국경 변경지역의 안전 및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한 상호 의정서(북중변경지역 관리에 관한 의정서)”를 체결하고, 1998년 처음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확인해 주실 수 있습니까? 만일 사실이라면, 현재 시행중인 그 협약과 기타 개정에 관련된 문서들을 제공해 주실 수 있습니까? 중국에서 살고 있는 공화국 주민들에 대해 적용하는 정책 관련 중국 당국의 입장을 설명할 수 있는 기타 문서들을 조사위원회에 제공해 주실 수 있습니까?
3. 조사위원회는 중국 당국이 공화국 주민들을 공화국으로 강제송환하였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중국이 어떤 경우 공화국 주민을 송환했고 송환하지 않았는지를 알려주시겠습니까? 공화국으로 송환된 주민 숫자에 관한 정보를 성별과 연령으로 분류하여 제공해 주실 수 있습니까? 또한 얼마나 많은 공화국 주민들이 인도적 고려에 따라 중국 내에 머무르도록 허용되었는지에 관한 수치와, 이들이 어떤 자격으로 체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려줄 수 있습니까?
4. 조사위원회는 최근 중국이 약 20,000개의 취업 또는 거주 허가를 공화국 주민들에게 부여하였다는 정보를 입수하였습니다. 이러한 허가가 누구의 소관이며, 어떠한 부류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민들이 이러한 허가를 받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받았으며, 이러한 허가를 받기 위해 어떠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등 이 허가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알려주실 수 있습니까? 특히

조사위원회는 이러한 허가가 중국 내 미등록 공화국 주민들에게 그들의 신분을 정규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어졌는지에 관한 정보를 요구합니다.

5. 얼마나 많은 공화국 주민들이 현재 중국 내에 거주하고 있는지에 관한 추정치를, 등록된 자와 미등록된 자로 구분하여 제공해 주실 수 있습니까?
6. 공화국으로 송환된 주민들이 중국에 있을 당시 그들의 활동 및 연락처 등에 관한 정보를 중국 당국이 공화국 당국에 어느 정도까지 제공하는지 알려주실 수 있습니까?
7. 공화국 사람들을 체포, 송환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원을 확인함에 있어 중국 당국이 공화국 당국과 어느 정도까지 협력하였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어떠한 법적 체계 하에 얼마나 자주 이러한 협력이 이루어졌습니까?
8. 중국 남성과의 사이에서 아이를 출산한 공화국 여성들은 어떠한 법적 체계 하에 어떠한 보호를 받고 있습니까? 조사위원회 측에 중국 아동을 출산한 여성들이 몇 명이나 송환되었는지 수치를 제공해 주실 수 있습니까? 공화국과 중국 주민간 결혼으로 태어난 아동들을 위해 어떠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습니까? 조사위원회는 또한 이 취약한 아동들에 관한,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떠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지에 관한 기타 정보를 제공하여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9. 조사위원회가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중국에서 체포되고 중국 남성의 아이를 가졌다고 간주된 임신한 공화국 여성들은 공화국에 송환되면 강제낙태를 당하거나 영아 살해의 위협에 처하게 됩니다. 중국 당국은 이러한 인권 침해 문제를 공화국에 제기하였습니까? 또한 중국은 강제송환 위협에 처한 임신한 공화국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한 조치들을 고려하였습니까?

10. 조사위원회는 중국과 유엔난민기구가 1995년 유엔난민기구의 북경사무소 설치에 관해 합의한 바에 따라 특히, 중국 정부가 난민협약에 부합하는 자체적 난민 보호 제도를 시행할 때까지 유엔난민기구가 한시적으로 난민신청자들의 난민 지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조사위원회는 유엔난민기구가 난민 지위를 결정하기 위해, 중국 정부가 유엔난민기구로 하여금 망명신청자들에 대해 아무런 장애 없이 접근하도록 허용하는데 동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사위원회는 공화국을 떠난 공화국 주민들이 다수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 중국의 동북 지역을 유엔난민기구가 방문하거나 이곳에서 활동하는 것이 사실상 허용되지 않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허용 거부를 유엔난민기구와 중국 간의 협약, 그리고 난민협약 하의 중국 정부의 법적 의무 등에 비추어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11. 조사위원회는 2012년 7월 중국 전국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채택, 2013년 7월 발효된 ‘출입국 관리법’ 이 난민 지위에 대한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법은 난민 지위를 신청한 “외국인”이 난민 지위 신청이 최종 결정될 때까지 공식적인 임시 등록증을 가지고 중국에서 머무르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회가, (중국에 허가 없이 들어오거나 머무르다가) 중국 당국에 체포된 공화국 주민들에게 이러한 기회가 있음을 알려주는 것을 포함하여, 공화국을 벗어난 공화국 주민들에게도 부여된다는 점을 확인해 주실 수 있습니까?
12. 조사위원회는 공화국 주민들을 감시하고 체포하기 위해 중국에서 현재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공화국 요원들에 대한 가능한 어떠한 정보라도 제공해 줄 수 있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요원들의 지위는 어떻게 되며, 귀 정부의 인지 하에 활동하고 있는 요원들이 있습니까? 중국 당국이 납치 사례를 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이를 확인해 줄 수 있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얼마나 많은 공화국 요원들이 중국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활동 기간은 얼마나 되며, 어떠한 지침 하에서 그들이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받고 있습니까?

13. 조사위원회는 중국 영토 내에서 중국, 대한민국, 그리고 기타 다른 국적의 사람들이 공화국 요원들에게 납치되었다는 보고들을 받았습니다. 조사위원회는 이러한 납치의 가해자 한 명이 체포되고 기소되어 중국 법정에 선 사례가 적어도 한 번은 있었다는 정보를 입수하였습니다. 대한민국 목사 김동식씨의 납치에 연루된 류영화의 사례입니다(재판 관련 자료 첨부). 혹시 중국 내 납치 가해자들의 체포 및 기소의 사례가 있으면 알려주시겠습니까? 있다면 증빙된 재판 자료들을 조사위원회 측에 제공해 주실 수 있습니까?
  
14. 조사위원회는 1978년에 있었던 마카오와 홍콩에서의 납치 사건들에 관련된 보고들을 받았습니다. 조사위원회는 마카오에서 납치된 중국 국적 Ms. Hong Lein-jeng과 Ms. So Mbi Chun, 그리고 태국 국적자인 Ms. Anocha Panjoy에 대한 정보, 그리고 홍콩에서 납치된 대한민국 국적자인 최은희씨와 신상옥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3년 12월 30일

마이클 커비 위원장님께

2013년 12월 16일자로 귀하께서 저희 측에 보내주신 서한을 수신하였음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귀하께서 보내주신 서한에서 제기된 사안들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중국은 유엔 인권이사회에 의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권조사위원회 설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강조하고 싶습니다. 중국의 입장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중국은 중국에 불법적으로 들어오는 공화국 주민들은 경제적인 이유에서 들어온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분명히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난민이 아닙니다. 그들의 불법 입국은 중국 국내법을 위반할 뿐만 아니라, 중국의 국경 통제를 저해하는 행위입니다. 이들 중 일부는 여러 차례 불법으로 국경을 넘었으며, 어떤 이들은 절도나 강도, 불법 수확 등 불법적 범죄 행위에 연루되었습니다. 중국은 이러한 사례들을 법률에 따라 처리할 정당한 권리가 있습니다.

중국이 알고 있는 바로는, 인도주의의 명목 하에 대한민국의 일부 비정부단체나 종교 단체들이 불법으로 국경을 넘는 공화국 주민들의 밀입국을 중개하는데 연루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이익 추구를 위해 이러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철저한 이윤 사슬을 이루고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조직적 인신매매 활동은 중국의 사회안정과 국가 안보를 심각하게 손상할 뿐만 아니라, 국제 사회가 보편적으로 인정하는 범죄입니다.

최근 들어 중국의 공안 당국 및 국경 경비대들은 계속적으로 불법으로 중국 국경을 넘은 일부 공화국 주민들을 체포해 왔습니다. 이는 중국에서 공화국으로

송환된 공화국 주민들이 고문을 받는다는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입증합니다. 또한 중국 정부는 조사위원회가 언급한 중국 내 공화국 여성 및 그들의 자녀들에 관련된 사례들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중국은 국가의 주권 및 근본 이익을 수호한다는 전제 위에, 한반도의 안정을 고려하여, 중국의 국내법 및 국제법, 그리고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중국에 불법적으로 들어오는 공화국 주민 문제를 신중하고 적절하게 다룰 것입니다. 중국은 이 문제를 난민 사안으로 만들거나, 국제화 또는 정치화하는 것을 단호히 반대합니다.

중국은 유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권조사위원회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활동하고, 입증되지 않은 정보로 경도되지 않기를 희망합니다.

중국은 이 서한이 조사위원회가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할 보고서에 포함되기를 요청합니다.

/서명/

우하이타오

주제네바 중국대표부 대사



No.GJ/07/2014

주제네바 중국대표부는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에 존경의 뜻을 표하며, 유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권조사위원회의 보고서 초안에 대한 다음과 같은 중국의 의견을 조사위원회 측에 전달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중국은 건설적인 대화 및 협력을 통해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할 확고한 의지가 있습니다. 중국은 국별 인권사안을 포함한 인권 문제의 정치화를 반대합니다. 중국은 또 인권이사회의 활동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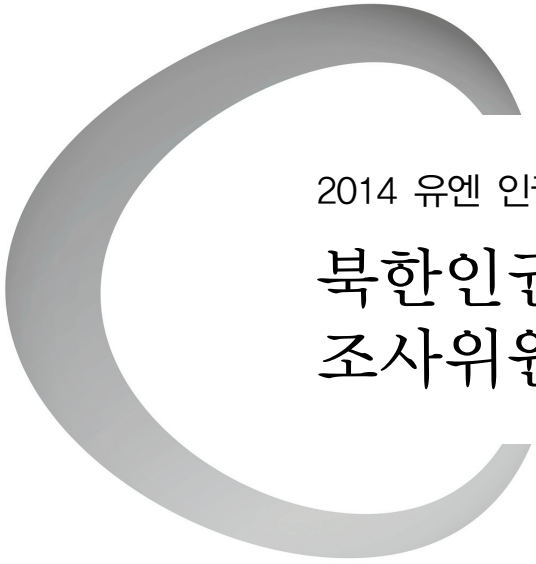
중국은 2013년 12월 30일자로 조사위원회 측에 보낸 서한에 명시하였듯이, 중국에 불법으로 들어온 공화국 주민들에 대한 중국 정부의 입장을 조사위원회에 다시 한 번 상기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중국은 조사위원회의 보고서에 언급된 중국과 관련된 근거 없는 의혹들을 거부합니다.

중국은 2013년 12월 30일에 조사위원회에 송부한 서한과 더불어, 동 구상서가 조사위원회가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할 최종 보고서에 정확하게 반영되기를 요청합니다.

주제네바 중국대표부는 이번 기회로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에 깊은 경의를 전달합니다.

2014년 1월 24일 제네바





2014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상세보고서



배포: 제한  
2014년 2월 7일

원문: 영어

## 인권이사회

제25차 회기

의제 4

인권이사회의 주의를 필요로 하는 인권 상황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권조사위원회 상세보고서

### 요약

이 보고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권조사위원회 조사결과의 상세내용을 수록했음. 조사위원회의 주요 조사결과와 권고사항은 보고서 A/HRC/25/63을 통해 제출한 바 있음.\*

\* 이 보고서에 수록된 모든 내용은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A/HRC/25/63)와 병행하여 검토해야 함.

# 목 차

	문단번호	쪽
목차		4
약어 정리		6
I. 개요 .....	1~5	9
II. 조사위원회의 임무와 조사 방법 .....	6~84	13
A. 임무의 발생근거	6~12	14
B. 임무의 해석	13~20	16
C. 북한의 비협조	21~27	19
D. 조사 방법	28~62	21
E. 보고된 침해 사례 평가를 위한 법체계 및 입증의 정도	63~78	32
F. 피해자 증언 기록 보관	79~84	36
III. 북한 내 인권 침해의 역사적·정치적 배경 .....	85~162	39
A. 식민지 이전의 역사	87~89	40
B. 일제강점기 (1910~1945년)	90~94	42
C. 한반도의 분단, 6·25전쟁과 그 유산	95~109	44
D. 최고지도자(수령) 체제의 시행	110~128	53
E. 김씨 왕조 권력의 공고화	129~157	64
F. 외부적 동학과 인권 상황	158~162	79
IV. 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 .....	163~1021	83
A. 사상, 표현 및 종교의 자유 침해	163~264	84
B. 당국이 지정한 사회 계급(‘성분’), 성별 및 장애에 따른 차별	265~354	133

---

	문단번호	쪽
C. 자국을 떠날 권리 및 강제송환 금지를 비롯한 이동 및 거주에의 자유 침해	355~492	176
D. 식량권 및 관련 생명권 침해	493~692	251
E. 자의적 구금, 고문, 처형, 강제실종과 정치범수용소	693~845	355
F. 외국인 납치 및 강제실종	846~1021	449
<b>V. 반인도범죄</b> .....	1022~1165	533
A. 국제법상의 반인도범죄에 대한 정의	1026~1032	536
B. 정치범수용소에서의 반인도범죄	1033~1067	540
C. 일반 감옥 체계에서의 반인도범죄	1068~1086	553
D. 종교인 및 기타 체제전복적 영향을 끼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반인도범죄	1087~1097	559
E. 탈북을 시도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반인도범죄	1098~1114	563
F. 기아	1115~1137	569
G.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특히 국제납치를 통한 반인도범죄	1138~1154	580
H. 정치적 집단살해죄(political genocide)의 해당 여부	1155~1159	588
I. 조사위원회의 주요 조사결과	1160~1165	590
<b>VI. 책임성의 보장: 특히 반인도범죄와 관련하여</b> .....	1166~1210	593
A. 기관 책임	1167~1194	594
B. 개인의 형사 책임	1195~1203	606
C. 국제공동체의 책임	1204~1210	611
<b>VII. 결론 및 권고사항</b> .....	1211~1225	615

---

## 약어정리

---

<b>ACF</b>	Action contre la Faim, Action against Hunger / 기아퇴치행동
<b>CEDAW</b>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b>CESCR</b>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위원회
<b>CRC</b>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b>DPRK</b>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b>FAO</b>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 유엔 식량농업기구
<b>HRNK</b>	Committee for Human Rights in North Korea / 북한인권위원회
<b>HRW</b>	Human Rights Watch / 휴먼라이츠워치
<b>ICCPR</b>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b>ICNK</b>	International Coalition to Stop Crimes against Humanity in North Korea / 북한반인도범죄철폐국제연대
<b>ICESCR</b>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b>ICRC</b>	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 / 국제적십자사
<b>KBA</b>	Korean Bar Association / 대한변호사협회
<b>KCNA</b>	Korean Central News Agency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 조선중앙통신
<b>KINU</b>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 통일연구원
<b>KPA</b>	Korean People's Army / 조선인민군
<b>KWAFU</b>	Korean War Abductees' Family Union / 6·25전쟁납북인사 가족협의회
<b>KWARI</b>	Korean War Abductees' Research Institute / 한국전쟁납북사건자료원
<b>LFNKR</b>	Life Funds for North Korean Refugees / 북한난민구원기금
<b>MPS</b>	Ministry of People's Security / 인민보안부
<b>MSF</b>	Médecins Sans Frontières: Doctors Without Borders / 국경없는의사회
<b>NGO</b>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 비정부기구

---



---

<b>NHRCK</b>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 국가인권위원회
<b>NKDB</b>	Database Center for North Korean Human Rights / 북한인권정보센터
<b>NKHR</b>	Citizens' Alliance for North Korea Human Rights / 북한인권시민연합
<b>PDS</b>	Public Distribution System / 중앙배급체계
<b>POW</b>	Prisoner of War / 국군포로
<b>ROK</b>	Republic of Korea / 대한민국
<b>SSD</b>	State Security Department / 국가안전보위부
<b>UNHCR</b>	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 유엔난민기구
<b>USA</b>	United States of America / 미국
<b>WFP</b>	World Food Programme / 세계식량계획
<b>WHO</b>	World Health Organization / 세계보건기구
<b>WGEID</b>	Working Group on Enforced and Involuntary Disappearances / 강제적 또는 비자 발적 실종에 관한 실무그룹

---



Chapter

I

개 요

## I. 개요

1 제22차 국제연합(이하 유엔) 인권이사회는 2013년 3월 21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 이하 북한) 인권조사위원회를 설치하였다. 인권이사회 결의 22/13호는 해당 조사위원회에 북한에서 자행되고 있는 조직적이며 광범위하고 중대한 인권 침해 상황을 조사할 임무를 부여하고, 특히 인도에 반한 죄(이하 반인도범죄)에 해당할 수 있는 침해에 대한 완전한 책임규명(full accountability) 보장을 염두에 두도록 하였다.<sup>1</sup>

2 조사 대상이 되는 침해 상황에는 식량권 관련 상황, 정치범수용소, 고문 및 비인간적 대우, 자의적 구금, 차별, 표현의 자유, 생명권, 이동의 자유, 그리고 외국인 납치를 포함한 강제실종에 관련된 상황 등을 포함하였다.

3 2013년 5월 7일, 인권이사회 의장은 호주의 마이클 커비(Michael Kirby)와 세르비아의 소냐 비세르코(Sonja Biserko)를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특별보고관인 인도네시아의 마르주키 다루스만(Marzuki Darusman)과 함께 조사위원으로 임명하였고, 마이클 커비는 조사위원회 위원장으로 지명되었다. 위원들은 무보수로 전문적인 역량에 기반하여 독립성을 가지고 활동하였으며, 바로 다음 달부터 조사를 개시하였다. 조사위원회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OHCHR)에서 제공한 아홉 명의 경험 많은 인권 담당자들로 이루어진 사무국의 지원을 받았다. 이 사무국 역시 임명 받은 이후에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와는 독립적으로 활동하였다.

1\_ A/HRC/RES/22/13.

---

4 본 보고서는 조사위원회가 결의 22/13호에 의거하여 2013년 9월 인권이사회에, 그리고 2013년 10월 유엔 총회에 제출한 구술 보고에 근거하여 작성하였다.

5 조사위원회는 위원회가 작성하는 보고서들을 유엔의 모든 관련 기구와 유엔 사무총장에게 제출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는 이사회 결정을 명확히 인식하고 인권이사회 회원국들로부터 위임 받은 임무를 수행하였다.



Chapter

II

조사위원회의 임무와  
조사 방법

## II. 조사위원회 임무와 조사 방법

### A. 임무의 발생근거

6 결의 22/13호의 채택은 인권이사회가 투표 없이 조사위원회를 설치한 첫 사례가 되었다. 이는 2012년에 유엔 총회와 인권이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심각한 우려의 표명과 함께 투표 없이 채택한 결의들에 뒤이은 조치이다.<sup>2</sup>

7 결의 22/13호의 채택에 이르기까지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을 비롯한 유엔의 인권 관련 기관, 몇몇 회원국들, 그리고 탈북한 사람들이 설립한 인권단체를 포함한 다수의 시민사회 단체들이 조사 메커니즘의 설치를 요청해왔다. 특히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제22차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보고서는 북한의 조직적이며 광범위하고 중대한 인권 침해상황들을 조사하고 보다 종합적으로 문서화할 수 있는 충분한 자원을 갖춘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국제 조사기구의 필요성을 명시하였다.

8 나비 필레이(Navi Pillay)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2013년 1월 북한에서 수십 년 동안 일어나고 있는 심각한 범죄에 대한 본격적인 국제조사를 요청하였고, 아울러 북한의 핵무기 보유에 대한 우려로 인해 북한 내 개탄스러운 인권 상황이 가려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였다.

9 조사위원회의 설치에 현존하는 인권 메커니즘에 대한 북한의 제한적인 협력 태도에서 비롯된 결과이기도 하다. 북한은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2\_ 인권이사회 결의 19/13호와 유엔 총회 결의 67/151호.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ICCPR, 이하 자유권규약),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ICESCR, 이하 사회권규약),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CRC, 이하 아동권리협약), 그리고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CEDAW, 이하 여성차별철폐협약)의 당사국이다. 2004년에 북한은 아동권리위원회 대표단이 방북할 수 있도록 초청하는 등 긍정적인 발전을 보이기도 했으나, 2009년 이래로 위의 조약들에 관한 국가보고서를 제출한 바가 없다.

10 북한은 2009년에 처음으로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UPR)를 받았고, 2014년 두 번째 검토를 앞두고 있다. 인권 의무에 대한 몇몇 일반적인 약속을 언급한 것 외에, 북한은 보편적 정례인권검토 실무그룹이 2009년에 권고했던 167개 사항의 어느 항목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sup>3</sup>

11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2004년 그 임무가 개시된 이래 대상국에 대한 접근이 허용되지 않고 있다. 북한은 이 임무 수행을 적대적 행동으로 간주하여 거절하고 있으며 협력을 거부하고 있다. 1995년 여성에 대한 폭력의 원인 및 결과에 관한 특별보고관이 그 임무를 수행한 이후로 지금까지,<sup>4</sup> 인권이사회가 부여한 특별보고관 한 명도 북한에 방문하도록 초청을 받거나 허용된 바가 없다.

12 유엔 총회와 인권이사회 결의에 근거하여, 사무총장과 인권최고대표도 북한 내 인권 침해 및 관련 범죄에 대한 자세한 정기보고서를 발행하고 있다. 북한

3\_ A/HRC/13/13.

4\_ E/CN.4/1996/53/Add.1.

은 총회와 인권이사회 결의 자체를 거부함에 따라 이 보고서들에 대한 실질적인 기여는 하지 않고 있다. 2003년 이래로 북한 당국은 인권최고대표사무소에서 제공하는 기술지원도 모두 거부하고 있다.

## B. 임무의 해석

13 조사위원회의 임무는 기본적으로 결의 22/13호 제5항에 명시되어 있으며, 이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2013년 보고서 제31항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다.<sup>5</sup> 위원회는 두 개의 항을 함께 고려, 북한의 조직적이며 광범위하고 중대한 인권 침해 를 조사할 임무를 부여받은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특히 아래 9가지 구체적 인권 침해 사안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였다.

- 식량권 침해
- 정치범수용소 관련 모든 인권 침해 사항
- 고문 및 비인간적 대우
- 자의적 체포 및 구금
- 각종 차별, 특히 기본적 인권과 자유에 대한 조직적인 박탈 및 침해 속에 이루어진 차별
- 표현의 자유 침해
- 생명권 침해
- 개인적 이동의 자유 침해
- 외국인 납치를 포함한 강제실종

5\_ A/HRC/22/57.

14 위 아홉 가지 사안은 상호 연계, 중첩되어 있으며 조사위원회의 중점 조사 내용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이 아홉 가지 사안은 완전한 것이 아니며, 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조사위원회는 위 아홉 가지 사안 이외에도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기타 인권 침해 사례도 조사하였다.

15 조사위원회의 임무는 또한 조사 과정에서 세 가지 상호 연계된 목표를 추구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1) 북한의 인권 침해 사례의 추가조사 및 기록화, (2) 인권 침해 피해자와 가해자의 증언 수집 및 기록화, (3) 책임 소재 파악 등이다.

- (a) 북한의 인권 침해 사례의 추가조사 및 기록화: 결의 22/13호는 위원회에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에 대하여 조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위 사항을 반복하여 언급한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보고서 제31항은 그와 같은 침해 사례의 보다 자세한 기록화를 지시하고 있다. 책임 소재의 파악을 목표로 한 보다 자세한 조사 요청으로 인하여, 어떻게, 누구에 의해서 특정 침해 상황이 계획되고, 명령되고, 조직되었는지 밝히는 데에 더욱 중점을 두도록 하였다.
- (b) 인권 침해 피해자와 가해자의 증언 기록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보고서 제31항의 설명에 근거한 임무로 조사위원회는 “피해자의 증언과 생존자, 증언자, 가해자의 증언 수집 및 기록화”를 하게 되어 있다. 조사위원회는 이 임무 수행 차원에서 우선 피해자 및 다른 증언자들의 공청회를 개최하고 그 증언들을 웹 페이지에서 조회 가능하도록 했다. 그리고 보안상의 이유로 공개 발언을 할 수 없는 피해자와 증언자들이 제공한 증언의 경우 보안 및 기밀 자료로 안전하게 보호하였다.
- (c) 기관 및 개인에 대한 책임 소재 파악: 이번 조사는 그 임무에 의거하여 “책임 소재의 완전한 파악, 특히 반인도범죄에 해당할 수 있는 침해 사안의 책임 소재 파악에 주목”하여 진행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보고서의 제31항에서 “조사는 [조직적이며 광범위하고 중대한 인권 침해], 특히 반인도범죄를 구성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기관 및 개인의 책임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고 첨언하고 있다.

16 기 보고된 침해 사안의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성격과 중대성을 감안하여, 조사위원회는 국제공동체의 책임도 고려하였다.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보고서 제31항

과 결의 22/13호의 제5항에서 요구한 바와 같이 국제공동체에 대한 권고 사항을 제시하였다.

17 인권이사회 결의 23/25호의 제17항<sup>6</sup>에 의거하고 임무의 수행에 성차(gender) 관련 사항을 포함시킨 바람직한 전례에 기반하여, 조사위원회는 조사 기간 동안 성차 관련 사안과 침해에 따른 영향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였고, 특히 여성과 어린이에 대한 폭력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였다. 인권이사회 결의 23/25호에 의거함에 따라, 조사위원회는 성인 여성과 여자 어린이들에 대한 폭력에 특히 중점을 두었고, 본 보고서의 다른 침해 사안들에서도 성차 관련 측면을 포함시켰다. 여성에 대한 폭력 중에서도 특히 성폭력은 피해자들이 지속적으로 겪게 되는 모욕감과 수치심 때문에 기록화하기가 매우 곤란하였다. 조사위원회는 이 부분의 조사가 실제 침해 규모의 극히 일부분만을 담아냈으리라는 입장임을 밝혀둔다.

18 다른 조사위원회들의 임무와 비교하였을 때,<sup>7</sup> 결의 22/13호의 제5항에서는 위원회 조사의 시간적 범위를 제한하지 않고 있다. 조사위원회는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인권 상황에 영향을 미친 침해 사례들을 기록화하는 일에 집중하였다. 시간, 자원, 가용할 수 있는 정보의 제약 속에서 조사위원회는 오래 전부터 있었던 인권 침해라 하더라도 현재 더욱 지속적이고,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경우 그 반복적 형태를 조사하였다. 북한이 수립되기 이전에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들도 현재 북한의 인권 침해 상황과 그 정치적, 문화적, 경제적 원인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일 경우에는 설명하였다.

6\_ Resolution on accelerating efforts to eliminate all forms of violence against women: preventing and responding to rape and other forms of sexual violence (A/HRC/RES/23/25).

7\_ 예를 들어, 인권이사회 결의 S-17/1호는 시리아인권조사위원회에 2011년 3월 이래 국제인권법상의 모든 침해 혐의를 조사할 임무를 부여하였다.

19 지리적 범위의 경우, 조사위원회는 그 임무를 북한 국내 및 국외에서 북한 당국이 주민들에게 자행한 침해 혐의 사례와, 아울러 북한 주민이 아닌 외국인의 납치와 같이 북한에서 기획한, 관할권 밖의 행위를 수반하는 침해 사례도 포함한 것으로 해석하였다.

20 조사위원회는 북한 밖에서 저질러진 침해 사례들이 북한 내의 후속적인 인권 침해를 가능하게 하고 촉진하는 원인이거나, 또는 북한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권 침해의 직접적 결과물 역시 조사 임무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조사위원회는 이에 대해 다른 국가가 어느 정도까지 관련 책임을 지는지에 관해서도 조사하였다.<sup>8</sup>

### C. 북한의 비협조

21 결의 22/13호는 북한 당국에게 조사위원회의 인권 침해 사례 조사에 대한 충분한 협조, 조사위원들에 대한 제한 없는 방북허용, 조사위원들의 임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정보 제공을 촉구했다. 결의 채택 직후 북한은 결의를 “정치적 적대행위이자 음모”로 간주하여 “완전히 거부하며 배격한다”는 공식 입장을 표명하였다.<sup>9</sup> 북

8\_ 리비아조사위원회는 나토군이 폭격 작전의 수행 중에 인권 침해를 자행했는지에 대해 조사하였다(A/HRC/19/68, paras. 83 ff 참조). 다르푸르조사위원회는 차드와 리비아가 반군에 무기를 제공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시리아조사위원회는 헤즈볼라 전사들이 인권 침해에 연루된 상황을 문서화하였다(A/HRC/23/58, paras. 40 and 6 참조). 이스라엘 정착촌에 대한 조사위원회(A/HRC/22/63, paras. 96 ff)는 외국 사업자들의 책임성을 언급하였고, 코트디부아르조사위원회는 라이베리아 용병들의 인권 침해 사항을 구체적으로 수록하였다(A/HRC/A/HRC/17/48, paras. 64, 82 & 102).

9\_ 북한 국영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이 입장은 외무성 대변인을 통해 발표한 것이다. “UN Human Rights Council’s “Resolution on Human Rights” against DPRK Rejected by DPRK FM Spokesman” 참조, 2013년 3월 22일. <http://www.kcna.co.jp/item/2013/201303/news22/20130322-39ee.html> 참조; “S. Korean Regime Denounced for Trying to Fabricate “Human Rights Resolution” against DPRK,” KCNA, 2013년 3월 26일. <http://www.kcna.co.jp/item/2013/201303/news26/20130326-12ee.html> 참조.

한은 2013년 5월 10일자로 인권이사회 의장에게 발송한 서한에서 “완전히 그리고 단호히 조사위원회를 거부한다”고 밝혔다. 유감스럽게도 조사위원회가 수 차례 접촉을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북한의 입장은 현재까지 변하지 않고 있다.

22 조사위원회는 2013년 6월 18일자로 주제네바 북한대표부에 발송된 서한을 통해 회의를 제안하였다. 이러한 시도는 2013년 7월 5일자로 발송된 또 다른 서한으로 이어졌고, 조사위원회는 북한에 방북을 허용해 협조와 지원을 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주제네바 북한대표부는 위의 두 서한을 수령하였음을 조사위원회 사무국에 통지하였으나, 조사위원회의 임무 수행에 대한 분명한 거부 의사를 반복하였다.

23 조사위원회는 2013년 7월 16일자로 북한 최고지도자이며 노동당 제1비서인 김정은 앞으로 발송한 서한을 통해 북한 영토 내에 접근하기 위한 요청을 반복하였다. 이 서한에는 회신이 없었다.

24 또한 조사위원회는 서울, 런던, 워싱턴에서 열리는 조사위원회 주최의 공청회에서 증거들을 검토하고 제출할 대표자 또는 대표단을 파견하도록 북한 당국에 초청을 보냈다. 이 초청에는 회신이 없었다. 조사위원회는 북한이 공청회에 대표자가 참석하도록 준비를 했었는지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

25 2013년 9월 17일에 있었던 인권이사회 상화대화에서 조사위원장은 조사위원회가 북한에 우호적 입장으로 접근하였으며, 당국이 적절하다고 여길 만한 어떤 조건하에서라도 방문 및 대화를 통한 접촉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유지하였다고 재차 강조하였다. 북한 대표가 참석한, 2013년 10월 29일 뉴욕에서 있었던 유엔 총회 제3위원회 상화대화에서 위원장은 다시 한번 어떤 사전 조건 없이 대화와 상호 교류를 할 기회를 제안하였다. 이러한 모든 제안에도 북한은 반응하지 않았다.

26 조사위원회는 2014년 1월 7일에 이르러 북한 당국에 서면 확인을 보내, 독립적이고 공평하며 투명한 방식에 의거한 임무 수행을 통해 북한 내 모든 사람의 인권 상황을 진전시키고자 한다는 결의를 전달하였다. 조사위원회는 이러한 활동에 대한 북한 당국의 시각을 온전히 알 수 있도록 할 지속적 책임이 있음을 반복적으로 밝혔다. 조사위원회는 해당국에 접근하고 북한 당국의 입장을 청취하는 것이 국내 인권 상황에 대한 이해를 한층 증진시키리라는 점도 강조하였다. 아울러 조사위원회는 주제네바 북한대표부에 보고서의 준비 과정을 토의할 것도 제안하였다. 북한은 위의 모든 제안을 무시하였다.

27 조사위원회는 출판에 앞서 보고서의 조사결과 전부를 북한 당국에 제공하고 의견 및 사실 관계에 대한 수정을 요청하였다. 북한의 가장 심각한 인권 우려 사항, 특히 반인도범죄에 대한 조사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북한의 최고지도자인 김정인에게 보내는 서한에 포함시켰다.<sup>10</sup> 본 보고서를 작성하는 시점까지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

## D. 조사 방법

28 2013년 7월 첫째 주에 있었던 첫 회의에서 조사위원회는 활동 프로그램과 조사 방법을 확정하였다. 조사위원회는 피해자와 증언자에 대한 보호를 확실히 하면서도 최대한의 투명성을 유지하며 북한에 대한 적법 절차의 보장하에서 조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다.

10\_ 조사위원회 보고서 부록 1(A/HRC/25/63) 참조.

29 조사위원회는 독립성, 공정성, 객관성, 투명성, 진실성의 원칙, 그리고 피해자와 증언자의 비밀보장과 보호에 관련한 사항을 포함하는 무위해성의 원칙에 입각하여 활동을 진행하고 그 과정에서 나온 증언을 평가하였다. 이 원칙은 증언자 보호, 지원, 절차규정, 보고서 작성, 국제 조사 기준, 기록 보관 등에 적용되었다.<sup>11</sup>

## 1. 공청회

30 북한 내 지역이나 증언자들에 대한 접근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조사위원회는 투명성과 적법한 절차, 피해자 및 증언자들에 대한 신변이 보장된 공청회를 통해 직접적인 증언을 청취하기로 결정하였다. 탈북한 피해자와 증언자들, 그리고 전문가들은 언론, 참관인들, 그리고 일반 청중에 공개된 투명한 절차에 의해 증언하였다. 80명이 넘는 증언자들과 전문가들이 공개적으로 증언하였고, 큰 용기를 필요로 하는 매우 상세하고 구체적이며 중요도가 높은 정보를 제공하였다.

31 공청회는 서울(2013.8.20~24), 도쿄(2013.8.29~30), 런던(2013.10.23), 워싱턴(2013.10.30~31)에서 진행하였다. 대한민국(이하 한국), 일본, 영국, 미국 당국들이 공청회의 진행을 위해 신분증명 지원, 장소대여, 전문통역사 서비스의 제공 지원, 영상 촬영과 진행 과정의 기록에 이르기까지 운영상 실무적인 지원을 제공하였다. 위 국가들은 공청회의 안전을 보장하였고, 국내외 기자단과 적절한 시민사회 단체 및 개인들과의 접촉도 지원하였다.

32 공청회는 조사위원회 임무의 모든 분야를 다루었다. 증언자들에게는 진실

11\_ 특히 조사위원회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국제조사위원회, 국제인권법 및 국제인도법 진상조사단 (2013)에서도 개발한 바 있는 최선의 방식을 따랐다.



만을 증언할 것을 선서하도록 요구하였다. 조사위원들은 증언자들이 반드시 북한의 인권 상황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만 증언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이 없는 정치적이거나 비판적 발언은 피하도록 하였다. 또한 증언자들이 타국에서 겪었거나 목격한 학대의 경우, 그러한 행위와 북한 내의 인권 상황이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발언하였다.

33 조사위원회는 북한 당국이 서울, 런던, 워싱턴에서 열린 공청회에 참석하여 허기를 얻어 질문하고, 향의도 할 수 있도록 초청을 했으나 회답을 받지 못하였다. 오히려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공개적으로 조사위원회를 모략이라 규탄하며 증언자들의 증언은 위조된 것이라 주장하였다.<sup>12</sup> 조사위원회는 반복해서 북한을 초청하여 그러한 주장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도록 하였으나 회답을 받지 못하였다. 위원회는 이러한 주장들을 증언자들에게 제시하여 그들이 직접 대답할 수 있도록 하였다. 모든 공청회에서 촬영한 영상과 기록은 조사위원회 웹사이트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sup>13</sup> 조사위원회는 일반 대중이 영상과 기록을 통해 증언의 신뢰성과 일관성에 대한 각자의 의견을 형성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 2. 비공개 면접

34 탈북한 상당수 피해자와 증언자들은 실질적인 정보를 공유할 준비가 되어 있으면서도 아직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들에 대한 보복을 두려워하여 공개적으로 증

12\_ “KCNA Commentary Slams S. Korean Authorities for Chilling Atmosphere of Dialogue,” KCNA, 2013년 8월 27일 참조. <http://www.kcna.co.jp/item/2013/201308/news27/20130827-14ee.html> 참조.

13\_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Commission of Inquiry on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 Public Hearings.” <http://www.ohchr.org/EN/HRBodies/HRC/ColDPRK/Pages/PublicHearings.aspx> 참조.

언하기를 꺼려하였다. 과거 북한에서 공직에 근무했던 사람들은 조사위원회에 공개적으로 협력하는 것으로 보일 것에 대해 특히 더 소극적인 경우가 많았다. 북한 내 상황에 대한 몇몇 전문가들도 북한과 직접적으로 접촉할 수 있는 자신의 여지를 유지하고자 비밀리에 면담하는 것을 선호하였다.

35 조사위원회와 사무국은 개별 증언자들을 상대로 240회가 넘는 비공개 면접을 실시하였다. 이 면접은 서울, 도쿄, 방콕, 런던, 워싱턴을 방문하는 중에 진행하였고, 화상회의와 전화통화로도 이루어졌다.

36 이 면접의 발췌문들이 보고서에 포함되어 있다. 많은 경우, 증언자의 신원이 알려질 수 있는 침해 사례의 정확한 장소나 시간, 다른 구체적 내용에 대한 정보는 보안상의 우려로 인해 공개하지 않았다.

### 3. 기타 서면 자료의 제출 요청 및 검토

37 2013년 7월 조사위원회는 유엔의 모든 회원국 및 관계지들에게 서면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다. 모든 관련국, 개인 및 기구에 조사위원회의 임무 수행에 도움이 될 만한 실질적인 정보와 문서를 공유하도록 요청하였다. 2013년 11월 3일, 조사위원회에 정보와 자료를 공유하는 마감일을 기하여 80건이 제출되었다. 예외적으로 기한을 넘겨 도착한 소수의 제출분도 승인하였다. 추가로 상당히 많은 분량의 서신이 조사위원회와 위원회 위원들에게 송달되었다.

38 조사위원회는 유엔, NGO, 각국 정부, 연구소, 학계 등에서 준비한 상당량의 다른 보고서와 서면 자료도 입수하여 검토하였다. 본 보고서의 조사결과는 우선적으로 피해자와 증언자들의 직접적 증언에 의존하고 있으나, 서면 기록물이 대단히

유용한 맥락과 확증의 근거를 제공하였다. 공청회 자리에서 증언자들도 많은 보고서와 문서를 제출하였다. 이 자료들은 모두 증거물로 기록되었고 해당 공청회 기록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다.

#### 4. 다른 국가들과의 접촉

39 조사위원회는 2013년 8월 19일부터 27일까지 한국을 방문하였다. 서울에서 개최한 공청회 이외에 조사위원회는 한국의 국무총리, 각 부처의 정부 관리들, 국내외 NGO와 시민사회 단체들, 국가인권위원회, 통일연구원을 방문하였다.

40 조사위원회는 2013년 8월 27일부터 9월 1일까지 일본을 방문하였다. 도쿄에서 개최한 공청회 이외에 조사위원회는 일본의 총리대신, 각 부처의 정부 관리들, 국내외 NGO와 시민사회단체들을 방문하였다.

41 조사위원회는 2013년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태국을 방문하였다. 이 기간 중에 조사위원회는 외무부를 포함한 태국 정부의 관리들, 태국 국가인권위원회, 국제기구 대표들, 국내외 NGO 및 시민사회 단체를 방문하였다. 조사위원들은 북한에 의해 국제 납치된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의 가족과 비공개 면접을 수행하였다.

42 조사위원회는 2013년 10월 23일에서 25일까지 영국을 방문하였다. 런던에서 개최한 공청회 이외에 조사위원회는 영연방 외무성의 극동 및 동남아시아 담당 국무성 장관, 다양한 정부 관리들, NGO 및 시민사회 단체를 방문하였다.

43 조사위원회는 2013년 10월 28일부터 11월 1일까지 미국을 방문하였다. 워싱턴에서 개최한 공청회 이외에 조사위원회는 미국 국무부 관리들, 미 하원 외교

위원회 위원장과 위원들, 다양한 정부 관리들, 전문가들, 그리고 NGO 및 시민사회 단체를 방문하였다.

**44** 언급한 국가들에 대한 조사위원회의 방문 시에는 사전에 조사위원회 사무국 직원들을 파견하여 공청회 준비, 관련 기관과의 회의 등을 진행하였고, 조사위원회 활동 중에는 해당국 내 여러 장소에서 비공개 면접을 실시하였다. 사무국 직원들은 2013년 10월 말 서울을 3주 간 방문하여 비공개 면접을 추가로 실시하고 2013년 8월에 있었던 공청회의 다른 사후 조치를 시행하였다.

**45** 조사위원회는 2013년 7월 처음 활동을 개시한 이래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에서 필요한 조사를 진행하고 위원회 임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정부 관계자와 협의하고자 접촉을 시도하였다. 특히 조사위원회는 북·중 접경지역에 접근하여 탈북한 주민들의 상황에 대한 직접적인 정보를 얻고자 접근 허가를 요청하였다. 추가적으로 중국의 북한 관련 전문가를 만나 이번 조사 내용을 알리고자 하였다. 주제네바 중국대표부의 외교관들과 수 차례의 비공식 회의를 거쳐, 조사위원회는 2013년 11월 7일 중국대표부에 중국 방문 초청을 공식 요청하는 서한을 송부하였다. 이 서한에서 조사위원회는 베이징을 방문하여 관련 관료들과 전문가들을 만나고, 옌벤 조선족 자치주를 방문하여 구치소 및 기타 구금 시설에 수감되어 있는 북한 주민들과 중국 내 북한 주민들을 돌보는 일에 관련되어 있는 교회 및 여러 기구의 대표자들을 면접하는 활동에 대한 동의를 요청하였다. 서한에서는 특히 북한 여성의 중국으로의 인신매매 혐의 및 북한인 어머니와 중국인 아버지 사이의 어린이의 위상 문제를 중국 내 조사위원회 활동의 가장 우려할 만한 사안으로 강조하였다. 2013년 11월 20일 중국대표부는 국별 특별절차에 대한 중국의 입장, 특히 한반도 관련 입장을 감안할 때 조사위원회를 초청할 수 없을 것이라고 사무국에 통보했다. 조사위원회는 후속 서신에서 주제네바 중국대표부에 중국에 거주하는 북한의 주민 및 아동들의 실태, 북한으로의 강제송환 및 이와 관련된 북한과의 협력, 인신매매, 기타 조사위원회의

임무와 관련된 사항들에 대한 정보를 요청하였다. 2013년 12월 20일 조사위원회는 이 서한에 대한 회신을 받았다. 2013년 1월 26일에 추가 서한을 수신하였다. 해당 서한들은 조사위원회 보고서에 첨부하였다.<sup>14</sup>

46 본 보고서에서 다른 국가들의 책임, 즉 자국 국민들에 대한 책임과 다른 국가들에 직접 관련된 사안들에 대한 책임을 다루는 장들은 해당국 정부와 공유하여 사실관계에 대한 수정을 허용하였다. 규정된 마감 시한에 맞추어 회신으로 도착한 내용의 경우, 특히 사실관계가 부정확하게 표현되었던 경우에는 조사위원회에서 신중히 검토하여 적절한 범위 내에서 반영하였다.

## 5. 유엔 산하기구 및 기타 단체들과의 협력

47 결의 22/13호는 유엔 전문기구를 포함한 유엔과 지역별 정부 간 기구,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 독립된 전문가 및 NGO를 포괄하여 유엔이 조사위원회의 임무 수행을 위해 정기적인 대화와 협력을 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48 조사위원회는 여러 유엔 산하기구와 유엔 체제 밖의 인권활동가들을 접촉하여 관련 정보를 입수하였다. 일부 유엔 산하기구의 경우 북한 내에서 해당 기구가 진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하여 조사위원회에 공개적으로 협력하는 것을 꺼려하기도 하였다. 몇몇 기구는 관련 정보를 제공하였고, 그렇지 않은 기구도 있었다. 본 보고서는 해당 정보가 공개보고서에 반영되어 있는 특정 기구들의 경우에만 그 정보를 사용하고 있다. 공개보고서의 인용은 반드시 그 기구가 조사위원회와 협력했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14\_ A/HRC/25/63, 부록 2 참조.

49 조사위원회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에 감사를 전한다. 헌신적인 사무국의 노력 이외에도 조사위원회는 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여러 조사위원회나 진상조사단, 기타 인권조사단을 지원하는 상임조직으로부터 자문과 지원을 받았다. 이러한 지원과 협조는 조사위원회, 조사위원, 사무국의 독립성과 진실성을 적절히 존중하는 선에서 이루어졌다. 또한 조사위원회는 인권이사회 특별절차의 여러 특별보고관 및 인권조약기구와 상호작용하면서 관련 정보를 입수하였다.

50 조사위원회는 북한 내 인권 침해 상황을 철저히 기록한 여러 NGO로부터 대단히 유용한 지원을 받았다. 이들 기구는 열악한 재정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위원회가 탈북한 피해자 및 증언자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아낌없는 노력을 기울여 주었다.

## 6. 증언자 보호 및 기타 조사 과정의 어려움

51 조사위원회는 피해자 및 증언자의 보호에 각별히 주의하였다. 조사위원회가 시행한 1차 보호 평가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북한인권 상황에 대해 공개적으로 발언하는 사람들을 상시적으로 즉결 처형, 강제실종 및 기타 폭력행위의 대상으로 삼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그들의 가족 구성원들에게도 심각한 보복조치를 확대 시행하고 있다. 조사위원회는 중국이 탈북한 사람들을 강제송환하는 정책을 북한이 탈주민들이 북한 당국에 의해 납치되어 강제로 북한에 되돌려보내진 기존 사례들과 마찬가지로 간주하였다.

52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조사위원회는 피해자 및 증언자들과의 모든 소통 과정에서 분별력과 신중함, 세심함을 발휘하고자 노력하였다. 자칫 조사위원회와의 접촉으로 인해 위협에 처할 수도 있는 사람들의 경우 반드시 접촉을 성립시켜야 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검토하였다. 조사위원회가 협력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고 판단했거나, 위험성이 지나치게 높게 측정되었거나, 조사위원회가 그 위험성의 정도에 대한 결정을 내릴 만큼 충분한 정보를 확보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접촉을 시도하지 않았다. 특히 조사위원회는 북한 내에 아직 거주 중인 증언자들과 이동전화를 통하여 직접 접촉하는 방식은 따르지 않았다.

53 공청회와 관련하여, 보호 문제는 모든 관련 상황을 고려하면서 각각의 경우에 따라 신중하게 검토하였다. 원칙적으로 조사위원회는 북한에 친인척이 없거나 중국에 머물면서 위험한 상황은 아니라고 검증한 피해자와 증언자들의 진술에 한하여 공개적으로 청취하였다. 증언자가 증언하기 전 사전 동의는 해당 증언의 공개에 대한 필요 요건이었지만 충분 요건은 아니었다. 경우에 따라 용감한 증언자들이 공개적으로 증언하겠다는 제안을 했더라도 조사위원회가 가족에 대한 실질적인 보복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거절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해자와 증언자들의 이름과 경험을 이미 언론에서 광범위하게 다루었다 하더라도, 추가적인 공개 증언이 추가적인 보복을 초래한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지 않는 한 증언을 허용했다. 공개적인 신분 노출에 동의하지 않았거나 보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 조사위원회는 증언자들의 증언과 문답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드러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해 신중을 기하였다.

54 모든 증언자의 신분은 공청회에 앞서 조사위원회가 설정하였다. 대부분의 증언자들은 공청회 도중에 자신들의 신분을 드러낼 각오도 되어 있었다. 그러나 보호 목적에서 몇몇 증언자들은 자신을 가명(X씨, Timothy씨 등)으로만 지칭하도록 허용되었고 얼굴을 가리거나 다른 확인 수단을 적용하였다. 소수의 증언자들은 모자 또는 색안경, 기타 의류를 사용해 얼굴을 부분적으로 가리거나 신분 노출을 막을 수 있는 조치를 취하였다.

55 이렇듯 광범위한 보호조치라 해도 보복을 막기는 어려울 수 있다. 조사위원회는 조사위원회에 협력한 사람이나 그 가족이 보복에 직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정보가 있다면 인권최고대표를 통해 유엔 사무총장의 즉각적인 관심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요구하는 바이다. 조사위원회는 피해자, 증언자, 기타 조사위원회에 협력한 사람들에 대한 일차적 보호책임은 그들의 거주국과 국적국에 있음을 상기하며, 회원국들이 필요한 만큼의 추가적인 보호조치를 제공할 것을 촉구한다.

56 상기한 보호 문제와 함께 북한 내의 증언자들이나 지역에 물리적으로 접근할 수 없었던 점이 효과적인 조사에 적지 않은 난제를 형성하였다.

57 잠재적인 직접 증언자들의 규모는 탈북한 3만 명 이하의 주민들로 제한되어 있고, 그들 중 대다수가 현재 한국에 거주하고 있다. 이들 증언자들의 대부분은 북·중 접경 지역 출신으로, 이들 지방의 상황이 북한 내 다른 지방의 상황에 비해 상대적으로 기록화가 잘 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대부분의 경우 탈북한 주민은 상당한 시간이 걸려서야 안전한 장소에 이르고 그 또는 그녀의 경험을 말할 수 있을 정도의 용기를 낼 수 있게 된다. 조사위원회가 직접적인 증언에 기반한 증거라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NGO나 언론의 보고서에서 주장한 인권 침해의 최근 사례 중 상당수는 사실관계 확인이 불가능하였다.

58 조사위원회가 직면한 가장 중대한 난제는 보복에 대한 두려움에서 비롯되었다. 대다수 잠재적 증언자들은 가족의 안전을 염려하고 자신들의 행동이 아직도 북한 당국에 의해 비밀리에 감시당하고 있다고 생각하여 비공개 조건이라 하더라도 발언하기를 두려워하였다. 이를 감안할 때 조사위원회는 용기를 내어 침묵의 벽을 깨고 공개적으로 또는 비공개로 위원회에 증언을 해준 개인들에게 각별한 감사를 표하는 바이다.



59 북한에서 일하는 국제 구호원, 기자, 외교관, 기타 외국 방문객들의 경우에도 자신들의 일과 계획에 가해질 보복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조사위원회에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기 꺼렸다. 일반적으로 외국인들은 북한 내에서 이동의 자유가 허용되지 않고 북한 주민들과의 접촉에 세밀한 관리와 감시를 받고 있었기에 인권상황에 대한 직접 지식은 제한적이었다.

60 조사위원회는 기술의 발전과 광범위한 적용으로 북한에서 새어 나오고 있는 정보의 양이 상당하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조사위원회는 상업용 위성사진에 의거하여 본 보고서에 수록한 네 곳의 정치범수용소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었다. 기술적으로 보다 발전한 국가들이 촬영한 고해상도의 위성사진이었다면 보다 많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었음이 거의 확실하다. 조사위원회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그런 사진들은 접근이 불가능하였다.

61 또한 조사위원회는 관련 지역을 보여주는 비밀리에 촬영한 영상과 사진, 북한 내 인권 침해 주장을 설명한 문서와 서신들을 입수하였다. 조사위원회는 그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해당 자료들을 사용하였다.

62 조사위원회는 조사위원회에 협력하는 대부분의 피해자와 증언자들이 국가 자체나 주민들에 대해서는 거의 그렇지 않다 해도 북한 당국에 대해서는 대체로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 북한은 조사위원회에 협력하기를 거부함으로써 인권 상황에 대한 자신의 시각을 제공하고 주민들의 인권과 관련하여 취한 어떤 개선 조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였다. 조사위원회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위해 공개적으로 접근 가능한 문서들에서 북한이 제공한 정보를 신중하게 검토하였다. 특히 조사위원회는 북한이 보편적 정례 인권검토와 인권조약기구에 제출한 국가보고서를 비롯하여 인권이사회 특별절차가 송부한 진정서에 대한 공개적으로 접근 가능한 북한측 회신 요약본들을 검토하였다.

이들 문서에 수록되어 있는 수치와 기타 관련 주장들은 조사위원회가 그 근거나 타당성을 확인할 수 없었더라도 본 보고서에 반영되었다.

## E. 보고된 침해 사례 평가를 위한 법체계 및 입증의 정도

63 북한인권 상황 평가에 있어서 조사위원회는 앞서 언급한, 북한이 자발적으로 당사국이 된 인권조약들이 규정한 법적 의무에 주로 의거하였다. 국제관습법에 따른 다른 의무 사항들 역시 북한에도 적용된다.

64 임무의 범위 내에서 6·25전쟁(1950~1953년) 시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사안들과 관련하여, 조사위원회는 북한과 다른 분쟁 당사자들의 관계에 있어서 국제 인도법에 의거하여 지속적으로 적용되는 잔여의무도 고려하였다.

65 반인도범죄 적용 가능성은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에서 이후에 명시한 내용과 대부분 중복되는 국제형사관습법에서 확립된 정의에 근거하여 평가한다.

66 적절한 경우 조사위원회는 국제난민법과 국제인권법에 따른 ‘송환’ 금지를 비롯하여 자국 국민과 영주권자에 대한 외교적 보호 확대를 위한 국가의 권리와 의무를 포함, 다른 국가들의 관련 의무도 고려하였다.

67 유엔의 다른 산하 사실조사기구들의 활동과 보조를 맞추어, 조사위원회는 개별 사례, 사건, 국가의 행위 양태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에 있어 증거의 “합리적 근거(reasonable grounds)” 기준을 적용하였다. 이러한 사실관계 확인은 사건 및 국가 행위 양태를 법률적으로 인권 침해, 그리고 적절한 경우에는 반인도범죄로 규

정할 근거를 제공하였다.

68 조사위원회가 합리적이고 통상 기준의 사리분별이 가능한 사람이라면 어떤 사건이나 일련의 행위가 일어났다고 믿을 만큼 다른 자료와 일치하고 신빙성 있는 정보를 확보했다는 확신이 섰을 때, 그러한 사건이나 행위가 일어났다는 “합리적 근거”가 성립한다. 이 증거 기준은 기소 유지를 위해 형사소송절차가 요구하는 기준보다는 낮으나, 사건이나 행위 양태에 대한 향후의 조사를 요청하고 적용이 가능한 부분에서 기소 가능성의 고려를 제기하기에는 충분히 높은 수준이다. 본 보고서에 수록된 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들은 혹 보고서 내용 전반을 통해 반드시 완전한 문구 (“합리적 근거 성립”)로 표기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이 “합리적 근거” 증거 기준에 근거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69 조사위원회의 방법론과 맥을 같이 하여, 공청회 과정에서 수합한 정보의 경우 일반 청중과 전문가들이 증언의 진실성과 신뢰성, 제공 정보의 유효성에 대한 조사위원회의 평가를 직접 면밀히 검토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을 특별히 강조하게 되었다.

70 본 보고서에 반영한 개별 사례와 사건들은 일반적으로 한 개 이상의 믿을 만한 직접 정보원에 기초하는데, 이 역시 한 개 이상의 다른 신뢰할 만한 정보에 의해 독립적으로 입증된 것이다. 정보원은 보안 여건이 허락하는 한에서 명시되어 있다. 보고서 내용 중 행위 양태를 설명한 부분은 지금까지 수집한 신뢰할 만한 전체 정보에 의해 입증되고 일관성이 있는 여러 개의 신뢰할 수 있는 직접 정보원에 근거하고 있다. 이와 같은 철저한 증거 기준을 충족시킬 수는 없었지만, 조사위원회가 여전히 사건이나 양식으로 반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소수의 사례는 그 기준을 이루는 정보원들을 표시하였다.

**71 조사위원회는 다음을 직접 정보원으로 간주하였다:**

- (a) 정보원을 신뢰할 수 있고 믿을 만하며 정보가 유효하다고 평가했을 경우, 공청회와 비공개 면접에서 피해자, 목격자, 피해자의 가까운 가족, 가해자 또는 해당 문제에 대한 직접적 지식을 보유한 전직 북한 관료가 제공한 증언, 조사위원회 앞으로 제출된 사건 및 동향;
- (b) 믿을 만한 정보원의 위성 사진, 진위 여부가 확인된 영상과 사진 자료, 자서전, 기타 믿을 만한 정보원의 직접 정보를 수록한 문서. 이 범주 역시 공청회에서 수령한 상당수 증거물들을 포함;
- (c) 공개적으로 접근 가능한, 관련 사실에 대한 북한의 인정 내용들;
- (d) 북한의 법, 정책, 명령을 비롯하여 신뢰할 수 있고 믿을 만한 정보원으로부터 수령했으며 그 진실성을 입증할 수 있는 북한 내부 문서;
- (e) 북한 또는 유엔에서 작성한 통계, 설문조사, 기타 양적 정보로서 데이터가 명백하게 타당한 방법론에 기반하고 있고 데이터의 근간이 되는 양적 정보가 유효하며, 신뢰할 만하고 믿을 만한 정보원으로부터 나온 경우.

**72 조사위원회는 직접적 정보원에 근거한 정보를 검증하고 침해 상황의 전반적인 맥락을 제공하려는 목적에서 다음의 종류에 해당하는 정보에 의거하였다:**

- (a) 공청회 또는 비공개 면접에서 아는 사람으로부터 직접 정보(소문이 아닌)를 받은 증언자의 증언으로서 조사위원회가 해당 정보원이 신뢰할 만하며 믿을 만하고 정보가 유효하다고 평가한 경우;
- (b) 출판물이나 유엔, 연구기관, 인권기구들의 제출물에 수록되어 있는 증언자의 증언 요약본으로 조사위원회가 해당 소식통이 신뢰할 만하고 믿을 만하여 정보가 유효하다고 평가한 경우;
- (c) 전문가 증언, 공개 보고서, 제출물, 도서, 다큐멘터리 및 유사 자료에 수록된 국가 행위 양태의 요약 설명으로서 조사위원회가 해당 정보원이 신뢰할 만하고 믿을 만하여 정보가 유효하다고 평가한 경우.

73 각 정보원의 신빙성과 신뢰성은 조사위원회가 신중하게 평가하였다. 조사위원회는 해당 정보원이 신뢰할 만한지, 특정인이 스스로 사실이라고 믿는 바를 발언하는 것인지를 숙고하였다. 이 평가에는 여러 고려 사항과 함께 다음을 참작하였다:

- (a) 증언자의 정치적, 개인적 이익, 잠재적 편견과 신뢰성에 대한 과거 기록(알려져 있는 경우);
- (b) 증언자의 나이, 정신적 외상, 사건 발생의 오래된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증언자가 정확하게 사건을 회고할 수 있는 외관상 역량;
- (c) 해당 정보의 주제와 관련한 증언자의 입장;
- (d) 증언자가 해당 정보를 입수한 장소와 방법;
- (e) 증언자가 해당 정보를 제공하는 이유.

74 조사위원회는 어떤 작은 정보라도 다른 사항과 함께 해당 정보의 조사 활동과의 관련성, 정보의 내적 일관성과 응집성, 논리성 및 다른 정보와의 일관성과 그에 근거한 확증을 참작하여 그 유효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추가적으로 고려하였다.

75 정보원의 신빙성과 신뢰성에 대한 평가는 정보의 유효성에 대한 평가와 분리되었다. 조사위원회는 한 증언자가 신뢰할 만하고 믿을 만한 소식통이라고 판단하였다고 해서 그가 반드시 정확하고 유효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가정하지는 않았다.

76 정보가 “합리적 근거”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평가받은 경우에는 조사위원회가 결론에 도달하고 추론을 도출하기가 한결 수월하였는데, 이는 조사위원회가 반복적으로 북한 당국에 공청회에 참여하여 관련 증언자에 대한 질문 허가를 얻고 조사위원회에 해당 정보에 대해 설명할 기회를 제안해왔기 때문이다. 이에 더하여 조사위원회는 북한에 조사결과를 공유하고 의견 및 사실 관련 수정을 요청한 바 있다. 북한 당국은 스스로의 결정으로 이러한 과정의 활용을 포기하였다.

77 조사위원회가 본 보고서에서 한 증언자의 한 증언을 참조했을 경우(어느 정도 명확하게 신분이 밝혀진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증언은 조사위원회가 평가하고 기술한 그대로 신뢰할 만하며 관련성이 있다고 승인한 것이다.

78 본 보고서 내용 중 특정 증언을 직접 참조하였다고 해서 그 증언이 분석 중에 있는 문제와 관련한 조사위원회의 판단에 유일한 근거라는 의미는 아니다. 보고서에 나오는 직접 참조와 인용의 경우에는 조사위원회가 보다 폭넓은 인권 문제와 국가 행위 양태의 사례 또는 실례를 제공하려는 의도에서 소개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 F. 피해자 증언 기록 보관

79 조사위원회가 그 임무에 관련된 정보를 안전하게 기록하고 보관할 수 있도록 인권최고대표사무소 관련 부서의 지원과 기존 모델을 기초로 기밀화된 전자 데이터베이스를 특별히 구축하였다. 이 데이터베이스의 사용으로 조사위원회는 특히 다음의 수행이 가능하게 되었다.

- (a) 정보의 안전한 관리, 보강 및 보관
- (b) 암호화 등을 통한 정보의 보안 유지
- (c) 정보의 검색 및 분석
- (d) 유효한 인권 감시 및 보고 방법론의 고수

80 이 데이터베이스는 증언자들과 진행한 모든 면접의 요약 기록을 비롯하여 조사 과정에서 수집한 관련 자료들의 전자 복사본까지 소장하고 있다. 전체 검색이 가능한 체제로, 이 데이터베이스는 본 보고서 작성에 도움이 된 여러 경향성과 양식

을 확립시키면서 분석을 위한 논리적인 구성과 정보의 검색을 지원해 주었다.

81 수집된 정보의 공유와 사용에 대한 면접 대상자들의 자율적이고, 고지에 입각한 구체적인 동의는 데이터베이스에 기록되어 있다. 비록 면접 대상자가 그 사용에 자율적으로 동의하였다 하더라도 조사위원회가 취득 정보의 사용과 공유에 따를 수 있는 보호와 관련한 위험성에 대해 실시한 모든 추가적인 평가도 수록되어 있다.

82 조사위원회는 인권최고대표에 기밀화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보호를 요청하였으며, 본 데이터베이스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및 확장되는 활용도 높은 도구로 유지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전달하였다. 이에 따라 데이터베이스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북한인권특별보고관, 그리고 향후 북한인권 보호 업무와 관련하는 모든 유엔 메커니즘의 제한 없는 이용이 가능해야 할 것이다.

83 조사위원회는 위원회의 사무국 역할을 수행하는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에 데이터베이스상의 자료들에 대한 접근권한을 허가할 권한을 부여했다. 자료에 대한 접근권한은 범죄와 기타 침해 행위에 대한 책임구명을 보장하거나 인권 침해에 대한 진실을 밝히거나, 또는 특정 개인이나 기관에 대한 유엔의 제재를 이행하는 등의 목적을 위해 신뢰할 수 있는 조사를 수행할 임무가 있는 당국에게 부여된다. 자료에 대한 접근은 증언자나 정보제공자가 동의하고 자료의 보호 및 운영상의 우려 사항이 적절히 고려된 경우에 한하여 이루어진다. 조사위원회의 임무 수행이 완료된 이후에도 조사위원회가 입수한 정보를 온전히 보존하기 위해, 조사위원회의 물리적 기록물들도 유엔의 문서 보관 방식에 의해 문서로 보존 처리될 것이다.<sup>15</sup>

15\_ 사무총장고시, Record-keepingandthemanagementofUnitedNationsarchives,2007년 2월 12일(ST/SGB/2007/5).

84 한민족의 역사상 현 단계에서 북한의 인권 모독과 관련한 개별 증언자들의 증언 및 전문가 저작물을 관리하는 기록 보존소의 구축과 유지는 인권 의식 고취와 장기적인 책임 소재 규명에 중요한 기여를 하게 되었다. 모든 사람들을 위한 보편적인 인권의 성취와 유지라는 목표에 가장 큰 모욕은 비밀리에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심각한 침해가 발생하고, 기록이나 분석도 되지 않음으로써, 다음 세대가 이러한 국제법상의 보편적 가치로부터의 현격한 이탈 상황을 배우지도 못하고 이를 모면하기 위한 해결을 도모할 수도 없게 만들 수 있다는 위험성이다.



Chapter

III

북한 내 인권 침해의  
역사적·정치적 배경

### Ⅲ. 북한 내 인권 침해의 역사적·정치적 배경

85 현재의 북한 내 인권 상황은 한민족의 역사적 경험에 그 근원이 있다. 유교적 사회구조와 일제강점기에 겪었던 압제가 오늘날 북한에 자리잡은 정치적 구조 및 태도의 배경이 되었다. 타의에 의한 한반도의 분단, 6·25전쟁기에 경험한 대규모 파괴, 냉전의 영향 등이 고립주의적 성향과 외세에 대한 뿌리깊은 혐오감을 불러 일으켰다. 북한의 인권 침해에서 나타나는 특이한 성격이나 전체적인 규모는 북한 당국 체제의 발전을 진지하게 평가해 보아야만 좀 더 명확히 이해할 수 있다. 북한은 일가의 왕조가 지배하면서 당, 국가, 군대를 모두 통제하는 일당제 국가이다. 사회주의의 마르크스-레닌주의 사상에 부분적으로 기반한 경직된 사상적 교리, 그리고 대규모 안보 기관이 체제를 지탱하고 있다.

86 역사나 정치 구조에 대한 묘사는 어떤 종류든지 그 출처와 기록한 사람의 관점을 반영하지 않을 수 없다. 조사위원회는 다양한 단계를 통해 북한과의 접촉을 시도하여 역사적 사건과 관련한 의견을 포함하여 북한의 시각을 직접 듣고자 하였다. 그런 접촉이 전혀 성사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조사위원회는 보다 균형 잡힌 접근을 모색하며 가능한 한 가장 신뢰할 만한 소식통을 이용하여 북한 내 인권 침해의 역사적·정치적 맥락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였다.

#### A. 식민지 이전의 역사

87 북한은 종종 “은자의 나라(Hermit Kingdom)”라 일컬어졌는데, 원래부터 북쪽 지역이 고립성을 특징으로 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오늘날 북한이 상당 부분 스스로 초래한 바 있는 상대적 고립이 예전 전근대 조선 시기 경험의 연장이라

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 한반도에는 신석기 시대부터 사람이 거주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후 농업에 기반한 정주 공동체가 생겨났고, 이어서 말과 무기, 군대의 이용에 힘입어 다양한 토착 나라들 간에, 또는 오늘날의 중국, 일본, 몽골 지역에 해당하는 외세에 대항하여 수백 년에 걸쳐 장대한 전투의 전설적 이야기가 지속되었다.

88 전근대 역사 전반에 걸쳐 한국 사회에는 후세에 ‘양반’으로 알려져 있는 지주와 학자 출신 관료의 요소가 결합된 소수의 귀족 엘리트가 농민 및 다른 하층 계급 - 상인 및 노동자를 포함 - 을 지배하는 계급 체제가 자리잡았다. 노예제와 노비제도 시행되었다. 이러한 계급 체제는 봉건적이라고도 하고, 좀 더 정확하게는 농업에 기반을 둔 관료 사회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론적으로 이 체제는 경쟁이 치열한 과거 시험을 통과하고 고위 관료 직위를 부여 받은 사람에게 엘리트 신분을 부여하는, 일견 중국의 관료체제와도 유사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양반’은 실질적으로는 호적제도를 통한 상속제로 바뀌어, 엘리트 신분을 대대로 세습하며 지방 관청에 참여할 권리까지도 영속적으로 누리게 되었다.

89 ‘양반’ 계급 체제는 한국 사회의 뿌리깊은 유교적 전통을 반영한 것이다. 유교의 핵심은 엄격한 위계의 준수를 사회적 조화와 개인적 성취만큼이나 중시하는 도덕 및 철학 체계에 있다. 이러한 위계를 구성하는 다섯 가지 주요 관계는 군주와 신하,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 형과 아우, 그리고 친구 간의 관계이다. 그 중 가장 중요한 관계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이다. 실제로 연장자에 대한 공경과 연륜에 따른 사회적 위계는 남북한 모두에서 한국 문화의 핵심적인 특징으로 남아 있다. 마찬가지로 여성의 지위도 불평등을 전제한 전통적 사고방식에 따라 부정적인 영향을 받아 왔다.<sup>16</sup>

16\_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2011년 7월의 최종 견해에서 한국에 대해 “가부장적 태도와, 가족과 사회에서 여성과 남성의 역할 및 책임에 관한 고정관념의 지속”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CEDAW/C/KOR/CO/7). 이와 비슷하게

## B. 일제강점기 (1910~1945년)

90 일제강점기 이전에 조선은 중국, 일본, 몽골, 만주, 이후에는 러시아, 프랑스 그리고 미국 등 다양한 나라들의 침략을 받거나 국제 관계를 형성하며 수백 년간 외부 세계와 접촉하였다. 그 당시 조선 내정에 대한 외세의 영향이 일본에 국한된 것은 아니었으나, 1876년 조선은 일본과 불평등 조약을 체결하였다. 중국, 러시아 그리고 미국의 이해관계에 동조하는 파벌들과 조선의 자생적인 개혁파들은 고종의 왕실을 두고 경쟁하였고, 조선은 아시아에서 자신의 세력을 확장하려는 열강의 각축장이 되었다. 청일전쟁(1894~1895년)의 결과, 일본은 조선의 형식적인 독립을 선언하면서 청나라에 대한 조공관계를 종결시키고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였다. 러일전쟁(1904~1905년)으로 일본은 여순항(Port Arthur, 중국 다롄)에서 러시아 함대를 축출하였다. 이는 루즈벨트 미 대통령의 중재로 뉴햄프셔 주 포츠머스에서 조선을 일본의 보호국으로 인정하는 강화조약의 체결로 이어졌다. 1910년, 일본제국이 조선을 공식적으로 식민지화하면서 조선왕조는 국권을 상실하였고 조선인들은 일본황제에 충성을 해야 했다.

91 일본은 사회, 행정, 경제 조직을 망라하여 다양한 근대화 개혁 조치들을 강행하였다. 하지만 조선인들은 압도적으로 식민지 경험을 부정적이고 잔혹하게 인식해왔다. 조선인은 자신의 조국에서 인종 차별적인 법의 지배하에 놓였다. 한글 사용이 금지되었고 창씨개명을 강요 당하였다. 일본은 모든 행정요직에 일본인을 앉히고 약 70만 명의 일본인을 정부 공직에 파견하였다.<sup>17</sup> 교통, 통신산업 및 농업도 조선

---

동 위원회는 2005년 7월 북한에 대해 “교육과 고용, 기타 모든 삶의 영역에서 여성과 여아들에 대한 직·간접적 차별을 영속화시키는 보이지 않는 패턴을 포함, 여성과 남성의 역할 및 책임에 대한 정형화된 태도를 설명해줄”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CEDAW/C/PRK/CO/1).

17\_ Andrea Matles Savada, ed., *North Korea: A Country Study, Library of Congress*, 1993, <http://countrystudies.us/north-korea/12.htm> 참조.

사람들보다 식민지 권력의 이익을 위해 확대되었다. 한반도에서 추진된 일본의 근대화 조치들은 개발과 미개발 양상을 동시에 가져왔다. 결과적으로 일본이 조선의 발전에 도움을 주었는지는 정치적으로나 학계에서도 다분히 논란의 여지가 남아있다.<sup>18</sup>

92 1919년 3·1 독립운동은 학생들과 시민들을 자극하여 서울과 평양을 포함한 여러 도시에서 일제에 대항한 시위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비폭력적인 시위는 수일간 여러 도시와 마을로 확산되었다. 이에 일본 당국은 수천 명의 조선인들을 체포하였고, 많은 이들이 고문과 비인간적 조건하의 구금으로 사망하였다.<sup>19</sup>

93 일본은 대대적인 전쟁 수행의 일환으로 한반도의 공업화에 착수하였다. 주로 한반도 북부에 제철소와 공장 및 수력발전소를 세웠다. 상당수의 조선 인구는 삶의 터전이었던 농경지로부터 쫓겨났다. 그리고 한반도 북부 및 만주 일대의 공장, 탄광 그리고 일본의 공업 시설로 여성과 아동을 포함한 조선인의 노동력을 투입하였다. 상당수의 노동자들은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하였으며 수많은 남성과 여성들이 강제노동에 동원되었다.<sup>20</sup> 1945년경에는 일본 전체 노동력의 상당 부분을 조선인이

18\_ 예를 들어, Daqing Yang, "Japanese Colonial Infrastructure in Northeast Asia," *Korea at the Center: Dynamics of Regionalism in Northeast Asia* 참조, Charles K. Armstrong and others, eds. (New York, M.E. Sharpe, 2006).

19\_ 브리태니카 백과사전 참조, <http://www.britannica.com/EBchecked/topic/364173/March-First-Movement> 참조; Global Nonviolent Action Database, <http://nvdatabase.swarthmore.edu/content/koreans-protest-japanese-control-march-1st-movement-1919> 참조; and Nishi Masayuki, "March 1 and May 4, 1919 in Korea, China and Japan: Toward an International History of East Asian Independence Movements," *Asia-Pacific Journal: Japan Focus*, 2007년 10월 31일, <http://japanfocus.org/~nishi-masayuki/2560#sthash.F2t9tgKt.dpuf> 참조.

20\_ 2012년 5월 한국 대법원은 이전 하급심 판결을 뒤엎고 한일 양국간의 관계 정상화를 이룬 1965년 한일협정이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노동자와 그의 가족들에게 보류된 임금과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무효화하지 않았다고 판결하였다. 이어서 2013년 7월 서울고등법원은 신일본제철과 스미토모금속에 대해 강제징용되었던 네 명의 한국인에게 4억 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부산고등법원은 2013년 7월 30일, 미쓰비시 중공업에 대해 다섯 명의 한국인에게 같은 금액을 배상하라고 판결하였다. 2013년 10월, 광주지방법원은 미쓰비시 중공업에게 강제징용되었던 네 명의 한국 여성들에게 각 1억 5천만 원(약 US\$141,510) 을 배상하

제공한 것으로 추정된다.<sup>21</sup>

94 1945년이 되자 조선 인구의 20%가 출신지로부터 벗어나 있었으며, 11%는 한반도 밖으로 이주하였다.<sup>22</sup> 제2차 세계대전 말 일본에는 약 240만 명, 중국에 200만여 명, 그리고 소련에 20만여 명의 조선인들이 살고 있었다.<sup>23</sup> 일본의 식민지 정부는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망하여 몰락하였다. 흩어져 있던 수백만 명의 조선인들이 고향으로 돌아오려고 하였고, 일부는 일본, 중국과 소련에 남게 되었다. 이러한 강제이주의 역사는 특히 일본과 중국 북부에 조선족 소수 민족을 남기게 되었다.<sup>24</sup>

## C. 한반도의 분단, 6·25전쟁과 그 유산

95 제2차 세계대전의 종전이 다가오자 전세계에 걸친 식민지 처리 문제가 승전국이 될 열강들의 협상 주제가 되었다. 미국은 한반도에 대해 점진적으로 독립 절차를 밟을 것을 기본적인 입장으로 전제하며 다자간 신탁통치를 제안하였다. 1943년, 일본의 패망을 내다보며 연합국은 한국이 “적당한 시기(in due course)”에 독립할 것을 카이로 공동선언에서 언급하였다. 1945년 미국은 북위 38도선을 기준으로 한

---

라고 판결하였다. 일본은 모든 개별 손해배상청구권이 1965년 조약으로 합의가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South Korean court orders MHI to pay Korean women for forced labour,” *Kyodo News*, 2013년 11월 1일. 이러한 판결에 대한 항소는 이 보고서가 마무리 될 시점 계류 중이었다.

21\_ 브루스 커밍스에 따르면 조선사람들은 일본 노동력의 32%를 차지했다. Bruce Cummings, *The Origins of the Korean War: Liberation and the Emergence of Separate Regimes, 1945~1947*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1), p.28.

22\_ Bruce Cummings, *The Origins of the Korean War*, p.25.

23\_ Charles Armstrong, *The Koreas* (New York, Routledge, 2007), pp.95~101.

24\_ 전쟁 후, 중국에 있던 한인의 절반이 중국에 남기로 선택하였고, 일본에는 약 60만 명이 남았다. Charles Armstrong, *The Koreas*, pp.108~111.

반도를 반으로 나누어 각각 미국과 소련의 영향 아래에 둘 것을 결정하였다. 이러한 결정에 대한 실천으로 미국은 2만 5천여 명의 병력을 남한에 파병하였다. 이들에 대한 분개와 저항이 종종 발생하였다. 1945년 8월 소련은 북한에 제25군을 파견하여 소련민정관리총국을 수립하였다.

96 한반도에서 일본인들의 철수는 급하게 진행되었다. 그리고 한반도 전역에 걸쳐 자치단체들 또는 인민위원회가 그 공백을 채우기 시작하였다. 미국은 이러한 단체들을 적극적으로 억압한 반면, 소련은 이들을 통치의 핵심 기관으로 활용하였다. 소련군이 평양에 진주하였을 때, 한국 민족주의 세력의 지도자로서 북한에서 가장 인기가 있던 정치인이었던 조만식은 평안남도 건국준비위원회를 설치하였다. 북한에 파병된 소련군 중에는 “소비에트 한인”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1860년대 극동러시아 지역으로 이주하였던 소수 한민족의 일부였거나, 보다 근래에 게릴라 세력들에 대한 일본의 강경진압으로 만주로부터 도피해 왔던 한인들이었다. 이 소비에트 한인들 중에는 33세 소련군 대위 출신의 게릴라 영웅 김일성이 있었다.

97 조만식을 현지 지도자로 삼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소련은 대체 후보로 김일성을 내정하였다. 1945년 10월 14일, 김일성은 소련군을 칭송하는 대중 집회에서 첫 연설을 하였다. 소련의 레베데프 장군은 김일성을 “국가적 영웅” 그리고 “뛰어난 게릴라 지도자”로 소개하였다. 하지만 그 행사에서 김일성은 세 명의 연설자 중 한 명일 뿐이었다. 소련이 수립한 첫 행정기관이었던 5도행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여전히 조만식이었기 때문에 김일성이 최고위급 인사도 아니었다. 그러나 1945년 12월 모스크바에 모인 소련과 미국 그리고 영국의 외무장관들은 한반도에 대한 5년 간의 공동신탁통치에 합의하였다. 서울의 민족주의자들은 이와 같은 결정에 반대하며 시위를 벌였다. 조만식 또한 1946년 1월 신탁통치에 대한 지지 선언에 대한 서명을 거부하였다. 그는 결국 연금되었고 1950년 10월 사망하였다.

98 1946년이 되자, 소련민정관리총국은 각 지방행정기관으로 권한을 분산하였다. 김일성은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위원장으로 추대되었다. 소련의 영향력에 대한 북한 내 저항은 남한 내 미국에 대한 저항보다는 적었다. 1946년 3월 임시인민위원회는 김일성의 명의로 토지개혁에 대한 법령을 발표하였다. 일본 회사 및 개인 또는 부농 소유의 토지를 몰수하여 소작농이었던 농민들에게 재분배하였다.<sup>25</sup> 북한의 토지개혁은 대체로 성공적이었으며 새로운 정권의 입지를 강화하는데 유리하게 작용하였다. 1946년 8월 임시인민위원회는 산업을 국유화하였다. 엄밀히 따지면 일본인과 친일파 소유주인 경우만 몰수 대상이었지만 실질적으로 모든 대규모 산업과 대부분의 중견기업들이 압수되었다. 민족문화와 교육을 장려하려는 노력도 대중의 지지를 받았다. 1947년 북한은 그 첫 번째 경제 계획을 내놓았다.

99 해방 이후 초기에는 주도권을 둘러싼 종파간의 치열한 파벌 경쟁이 10년 이상 지속되었다. 김일성은 자신과 함께 만주 일대에서 항일무장투쟁을 벌였던 빨치산파(Guerilla Faction)의 젊은 게릴라들을 요직에 앉히고 그의 권력 장악에 위협이 되는 인물들을 제거하면서 자신의 권력 기반을 다지기 시작하였다. 1946년 소련 정보기관 출신 방학세가 북한의 첫 정치경찰 및 첩보 기관이었던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보안국 부장을 맡게 되었다. 방학세는 북한의 정치경찰 설립자로 알려져 있다. 김일성의 빨치산파가 아닌 소련파 출신이기는 하지만 방학세는 김일성에게 평생 충성하였다.

100 대부분의 자료에 따르면 김일성은 업적이 뛰어난 게릴라 투사였지만, 그는 곧 자신의 경력을 더욱 강화하고 개인 우상화 작업을 구상하며 신속하게 자신의 입

25\_ 북한의 공식적인 김일성 전기는 “농업개혁을 통해 일본제국주의자, 친일파, 민족의 반역자와 지주의 소유였던 총1,000,325헥타르의 토지를 몰수하여 토지가 조금밖에 없거나 소유하지 않던 724,522의 소작농가에 재분배 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Kim Il Sung: Condensed Biography* (평양, 외국문출판사, 2001), p. 131.



지를 강화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북한의 지배 구조와 정보, 의견 및 표현의 자유에 관한 북한 특유의 접근 방식을 형성하게 되었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의장이었던 황장엽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소련의 88특별 교도 여단에 소속된 조선인 가운데서 김일성이 선택된 것은, 그가 젊은 데다 전망이 있다고 여겨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의 경력은 중국인 [조선인] 지도자들과는 상대가 안되었다. 소련군 대위를 북조선의 전설적 영웅으로 세우기 위해서는 과장된 선전이 필요하였는데, 당시 조선은 일제의 압제를 뼈아프게 겪은 상태였다. 이는 과대 선전에 더 없이 좋은 기회였다.<sup>26</sup>

**101** 모든 정치 세력은 1946년에 북조선노동당으로 통합되었다. 북한의 군사력 또한 정비·강화되었다. 애초에 치안대와 철도 보안대로 위장하였던 북한 군인들은 소련군의 훈련을 받고 소련 장비를 갖추게 되었다. 1948년 9월 북한이 수립될 무렵, 김일성은 내각의 수상으로서 자리를 확고히 하고 있었다. 소련군은 그 후 대규모로 철수하기 시작하였다. 1949년에 북한은 징병제를 실시하여 10개의 보병사단, 1개 탱크사단, 1개 공군사단으로 구성된 15만에서 20만에 이르는 병력을 갖추게 되었다. 이 대규모 군대는 T-34탱크와 야크(Yak) 전투기 등 각종 소련군 무기 및 장비로 무장되었다. 더 나아가 중국에서의 내전을 경험하며 전쟁으로 다져진 4만 5천 명의 조선인 의용군들이 귀환함으로써 북측 병력이 보강되었다.

**102** 1945년과 1948년 사이, 38선 일대는 중무장 지대가 되었고 분단된 한반도 양측은 통일을 이루기 위해 무력사용을 고려하였다. 1948년 소련군과 미군이 각각 철수한 후 긴장과 군사적 도발은 증가하였다. 1950년 6월 25일, 스탈린과 마오

26\_ 황장엽은 한국으로 망명한 최고위급 북한이탈주민이었다. 황장엽 회고록(Hwang Jang-yop's memoirs) (Zeitgeist가 한글로 출판, 2006, 데일리 NK 번역), SUB0064.

짜등 양쪽 모두의 지지를 확보한<sup>27</sup> 김일성은 38선 이남으로 9만 명의 조선인민군을 출격시켰고 남한 당국과 미군정 고문들을 당황케 한 다면적인 공격을 펼치며 6·25 전쟁을 일으켰다.<sup>28</sup> 김일성은 남한 지도부의 비(非)정통성을 내세우고 남한 내부의 반란을 기대하며 한반도 전체에 대한 지배를 주장하였다. 초기에 조선인민군은 10만 명이 채 안되었던 남한의 병력을 쉽게 압도하였다. 수도 서울은 3일만에 함락되었다.

103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은 남한에 대한 북한의 침략을 냉전의 첫 시험대로 해석하였다. 그는 재빨리 미 병력의 배치를 명령하였고 이러한 조치에 대한 유엔안보장이사회의 승인을 모색하였다. 안보리는 북한이 즉각적으로 적대 행위를 중단하고 북위 38도선 이북으로 병력을 철수할 것을 촉구하는 미국 주도의 결의안을 찬성 9표, 반대 0표, 기권 3표의 결과로 채택하였다.<sup>29</sup> 소련은 참석하지 않은 관계로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의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1950년 1월부터 소련은 중국의 유엔 가입문제로 안보리 참석을 거부하고 있었다. 유엔에서 중국의 대표권은 국민당의 패배에도 불구하고 대만에 기반을 둔 중화민국이 행사하고 있었다.<sup>30</sup>

27\_ 스탈린은 초기의 반대 의견을 철회하면서 김일성의 전쟁을 지지하였고 자신의 역할을 최소화하면서 전쟁 지지에 대한 책임을 모택동의 새로운 중국 정부에 전가하였다. 소련은 북한에 중무기를 제공했지만 병력을 지원하지는 않았다. 그렇지만 전쟁의 초기 단계에 관여하였던 김일성의 최고 군사고문들은 소련의 장군들이었으며 이들은 북한의 침략 계획을 자신들의 구체적인 목표에 따라 재편성하였다. 모택동은 미국이 전쟁에 참여하면 중국군대를 파견하겠다고 장담하였다. David Halberstam, *The Coldest Winter: America and the Korean War* (New York, Hyperion, 2007), pp.47~59. 소련의 자료도 이러한 설명을 뒷받침한다, Andrei Lankov, *From Stalin to Kim Il Sung: The Formation of North Korea, 1945~60* (London, Hurst and Company, 2002), p.61.

28\_ 북한은 6·25전쟁이 남한의 공격으로 시작된 것이라고 항상 주장해왔다. 하지만 상기 사건의 진행 과정은 소련의 자료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Top Secret Report on the Military Situation in South Korea from Shtykov to Comrade Zakharov” 참조, 1950년 6월 26일, History and Public Policy Program Digital Archive, BBC가 다큐멘터리 TimeWatch “Korea, Russia’s Secret War”을 위해 1994년 입수한 소비에트 군사문서집(1996년 1월), <http://digitalarchive.wilsoncentre.org/document/110686> 참조.

29\_ 안보리 결의 82호 (1950년)는 영국, 중화민국(대만), 쿠바, 에라도르, 프랑스, 노르웨이와 미국의 찬성표를 받았고 이집트왕국, 인도, 유고슬라비아사회주의연방공화국이 기권하였다.

30\_ 소련은 유엔헌장 제27조제3항 “그 외 모든 사항에 관한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정은 상임이사국의 동의 투표를 포함한 9개 이사국의 찬성투표로써 한다”에 따라 안보리가 기능을 수행하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안보리

1950년 6월 27일 트루먼 대통령은 미국의 해군과 공군이 한국을 지원할 것을 명령하였다. 같은 날 채택된 안보리 결의문 제83호는 “한국에 대한 북한군의 무력공격은 평화를 파괴하게 된다”고 결정하였다. 또한 유엔 회원국들에게 “무력공격의 격퇴와 그 지역에서의 국제평화 및 안전의 회복을 위해 한국에 대해 필요한 원조를 제공할 것”을 권고하였다. 1950년 7월 7일, 안보리는 군대와 기타 지원을 제공하는 모든 회원국들이 미국 지휘하의 합동사령부를 따르도록 하였고, “합동사령부가 북한군에 대항하는 작전을 수행하는 중에 참전국가들의 국기와 함께 유엔기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sup>31</sup> 미국과 더불어 15개 참전국은 유엔군 사령부 지휘 아래 “국제 지상군(international field force)”으로 싸울 수 있는 전투 부대를 지원하였다. 1950년 8월 안보리로 복귀한 소련은 6·25전쟁과 관련된 차후 결의안에 대해 모두 거부권을 행사하였다. 그 후 한국에 대한 사안은 유엔 총회로 회부되었다.<sup>32</sup>

104 연이은 수개월 간 북한의 공세는 성공적이었다. 1950년 8월 말이 되자 북한군은 한반도의 90%를 통제하고 있었다. 하지만 1950년 9월 맥아더 장군이 지휘한 인천상륙작전이 전세를 뒤집었다. 유엔의 지원을 얻은 한국군은 북쪽으로 진격하여 서울을 수복하였다. 맥아더 장군은 중국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유엔군을 중국과의

의 다른 회원국들은 어느 한 회원국이 불참한다 하더라도 안보리가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막지 못한다고 결정했다.

31\_ 안보리 결의 84호. 참전국은 다음과 같다: 호주, 벨기에, 캐나다, 콜롬비아, 에티오피아, 프랑스, 그리스,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뉴질랜드, 필리핀, 남아프리카공화국, 태국, 터키와 영국. 의료지원을 제공한 다섯 국가는 덴마크, 인도, 이태리, 노르웨이와 스웨덴이다.

32\_ 1950년 11월 3일 유엔 총회는 “안보리가 상임이사국이 만장일치를 이루지 못하여 평화에 대한 위협, 평화의 파괴, 또는 침략 행위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그 어떠한 경우에 국제평화와 안보의 유지라는 우선적인 책임을 행사하지 못하면 총회가 국제평화와 안보를 유지 또는 회복하기 위해, 평화의 파괴 또는 침략 행위의 경우를 포함하여 회원국들에게 집단적 조치를 위한 적절한 권고를 하기 위해 즉각적으로 심의할 것”을 명시한 “평화를 위한 단결” 결의(377A호)를 채택하였다. 본 결의문은 국제평화와 안보와 관련된 모든 사안에 대한 권한을 안보리에 부여하는 유엔헌장에도 불구하고 유엔 총회가 무력의 사용을 포함하여 집단적인 행동조치를 권고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1950년 2월 1일 유엔 총회는 결의 498호를 채택하며 중국이 북한에서 “유엔군에 대한 적대행위에 관여하고 있다”며 “모든 국가와 당국은 한국에서의 유엔 활동에 모든 지원 제공을 지속할 것”을 촉구하였다.

국경지대까지 밀고 올라갔다. 1950년 11월이 되자 유엔군사령부의 지원을 받은 한국군이 한반도의 90%를 장악하게 되었다. 그러자 중국이 조선인민군을 지원하기 위해 수십만 명의 병력을 투입하였다. 중공군과 조선인민군은 유엔과 남한 세력을 38선 이남으로 다시 밀어 붙이는데 성공하였다. 북한은 전쟁과 관련된 차후 기록에서 중국 “지원군”의 결정적인 역할을 축소하였다.<sup>33</sup> 그렇지만 중공군은 남은 전쟁 기간 동안 주요 군사적 부담을 짊어졌다.<sup>34</sup> 북한은 전쟁 기간 동안뿐만 아니라 전후 복구 및 전후 경제의 유지를 위해 받은 외부 지원의 규모를 일관되게 평가 절하하고 있다. 유엔군의 반격은 조선인민군의 승세를 꺾고 북한에 대규모 피해를 입혔다. 그 후 격렬한 교착상태가 2년 간 지속되었다. 이 기간 동안 북한에 투하된 폭탄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태평양 전장 전체가 받은 폭격보다 많았다.<sup>35</sup> 한반도 전역에 걸쳐 거대한 참상이 발생하였다.<sup>36</sup>

**105** 6·25전쟁은 1953년 정전으로 중단되었다. 1953년 7월 27일, 유엔사령부 소속 윌리엄 K. 해리스 주니어 미 육군중장이, 조선인민군과 중국 인민지원군을 대표하여 남일 대장이 정전협정에 서명하였다. 남북한 양측에서 200만 명 이상이 사망하였다. 약 60만 명의 중국인 지원군과 3만 6천명 이상의 미군이 사망하였다.<sup>37</sup>

33\_ 중국 또한 한반도의 분쟁을 내적 무력분쟁으로 치부하며 중국군의 6·25전쟁 참전은 “지원군”에 의한 행동으로 특징지었다.

34\_ Andrei Lankov, *From Stalin to Kim Il Sung*, pp.61~62.

35\_ 황장엽은 그의 회고록에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1953년 11월, 나는 모스크바의 삶을 뒤로하고 평양으로 돌아왔다. 평양은 내가 떠나기 전에 봤던 평양이 더 이상 아니었다. 제대로 된 집 한 채가 서있지 않았다. 오직 오두막이 도시를 채울 뿐이었다.” 황장엽 회고록(Hwang Jang-yop's memoirs) (Zeitgeist에서 2006년 한글로 출판, 데일리 NK 번역), 21.

36\_ 독일 민주 공화국(구 동독) 경제무역부(Ministry of External and Inter-German Trade) 가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철강, 비철금속, 시멘트와 비료 산업시설이 모두 파괴되어 국가경제 역량의 15~20% 밖에 운영되지 않았다. 본 보고서는 Liana Kang-Schmitz가 인용, “Nordkorea's Umgang mit Abhängigkeit und Sicherheitsrisiko,” PhD dissertation, The University of Trier, 2010, pp. 59~60. 또한 [http://ubt.opus.hbz-nrw.de/volltexte/2011/636/pdf/Nordkorea\\_DDR.pdf](http://ubt.opus.hbz-nrw.de/volltexte/2011/636/pdf/Nordkorea_DDR.pdf)참조.

37\_ 사상자수는 여전히 출처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난다. 위의 숫자는 2000년 미 국방부 자료와 브리태니커 백과사

그 밖에 참전국 전사자 중 1천여 명이 넘는 영국군이 있었고, 수백 명의 호주, 벨기에, 캐나다, 콜롬비아, 이디오피아, 프랑스, 그리스, 네덜란드, 필리핀, 태국과 터키 등의 전사자들이 발생하였다. 국제인도주의법의 중대한 위반은 남북한 양측 모두에 의해 자행된 바 있다.<sup>38</sup> 미국의 군사학자 S.L.A. 마샬은 6·25전쟁을 “금세기 최고의 사악한 소규모 전쟁”이라고 불렀다. 또한 미국에서는 잊혀진 전쟁으로 언급되기도 한다.<sup>39</sup> 그러나 김일성의 “민족 형성(forging of the nation)” 내러티브를 강조하기 위해 전쟁의 희생을 이용하는 북한에서는 잊혀진 전쟁일 리 만무하다. 북한이 주장하는 공식적인 역사에 따르면, 조국해방전쟁은 미국이 도발한 것이며 김일성이 나라를 지켰을 뿐만 아니라 미군을 크게 무찔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수십년간 이어져왔다. 예를 들어, 북한은 1990년대 대기근 당시 주민들에게 미국이 제공한 식량원조가 전쟁에 대한 보상 차원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sup>40</sup>

106 6·25전쟁이 남긴 유산은 아직 미해결 상태로 남아있다. 정전협정은 정전 3개월 이내에 정치적 회의를 소집할 것을 권고했다. 1954년 제네바회의에는 한국, 북한, 중국, 소련과 유엔사령부 산하 부대를 지원하였던 17개국 중 16개국이 참석하였다. 2개월 후, 회담은 결렬되었고 재개되지 않았다. 6·25전쟁을 해결하는 포괄적인 평화조약은 맺어지지 않았다. 남북한 양측은 모두 침략과 침투에 대한 공포를 안고 있다. 북한에서는 이러한 공포를 이용하여 강권 통치와 그에 따른 인권 침해를 정당화하며 일상적인 국가 비상 사태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치적 반대자로 간주될 경우 외세를 등에 업은 간첩으로 낙인찍힌다. 식량과 기타 생존에 필

전에 근거하였다.

38\_ Bruce Cummings, *The Korean War: A History* (New York, Modern Library, 2010), pp.172, 187 and 190.

39\_ S.L.A(Samuel Lyman Atwood) 마샬은 2차 세계대전과 6·25전쟁 기간 중 미군 전투사를 책임지고 있던 전쟁 역사가였다. David Halberstam, *The Coldest Winter*, pp.1~2.

40\_ 1990년대 식량위기에 대응하여 미국은 미국의 표식이 새겨진 7백만 개의 자루를 사용하여 식량지원을 제공하였다. 이 자루들이 재활용되어 시장에서 목격된 것으로 보아 북한 주민들은 이를 본 바가 있다. Andrew Natsios, 워싱턴 공청회, 2013년 10월 31일, 오전 (01:48:00).

요한 수단의 부족은 적대적인 외부 세계에 기인하는 것으로 책임을 돌리고 있다. 남한도 종결되지 않은 전쟁에 대한 불안감을 경험하며 필수 군복무제도와 여러 안보 조치를 통해 이에 대처하고 있다. 이러한 안보 조치에는 특히 표현의 자유와 같은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제약을 포함한다.<sup>41</sup>

107 1954년이 되자 미국은 유엔 사령부로부터 부대를 분리시켰고 한미상호방위조약을 통해 지속적으로 한국에 관여하였다. 유엔 사령부에 가담했던 다른 국가들의 군대들도 대부분 또는 전부 병력을 철수하였다. 미국은 한국에 28,500명 정도의 군사력을 유지하고 있다.

108 1960년대와 1970년대를 통틀어 비무장 지대에는 일상적으로 총격전이 벌어져 약 900명의 군인과 민간인이 희생되었다. 1967년 북한은 비밀 요원들을 활용하여 남한을 혼란에 빠트리려고 하였다. 1968년 31명의 북한 124군 특수부대 요원들이 청와대를 습격하여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암살을 시도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72년 김일성의 동생 김영주와 남한의 중앙정보부장 이후락 간의 비밀회담 끝에 남북한은 무력의 사용이나 외세의 조력 없이 평화적으로 통일을 이룩하지는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발전적 관계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남한의 민간인을 대상으로 수차례의 테러 행위를 자행하였다. 1983년 남한의 전두환 대통령에 대한 암살 시도로 네 명의 미얀마 국민을 포함한 21명이 사망한 양곤 폭탄테러, 5명이 사망한 1986년 김포공항 폭탄테러와 115명이 사망한 1987년 대한항공 폭파가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테러 행위로 북한은 국제적 고립을 자초하였다.

41\_ 한국의 국내법 체계도 북한과의 끝나지 않은 갈등의 영향을 받고 있다. 60년이 된 국가보안법과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기타 법에 대한 정부의 해석이나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에 대한 수감은 한국의 인권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의견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 증진과 보호에 대한 특별보고관의 보고서 참조(A/HRC/17/27/Add.2).

109 6·25전쟁이 초래한 상처는 깊고 여전히 잊혀지지 않고 있다. 조사위원회는 남북한 양측 모두에게 발생한 고통을 인지하는 바이다.

## D. 최고지도자(수령) 체제의 시행

110 유교 사상의 잔재가 전반적으로 한국 문화에 얽혀있기는 하지만, 북한에서는 김일성이 자신과 조선노동당의 권한을 확립하고 자신의 통제 아래 두기 위해 유교적 가치들을 도구화하였다. 김일성은 통치자와 피통치자 간의 관계가 상호 구속적이라는 전통적인 유교적 전제를 확대 적용하여 지도자에 대한 절대적 복종을 요구하는 ‘수령,’ 또는 최고지도자 체제<sup>42</sup>를 수립하였고, 김정일과 김정은이 이를 계승하고 있다. 유교적 개념인 “천명(天命, Mandate of Heaven)”에 따르면 나라를 통치할 권리는 하늘이 부여한다. 이 명령은 모든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 정의롭고 공평하게 통치할 의무를 통치자에게 위임하였다. ‘수령’ 체제는 김일성(과 그의 후계자들)을 지혜롭고 자비로운, 도전 받지 않는 통치자로 설정하였고, 그의 통치하에 인민들은 풍요롭고 정의로운 사회에 살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논리의 ‘수령’ 체제는 북한에서 아무 제한 없이 인권 침해가 일어나는 기제가 되었다.

111 1949년에 김일성은 ‘수령,’ 최고지도자로서의 지위를 확보하였다. 그는 정권에 대한 어떠한 반대도 제거하기 위해서 정교한 지도 이념, 한 개인이 이끄는 유일당, 중앙계획경제, 통신 수단의 독점, 그리고 폭력과 정치경찰을 동반한 안보 체계를 갖춘 통치 체제를 구축하였다. 우선적으로 북한은 국가안보기구 설립에 주력하였다. 소련의 안보 체계를 모델로 설립한 내무성에는 4천에서 5천여 명의 본부 직원과 더불어 1만 2천여 명의 일반경찰, 3천여 명의 정치경찰, 그리고 총 4만 5천여

42\_ 수령(최고지도자) 체제는 국가, 당, 군의 모든 권한을 유일한 지도자에게 부여한다.

명의 경비대, 국경경비대, 그리고 철도보안대로 구성되었다. 그리고 정치보위국은 당국에 대한 저항과 전복 활동을 적발하고 좌절시켜 정권에 대한 충성을 보장할 임무를 맡고 있었다. 정치보위국은 또한 군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였던 보위사령부 산하 정치방위국에 작전상 지휘를 제공하였다. 이러한 보안 체제는 당시 인구의 약 5%로 추정되는 40만 명의 사람들을 정보원으로 활용하였다.<sup>43</sup>

112 김일성 정권 초반부터 시작되었던 정치적, 이념적 반대자에 대한 탄압은 6·25전쟁 중에 더욱 심화되었다.<sup>44</sup> 68만 5천 명에서 몇 백만 명으로 추정되는 많은 수의 주민이 전쟁 중에 남한으로 이주하였다.<sup>45</sup> 1945년 이전, 정치적으로도 활발했고 상당수의 인구를 구성했던 개신교도들 중 많은 이들이 북한을 떠났다. 북쪽에 남은 개신교 인구는 종종 의심의 대상이 되었다. 많은 수가 체포, 구금 또는 처형 당하였다. 1951년 김일성은 내무성을 재정비하여 정치적 반대에 대한 탄압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치보위국을 사회안전성이라는 독자적인 부서로 승격시켰다.

113 6·25전쟁 이후, 김일성은 그의 권력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경쟁 파벌

43\_ Ken E. Gause, "Coercion, Control, Surveillance and Punishment: An Examination of the North Korean Police State," HRNK, 2012, pp. 88~91. (Exhibit W07). 또한 [http://www.hrnk.org/uploads/pdfs/HRNK\\_Ken-Gause\\_Web.pdf](http://www.hrnk.org/uploads/pdfs/HRNK_Ken-Gause_Web.pdf) 참조

44\_ 북한에서 출판된 공식적인 김일성 전기에 따르면: "당의 조직 노선의 관철을 방해하는 종파 분자들과 지방할거 주의자들의 책동을 짓 부시고 당 사업의 근본적인 전환을 가져 오기 위하여 1945년 12월, 김일성은 북조선공산당 조직국 3차 확대집행위원회를 주최하였다 ... 회의는 김일성을 책임 비서로 임명함으로써 당의 중앙 지도 기관을 강화하는 역사적인 조치를 취하였고, 당 중앙의 지시와 당의 규율을 거역한 종파분자들에 대한 엄격한 처단을 실시하였다." *Kim Il Sung: Condensed Biography*, pp. 122~123.

45\_ 한국 통계청이 실시한 1955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전체 인구의 735,501명이 (6·25전쟁 이전과 전쟁 중에) 북쪽에서 남한으로 이주했다고 한다. KINU,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3), p. 509. 정전 협상 중에 북한은 전쟁 중에 50만 명이 북에서 "납치"되었으며 따라서 이들의 송환을 주장하였다. 한국전쟁납북 사건자료원, 1952년 1월 1일, 3일, 12일의 정전협정 절차 필기록, *People of No Return: Korean War Abduction Pictorial History* (Seoul, 2012), pp. 56~58에 반영되어 있음. 조사위원회는 전쟁 중에 북한을 떠난 사람들이 강제로 납치된 것이었다는 정보를 하나도 입수하지 않았다.



에 대한 일련의 숙청을 단행하였다. 북한 지도부 내 종파 분쟁은 크게 네 분파의 파벌 간에 벌어졌다. 500여 명 정도 되는 국내파는 일제 식민지 시절 지하 공산당 운동을 펼친 조선인들이었다. 많은 수의 국내파들은 남쪽에서 북한으로 이주해 온 사람들이었다. 연안파는 1920년대와 1930년대 중국으로 이주하여 상해에 기반을 두었다가 국공내전 본부였던 연안으로 공산당원들과 함께 이주한 조선인들이었다. 소련파는 소련에서 태어나거나 자란 한민족으로서 약 150명에서 200명 정도가 소련파를 형성하였다. 김일성은 그와 함께 만주 일대에서 일제에 맞서 싸운 조선인들로 구성된 빨치산파를 지지하면서 다른 파벌 간의 투쟁을 조장하였다. 1952년 12월 김일성은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파벌을 비난하는 긴 연설을 전달하였다. 1953년 국내파의 실패한 쿠데타에 대한 소문이 퍼졌고, 국내파 지도부들의 체포로 이어졌다. 남한에서 게릴라 활동을 조직하는 임무를 맡았던 남조선노동당 지도부 12명은 쿠데타 기획 및 미국의 간첩 혐의로 체포되었다. 심하게 조작되고 적극적으로 선전되었던 재판에 따라 10명이 유죄선고를 받고 사형에 처해졌고, 두 명은 장기 징역을 선고 받았다.<sup>46</sup>

**114** 김일성은 갈수록 심해져 가는 그의 독재 정치와 개인 우상화 그리고 경제 정책 노선에 대하여 지도부 내부로부터 지속적으로 압력을 받았다. 1953년 이후, 소련 자체도 “탈스탈린화” 운동을 전개하고 있었고 이는 김일성이 지배 권력을 확립하려는 노력에 불리하게 작용하였다. 소련은 오히려 집단지도 체제, 평화적 공존을 추구하며 스탈린 시대의 과잉을 만회하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115** 1956년 8월, 연안파 인사들이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공개적으로 김일성을 비난하였다. 소련의 자료에 따르면, 한 간부는 “국가와 당의 권력을 장악하

46\_ Andrei Lankov, *From Stalin to Kim Il Sung*, pp. 78~109.

려는 김일성을 공격하였다.”<sup>47</sup> 김일성은 “8월 종파사건”을 조작하려던 연안파 지도부에 한발 앞서 그들을 고립시키고 곧 연안파 구성원들을 숙청하였다.<sup>48</sup>

116 김일성의 정권 장악에 대한 당내 비판에 대한 대응으로 김일성은 내무성을 확장시켜 북한 최초의 대규모 숙청을 거행하였다. 1957년 5월 30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상무위원회는 “반혁명분자들과의 투쟁을 전당, 전인민적 운동으로 강화 전 개할 데 대하여”(5·30)라는 결정을 채택하여 북한의 모든 성인의 정치적 배경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과정으로 북한의 김일성 정권 수립 과정에 전환점을 마련하게 되었다. 이전의 숙청은 지주, 기독교인, 김일성의 잠재적 경쟁자였던 당 고위급 인물들과 같이 특정집단의 사람들을 겨냥하였다.<sup>49</sup> 1960년대까지 지속된 이번 숙청으로 수천 명이 처형되었고, 주로 공개처형되었다. 사회안전상이었던 방학세는 1958년과 1959년 사이에 10만 명의 사람들이 “적대반동분자”로 드러났다고 소련 외교관에게 전하였다.<sup>50</sup> 1959년 북한주재 독일 민주공화국 대사 또한 본국으로 보낸 보고서에서 “근래에 이견을 표출하는 동지들에 대한 처형이 증가하고 있다. 그들은 시골, 탄광, 수력발전 댐 지역 그리고 정치범수용소로 보내지고 있다”고 기록하였다.<sup>51</sup>

47\_ 소비에트 대사관 제1서기관 G. Ye Samsonov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장 고희남(Ko Hui-nam) 간의 대화 녹취 자료. Andrei Lankov, *From Stalin to Kim Il Sung*, p. 169.

48\_ 북한의 공식적인 김일성 전기에 따르면: “1956년 8월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김일성은 반당, 반혁명 종파 분자들을 폭로하고 제거하려는 결단적 조치를 취했다. ... 반제국주의 베테랑과 다른 참석자들은 이러한 위급한 도전에 대한 일격을 가하였다. 폭로와 파괴가 예정되었던 분파는 단순한 파벌이 아니라 미 제국주의자들과 함께 당과 국가를 전복시키려던 극악무도한 반당, 반혁명 잔당이었다.” *Kim Il Sung: Condensed Biography*, pp. 200~201.

49\_ Andrei Lankov, “The Repressive System and Political Control in North Korea,” English version of a chapter from Severnaia Koreia의 영어버전: vchera i segodnia (North Korea: Yesterday and Today), 1995년에 러시아어로 출판(Moscow, Vostochnaia literatura). [http://north-korea.narod.ru/control\\_lankov.htm](http://north-korea.narod.ru/control_lankov.htm) 참조.

50\_ 안드레이 란코프는 1950년대부터 북한에서 공개처형이 관행화되었다고 한다. 그는 소련 자료에서 방학세와 펠리첸코 고문관 사이의 대화를 인용하고 있다. “Kim Takes Control: The “Great Purge” in North Korea, 1956~1960,” *Korean Studies*, vol. 26, No. 1 (2002), pp. 98~105.

51\_ 1959년 독일 민주 공화국(동독) 대사가 보낸 외교관 전보를 인용. 1957년 동독대사관은 폴란드로부터 돌아온

1950년대 말 진행된 대규모 숙청을 지속하기 위하여 비밀 정치범수용소 체계가 수립되었고 이후 계속 확대되었다.<sup>52</sup>

117 5·30결정으로 ‘성분’ 제도가 실질적으로 실시되었다. ‘성분’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구성 요소”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사회적 배경을 의미한다. 이 체제는 북한 주민들을 정권에 대한 정치적 충성심을 기준으로 하여, 가족 배경과 가족 구성원들의 특정 행위를 참고로 확인한 뒤 여러 계층으로 구분하였다. 이 평가에 기반하여 북한 주민들은 광범위하게 핵심, 반동, 그리고 적대 계층으로 분류되었다.<sup>53</sup> 주거지, 직업, 식량, 보건, 교육 및 기타 공공 서비스에 대한 결정이 모두 ‘성분’으로 좌우되었다. 공식적인 ‘성분’ 제도는 더욱 상세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변하기도 하였지만, 가장 주요한 특징은 부계를 통해 세습이 되는, 한 번 정해지면 이의 제기가 불가능하다는 점이었다.<sup>54</sup> 5·30결정에 따라 내각은 제149호 결정을 공포하여 적대 계층이 비무장 지대 또는 해안가 근접지역, 평양 또는 개성으로부터 50km 또는 기타 대도시의 20km 이내에 거주하는 것을 금지하였다. 사실상 많은 수의 적대 계층은 북쪽의 척박한 산악지대로 추방되었고, 그들을 위해 마련된 특별 거주지로 강제 이주되었다.<sup>55</sup>

118 1953년 6·25전쟁이 종료된 후, 북한 당국은 농장을 집단화하고 중공업에 기반한 중앙계획경제체제를 수립했다. 농장에 남은 사람들은 그들의 수확물의 일부

학생들이 군경비대가 지키고 있던 평양의 수용소에 보내지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있었다. 독일원문에 대한 인용은 통일 후 동독보존자료에서 찾을 수 있다. Liana Kang-Schmitz, “Nordkoreas Umgang mit Abhängigkeit und Sicherheitsrisiko,” pp. 225~226 참조.

52\_ IV장 D.3 참조.

53\_ 이러한 분류체계는 다양한 시점에서 수정된 것으로 보이는데 추후에 세 개의 광범위한 분류는 핵심, 기본, 그리고 반동과 적대 계층을 포함한 “복합”으로 변경되었다.

54\_ IV장 B 참조.

55\_ Ken E. Gause, “Coercion, Control, Surveillance and Punishment,” p. 101.

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국가에 수납해야 했다. 북한 당국은 주민들에게 직업을 강제 배정하였다.<sup>56</sup> 1957년 북한은 중앙배급체계(Public Distribution System)를 실시하여 식량과 기타 물품을 배급하기 시작하였다. 북한은 급속히 도시화되어, 예상하기로는 주민의 60~70%가 국가의 식량 배분에 의존하였다. 중앙배급체계는 사적인 생산을 억제하였고 식량과 가정 생필품의 배급을 독점하였다. 북한의 전체적인 경제 체제와 특히 중앙배급체계는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통제의 주요 수단이 되었다.<sup>57</sup>

**119** 1960년대 초반이 되자 김일성은 성공적으로 반대 세력들을 진압하였다. 정치적, 경제적 상황에 대한 그 어떠한 비판적 의견도 구금 이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었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반대 의견으로 처형을 당했다. 당시에 북한에 있던 러시아인 관찰자들이 목격한 바에 따르면 소련에 대해 과도하게 온정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다른 나라의 과학, 기술, 문화적 성과에 대한 긍정적인 발언을 한 사람들이 체포되거나 사형되었다.<sup>58</sup>

**120** 이와 같은 극단적인 인권 침해 위협으로 일반 주민들에 대한 공포 정치를 시행하면서, 김일성은 당과 군 지도부에 대해서도 주기적인 숙청 조장을 지속하였다.<sup>59</sup> 예를 들어, 1964년 “각계각층 군중과 함께 사업을 강화할 데 대하여”라는 결

56\_ 2003년 12월 CESCR은 북한의 최초 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에서 “현재의 국가지정 강제고용체계에서는 개인이 자유롭게 자신의 직업 또는 직장을 선택할 권리에 반하여 일할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을” 우려를 표명했다. (E/C.12/1/Add.95).

57\_ IV장 D 참조.

58\_ Andrei Lankov, “The Repressive System and Political Control in North Korea.” 또한 IV장 E 참조.

59\_ 평양 주재 폴란드 대사관 제1서기관은 1958년에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당에서나 개인적으로, 당 또는 국가의 지시 이것 저것에 대해 그 어떠한 사소한 비판이나 의심을 표현하는 것은 상상 불가능하다. 비판을 한다면, 당의 공식적인 연설문에서 사용되는 비판 형식을 따라야 한다. 즉, 처음에 많은 업적부터 내세우고 그 후에 비판할 대상에 대해 언급한다. 평양에서 쫓겨나는 것을 포함하여 모든 지원 수단과 장래를 빼앗기지 않으려면 반드시 이러한 방식으로 행동해야 한다.” “Notes from a Conversation between the 1st Secretary of the PRL Embassy in the DPRK with the Director of a Department in One of the Ministries,” 1958년 1월 5일.

정이 당 중앙위원회 제4기 제8차 전원회의에서 채택되고 난 후, ‘성분’ 제도를 정제하기 위한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1964년과 1969년 사이, 특별히 조직된 단체들이 이 일을 시행하였다. 이로 인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체제의 적으로 규정되어 추방을 당하거나, 체포 및 사형에 처해졌다.<sup>60</sup>

**121** 북한 정권 수립 초기에서부터 김일성과 조선노동당은 당의 지배권을 유지하고 정치적 반대 세력을 탄압할 목적으로 법과 사법체계를 이용하였다. 1958년 3월 “우리 당의 사법정책을 관철할 데 대하여”라는 연설을 통해 김일성은 사법, 검찰 그리고 공공안보기구들의 절대적 기능(dictatorial functions)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그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법은 사회주의 승리를 가져오기 위한 무기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사법기관의 모든 일꾼들은 당의 영도를 믿고 당의 사법 정책에 굳건히 의지하여 반혁명분자들에 대한 투쟁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sup>61</sup> 북한의 공식 출처에 따르면, 김정일은 이러한 접근 방식을 유지하여 사법체계를 만들고, 특히 판사들이 조선노동당의 지시를 따르도록 하였다. 북한의 공식 출처에 따르면, 김정일은 “모든 급의 당 위원회들이 강화되고 기능과 역할이 개선되어 공공 안보사업과 사법, 검찰 사업에 대한 당의 영도력을 개선시킬 것을 강조하였다.”<sup>62</sup>

**122** 법과 사법 제도의 정치적 기능은 스탈린 체제하 소련의 형사법 용어를 차용하며 제정된 1950년 형법을 시작으로 북한의 형사법 전반에 걸쳐 적용되고 있었다. 형법의 기능이 정치적 통제의 수단이라는 공공연한 언급은 차후 개정에서 많이

History and Public Policy Program Digital Archive, Polish Foreign Ministry Archive. Obtained by Jakub Poprocki and translated by Maya Latynski, <http://digitalarchive.wilsoncentre.org/document/111732> 참조.

60\_ “620 그루빠”는 이러한 목적을 위해 특별히 조직된 단체였다. Andrei Lankov, “The Repressive System and Political Control in North Korea”.

61\_ Kim Il Sung: *Condensed Biography*, pp. 207~208.

62\_ Kim Jong Il: *Brief History* (평양, 외국문출판사, 1998), p. 51.

삭제되었다. 하지만 북한의 현행 형법은 여전히 “반국가, 반민족 범죄”에 대한 투쟁에 있어서 국가의 적과 동지를 철저히 구분하여 소수의 적들을 진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sup>63</sup> 더 나아가 형사 사건을 다루는데 있어 공정하게 법을 적용하기보다는 군중의 권력과 지혜를 동원하도록 되어 있다.<sup>64</sup> 더군다나 현행 형법이 규정하고 있는 “국가와 민족에 반하는 범죄” (과거에 반혁명 범죄로 불렸음)는 매우 광범위하고 모호하여 다양한 인권의 행사가 범죄로 기소될 여지가 많다.<sup>65</sup>

**123** 법과 사법제도가 (인권)침해를 합법화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북한에는 법에 의한 지배(rule by law)가 있기는 하지만 독립적이고 공평한 사법부가 지탱하는 법에 의거한 지배(rule of law)는 존재하지 않는다. 적절한 견제가 법규에 포함되어 있을지라도 처벌을 받지 않고 이를 간과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조선노동당과 최고지도자의 결정은 공식적인 법보다 우위에 있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러한 원칙은 북한 헌법 제11조에 반영되어 있는데, 이에 따르면 북한의 모든 활동은 당의 지도력에 따라 진행된다.<sup>66</sup> 헌법은 또한 최고지도자의 명령이 법이나 기타 지시를 우선하는 것으로 성립시키고 있다.<sup>67</sup> 사법부의 정치적 기능은 헌법 제162조에 명시되어 있는데, 이는 법원으로 하여금 다른 업무 중에서도 사법 절차를 통해 국가 권력과 사회주의 체제를 보호하고 계급의 적과 충실하게 투쟁하라고 되어 있다. 행정집행명령의 우위와 법원에 부여된 정치적 기능은 판사들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가

63\_ 형사소송법 제2조. 반국가, 반민족범죄는 형법 제59조~제69조에 명시되어 있는데 모호하게 표현되어 있으며 정치적 활동을 매우 광범위하게 범죄로 설정하고 있다.

64\_ 형법 제3조.

65\_ IV장 E.5참조.

66\_ 이는 (당의) 유일사상체계 확립을 위한 10대원칙에 더욱더 노골적으로 자리잡고 있다. 10대원칙 제5조제3항에 따르면 김일성의 교시는 법이고 최고명령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

67\_ 북한 헌법 제109조에 따르면 국방위원회는 국방위원회 위원장의 명령과 국방위원회의 결정, 지시에 어긋나는 국가기관의 결정과 지시를 폐지할 임무와 권한을 가지고 있다. 제100조는 국방위원회 위원장이 북한의 최고지도자(최고령도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차없이 축소하고 있다.

124 형식적으로 북한의 판사들은 최고인민회의와 각 지방 인민회의에서 임명되며 이들에 대해 책임을 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절차에 직접 관여하였던 한 전직 간부에 따르면 실제로 판사들은 최고지도자와 조선노동당에 의해 임명되며 그 명령을 따라야 한다.<sup>68</sup> 법적으로 법원은 검찰소의 엄격한 감시에 놓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검사는 각 사건의 심리가 제때에 법의 요구에 맞게 집행되는지 감시하여야 한다.<sup>69</sup>

125 중국 또는 소련계 종파와 연관되었던 잠재적 정쟁 상대들을 제거하고 난 후 1960년대에 김일성은 의도적으로 소련과 중국으로부터 거리를 두기 시작하였다. 1966년 중국은 문화혁명의 혼란 속에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었으며 이러한 혼란은 북한까지 위협할 태세였다.<sup>70</sup> 김일성이 소련과 동구 사회주의 국가와의 접촉도 줄이면서 그 국가들로부터 받았던 상당한 경제적 지원마저 감소하기 시작하였다.<sup>71</sup> 이 때, 김일성은 개인 우상화 확대에 주력하였으며 자립(self-reliance) 정책과 ‘주체’로 알려진 극단적인 민족주의 정책을 펼치기 시작하였다.<sup>72</sup> 김일성은 4대 군사 노선

68\_ TLC037. 조사위원회와 비공개 면접을 실시한 증언자들은 6자 코드로 식별한다. 각 증언자의 신원은 조사위원회가 알고 있다.

69\_ 검찰감시법 제11조, KINU,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3), p. 174에서 재인용.

70\_ 1950년대 말과 1960년대 초, 중국의 대약진 운동이 초래한 대규모 기아사태의 결과로 약 5만 명에서 7만 명의 중국 내 조선족이 북한으로 이주한 것으로 추정된다.

71\_ 제2차 세계대전부터 1984년까지 북한은 \$47.5억의 원조를 소련(대략 50%), 중국(20%), 그리고 구사회주의 동구권 국가들(30%)로부터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Victor Cha, *The Impossible State: North Korea, Past and Future*(New York, Ecco, 2012), p. 28. 1953년에서 1960년 사이에 소련과 중국뿐만 아니라 동독,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루마니아, 헝가리, 불가리아, 알바니아, 몽골리아와 북베트남으로부터 받은 원조와 롤링메탈, 타이어 및 설장과 같은 소련원조물품에 대한 자세한 개요는 다음을 참조. Stephen Kotkin and Charles Armstrong, “A Socialist Regional World Order in North East Asia After World War II,” in *Korea at the Center*, Charles K. Armstrong and others, eds, p. 121.

72\_ 1961년, 독일 민주 공화국 대사관에 따르면 “김일성 동지를 에워싼 개인숭배화는 근래에 꽤 진행되어왔다. 당과 인민들이 얻는 모든 것은 김일성 동지 덕분이라고 간주된다. 김일성의 사진이 걸려있지 않은 방, 교실, 공공

을 채택하며 군에 집중하는 정책과 함께 ‘주체’ 사상을 선전하기 시작하였다.

126 ‘주체’는 철학, 개념 그리고 이념 등 여러 가지로 일컬어져 왔다. 1955년 12월 “사상사업에서 교조주의와 형식주의를 퇴치하고 주체를 확립할 데 대하여”라는 연설에서 김일성은 다른 국가 또는 국제연대운동에 기여하기보다는 조선 중심적인 혁명을 옹호하였다. ‘주체’ 사상에 따르면, 주민들은 자체적인 자원과 창조성을 가지고 최고지도자의 영도에 따라 국가의 잠재력을 발전시켜야 한다. 지도자가 교시를 통해 그의 지혜를 전달할 때면 어디서든지 그로부터 배우는 것이 주민의 의무였다. 유교주의가 경서를 독파하고 교훈을 실천함으로써 얻는 계몽 방식에 높은 가치를 두었듯이, 북한은 김일성의 저작, 특히 ‘주체’를 다루는 저술에 대한 엄격하고 지속적인 학습회를 어른 아이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강요하였다.<sup>73</sup>

건물을 찾아 볼 수가 없다.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은 순전히 김일성의 역할을 부각하고 있다. 박물관에는 김일성 동상이 자그마치 12개가 있고 크기가 점점 커지고 있다. 혁명전쟁에 관한 역사와 조선노동당의 창립과정 이 왜곡되어 있다. 조선 해방에 관한 소련의 결정적인 역할은 축소되어 오직 한 패널만이 이를 다루고 있다. 이러한 점은 영화와 그림을 포함한 다른 자료에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김일성의 실제 활동에 대해 알고 있다면 사실과 부합하지 않고 김일성에 대한 전설은 만들어진 것이다. 당 선전은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학습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고 완전히 유일하게 “영광스러운 지도자 김일성 동지의 지혜로운 가르침”을 향하고 있다. 군중과의 연결고리와 같은 당 생활의 많은 규칙들은 마르크스, 엥겔스와 레닌이 아닌 김일성에 의해 창시된 것처럼 묘사되고 있다. 김일성 동지를 언급하지 않은 기사 또는 행사가 없다. 그리고 이와 같은 접근방향에 동조하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 종파주의자, 최근에는 수정주의자로 분류되는 것은 이제 기정사실이다.” “Report, Embassy of the GDR in the DPRK to the Foreign Policy and International Department of the Socialist Unity Party, GDR” 1961년 3월 14일, History and Public Policy Program Digital Archive, SAPMO-BA, Dy 30, IV 2/20/137. Grace Leonard 번역. <http://digitalarchive.wilsoncentre.org/document/112303> 참조.

73\_ 김정일에 따르면 “우리 당과 인민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영도 밑에 혁명과 건설에서 일관하게 주체성을 확고히 견지하고 민족성을 옹기 살림으로써 주체혁명위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켜 왔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는 역사상 처음으로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할 데 대한 사상을 내놓으시고 빛나게 구현 하시여 혁명과 건설을 승리하여 이끄신 위대한 사상이론가, 위대한 정치가이시다. 주체성과 민족성을 지키고 구현하는 것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창시 하신 주체사상이 밝힌 혁명과 건설의 원칙적 요구이다. 사람 중심의 세계관인 주체사상은 숭고한 애민의 사상이 동시에 참다운 애국애족의 사상이며 세계의 자주화 위업을 힘있게 전진시켜 나갈 수 있는 길을 밝힌 우리 시대의 위대한 혁명 사상이다. 주체사상은 나라와 민족이 인민대중의 운명개척의 기본 단위로 되며 인민대중이 자기 운명을 자주적으로 개척해 나가자면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확고히 고수하여야 한다는 것을 밝혔다.”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할 데 대하여,” 1997년 6월



127 ‘주체’의 원칙은 지도부가 수립한 경제 체제의 밑바탕이 되고 있다. ‘주체’는 자기 희생과 전력을 요구한다. 인민의 노동력과 나라의 천연자원, 창조적 노력을 통해 인민의 필요를 충족시키겠다는 북한의 자립 개념은 주민들에게 국가의 지도를 따를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주체’는 또 하나의 통제 기제로 자리잡았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더 적극적으로 노동력과 시간을 투입하여 생산을 증가시키도록 하는 강도 높은 캠페인을 실시했다.<sup>74</sup> 북한은 인구 전체를 위한 충분한 식량을 생산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를 무역으로 해결하려 하지 않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독특한 전략을 취하여 왔다. 결국 농산물 생산의 부적합한 환경 조건에 맞선 북한의 해결책은 비료와 살충제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세계에서 가장 요소 집약적인 농업체제를 형성하는 것이었다.<sup>75</sup>

128 그러나 ‘주체’는 효과적인 경제를 위한 적절한 기반이 되지 못하였다. 일제 시대로부터 물려받은 산업 시설과 요소 집약적인 농업은 소련과 중국의 원조를 통해 몇 십 년 간 지속되었다. 1970년대 중반 남한과 북한의 1인당 국민총생산은 거의 같았다. 외부원조가 끊겼을 때, 북한은 고질적인 경제문제를 해결할 역량과 정치적 의지가 없었다. 1970년대 짧은 기간 동안 북한은 국제사회에 지원자금 원조를

19일, <http://www.korea-dpr.com/lib/111.pdf> 참조.

74\_ 안드레이 란코프에 따르면 1957년에 “최초의, 그리고 끊임없는 동원 캠페인 중 가장 유명하고 나중에는 북한 사회의 전형이 된 캠페인이 실시되었다. 1957년에 김일성은 대대적으로 ‘천리마 운동’을 개시했는데 이는 애초에는 현대적인 소비에트 기획을 모방하였으나 곧 중국의 대약진 운동의 영향을 받아 분방기 시작하였다. 사람들은 더욱더 많은 일을 하도록 장려되었으며 높은 (그리고 주로 비현실적인) 목표 생산량을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했다.” Andrei Lankov, “Kim Takes Control: The ‘Great Purge’ in North Korea, 1956–1960,” *Korean Studies*, vol. 26, No. 1 (2002). 이어서 다른 예들은 1974년 10월 “전당, 전국가와 전인민”이 탄광사업, 수출과 교통산업을 단장하기 위해 70일 간의 캠페인을 시작한 경우이다. 김일성의 공식 전기에 따르면 산업생산량이 70% 증가하였고, 전년대비 공업 총생산량이 17.2% 증가하였다고 한다. *Kim Jong-il: Brief History*, pp. 57~58.

75\_ Stephen Haggard and Marcus Noland, *Famine in North Korea*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2007), Chapter 2.

요청하였다. 하지만 채무를 상환할 계획을 갖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국가의 개발을 위해 자원을 투자할 방법도 갖고 있지 않았다. 북한은 수십 억 달러에 달하는 채무를 불이행하였고 더 이상 자금 요청을 할 수가 없었다. 지도부가 내린 선택 때문에 1990년대 기아사태가 닥치기 이전부터 북한은 심각한 식량 부족에 시달렸다. 식량 부족은 일찍이 1945년과 1946년 사이, 1954년과 1955년 사이, 그리고 1970년과 1973년 사이의 기간에 반복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sup>76</sup> 체계적인 경제 발전이나 국가의 식량 문제보다 정치 체제와 지도층의 생존이 북한 지도부의 우선 순위였던 것으로 보인다.

## E. 김씨 왕조 권력의 공고화

129 김정일은 권력 승계를 위해 20년을 준비하였다. 여러 자료에 따르면 김일성의 원래 후계자는 김일성의 동생 김영주였다. 김정일은 결국 그의 삼촌을 밀어내고 특히 김일성에 대한 우상화 작업을 확대하려는 노력으로 김일성의 신임을 얻었다. 김일성에 대한 숭배의 강도가 실질적으로 마오쩌둥과 스탈린에 대한 우상화를 능가한 것은 1972년이었다. 북한 주민들은 김일성이 그려진 배지를 달고 다녔고 벽에는 그의 초상화를 걸어두기 시작했다. 김정일은 ‘주체’를 북한의 유일사상으로 채택하였던 1970년 제5차 당 대회를 조직하기 전까지 당의 강력한 선전과 조직부에서 지도원으로 일을 하다가 김일성의 개인 숭배화 작업을 강화하면서 자신의 권력 계승 절차를 궤도에 올렸다. 이 시기 즈음에 김정일은 ‘주체’와 연관된 개념인 김일성주의를 도입하였다.<sup>77</sup> 북한을 통치하기 위한 정당성의 원천이 김일성이었기 때문에

76\_ Haggard and Noland, *Famine in North Korea*, Chapter 1.

77\_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김일성주의로 부르는 것은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사상과 이론이 독창적이기 때문입니다. 주체의 사상, 이론, 방법의 체계라고 한 김일성주의의 정의는 김일성주의가 내용에서 주체사상으로 일관되어 있고 구성에서 사상, 이론, 방법의 체계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김일성주의는 내용으로 보나 구성으

김일성에 대한 개인 우상화 작업은 김정일 자신의 권력 승계를 공고히 하기 위한 중요한 도구가 되었다.<sup>78</sup>

130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는 김정일을 당 조직지도부 비서로 임명하였다. 이로써 김정일은 임명 절차와 감시 체계를 지휘 통제할 수 있게 되었다. 그는 이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권력 기반을 공고히 하면서 감시단을 지방의 모든 당, 정권 기관까지 파견하였다. 이를 통해 그는 모든 정보를 감시하고 주요 간부들을 그의 후원 세력으로 연계시킬 전용 보고 체계를 수립할 수 있었다. 1972년 헌법으로 김정일은 국가행정 조직을 개편하였고 국가안보기관을 더욱 확장시켰다. 이 당시 김정일에게 직접 보고하는 국가안전보위부가 새로 설치되어 김정일의 권력 승계 절차를 지지하게 되었다.

131 중앙위원회가 1974년에 김정일을 정치위원으로 선출하고 김일성의 후계자로 승인하자 김정일은 수령 체제에 대한 이론적 기반을 심화하였다. 김정일은 “당 유일사상체계 확립을 위한 10대 원칙”<sup>79</sup>을 발표하며 김일성을 향한 “무조건적인 복

로 보나 맑스-레닌주의의 틀 안에서 해석할 수 없는 독창적인 사상입니다. 김일성주의의 진수를 이루는 주체사상은 인류사상사에서 새롭게 발견된 사상입니다.” 김정일, “김일성주의의 독창성을 옳게 인식할 데 대하여: 당 이론선전일군들과 한 담화,” 1976년 10월 2일(평양, 외국문출판사, 1984).

78\_ 평양의 동독대사 Franz Everhardt, “북한의 경제 상황은 극도로 어렵고 복잡하다. 이의 주요한 이유는 [김일성과 관련된] 개인숭배와 그로부터 파생된 주관주의(subjectivism) 때문이다.” 북한 내 동독 대사관 보고서, “Note concerning a Conversation in Moscow on 12 May, 1976, with the Head of the Far East Department, Comrade Kapitsa, and the Head of the Southeast Asia Department, Comrade Sudarikov.” 1976년 5월 27일, History and Public Policy Program Digital Archive, Political Archive of the Federal Foreign Office, Berlin (PoiA AA), MiAA, C 6857. Bernd Schaefer에 의해 NKIDP에서 번역. <http://digitalarchive.wilsoncentre.org/document/114290> 참조.

79\_ 유일지도사상 체계를 확립하는 10대 원칙은 총 10개의 조와 65개의 하위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1) 김일성 사상으로 온 사회를 일색화하기 위해 몸바쳐 투쟁해야 한다. 2) 김일성을 중심으로 높이 우러러 모셔야 한다. 3) 김일성의 권위를 절대화해야 한다. 4) 김일성 사상을 신념으로 삼고 김일성 교시를 신조화해야 한다. 5) 김일성 교시 집행에서 무조건성의 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6) 김일성을 유일 중심으로 전 당의 사상 의지적 통일과 단결을 강화해야 한다. 7) 김일성을 따라 배워 공산주의적 품모와 혁명적 사업방법, 인민적 사업작품을

중”과 “절대적인 충심”을 요구하였다. 더욱이 10대 원칙의 제10조제1항은 “전당과 온 사회에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우며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혁명적 위업을 대를 이어 빛나게 완수하기 위하여 수령님의 령도 밑에 당중앙의 유일적지도체제를 확고히 세워야 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여기서 “당중앙”은 김정일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132 1975년 김정일은 총정치국, 총참모부와 군 비밀경찰의 세 가지 보고 체계를 통해 “유일지도체계”를 군에도 적용하였다. 1980년 김정일은 정치국 상무위원과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되었다.<sup>80</sup> 이 시점에서 김정일은 공식적으로 북한 지도층 내 권력 서열 5위가 되었다. 그렇기는 하지만 김일성과 김정일만이 당의 세 지도 기관(정치국, 비서국, 중앙군사위원회) 모두에서 자리를 보유하고 있었다. 김정일은 이어서 모든 정책 결정권과 임명권을 정치국에서 그의 정치 기반인 당 비서국으로 이동시켰다. 1991년 그는 군 최고사령관으로 임명되었다.

133 북한을 지배하는데 있어서 고도로 개인화된 접근을 취하고는 있었지만, 김일성은 형식적으로나마 의사 결정과 통치 과정에 당을 관여시켜왔다. 대조적으로 김정일은 매우 중앙 집권적이고 상명하달식 지도 유형을 채택하였고, 주로 비공식적 경로에 의존하였다. 그는 또한 그의 조직적 기반을 조선노동당에서 1992년 개정헌법 후(1972년 이후 첫 개정) 국가의 지도적 기구가 된 국방위원회로 이동하였다.<sup>81</sup>

---

소유해야 한다. 8) 김일성이 준 정치적 생명을 귀중히 간직하고 정치적 신임과 배려에 높은 정치적 자각과 충성으로 보답해야 한다. 9) 김일성의 유일적 영도 밑에 전당, 전군, 전인민이 한결같이 움직이는 강한 조직규율을 세워야 한다. 10) 김일성이 개척한 혁명 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계승 완성해야 한다. Joanna Hosaniak 번역, “Prisoners of Their Own Country,” Citizens’ Alliance for North Korean Human Rights, 2004 (한국어 원문 출처는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참조). 2013년에 개정된 10대원칙은 김정일에 대한 언급을 포함한다.

80\_ *Kim Jong-il: Brief History*, p. 80.

81\_ 1992년 헌법에서 국방위원회는 중앙인민위원회로부터 분리 승격되었다. 개정헌법 이전에는 국가주석이 군최고사령관으로 국방위원장의 지위를 겸직하였다. 하지만 주석과 국방위원장의 권력분리는 실질적으로 국방위원장을 국

1993년에 김정일은 국방위원회 위원장이 되었다.

**134** 김일성은 1994년에 82세로 사망하였다. 1997년 김정일은 사회안전성을 인민보안성(현 인민보안부)로 전환시키고 그 기구를 전반적으로 확대시키며 국가안보기구에 대한 장악을 더욱 확고히 하였다. 이러한 변화에 기반하여 국가안보기구는 다섯 개의 기둥으로 지탱하는 체제로 확대되었다. 이 다섯 기관은 현재의 최고지도자 김정은 치하에서도 유지되고 있다:<sup>82</sup>

1. 국가안전보위부<sup>83</sup> (국가보위부, 간략하게 보위부로 일컬어진다)는 제1의 정치경찰 기관이다. “국가 또는 민족에 반하는 범죄”를 조사하도록 규정된 보위부는 정치 체제와 최고지도자에 대한 위협을 밝혀내고 이를 폭력적으로 억제할 권한을 갖고 있다.
2. 일반적인 치안 기능과 더불어 인민보안성(현 인민보안부)은 특정 정치경찰 기능도 수행한다.
3. 보위사령부는 조선인민군의 정치경찰 역할을 맡고 있다.
4. 일반적인 검찰업무 외에도 검찰소는 법적, 정치적 감시 권한을 행사한다.
5. 조선노동당 내 중앙위원회급 특별기구들은 고위간부들과 보안기관들을 감시, 감찰한다.

**135** 각 보안기관의 역할 분담은 정치적 우선순위, 유용 가능한 역량, 고위 간부들간의 상대적 권력차이, 그리고 최고지도자의 신뢰를 누리는 정도에 좌우되어 시기와 지역 간에 시행상의 차이를 보여왔다. 많은 경우 세 주요 보안기관인 국가안전보위부, 인민보안부, 보위사령부는 김정일의 호의를 얻기 위해 이념적 반대자를 효율

가. 최고사령관으로 만들었고 군의 최고 권한을 행사하게 되었다. Yoon Dae-kyu, “The Constitution of North Korea: Its Changes and Implications,” *Fordham International Law Journal*, vol. 27, No. 4 (2003), p. 1299.

82\_ 북한안보기구의 활동과 국제인권외무에 대한 준수여부에 관한 상세한 분석은 V장, 특히 V장 A, V장 B, V장 B와 V장 D 참조.

83\_ 국가보위부는 때에 따라 the National Security Agency 또는 the Ministry of State Security로 번역된다.

적으로 색출하는데 경쟁하였다. 주요한 정치적 위협으로 간주되는 사건이나 사안에 대해서 최고지도자 또는 중앙급의 의사결정기구들은 안보기관의 협조를 요구하였다. 김정일의 비밀명령에 따라 준상설 조직이 구축되어 김정은 체제에서도 유지되고 있다는 보고가 있다.<sup>84</sup>

136 3년 간의 애도기간 후, 1998년 김정일은 최고인민회의에 의해 북한의 지도자로 공식 선출되었다. 1998년 개정된 헌법은 김일성을 영원한 주석으로 내세웠다. 개정헌법은 국방위원회를 국가최고권력기관으로 격상시켰으며, 따라서 위원장 김정일은 북한정권 최고권력자가 되었다.<sup>85</sup> 전쟁 영웅이었던 아버지 김일성과 달리 신임이 부족했던 김정일은 군의 지지를 얻고자 국가의 기본 노선을 ‘선군,’ 즉 군사 우선 독트린으로 전환하면서 군부에 정책적 영향력과 위신을 부여하고, 국가예산의 큰 비중도 군부에 할애하였다. 이 독트린은 김정일 사후와 김정은에게로의 권력이양 후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2013년 8월 25일 선군절 축하행사에서 김정은은 ‘선군’ 정치에 대해 입장연설을 하였다:

선군은 [김정일] 장군의 혁명사상이고 혁명 실천이었으며 장군님의 정치 이념이고 정치 방식이었습니다.... 인민군대를 강화하는 것을 선군 혁명의 첫째가는 중대사로 보신 장군님께서서는 인민군대를 당의 위업에 끝없이 충실한 수령의 군대, 필승불패의 혁명강군으로 키워 우리 혁명의 기둥, 주력군으로 내세우시었으며 조국의 안전과 사회주의를 지키기 위한 존엄한 반제반미 대결전에서 역사적 승리를 이룩하시었습니다. 장군님께서서는 인민군 군인들 속에서 발휘된 수령결사옹위정신과 결사관철의 정신, 영웅적 희생정신을 선군시대를 상징하고 대표하는 혁명정신, 혁명적 군인 정신으로 내세우고 전군, 전민이 혁명적 군인 정신으로 살며 투쟁하도록 하심으로써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부분에서 일대 양양과 전변이 일어나게 하시었습니다. 선군영도의 성과를 공공연히 하고 선군정치를 전면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0

84\_ IV장 참조.

85\_ 북한헌법 제100조에 따르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방위원회 위원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령도자이다.

기 제1차회의에서 선군혁명사상과 원칙을 구현한 사회주의헌법을 채택하도록 하시였으며 국방위원회를 중추로 하는 새로운 국가관리체계를 세우고 모든 국가사업이 군사선행의 원칙에서 진행되도록 현명하게 이끄시었습니다.<sup>86</sup>

**137** 선군정치 노선에 따라 북한은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에 착수하였다.<sup>87</sup> 북한은 현재 정규군 120만 명과 710만에서 830만 명의 예비군으로 구성된 세계 4위의 상비군을 보유하고 있다. 장비의 노후, 훈련의 어려움, 그리고 주민들의 영양상태가 전반적으로 악화되어 잠재적 군인들의 신장이 영향을 받음에 따라 신병의 모집 기준이 낮아지면서 북한의 군사력은 꾸준히 하향세를 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같은 군사력 약화를 인지하면서 북한은 핵무기와 특수작전부대, 생화학 무기 및 소형잠수함과 같은 기타 “비대칭 전력”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sup>88</sup>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큰 화학무기 보유고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역의 안보 균

86\_ 김정은, “김정일 동지의 위대한 선군혁명사상과 업적을 길이 빛내여가자,” 노동신문과 조선인민군(보), 2013년 4월 25일. SINO-NK, “Kim Jong-un and the Songun Retrenchment: A Quintessential Equation” 통해 접근, 2013년 11월 30일.

87\_ 1959년 북한은 처음으로 소련과 핵연구협력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였다. 그 직후, 중국과도 유사한 협정이 잇따랐다. 1965년이 되자, 북한은 소련 디자인의 연구용 원자로 IRT-2000을 보유하고 있었고 1970년대 이를 현대화하였다. 1970년대 말이 되어서 북한의 핵역량 개발에 대한 관심은 에너지 발전에서 핵무기 개발로 전환됐다. 1977년 북한은 압력에 못 이겨 소련과 함께 개발한 연구용 원자로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의 조사에 응했지만 두 번째 원자로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지 않았다. 1985년, 소련의 요청에 따라 북한은 핵무기비확산조약을 비준했지만 안전조치협정을 거절하다가 1992년에서야 이에 서명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1985년에 북한의 핵 실험을 감지하였다. 1992년에 남북한은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1993년 북한은 핵 시설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에 대한 협정을 불이행하였고 핵확산방지조약으로부터 탈퇴하겠다고 위협하였다. 국제원자력기구와의 협조를 강력히 권고했던 미국과의 긴장이 고조되었다. 1994년 북한은 영변원자로에서 폐연료봉을 인출하고, 국제원자력기구에서 탈퇴하며 사찰단을 추방함으로써 제1차 핵 위기를 촉발시켰다. 이 위기는 카터 전 미국대통령의 중재로 이루어진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서로 일단락되었다. 미국 클린턴 행정부는 북한의 50메가와트와 200메가와트 원자로 건설의 중단을 포함하여 핵을 동결하고 목표기한을 두고 상호적으로 조치를 취하는 데에 대하여 불가침 보장과 북미관계정상화, 두 개의 경수로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이와 같은 첫 북핵 사태 이래로 북한은 위기를 촉발시키고 그 해결을 위해 호의적인 조건을 협상하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

88\_ 비대칭 무력은 대항하기에는 더욱 어려운 무력이면서 상대편이 인지하고 있는 자신의 약점에 대처할 수 있는 무력이다. Joseph S. Bermudez, Jr, 워싱턴 공청회, 2013년 10월 31일, 오후(00:10:00) 참조.

형을 깨뜨리면서 고립을 자초하는 북한이 핵 보유국이 되려고 함으로써, 그렇지 않아도 일부 주민들은 상당 기간 동안 식량부족에 시달리고 있다고 알려진 상황에서 북한의 자원배분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sup>89</sup>

**138** 이외에도 선군 정책의 시행과 더불어 핵을 개발하겠다는 북한 지도층의 결정은 심각한 경제적, 정치적 결과를 가져왔다. 1990년대 접어들어 북미관계가 개선의 여지를 보였음에도,<sup>90</sup> 1994년 5월 북한이 영변원자로에서 폐연료봉을 인출하고 국제원자력기구에서 탈퇴하며 사찰단을 추방하면서 첫 번째 북핵 위기가 발생했다. 이 위기로 북한은 미국과의 관계 개선 가능성을 악화 일로로 차단해 하는 위험을 초래하였다. 카터 전 미국대통령의 중재로 타결된 1994년 북미제네바기본합의서는 클린턴 행정부 당시 김정일에게 불가침에 대한 보장과 기타 양보조치를 제공하였다.

**139** 북한은 농업부문을 포함하여 중국과 소련의 지원에 심하게 의존해 왔다. 1970년대와 1980년대 내내 북한은 상환할 의지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련과 중국에 상당한 채무를 축적해왔다. 1990년대 중반 소련의 붕괴와 동시에 이웃나라 북한에 대한 중국의 인내심 또한 바닥이 났다.

**140** 1976년 마오쩌둥의 사망 후, 덩샤오핑은 중국에 유례없는 개혁을 추진하며 수억 명의 인구를 빈곤으로부터 구제하였다. 이 과정의 일환으로 중국은 일본과의 관계를 수립하였다. 1989년에는 중소분쟁이 종결되었다. 1992년에 중국은 한국과의 관계를 정상화하였고 이는 북한을 언짢게 하였다. 1994년 김일성의 사망은 북한

89\_ 국방자금조달과 핵무기개발의 맥락에서 식량권 보장에 대한 북한의 의무와 관련해서는 IV장 D.4 참조.

90\_ 1991년 9월, 미국은 북한의 UN 가입을 지지하였다. 미국은 한반도를 포함하여 전 세계에 퍼져있던 육지와 해상 전술적 핵무기를 철거하였다. 1992년 1월 미국은 북한을 자극하였던 팀 스피릿 훈련을 종료하였다. 그 달 말, 미국무부 정치담당 차관보 아놀드 캔터는 조선노동당 국제부장 김용순을 만나 관계개선에 관한 회담을 가졌다.



과 중국 간의 관계에 긴장을 가중시켰다. 사실 1990년대 기근의 직접적인 원인 중의 하나는 북한과 중국 간 무역 규모의 변화였다. 1990년 25억 6천만 달러 규모였던 소련과의 무역이 1994년에는 140만 달러의 규모로 10분의 1 이하로 감소하였고, 북한은 중국에 더욱 의존하게 되었다.<sup>91</sup> 하지만 1993년 9억 달러 규모였던 중국과의 양자무역은 1995년에 5.5억 달러의 규모로 감소하였고, 1993년과 1994년 사이에 식량수출량은 절반으로 감소하였다.<sup>92</sup> 1995년 7월과 8월 극심한 계절성 폭우와 그로 인한 토양 침식, 강수 범람으로 농업 수확물이 망실되었고 대기근 및 북한에서 “고난의 행군” 기간으로 일컬어지는 굶주림의 기간이 도래하였다. 1996년과 1999년 사이 약 45만 명에서 2백만 명의 북한 주민들이 아사한 것으로 추정된다.<sup>93</sup>

141 인간이 초래한 기근의 의도하지 않은 결과 중에 하나는 비공식적인 시장의 광범위한 발생이었다. 기근이 시작된 지 10년 후 북한 가계소득의 78%가 비공식 경제활동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된다.<sup>94</sup> 북한의 중앙배급체계가 최소한의 식량조차 제공할 수 없게 되자 관계당국은 예전과 같은 수준의 통제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되었다. 사회 통제의 붕괴는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정보를 막는 장벽에 균열을 가져왔다. 이와 동시에 많은 수의 사람들이 탈북을 시도하고 거래할 물건들을 중국으로부터 들여오려 하면서 이동의 자유에 대한 통제도 느슨해졌다. 중국을 왕래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북한 주민들은 중국의 상대적 풍요를 직접 목격하였고, 북한 당국의 공식 선전과는 크게 차이가 나는 남한에 대한 정보를 접하게 되었다. 북한 지도부는 시장을 통제하고 이동의 자유를 제한하려고 거듭 노력하였다. 이러한 조치들은

91\_ 안드레이 란코프는 소련과 중국의 지원이 보조무역을 통해 간접적으로 제공되었기 때문에 소련과 중국으로부터의 실제 지원 수준을 가늠하기 어렵다고 한다: Andrei Lankov, *The Real North Korea: Life and Politics in the Failed Utopian Stat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3), pp. 73~76.

92\_ Victor Cha, *The Impossible State*, p. 327.

93\_ IV장 D 참조.

94\_ Andrei Lankov, *The Real North Korea*, pp. 82~90.

다양한 수준의 저항에 맞닥뜨렸다.<sup>95</sup>

**142** 한국에서는 정치적으로 진보적이고, 인권 증진 활동에 경력이 있는 두 대통령이 1997년에 선출된 김대중 대통령과 2002년에 선출된 노무현 대통령이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목적으로 무조건적인 포용정책을 추진하였다. 그들의 목표는 급작스러운 정권 붕괴나 무력 대결보다는 통일을 점진적으로 추구하는 것이었다.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은 2000년 평양에서 이루어진 역사적인 정상회담으로 정점을 찍었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의 “평화번영정책”은 본질적으로 햇볕정책을 이어나간 것이었다. 햇볕정책으로 남한은 북한에 30억 달러에 이르는 원조를 제공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은 또한 북한이 외화를 벌고 국제시장에 진입할 기회를 마련해주고자 남북협력사업을 추진하였다. 개성공단은 그 핵심 협력사업이다.<sup>96</sup>

**143** 2002년 김정일은 경제 개혁을 시도했다. “7·1 경제관리개선조치”(2002년 7월 1일 공포일자를 따라 명명됨)는 시장가격을 더욱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한 소비자물가 상승과 공식임금 상승,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한 공기업 경영 정책의 변화, 그리고 상설시장의 공식적인 설립 등을 포함하였다. 국내적으로 이러한 조치들이 시행되는 동안, 김정일은 인도주의 기구들이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조건을 내걸며 북한 경제의 적자에 대처하기 위해 계속해서 해외 원조를 모색하였다.<sup>97</sup> 북한과 일본과의 관계 정상화 회담이 1990년대 들어 시작되었다. 2002년 9월 고이즈미 일본 총리와 김정일 국방위원장 간의 정상회담이 그 정점이었다.

95\_ IV장 D 참조.

96\_ 2013년 초, 개성공단의 일시적인 가동중단은 국제경제시장에 북한을 유도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시사하였다. 정치적인 대기 상황으로 수개월 간 중단되었던 개성공단은 2013년 9월 재가동되었다. 이로 인해 남한 사업체들은 심각한 경제적인 손실을 입었고 불확실한 미래를 마주하고 있다.

97\_ IV장 D 참조.

144 제2차 북핵 위기는 2002년 말에 발생하였다. 평양을 방문 중이었던 제임스 켈리 미 국무부 차관보는 북한이 1994년 기본합의서를 위반하여 비밀리에 고농축 우라늄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는 증거를 내세우면서 북한 당국도 이를 시인하였다고 발표하였다. 북한은 이어서 영변원자로의 봉인과 감시 장치를 제거하고 1천 개의 연료봉을 원자로로 이동시켰으며, 두 명의 국제원자력기구 사찰위원을 추방하면서 수개월 내로 무기급 플루토늄 생산을 위한 재처리시설을 재가동시키겠다는 의지를 발표하였다. 2003년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은 북한과의 양자협상을 중단시켰다. 대신 6자 회담<sup>98</sup>이 추후 협상을 위한 적절한 장으로 결정되었다.

145 그러는 동안에 김정일의 2002년 경제개혁조치는 군부의 반발에 부딪혀 결국 김정일이 한 발 물러서게 되었다. 2005년 북한은 중앙배급체계를 재가동시키려고 시도하면서 농민들로부터 곡물을 몰수하였다. 동시에 북한 당국은 주민들이 중국으로 국경을 넘는 것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였다. 그러나 2006년에 이르러 쌀과 옥수수 거래에 대한 금지는 사실상 무효화되었다.<sup>99</sup>

146 2006년 7월 북한은 여러 개의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였다. 이에 대해 여러 국가들이 경제제재조치를 단행하였고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다수의 미사일 발사를 비난하며 북한으로 하여금 모든 탄도 미사일 관련 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결의를 채택하였다.<sup>100</sup> 수개월 후, 북한은 그 첫 번째 핵 실험을 강행하였다. 중국은 북한의 행위에 대해 강렬하게 비난하였으며 처음으로 북한의 핵 및 미사일 개발

98\_ 6자 회담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종결시키기 위한 중국, 미국, 북한, 한국, 일본, 러시아 간의 협상의 장이다. 여러 차례의 회담 끝에 2005년 9월 북한이 핵무기 추구를 포기하는데 동의하겠다는 합의가 도출되었다. 2009년 북한은 6자 회담 불참을 통보했다. 회담을 재개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99\_ IV장 D 참조.

100\_ S/RES/1695 (2006).

방지를 위한 경제제재조치 내용을 담은 안보리 결의를 지지하였다.<sup>101</sup> 하지만 대체로 북한 지도부를 지지해온 중국은 곧 비난의 수위를 낮추었다.

**147** 2007년 당선된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은 햇볕정책 노선을 변경하여 북한에 대해 상호주의를 요구하며 비핵화에 초점을 맞추었다. 북한은 이러한 어조의 변화를 반기지 않았으며 이명박 대통령을 비방하며<sup>102</sup>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켰다. 2007년 이래로 남북한 간에 장관급 회담은 한 번도 실시되지 않았다. 2008년에는 김정일이 뇌졸중으로 쓰러졌다. 2009년 북한 지도부는 주민통제 및 시장화 과정에 대한 통제를 확고히 하고자 기습적으로 화폐 개혁을 단행하였다. 1959년, 1979년, 그리고 1992년에도 시도하였던 화폐 개혁이지만, 2009년 화폐 개혁은 엄청난 물가 상승과 일시적인 시장의 마비를 가져오며 불만과 교란을 일으킨 채 실패하였다. 2009년의 화폐 단위를 낮춘 신권을 발행한 소위 개혁 조치로 노동자들의 임금은 명목적으로 인상되어 대대적인 물가 상승을 초래하였다. 많은 수의 주민들은 교환액수 제한과 뒤를 이은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 그들의 모아둔 돈이 증발하는 경험을 하였다.<sup>103</sup>

**148** 2009년 북한은 미사일을 발사하고 6자 회담에서 탈퇴하였으며, 8천 개의 연료봉을 재처리 하던 영변시설로부터 국제사찰단을 추방하고 두 번째 핵 실험을

101\_ 유엔헌장 제7장에 따라 행동하되, 자동적인 무력 사용을 취하지 못하게 하는 헌장의 제41조(비무력제재) 규정에 따라 안보리는 다양한 목록의 물품들이 북한에 입수되거나 송출되는 것을 막고, 자금을 동결시키며 핵무기 프로그램과 관련된 인사들의 여행을 금지할 것에 대한 안보리 결의 1718호(2006년)를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이러한 결정에 따라 이사회는 북한에 대한 대규모 무기, 핵 기술과 관련 트레이닝 및 사치품의 제공을 금지하였으며, 모든 회원국들이 각국의 국내법에 따라, 화물에 대한 철저한 검사를 포함하여, 협력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했다.

102\_ 예를 들어, 2012년 조선중앙통신은 만화로 표현한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 다음과 같은 설명을 붙였다. “더럽고 쥐갈이 털이 많은 이명박의 몸을 총검으로 찌르고 있다. 바로 그의 목에 총검 하나를 찌르고 그의 심장은 이미 터져있다. 더러운 밑구멍으로 피가 흘러나오고 있다.” <http://www.bbc.co.uk/news/world-asia-22038370> 참조.

103\_ 2009년 화폐 개혁과 관련해서는 IV장 D 참조.

강행하였다. 안보리는 결의 1874호를 채택하여 제재를 강화하였다.<sup>104</sup> 북한은 미국과 한국이 전쟁을 선포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더 이상 1953년 정전협정을 지킬 이유가 없다고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149** 뇌졸중으로 쓰러진 후 김정일은 보다 공개적으로 권력세습에 관한 문제에 집중하기 시작하였다. 2001년 장남 김정남이 가족들과 함께 가짜 도미니카 공화국 여권을 갖고 일본 입국을 시도했을 때만 해도 그가 김정일의 후계자로 추정되었다. 2009년 초, 북한의 공식 선전기관들은 “셋별장군”을 언급하기 시작하였다. 김정은이 김일성의 후계자로 내정되었다는 공식적인 증거는 2010년에서야 표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하였다. 2010년 3월, 한국의 초계함인 천안함이 어뢰공격으로 침몰하여 46명의 해군 장병이 사망하였다.<sup>105</sup> 2010년 9월, 1980년 당대회 이후 첫 조선노동당 대표자회에서 김정일의 누이 김경희와 김정은은 군복무 경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4성급 대장으로 추대되었다. 이 때 김정은은 중앙군사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도 임명되었다. 2010년 11월에는 북한의 연평도 포격으로 남한의 민간인 4명이 사망하였다. 2011년 12월 19일, 북한 당국은 김정일이 이틀 전 사망하였다고 보도하였다. 왕조적 권력 세습은 즉시 김일성 일가의 3세대로 이어졌다. 이와 같은 교체는 그 어떠한 민주주의적인 절차나 북한 주민들의 실질적인 참여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150** 김정은은 1983년 또는 1984년 1월 8일 태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렇다면 그는 30세가 되기 전에 북한 정치, 행정, 군사의 최고권력자, 북한의 최고지도

104\_ 2006년과 2010년 사이,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에 경제제재조치와 미사일 확산방지조치를 취하는 다섯 개의 결의를 채택하였다. 결의 1695호(2006), 1718호(2006), 1874호(2009), 2087호(2013)와 2094호(2013).

105\_ 한국, 미국, 영국, 스웨덴과 호주로 이루어진 합동조사단은 6개월 간의 조사 끝에 천안함이 북한이 만든 어뢰의 공격을 받았다고 발표하였다. 중국은 이와 같은 결론을 인정하지 않고 천안함 공격에 대해 북한을 비난하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반대하였다.

자로 권력을 계승한 것이다. 김정은은 자신의 권력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2011년 김정일 사후 몇 주가 지나자 그는 주요 군사기관의 “최고사령관”의 직함을 가지게 되었다. 여러 정권 기관의 공식 성명은 김정은을 북한의 “유일한 민족 지도자(sole national leader)”로 칭하였다.

151 2012년 초, 북한은 미국으로부터의 식량 지원을 대가로 핵 실험을 유예하고 국제사찰단의 방북 사찰을 허용하겠다고 발표하였다. 하지만 2012년 4월 북한은 결국 실패하였지만, 장거리 로켓 미사일 은하3호를 발사하였다. 미국은 계획하였던 식량원조를 취소하였다.

152 같은 달, 김정은은 조선노동당 제1비서,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으로 추대되어 자신의 권력을 확립하였다.<sup>106</sup> 그는 인민무력부, 조선인민군 총정치국과 총참모부의 고위간부에 대한 인사 이동을 단행하였다. 더 나아가 2012년 7월, 총참모장을 해임시키고 그 자리를 잘 알려지지 않은 장군으로 교체함으로써 군에 대한 장악력을 강화하였고, 처음으로 원수라는 칭호를 받았다.

153 2012년 12월 북한은 로켓 발사에 성공하여 첫 인공위성을 궤도에 진입시켰다. 많은 분석가들은 이러한 북한의 시도가 대륙간 탄도 미사일 개발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안보리는 이를 탄도미사일 발사 기술에 대한 실험을 금지하는 결의에 대한 위반이라고 비난하며 더욱더 강력한 제재조치를 채택하였다. 북한은 2013년 2월에 제3차 핵 실험을 실시하였으며, 국제사회에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기를 요구하고 있다.<sup>107</sup>

106\_ 그의 아버지가 남긴 유례에 따라, 김정일은 조선노동당 총비서와 국방위원회 위원장 칭호를 사후에도 보유한다.

107\_ 2013년 2월 12일 북한 외무부 대변인은 안보리 의장을 향해 다음과 같은 담화를 발표하였다. “우리의 핵 실험은 그 어떤 국제법에도 저촉되지 않는 정정당한 자위적 조치이다. 미국은 우리 나라를 핵 선제타격의 대상명단에 올린 지 오래다. 미국의 가중되는 핵 위협에 핵 억제력으로 대처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정당방위

154 북한의 최고권력자로 자리매김한 김정은은 북한 경제를 회생시키고자 하는 의지를 밝혔다. 2013년 3월 31일 김정은은 북한의 핵 무력 개발 우선순위에 경제 발전을 추가하는 “경제건설과 핵 무력 건설을 병진시킬 데 대한 전략적 노선”을 발표하였다. 그는 이어서 그의 담화문에 “인민생활의 향상”이라는 구호를 추가하기 시작하였다. 2013년 11월에는 해외 투자를 유치하고자 14개의 특별경제구역을 수립 하겠다는 계획이 발표되었다.

155 조사위원회는 지난 몇 년 간 평양이 발전하고 있다는 조짐이 많이 보인다는 언급을 해온 신뢰할 만한 국제 소식통들을 면담하였다. 그들은 북한 내에 이동전화 사용이 급증하여 (비록 국제전화는 불가능하지만)가입자가 2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sup>108</sup> 또한 이전에는 조용하던 도로 위에 새로운 차량이 많아졌다고 한다. 그들은 사람들의 왕래가 꽤 있는 새로운 음식점들의 개업에 경탄하기도 한다. 몇몇 관찰자들은 김정은이 공식석상에 부인과 함께 등장하고, 국가가 주관하는 음악 공연에 춤을 추는 무허가 미키마우스와 곰돌이 푸가 짧게나마 등장하며, 자체 개발한 태블릿 컴퓨터를 상업화하는 모습은 그의 아버지나 할아버지 때와는 다른 북한의 현대화 추세라고 지적한다. 김정은은 다양한 운동 경기에 모습을 드러냄으로써 스포츠를 장려하고 있다.

조치이다. 우리는 나라의 최고이익을 수호하기 위하여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 핵무기 전파방지조약에서 탈퇴하고 자위적인 핵 억제력을 갖추는 길을 선택하였다. 60년이 넘는 유엔 역사에 지구상에서 무려 2,000여 차례의 핵 실험들과 9,000여 차례의 위성발사가 진행되었지만 핵 실험이나 위성발사를 하면 안 된다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는 있어본 적이 없다.” (S/2013/91).

108\_ 38 North, US-Korea Institute at SAIS, Johns Hopkins University에 따르면 고려링크의 3G 서비스는 2008년 12월 이집트 통신회사 오라스콤과 조선 체신성의 합작회사 체오 테크놀로지 합작회사(Cheo Technology JV Company)에 의해 제공되기 시작하여 2012년 2월 가입자가 100만 명에 육박하였다고 한다. 그로부터 15개월 후에도 가입자의 수는 두 배 증가하여 2013년 5월에는 200만 명에 달했다. 2011년, 고려링크는 평양 및 14개의 주요 도시와 86개의 소도시 전역에 453개의 기지국을 갖고 있다. 김연호, “A Closer Look at the ‘Explosion of Cell Phone Subscribers’ in North Korea” 참조, 2013년 11월 26일.

156 이와 동시에 김정은 체제 출범 후에도 국경 지대에 대한 경비와 단속은 계속되었다. 2012년과 2013년 한국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 수는 현저히 감소하였다.<sup>109</sup> 조사위원회는 탈북한 이들을 북한으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 북에 남아있는 가족들을 위협하는 것을 포함하여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협박과 강압을 사용하고 있다는 보고를 입수하였다. 남한에서 북한으로 재입국한 북한이탈주민들 중에는 북한 국영방송에 출연하여 북한을 떠난 것에 대한 깊은 후회와 남한에서의 생활을 비난하는 모습을 보여준 사람들도 있었다.<sup>110</sup> 그밖에 보고된 또 다른 통제 조치 중에는 김정은이 북한 엘리트 가족들의 사비에 의한 유학에 새로운 제한을 두고 있다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sup>111</sup>

157 2013년 12월, 김정은의 고모부 장성택의 급작스러운 처형은 김정은이 자신의 권력 기반을 공고화하기 위한 과정의 일환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장성택은 새로운 지도자에 대한 안내인의 역할을 수행하며 북한의 “컨트롤 타워”<sup>112</sup>이자 북한 권력구조상 제2인자로 널리 알려져 왔다. 장성택은 김정일의 누이동생이자 김일성의 딸이었던 김경희의 남편이었다. 이 보고서가 완성된 시점에서 김경희의 상태에 대해서는 확인된 바가 없었다.

109\_ IV장 C 참조.

110\_ Alastair Gale, “North Korea Clamps Down on Defections,” *Wall Street Journal*, 2013년 8월 27일.

111\_ 조사위원회가 면접한 한 전문가에 따르면 북한의 엘리트 계층이 향유하는 특권 중에 하나가 바로 자녀들의 유학이었다. 이러한 특권은 소수의 특정 관료들뿐만 아니라 이를 경제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업가들에게도 확대되었다. 유학하고 있는 북한 고위층 자녀들의 수가 증가하면서 이 상황은 통제의 문제와 복잡하게 얽히고 있다. ECC002.

112\_ Ken E. Gause, “North Korean Leadership Dynamics and Decision-making under Kim Jong-un: A First Year Assessment,” *CNA Strategic Studies*, 2013년 9월.



## F. 외부적 동학과 인권 상황

158 앞서 서술한 북한 내부적 동학에 대한 분석이 북한의 변천과 인권 상황에 관한 배경 설명의 한 측면을 제공하지만, 북한의 특성을 형성하는데 작용했던 특정한 영향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외부 환경을 살펴보는 것도 유용하다. 제2차 세계 대전의 종결로 조선인을 포함한 많은 식민지 민족들은 독립에 대한 열망을 표출하게 되었다. 동시에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한 양극경쟁 체제의 새로운 세계 질서가 등장하였다. 냉전은 북한에 영향을 미친 중요한 국제관계로 작용하였다. 그와 마찬가지로 중요한 영향을 끼친 것은 주변 국가들과의 지역적 역학관계였다.

159 중국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반복해서 주장하여 왔고,<sup>113</sup> 중국에게는 북한의 안정이 주요 우선 순위인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북하려는 상당수의 북한 주민들은 중국 국경을 넘어 동남아에 도달하기 위해 중국 대륙을 횡단하여 왔다.<sup>114</sup> 이러한 과정에서 북한의 인권 침해가 중국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으며, 중국의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처우 문제와 국제인권법 준수 여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sup>115</sup>

160 2002년 정상회담 후 조인된 일본과 북한 사이의 평양선언은 “일본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간의 불행한 과거를 청산하고 현안 사항을 해결하며 결실 있는

113\_ 2013년 5월 24일, 시진핑 국가주석은 김정은의 특사였던 조선 인민군 총정치국장이자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전원회의 의원인 최룡해와의 회담에서 “중국은 관련당국이 모두 비핵화의 목표에서 벗어나서는 안되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지키고 대화와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고 전했다. *Xinhua News Agency*, 2013년 6월 27일. 시진핑 주석은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과의 베이징 정상회담 후 발표한 공동선언에서도 그와 같은 입장을 재확인하였다.

114\_ 조사위원회 공청회의 많은 증언자들과 비공개 면접의 증언자들 역시 이러한 탈북 경로를 확인하였다. 대한변호사협회의 2012년 북한인권백서에 따르면 통상적인 탈북 루트는 중국과 태국을 경유한다. p. 533.

115\_ IV장 C참조.

정치, 경제, 문화적 관계를 수립하는 것이 쌍방의 기본 이익에 부합하는 동시에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적고 있다.<sup>116</sup> 이 절차는 북한이 일본인 납치문제를 인정하고도 그에 따른 후속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실패하였다.<sup>117</sup> 일본 국민들에게는 북한이 계속해서 실험하고 개발하고 있는 핵무기와 탄도 미사일로부터 오는 안보 위협만큼이나 일본인 납치문제가 강력한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161 한국과 북한 양측 모두 한반도의 통일이 목표라고 표명하였다. 한국의 국가보안법에 따르면 “반국가” 단체를 알면서 지지하거나 장려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허가 없이 북한을 방문하는 것도 여전히 금지되어 있다. 최근 몇 년간 한국은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지원 노력을 확대해왔다. 반면, 북한은 북한 이탈주민들과 탈북을 시도하는 사람들이 인신매매를 당한 것이라는 반론을 펼치고 있다. 2007년 이래 남북한 간의 장관급회담은 성사되지 않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협상에 있어 강한 입장과 유연성을 동시에 발휘하여 점진적으로 신뢰를 구축하겠다는 “신뢰외교(Trustpolitik)” 개념을 사용하여 새로운 대북정책 패러다임을 제시하였다.<sup>118</sup> 2013년 6월 12일, 서울에서 예정되었던 남북장관급 회담은 대표단 구성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결렬되었다. 무산된 장관급 회담 외에도 새로운 한국 정부의 북한과의 대화 시도는 엇갈린 결과를 가져왔다. 마라톤 회의 끝에 2013년 9월 개성공단은 재가동하였지만 민족 명절인 추석에 맞이하여 계획되었던 이산가족상봉행사는 북한에 의해 돌연히 취소되어, 오랫동안 생이별을 겪고 있는, 대다수가 연로한 상황인 이산가족들의 부풀었던 희망을 좌절시켰다.

116\_ 평양선언 [http://www.mofa.go.jp/region/asia-paci/n\\_korea/pmv0209/pyongyang.html](http://www.mofa.go.jp/region/asia-paci/n_korea/pmv0209/pyongyang.html) 참조.

117\_ 북한은 일제강점기 당시의 강제징병 문제와 제2차 세계대전 중 일본의 “위안소” 운영과 같은 역사적 문제를 반복해서 제기하고 있다. 일본은 북-일 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일본인 납치문제를 다른 안보 문제와 같은 현안을 포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반박하고 있다.

2014년 신년사에서 “백해무익한 비방증상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과거를 불문하고 남북관계의 개선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한국에 제안한 김정은에 대해 박 대통령은 설날을 겨냥하여 일시적인 이산가족상봉행사를 제안하였다. 북한은 이와 같은 제안을 거절하였다.

162 조사위원회는 6·25전쟁이 종결되지 않았다는 점을 상기하고 있다. 2013년, 한국 참전용사였던 85세의 미국 시민 메릴 뉴먼 씨가 북한에서 체포되어 한 달 이상 구금되었었다. 이 사건은 다시 한 번 북한에 남아있는 6·25전쟁 관련 민감성을 부각시켜주었다. 자국민의 인권을 존중하는 책임 있는 민족국가로서의 북한을 국제사회에 통합시키기 위해서는 이 갈등의 해결이 그 과정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북한은 과거 식민지배에 대한 불만을 계속해서 표현해왔다. 이 사안 또한 그 해결 과정의 일부로 관심이 요구된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에 대한 점진적인 해결을 추구하는 것은 북한이 국제법상의 의무를 즉각적으로 이행해야 할 책임을 면제해주는 것은 아니다.



Chapter IV

---

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

## IV. 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

### A. 사상, 표현 및 종교의 자유 침해

163 자유권규약 제18조는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조사위원회는 국가에 의한 북한 주민의 사상주입과 관련된 인권 침해 혐의를 평가할 때, 자유권규약의 제18조와 함께 제20조도 고려하였다. 아동권리협약 제14조 역시 아동에 대한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관한 위의 동일한 권리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이 또한 참조하였다.

164 조사위원회는 북한 주민이 어떠한 범위에서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정보에 접근하며, 결사체에 가입할 수 있는지를 조사할 때에는 자유권규약의 제19조와 제22조 그리고 아동권리협약의 제12, 13, 15, 17조를 참고하였다.

#### 1. 사상 주입, 선전 및 관련 대중조직의 역할

165 북한 주민은 최고지도자와 조선노동당에 의해 유지되고 있는 유일사상과 10대원칙에 따라 어린 나이부터 사상 주입을 당하는데 이는 자유권규약 제19조와 아동권리협약 제17조가 규정하고 있는 정보를 추구하고 접할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자유권규약 제18조와 아동권리협약 제14조가 보호하고 있는 자유로운 사상 및 양심의 형성과 발달을 억제한다. 유엔 인권위원회는 후자의 권리가 지대한 영향력과 높은 중요성을 갖는데, 이는 모든 사안에 관한 사상의 자유를 포괄한다고 언급하였다. 이와 같은 자유의 근원적인 특성은 공공 비상 사태가 발생했을 때조차도 본 조항은 폄하될 수 없다는 사실을 반영하고 있다.<sup>119</sup>

## (a) 유년기부터 시작되는 사상 주입

166 어린 아이들은 김일성, 김정일, 이제는 김정운을 존경하고 숭배하도록 배운다. 구호가 적혀 있는 표지판, 최고지도자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포스터와 그림들은 아이들이 이러한 메시지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유치원에서부터 찾아 볼 수 있다.<sup>120</sup> 교과과정에는 수학, 미술 및 음악과 같은 보통의 교과목에 더하여 비상식적으로 많은 분량이 10대원칙과 북한의 공식 혁명역사를 비롯한 김일성과 김정일의 업적과 교시에 대한 학습에 할애되어 있다.<sup>121</sup> 북한에서 교사였던 한 사람은 김일성과 김정일이 작성했거나 그들에 관한 사상 교육이 사실상 북한에서 “대부분의 교육을 차지한다”고 지적했다.<sup>122</sup> 이에 대한 학습 내용은 학생들의 이해력과 암기력 수준에 따라 구성된다.<sup>123</sup> 김일성의 사상과 혁명 역사 과목을 잘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다른 과목을 아무리 잘해도 처벌 받을 수 있다.<sup>124</sup> 이러한 교육적 목표는 아동권리협약 제29조가 제시하는 목표와 상치한다.

167 북한이 운영하는 사상교양체계에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주제가 중심이 되고 있다. 하나는 최고지도자에 대한 최대한의 충성심과 헌신을 주입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일본, 미국, 그리고 한국에 대한 적의와 깊은 증오심을 주입하는 것이다. 후자의 목표는 고의적이고 체계적인 노력으로 수행되어 차별, 적의와 폭력에의 선동 그리고 전쟁에의 선전을 조장하여 민족적 증오심을 고취하는 것이므로, 자유권규약

119\_ 일반논평 제22호, para. 1 (CCPR/C/21/Rev.1/Add.4).

120\_ TAP002, TAP005.

121\_ TAP005, TAP006.

122\_ 박광일, “Seoul Summit: Promoting Human Rights in North Korea - Human Rights concerning Education: North Korean Authoritarian Regime’s Infringement on Human Rights Starts from Education,” 2005. 공식 교과목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대원수님 어린시절,” “경애하는 령도자 김정일 장군님 어린시절,” “위대한 수령 김일성 대원수님의 혁명활동,” 그리고 “경애하는 명도자 김정일 장군님 혁명활동”이 포함되어있다, p. 120.

123\_ TAP006, TLC035.

124\_ TLC035.

제20조의 위반에 해당된다.<sup>125</sup>

**168** 아이들은 김일성에 대한 모방을 추구하도록 교육받는다. 예를 들어, 그림을 그리고자 하는 아이들은 최고지도자만 그리도록 장려되거나 김일성을 만족시킬 만한 그림을 그리도록 한다. 좋은 작품은 학교에 전시한다. 일반적으로, 그런 그림들은 김씨 일가를 묘사하거나 일본군 또는 미군을 칼이나 연필로 찌르는 아이들의 모습을 담고 있다.<sup>126</sup>

한 증언자는 학생이었을 당시, 김일성을 만족시키는 그림 외에 다른 것을 그려야 한다는 생각이 떠오른 적이 없다고 말하였다. 그는 위대한 전사가 되는 것, 즉 적을 죽이는 암살자가 되어 한국으로 가서 김일성과 김정일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것에 관심을 가졌다.<sup>127</sup>

**169** 아이들은 그들의 부모를 위한 마음보다도 김일성과 김정일의 가치를 위해서 목숨을 걸 의지를 갖도록 교육받는다.<sup>128</sup> 아이들은 국가를 보호하고 주민들을 부양하는 아버지 같은 인물로 김일성을 표현하는 애국적인 이미지와 구호에 둘러싸여 있다.<sup>129</sup> 이러한 메시지와 사상 주입은 유년기 시절에서부터 지도자에 대한 충심을 형성할 뿐만 아니라 부모보다도 최고지도자에 대한 더 큰 존경과 헌신을 강요함

125\_ 제20조는 그러한 선전과 고취가 법률로 금지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그와 같은 행위에 대해 필요한 법률적인 조치를 채택해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를 실질적으로 금지하고 국가 자신도 그러한 선전과 고취로부터 삼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유권위원회 일반논평 제11호, paras. 1~2 (HRI/GEN/1/Rev.9 (Vol. I)).

126\_ TAP005. AP통신 사진기자가 찍은 사진들 중에는 다음과 같은 설명이 붙여져 있었다: “2013년 3월 9일, 미군을 죽이는 아이들을 그린 유치원 아이들의 그림이 평양 도심의 개선 유치원에 걸려있다. 북한 사람들의 반미주의에 대한 체계적인 사상 유입은 유치원에서부터 시작한다” [http://www.nationalgeographic.com/125/photos/north-korea-guttenfelder/?utm\\_source=NatGeocom&utm\\_medium=Email&utm\\_content=pom-20131103&utm\\_campaign=Content#.UpdduNKkpaB](http://www.nationalgeographic.com/125/photos/north-korea-guttenfelder/?utm_source=NatGeocom&utm_medium=Email&utm_content=pom-20131103&utm_campaign=Content#.UpdduNKkpaB) 참조.

127\_ TAP005.

128\_ TSH019.

129\_ TAP005, TLC022.



으로써 가족관계의 균열을 가져오는데 효과적으로 작용한다.

**170** 모든 교과목을 가르치는 교수법도 국가 이념에 부합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한 증언자에 따르면 화학 수업 시간에 화학 가스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 남북한 당국이 가스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비교를 해야 한다고 한다.<sup>130</sup> 이 이야기에 따르면, 북한은 공업 발전을 위해 가스를 사용하는 반면, 한국은 생활에 불만족스러운 시위대를 향해 던지는 최루 가스로 가스를 사용한다고 설명하는 식이다. 1981년 연설에서 김일성은 다음을 상기시켰다:

계급교양에서 중요한 것은 반제국주의 교육, 미국의 제국주의와 일본의 군사주의에 대한 교양을 강화시키는 것이다. 그들은 조선 민족의 원수이며 조선 혁명의 타도 대상이다. 우리는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불굴의 의지를 갖고 싸울 수 있도록 반제국, 반미, 항일 교육을 강화하여야 한다. 우리는 또한 남한의 매국자본주의자들과, 반동분자 관료들, 반인민 파시스트적인 정권에 대한 증오심을 품도록 인민을 개조시켜야 하며 타협의 여지 없이 그들과 싸울 수 있는 정신으로 무장해야 한다.<sup>131</sup>

**171** 아동권리협약 제29조는 아동 교육의 목적을 제시하고 있다. 김씨 일가의 숭배에 불균형적으로 할애된 교육 시간은 이러한 목적에 배치된다. 가장 경계해야 할 부분은 제29조제1항 (c)와 (d)에 직접적으로 배치되는 증오, 폭력과 인종차별에 관한 가르침이다.

130\_ TLC031.

131\_ 김정일, “당사상 사업을 더욱 개선 강화할 데 대하여: 조선노동당 사상일군대회에서 하신 결론,” 1981년 3월 8일 (평양, 외국문출판사, 1989). <http://www.korea-dpr.com/lib/215.pdf> 참조.

## (b) 집단체조와 기타 강제적 집단 선동 행사

172 북한의 어린이들과 대학생들은 정치적 목적으로 수행되는 퍼레이드, 군중 집회, 그리고 기타 안무가 포함된 공연에 정기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이러한 공연 중 가장 큰 공연은 오늘날 일반적으로 집단체조(Mass Games)이라고 일컬어지는 연례적인 대중 체조이다.

173 이러한 집단체조에는 약 10만 명의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참여하여 체조, 춤, 곡예와 드라마를 철저하게 정해진 대로 공연한다. 1987년, 집단체조의 제작자들에게 전달한 장문의 연설에서 김정일은 집단체조가 단순히 참가자들의 건강하고 강인한 체력을 양성하는 데에만 목적이 있지 않고 학생들에게 고도의 조직성과 규율성 그리고 집단주의 정신을 형성하는데 있다고 설명하였다.<sup>132</sup> 그는 이어서 다음과 같이 발언하였다.

청소년 학생들은 자기 한 사람이 동작을 잘못하면 집단체조에 손상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자각하고 자신의 모든 사고와 행동을 집단에 융화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한다. ... 집단체조도 하나의 작품인 만큼 ... 집단체조 창작자들은 집단체조에서 수령님의 위대성과 영도의 현명성, 불멸의 혁명 업적, 고매한 공산주의적 덕성을 폭넓고 깊이 있게 형상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세기적인 변혁을 이룩해가는 우리 당의 위대성과 빛나는 업적을 집단체조에 잘 반영하여야 한다 ...

174 집단체조는 북한 외화 수입의 주요 원천이 되었다. 이는 많은 수의 관광객들을 끌어들이는데, 이들 관광객들은 (국가가 정한 이상적인 신체 조건을 가지고 있지 않은 아이들이 아닌 이상) 참여를 강요 받는 아이들이 겪는 인권 침해에 대해 대부분 무지하다. 훈련 기간은 거의 일년 내내 진행되며, 4~6개월 정도는 학교 수업

132\_ 김정일, "집단체조를 더욱 발전시킬 데 대하여: 집단체조 창작자들과 한 담화," 1987년 4월 11일. (평양, 외국문출판사, 2006), 또한 <http://www.anightinpyongyang.com/pdf/02.05.01.pdf> 참조.

시간을 희생하고 하루 종일 연습을 한다. 훈련과 연습은 가혹하다. 자기가 맡은 역할을 완벽하게 해내지 못하는 어린이들은 체벌을 받거나 저녁 연습을 추가로 해야 한다.

- 대학교에서 체육을 가르쳤던 전직 교사는 그가 집단체조를 위해 학생들을 훈련시켜야 했다고 조사위원회에 알렸다. 그는 학생들이 매우 혹독한 환경에서 하루에 6시간에서 12시간 정도 훈련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대부분의 참가자들이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이거나 대학생이었지만, 일부 군부대 인원들도 참여했다고 한다. 장애가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은 제외됐다. 이 증언자는 많은 아이들이 피로로 훈련 중에 쓰러졌다고 회상했다. 많은 수의 참가자들은 심각한 부상을 당하기도 하였다.<sup>133</sup>
- 조사위원회의 도쿄 공청회에서 L양은 평양의 김일성 경기장에서 김정일이 보는 가운데 펼쳐지는 공연의 짧은 일부분을 그녀의 학급 전체가 맡아서 해야 했기 때문에 대학생 때 한 학기 전체를 빠지고 하루에 10시간씩 6개월 동안 연습해야 했다고 하였다. 강도 높은 훈련 때문에 참가자들은 탈진으로 기절하기도 하였다. 특히 여름에는 뜨거운 햇빛 아래, 콘크리트 바닥 위에서 연습을 해야 했기 때문에 기절하는 일이 흔했다. 연습은 완벽을 추구했다. 계속해서 실수를 하는 사람은 훈련장에 자정까지 남아야 하는 처벌을 받았다. L양은 선생님들이 급성 맹장의 고통을 참아가며 연습한 7~8살 정도의 소년의 예를 들었던 것을 기억하였다. 그 소년은 결국 시의 적절하게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하였고, 사망한 아이는 김정일이 지켜보기로 한 행사를 위해 생명을 바쳤기 때문에 영웅으로 추앙받았다.<sup>134</sup>

**175** 긴 기간 동안 혹독한 환경에서 엄격한 연습의 반복을 거쳐 거행되는 집단체조는 어린이들의 건강과 행복에 위협한 일이다. 조사위원회는 이와 같은 어린이들에 대한 착취는 어린이들이 휴식을 취하고 여가생활을 즐길 권리와 어린이들의 교육을 방해하거나 어린이들의 건강에 해로운 일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권리를 제시하는 아동권리협약 제31조와 제32조에 위반되는 것임을 밝혀 둔다.

133\_ TSH009.

134\_ 도쿄 공청회, 2013년 8월 29일 오후(비공개 면접에서 증언자는 추가 정보를 제공하였다).

### (c) 생활총화의 실시

176 북한 어린이들은 어린 나이부터 “생활총화”를 실시해야 한다. 매주 소규모 그룹으로 모여, 돌아가면서 한 명씩 일어나 지난 한 주 동안 자기가 한 일을 설명하는데 김일성 사상의 교시와 10대원칙에 따라 최선을 다하여 어떻게 살았는지 이야기한다. 총화 시간에는 10대원칙도 암송한다. 어린이들은 이전 한 주 동안 어떤 방식으로든, 예를 들어 수업시간에 결석을 했다거나 기대에 부응할 만큼 기여를 하지 못한 경우, 잘못된 것을 스스로 반성하여 자기 자신을 질책해야 한다. 그 후 더 잘하겠다는 다짐을 해야 한다. 그들은 또한 같은 그룹의 어린이들 중 적어도 한 명에 대해서 상대방의 과오를 지적해야 한다. 비판의 대상을 찾을 때까지 그들은 앉을 수 없다.

177 주간 “생활총화”는 국가가 주민들의 의식적인 약점을 빌미로 감시하는 장치로 활용된다.<sup>135</sup> 이러한 주 단위 회의는 북한 주민들 전 생애에 걸쳐 시행된다. 감옥과 노동단련대에서도 실시한다. 공공건설 작업에 동원된 주민들도 이를 수행한다.

178 특히, 10대원칙 중 제4조제5항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음 사항을 요구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혁명사상을 배우는 학습회, 강연회, 강습을 비롯한 집체 학습에 빠짐없이 성실히 참가하여 매일 2시간 이상 학습하는 규율을 철저히 세우고 학습을 생활화, 습성화하며 학습을 게을리 하거나 방해하는 현상을 반대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한다.<sup>136</sup>

179 2013년 8월 유일사상 10대원칙이 39년 만에 처음으로 개정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김일성 이름 옆에 김정일의 이름을 추가하여 사람들이 충성하도록 되어있

135\_ TAP006, TAP007, TAP008, TAP012, TAP015, TLC005, TLC035, TSH052.

136\_ NKHR(Citizens' Alliance for North Korean Human Rights)의 영문 번역.

다. 또한 개정 한 달 후 보도된 바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개정된 10대원칙]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전국적으로 공개 총화와 글쓰기 대회를 개최하도록 명령했다.”<sup>137</sup>

**180** 2013년 12월 김정은의 고모부 장성택의 처형 이후, 북한 전역에 걸쳐 북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글로 충성심을 맹세하고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는 사상 주입 시간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장성택 처형은 북한 주민들에게 상당히 당황스럽고 공포스러운 사건이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sup>138</sup> 이 처형 과정은 투명하지도 않았고, 부적절하게 성급히 진행되었으며, 결국 폭력적으로 끝이 났으나, 이에 대한 비판의 여지는 보이지 않았다. 오직 최고지도자의 이해 관계와 지도층의 명령을 실현 하는데 도움이 되는 표현만이 용인될 뿐이다.

#### (d) 대중조직에 대한 강제적 가입

**181** 자유권규약 제22조, 아동권리협약 제15조 그리고 북한 헌법은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보장한다.<sup>139</sup>

**182** 북한은 민주주의적 사회단체를 결성하고 싶은 사람은 조직의 목적, 회원 수, 조직 구성도, 결성일자, 그리고 대표의 성명을 명시한 신청서와 기관 관련 규정 사본을 30일 이전에 내각에 제출하면 된다고 주장하여 왔다.<sup>140</sup> 조선문화예술총동

137\_ “NK Adds Kim Jong Il to ‘Ten Principles,’” *Daily NK*, 2013년 8월 9일. <http://www.dailynk.com/english/read.php?catald=nk01500&num=10828>; “Sessions Ordered to Check on Ten Principles,” *Daily NK*, 2013년 9월 24일. <http://www.dailynk.com/english/read.php?catald=nk01500&num=10998>.

138\_ “Execution prompts surprise, fear inside North Korea” 참조, *BBC News*, 2013년 12월 16일. <http://www.bbc.co.uk/news/world-asia-25399143> 참조.

139\_ 제67조는 “공민은 언론, 출판, 집회, 시위와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국가는 민주주의적정당, 사회단체의 자유로운 활동조건을 보장한다”고 되어 있다.

140\_ UPR DPRK national report, A/HRC/WG.6/6/PRK/1, para. 44.

맹, 민주변호사협회, 반핵평화위원회와 아프리카-아시아 연대 위원회와 같은 단체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 모든 기관들은 조선노동당의 관리 아래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sup>141</sup> 사실상 국가와 조선노동당의 통제 아래에 있지 않은 공식적으로 등록된 정당이나 시민사회 단체는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다.

**183** 모든 주민은 조선노동당의 감시 아래에 있는 대중조직의 활동에 가입하고 참여해야 한다.<sup>142</sup> 회원 가입은 인민학교 입학과 동시에 시작한다.<sup>143</sup> 7세와 13세 사이의 어린이들은 소년단의 회원이 된다. 그들의 활동은 14세에서 30세의 북한 주민으로 구성된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의 간부들이 감독한다.<sup>144</sup> 30세 이상의 주민은 직업과 혼인 여부에 따라 조선직업총동맹, 조선민주여성동맹, 또는 농업근로자동맹에 가입한다.<sup>145</sup> 계속해서 변화하는 사회 경제적인 여건으로 당원이 되는 것이 과거에 비해 덜 매력적이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주민들은 조선노동당원이 되는 것을 여전히 갈망한다. 하지만 이는 북한 인구의 15%에게만 해당되는 특권이다. 당원은 당이 통제하고 있는 대중조직의 간부가 된다.<sup>146</sup> 이러한 조직의 회원 자격은 죽을 때까지 유지해야 한다.<sup>147</sup> 한 증언자에 따르면 강제송환되어 구금되었다가 풀려난 사람도 석방되면서 조직의 회원 활동을 재개한다.<sup>148</sup>

**184** 이와 같이 대중조직에의 강제 가입은 몇 가지 기본적인 기능을 제공한다.

141\_ KINU,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3), p. 296.

142\_ TAP007, TSH052.

143\_ TAP006.

144\_ TAP015.

145\_ TAP005, TAP006, TAP007.

146\_ TAP007.

147\_ TAP007; KINU,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3), pp. 296~297; International Coalition to Stop Crimes against Humanity in North Korea (ICNK), "Introduction to North Korea," pp. 18~19.

148\_ TAP007.

하나는 직장에서든지 직장 밖에서든지 사람들의 일상 활동을 조직하고 감시하는 기능이다. 또 다른 하나는 정기적인 김일성 사상의 학습시간을 통해 지속적인 사상 주입 시간을 확보하고, 시사 또는 국제 정세와 관련된 정보를 나누는 것이다.<sup>149</sup>

-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의 전직 간부 한 명은 청년동맹원이 기본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의무의 네 가지 범주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첫 번째 최우선적인 의무는 “김씨 일가에 대한 숭배”이다. 두 번째는 혁명사상으로 “인민을 무장”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충성심에 대한 감시와 평가를 통해 “민족을 보장”할 의무이다. 네 번째는 건설 및 관련 작업을 수행할 사람들을 선별, 동원하여 “사회주의 경제를 건설”할 의무이다.<sup>150</sup>
- 한 때 소년단의 단원이었던 한 증언자는 모범 학생이 되기 위해, 학업과 방과 후 기타 활동에서도 본보기를 보이려고 노력했던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그녀와 다른 학생들은 폐지와 폐비닐과 같은 물품을 제출하여 학교에 기여하였다.<sup>151</sup>
- 또 다른 증언자는 소년단의 단원들이 조선노동당의 구호를 거둬 외치고 거리에서 대중의 관심을 끌기 위해 북을 치는 활동에 관여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소년단 단원들은 국가의 수입을 창출하는 활동과 선거 기간 동안 구호를 외치는 일에 가담해야 하였다.<sup>152</sup>
- 조선민주여성동맹(이하 여맹)의 간부였던 한 증언자는 여맹 간부의 여러 임무 중 하나는 주체사상과 혁명 역사 그리고 국내외 정세에 관한 강연회가 여맹원들에게 제공되도록 보장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여맹원들은 외화를 벌기 위해 팔 수 있는 물건을 획득해야 했다. 예를 들어, 어느 한 해에는 금 1g, 토끼 가죽 두 개, 개 가죽 두 개를 제출해야 했는데, 이렇게 수거된 물건들은 중앙당에 전달되었다.<sup>153</sup>

**185** 청년동맹의 주요 임무 중에 하나는 회원들을 동원하고 공공건설 업무를 수행하는 “자발적인” 노동 단위들을 관리하는 것이다. 17세 이상의 일반 주민들은 도

149\_ TAP006, TAP007, TSH019.

150\_ TAP006.

151\_ TAP015.

152\_ TLC035.

153\_ TAP007.

로 또는 공공시설물을 짓는 다양한 건설 업무 그룹에 동원되고 소속된다고 볼 수 있다. 군(county) 단위에서는 1천 명 규모의 집단이 필요하다. 도 단위에서는 2만 명 규모 그리고 평양과 같은 대도시의 건설 업무에는 많게는 10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동원된다.<sup>154</sup>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선별된 사람들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국가를 위해 일할 수 있는 것을 명예로 생각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같은 참여는 조선노동당 당원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거나 진화하기 위한 디딤돌로 간주된다.

186 이와 같은 임무에 참여하기를 거부하는 것은 사회적 및 정치적 유동성에 대한 가능성을 감소시키고 개인 기록에 오점을 남길 것이기 때문에 선택지에 없는 것으로 보인다.<sup>155</sup> 모든 북한 주민에게는 주민등록체계에 따라 신분증이 발급되고 이를 소지하게 되는데, 이 외에 국가는 각 개인이 성공하고 사회에서 진급할 수 있는 가능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별도의 기밀 공민등록자료 체계를 관리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개인의 열람은 허용되지 않는다.<sup>156</sup>

#### (e) 선전·선동의 편재

187 북한 주민들은 언제 어디에서나 지속적으로 국가 선전에 노출되어 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내에 선전선동부가 선전 지시를 기본적으로 지휘하는 임무를 담당하고 있다.<sup>157</sup> 1981년에 “당 선전일군들”에게 전달한 연설에서 김정일은 “... 선전선동 사업의 탄탄한 기초는 유일한 당 중앙위원회의 영도력을 기반으로 세워졌다”고 하였다. 김정일은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건설하기 위한 사상교양과 선전·

154\_ TAP006, TAP009.

155\_ TAP008, TAP009.

156\_ 이에 대한 부연설명은 IV장 B를 참조.

157\_ TAP009.



선동을 강화할 방법에 대해 지도하였다. 그는 “구두선동,” “예술가에 의한 선동,” 시각 자료의 효과적인 사용 및 간부들이 모범적인 실천은 모두 강력하고 영향력 있는 선동의 다양한 형태라고 이야기하였다.<sup>158</sup>

**188** 지방 행정기관, 학교, 직장, 기타 여러 사회적 수준에서 활동하는 선전 단위들은 중앙에서 결정된 메시지들을 재생산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또한 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의 지시에 따라 선전 자료들을 게시한다. 예를 들면 각 도의 미술부는 최고지도자와 그들의 업적을 그리고 이 그림들의 전시회를 열며 공공기관 및 기업의 복도와 벽에 이 그림을 걸어야 할 임무를 맡고 있다.<sup>159</sup> 평양에 있는 만수대창작사는 김씨 일가를 찬양하는 선전 그림, 벽화, 포스터, 전광판 및 기념비를 제작하는 중앙 기구로 알려져 있다. 만수대창작사는 약 1천여 명의 미술가들을 포함하여 4천여 명의 주민을 고용한 세계 최대의 미술 공장이다.<sup>160</sup>

**189** 어린이들이 그린 그림 중에 특별히 우수한 그림들은 그 학생의 학교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에도 전시된다. 대학교와 군에도 지정된 미술가들이 있는데 이들은 대학교 내 강당과 부지 곳곳에 게시할 포스터와 전광판을 위한 선전 자료를 만들거나 교과서 및 군 사관학교 교육용 기타 출판물의 삽화를 그린다.<sup>161</sup>

**190** 최고지도자의 인물화와 기념비는 어디에나 존재한다. 조선중앙통신은 2013년 4월 “국가예산에서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 지출총액의 44.8%의 자금을 돌려

158\_ 김정일, “사상사업을 강화할 데에 대하여: 당 사상일군 대회 결론”.

159\_ TAP002.

160\_ “Mansudae Art Studio, North Korea’s Colossal Monument Factory,” Business Week, 2013년 6월 6일. <http://www.businessweek.com/articles/2013-06-06/mansudae-art-studio-north-koreas-colossal-monument-factory> 참조.

161\_ TAP005.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100돐에 드리는 기념비적창조물들을 일떠세우고 주체화, 현재화된 자립경제의 물질기술적 토대를 튼튼히 다지며 조국의 면모를 일신시키기 위한 사업을 자금적으로 보장하였다”고 발표했다.<sup>162</sup> 북한의 출처를 인용한 또 다른 신문은 3,200개의 영생탑과 400개의 모자이크 벽화, 그리고 23미터 높이의 김일성, 김정일 동상 건립을 위해 미화 약 2억 달러 상당의 비용이 쓰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sup>163</sup>

191 북한의 각 가정에는 적어도 세 개의 그림 즉, 김일성, 김정일 그리고 둘이 토론 중인 모습을 그린 세 가지의 초상화가 액자에 걸려있어야 한다. 김정일의 초상화를 전시하라는 명령은 아직 없다. 이는 김정일이 확립한 전례를 따르는 것일 수도 있다. 김정일은 김일성 사후 전통적인 3년의 애도 기간이 끝날 때까지 자신의 초상화를 추가하지 않았다. 모든 북한 주민들이 김일성 초상화 배지를 충성의 표시로 달아야 하는 것은 널리 알려진 바이다.<sup>164</sup> 모든 사람들은 이와 같은 초상화 앞에서 허리 굽혀 인사를 하고 이들을 완전 새 것처럼 보존해야 한다.<sup>165</sup>

192 다음과 같은 증언들이 보여주듯이, 북한 지도자들의 이미지에 대한 그 어떠한 손상이나 파괴도 가장 심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정치범죄로 간주된다.

162\_ 조선중앙통신은 홈페이지에 밝혀진 대로 북한의 국영 방송 기관이다. “Review of Fulfillment of State Budget for Last Year and State Budget for This Year,” KCNA, 2013년 4월 1일. <http://www.kcna.co.jp/item/2013/201304/news01/20130401-20ee.html>.

163\_ “N. Korea spent 530 million dollars in idolization propoganda,” *Dong-A Ilbo*, 2013년 11월 28일. <http://english.donga.com/srv/service.php3?bicode=050000&biid=2013112843348> 참조.

164\_ 예를 들어: “The day Kim Il-sung died his first death,” *Asia Times*, 2013년 9월 25일. <http://www.atimes.com/atimes/Korea/KOR-01-250913.html> 참조; Barbara Demick, *Nothing to Envy: Ordinary Lives in North Korea* (New York, Spiegel & Grau, 2009), p. 46.

165\_ TAP009; 2007년 5월, 중앙당 조직부가 “수령님과 장군님의 초상화에 대한 정성사업 집행정형을 전면적으로 검열할 데 대한”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KINU,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3), p. 282.

- 한 증언자는 자기 아버지가 옆질러진 음료수를 닦기 위해 사용한 냇짜가 지난 신문에 김정일의 이미지가 인쇄되어 있었는데 의도치 않게 이를 더럽힌 일로 결국 정치범 수용소(‘관리소’)에 보내진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나머지 가족이 같은 운명에 처해지지는 않았지만 적대 ‘성분’으로 취급되어 수십 년 간 혹독한 차별에 시달렸다.<sup>166</sup>
- 한 증언자에 따르면, 함경북도 한 병원의 직원은 매주 의무적으로 김일성 초상화를 닦다가 어느 날 실수로 액자의 유리를 깨뜨려 국가안전보위부의 조사를 한 달간 받았다.<sup>167</sup>

193 2012년 7월 조선중앙통신은 한 남자의 진술을 게재했는데, 북한 당국은 그가 한국과 미국을 배후로 김일성 일가의 동상과 기념비 등을 파괴하는 “테러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 기사는 그 남자가 곧 처형에 처해질 것임을 암시하였다.<sup>168</sup> 다른 소식통은 그가 단지 그 행위 때문에 처형되었다고 확인해 주었다.<sup>169</sup>

194 선전은 북한 주민의 일상 생활 모든 측면에 침투하고 있다. 국가가 통제하는 언론 외에도 북한 주민은 그들의 가정이나 공공 장소에서도 피할 수 없는 선전에 노출되어 있다. 북한을 방문한 한 외국인 여성은 공공 장소에서 국가 선전이 확성기를 통해 얼마나 만연하고 있는지 보고 놀랐다고 하며 조사위원회에게 그녀의 경험을 이야기하였다.<sup>170</sup> 텔레비전과 라디오 방송의 통제(아래를 참조)뿐만 아니라 북한 주민들은 “고정 통로(fixed line)” 방송을 통해 국가로부터 정보를 얻는다. 고정 통로 방송 시스템은 북한의 각 가정에 고정 설치된 스피커를 통해 방송된다. 관리들은 이 스피커가 제대로 설치, 작동하는지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한다. 이러한 고정 통로 방송은 “금지된” 뉴스와 정보(즉, 외부세계가 알아서는 안 되는 뉴스 등)를 전달하는데

166\_ TBG005.

167\_ TSH051.

168\_ <http://www.kcna.co.jp/item/2012/201207/news19/20120719-08ee.html> 참조.

169\_ 그러나 TLC004는 그 남자가 체포, 처형된 진짜 이유는 그가 정치적으로 민감한 물건인 카메라와 라디오를 밀수하여 들어왔기 때문이라고 한다. IV장 E참조.

170\_ 조사위원회 제출: 비공개 출처.

사용되며 비상 사태에도 활용된다. 고정 통로 방송을 통해 전해지는 정보는 공장과 농장지대의 상황과 관련된 내용 및 각 집단 농장의 생산·수확 성과를 포함한다. 범죄자나 각종 범죄의 처벌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도 이 고정 통로를 통해 방송한다. 범죄자의 이름과 그들의 주거 지역에 대한 정보도 보도하며, 이는 다른 주민들에게 경고하면서 같은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을 미리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sup>171</sup>

- 정진화 양은 철도 라디오 방송의 신문을 읽는 아나운서로 일했다. 최근에 개별적인 교통 수단이 등장하기는 했지만 열차는 여전히 북한에서 장거리 이동의 주요 교통 수단이다. 그렇기 때문에 열차는 사상 주입을 위한 훌륭한 기회를 제공한다. 철도 방송원으로 일했던 정씨는 ‘노동신문’(조선노동당 당보)의 특정 기사들을 읽도록 평양으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를 받았다. 열차 라디오 방송은 육성으로 기사들을 읽는 업무뿐만 아니라 평양의 당 선전부로부터 뉴스와 사전에 녹음된 내용을 담고 있는 카세트테이프(후에는 CD)를 방송할 의무를 지고 있다.<sup>172</sup>
- 그녀는 “노동신문에서 읽는 내용은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한 것 같습니다. 1면과 2면은 김씨 일가와 관련된 정치적인 이슈를 다룹니다. 3면과 4면은 발전, 경제, 또는 북한 주민과 관련된 사안이고, 5면과 6면은 남한이나 미국과 같은 다른 나라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소위 신문이라는 지면 위에서 다루는 내용은 지금이나 20년 전이나 변함이 없습니다”고 하였다.<sup>173</sup>

195 아나운서들은 조선노동당 산하 선전선동부로부터 신문을 읽는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지도를 받는다. 말하는 방법과 강조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 매뉴얼이 있다. 예를 들어 위대한 지도자 또는 경애하는 지도자의 이름을 말할 때는 존경과 애정을 전달하기 위해 적용해야 하는 특별히 느리고 높은 음조를 사용하여 발음하는 방법이 있다. 다른 한편, 미국이나 남한에 대해 이야기 할 때는 신경에 거슬리는 음조로 말해야 한다. 적의와 증오를 전달하기 위해서 단어를 씹듯이 발음해야 한다.

171\_ TAP009.

172\_ 서울 공청회, 2013년 8월 22일 오후(비공개 면접에서 증언자가 제공한 추가 세부내용 포함).

173\_ 서울 공청회, 2013년 8월 22일 오후(00:10:48).

모든 열차에는 승객들뿐만 아니라 라디오 뉴스 아나운서를 포함한 승무원들을 감시하는 임무를 맡은 정치 요원이 탑승하고 있다. 방송원들이 위대한 또는 경애하는 지도자의 이름을 잘못 발음하거나 더듬는 일로 곤경에 처할 수도 있다. 기차 위의 전류가 약하게 흘러서 녹음된 테이프의 소리가 잘못 전달될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 방송원은 신속하게 테이프를 꺼내어 지도자들의 이름이 왜곡되는 즉, 용납할 수 없는 형태로 방송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196 북한 주민들은 유년기 시절부터 김씨 일가를 존경하고 국가 이념을 그들 자신의 사상과 양심으로 내면화해야 한다고 교육받는다. 조사위원회는 북한 주민들이 그들의 생애 전반에 걸쳐 직장에서도 그 밖에서도, 활동이 규제되고 국가에 의해 면밀히 감시되고 있다는 점을 발견했다. 북한 주민 개개인은 국가가 통제하는 사회단체의 활동에 가입, 참여할 수밖에 없고 다른 선택권이 없다. 그에 따르지 않으면 그 사람의 기록에 오점이 남고 사회적 성공 가능성에 지장이 생길 것이기 때문이다.

## 2. 엄격한 통제하의 관영언론을 통한 정보 통제 및 비정치적 정보를 포함한 외부 소식의 차단

197 많은 수의 북한이탈주민들이 조사위원회에 전달한 내용의 느낌을 요약하던 중, 한 증언자는 다음과 같이 단호하게 증언하였다:

“우리는 세뇌되었습니다 ... 바깥 세상에 대해 아는 것이 없습니다. 네 살 정도 돼서 말을 할 수 있을 때부터 세뇌 당하고, 탁아소에서부터 교육을 통해 세뇌를 당하는데, 이는 인생 전반에 걸쳐, 사회에 나가서도, 심지어 집 안에서도 일어나는 일입니다 ... 북한은 바깥 세상과 차단되어 있는, 울타리가 쳐진 세상입니다. 그 울타리 너머로 들어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야 합니다. 라디오를 듣는 것도 특정 채널에만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바깥 세상에 대해 눈도 멀고, 귀도 먹고, 무슨 일이 일어

나는지 알 수 없기를 바라는 것입니다.”<sup>174</sup>

### (a) 텔레비전과 라디오의 통제

**198** 북한에는 네 개의 텔레비전 방송 채널이 있다. 하나는 “보통 사람들” 즉, 평양 밖의 사람들도 포함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조선중앙TV이다. 또 다른 채널인 조선교육문화방송은 평양 주민만을 위한 채널이다. 세 번째, 개성TV는 대남방송이다. 그리고 주말이 되면 방송되는 외국인을 위한 만수대방송이 북한의 네 번째 TV채널이다. 평양에 있는 외국인들은 한국어로 된 다른 채널들을 볼 수도 있지만, 만수대방송 프로그램은 한국어 자막이 나오고 직접 외국어로 방송된다. 중국어와 러시아어로 방송되는 프로그램들이 있다. 평성, 남포, 그리고 평양 인접 지역의 사람들도 조선교육문화방송과 만수대방송과 같이 평양 주민만을 위한 채널을 시청할 수 있다.<sup>175</sup>

**199** 직접적인 선전 방송 외에도 노래와 드라마로 구성된 다른 프로그램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그러한 방송의 기저에 깔려 있는 주제는 여전히 국가에 충성하는 내용이다. 남녀 간의 로맨스도 정권에 대한 충성을 맹세하는 전형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sup>176</sup> 영화 또한 “혁명 투쟁의 각 단계에 맞게 선동하는 역할을 연기한다”는 김일성과 김정일의 지시에 따라 감독한다.<sup>177</sup>

**200** 북한에서 사람들이 텔레비전 세트를 구매할 때, 그들은 27국(Department or Bureau 27)으로도 알려진 국가안전보위부 산하 전파감시국(Transmission

174\_ TAP003.

175\_ TAP009.

176\_ 정진화, 서울 공청회, 2013년 8월 22일 오후.

177\_ 김정일의 “영화와 연출”에서 김일성을 인용 (평양, 외국문출판사, 1987). <http://www.koreadpr.com/lib/209.pdf> 참조.

Surveillance Bureau)에 텔레비전을 등록해야 한다. 이 부서는 각 텔레비전이 허용된 채널만 수신하고, 한국, 중국 및 러시아로부터의 방송 수신을 막도록 장비를 조작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북한은 또한 외국방송을 막을 수 있는 고도의 기술장비를 배치하고 있다.<sup>178</sup> 하지만 전력난에 시달리는 북한에서 에너지 소비가 큰 전파 방해 노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201** 라디오 주파수의 각기 다른 대역과 대기 조건 및 태양 활동에 따라 변화하는 라디오 신호 때문에 라디오 방송은 통제하기가 더 어렵다. 예를 들어 여름에는 “조선중앙방송”이 나오던 (국가 승인을 받은) 라디오 채널이 겨울이 되면 한국 라디오 채널인 “한민족방송”으로 전환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북한은 일반 주민이 라디오를 소유하는 것을 보통 허용하지 않는다. 자동차 안에 장착된 라디오는 일반 북한 주민이 차량을 취득하기 전에 제거된다. 북한 주민에게 카세트녹음기 소유는 허용된다. 카세트녹음기들은 주로 외국에서 만들어진 것들인데 라디오가 탑재되어 있다. “체신관리국(Communication Maintenance Bureau)”과 인민보안부가 북한 주민들이 카세트녹음기를 사용하기 전에 라디오 부속품들을 제거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프리다이얼(free-dial) 라디오의 사용은 특정 기관에만 국한되어 있거나 비상 사태시 군에서 사용된다.<sup>179</sup>

**202** 기술적인 지식이 조금 있는 북한 주민들은 감시를 피해 외국 방송을 포함하여 라디오를 들을 줄 안다. 숙련된 기술자들은 녹음기에서 제거된 부품 대신에 못 같은 것으로 회로를 완성해서 라디오 방송을 들을 수 있는데, 이어폰을 끼고 들으면 순전히 녹음기를 듣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한국에 위치해 있거나 한국에서

178\_ TAP009.

179\_ TAP009, TJH008.

설립한 라디오 단파 방송들은 적절한 장치만 있으면 쉽게 들을 수 있다.<sup>180</sup> 서울에 기반을 둔 이와 같은 단파 방송국들은 일부 미국의 지원을 받고 있기도 한데, 북한 이탈주민들이 운영하고 있으며 청취자들에게 북한 바깥 소식을 전할 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는 알려지지 않은 북한과 정권의 활동에 관한 뉴스도 전해준다.<sup>181</sup>

**203** 중국제 휴대용 프리튜닝(free-tuning) 라디오는 비싸지도 않고 잘 숨겨 가지고 올 수 있기 때문에 잡힐 위험이 명백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 주민들이 비밀리에 이를 구매해서 북한 내부로 가져온다는 보고가 있다.<sup>182</sup> 1999년에는 김정일이 소형 휴대 라디오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을 스파이로 간주하라는 명령을 국가안전보위부에 내린 것으로 알려져 있다. 27국 간부들은 개인 가정에 기습 방문 검열을 실시하여 국가 승인을 받은 라디오 및 녹음기와 텔레비전을 조작했는지 여부와 외국 방송을 듣기 위해 중국으로부터 밀반입해 온 제품이 없는지 조사한다. 금지된 제품이 발각되면 그들의 텔레비전 세트나 라디오는 몰수되고 사상 재교육을 받는다.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간부인 경우에는 직책을 잃게 된다.<sup>183</sup>

- 한 증언자는 중국 국경 근처 함경북도에서 텔레비전과 라디오 검열관이었는데, 특권층 간부들이 주로 모여 사는 지역의 제품들을 검사해야 하던 때에 대해 설명하였다. 그는 한 번 중국 방송에서 하는 “툼과 제리” 만화를 어린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엄마를 잡은 적이 있던 것을 기억하였다. 그 엄마는 절대 자기를 보고하지 말아달라고 애원했고, 뇌물을 받은 대가로 그는 보고하지 않았다.<sup>184</sup>

180\_ TAP009.

181\_ Reporters Without Borders, “North Korea: Frontiers of Censorship - Investigation Report,” 2011년 10월, pp. 4, 8.

182\_ Intermedia, “A Quiet Opening: North Koreans in a Changing Media Environment,” 2012년 5월. p. 21. <http://www.intermedia.org/a-quiet-opening-in-north-korea/> 참조.

183\_ TAP009, TJH008.

184\_ TJH008.



## (b) 인쇄매체와 인터넷 및 기타 통신수단의 통제

204 2009년 북한은 480개의 신문이 발행되어 전국적으로 각 도와 공장, 기업 및 대학으로 유통되고 있다고 인권이사회에 보고했다. 또한 “수백 종류의 잡지들이 다수의 출판사로부터 간행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sup>185</sup>

205 북한의 관영 언론 기구에서 일을 했던 한 증언자는 이 모든 신문이 비록 다른 제목과 다른 기자의 이름을 달고 있지만 본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싣고 있다고 조사위원회에 이야기 하였다. 텔레비전, 신문 및 라디오를 통틀어 모든 미디어 콘텐츠는 조선노동당 선전선동부 산하에서 운영하고 있는 신문과, 방송과 등이 통제하고 있다.

206 북한에는 편집의 자유가 없다. 모든 단계에서 인쇄되는 모든 기사들은 사전에 결정되고 중앙의 통제를 받는다. 신문과, 방송과 등은 중앙당과 각 지역신문사, 방송국, 그리고 잡지출판사에 “출판과 보도를 위한 월간계획”을 배포한다. 모든 출판, 방송 및 잡지 발간 기관들은 이 월간계획에 기반하여 그들의 작업계획을 세운다.<sup>186</sup> 예를 들어, 정부에서 더 많은 초식 동물을 키우라는 지시가 내려오면, 각 지방별로 뉴스의 내용이 이 주제와 관련되어 있다.<sup>187</sup>

207 기자들이 준비하는 모든 내용은 여러 단계의 결재를 거친다. 이 과정에서 편집이 이루어지기는 하지만 단계별 검토는 검열에 더 가깝다. 곧 내용이 (중앙의) 지

185\_ A/HRC/WG.6/6/PRK/1, para. 42.

186\_ TAP009; 장해성, 서울 공청회, 2013년 8월 22일 오후.

187\_ TAP009.

시와 국가 이념에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이다.<sup>188</sup> 기자들은 신문과, 방송과 등의 지시나 국가이념을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소해 보이는 실수에도 질책을 받을 수 있다.<sup>189</sup>

- 장해성 씨는 그가 어느 보고서에서 김일성의 이름을 타자 실수로 잘못 적었다고 조 사위원회의 서울 공청회 때 증언하였다. 그는 이와 같은 잘못을 이유로 6개월 간의 노동단련을 받았다.<sup>190</sup>

**208** 북한 현지 기자들은 대개는 취재를 위한 해외 출장이 허용되지 않는다. 아주 적은 수의 중앙급 기자들만 해외 취재가 허용되는데, 주로 중국이나 러시아이다. 북한에 나와 있는 외국 특파원들은 주로 중국, 러시아 그리고 쿠바에서 파견된 기자들인데 이들은 북한에 대해 호의적인 기사만 쓸 수 있다. 이들은 일반 주민들에게 말을 걸어서도 안 된다.<sup>191</sup> 북한이 외국 언론의 방문을 이따금씩 허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는 주로 중요한 경축 행사에 국한된다. 그러한 경우에도 외국 기자들은 행동이 제한되고 항시 관리들과 동행하여야 한다.

**209** 여전히 자유로운 환경과는 거리가 멀지만 북한 내에서 활동하는 외국 기자들에 대한 제한 조치가 최근에 완화되었다. AP통신이 2012년 1월 서방 보도국을 개설했다. 개설 당시 AP통신은 조선중앙통신 내에 자리하고 있는 평양 보도국을 전 세계에 걸쳐 있는 모든 AP보도국과 동일한 수준과 관행으로 운영할 것이라 주장하였다.<sup>192</sup> (정기적으로 방북이 허용된 소규모 AP기자단의 일원인)한 외국인 기자는

188\_ 다음과 같은 10대원칙 제4조제7항 참조, “보고, 토론, 강연을 하거나 출판물에 실릴 글을 쓸 때에 언제나 수령님의 교시를 정중히 인용하고 그에 기초하여 내용을 전개하며 그와 어긋나게 말하거나 글을 쓰는 일이 없어야 한다.”

189\_ TAP009; 장해성, 서울 공청회, 2013년 8월 22일 오후.

190\_ 서울 공청회, 2013년 8월 22일 오후.

191\_ TAP009.

현장 방문 시에 항상 감시원이 동행했다고 얘기했다. 감시원을 피해볼 시도조차 하지 못한 이유는 그럴 경우 비자가 취소되기 때문이다. 특정 행사 또는 장소에 대한 계획되지 않은 방문 요청은 대부분 거절 당한다. 일반 주민이 외국인을 만나기 위해서는 공식적 허가가 요구된다. 감시원들이 외신 기자들에게 소개하는 일반인들은 북한의 상황에 대해 일률적으로 긍정적인 말 밖에는 할 이야기가 없는 사람들이다.<sup>193</sup>

- 한 증언자는 공공시설에 대한 외국 관리들의 시설 감찰이 예정되었을 때 그녀와 다른 직원들도 이해하기 어려운 대본을 외워야 했던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였다. 당비서가 그 외국 관리들을 동행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모두 두려움을 안고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 주어진 대본을 반복해서 연습하였다.<sup>194</sup>
- 또 다른 증언자는 선전부에서 일하던 친구에 대해 설명하였다. 그의 친구는 남북회담 또는 다른 국가와의 회담이 있을 때 그 자리에 참석하는 북한 관리들에게 선전부가 대본을 제공한다고 그에게 이야기해 주었다. 누군가가 대본으로부터 벗어나면, 그 회담은 중단되고 그 사람은 질책을 당한다.<sup>195</sup>

210 조사위원회가 알게 된 바에 따르면 북한에서 개인이 전화기를 설치하는 것은 가능하기는 하지만 제한적이며 매우 비싸다. 그리고 설치된 전화기에 대한 도청은 “정보의 흐름을 단절하고 통제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시행된다.”<sup>196</sup> 2013년 중반, 보고된 바로는 북한에서 유일한 3G 이동통신사의 가입자가 거의 2백만 명(북한 인구의 약 10%)에 달한다고 한다. 2008년 ‘고려링크’라는 이동전화 서비스가 개통되기 전까지 이동전화 사용은 극히 드물었다. 이제 이동전화 서비스는 모든 주요 도

192\_ “Associated Press opens news bureau in North Korea,” *The Guardian*, 2012년 1월 16일. <http://www.theguardian.com/world/2012/jan/16/associated-press-bureau-north-korea> 참조.

193\_ “Now You See It,” *National Geographic*, 2013년 10월. <http://ngm.nationalgeographic.com/2013/10/north-korea/sullivan-text> 참조.

194\_ TSH051.

195\_ TSH052.

196\_ KINU,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1), pp. 275~277.

시와 북한 전역의 주요 도로, 철도를 따라 공급된다. 음성사서함과 문자메시지 서비스도 포함되지만 북한 당국은 주민들의 국제전화 사용이나 인터넷 연결은 허용하지 않는다. 외국인과 북한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는 인터넷과 국제통신 사용이 허용되지만 대부분의 국내전화 연결은 금지된다.<sup>197</sup> 고려링크는 가장 기본 사양만을 갖춘 중국제 이동전화 단말기를 판매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sup>198</sup>

211 약 2백만 명의 북한 주민들이 컴퓨터에 접속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당국에 의해 걸러지고 분류된 정보만을 담고 있는 인트라넷 시스템 접속만 가능하다. 인터넷 접속은 대학 또는 엘리트 집단 등 소수의 사람들에게 국한된다.<sup>199</sup> 공식적인 기관용 컴퓨터를 포함하여 컴퓨터는 당국에 등록해야 하고, 가정용 컴퓨터는 인트라넷 시스템에 연결되어 있지 않다.<sup>200</sup>

212 2013년 12월, 김정은의 고모부 장성택 처형 이후 약 35,000개의 조선중앙통신 홈페이지 기사와 20,000개의 노동신문 홈페이지 기사가 추가로 삭제된 것으로 알려졌다.<sup>201</sup> 이는 북한의 (정치적)역사에서 장성택을 숙청, 제거하기 위한 노력의 일부인 것으로 보이며, 국가가 자신의 공식 입장을 공고히 하기 위해 어떻게 정

197\_ 오라스콤 텔레콤(OTH)의 자회사 고려링크는 오라스콤과 북한의 체신성의 합작회사인 체오 테크놀로지가 운영한다. 오라스콤은 고려링크에 대한 지분 75%를 보유하고 있으며 북한 당국이 나머지 25%를 소유하고 있다. 고려링크는 2008년 12월 평양에서 3G서비스를 개통하여 초기에 5,300명이 가입하였다. "Orascom Telecom North Korean mobile subsidiary nears 2 million subscribers," *Daily News Egypt*, 2013년 5월 1일. <http://www.dailynewsegypt.com/2013/05/01/orascom-telecom-north-korean-mobile-subsi-dary-nears-2-million-subscribers/> 참조.

198\_ "North Korean Traders Scramble for Smartphones From South," *Radio Free Asia*, 2013년 11월 15일. <http://www.rfa.org/english/news/korea/smartphones-11142013185158.html> 참조.

199\_ TAP009; 국가인권위원회, 서울 공청회, 2013년 8월 22일 오후; KBA, *2012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p. 313 각주 13.

200\_ Intermedia, "A Quiet Opening: North Koreans in a Changing Media Environment," pp. 57, 72.

201\_ "In 1984 moment, N. Korea deletes near entirety of news archives," *NK News*, 2013년 12월 16일. <http://www.nknews.org/2013/12/in-1984-moment-n-korea-deletes-near-entirety-of-news-archives/> 참조.

보를 통제하고 조작하는지를 반영한다.

213 27국은 이메일 송수신을 감시하고, 외국인을 포함해서 이동전화와 위성 전화의 사용을 감시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sup>202</sup> 북한의 검열 기구는 고도로 발전하고 있으며, 감시 대상 지역도 국경지역을 벗어나 더 확장되고 있다. 조사위원회가 받은 정보에 따르면 국가보위부는 많은 수의 해커들을 고용하여 정권에 비판적인 웹사이트를 방해한다.<sup>203</sup>

- 탈북한 김주일 씨는 현재 북한의 정치 뉴스와 인권 정보에 대한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의 홈페이지가 수차례의 공격을 당해 해당 서비스 제공자가 더 이상 그의 웹 페이지를 호스팅하기 어렵다고 알려왔다고 조사위원회에 증언하였다.<sup>204</sup>

### (c) 외국 영화와 이동전화에 대한 단속

214 북한에서 사용되는 모든 CD와 DVD에는 정부 승인을 받았다는 표시의 도장이 찍혀있어야 한다. 지난 몇 년간 북한 내 비공식 시장의 증가와 함께, CD/DVD 플레이어와 미니 디스크 드라이브용으로 한국 영화와 텔레비전 녹화 방송이 밀반입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현지 간부들이, 가끔은 보위부원들 또는 이들과 연결된 사람들이 한국 영화를 비밀리에 판매하고 배포하는 일에 관여하고 있다. 북한의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관한 2012년 연구에 참여한 통계조사 표본의 절반 정도가 외

202\_ TBG031, TLC041에 따르면 14국이 전화 신호를 감시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203\_ "North Korea's 'World Class' Cyber Attacks Coming from China," *VOA News*, 2013년 11월 21일 참조. 한국 관리들이 언급한 바에 따르면 평양으로 거슬러 올라가 추적된 최근의 사이버 공격은 세계수준급이라고 한다. 또한 북한 해킹 기관은 일곱 개가 있는데 이들은 중국과 일본에서 활동하고 있는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다고 한다. <http://www.voanews.com/content/north-koreas-world-class-cyber-attacks-coming-from-china/1795349.html> 참조.

204\_ 런던 공청회, 2013년 10월 23일 4세션.

국 DVD를 본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sup>205</sup>

**215** 많은 증언자들이 한국 드라마와 영화가 담긴 DVD, CD와 USB에 대한 단속과 검사에 관하여 이야기하였다. 조사위원회 증언자들 중에도 한국 내용물을 보다가 잡혀서 처벌을 받은 경험을 직접 이야기 하는 사람도 있었고, 아니면 그랬던 사람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sup>206</sup> 한국 영화를 봤거나 소지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대한 최소한의 처벌은 노동 교화소에서 일정 기간을 보내는 것이었다.<sup>207</sup>

**216** 2009년 북한 개정형법 제194조와 제195조는 “퇴폐적이고 색정적이며 추잡한 내용을 반영한 음악, 춤, 그림, 사진, 도서, 록화물과 전자매체같은 것을 보았거나 들었거나” “적대방송청취와 적지물을 수집, 보관, 류포하는” 그러한 “퇴폐적 행위”의 죄와 관련하여 범죄의 경중에 따라 5년 이하의 일정 기간 동안 노동을 통한 교화, 단련을 규정하고 있다.<sup>208</sup>

- L양은 하드 디스크 또는 CD로 한국 영화를 자주 보긴 했지만 잡히는 걸 매우 두려워했다. 몇몇 판매인들은 총살을 당했다. 그녀는 지방 당국에 의해 이러한 처형 현장에 가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그러지 않았다. 그녀가 학교를 다니지 않아서 위치를 쉽게 찾아낼 수 없었기 때문에 당국은 그녀를 강제할 수 없었다. 그녀의 고향에는 남한 영화 감상을 엄중히 단속하기 위해 임명된 특별 보안대가 있었다. 그들은 집집마다 수색을 하고 사람들의 CD 플레이어를 검사하였다. 어떤 경우에는 사람들이 CD 플레이어에서 CD를 꺼낼 수 없도록, 전기가 들어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고의로 끊었다. 한번은 한 친구가 붙잡히지 않기 위해 그의 CD 플레이어를 창문 밖으로 던진 적도 있었다. 2006년 쯤에는 언니의 친구 중 한 명인 31살의 여성과 그녀의 오빠가 남한 영화를 보다가 붙잡혀 고문을 당하였다. 그녀는 한 달 간 수감되어 있었는데, 그동안 잠

205\_ Intermedia, “A Quiet Opening: North Koreans in a Changing Media Environment,” p. 8.

206\_ TAP001, TAP002, TAP008, TAP015, TJH017, TJH028, TSH019, TSH052.

207\_ TAP002; Intermedia, “A Quiet Opening: North Koreans in a Changing Media Environment,” p. 71.

208\_ 북한인권시민연합이 번역한 2009년 북한 형법.

을 자지 못했고 구타를 당하였다. 그녀는 연일 장문의 사죄문을 써야 하였다. 그녀가 풀려난 직후에 L양이 그녀를 보았을 때 얼마나 아위었는지 알 수 있었다. L양은 그 여성의 오빠가 너무 심하게 맞아 한동안 걸을 수 없었다는 것도 알았다.<sup>209</sup>

- 국경 지역에서 근무했던 전직 보위부원은 국가안전보위부가 한국의 드라마와 음란 물과 같은 “자본주의적” 재화의 불법 수입을 감시하는 책임을 맡고 있음을 시사하였다. 그와 같은 범죄에 연루된 사람들은 총살을 당하거나, 범죄의 중대성과 관여 정도에 따라 10~15년 동안 일반 감옥(‘교화소’)으로 보내진다.<sup>210</sup>
- 한 증언자는 2008년에 그녀의 친척이 중국에서 온 CD롬을 본 후 그의 친구에게 CD롬을 주었던 일을 조사위원회에 이야기하였다. 그 친척은 지역 당국에 의해 체포되었고 공개적으로 “재판을 받고” 결국 회령에서 처형되었다.<sup>211</sup>

**217** 조사위원회는 여러 증언자들로부터 해외 영화를 단속하라는 지시가 명백히 최고지도자에 의해 직접 내려졌다는 정보를 입수하였다. 김정일의 지시로 설립한 날짜 2003년 10월 9일을 따서 이름 지어진 합동검열그룹 109 상무는 이러한 물품들을 특별히 엄중 단속하는 것을 책임지고 있는 것으로 언급된다.<sup>212</sup> 109 상무는 사람들을 한 달에 두 번 이상씩 경기장에 모이게 하고, 붙잡혀서 노동교화소로 보내질 사람들을 구경하게끔 하여 나머지 사람들에게 대한 경고로 삼기도 하였다.<sup>213</sup> 전직 보위부원에 따르면 109 상무는 2009년에 더욱 전문성을 띤 요원들로 구성된 상설 기관이 되었다.<sup>214</sup>

- 한 증언자에 의하면, 2004년 말경에 김정일의 명령하에 한국에서 불법으로 수입한 물품과 북한에 반입된 기타 금지 물품들에 대한 대규모 단속이 있었다. 중앙검열 조직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검찰, 사법부, 보위부 정보요원, 보안부, 청년동맹, 여

209\_ 도교 공청회, 2013년 8월 29일 오후(비공개 면접에서 증언자가 제공한 추가 세부 사항 포함).

210\_ TJH015.

211\_ TBG028.

212\_ TAP002, TAP008, TBG031.

213\_ TAP008.

214\_ TLC041.

성동맹, 그리고 농업근로자동맹(농근맹)의 대표들로 구성되어 설립하였다고 알려졌다. 중앙검열 조직은 검열, 체포 및 감금을 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이 있었다. 그것은 함경북도과 양강도에 있는 무산, 회령, 온성을 포함한 국경 근처의 지역을 “씩씩이하려는” 목적이었다. 금지된 품목의 예로는 외국에서 온 불법 도서(예컨대 북한에서 발행되지 않은 책과 정부의 허가 없이 출판된 종교 서적이거나 다른 북한 도서)와 불법 녹화물(예컨대 CD롬, 비디오 테이프, 메모리 카드)이 포함되었다. 인신매매와 밀반입 뿐만 아니라 탈북과 관련된 모든 활동을 포함하는 불법 행위들은 이 중앙검열 조직의 관할 범위에 들어간다. 증언자는 이 단속 기간 중 중국으로부터의 CD와 테이프 밀반입에 연루되어 체포되었고 전거리 12호 노동교화소에 6년간 수감되었다.<sup>215</sup>

**218** 해외 영화에 대한 단속은 김정운이 후계자로 지명되고 통제권을 쥐기 시작한 2010년부터 다시 강화되었다. 전해진 바에 따르면 최고지도자로부터 보안 기관들에 영화 밀반입 및 마약 밀매를 단속하기 위한 연합 기동대를 구성하라는 명령이 내려왔다.<sup>216</sup> 2013년 1월에 보안부는 실질적으로 국방위원회를 대행하여 주민들에게 지역 관습에 맞지 않는 녹화물, 비디오, 사진, 그리고 출판물과 같은 “요상하고 퇴폐적인” 물품을 소지하거나 외국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시청하고 배포하는 것을 포함한 여러 종류의 행위들을 신고하라고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2013년 10월과 11월에는 외국의 음란물과 한국 영화를 보고 배포한 사람들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일련의 공개 처형이 이루어졌다고 전해진다.<sup>217</sup>

**219** 알려진 바에 의하면 2000년대 초에서 중반부터 북한 주민들이 DVD를 구할 수 있게 되었고 그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 최근 들어 MP3 플레이어와 USB 저장장치와 같은 새로운 미디어 기기가 해외 콘텐츠를 시청하고 청취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보를 공유하는 데 점점 더 많이 사용되고 있다.<sup>218</sup> 2013년 11월에는 “북한

215\_ TAP016.

216\_ TJH004.

217\_ IV장 E 참조.

218\_ Intermedia, “A Quiet Opening: North Koreans in a Changing Media Environment,” pp. 8, 16~19, 57~58.



당국이 USB 저장장치와 확장 다기능 디스크(EVD) 플레이어를 녹화물이 국내로 밀수되는 주된 방법이라고 간주하여 주목하고 있다”고 보고되었다.<sup>219</sup>

220 중국과의 국경 지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최근에 비인가 국제 전화 통화를 하기 위해 중국 서비스 제공업체의 이동전화를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몇몇은 다른 사람들에게 수수료를 받고 이 서비스를 제공한다. 불법적인 중국 이동전화와 서비스 제공업체를 이용하는 것은 지리적으로 제약이 있고 붙잡힌 사람들에게는 큰 위협이 따르지만, 이것은 국경 간 거래와 이산 가족들이 월경을 계획하기 위한 목적을 포함해서 서로 연락을 유지하려는 노력, 그리고 북한 안팎으로의 정보 교류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sup>220</sup> 당국은 비인가 해외 이동전화의 사용을 정치범죄로 간주한다. 27국은 중국 이동전화의 전파를 포착하기 위해 정교한 감시 장비를 배치하였다.<sup>221</sup> 붙잡힌 사람들은 종종 고문을 당하며 보위부의 심문을 받는다. 이동전화 사용자들은 보통 노동단련대나 간혹 일반 감옥(‘교화소’)에 수감된다.<sup>222</sup>

- 2009년에 탈북을 계획하던 한 증언자는 휴대폰으로 통화하던 중 보위부가 사용한 위치 측정 기기 때문에 붙잡혔다. 그는 알몸으로 수색을 받았다. 휴대폰이 발견되자 보위부원들은 그를 양강도 혜산시에 있는 보위부 구류장에 구금하기 전에 간첩행위로 추궁하고 구타하였다. 구금 당시 요원들은 나무토막으로 돌아가며 그를 구타하였다. 그는 아래턱 이빨 하나를 잃었다. 증언자는 탈출했고, 나중에 보위부 내의 한 연고자로부터 만일 그가 남아 있었다면 처형되었을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sup>223</sup>
- 다른 증언자는 2006년에 중국 휴대폰 사용과 밀수 행위에 연루되어 체포되었던 한 남자를 회고하였다. 그는 보위부에 의해 심문을 받았고 심하게 고문을 받아 머리에

219\_ “Pyongyang cracks down on ‘recordings’ from outside,” *The Korea Times*, 2013년 11월 20일. [https://www.koreatimes.co.kr/www/news/nation/2013/11/116\\_146567.html](https://www.koreatimes.co.kr/www/news/nation/2013/11/116_146567.html).

220\_ Intermedia, “A Quiet Opening: North Koreans in a Changing Media Environment,” pp. 54~57.

221\_ TJH008.

222\_ IV장 E 참조.

223\_ TBG004.

상해를 입고 뼈가 골절되었다. 그 피해자는 상당한 양의 뇌물을 공여한 후에 더 이상의 처벌 없이 석방되었다.<sup>224</sup>

**221** 조사위원회는 북한이 주민들을 세뇌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전 조치로 매체를 통해 주민들에게 전달되는 정보와 언론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북한에는 어떠한 지역 민영 방송의 존재도 허락되지 않는다. 관영 언론은 당국과 당의 목표를 증진시키기 위해 중앙의 지시와 엄격한 검열을 조건으로 한다. 북한은 더 나아가 전기 통신을 통해서든, 정보 통신 기술을 통해서든 국내에 해외의 영향을 줄 수 있는 어떠한 시도나 계획도 조직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 3. 감시와 폭력을 통한 표현과 언론의 자유 억압

**222** 집중적인 국가 세뇌는 국가나 국가 공식 이념에 대한 비판적인 사실과 견해를 표현하는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용인되지 않는 환경에서 발생한다. 조사위원회가 전달받은 한 제출안은 다음을 강조하고 있다.

표현의 자유가 없다는 것은 특정 사안을 금지하는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더 정확히 말하면 모든 사람들이 특정한 방식으로 말하고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만약 대중 집회에 참석한 한 북한 주민이 “만세”(“만년을 사시기를!”)를 외치고 “경애하는 원수님” 김정은의 등장에 박수를 치지 못한다면 그는 고발을 당하고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sup>225</sup>

**223** 2013년 12월에 처형된 김정은의 고모부인 장성택이 저질렀다고 주장하는 긴 죄목 중에는 김정은이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선출된 제3차

224\_ TJH022, TJH023.

225\_ 조사위원회 제출: SUB060.

당대표자회의에서 이를 발표했을 때 “자리에서 마지못해 일어나고 건성으로 박수를 쳤다”는 것이 있었다.<sup>226</sup>

224 한 증언자는 북한에서 아무도 자유롭게 글을 쓰지 못했기 때문에 그의 어린 시절부터 그의 부모가 작가를 갈망하는 그를 단념시키려고 하였다고 조사위원회에 진술했다.<sup>227</sup> 북한에서는 김일성, 김정일, 그리고 조선노동당에 유리한 측면을 보여주는 사안에 대해서만 글을 쓸 수 있다. 이 한도 이상의 글을 쓰는 작가는 체포되고 정치범으로 취급될 수 있었다.<sup>228</sup>

- 서울 공청회에서 장해성 씨는 조사위원회에 “작가였던 내 친구들은 … 우리는 절대 우리의 견해, 우리의 생각을 쓸 수 없었습니다 … 예를 들어 어떤 작가는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하던 중 실수를 했습니다. 그는 당시 술에 취해있었고 그는 실수하여 작가들은 절대 자신들의 견해를 글로 쓸 수 없다고 했고 그렇게만 말한 것으로 그는 요덕 15호 관리소로 보내졌습니다…”라고 전하였다.<sup>229</sup>
- 서울 공청회의 같은 회차에서 정진화 씨는 “그렇게 붙잡혀간 사람들이 많았는데, 특히 언론 기관에 많았습니다. 만약 당신이 북한의 언론 기관에 있다면, 실수를 하면 그것은 정치적인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장해성 씨가 말한 것처럼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정치범수용소인 관리소로 붙잡혀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 일반 범죄자들은 교화소로 가지만 언론 기관에 있는 이 작가들은 한 번이라도 실수를 하면, 하룻밤 사이에 사라지고 그들의 가족도 밤 사이에 없어질 수도 있고, 간혹 삼대가 몰살됩니다. 이렇듯 그들이 체제에 등을 돌렸기 때문에 이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몇몇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바입니다.”라고 덧붙였다.<sup>230</sup>

226\_ “Traitor Jang Song Thaek Executed,” KCNA, 2013년 12월 13일. <http://www.kcna.co.jp/item/2013/201312/news13/20131213-05ee.html>.

227\_ TAP009.

228\_ TAP009.

229\_ 서울 공청회, 2013년 8월 22일, 오후 (01:02:20).

230\_ 서울 공청회, 2013년 8월 22일, 오후 (01:03:28).

- 한 증언자는 국정 음악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혁명군 노래”와 같은 동요를 외우던 것을 회상하였다. 클래식 음악은 1899년 이전에 작곡된 것만 연주할 수 있었고, 예를 들어 러시아 작곡가 라흐마니노프의 작품은 그가 도미(渡美)했기 때문에 금지되었다. 북한에서 음악의 목적은 지도자에 대한 숭배와 사회주의가 승리할 것이라는 신념을 고취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그런 이유로 김씨 가문에 대한 존경을 나타내고 국가와 당을 향한 충성심을 불어넣는 작품들만 허용된다. 서양과 한국의 대중 음악은 완전히 금지되어 있다. 이 장르의 음악을 연주하여 붙잡히면 그 사람은 처벌을 받게 된다.<sup>231</sup>

**225** 조사위원회가 면접을 한 증언자들은 그 법적 기초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북한에서 그들의 견해를 자유롭게 표현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음을 알고 있었다. 북한의 주민들이 처한 가혹한 생활 여건과 엄격한 규정에 왜 아무도 저항을 하지 않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 증언자들은 그런 저항은 상상도 할 수 없으며 아무도 감히 항의를 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김종수 씨가 설명한대로 “저항은 죽음과 같은 것이다.”<sup>232</sup>

**226** 자유권위원회(Human Rights Committee)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북한은 헌법과 출판법에 따라 주민들이 언론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보장받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하지만 이 권리에는 반드시 조건이 따른다; “그러한 자신의 생각의 표현에 있어서 국가를 전복시키고, 분열시키거나 쇠퇴시키기 위한 시도로 다른 사람들을 부추기는 것, 국가 보위와 건강한 사회 질서를 심각하게 해를 끼치기 위해 국가 기밀을 폭로하는 것,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체면을 손상시키는 것은 금지된다.”<sup>233</sup>

**227** 국제규약하에서 정부가 개인권과 집단권 사이의 간극을 어떻게 조화시켰는

231\_ TLC035.

232\_ 런던 공청회, 2013년 10월 23일, 1세션(01:29:45).

233\_ CCPR/C/PRK/2000/2, paras. 117~118.

지에 대하여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위원회의 한 위원이 제기한 질문에 대해 한 북한 측 대표는 다음과 같이 답하였다.

개인 및 집단권은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었다. 개인에게 좋은 것은 집단에도 좋은 것이었고 반대도 마찬가지였다. 개인이 사회에 살기 때문에 개인과 집단의 요구 사이에 조화가 있어야 한다. 만약 개인이 집단의 의견과 반대되는 것을 표현한다면, 그 의견이 고려는 되겠지만 그 개인에게 그 또는 그녀의 의견을 집단의 의견과 조화를 이루도록 설득하기 위한 노력 또한 있을 것이다. 그러한 경우에는 압박이 가해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였다.<sup>234</sup>

**228** 조사위원회는 자유권규약에 의거해서 어떠한 형태의 예외나 제약을 허용치 않은 간섭없이 의견을 가질 권리에 대해 자유권위원회(Human Rights Committee)가 고려했던 점을 환기한다. “모든 형태의 의견이 보호되며, 여기에는 정치적, 과학적, 역사적, 도덕적, 종교적 의견들이 포함된다. 의견을 가졌다는 것을 범죄화하는 것은 제1항에 부합하지 않는다. 개인이 가지는 의견을 이유로 체포, 구금, 재판, 수감하는 등 개인을 괴롭히고 협박하고 낙인찍는 것은 제19조제1항에 위배된다 ... 어떤 의견을 가지거나 가지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어떠한 형태의 시도도 금지된다.”<sup>235</sup> 아동권리협약 역시 국가가 모든 아이들이 그들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고,<sup>236</sup> 말, 글이나 인쇄물로, 예술 또는 모든 다른 매체를 통해 모든 종류의 정보와 생각을 추구하고 전할 권리를 존중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sup>237</sup>

**229** 주민들은 정치 체제와 그 지도부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모든 행동을 고발하도록 실질적으로 동원되고 있다. 조사위원회는 2013년 1월 사회안전성(현 인민보

234\_ E/C.12/2003/SR.44, para. 46.

235\_ CCPR/C/GC/34, paras. 9~10.

236\_ 아동권리협약 제12조 참조.

237\_ 아동권리협약 제13조 참조.

안부)에서 발행한 것으로 보이는, 보안부에 보고해야 할 18가지 행위나 “태도”의 목록을 제공하는 문서를 입수하였다. 이 목록에는 반국가적, 반민족적 범죄 행위와 그것을 저지르도록 장려하는 행위, 외국인과 불법적으로 만나고 편지와 물품을 교환하는 행위, 공공 규범을 어지럽히는 행동들, 그리고 모든 다른 종류의 “이상 행동”이 포함되어 있다.

### (a) 관찰 및 감시 체계

**230** 북한은 반국가적이거나 반혁명적이라고 여겨지는 감정의 표현을 감지하기 위해 거대한 감시 조직을 구축하였다. 여기에는 생활의 모든 부분에서 활동하는 비밀 정보원들의 거대한 조직망을 조직하는 것도 포함한다. 대중조직의 간부들이 시행하는 감시에 더하여 모든 주민들이 의무적으로 회원이 되는 이웃감시제도(‘인민반’)도 활동 중이다.

**231** 이웃감시제도(‘인민반’)는 등록이 되지 않은 방문객을 포함한 지역 내의 이례적인 활동에 대해 인민보안부나 국가안전보위부에 보고하고 반국가적 활동과 반대 의사 표명에 대해 감시하도록 임명된 대표가 관장하는 약 20~40가구 단위로 이루어진다. 간혹 마을 사람들은 보안 요원으로부터 그들의 이웃을 염탐하도록 지시 받기도 하였다.<sup>238</sup> 인민반은 주민들을 등록하고, 그들의 활동을 감시하고, 사상교육을 실시하며, 지역 당위원회가 임명한 대표들과 함께 여러 활동에 사람들을 동원시킬 책임이 있다고 한다. 인민반은 가정 생활의 사적인 부분도 면밀히 조사한다. 또한 등록되지 않은 손님이나 불순한 활동들이 있었는지 밝히기 위해 가정집을 아무 때나, 심지어 밤에도 방문할 수 있고, 보안 기관에 조치를 취하도록 보고할 수 있는

---

238\_ TAP002, TAP008.

권한이 있다.<sup>239</sup>

232 조사위원회는 작은 집단에서 무심코 한 말이라 해도 결국 정보원이 보고하여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 1996년 1월, 손정훈 씨는 작은 신년 모임을 위해 그의 상관의 집을 방문했을 당시 중앙위원회 산하 무역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다. 거기서 그는 비디오 테이프 녹화물에서 전투기를 포함한 서양의 군사 무기류들을 보았다. 그는 기술이 꽤 발달하였다는 것을 소리 내어 말하는 실수를 하였다. 이 언급을 한 그의 행위가 보고되었고 그는 불려가 심문받았다. 자본주의 국가를 찬양하였다는 혐의를 받았고, (그의 좋은 '성분'과 전반적으로 좋은 행실 때문에)기소되거나 체포되지는 않았지만 직위를 박탈당하였다.<sup>240</sup>

233 개인의 충성심을 평가하고 알아내기 위해 행동을 감시하는 것은 그들의 삶의 여러 단계에서 이루어진다.

- 예를 들어, 김주일 씨는 런던 공청회에서 조선인민군에는 부대의 부대장과 부 행정관이 군인들의 정치적 충성심을 감시하고 조선노동당 직할의 조선인민군 정치부에 보고하는 공식적인 정치적 감시를 위한 병행 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뿐만 아니라 비무장 지대 가까이에 주둔하고 있는 모든 소대에도 조선인민군 보위사령부(군대 자체 비밀 경찰)에서 파견한 장교가 있었다. 매일 아침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그들은 총화 시간에 참석하곤 하였다.<sup>241</sup>
- 한 증언자는 북한에서 '성분'이 낮은 사람들은 서로를 감시해야만 한다고 진술하였다. 그녀의 아버지는 입당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보위부의 첩자로 일하도록 강요당했는데, 보위부가 그의 친구의 일본인 부인을 조사하면서 그녀가 받는 편지들에 대해 더 알고 싶어했기 때문이었다. 그 증언자는 또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239\_ Ken E. Gause, "Coercion, Control, Surveillance, and Punishment," pp. 42~48.

240\_ TAP011.

241\_ 런던 공청회, 2013년 10월 23일, 4세션(비공개 면접에서 증언자가 제공한 추가 세부 사항 포함).

갖고 사는 일반적인 두려움을 언급하였다. 사람들은 가족에게 자신이 생각하는 바를 말하거나 북한을 탈출하려는 시도에 대해 이야기할 수 없었다. 그녀의 이웃에 사는 한 할머니는 아들과의 탈북 계획을 며느리가 당국에 알린 후 요덕 15호 정치범수용소에 10년 동안 수감되었다. 증언자의 가족(그녀의 어머니, 아버지, 언니, 남동생, 남편, 그리고 딸)이 탈북할 당시 그들은 그녀의 숙부에게 알리지 않았다. 그들이 떠난 후, 그들은 숙부가 심문을 받고 심하게 고문을 당하였다는 것을 들었다. 그는 부상이 너무 심해서 고문 후 오랫동안 움직일 수 없었다.<sup>242</sup>

**234** 증언자들은 또한 그들의 이동이나 가족 구성원들의 이동이 출신 성분 때문에 더 엄밀한 감시를 받았다고 말하였다.<sup>243</sup>

**235** 서울의 조사위원회에 정보를 제공한 이재근 씨는 자신이 남한 출신이었기 때문에 엄밀한 감시하에 있다고 느꼈다. 그는 그를 관찰하는 일곱 단계의 감시 체계가 있었고, 모든 사람들이 그가 입 밖으로 내는 모든 말,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주시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의심스러워 보이는 것은 무엇이든 보위부에 보고되었다.<sup>244</sup>

- 부모님이 일본에서 태어나 북한으로 “귀국한” 한 증언자는 그들이 귀국자들이었기 때문에 가족이 철저히 감시당하였다고 생각하였다. 그녀의 부모님은 이전 일본에서의 삶에 대해 절대 이야기하지 않았다. 그들은 그녀에게도 학교에서 일본에 대해 절대 이야기하지 말라고 충고하였다. 당 간부들은 특히 그들이 일본에서 우편을 받았을 때 집에 와서 가족들을 조사하곤 하였다.<sup>245</sup>
- 양부모와 함께 북한으로 이주하여 귀국자와 결혼한 한 일본인 여성은 모든 편지에 김일성 덕택에 잘 살고 있다고 써야 했던 것과 그들이 받은 모든 편지들은 전달받기 전에 이미 개봉된 상태였던 것을 회상하였다.<sup>246</sup>

242\_ TSH051.

243\_ TBG016.

244\_ 서울 공청회, 2013년 8월 23일, 오전.

245\_ TJH026.

246\_ TSH011.



- 한 증언자는 10호실에 대해 언급하였는데, 이는 김씨 가문의 친인척들과 교류하고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을 관찰하고 감시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당중앙위원회 비서국 산하 조직지도부 관할 아래에 있다. 김씨 가문과의 모든 교류는 10호실에 보고해야 했다. 북도에서 김일성의 두 번째 부인의 둘째 아들 옆을 지나고 그가 알아본 것만으로도 충분히 보고가 필요한 접촉이었다. 증언자는 이와 관련, 전해진 바에 따라 해외 파견 기간 동안 김일성의 가까운 인척을 위해 심부름을 해주던 한 간부가 10호실의 감찰 보고에 따라 어떻게 경고를 받고 북한으로 귀국조치 되었는지도 들려 주었다.<sup>247</sup>

**236** 앞서 언급한 DVD와 같은 해외 물품에 대한 단속 외에도, 마약 남용과 같이 반사회주의적이라고 간주되는 활동과 노숙자와 부랑자들을 관리하는 활동을 포함하여 특정 범죄와 범법 행위를 표적으로 삼는 검열을 정기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중앙검열 조직도 있다.<sup>248</sup> 보다 하위 단계에서는 일단의 주민들이 도덕성 위반이라고 규정된 활동에 대한 단속을 위해 동원된다. 단속 대상은 여성들이 바지를 입거나 자전거를 타는 것에 대한 금지와 같이 이따금씩 공표되는 방침에 대한 위반이다.<sup>249</sup> 2009년 평양의 공원에서 있었던 도박에 대한 단속 결과로 붙잡힌 사람들이 일반 감옥(‘교화소’)로 보내지거나 그들의 가족이 평양에서 추방되었다.<sup>250</sup>

**237** 공개적인 정치적 비판같은 보기 드문 경우는 큰 사건으로 간주되어 강력하게 처벌된다.

247\_ TAP013; Ken E. Gause, “Coercion, Control, Surveillance, and Punishment” 참조, p. 60 ‘10호실 표적’에 대해 다루고 김씨 가문의 사생활에 접근이 가능한 사람들과 감시 계층으로 지속적인 감시를 받는 사람들을 언급하는 것으로 보임; 윤대일, 국가안전보위부의 내막 (서울, 월간조선, 2002).

248\_ 9·27 상무조는 노숙자와 “부랑자”들을 관리하는 중앙검열단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IV장 D 참조.

249\_ TAP002; Ishimaru Jiro, ed., *Rimjin-gang: News from Inside North Korea* (Osaka, Asiapress Publishing, 2010), pp. 438~443; ICNK, “Introduction to North Korea,” p. 19.

250\_ TJH004.

- 조사위원회는 2001년 6월 남포시에서 김정일 타도를 촉구하는 수십 개의 대자보를 붙인 한 젊은 노동자를 목격한 증언자로부터 정보를 제공 받았다. 이것은 커다란 정치적 사건으로 간주되었고 그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조선인민군 보위사령부, 인민보안부, 국가안전보위부가 합동 기동대를 구성하였다. 보고를 들은 김정일은 피의자들을 추적하고 강력하게 탄압하라고 확실하게 직접 명령을 내렸다고 한다. 5개월 동안 보안 기관들은 10세 이상의 모든 주민들로부터 필체 견본을 받아갔다. 그 남자는 정보원이었던 한 친구에게 그의 행동에 대해 누설하였다가 붙잡혔다. 심한 고문에도 불구하고 그는 누구도 공모자로 연루시키지 않았고 수사관들은 그가 단독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정치적인 목적에서 보안 기관들은 그 남자가 해외 영화와 음란물을 시청하여 타락했고 결국 미국의 첩자 노릇을 하는 범죄를 저지르기로 하였다는 소문을 퍼트렸다. 군 최고재판소의 유죄 판결에 근거하여 그 남자는 교수형에 처해졌다. 그의 직계 가족과 도시 주민 전체가 그것을 지켜보도록 강요되었다. 희생자의 아내는 그가 체포되었을 때 연좌제를 피하기 위해 그와 즉시 이혼하도록 강요 받았다. 그의 어머니와 두 여동생은 15호 ‘관리소’로 보내졌다.<sup>251</sup>

**238** 북한 주민들이 점차 경제 여건에 대한 분노를 공공연하게 표현하는 것에 관한 최근 흔적이 있었다. 예를 들어 2008년 초 함경북도에서 50세 이하의 여성이 장마당에서 거래를 하는 것이 금지되었을 때 여성 집단이 벌인 시위가 그 금지법을 완화시켰다. 2009년 말엽 북한의 실패한 화폐 개혁 기간에도 시위의 물결이 있었다고 전해졌다. 항의의 표시로 사람들이 옛날 지폐를 불태우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하지만 이어서 정책 개혁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되는 간부들을 포함하는 약 50건의 처형에 대한 보고가 이어졌다. 2011년 초, 김정일의 생일을 기념하기 위해 평양을 밝히고자 평안북도에서 전기를 우회시켰던 때 그곳 사람들은 음식과 전기를 요구하며 간헐적으로 시위를 하기도 하였다.<sup>252</sup>

251\_ TJH015.

252\_ “Can the ‘Jasmine Revolution’ Spread to N. Korea?,” *The Chosun Ilbo*, 2011년 2월 23일. [http://english.chosun.com/site/data/html\\_dir/2011/02/23/2011022301300.html](http://english.chosun.com/site/data/html_dir/2011/02/23/2011022301300.html) 참조; “N.Korean Protestors Demand Food and Electricity,” *The Chosun Ilbo*, 2011년 2월 23일. [http://english.chosun.com/site/data/html\\_dir/2011/02/23/2011022300383.html](http://english.chosun.com/site/data/html_dir/2011/02/23/2011022300383.html) 참조; Reporters Without Borders, “North Korea: Frontiers of Censorship - Investigation Report,” p. 4.

239 조사위원회는 이러한 무작위적인 시위들이 국가에 대한 직접적인 비난보다는 대부분 경제 여건에 대한 것이라고 보았다. 이 두 가지는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외부 세계에 대한 정보가 중국을 통해 북한 접경 지역으로 들어오고 내부로 확산되면서 점점 더 많은 북한 주민들이 전혀 다른 실상에 대해 알아 가고 있다. 하지만 최고지도자 다음 두 번째로 권력이 있던 인물의 최근 처형과 그와 관련된 이들에 대한 숙청으로 주민들은 삶과 죽음에 있어서 다시 한번 국가가 가지고 있는 명백히 자의적인 권력과 반국가적이거나 반혁명적인 활동들을 저지하려는 국가의 결의로부터 경고를 받고 있다.

#### 4. 종교 및 종교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거부

240 종교와 종교적 표현의 자유는 자유권규약 제18조, 제19조뿐만 아니라 아동권리협약 제13조, 제14조에도 보장되어 있다. 두 조약 모두 당사국들에게 이 권리들을 인지할 것뿐만 아니라 결사와 평화적인 집회의 자유와 관련된 권리들을 보호할 것도 요구한다.<sup>253</sup> 조사위원회는 북한이 이 조약의 당사국임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에게 이러한 권리의 보호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으며, 그 결과 자신의 선택으로 종교 행위를 할 수가 없게 되어 있다.

##### (a) 개인숭배의 제도화

241 런던 공청회에서 스튜어트 윈저(Stuart Windsor) 목사는 “개인숭배와 확고한 복종에 대한 요구”의 제도화에 대해 “어떠한 정치적인 탈선도 용납되지 않는다”는 증언을 하였다.<sup>254</sup> 김일성에 대한 경외심과 우상숭배는 종교적 믿음에 비유되었고,

253\_ 자유권규약 제21조, 아동권리협약 제15조 참조.

10대원칙의 여러 하위 원칙들은 국가 이념의 종교적 성향을 보여주는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sup>255</sup> 특히 10대원칙 중 제4조는 다음과 같이 명시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을 신념으로 삼고 수령님의 교시를 신조화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을 신념으로 삼고 수령님의 교시를 신조화하는 것은 끝없이 총직한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이 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구이며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의 승리를 위한 선결조건이다.

**242** 서울에서 A씨는 조사위원회에 “북한에서 허용되는 유일한 사상, 유일한 종교는 김일성의 사상”이라고 전하였다.<sup>256</sup> 조사위원회는 공식적인 국가 사상 이외의 다른 어떤 신앙 체계에 대해서도 관용 및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사람들의 종교의 자유와, 종교 및 자신이 선택한 신념을 갖거나 받아들이는 자유에 대한 권리를 관용하거나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함을 확인하였다.

254\_ 런던 공청회, 2013년 10월 23일, 5세션(서면 제출안과 관련하여).

255\_ 그런 하위 원칙들의 예(북한인권시민연합에 의해 번역된 바에 따라)는 다음을 포함한다:

제2조제1항.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는 우리가 끝없이 존경하고, 영원히 공경하며, 모시고 있는 것을 최대의 행복, 최고의 영예로 여겨야 하는 혁명의 영재이시며, 인민의 태양이시며 전설적 영웅이시다.

제2조제3항. 우리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가 가리키는 길을 굳게 믿고 수령님의 지도 아래에 있으면 못할 일이 없다는 강한 믿음을 항상 가지고 수령님께 모든 운명을 전적으로 의탁하며 수령님이 이끄는 혁명 전투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바쳐야 한다.

제3조제1항.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 외에는 그 누구도 요구되는 지식이 없다는 확고한 입장과 관점을 가져야 한다.

제3조제6항.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의 조각상, 석고상, 동상, 초상화장, 수령님을 형상한 미술작품, 수령님의 교시판, 당의 기본구호들을 정중히 숭배해야 한다.

제4조제3항.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를 무조건 접수하고 그것을 자로하여 모든것을 재여보며 수령님의 사상 의지대로만 사고하고 행동하여야 한다.

제4조제10항. 그 기원이 자본주의사상, 봉건유교사상, 수정주의, 교조주의, 사대주의에 있고, 위대한 수령 김일성의 혁명사상과 반대되는 반당적, 반혁명적 사상의 조류에 모든 의지를 다해 투쟁해야 한다.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의 순결성을 고수하여야 한다.

제5조제2항.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의 심려를 덜어드리는 것을 신성한 의무, 최상의 영예로 간주하고 모든 것을 다 바쳐 투쟁하여야 한다.

256\_ 서울 공청회, 2013년 8월 22일, 오후(02:32:10).

- X씨는 워싱턴 공청회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북한 사회는 전체가 김일성이 라는 교주에 주체사상이라는 경전이 있는 일종의 종교 집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이든 천주교이든 무엇이든 다른 종교가 있을 때, 그와 배치되는 다른 어떤 종교가 있다면 그들의 주된 종교는 김일성 종교의 기본적 토대를 약화시킬 것입니다. 그러면 지도부가 그 사회체제를 유지하고 통제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만약 북한 사람들이 김일성이 진짜 신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다른 신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지도부에는 좋은 일이 아닙니다. 이것이 북한 사회 내에서 다른 모든 종교들이 생겨나는 것을 막고 다른 종교를 박해하는 이유입니다.”<sup>257</sup>

**243** 북한 헌법은 제68조에 종교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다. 종교 건물을 건축하고 종교 의식을 개최하기 위해서는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제한적인 권리이다. 더 나아가 북한 헌법은 “종교는 외세를 끌어들이거나 국가사회 질서를 해치는데 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244** 기독교는 한국에서 그 첫 접촉이 17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 기독교는 북쪽 지방에서 더욱 관심을 끌었고 평양은 종종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일컬어졌다.<sup>258</sup> 20세기에 유교, 도교, 그리고 불교의 요소를 혼합시킨 종교인 천도교가 나타났고 또한 많은 수의 신봉자들이 생겼다. 세계기독교연대는 1950년대에 28% 이상의 인구가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고 추정하였고, 조선노동당의 1950년 연감은 그 숫자가 거의 24%에 달한다고 보았다. 북한이 자유권위원회에 제출한 수치에 근거하면 2002년에 신앙을 가진 인구는 0.16%에 불과하다고 추정된다.<sup>259</sup> 다시 말해, 공식 통계에 의하면 1950년의 2백만 명과 비교하여 2002년에는

257\_ 워싱턴 공청회, 2013년 10월 30일(02:45:50).

258\_ Andrei Lankov, “North Korea’s missionary position,” *Asia Times Online*, 2005년 3월 16일. <http://www.atimes.com/atimes/Korea/GC16Dg03.html> 참조; Michael Breen, Moon Sun-myung, “The Early Years, 1920~53: Chapter 6 - Jerusalem of the East,” <http://www.unification.org/ucbooks/earlyyears/Chap06.htm> 참조.

259\_ HRI/CORE/1/Add.108/Rev.1, p. 10; CCPR/CO/72/PRK/Add.1, p. 3.

종교가 있는 북한 주민은 약 3만 8천 명이었다(2002년의 인구수 약 2천 3백만 명에 비교해서 1950년에는 전체 인구수가 9백만 명으로 알려진 것을 감안해야 한다).<sup>260</sup>

## (b) 종교 박해

**245** 조사위원회가 전달 받은 정보는 북한에서의 종교적 박해가 6·25전쟁 이전에 시작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수사적으로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회유와 조화를 이야기했지만, 동시에 종교인들은 제국주의 찬성론자이며 봉건주의 옹호론자라는 견해를 전파하였다.<sup>261</sup> 전체적으로 종교 탄압 기간은 네 시기로 나누어 설명하는데 (1946~1950년: 6·25전쟁 이전; 1950~1953년: 6·25전쟁; 1953~1971년: 김일성주의 운동 이전; 1972년~현재: ‘주체’ 시대),<sup>262</sup> 6·25전쟁과 김일성주의 운동 이전의 기간이 종교인들에 대한 박해가 가장 극심하였다고 한다. 종교인들은 죽임을 당하고, 추방 당하고 감금되었다. 기독교의 활동이 다른 종교보다 훨씬 더 조직적이고 미국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가장 큰 표적이 되었다고 알려져 있다. 세 번째 시기 말경과 네 번째 및 현재 시기에 대한 대비로 천도교 청우당원, 기독교인, 불교신자들은 ‘성분’ 제도 아래서 적대계층에 포함되었다.<sup>263</sup>

**246** 식량난이 한창일 때 중국으로 탈북한 사람들이 지역 교회와 접촉하고 종종 지원을 받으면서 1990년대에 독자적인 기독교 활동이 증가하였다. 증언자들은 기독교

260\_ Christian Solidarity Worldwide, “North Korea: A Case To Answer - A Call To Act,” 2007, p. 65. <http://dynamic.csw.org.uk/article.asp?t=report&id=35> 참조.

261\_ Won Jae-chun, “Religious Persecution in North Korea: Process and phases of oppression 1945~2011,” *International Journal for Religious Freedom*, vol. 4, No. 1 (2011), pp. 87~100.

262\_ NKDB는 이를 1945년에서 현재까지를 다루는 6번의 시기로 분류하였다: “Religious Freedom in North Korea,” 2013년 1월, pp. 28~41 참조.

263\_ Won Jae-chun, “Religious Persecution in North Korea: Process and phases of oppression 1945~2011,” pp. 87~100.

교인들이 종교 활동을 하기 위해 집이나 다른 장소에서 비밀리에 모이는 사례를 언급하며 북한에 지하 교회의 존재를 주장하였다. 더 세부적인 사항은 입수하기 어려웠지만, 2000년대 초부터 비밀 종교 활동이 증가해왔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sup>264</sup> 한 추정치는 20만에서 40만 명 사이의 기독교인들이 큰 위협에도 불구하고 북한에서 비밀리에 여전히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다고 보았다.<sup>265</sup>

**247** 일반적으로 종교에 대한 북한의 정책은 국제적인 관중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종교적 관용의 겉모습을 유지하는데 반해, 사실 내부적으로는 종교 활동을 탄압하는 이중적인 것이라고 설명하곤 한다.<sup>266</sup>

**248** 북한의 보편적 정례인권검토 제출안에서 북한은 몇 개의 공식적으로 인정된 기독교 집회와 다른 종교들의 신자 협회의 존재를 강조하였다. 제출된 바에 의하면:

조선그리스도교연맹, 조선불교도연맹, 조선카톨릭교협회, 조선천도교협회, 그리고 조선종교인협의회와 같은 종교단체들이 있다. 최근에는 평양에 있는 봉수교회와 장충성당, 개성에 있는 영통사가 복원, 증축되었고 금강산에 있는 신계사와 룡악산에 있는 법운사는 본래의 상태로 복원되었다. 2006년 8월에는 러시아 정교회가 평양에 세워져 북한에 머무는 러시아 종교인들이 종교의식을 열고 있다. 종교단체들의 출판물은 “천도교경전,” “천도교,” “구약성경,” “찬송가,” “선택과 실천,” “천주교를 알자,” “신앙생활의 걸음,” “천주교 기도문”을 포함한다.<sup>267</sup>

**249** 더 나아가 1999년 12월에 자유권위원회에 북한이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264\_ NKDB, “Religious Freedom in North Korea,” pp. 41, 98~102.

265\_ 조사위원회 제출: SUB048.

266\_ NKDB, “Religious Freedom in North Korea,” p. 28.

267\_ A/HRC/WG.6/6/PRK/1, para. 45.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종교 교육 기관들이 있다. 조선그리스도교연맹 중앙위원회가 평양 신학교를 운영하며, 조선불교도연맹 중앙위원회는 불교학원, 조선천도교중앙지도위원회가 천도교 고등중학교, 그리고 조선가톨릭교협회 중앙위원회도 학생들을 가르친다. 1989년에 북한은 몇몇 학교 부모들이 자신의 아이들에게 그런 교육을 시키고 싶어하는 것을 고려하여 김일성종합대학에 종교 학부를 신설하였다.<sup>268</sup>

250 북한 당국이 인정하고 500개라고 주장하는 “가정교회”들도 몇몇 있다고 전해진다.<sup>269</sup> 이 모임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사실 1950년대 이전에 가족들이 기독교인이었던 사람들이고 그로 인해 그들은 지도자나 종교적 자료 없이 예배를 하기 위해 모이는 것이 허용된다. 대부분의 가정교회들은 도시에 있고 참석하는 가족들은 종종 구별된 거주 단위로 격리된다. 1989년 김일성종합대학에 설립된 종교 학부에서는 기독교, 천주교, 불교, 천도교, 그리고 이슬람교 교리를 다룬다.<sup>270</sup>

251 하지만 증언자들은 해당 학과에 진학할 기회는 매우 충성스러운 주민들에게만 한정되어 있고, 이러한 학문을 전공한 사람들 중에서 이후 당국이 인가한 교회의 성직자가 된다고 주장하였다. 나아가 조사위원회는 증언자들로부터 당국이 인가한 교회들이 외화를 벌어들이는 수단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들었는데, 이는 그런 교회 종사자들이 외국인들과 접촉하여 해외로부터 기금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sup>271</sup> 한 보고서에서 과거 김일성종합대학에 다녔던 한 학생은 “[그 대학] 과정의 졸업생들은 종교연맹, 해외 무역 부문에서 일하거나 비밀 종교 활동을 밝혀내는 국경 수비대원으로 일한다”고 밝혔다. 동 보고서는 국가가 인가한 교회들은 외부 방문객들을 위한 전시품이라고 주장한다.<sup>272</sup> 증언자들은 또한 조사위원회에 국가의 허

268\_ CCPR/C/PRK/2000/2, para. 116.

269\_ U.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Religious Freedom (USCIRF), “2013 Annual Report,” 2013년 4월, p. 111. <http://www.uscirt.gov/reports-and-briefs/annualreport/3988-2013-annual-report.html> 참조.

270\_ KBA, 2012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p. 262.

271\_ Timothy, 서울 공청회, 2013년 8월 22일, 오후; TLC018.



가를 받고 설립된 교회들이 기독교 관례를 자유롭게 행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열려 있는 진정한 교회가 아니라고 언급하였다.<sup>273</sup>

252 북한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들은 직접적인 증언에 근거하여 한 단체는 다음과 같이 추측하였다: (i) 평양을 제외하고는 북한에 엄밀한 의미의 교회들이 존재하지 않고, 당국에 의해 인가된 가족교회(또는 가정교회)들이 어디까지 활동하고 그들의 활동을 수행하는데 얼마나 자유로운지는 의심스럽다; (ii) 실제로 존재하는 교회나 사원들은 주로 외부 선전과 정치적 목적을 위해 사용된다; 그리고 (iii) 면접에 임한 모든 전(前) 북한 주민들은 개인 차원에서 종교 활동을 하는 사람은 분명 박해를 받는다고 주장하였다.<sup>274</sup> 북한이탈주민들은 불교 사찰과 성지들이 유산과 문화적 장소로만 관리될 뿐 예배의 장소로서 기능하지는 않는다고 전하였다.<sup>275</sup>

### (c) 정치 범죄를 구성하는 기독교 신앙 실천

253 평양에 국한하여 명백히 국가의 인가를 받은 몇몇 교회들이 설립되어 있기는 하지만, 조사위원회는 기독교 신앙과 관련하여 국가가 주민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는 북한 일반 주민들이 기독교를 받아들이는 것이 허용되지 않음을 의미한다고 보는 바이다. 그것은 마약, 아편, 죄, 서구 및 자본주의 침략의 도구 등으로 비유되었다. 기독교 선교사들은 미국 자본주의의 산물이며 흡혈귀가 하는 짓과 유사하게 그려졌다.<sup>276</sup>

272\_ U.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Religious Freedom (USCIRF), "2013 Annual Report," pp. 110~111.

273\_ Timothy, 서울 공청회, 2013년 8월 22일, 오후; TLC024.

274\_ KINU,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3), pp. 270~271.

275\_ U.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Religious Freedom (USCIRF), "2013 Annual Report," p. 111.

276\_ Timothy, 서울 공청회, 2013년 8월 22일, 오후; TLC018; 조사위원회에 제출된 한 제출안의 어떤 증언자는 어렸을 적에 기독교 신자들이 병원 지하에 몰래 살면서 순진한 사람들을 유혹하여 죽이고 피를 빨아내어 나쁜 사람들에게 판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설명하였다, SUB048.

이는 김일성이 종교와 관련하여 언급하였다는 인용문과 동일한 묘사이다: “종교는 일종의 미신이다. 예수를 믿든 부처를 믿든 그것은 근본적으로 미신을 믿는 것이다.” 그는 더 나아가 “우리는 종교인들을 사회주의 사회로 데려갈 수 없다” 그리고 “종교인들은 죽어서야 그들의 습관을 치료할 수 있다”고 가르쳤다.<sup>277</sup>

김송주 씨는 런던 공청회에서 조사위원회에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내가 알고 있는 바로는 북한은 종교가 아편이나 마약과 같다고 믿고, 따라서 그것은 완전히 근절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종교가 인민의 아편이라는 마르크스주의적의 믿음을 나타낸다.”<sup>278</sup>

**254** 기독교 관례를 행하는 것이 명백하게 법률로 금해진 것은 아니지만, 당국은 실질적으로 그것을 정치 범죄로 간주한다. 조사위원회는 보위부가 기독교인들을 색출하기 위해 일치단결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한 보고서는 보안 요원들이 종교 활동을 탄압하기 위해 어떻게 훈련을 받고 있으며, 종교 행위 실천자들이 정치범으로 여겨진다는 전제하에 그런 비밀 활동을 적발하면 어떻게 포상을 받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요원들은 기도 모임에 잠입하거나 종교 지도자인척 하고 심지어 거짓 지하 종교 모임을 할 수 있도록 종교에 대해서 훈련을 받는 것도 언급하였다.<sup>279</sup> 색출된 기독교인들은 지하교회의 다른 교인들을 색출하기 위해 보통 고문을 병행하며 더 오랜 기간 동안 심문을 받는다. 보위부는 또한 중국 내 한인 교회들의 활동을 감시하고 그들이 기독교 의례를 행한 것을 밝히기 위해 중국에서 송환된 사람들을 조직적으로 심문한다.

277\_ KBA, *2012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p. 255와 각주 33.

278\_ 런던 공청회, 2013년 10월 23일, 1세션(01:05:06).

279\_ U.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Religious Freedom (USCIRF), “A Prison Without Bars,” 2008년 3월, chapter 5; U.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Religious Freedom (USCIRF), “2013 Annual Report,” pp. 108~116.

255 북한 내에서 비밀리에 종교 활동을 한 기독교인들의 상세한 증언에 입각한 한 제출안은 기독교인들이 당국에 의해 수색되고 정치범으로 여겨지는 세 가지 이유를 제시하였다: “(1) [그들은] 지도자들을 진정으로 숭배하지 않으며, 또 다른 사상을 신봉하고 따라서 사회의 안녕에 위협을 가한다; (2) [그들은] ‘남한과 미국과 같은 기독교 국가들’의 첩자로 여겨진다; 그리고 (3) [그들은] 동유럽과 소련 연방의 공산권의 종식을 가져온 것에 책임이 있다.” 폴란드에서는 예를 들어 천주교회가 강력한 반대 세력이었다. 니콜라에 차우셰스쿠 정권을 무너뜨린 시위는 정부를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그의 교회 소유 아파트에서 퇴거되는 것을 거부한 헝가리 [개신교] 목사 라스즐로 토케스(Laszlo Tokes)에 의해 촉발되었다.<sup>280</sup>

256 조사위원회는 수많은 증언자들로부터 중국에서 강제송환된 사람들이 한국과 미국의 교회 및 선교사들과 접촉했는지에 대해 조직적으로 심문을 받았다고 들었다. 만약 그들이 미국인 또는 한국인 선교사를 포함한 어떤 외국인과 접촉을 하였다면, 그런 행동을 하였다고 밝혀진 사람들은 본국 송환 직후 정치범수용소로 보내지는 것을 포함해서 더 가혹한 처벌을 받았다.<sup>281</sup> 조사위원회는 다음의 증언들을 입수하였다.

- 한 증언자는 송환된 후 그녀가 중국에서 교회에 갔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질문을 받았다고 설명하였다. 그녀는 이후 북한을 떠나 중국으로 갔다가 또 다시 붙잡혀 고문을 받았고, 기독교인이라는 자백을 할 때까지 1년 동안 구금되어 있었다. 그녀는 친구가 그녀의 기독교 신앙에 대해 당국에 알렸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자백을 거부했고 11호 노동교화소로 보내졌다.<sup>282</sup>
- Timothy씨의 아버지는 중국의 한 “지하교회”에서 기독교를 공부하였다. 2003년에 그는 39명의 다른 북한 기독교인들과 함께 체포되었다. 그들은 모두 송환되었고 그

280\_ 조사위원회 제출: SUB048.

281\_ 통일연구원, 서울 공청회, 2013년 8월 21일, 오후; TAP013.

282\_ TBG006.

의 아버지는 요덕 수용소로 보내졌다. 아버지가 체포되었기 때문에 당시 14살이던 Timothy씨도 1년 동안 노동단련대로 보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독교인이 되었고 여러 해 동안 북한에서 기독교를 비밀리에 전파하였다. 그 행위 때문에 체포되어 정치범수용소로 보내질 위험이 있었기에 그는 그 일을 비밀리에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또한 종교적 믿음 때문에 정치범수용소 수감이 선고된 한 동료 기독교인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sup>283</sup>

- A씨의 두 누나 모두 종교적 믿음과 활동 때문에 혹독하게 처벌을 받았다. 한 누나는 친구에게 기독교를 전하는 것이 발각되었고 성경과 함께 적발되어 일반 감옥(‘교화소’) 13년 형을 선고 받았다. 다른 누나는 중국에서 붙잡혔다. 굶주릴 정도의 배급량과 끔찍한 수감 환경의 결과로 첫 번째 누나는 감옥에서 거의 사망할 뻔 했고, 3년의 수감 이후 A씨가 그녀를 석방시키기 위해 상당한 뇌물을 건넌 후 겨우 살아났다. 다른 누나는 중국에서 기독교 활동을 하고 한국으로 도망치려는 시도도 했기 때문에 정치범으로 분류되었다. 그녀는 요덕 수용소로 보내졌고 다시는 소식을 들을 수 없었다.<sup>284</sup>
- 2006년에 중국은 김송주 씨의 어머니를 북한으로 강제송환하였다. 그의 증언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북한 당국에 그의 어머니가 중국에서 기독교 활동을 하였다고 알렸다. 보위부는 김씨의 어머니에게 ‘노동교화’ 3년형을 선고하기 전 6개월 동안 그녀를 심문하였다. 하지만 그녀는 보위부 구금 기간 동안의 가혹 행위와 아사 환경으로 바로 감옥으로 보내기에 너무 약해져 있었다. 경찰은 대신 그녀를 지역 병원으로 보냈다. 그곳에서 그녀는 침대에 묶였다. 김씨의 외삼촌이 그녀를 방문하러 갔지만 그녀는 그가 가져온 음식을 먹을 수 없을 정도로 쇠약해져 있었다. 김씨의 어머니는 병원 침대에 묶여 아사하였다. 보안부가 그녀의 친인척들에게 이를 알리지 않아서 그들은 그녀의 시신을 수습하지 못하였다.<sup>285</sup>
- 한 증언자는 그의 아들이 보위부에 체포되어 제18호 ‘관리소’로 보내진 것이 중국에서 당시 보위부의 감시 아래에 있던 한국계 미국인 목사와 함께 성경 공부를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였다는 정보를 제공하였다.<sup>286</sup>

283\_ Timothy, 서울 공청회, 2013년 8월 22일, 오후.

284\_ 서울 공청회, 2013년 8월 22일, 오후.

285\_ 런던 공청회, 2013년 10월 23일, 1세션(비공개 면접에서 증언자가 제공한 추가 세부 사항 포함).

286\_ TJH010.

257 2011년에 양강도에 사는 한 여성은 동료 신자가 고문으로 그녀의 이름을 누설한 후 조선인민군 보위사령부의 체포를 가까스로 모면하였다. 그녀와 다른 증언자들은 조사위원회에 성경을 소지하여 붙잡힌 사람들이 어떻게 심문 중에 고문을 받고 어떤 경우 그 후에 처형되는지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였다.<sup>287</sup>

258 평양에 있는 제한된 수의 당국이 인가한 교회당에 대한 용인이 존재하고 그 반대를 제기하는 의견들도 있었으나, 조사위원회는 북한에 실질적인 신앙의 자유는 없다고 확인하는 바이다. 그러한 신앙은 김일성과 그의 후손들을 둘러싼 당국 주도적 개인숭배와 근본적으로 양립할 수 없고, 적대적인 것으로 여겨진다. 종교적 믿음을 실천하려는 북한의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가혹하게 처벌되었고 심지어 죽음에 이르렀다. 그 결과 북한의 종교인 수는 북한이 직접 제공한 추정치인 1950년 인구의 24%에서 2002년에 인구의 0.16%로 줄었다.

## 5. 조사위원회의 주요 조사결과

259 북한의 역사를 통틀어 가장 독특한 특성 중 하나는 국가가 정보를 완전히 독점하고, 조직화된 사회생활을 철저히 통제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증언자의 증언들에 근거하여 조사위원회는 북한에서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및 언론·표현·정보·결사의 자유도 거의 완전히 부정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260 북한에서 국가는 주민들에게 유년기부터 최고지도자(‘수령’)에 대한 공식적인 개인숭배와 절대적 복종을 하도록 만드는 사상교양체계를 운영하여 공식 이념과 체제 선전으로부터 벗어난 어떠한 사상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북한에서 정치

287\_ TJH017, TJH018, TSH039.

선전은 북한의 적대세력인 일본, 미국, 한국 및 그 국민에 대한 민족적 증오심을 조장하는 데 사용된다.

**261** 연령대를 막론하고 북한 주민의 거의 모든 사회적 활동은 조선노동당에 의해 통제되고 있다. 북한 주민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조선노동당 산하 사회 단체를 통해 국가는 주민들을 감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그들의 일상 활동을 지시한다. 또한 정치 체제나 최고지도자에 대한 사실상 어떠한 비판적인 표현도 허용하지 않을 정도로 북한 주민들의 사생활은 국가의 감시에 놓여 있다. 북한 주민들은 모든 “반국가적” 활동이나 당국에 대한 반대 의사 표명에 대해서도 처벌을 받는다. 북한 주민들은 다른 주민이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다고 의심될 경우 고발하면 포상을 받는다.

**262** 북한 주민들은 독립적으로 제공되는 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으며, 북한에서 허용된 유일한 정보제공자는 당국의 통제를 받는 매체뿐이다. 텔레비전 시청 및 라디오 청취, 그리고 인터넷 접속은 엄격히 제한되어 있으며, 모든 대중매체의 내용은 빈틈없는 검열을 거치며 조선노동당의 지령에 부합해야 한다. 전화 통화는 도청당하며, 주민들의 경우 대부분 북한 내부로만 전화할 수 있다. 북한 주민들은 외국 방송을 시청하거나 청취하면 처벌받으며, 여기에는 외국 영화나 드라마도 포함된다.

**263** 시장의 활성화와 정보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한국과 중국으로부터의 정보 및 매체 유입이 증가함에 따라 북한에서도 대량의 외부 정보 유입이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북한 당국의 정보 독점은 북한 내부로 흘러 들어오는 외부 정보와 북한 주민들이 정치 선전으로 알려진 것 외에 알고 싶은 “진실”에 대한 호기심으로 인해 위기를 맞게 되었다. 북한 당국은 정보와 사상의 유입을 막기 위한 정기적인 단속과 처벌 강화를 통해 현 상황을 유지하고자 한다.

264 기독교의 전파는 수령에 대한 개인숭배에 이념적으로 도전하고, 국가의 통제 밖에서 사회적·정치적으로 조직 및 교류할 수 있는 발판을 제공한다는 이유로 북한 당국에 의해 특히 심각한 위협으로 간주되고 있다. 정부의 통제를 받는 몇몇 교회를 제외하고 기독교인들은 종교 활동이 금지된다. 기독교 신자들은 적발되면 가혹한 처벌을 받으며, 이는 종교의 자유에 대한 침해인 동시에 종교에 대한 차별 금지를 위반하는 것이다.

## B. 당국이 지정한 사회 계급(‘성분’), 성별 및 장애에 따른 차별

265 세계인권선언 제2조는 다음과 같이 명시한다: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견해,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과 같은 어떠한 종류의 차별이 없이, 이 선언에 규정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향유할 자격이 있다. 더 나아가 개인이 속한 국가 또는 영토가 독립국, 신탁통치지역, 비자치지역이거나 또는 주권에 대한 여타의 제약을 받는 나에 관계없이, 그 국가 또는 영토의 정치적, 법적 또는 국제적 지위에 근거하여 차별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

266 자유권규약 제2조와 사회권규약 제2조도 마찬가지로 북한이 비준한 이 조약들에 상술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비차별에 대한 원칙을 언급하고 있다. 아동권리협약의 제2조는 국가들에 “아동이 그의 부모나 후견인 또는 가족 구성원의 신분, 활동, 표명된 의견 또는 신념을 이유로 하는 모든 형태의 차별이나 처벌로부터 보호되도록 보장하는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더욱 명백하게 촉구한다.

267 여성차별철폐협약은 제1조에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본 협약의 목적을 위하여, “여성에 대한 차별”이라 함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시민적 또는 기타 분야에 있어서 결혼 여부에 관계없이 남녀 동등의 기초 위에서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인식, 향유 또는 행사하는 것을 저해하거나 무효화하는 효과 또는 목적을 가지는 성에 근거한 모든 구별, 배제 또는 제한을 의미한다.

**268** 자유권규약 제3조는 또한 규약의 당사국들이 모든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를 향유함에 있어서 남녀에게 동등한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69** 여성차별철폐협약 제2조는 여성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보호 조항과 차별적인 법률, 규칙 및 관습의 철폐를 포함하여 모든 부문에서 남녀평등이 추구되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270** 장애인권리협약에 따르면,

“장애로 인한 차별이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민간 또는 다른 분야에서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인정받거나 향유 또는 행사하는 것을 저해하거나 무효화하는 목적 또는 효과를 갖는, 장애를 이유로 한 모든 구별, 배제 또는 제한을 의미한다. 이는 합리적인 편의제공에 대한 거부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포함한다.”

## 1. 사회 계급 및 출생에 따른 차별: 과거와 현재의 ‘성분’ 제도

**271** 실제 분류는 수년 사이에 조정된 것으로 보이지만, 북한은 ‘성분’ 제도를 통해 주민들을 3개의 광범위한 계급과 약 51개의 세부 계층으로 분류한다.<sup>288</sup> 주

288\_ 계급은 한 개인의 가족이 가지는 북한 정치 체제와 최고지도자에 대한 정치적 충성심을 가정하여 반영한다. 한 전 관료는 오늘날 실제로는 103개의 성분 계급이 있으며 그가 한국 정부에 이 증거 자료를 제출하였다고 언급하였다.



거, 직업, 식량 접근권, 의료, 교육 및 기타 서비스를 결정하는 것은 ‘성분’에 달려 있다. ‘성분’은 또한 지리적 분리를 통해서도 나타난다.<sup>289</sup>

**272** 2008년 인구 조사에 따르면 평양에 사는 것이 공식적으로 허가된 330만의 인구 가운데 엘리트 계층의 비율이 높다. 그 중에서도 지배 엘리트층은 수도의 가장 현대적인 지역에 거주하도록 배정된다. 평양의 재화와 공공 서비스는 다른 지역에 비해 우수하다. 하위 또는 중간 성분의 일반 주민들은 평양에서 거주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심지어 평양 여행증을 발급받는 것조차 어렵다.

- [한국의] 통일연구원의 김수암 박사는 서울 공청회에서 ‘성분’ 제도의 지속적인 영향에 대해 설명하였다:  
“가족적 배경 또한 사람들을 차별하는 핵심 요소로, 식량권에 대해 각각 다른 수준의 접근을 허용합니다. 평양이나 다른 주요 도시에 거주하는 핵심 엘리트층은 의료에 있어 여전히 혜택을 누리고, 리[마을]에 사는 수준의 주민들은 의료 시설에 대한 접근이 매우 제한적이어서 건강한 생활을 향유할 권리 또한 차별을 받고 보장을 받지 못합니다...”<sup>290</sup>
- 서울 공청회의 한 증언자이었던 권영희 씨는 부모님 두 분이 모두 남한 출신이라는 이유로 그녀의 가족이 직면했던 차별에 대해 설명하였다. 그들은 함경북도 무산을 떠나 평양으로 이사하려고 했을 때 차별을 당하였다:  
“저는 우리가 평양으로 이전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거부 사실을 알았을 무렵 우리는 우리가 차별을 받고 있음을 절감할 수 있는 나이였는데, 언니는 원하지 않는 다른 대학에 지원을 해야 했고, 형제자매들은 이런 종류의 차별에 시달렸기 때문입니다.”<sup>291</sup>

**273** ‘성분’ 제도는 최고지도자가 소작농과 인부들을, 과거 지주들과 일본 협력자로 여겨지는 사람들보다 위로 승격시키고자 시행했던 북한 초기 정책에서 그 전

289\_ IV장 C.

290\_ 서울 공청회, 2013년 8월 21일, 오후(02:31:00).

291\_ 서울 공청회, 2013년 8월 24일, 오전(02:57:55).

례를 찾을 수 있다. 1946년에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는 일본 식민통치와 연관이 있던 관료들을 숙청하기 시작했고 첫 주민등록사업을 착수하였다. ‘성분’ 제도의 공식적인 출발은 ‘반혁명분자들과의 투쟁을 전당, 전인민적으로 전개하는 데 대하여’(5·30)라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상무위원회 결정이 있었던 1957년인 것으로 여겨진다. 이 결정의 채택은 김일성의 잠재적 경쟁자들의 숙청과 연결되어 있었다. 그 당시에 주민 구분은 세 개의 광범위한 분류인 핵심, 동요, 적대 계층으로 통합되었다.

274 5·30결정과 함께 내각에서는 적대 계층 사람들이 어디에서 거주할 수 있는지를 지시하는 제149호 결정을 내렸고, 근본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더 외진 지역, 더 열악한 생활 환경으로 추방하였다. ‘성분’ 제도의 다른 제도화 단계로는 성분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또 하나의 운동을 일으킨 1964년 결정 “각계각층 군중과의 사업을 더욱 강화할데 대하여”를 예로 들 수 있다. 1966년에는 1970년까지 지속된 주민재등록사업으로 주민이 3개 계층과 51개 세부 부류로 다시 분류되었다.<sup>292</sup> 1983~84년의 공민증 갱신사업과 같이 정치적 충성심과 가족적 배경을 재검토하기 위한 다른 운동들도 뒤를 이었다.

275 가장 좋은 ‘성분’은 (비록 그들 중 상당수가 수 년 사이에 숙청을 당했지만)

292\_ 51개 분류는 핵심군중: 노동자의 가족, 노동자 가족에 고용된 사람, 고농(머슴), 빈농, 조선시대와 일제 강점기의 행정 사무원, 혁명유가족 노동당원(반일투쟁에서 희생된 핵심 당원), 애국열사유가족(6·25 당시 비전투원으로 희생된 자), 혁명인테리(8·15 이후 북한이 양성한 자), 6·25 당시 피살자 가족, 6·25 당시 전사자 가족, 군인 가족(인민군 장교 및 군인의 가족),영예군인 및 상이군인 가족(6·25 당시 부상한 상이군인의 가족); 기본군중: 중·소상인, 수공업자, 소공장주, 하층접객업자, 중산층접객업자, 무소속 남한출신, 월남자 가족(3개의 별개 부류), 전직 중농, 민족자본가, 중국귀환민, 8·15이전 인텔리, 핵심군중 중 안일·부패한 자, 접대부, 미신 숭배자, 유학자, 지방유지, 경제사범; 복잡(동요 및 적대)군중: 부농, 상인, 기업가, 지주 또는 개인 재산을 완전 몰수당한 자, 친일·친미행위자, 반동관료배, 입북자, 천도교 청우당원, 불교신자, 천주교신자, 출당자, 철직자, 6·25 당시 남한을 도운 자, 체포·투옥자 가족, 간첩, 반당·반혁명 종파분자, 처단자 가족, 출소자, 정치범, 민주당원, 개인재산을 완전 몰수당한 자본가. KINU,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2), p. 222, 통일부 보고서 인용, “북한개요,” 2000, p. 420.

김일성과 함께 일본군에 맞서 싸웠던 게릴라 대원의 가족들에게 수여되었다.

- 한 전직 고위간부는 집에 할아버지가 6·25전쟁에 참여한 것에 관한 증거가 있었기 때문에 10살 즈음부터 자신의 ‘성분’ 지위를 알았다고 조사위원회에 설명하였다. 그는 또한 가족들로부터 낮은 지위의 사람들과 놀거나 어울리지 말라고 들었다. 그는 좋은 ‘성분’이 곧 김씨 가문과 가깝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믿으며 자랐다.<sup>293</sup>

**276** 가장 나쁜 ‘성분’은 그중에서도 예전에 부유했던 기업가, 첩자 혐의자, 천주교신자, 그리고 불교신자에게 주어졌다. 사실상 북한이 수립되기도 전의 가족사가 북한에서의 주민들의 운명을 선결하였다.

**277** 과거에는 ‘성분’이 출생부터 모든 주민들의 진로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었다. 좋은 ‘성분’인지가 군대(특히 엘리트 부대), 대학 및 조선노동당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결정지었는데, 이것은 공공 서비스 분야 모든 진로에서의 필수 전제 조건이었다. 반대로, 나쁜 ‘성분’인 사람들은 상당수가 채굴과 농사일을 배정 받았고 그들의 자손들은 대부분 고등 교육에서 배제되었다. 열심히 일하는 것, 개인의 능력, 그리고 개인의 정치적 충성심은 한 사람의 성분을 향상시킬 기회에 제한적인 영향만을 끼쳤다. 하지만 정치적으로 불충하다고 여겨지는 행동은 개인과 그 가족 전체의 유리한 ‘성분’을 무너뜨릴 수도 있었다.

**278** ‘성분’의 결정은 모든 성인 주민과 그 가족들에 대한 상세한 기록과 함께 종합주민등록시스템에 기록되어 있다. 보안 단체와 조선노동당의 기관들이 이 기록들을 조직적으로 편찬하는 과정은 투명하지 않고 그 결정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sup>294</sup> 게다가 ‘성분’ 제도 아래의 공식적인 차별은 또한 몇 세대에 걸친 현상으로

293\_ TSH019.

294\_ TJH022, TJH023.

개인의 분류는 개인의 행동뿐만 아니라 한 세대를 넘어 그 사람의 친척들의 ‘성분’ 분류에 따라서도 결정된다. 그리하여 카스트 제도와 비슷하게 출생에 따른 종신적 차별 제도가 북한에 만연하게 되었다.

279 ‘성분’ 지위의 존재와 관련성은 법률로 공식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것은 근로인민대중이 사회의 주인이 된다는 헌법 참고 문헌과 국가의 모든 공민과 기관들이 계급적 원수에 충실하게 투쟁하도록 하는 권고에서 은연 중에 퍼져나간다.<sup>295</sup> 이 개념은 또한 내부 지도와 교육 자료에도 적용된다.<sup>296</sup> 조사위원회가 면접을 진행한 전직 보안원과 당 관료들은 한 사람과 관련된 중요한 결정들에 있어서 ‘성분’에 대한 고려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지적하였다. 예를 들어 한 전직 관료는 사회안전성(현 인민보안부)이 사람들의 ‘성분’에 따라 기록부를 색깔로 구분하였다고 조사위원회에 설명하였다. 핵심 계층 가족들의 기록부는 빨간색 서류철에 보관된 반면, 가족 중에 정치범수용소(‘관리소’) 수감자가 있는 등의 가족 서류는 검정색 서류철에 보관되었다.<sup>297</sup>

280 ‘성분’은 또한 범죄에 대한 처벌을 고려할 때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으로 보인다. 한 증언자가 설명한 바와 같이 성분이 좋은 사람이 ‘성분’이 더 나쁜 사람과 동일한 범죄를 저지르면 ‘성분’이 더 좋은 사람이 더 가벼운 처벌을 받을 것이다. 어떤 사람이 보안 기관에 의해 구금시설로 보내지면, 가장 먼저 평가되는 것은 그 사람의 족보와 가족 배경일 것이다. 만약 그 사람이 핵심 계층 출신이면(즉, ‘성분’이 좋으면), 범죄와 관련 없이 그 사람은 국가를 배신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가정하에

295\_ 북한 헌법, 제8조와 제162조.

296\_ 1993년 인민보안부가 발간한 “주민등록사업참고서”라는 제목의 자료는 주민등록 조사관들이 ‘성분’ 조사 동안 활용해야 할 지침을 주었다. Robert Collins, “Marked for Life: *Songbun* North Korea’s Classification System,” HRNK, 2012 참조.

297\_ TCC014.

비교적 좋은 대우를 받을 것이다. 만약 그 사람이 나쁜 ‘성분’ 출신이라면, 그는 나쁜 짓을 하도록 “되어 있다”고 여겨지고 더 가혹한 처벌을 받게 된다.<sup>298</sup>

- 권영희 씨는 1994년 김일성 사망 애도 기간 중에 중국에서 체포되어 북한으로 강제 송환된 그녀의 오빠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는 중국에 불법적으로 간 것에 대해 “경제”범으로 처리된 것이 아닌 정치범으로 기소되었다.  
“만약 저희가 범죄를 저지르거나 범법 행위를 하면 부모님이 남한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항상 더 무거운 처벌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것이 가장 불공평한 일 중 하나였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오빠 중 한 명을 찾을 수 없게 되고 또 한 명은 감옥에 보내졌던 이유입니다.”<sup>299</sup>

281 오늘날 여러 ‘성분’ 계급들의 정확한 비율을 확인하기는 어렵고, 시간이 흐르면서 이것들이 얼마나 변했는지 알기도 어렵다. 2009년 수치에 따르면 핵심계층이 인구의 약 28%인 반면, 기본계층은 45%를 이루고 있고, 복잡(동요 및 적대)계층이 나머지 27%를 구성한다.<sup>300</sup> 핵심계층 내에는 지배 엘리트층이 있다. 이 집단은 김일성의 친척 및 보통 가장 좋은 성분의 선조들을 둔 소수의 다른 가족들로 구성되기 때문에 때때로 혁명계층으로 불린다. 지배 엘리트층에는 정치국 위원, 가족, 조선노동당 비서 및 중앙인민위원회, 내각, 중앙군사위원회, 그리고 국방위원회의 위원들이 포함된다.<sup>301</sup> 그들은 주요 정책 결정 준비에 직접적으로 관여되어 있고 정책 수립의 중추 세력에 참여한다.

298\_ TAP011.

299\_ 서울 공청회, 2013년 8월 24일, 오전(02:05:00), IV장 A의 다른 증언들.

300\_ 세 개의 광범위한 범위는 시간이 흐르면서 바뀐 것으로 보이지만, 동요 및 적대 계층이 “복잡” 계층으로 압축되었고 중간 분류는 “기본” 계층으로 규정된다. 이 수치들은 통일연구원 자료이다. 북한개요(2009), p. 330.

301\_ “공직에서 위원직이 중복되는 것이 흔하기 때문에, 최귀위 공무원은 100명도 채 되지 않는다”: Federal Research Division Library of Congress, Robert L. Worden ed., *North Korea: A Country Study* (2009), p. 211.

282 일반 엘리트들은 핵심계층 ‘성분’의<sup>302</sup> 사람들로 중앙 및 지방 행정 조직, 일반적인 군 장교나 보안 기관 관료 집단, 그리고 기타 관리직을 지속적으로 지배하는 사람들이다. 지배 엘리트와 일반 엘리트들은 북한의 시장경제가 확산되면서 생기는 기회들을 잡기 위해 그들의 공권력, 국내에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특권, 국가 자원에 대한 접근권 및 사회적 연줄을 사용할 수 있다.

283 세대 간 책임과 집단 처벌은 ‘성분’ 제도의 핵심 요소이다. 가족 배경이 좋더라도 만약 그 사람 또는 그의 친척이 북한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성분’이 낮아질 수 있다.<sup>303</sup> ‘성분’ 지위는 정치적 성격을 띤 범죄에 특히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

- 정치범수용소 수감자였던 강철환 씨는 서울 공청회에서 조사위원회에 다음과 같은 표현으로 증언을 하였다:

“저희 할머니는 오랫동안 공산당원으로 활동하셨고 조총련 설립에 도움을 주는, 사실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저희 조부는 사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꽤 부유했고 북한 당국에 많은 돈을 기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할머니는 당국에서 꽤 높은 직위에 있었습니다. 그 당시 할머니는 김일성의 부인이 이끄는 한 조직의 부위원장으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조부는 백화점을 포함한 사업망에 있어 매우 높은 직위를 갖고 있었습니다. 제가 태어났을 때, 저는 가장 상위 계층에 속했었고 평양의 중심지에서 태어나서 제가 어렸을 때, 저는 매우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다른 북한 주민들에 비해 저는 매우 행복한 아이였던 것 같습니다. 그 후 1977년에 제 조부는 직장에 나갔다가 한 달 동안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유를 알고자 그의 직장에 찾아갔고 그가 출장을 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후 보위부에서 나온 어떤 사람이 저희에게 와서 저희 조부가 조국뿐만 아니라 민족에도 반역죄를 저질렀고 그가 죽어 마땅하지만 사형을 선고하는 대신 어딘가로 잡혀갔다고 말했습니다. 저희는 재산을 몰수 당했습니다. 1977년 8월 4일에 저희 가족은 요덕 정치범수용소에 수감되었습니다. 저는 9살이었습니다. 저희가 정치범수용소로 잡혀간 것은 1977년 8월 8일이었습니다.”<sup>304</sup>

302\_ 2330만 전체 인구의 28%는 약 650만 명에 이른다.

303\_ IV장 C 참조.

304\_ 서울 공청회, 2013년 8월 24일, 오후(03:06:30).

- 조사위원회가 면접을 진행했던 또 다른 증언자인 51세 여성 김해숙 씨는<sup>305</sup> 1975년부터 2001년까지 제18호 정치범수용소에 수감되어 있었다. 1970년 10월, 그녀의 가족 전부가 체포되었다. 그녀는 13살 때부터 외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체포를 면했지만 5년 후 당국에 붙잡혔다. 2001년에 풀려난 후에야 김씨는 그녀의 친할아버지가 6·25전쟁 중에 그녀의 아버지와 할머니를 두고 한국으로 갔기 때문에 그녀의 가족이 수용소로 보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sup>306</sup> 김씨는 자신이 사회에 다시 융합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2005년에 중국으로 가기로 결정하였다.

284 행정상으로 ‘성분’ 제도는 모든 북한 주민과 그 가족에 대해 꼼꼼히 기록된 정보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북한 당국은 17세 이상의 모든 주민들에 대한 광범위한 공민등록부를 확립하였다.<sup>307</sup> 이 등록부는 족보 및 직장에서의 행동과 주간 “생활총화” 시간과 같은 여러 환경에서 그 사람의 행위에 대한 평가를 통해 확인되는 사상의 확고함과 정치적 충성심에 대한 징후를 포함한 전기(傳記)적인 정보를 담고 있다.<sup>308</sup> 수집된 정보에는 실력과 재능, 포부와 건강 상태뿐만 아니라 김일성과 김정일 초상화에서 먼지를 털고, 그들의 사당에 경의를 표하고, 혁명사 공부를 계속하거나 건설 사업 일을 수행하는 데 한 개인이 들이는 노력에 대한 내용도 포함될 수 있다.<sup>309</sup>

- 한 증언자는 2006년에 자신의 형의 공민등록부를 보았고, 가족들이 국내에서 이동한 날짜와 1949년 이후부터 가족의 연고에 대한 세부 내용을 포함한 가족에 대한 세부 사항이 적혀 있었던 것에 대해 설명하였다. 그 기록부에는 증언자의 형이 군에 입대한 날짜도 적혀 있었다. 증언자는 그런 기록부가 존재한다는 것을 들었지만 직접 본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다. 그 증언자의 가족은 탈북한 증언자의 형의 행방을

305\_ 김씨는 공청회에 참석할 수 없었다. 조사위원회는 그녀와 화상회의 면접을 진행했고, 그 때 이 보고서에 그녀의 성명을 게재하는 것에 동의하였다.

306\_ 또한 TBG024.

307\_ TJH004, TJH015.

308\_ IV장 A.

309\_ TAP006.

알기 위해 보안원이 집으로 찾아왔을 때 그 공민등록부를 볼 수 있었다.<sup>310</sup>

- 또 한 증언자는 그의 아버지가 고위 간부였기 때문에 ‘성분’ 자료를 보았고, 다른 사람들이 기밀 서류들을 가져왔을 때 읽을 수 있었다. 증언자가 본 그 기록부에는 사진 한 장, 조부의 이름, 그 사람의 좋고 나쁜 행동(예를 들어, 일본인에 맞서 싸운 것) 외에도 그 행동들을 본 서너 명의 증언자들의 서명이 포함되어 있었다. 증언자에 의하면, 한 사람이 진급을 하려고 하거나 범죄를 저질러 기소된 경우 관료들이 이 자료들을 검토하였다.<sup>311</sup>

**285** 개인의 공민등록부는 그들의 전 생애 동안 그들을 따라다닌다. 만약 그 사람이 군복무를 하거나 대학에 입학하거나 직장에 취직하게 되면 그의 기록부는 관련 감시 당국으로 보내진다. 국가에 대한 개인의 충성심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가 그 기록부에 반영된다. 언젠든 개인의 충성심 “점수”가 낮게 나타나면, 그 사람은 가혹하게 비난을 받고 더 밀접한 감시를 받으며, 최악의 경우 노동단련에 처해질 수도 있다.<sup>312</sup> 낮은 점수는 대학 입학 지원이나 직장에서의 승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이 좋지 않은 성분 때문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보통 짐작할 수 있음에도, 입학 불허나 직장에서 승진이 되지 않는 진짜 이유가 사람들에게 통지되는 경우는 드물다.<sup>313</sup>

**286** 사회안전성(현 인민보안부) 지역사무소들은 직장, 학교, 지역 자경단 및 대규모 조직들이 제공하는 정보를 바탕으로 공민등록부를 마련하는 업무가 주어진다. 모든 북한 주민들이 소속되는 대규모 단체들을 감시하는 관료들은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그것을 이 등록부에 포함시키는 책임을 맡고 있다.<sup>314</sup> 이 외에도 사회안전성

310\_ TSH009.

311\_ TLC035.

312\_ TAP007.

313\_ TAP002, TAP008.

314\_ TAP006, TAP015, TLC035, TSH009.



(현 인민보안부)은 거대한 비밀 정보원망을 유지하고 있다.<sup>315</sup>

287 공민등록부는 가족 구성원들의 배경에 관해 입수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기록하는데, 경우에 따라 일제 식민지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기도 한다. 등록부 원본은 인민보안부가 출력된 자료로 보관하고 있다.<sup>316</sup> 다른 보안 기관들과 조선노동당은 어떤 사람의 직장 관리자와 같은 관련 지역 고위간부도 입수할 수 있는 복사본을 받는다. 이 외에 가족 구성원들의 등록부도 상호 참조된다. 이것은 결국 발각되어 그에 따른 가혹한 처벌을 받을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서는 등록부를 수정하는 것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든다.

- 예를 들어, 한 증언자의 삼촌은 김정일에 대한 비판적 발언을 해서 정치범수용소로 사라졌다. 삼촌의 수용소 수감은 전 가족의 '성분'에 오점을 남겼다. 그 증언자는 1994년에 졸업하고 정당 간부 입문 시험을 통과하였다. 그의 아버지는 그때서야 삼촌의 운명에 대해 밝혔고 그가 정계에 진출하지 못할 것이고 기껏해야 행정직이나 기술직에 오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사회안전성(현 인민보안부) 내 연락망과 뇌물을 통해 가족은 증언자의 공민등록부를 볼 수 있었는데 삼촌과 관련된 내용 두 줄이 추가되어 있었다. 그들은 보안원과 그 내용을 뇌물로 지울 수 있을지에 대해 논의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기로 하였다. 각 기록부는 다른 기록부와 상호 참조 표시가 되어 있다. 증언자의 기록부가 조작된 것이 밝혀지더라도 한다면 가족 모두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심각할 수도 있었다. 결국 그 증언자는 기술전문가직을 받아들였다. 그에게 승진이나 더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허락되지 않았다. 군에서 공훈을 세워 장교의 길을 추천 받았던 그의 형은 가족의 '성분' 때문에 사관학교 입학이 거부되었다. 그의 남동생과 아버지도 비슷한 문제를 겪었다.<sup>317</sup>

315\_ TSH051.

316\_ 누설에 대한 위험을 고려하여 어느 정도까지 접근이 부여되었는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2000년대 초부터는 공민등록부도 전산화되었음을 시사하는 몇 가지 정보들이 있다.

317\_ TJH007.

288 일반적으로 개인은 자신의 공민등록부에 공식적으로 접근이 허용되지 않는다.<sup>318</sup> 따라서 그들은 등록부에 들어있는 정보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정정할 기회가 없다. 자신의 공민등록부를 본 조사위원회가 면접을 진행했던 증언자들은 모두 비공식적인 연고와 또는 뇌물을 통해 접근할 수 있었다.<sup>319</sup>

- 예를 들어 직장에서 승진이 부진하여 불만이었던 한 전직 보위부원은 자신의 공민등록부를 보고자 했고, 동료가 그에게 보여주었다. 그는 그 안에서 자신이 승진을 하지 못할 것임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요인을 찾아냈다.<sup>320</sup>

289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분’ 계급 제도가 존재한다는 것과 그들이 어떤 계층에 속하는지에 대해 대강 알고 있다. 북한 주민들은 종종 학교를 졸업할 때나 군대, 대학 또는 선호하는 직종에 들어가는 데 장애를 경험할 때 자신의 ‘성분’에 대해 알게 되었다. 조사위원회가 면접을 한 많은 북한이탈주민들은 그들의 ‘성분’을 결정하는 데 들어가는 고려 사항의 종류와 그들의 계급이 고등 교육을 받거나 취업을 하는 것에 미쳤을 수도 있는 영향에 대해 알고 있었다.<sup>321</sup>

- 예를 들어, 한 증언자는 제3차 교육 기회를 거부당했고 중등학교를 마치자마자 광산에서 일하도록 강요당하였다. 그가 자신이 당한 명백한 차별에 대해 친한 보위지도원에게 묻자, 그 지도원은 그에게 등록부를 보여주었다. 그는 국군포로 가족의 분류인 “43번”으로 분류되어 있었고, 이는 그가 그런 차별을 받는 이유를 명확하게 알게 해주었다.<sup>322</sup>

318\_ ‘성분’은 사람들에게 발부된 공민증에 적혀있지 않다. 일반 사람들은 그들의 ‘성분’에 대해 통지를 받지 않는다 (TCC014).

319\_ TLC018.

320\_ TJH041.

321\_ 증언자 TJH037는 그가 탈북한 후 그의 할머니가 지주였었다는 것을 남한에 있는 어머니에게 들은 후에야 그의 성분이 낮은 이유를 알게 되었다. 그가 붙잡혀 송환되었던 첫 탈북 시도는 좋은 ‘성분’이 아닌 사람들에게 흔히 있는 10년 동안의 군복무를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322\_ TBG021.

290 사회 계급을 결정하는 요인은 가족 배경을 포함한다. 일본에서 거주하다가 1959년에서 1980년 사이에 북한으로 이주한 조선인(“귀국자”라고 불림)들은 그들의 후손까지 합치면 그 수가 10만에서 15만 명 사이인 것으로 추정된다.<sup>323</sup> 이 귀국자들은 선전과 기회에 대한 약속뿐만 아니라 일본 내 한민족에 대한 만연한 차별 때문에 북한으로 건너갔다. 그들은 도착하자마자 북한을 떠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다. 하지만 그들은 일본에 있는 친척들에게 송금을 요청하는 것은 허용되었고, 이는 북한이 몹시 필요로 하는 외환 보유고를 제공해주었다. 당국은 일반 북한 주민들은 살 수 없는 텔레비전, 냉장고 등 사치품과 다른 물품을 파는, 경화를 사용하는 상점들을 운영하였다. 이 송금액으로 귀국자들은 더 나은 옷과 음식을 향유하였고, 이것은 불우한 동포들 사이에서 분노를 더욱 부추겼다.

291 1960년에 북한의 헝가리 대사였던 카롤리 프랫(Karoly Prath)은 일본에서 북한에 도착한 3만 천여 명에 이르는 귀국자들의 처지에 대해 언급하였다:

“형식적인 것을 제외하면, 북한의 노동자들은 귀국자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1) 다수의 사람들이 귀국자들에게 적당한 아파트를 제공하기 위해 자신의 아파트에서 쫓겨났다; 2) 공장에서 그들은 눈에 띄게 높은 보수를 받는다; 3) 그들은 식량 배급에서 특권이 있는 위치를 차지한다; 4) 그들은 업무 규율이 덜 강제된다(적어도 그들은 다른 사람들과 동일한 방법으로 책 잡히지 않는다); 5) 의복과 삶의 방식에 있어 그들은 지역 주민들과 다르다.”<sup>324</sup>

292 여러 증언자들은 그들의 가족 내력 때문에 선생님과 다른 학생들로부터 배척 당했던 어린 시절의 차별에 대해 언급하였다.

323\_ IV장 F 참조.

324\_ “Report, Embassy of Hungary in North Korea to the Hungarian Foreign Ministry,” 1960년 8월 1일, History and Public Policy Program Digital Archive, MOL, XIX-J-1-j Korea, 5. doboz, 5/ca, 004238/1/1960. NKIDP, Balazs Szalontai 번역. <http://digitalarchive.wilsoncentre.org/document/113409> 참조.

- 전 일본 “귀국자”였던 치바 유미코 씨는 도쿄 공청회에서 북한에서의 경험에 대해 증언하였다. 그녀는 “귀국자”들에 대한 차별이 만연했었다고 언급하였다. 그녀가 일본 옷을 학교에 입고 가면 선생님과 학생들이 그녀의 일본 옷을 찢고 일본 옷을 입는 것은 어리석다는 이야기를 계속 들었다고 회상하였다.<sup>325</sup>

**293** 일본 “귀국자”들은 주민들이 주식으로 선호하는 쌀을 먹을 수 있었던 반면, 대부분의 북한 주민들은 옥수수과 보리로 끼니를 때워야 했다. 일본 출신 주민들은 계속 격리된 채로 남았고, 북한 사회에 흡수되기보다는 대부분 그들만의 공동체 내에서 교류하였다.

**294** 집단이 상대적으로 부유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국외에서 왔고 특히 북한의 철천지 원수로 여겨지는 일본에서 왔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요주의 인물들로 여겨졌다.

- 예를 들어, 일본 태생의 한 증언자는 만약 어떤 사람이 ‘성분’ 지위에 문제가 있다면 그 사람은 해외로 출국하는 것이 금지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한 사람이 다른 나라를 방문하기 위해서는 의무적으로 보위부의 서명을 받아야 했다. 하지만 만약 그 사람이 해외 방문에서 돌아오지 않는다면 자신이 곤경에 처하기 때문에 보위부원은 ‘성분’이 나쁜 사람을 신뢰하지 않았다.<sup>326</sup>
- “귀국자” 가족 출신의 한 증언자는 그와 그의 가족이 첩자이며 신뢰할 수 없는 사람들로 여겨졌다고 말하였다. 그들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그의 가족 중 누구도 고위직을 꿈꿀 수 없었다. 그는 “귀국자”가 저지른 범죄에 대한 처벌 또한 일반 북한 주민들의 처벌과 같지 않았다고 언급하였다. 그들은 모든 것에 대해 관료들에게 뇌물을 주도록 강요 받았지만 고위 관료들은 그들이 “귀국자”였기 때문에 그들에게서 뇌물을 받지 않았다.<sup>327</sup>

---

325\_ 비공개 면접과 도쿄 공청회, 2013년 8월 30일, 오전. 일본에서 온 TAP001은 그녀의 가족이 그들이 원래 지금 살고 있던 마을 출신이 아니었기 때문에 차별을 당하였다고 진술했다. 비록 시간이 흐르면서 완화되기는 했지만, 그녀가 어렸을 때 다른 아이들은 그녀와 거리를 두고 함께 놀지 않았다.

326\_ TAP002.

295 일본 출신 주민들은 대부분 당 또는 군 내에서 중급 또는 고위급 직위에 오를 자격이 없었다.<sup>328</sup> 전문가 및 조사위원회가 받은 증언들에 따르면 귀국자들은 정치범수용소로 보내질 위험이 더 많았다.<sup>329</sup>

- 치바 씨는 도쿄 공청회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1970년대에는 일본어로 말하는 것, 일본어로 노래를 부르는 것, 일본어를 사용하는 것 또한 처벌의 대상이 되었다. 야마다씨는 마구잡이 기간에 대해 언급했는데 70년대와 80년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어떠한 범죄 그 자체도 저지르지 않았지만 아무런 이유 없이 많은 사람들이 사라졌습니다. 이것은 북한에서 일어났던 꽤 일상적인 일이었습니다.”<sup>330</sup>
- 또 다른 “귀국자”는 1976년에 그의 아버지가 어떠한 경고도 없이 정치범수용소로 보내졌다고 조사위원회에 증언하였다. 그 증언자는 사회안전부(현 인민보안부)와 보위부로부터 그의 아버지의 운명에 대한 해답을 찾고자 계속 노력하였다. 몇 주 후, 보위부에서 나온 한 보위원이 그의 아버지의 등록부를 그들의 집으로 가져와서 그에게 혐의 내용을 보여주었다. 그의 아버지는 알고 보니 “일본에서 기차는 시속 200킬로미터로 달리는데 여기는 시속 40킬로미터 밖에 되지 않는다. 북한이 일본을 넘어 성장할 것이라고 하지만, 나는 그것이 의심스럽다”라고 말했을 때 김일성을 비방한 게 되었던 것이었다. 그 증언자는 헌법이 언론의 자유를 보장한다며 보위원과 언쟁을 벌였지만 그 보위원은 언론의 자유가 체제에 대한 훼손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증언자는 그의 아버지가 제22호 정치범수용소로 보내졌다고 생각하고 있다. 제22호 수용소로 보내졌던 어릴 적 친구는 그의 아버지가 ‘관리소’에서 1978년에 돌아가셨다고 전하였다. 가족은 그의 죽음에 대한 어떠한 통지도 받지 못하였다.<sup>331</sup>

327\_ TSH038.

328\_ Andrei Lankov, “Minorities in North Korea, part 1: Japanese-Koreans,” *NK News*, 2013년 8월 6일.

329\_ TJH026.

330\_ 도쿄 공청회, 2013년 8월 30일, 오전(01:59:57).

331\_ TSH036.

296 일본으로부터 오는 송금액이 1990년대에 점점 줄어들자 일본 “귀국자”에 대한 특혜도 끝이 났다.

297 남한에서 태어났거나 부모님이 남한 태생인 다른 북한 주민들 또한 차별 대상이었다.<sup>332</sup> 이는 민족적으로는 한국인이라 하더라도 가족이 중국 태생인 사람들에게도 동일하였다.

- 예를 들어, 조진혜 씨는 워싱턴 공청회에서 “저희 할아버지는 사실 중국에서 결혼을 하셨고 거기서 아버지가 태어나셨습니다. 그분들은 아버지가 11살이 되었을 때 북한에 내려 오셨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저는 저희 가족이 북한에서 매우 높거나 좋은 계층이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녀의 아버지는 광부였다.<sup>333</sup>

298 가장 극심한 차별을 받았던 사람들 중에는 정전협정 후 북한에 남겨진 국군포로들이 있었다.<sup>334</sup>

332\_ TAP012는 정치적으로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선친의 나쁜 성분 때문에 그와 그의 가족이 정치범수용소에 보내졌다고 설명하였다. 하지만 증언자의 가족과 결혼한 한 식구도 북한군에 입대했음에도 남한 태생이기 때문에 결국 같은 수용소로 보내졌다.

333\_ 워싱턴 공청회, 2013년 10월 30일 (00:20:00). 또한 증언자 조씨는 중국 옌볐에서 태어났다. 그의 아버지는 북한에서 태어났고 1930년대에 중국으로 이주하였다. 그의 아버지는 인텔리였기 때문에 가족은 문화 대혁명 시기 동안에 위태로워졌고 1960년에 다시 북한으로 이주하였다. 조씨는 그가 외국 태생이기 때문에 북한의 주류 생활에서 배제되었다고 설명하였다. 그는 국군포로와 다른 이민자들이 살고 있는 함경북도의 모든 도시에서 멀리 떨어져 살도록 보내지는 것을 포함하여 여러 가지의 방법을 통한 차별을 경험하였다. 학교에서 그는 악센트가 있는 어투와 중국 옷을 입었다는 이유로 심한 괴롭힘을 당하였다. 체조를 매우 잘하고 선생님들로부터 특별 훈련을 받도록 선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당 관료들의 아이들만 경기에 선발되었다. 조씨는 처음에는 금광에서 일하도록 배정되었다. 그는 열심히 일했고, 소규모 작업단위의 대표로 승진되었다. 그와 같은 마을에서 온 그의 직속 상관(당원)도 당에 가입하도록 그를 독려했고 그를 위해 추천서도 써주었다. 조씨는 당 시험을 위해 열심히 공부했고 두 번 지원했지만 두 번 모두 거부되었다. 그는 후에 그를 추천한 상관으로부터 김일성의 명령에 따르면 외국 태생 국민은 당에 가입할 수 없기 때문에 그의 지원서가 배제된 것임을 전달 받았다(TSH049). 또한 TBG017.

334\_ TBG008.

- 탈북하여 한국으로 돌아온 전 국군포로였던 유영복 씨는 서울 공청회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우리는 국군포로라는 그 신분 때문에 차별과 멸시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멸시했습니다. 우리는 북한 여성과 결혼을 했지만 우리 자식들까지 통제를 받았고 감시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좋은 직장을 주지 않아서 우리 아이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줄 기회는 정말 없었습니다.”<sup>335</sup>
- 남한 출신의 또 다른 전 국군포로는 함경북도의 탄광에서 40년 동안 일하였다. 그는 조사위원회에 광부들의 약 4분의 1이 국군포로였으며 그들은 사회안전성(현 인민보안부)과 국가안전보위부의 특별히 엄중한 감시를 받았다. 증언자는 정기적으로 심문을 받았으며 심문관들은 그의 삶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많이 알고 있는 듯 하였다. 그는 결혼을 해서 3명의 아들과 2명의 딸이 있었다. 그의 아들들은 군에 입대하거나 대학에 진학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고 그 중 한 명은 그에게 “우리는 도대체 왜 태어난 거죠?”라고 묻기도 하였다. 그의 딸들은 국군포로 가족이기 때문에 좋은 성분의 남자와 결혼을 할 수 없었다. 그의 손자들조차 군 입대와 제3차 교육 기회가 허락되지 않았다. 증언자는 한 국군포로 친구가 목을 매어 자살한 것을 상기하였다. 그 친구의 자녀들이 그들이 처한 상황에 대해 불평했지만,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이다.<sup>336</sup>

299 기근 동안 시작된 북한 경제의 실질적인 시장화로 인한 민간 부문의 부상과 제한된 신 정보 기술의 도래에도 불구하고 북한에서의 사회적 유동성은 여전히 제약적이다. 하지만 한 사람의 기회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성분’의 역할이 바뀌고 있다. 한 유명 전문가는 “한때 북한 주민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였던” ‘성분’의 역할이 재산으로 대체되고 있다: “북한 사회는 한 사람의 관료와의 관계나 물려받은 계급적 지위가 아닌 돈과의 관계로 정의되고 있다.”<sup>337</sup> 대부분의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성분’은 오늘날 여전히 중요한데 특히 지배층의 최고위층과 최하위층에 있어 중요하다. 하지만, ‘성분’은 이제 부패가 삶의 거의 모든 면에 침투한 변혁

335\_ 서울 공청회, 2013년 8월 23일, 오후(00:18:35).

336\_ TJH029.

337\_ Andrei Lankov, “North Korea's new class system,” *Asia Times*, 2011년 12월 3일. 또한 ECC010.

사회에서 서비스나 기회에 접근하는 데 필요한 하나의 요소일 뿐인 것으로 보인다.<sup>338</sup>

## 2. 여성에 대한 차별

300 북한은 2001년 2월 27일에 여성차별철폐협약에 동의하였다. 여성차별철폐 위원회에 2005년 처음 제출한 보고서에서 북한은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다:

반세기를 넘어 지금까지의 여러 사회 혁명과 발전 동안 성 평등에 대한 내용과 그에 대한 보장은 끊임없이 발전하고 향상되었다. 남성과 여성 간의 평등은 사람들에게 이제 “여성에 대한 차별”이라는 말이 생소하게 들릴 정도로 실현되고 있다. 성 평등은 단순한 평등의 범위에 국한된 것이 아니어서 국가의 정책과 법령은 여성을 더 중요시하는 관념을 반영하고 있고, 그것의 시행은 이제 자연스러운 도덕적 의무이며, 사회 전반의 생활 분위기는 법률상의 의무를 넘어서고 있다.<sup>339</sup>

301 한국 사회는 유교 가치관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다.<sup>340</sup> 전통적인 유교 사상은 여성의 ‘덕목’을 어린 시절에는 아버지, 결혼 후에는 남편, 남편이 죽은 후에는 아들에게 얼마나 잘 순종하는지에 연결시켰다. 유교적 이상에 따라 여성은 중매결혼을 했고, 결혼을 하자마자 그녀는 남편 가족의 일원이 되고 자신의 가족에서는 외인이 되었다.<sup>341</sup>

338\_ 국제투명성기구의 2013년 부패인식지수에 따르면 북한은 아프가니스탄과 소말리아와 함께 각각 겨우 8점을 받아 공동 175위로 최하위 국가였다. 한 나라 또는 지역의 점수는 인지되는 공공 부문의 부패 정도를 0에서 100등급으로 명시하는데, 0은 국가가 매우 부패하였다고 여기고 100은 매우 청렴하다고 여긴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 나라의 순위는 지수에 포함된 다른 나라나 지역과 비교하여 그 나라의 위치를 명시해준다.

339\_ CEDAW/C/PRK/1, para. 72.

340\_ III장 참조.

341\_ Park Kyung-ae, “Women and Social Change in South and North Korea: Marxist and Liberal Perspectives,” Women and International Development, Working Paper No. 231, Michigan State University, 1992년 6월, p. 2.



302 김일성은 “여성은 남성과 완전히 대등한 관계에 있어서 그들은 모두 자신의 능력과 기질에 맞는 혁명적 임무를 부여 받았고 그것을 수행하였다”라고 언급하며 해방 운동에 여성이 참여하도록 권하였다고 한다.<sup>342</sup> 하지만 독립운동 내 여성의 참여는 해방 후 사회에서 그들의 지위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303 북한은 점진적인 성 평등의 발판을 마련하기 시작하였다. 김일성은 1946년 7월 30일에 공포된 남녀평등권에 대한 법령의 시행을 통해 남녀 간의 평등을 개선하고자 하였다. 이 법은 자유 결혼 및 이혼의 모든 영역에서의 평등권과 재산을 상속받고 이혼 시 재산을 분할할 동등한 권리를 강조하였으며, 중매결혼, 일부다처제, 축첩(蓄妾), 여성 인신매매, 성 매매, 기생 제도를 금지하였다.<sup>343</sup>

304 김일성은 법률만으로는 여성을 가부장제에서 해방시키고 평등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인지하고 그들을 노동력에 완전히 통합시킬 것을 장려하여 북한 여성을 해방시키고자 하였다. 김일성에 따르면, 해방된 조선에서는 “여성이 ... 공장과 전원 지대의 생산 영역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남성 못지않게 헌신하고 관심을 갖고 힘써야만 완전한 해방을 얻을 수 있다.”<sup>344</sup> 1961년 전국어머니대회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권고를 하였다:

“과거 여맹의 활동에서 중요한 문제는 문맹을 퇴치하고 여성을 억압했던 봉건적 사상을 제거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 일은 우리 사회에서 더 이상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닌 듯 하다. 오늘날, 여맹은 사회주의 건설에 여성이 참여하도록 적극적으로 운동을 벌이

342\_ Yu Euiyoung, *Kim Il Sung Works* (평양, 외국문출판사, 1980), p. 185, Park Kyung-ae, “Women and Social Change in South and North Korea: Marxist and Liberal Perspectives,” p. 2에 인용.

343\_ Park Kyung-ae, “Women and Revolution in North Korea,” *Pacific Affairs*, vol. 65, No. 4 (1992년 겨울), p. 533.

344\_ *Ibid.*, 8.

고 그들이 일을 잘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데 전념해야 할 것이다.”<sup>345</sup>

**305** 여성들이 공공 경제에 온전히 헌신하도록 하기 위해서 김일성은 1946년에 국가가 아이들을 양육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을 지지하였다.<sup>346</sup> 이 때문에 1972년 사회주의헌법은 여성들이 사회 생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취해야 할 정책들을 명문화하였다. 여기에는 유급 출산 휴가, 무료 탁아소 및 유치원, 어린 자녀가 있는 어머니를 위한 근무 시간 단축이 포함된다.<sup>347</sup> 아이들을 육성하고 직장에 다니는 어머니들을 보호하는 국가의 의무는 1976년의 어린이보육교양법과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여성은 8시간에 대한 급여를 받지만 6시간만 근무를 하도록 규정하는 1978년 노동법에 추가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실제로 국가 보육 서비스는 김일성 아래에서 기하급수적으로 확장되었다. 1949년에는 12개의 탁아소와 116개의 유치원이 있다고 전해졌다. 1961년에는 7,600개의 탁아소와 45,000개의 유치원이 있었다. 1976년쯤에는 350만 명의 아이들 중 거의 100%가 6만 개의 탁아소와 유치원 중 한 곳에 다닐 수 있었다.<sup>348</sup>

**306** 북한 지도자들이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공표한 법적·사회적 조치들은 어느 정도는 전통적인 가족 구조의 철폐를 겨냥한 것이었다. 노동을 통한 여성해방에 대한 강조는 가정의 경제력이 축소되는 결과를 가져왔고 아이 양육의 “사회화”는 전통적인 가족 구조를 무너뜨리는 역할을 하였다. 김일성을 아버지 같은 존재로 형상화하는 것은 김일성이 존경할만한 지도자이고 북한 주민들은 그의 자녀가 되는 사회로 재구성하는 데에도 보탬이 되었다. 봉건적 가족을 없애려는 공약이 양성 평등을

345\_ *Ibid.*, 9.

346\_ *Ibid.*, 9.

347\_ 북한 사회주의헌법(1972), 제62조.

348\_ 김일성, “어린이보육교양사업을 더욱 발전시킬데 대하여.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6차 회의에서 한 연설,” 1976년 4월 29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보여지긴 했지만 실제로는 여성해방이나 가족 단위 모두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 여성들이 그들의 “족쇄”로부터 자유로워지자 (남성은 이미 그렇게 하도록 요구되고 있었던 것과 같이) 국가에 온전히 헌신할 수 있었다. 국가가 아이들을 돌보는 것은 아이들이 지도자를 아버지로 생각하고 자신의 가족보다도 그에게 충성을 맹세하도록 가르칠 수 있었기 때문에 지도자의 지위를 강화시키는 역할도 하였다. 아이들을 어릴 때부터 국가의 책임 아래에 두는 것은 오랜 세월 동안 세뇌시키는 것을 가능하게 했기 때문에 이것이 통제를 유지하기 위한 주요 요소임이 증명되었다.<sup>349</sup> 경제 실패와 전국적으로 여러 다른 시기에 있었던 극심한 식량 부족과 결부된 가족 관계의 약화는 아이들에게 깊이 영향을 주었다. 어떠한 경우에는 이것이 아이들이 보호 시설로 보내지고, 버려지고, 건강이 약해지고 학대를 받기 쉬워지는 결과로 이어졌다.<sup>350</sup>

**307** 1960년대와 1970년대에 북한의 경제 활동이 절정에 달했을 때, 대도시 여성들의 가사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자 제품과 통조림 식품과 같은 “패스트푸드”가 소개되었다. 논증의 여지는 있지만, 국가는 가정에서 여성의 전통적인 역할을 떠맡아 그들이 이른바 “노동을 통한 해방”이라고 불리는 국가적인 생산에 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런데 여성의 전적인 사회 생활 참여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경제적 지위는 남성과 동등하지 않았다. 급여 체계에 대한 공식적인 정보는 없지만, 다른 자료들은 남편과 아내의 소득 분포 구조가 남편의 소득이 그의 아내의 소득보다 항상 많아야 함을 의도하였다고 밝힌다. 그 구조는 평등 문화도 조성하지 않았다.<sup>351</sup>

349\_ IV장 A 참조.

350\_ IV장 C 참조.

351\_ KINU,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3), pp. 382~303; Park Kyung-ae, “Women and Social Change in South and North Korea: Marxist and Liberal Perspectives,” p. 11.

**308** 양성 평등 개선을 위해 법을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적 태도는 여전히 전통적이었다. 북한의 극단적인 사회 군국화는 결과적으로 계속되는 성차별에 도움이 되는 조선 여성의 덕목 보호와 외부 적대세력으로부터 조선인의 순수성 방어와 같은 주제들을 권장해왔다. 유일한 양성 평등 조짐은 여성이 남성과 마찬가지로 국가가 지원하는 직장에서 일할 것이라는 기대였다. 가정과 직장에서 여성의 삶은 남성에게 비해 여전히 부차적이고 불평등한 채로 남았다. 보육 서비스와 가전제품, 기타 가사량을 줄이기 위한 개발품의 제공에도 불구하고 여성은 여전히 가사에 압도적인 책임을 지고 있었다. 노동을 통해 여성을 해방시키고자 한 김일성의 의도는 여성들이 이제 국가 직장과 가사 모두에 종사해야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짐은 배가 되었다.

**309** 여성이 직면한 이중 부담은 결혼을 하면서 직장을 떠나는 여성이 많아지는 결과로 이어졌다.<sup>352</sup> 국가를 위해 일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더 고등한 것이며 그래서 “남자의 일”로 여겨졌기 때문에 1990년대에 경제가 악화되면서 여성들은 직위에서 해고되었다. 남성들 또한 감시의 대상이었고 국가 고용 제도는 감시 구조의 중요한 요소였다.<sup>353</sup> 경제 체제가 무너지고 여성들이 국가 고용 밖에 머무르면서 여성의 활동력은 생존을 향하였다. 차후에 여성들이 주로 운영한 사설 시장의 출현은 많은 가족들을 굶주림에서 구하였다. 하지만 여성들은 국가 고용 밖에 있기 때문에 국민 연금에 대한 권리와 보육 서비스를 이용할 권리를 상실하였다.<sup>354</sup>

**310**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일하는 여성들은 하루 만에 남성 월급의 배를

352\_ Stephen Haggard and Marcus Noland, “Gender in Transition: The Case of North Korea,” *World Development*, vol. 41 (2012), p. 52.

353\_ IV장 C 참조.

354\_ NKHR, “Status of Women’s Rights in the Context of Socio-Economic Changes in the DPRK,” 2013년 5월, p. 31.

별 수 있다. 최근 몇 년 간 남성들은 종종 국가 고용주들로부터 전혀 임금을 받지 못하였다.<sup>355</sup> 북한의 의사 결정자들이 여성들의 입지 강화를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여성들을 노동력으로 끌어들이고자 했던 그들의 정책을 뒤집어 실질적으로 여성들을 국가 고용에서 몰아냄으로써 여성들의 경제력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였다. 북한 가족들의 거의 절반이 그들의 유일한 수입원으로서 민간 거래에 의존하고 있고, 가정에서 주로 생계를 꾸려나가는 80~90%는 여성이다.<sup>356</sup> 이것이 가족 내에서의 역할을 변화시켰다.

**311** 여성의 경제적 출세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국가로부터 차별을 받고 있다. 북한은 여성이 주도하는 시장에 40세 이상의 여성 외에 그 누구도 거래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포함하여 많은 제약을 가하였다.<sup>357</sup> 성차별의 일환으로는 여성에게는 뇌물을 수수하거나 벌금을 내도록 하는 형태도 있다. 북한을 떠난 북한 사람들에게 실시한 최근 연구에서 여성 상인 중 95%가 뇌물을 준 적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남성의 3분의 1 이상이 범죄 행위와 부정 행위가 돈을 벌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이라고 말하였다.<sup>358</sup> 2012년까지 시행되었던 여성들이 자전거를 타지 못하게 하는 규정은 2013년 1월에 재도입되었다.<sup>359</sup> 소문에 의하면, 이전 금지법에서는 보안원들이 지방 여성들에게 옥수수 4kg 값에 해당하는 벌금을 징수했지만 이제는 대신 자전거를 압수한다고 한다.<sup>360</sup> 벌금으로 하루치 임금이나 자전거 압수하는 것은 여

355\_ Louisa Lim, "Out Of Desperation, North Korean Women Become Breadwinners," *National Public Radio*, 2012년 12월 28일.

356\_ Peterson Institute가 Louisa Lim, "Out Of Desperation, North Korean Women Become Breadwinners," *National Public Radio*를 인용, 2012년 12월 28일.

357\_ TAP007.

358\_ Stephen Haggard and Marcus Noland, "Gender in Transition," pp. 51~66.

359\_ "Women on bicycles banned again," *Daily NK*, 2013년 1월 14일. <http://www.dailynk.com/english/read.php?catald=nk01500&num=10231> 참조.

360\_ *Ibid*; NKHR, "Flowers, Guns and Women on Bikes: Briefing Report on the Situation of Women's Rights in the DPRK," 2009, p. 17.

성이 수입을 얻고 자신의 가족을 먹이는 것을 심각하게 저해한다. 여성들이 그와 같은 부과에 이의를 제기하고 저항하기 시작하였다는 최근 증거들이 있다.

**312** 여성들이 치마를 입어야 한다는 규정도 시행 중이었고 규찰대(도덕적 위반이라고 불리는 행위들을 단속하기 위해 동원된 주민 조직)에 의해 집행되고 있었다. 최근 증거들은 그러한 규제들이 평양에서는 느슨해졌지만 덜 도시화된 지역에서는 여전히 시행되고 있을 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sup>361</sup> 더욱이 청년동맹과 여맹은 여자 아이들과 여성들에게 적절한 복장에 대해 ‘교육’을 하는 일을 맡고 있다.

- 한 증언자는 조사위원회에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북한 여성들은 붙는 바지와 청바지를 입는 것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여성들은 사회주의 생활방식에 따라 가급적이면 치마를 입고 검정색 신발을 신어야 합니다. 결혼한 여성들은 바지를 입을 수 있습니다. 여름에 그들은 장신구가 있는 샌들을 신을 수 없습니다. 저는 청년동맹에서 여성의 제약 규정에 대해 배웠습니다. 만약 여성들이 규제를 준수하지 않으면 한 달 동안 단련대[노동단련대]로 보내질 수 있습니다.”<sup>362</sup>
- 또 다른 증언자는 이러한 종류의 규제들이 만들어진 이유에 대해 설명하였다:  
 “김정일의 지시는 대개 법이 됩니다. 그가 못마땅해하는 것이 있으면 인민보안부는 정책을 생각해내고 정책이 생기면 김정일이 그것을 서명하고 법이 됩니다. 명령을 따르기 위해서 보위부와 보안부는 법령을 시행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것을 하려고 합니다... 그들은 무엇이든지 합니다. 만약 김정일이 여자 아이들이 너무 짧은 치마를 입거나 머리카락이 너무 길다고 생각하면 검열 단체는 (법을 만들기 위해) 그 문제에 착수합니다. 여성들이 자전거를 타고 바지를 입는 것을 금하는 법령들은 아주 많습니다.”<sup>363</sup>

361\_ 이러한 규제들은 2013년 7월에 폐지되었다고 알려지지만, 전문가의 증거는 규제들이 평양 밖에서는 여전히 시행되고 있다고 시사한다.

362\_ TLC042.

363\_ TLC013.

313 2005년에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북한에 여성에 대한 차별을 협약에 따라 규정하고 여성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조치와 정책을 실시할 것을 요청하였다.<sup>364</sup> 이러한 요청에 대한 응답으로 2010년 12월에 북한은 1948년 남녀평등권에 대한 법령 이래 특별히 양성평등 문제를 겨냥한 첫 법률인 여성권리보장법을 제정하였다. NGO인 북한인권시민연합에 따르면,

“여성권리보장법은 단지 유엔의 북한인권검토 중에 국제적 압박에 직면했을 때 만들어진 허울이다 … 북한은 최근 사상 교육을 통해 가부장 사회에서 전통적인 여성의 역할을 강화하려고 하고 있다.”<sup>365</sup>

314 초기 개혁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에서 여성은 여전히 차별을 받고 있다. 여성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위원 및 후보위원의 단 5%,<sup>366</sup> 중앙 공무원의 10%를 형성하고 있다.<sup>367</sup>

315 여전히 여성이 남성에 복종하도록 되어있지만, 여성의 경제적 성장이 가정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비정부 인가 기업을 통해 수입을 올리고자 하는 남성이 있다 해도 (공식적으로 공직에 고용된 상태로 있어야 하기 때문에) 국가가 허용을 하지 않고 시장이 ‘여성의 영역’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시장에서 일을 하는 것을 삼간다.<sup>368</sup>

- 한 전직 상인은 몇몇 남자들이 시장에서 자전거를 팔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남자들은 자신의 직장 생활이 있었기 때문에 여자들이 더 많았다”고 조사위원회에 전하

364\_ CEDAW/C/PRK/CO/1.

365\_ NKHR, “Status of Women’s Rights in the Context of Socio-Economic Changes in the DPRK,” p. 16.

366\_ KINU, *Study on the Power Elite of the KIM Jong Un Regime* (2013), p. 24.

367\_ Won-woong Lee, “An Observer Report on the UN Human Rights Committee’s Review Session on North Korea’s Second Periodic Report on Human Rights” KINU,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3), p. 381에 인용.

368\_ TAP007, TBG030, TSH052.

였다.<sup>369</sup>

- 아내가 시장에서 거래를 했던 한 증언자는 “창피했기” 때문에 시장에서 일하지 않았다고 설명하였다. 그는 또한 조사위원회에 “장마당에서 장사를 하는 남자들은 처벌을 받는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2002년부터 2003년까지 더 많은 남자들이 시장에서 일을 했지만, 여전히 오명이 붙어있습니다. 남자들은 공직에서 일해야 합니다”라고 말하였다.<sup>370</sup>

**316** 시장에서 여성을 과도하게 내세운 결과로 대부분의 가계 소득은 여성이 창출하게 되었고, 이것은 인지할 수 있을 정도의 남성 무력화로 이어졌다. 여성이 남성을 부양해야 하고, 남성은 기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전해진 바에 따르면 어떤 여성들은 남편을 “멍멍이”라고 부른다. 여성들이 부담하고 있는 추가적인 경제적 부담은 국가 서비스 정지로 인해 몇몇 가정에 전기나 수도물이 부족하여 발생하는 가정에서의 추가 부담과 결부되어 있다.<sup>371</sup> 여성들이 져야 하는 추가 부담은 사회적인 결과를 가져오기 시작하였다. 젊은 여성들은 남편을 책임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 결혼을 미루고 싶어하며, 많은 남성들이 변화하는 성 역할을 극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정 폭력이 늘고 있다.<sup>372</sup>

**317** 증언자의 증언은 가정 폭력이 북한 사회에 만연하고, 피해자들은 국가의 보호를 받거나, 지원 서비스를 제공받거나, 재판에 호소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sup>373</sup>

- 한 증언자는 조사위원회에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

369\_ TBG030.

370\_ TSH052.

371\_ Lim Soon-hee, *The Food Crisis and the Changing Roles and Attitudes of North Korean Women* (KINU, 2005), p. 14.

372\_ Louisa Lim, “Out Of Desperation, North Korean Women Become Breadwinners,” *National Public Radio*, 2012년 12월 28일.

373\_ TAP007, TSH020, TSH055, TLC042, TBG028.



“가정 폭력은 상당히 흔하다. 이와 관련된 법은 없다: 가족 문제는 가족 내에 머물러야 한다. 여자가 호소를 하더라도 경찰은 가족 일에는 개입하지 않을 것이다.”<sup>374</sup>

- 조사위원회는 또 다른 증언자로부터 비슷한 의견을 들었다:  
“[여성에 대한 폭력]은 가족 문제로 여겨진다. 그 사람이 심각한 부상을 입으면 그때 서야 외부에 알려진다. 이는 빈번한 일이다. 호소할 곳이 없다. 이 경우 이혼사유가 될 수는 있다. 여성이 심각한 구타를 당했을지라도 남편에 대한 처벌은 없다.”<sup>375</sup>

**318** 증언자들은 여성에 대한 폭력이 가정에 국한된 것이 아니며, 여성에 대한 구타 및 성폭력이 공공연한 장소에서 흔히 자행되고 있다고 증언한 바 있다.<sup>376</sup> 관료들이 낮은 임금, 또는 제대로 받지 못하는 임금을 충당하기 위해 부패를 저지르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처벌에 대한 우려가 없기 때문에 성폭력과 성범죄의 형태로 벌금과 처벌을 집행하고 있다.<sup>377</sup> 심각한 경제 및 식량난으로 인해 생업을 위해 경제활동에 뛰어들어 여성의 수가 늘어남에 따라, 물건을 팔고 운송하면서 공공장소를 지나다니거나 서성거리게 되는 여성도 늘어가고 있다. 남성이 대부분인 국가 공무원들, 시장의 치안을 관할하는 요원, 기차 감시요원, 군인들이 공공장소에서 여성에 대해 성폭력을 저지르는 빈도가 증가하고 있다. 조사위원회는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행이 북한에서 심각하게 처벌되고 있는 것과 달리 성인에 대한 성폭행은 범죄로 여겨지지 않고 있다는 증언을 입수했다.<sup>378</sup> 조사위원회는 또한 기차 감시요원들이 객차를 돌아다니면서 여성들에 대해 몸수색을 하고 탑승하고 있는 젊은 여성들을 학대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은 바 있다.<sup>379</sup> 한 목격자는 조사위원회에 다음과 같이 진술했다.

374\_ TBG030.

375\_ TBG028.

376\_ TSH020, TSH008, TLC042.

377\_ NKHR, “Status of Women’s Rights in the Context of Socio-Economic Changes in the DPRK,” p. 29.

378\_ TLC042.

379\_ TSH008.

“여성들은 [판매를 위한 물품을 소지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역에 들어설 때 몸수색을 당했다. 나는 이것이 성폭력이 발생하는 시초라고 생각한다. 감시요원들은 젊은 여성들을 열차에 태워서 강간을 비롯한 성적인 행위를 자행한다.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일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며, 이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sup>380</sup>

**319** 그러한 행위에 대해 “갈수록 남성지배적인 북한 당국이 갈수록 여성중심적으로 변모하는 시장을 희생양으로 삼고 있는” 상황이라는 관찰도 있다.<sup>381</sup> 군대 내에서 여성에 대한 성폭력도 보다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sup>382</sup> 전직 육군장교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 바 있다.

“많은 성적 학대와 강간이 선임장교에 의해서 자주 자행되고 있다. 일반 병사들 또한 강간을 자행하나, 이 경우는 병역 복무 중에 어떠한 성관계에 대한 권리도 인정되지 않는 신분이라는 사실로 인해서 문제가 심각해진다. 남성 동지들이 강간에 대해서 언급하며 심지어는 떠벌리는 경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는 은폐된다. 강간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주지된 사실이다.”<sup>383</sup>

**320** 미혼여성이 조선노동당에 가입하거나 직장 내에서 승진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성적 모욕이 발생한다는 보고도 존재한다.<sup>384</sup> 조사위원회는 여성에 대한 성폭력이 북한 사회 전반에 걸쳐 만연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여성들이 식량, 금전, 여행을 얻기 위해 또는 벌금이나 기타 처벌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발적으로 남성들에게 성상납을 하면서 북한 내에서 성을 매개로 하는 거래 및 성 매매 또한 만연한 상황이다. 취약 계층의 생존을 위한 필요에서 비롯되는 이러한 행위들은 식량난 및 성차별의 구조적 문제의 결과이다.<sup>385</sup> 이러한 구조적 문제는 여성 및 여아에 대

380\_ TSH020.

381\_ Stephen Haggard and Marcus Noland, “Gender in Transition,” p. 51.

382\_ KINU,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3), p. 395.

383\_ TJH044.

384\_ Lim Soon-hee, “The Food Crisis and the Changing Roles and Attitudes of North Korean Women” (2005), p. 22.

한 인신매매를 부추기는 주요 요인이다.<sup>386</sup> 이런 측면에서 조사위원회는 국가기관의 취업 또는 공공부문의 승진과 관련하여 기회가 거의 없으면서도 40세 이상의 여성에게만 거래가 허용되는 나이 제한으로 인해 시장에서의 참여도 금지되는 젊은 여성이 당면하는 어려운 상황에 특히 주목하고 있다.

### 3. 장애인에 대한 차별

321 유엔에 따르면 전 세계 인구의 약 10%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장애를 가지고 있다.<sup>387</sup> 세계보건기구(WHO)는 2007년 조사에서 북한이 자국민의 3.4%에 해당하는 약 79만 명이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추산했음을 보여준다.<sup>388</sup>

322 2013년 7월에 북한은 장애인권리협약에 서명했으나 아직 비준하지는 않았다. 장애인에 대한 무상 의료보험과 특수교육을 보장하는 장애자보호법이 2003년 통과되었다. 2009년 보편적 정례인권검토에 제출된 북한의 보고서는 채택된 법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장애자보호법은 장애인의 권리를 만족스러운 수준으로 보호하기 위해 채택되었다. 장애자는 교육과 의료를 받고, 재능과 능력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며, 타인과 동등한 권리를 갖는 문화적 삶을 영유하며… 다른 장애가 있는 아이들은 주류계층에 포함된다. 상이군인(영예군인)을 위한 공장 및 복지센터가 장애인을 위한 직업 창출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강장제와 보행 보조 기구가 무료로 보급되며 유급휴가와 수당이 제

385\_ IV장 D 참조.

386\_ IV장 C 참조.

387\_ United Nations Enable,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의 공식 웹사이트, “factsheet 2013”.

388\_ World Health Organization, “Disability in the South – East Asia Region,” 2013. 조선장애자보호연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자 제14회 런던장애자올림픽에서 북한 대표였던 김문철에 의하면 북한 내 장애인은 전체 인구의 5.8%에 달한다. KINU,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3), p. 440.

공된다.”<sup>389</sup>

**323** 증언자들에 의하면, 북한 주민들은 장애와 결함에 대해 공개적으로 논의하지 않으며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 대한 편견이 만연하다고 진술했다.

- 열차사고로 팔다리를 잃은 지성호 씨는 서울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조사위원회에 다음과 같이 진술했다.  
“북한에서는 장애인, 지체부자유자, 또는 신체적 결함을 가진 사람들을 비하하는 용어를 사용하여 장애가 있는 특정 신체부위를 지칭한다. 예를 들어, 손이 없거나 나처럼 팔목이 없는 사람을 조막손이라고 부른다.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에 대해서 폄하하는 용어도 있다. 심지어는 내 가족을 지칭할 때도 이름 대신에 조막손네 가족이라고 부른다. 그것이 우리가 마주했던 일종의 편견이었다.”<sup>390</sup>

**324** 북한 당국은 1998년에 중국장애인연합회를 모델로 삼은 조선장애자보호연맹을 설립했다. 내각의 결정을 거쳐 설립된 조선장애자보호연맹은 장애인을 대표하며 이들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시민사회의 조직을 표방한다. 장애인 보호를 위한 연방은 2001년 장기 양해각서에 서명함으로써 국제 NGO와의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다. 또한 감각기관 관련 장애가 있는 아동의 물리적 재활과 교육 분야에서 프로젝트를 수행해왔다.

**325** 1959년에 정부가 청각장애아동과 시각장애아동을 위한 특별 기숙학교를 11곳에 설립했다고 알려져 있다. 지체장애 또는 중복장애를 가진 아동들을 포괄하는 학교나 교육체계가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389\_ A/HRC/WG.6/6/PRK/1, para. 74.

390\_ 서울 공청회, 2013년 8월 22일, 오전 (01:36:00). 지씨는 열차사고로 왼손과 다리 아래쪽을 잃었다. 사고 이후 그는 음식하는데 필요한 석탄을 얻는 것이 어려워졌고 음식을 구하기 위해서 중국으로 갔다. 중국에서 돌아온 뒤 그는 체포되었고, 장애인으로서 중국에 감으로써 북한을 수치스럽게 했다는 이유로 구금되었다. 그는 2006년 북한을 탈북했다.

326 장애인의 법적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취약 계층의 인권 문제 해결에 있어서 긍정적인 발걸음으로 보이나, 이러한 계층에 대한 신빙성있는 정보는 부족한 실정이다. 목격자들은 장애가 있는 유아의 가정은 평양에서 추방되어 복지 서비스가 부재하며 더 참담한 생활여건에 놓이게 되는 농촌지역으로 강제로 재배치되는 장애인에 대한 조직적 차별이 존재한다고 진술했다.<sup>391</sup> 한 전직 고위관료는 조사위원회와의 인터뷰에서 사회안전성(현 인민보안부)이 장애아동관련 사건을 담당했다고 밝혔다. 그는 사회안전성(현 인민보안부) 간부가 가정을 방문해서 장애아동을 계속 데리고 있는 것을 단념시켰다고 말했다. 만약 평양에 거주하는 사람이 장애가 있는 아동을 계속 데리고 있는 것을 고집할 경우, 가족 전체가 수도를 떠나야 했다. 그러나 만약 가족들이 아이와 헤어지는 것에 동의하면, 당국에서 그 아이를 지정된 장소로 데려갔다. 가족은 그 아이를 다시는 찾지 않겠다고 서약하는 서류에 서명을 해야 하며, 그 아이는 마치 장애아동이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공민등록부에서 삭제된다.<sup>392</sup>

장애인의 평양에서의 거주가 허용되고 있다는 최근 보고가 존재하는데, 이 정책이 어느 정도로 실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sup>393</sup> 이는 이 정책이 폐기되었거나 과거처럼 엄격하게 추진되지는 않고 있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북한이 2013년 7월에 서명한 장애인권리협약에 가입하기 위한 준비노력을 반영할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기록에서 장애아동의 삭제와 관련한 주장이 사실이라면, 조사위원회는 이것이 아동권리협약 제7조 및 제8조 위반에 해당됨을 강조하는 바이다.

391\_ TAP007, TAP011.

392\_ TCC014.

393\_ EBG002, TBG026.

-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연구원의 김수암 박사는 조사위원회에 “여전히 장애인에 대한 상당한 차별이 존재한다. 외국인 방문자가 많은 지역에 대해서는 장애인의 거주를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sup>394</sup>

**327** 최근 한 NGO 보고서에 따르면 탈북한 많은 북한 주민들이 장애를 가진 영아들이 살해를 당하거나 유기되었음을 지적했다고 밝히고 있다.<sup>395</sup> 한국에 있는 또 다른 연구기관은 장애인에 대한 인권 침해가 왜소증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격리 및 강제 불임수술을 포함한다고 밝혔다.<sup>396</sup>

**328** 함경남도에 있는 한 섬에서 생화학무기의 의학적 효과에 대한 테스트가 장애인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주장도 있다. 조사위원회는 이러한 주장에 대한 일차적 진술은 확보하지 못했다. 한 전직 고위관료는 자신이 사회안전성(현 인민보안부)에 재직할 당시 사람들이 체포되어 83호 병원으로 이송되었는데 의사들이 이들을 생체실험에 이용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설명했다.<sup>397</sup> 입수된 정보에 근거했을 때, 조사위원회는 이러한 주장을 확정하기는 어려운 위치에 있다. 다만, 이후의 조사가 요구되는 사안임을 강조하는 바이다.<sup>398</sup>

**329** 장애인의 권리는 법에서의 진보뿐만 아니라 북한 당국의 정책 차원에서도 긍정적인 주목을 받아왔다. 외교통에 의하면 조선장애자보호연맹은 세계장애인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선정했다. 2012년 장애인올림픽에는 한 명의 북한 선수가 출전하기도 했다.<sup>399</sup> 2009년 보편적 정례인권검토 보고서에서 북한은 장애인의 날이 “장

394\_ 서울 공청회, 2013년 8월 21일, 오후 (02:34:00).

395\_ NKHR, “Status of Women’s Rights in the Context of Socio-Economic Changes in the DPRK”.

396\_ KINU,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3), pp. 442~444.

397\_ TJH004. 한 전직 보위부 관료는 이런 섬에 관한 소문에 대해서 보고했다(TJH041). NKHR, “Status of Women’s Rights in the Context of Socio-Economic Changes in the DPRK” 참조.

398\_ 알려진 생체실험과 관련해서 IV장 E.6 참조

애인들의 사회로의 통합을 촉진하고 일반대중으로 하여금 장애인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며 장애인들을 지지하도록 격려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밝혔다.<sup>400</sup>

#### 4.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미치는 차별의 영향

330 차별은 식량, 교육, 의료 서비스, 노동권을 비롯한 인간의 기본권에 대한 불공평한 접근을 초래한다. 조사위원회는 ‘성분’ 제도가 여러 세대에 걸쳐 불이익이 세습되고 사회적 이동이 불가능하도록 만드는 구조적인 차별을 양산해내고 있음을 발견했다. 조사위원회는 ‘성분’, 성별, 능력에 기반한 차별이 많은 취약계층을 양산해왔다고 본다.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의 향유에 대한 차별이 미치는 영향은 시간과 장소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외교통에 따르면 차별은 시골지역에서 가장 심각하다.<sup>401</sup>

331 평양은 북한 내 어떠한 지역보다 나은 사회 간접자본과 서비스망을 갖춘 핵심계층을 위한 도시이다. 평양 내 거주권은 일종의 특권이자 철회될 수 있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sup>402</sup>

- 조사위원회에 진술한 한 증언자는 평양에서 태어났지만 부친이 6·25전쟁 당시 남한정부에 협조한 혐의를 받고 1950년대 중반에 처형된 후 ‘성분’이 낮아지면서 가족 전체가 함경북도로 추방되었다고 밝힌 바 있다.<sup>403</sup>

399\_ 조사위원회 제출: SUB060. 또한, “North Korea’s first Paralympian inspires the disabled,” *Associated Press*, 2012년 8월 28일.

400\_ A/HRC/WG.6/6/PRK/1.

401\_ SUB060.

402\_ TJH041.

403\_ TGC001.

**332** 일본에서 북한으로 온 많은 귀국자들은 평양이나 여타 도시에 거주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다.

지바 씨는 조사위원회에 “9만 3천 명의 사람들이 등급과 계급에 따라 분류가 되었고, 계급에 따라 산악지역으로 이송되었다. 많은 일본인들은 산악지역으로 보내졌으며 도시에서 살 수 없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sup>404</sup>

**333** 취약한 계층일수록 식량난의 영향을 더 심각하게 느꼈으며, 이는 1990년대 대기근 당시에 특히 더 그러하였다. 곡물작물에 대한 법정 배급량을 할당하는 식량 배급제는 북한 주민들의 나이 내지 직업적 신분에 기초하여 식량에 대한 주민들의 권리를 결정하였다. 기근의 또 다른 측면은 식량의 이용가능성에 있어서의 지리적 차이이다. 대부분의 엘리트 계층이 거주하는 평양과 그 주변지역은 더 외진 지역, 특히 북한의 동북부 공업지역보다 상황이 더 양호했다.<sup>405</sup>

**334** 사회주의노동법상 개인의 직업 선택권이 보장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북한 당국이 주민들의 고용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압도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 예를 들어, 한국 출신의 한 국군포로는 재교육되어 낮은 ‘성분’ 출신의 북한 여성과 결혼했다. 그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 한 명은 사망했고 다른 한 명은 군복무와 대학진학이 허용되지 않았다. 그는 조사위원회에 광부의 자식은 광부가 되며, 광업 직업학교에 진학한다고 진술했다.<sup>406</sup>

404\_ 도쿄 공청회, 2013년 8월 30일, 오전(02:04:41).

405\_ 음식의 접근에 대해 차별이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보다 상세한 정보를 위해서는 IV장 D 참조.

406\_ TSH051은 낮은 성분 출신자들이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사범대학에 진학할 수 없으나 의과대학을 비롯한 전문대학에는 진학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335 대학 졸업자들의 경우, 조선노동당 지방당위원회 간부과가 관리직과 기술직에 배치될 인력을 결정한다. 어떤 경우에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간부과에서 반드시 논의되어야 하며 비서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도 한다. ‘성분’, 성별, 신체 능력, 학문적 자질 및 기타 생활방식 등과 같은 요소들이 고려된다.<sup>407</sup>

336 고졸자와 제대군인들의 경우, 지방인민위원회 노동부가 작업의 할당량을 결정한다. 채굴, 도로 및 철로 건설과 같은 육체노동이 요구되는 업무의 경우 집단 할당량이 주어진다. 2003년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위원회는 “개인이 자유롭게 자신의 직업 및 직장을 선택할 있는 권리에 반하는 [북한의] 강제 국가배정 방식의 현 제도하에서는 노동권이 온전히 보장되고 있지 못할 수 있음”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sup>408</sup>

337 차별은 직업의 결정뿐만 아니라 직업상의 발전 및 승진에도 영향을 미친다. ‘성분’은 직업적 성공을 추구하는 북한 주민들에게 제한적 요소였다.<sup>409</sup>

- 예를 들어, 전직 북한 언론인인 장해성 씨는 서울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했다.

“저는 높은 ‘성분’ 출신으로 북한 내에서 좋은 계층에 속했습니다. 조부는 항일 활동에 참여하셨던 분이었고, 내 아버지의 형제 두 분은 6·25전쟁에서 목숨을 잃었기 때문에, 나는 특권을 지닌 높은 계층, 높은 ‘성분’ 출신에 속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중국에서 태어났습니다. 만약 내가 중국이 아닌 북한에서 출생했다면 나는 핵심 기관에서 근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중국에서 출생했기 때문에 나는 보안부나 보위부에서 일할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나는 언론사에서 일을 해

407\_ TBG015.

408\_ E/C.12/1/Add.95.

409\_ TAP001에 따르면 일본에서 온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등교육을 받고 직업을 가질 수 있었으나 고위직에는 오를 수 없었다.

야 했습니다.”<sup>410</sup>

**338** 군복무는 북한 내 모든 남성에게 의무적으로 요구되지만 낮은 ‘성분’ 출신자나 장애인의 경우 군복무가 불가하다. 예전에는 주민들이 직업적 목적에서 군복무를 희망했었다. 그러나 1990년대 이래로 영양실조의 위험성 때문에 군대의 매력이 감소했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징집을 피하고자 큰 위험을 감수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복무는 공직 자리를 확보하는데 있어서 핵심적인 방법이다. 고위 관료의 자제들이 당원 또는 대학진학의 자격을 얻기 전에 3년 간만 복무하면 되는 것으로 알려진 것과 달리, 대부분의 시민들은 10년 내지 13년 동안 군대에서 복무한다. 조사위원회가 수집한 일차적 정보에 의하면, 공무원의 직업상 승진을 위해서는 군복무, 조선노동당 당원자격, 대학수준의 학력, 높은 ‘성분’이라는 네 가지 자격이 요구된다. 이러한 네 가지 자격 없이는 어떠한 개인도 당, 군, 정에서 고위관료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된다. 이러한 자격은 안보 조직, 외무 분야, 경제 조직에서 특히 중요하게 작용한다.<sup>411</sup>

**339** 2012년 최고인민회의에서 의무교육기간을 기존의 11년에서 12년으로 확대하고 학급수를 늘릴 것을 약속하였으며 교사들이 식량과 연료 할당량의 배분에 있어서 우선권을 부여받을 것이라고 북한의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이 밝혔다.<sup>412</sup> 보편적 교육을 제공하겠다는 북한 당국의 공약에도 불구하고,<sup>413</sup> 때로는 제도적 차별로 인해 교육에 대한 접근이 제한된다. 북한 경제의 붕괴로 인해 학생들이 교사와 학교 운영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재원을 제공해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sup>414</sup>

410\_ 서울 공청회, 2013년 8월 22일, 오후(00:46:31).

411\_ TAP011, TLC007.

412\_ Choe Sang-hun, “North Korea’s Leaders Promise Improvements to Educational System,” *New York Times*, 2012년 9월 25일.

413\_ CRC/C/PRK/4, paras. 174-176; A/HRC/WG.6/6/PRK/1, para. 59.

- 북한에서 39년간 살았던 찰스 젠킨스(Charles Jenkins) 씨는 두 딸들이 학교에 가져 가야 했던 물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딸들은 항상 나한테 와서 학교 관리들이 모든 학생들의 가정으로부터 일정량의 물품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때로는 선생님이 2kg의 늦쇠를 매주 월요일마다 가져와야 한다고 말했다고 했다. 1kg의 납 또는 100m에 해당하는 구리선을 요구하는 적도 있었다. 석탄, 석유, 심지어는 토끼가죽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구체적인 요구는 학생들이 매달 학교에 내야 하는 옥수수 60kg과는 별도의 부가적 요구사항이었다. “딸 한명당 매일 2.2파운드를 내야 했습니다. 학생 한 명당 일일배급량이 1파운드였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따라서 우리가 낸 것의 절반 이상을 누군가 횡령한다고 볼 수 있는거죠.” 또한 그는 자신의 딸들이 “북한의 엘리트들이 교육받는 상류층을 위한 장소로 알려진” 외국어대학에 다녔다는 점을 강조했다.<sup>415</sup>

**340** 조사위원회는 이러한 관행이 엘리트 학교에서 성행하고 있다면 이보다 하위 교육기관에 다니는 학생들은 자신의 가족들이 감당할 수 없는 보조금을 제공해야만 하는 유사한 요구에 직면해 있다고 보는 바이다.

**341** 또한 학생이 학급의 대표로 임명될 수 있는지 여부와 같은 학교 내 특권도 ‘성분’으로 결정되는 것으로 보인다.<sup>416</sup> 더구나 정치범수용소의 경우 기초적 교육이 상이한 커리큘럼에 따라 관리되기 때문에 이곳에 수감된 아동들에 대해서는 초등의 무교육이 적용되지 않는다.<sup>417</sup>

414\_ TBG030.

415\_ Charles Robert Jenkins with Jim Frederick, *The Reluctant Communist, My Desertion, Court-Martial, and Forty-year Imprisonment in North Korea*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08), pp. 129, 134~135; TSH054.

416\_ TBG024.

417\_ KINU,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2), p. 364; Kang Cholhwan in his book, *The Aquariums of Pyongyang*, (New York, Basic Books, 2001), pp. 63~78, 이 책에서 강철환은 아홉살 때 정치범수용소로 이송되어 받았던 교육의 변화를 기술하고 있다.

**342** 교육에서의 차별은 대학 선택 과정 또는 입학시험을 치를 수 있는 기회에서 가장 명백하게 나타난다. 조사위원회와 인터뷰한 증언자들은 낮은 ‘성분’ 출신의 사람들은 입학시험에 응시 또는 학업성취 및 시험성적에 걸맞는 교육기관에의 입학 조차 허용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경우가 많다.<sup>418</sup>

- 한 증언자는 자신의 불리한 ‘성분’ 때문에 자신이 태어난 곳임에도 불구하고 평양으로 돌아가지 못했다고 조사위원회에 진술했다. 뿐만 아니라 그녀는 무용을 공부하고자 지원한 대학에 떨어졌으며 대신 농촌사업에서 근무하도록 배치를 받았다고 말했다.<sup>419</sup>

**343** 개인의 미래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과도한 역할을 하고 있는 ‘성분’은 북한 주민들의 결혼 기회에도 영향을 미친다.<sup>420</sup> 가장 명백한 사례는 (김정일의 여동생인) 김경희와 현재 사망한 장성택의 딸인 장금송이다. 장금송은 2006년에 프랑스 파리에서 26살의 나이에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 유럽에서 교육받은 장금송은 한 북한 청년과 결혼하기를 원했으나 그녀의 부모가 ‘성분’의 차이를 이유로 둘간의 결합을 반대했다고 알려졌다.

**344** 가장 취약한 계층, 즉 낮은 ‘성분’ 출신자, 여성, 아동, 장애인은 의료서비스와 의약품에 접근하는데 있어서 특히 불리하다. 북한 당국은 “혁명전사, 혁명전사 유가족들, 애국전사 유가족들, 조선인민군 가족, 국가유공자”와 같은 특별 집단에 대해서 특별한 보호를 제공함과 동시에, 모든 주민들에 대해서 무상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sup>421</sup> 그러나 환자들이 무료로 병원에 접근할 수는 있

418\_ TJH026, TAP008.

419\_ TGC001.

420\_ TSH051에서 증언자는 그녀의 ‘성분’ 때문에 결혼하려고 다가온 사람이 없었다고 설명하였다. 그녀는 평양 출신의 한 군의관과 맞선을 보았다. 몇 차례 만남을 가진 후 그와 약혼하려고 했으나 그가 그녀의 ‘성분’을 알고는 약혼을 취소하였다. 증언자는 당시 자신이 결코 결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당시 부끄러운 나날을 보냈다고 회상하였다. 증언자는 북한에서 성분이 제일 우선된다고 하였다.

을지는 몰라도 실상 의료장비와 약물치료는 대중이 이용 불가능하며, 감당할 능력이 되는 사람들만 사설 시장을 통해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sup>422</sup>

- 낮은 ‘성분’ 출신자들이 많이 추방되는 북한 북단에 위치한 함경북도의 한 병원에서 근무했던 전직 간호사는 조사위원회에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 “근로조건은 열악했다. 항상 의약품이 부족했다. 의약품은 중앙정부 차원에서부터 지방으로 배분되었으나, 관리들은 [돈을 위해] 이를 암시장에 팔아 유용하였다. 결국 의사들은 의약품을 사용할 수 없었고 처방전만 발급할 수 있었다. 이러한 의약품 유용의 더욱 심각한 폐단은 위험한 ‘가짜’약이 시장에 넘쳐나게 판매되고 있다는 점이다. 장사꾼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액체 항생제에 연료를 섞고 알약에 밀가루를 섞는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가짜 항생제를 사용해서 생긴 감염 등의 문제로 병원을 찾는다. 선천공장에서 항생제에 이용되는 병, 뚜껑, 라벨이 가짜약의 보관 및 판매를 위해서 빈번하게 도난되고 있다는 것은 의학계에 잘 알려진 사실이다. 비록 환자들이 언제든지 병원에 갈 수 있다고는 하지만, 점심시간 후에는 의료종사자들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다른 돈벌이 사업에 종사하거나 장을 보고 집안일을 하기 위해 자리를 비우는 일이 많다.”

이 증언자는 당간부들이 이미 지방 병원의 참혹한 상황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증언하였다. “당간부들은 매년 의례적으로 병원 시찰을 한다. 병원의 부족분과 지역 주민들의 보건 상태를 잘 알고 있지만 병원장으로부터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보고하지 말아 달라는 부탁과 함께 뇌물을 받는다. 의료진들도 방문한 당간부들에게 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돈을 내는 것이 일반적이다. 북한에서는 뇌물과 부패가 일반적이다. 관료들도 지급물품을 빼돌리는 사람들이므로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인식하고 있다. 당 관료들은 항상 병원에서 우선권을 부여받고 독방에서 치료를 받는다. 이들은 주민들이 얼마나 고통받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sup>423</sup>

**345** 여성들은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제한됨에 따라 특히 불이익을 받는 사람들이다. 여성질환에 대한 테스트 또는 유방암 검진은 존재하지 않는다. 북한에

421\_ 북한 헌법 제56조, 제72조.

422\_ TSH051, TSH004.

423\_ TSH051.

서 온 여성들을 상대로 최근 한국에서 실시한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조사대상자의 절반에 해당하는 여성들이 임신기간 동안 의사의 진료를 받지 못했으며, 도시 출신 이견 시골 출신인지와 상관없이 절반 정도는 집에서 출산했다고 대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성들은 출산 과정 또는 직후에 산모나 신생아가 사망하는 것이 흔히 있는 일이라고 답변했다.<sup>424</sup> 산모 치사율이 1993년부터 2003년까지 십 년 동안 거의 두 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이는 부인과 관련 응급조치의 부족에서 기인하는 것이다.<sup>425</sup> 2010년 산모 치사율은 신생아 10만 명당 81건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었다.<sup>426</sup>

## 5. 조사위원회의 주요 조사결과

346 북한은 스스로를 모든 분야에 있어서 평등과 비차별, 그리고 공평한 권리가 온전히 보장받는 국가라고 내세워왔다.<sup>427</sup> 그러나 조사위원회는 실제로 북한은 차별이 뿌리깊이 자리잡고 있는 심각하게 계층화된 사회로, 이러한 차별은 비록 지난 십 년간 시장의 활성화와 기술발달로 인한 사회, 경제적 변화를 통해 다소 완화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조사위원회는 북한에는 당국이 조장한 차별이 만연해 있으나, 점차 변화를 겪고 있다고 본다. 북한 사회에서의 차별은 ‘성분’ 제도라 불리는 차별 시스템에 뿌리를 두고 있다. ‘성분’ 제도는 사회 계급 및 출생에 따라 주민들을 분류하며, 정치적 견해와 종교도 고려의 대상이 된다.<sup>428</sup> ‘성분’에 따른 차별은 북한 사회에 똑같이 만연한 남녀차별과 동시

424\_ NKHR, “Status of Women’s Rights in the Context of Socio-Economic Changes in the DPRK,” p. 37.

425\_ UNICEF, “2003 Country report,” pp. 47~50.

426\_ WHO, UNICEF, UNFPA와 The World Bank 보고서, “Trends in Maternal Mortality: 1990 to 2010,” 2012.

427\_ 2009년 보편적 정례인권검토에 북한이 제출한 첫 번째 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다. “북한에서는 사람들 간의 단결과 협력을 기반으로 평등이 온전히 보장되고 있다. 인종, 성별, 언어, 종교, 학력, 직업, 지위, 재산에 의거하여 차별받는 주민은 단 한 사람도 없다. 모든 주민들은 국가 및 공공사업의 전 영역에서 동등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A/HRC/WG.6/6/PRK/1, para. 32)

에 이루어진다. 비록 국가에 의한 시정의 움직임이 있지만 장애인에 대한 차별도 행해지고 있다.

**347** 북한 당국은 ‘성분’ 제도에 반영되어 있는 정치적 충성도 및 집안배경에 따라 분류되는 사회계급에 기초한 공식적인 차별 제도를 조장하고 운영해왔다. 본래 ‘성분’ 개념은 1945년 이전의 전통적 엘리트 계급을 새로운 지도층과 당국에 충성하는 새로운 “혁명적” 엘리트 계급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목표에서 출발하였으므로 사회구조를 재조직하기 위한 수단으로 인식되었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북한은 수백 년간 한국 사회에 만연했던 위계질서를 재편한 것으로 볼 수 있다.<sup>429</sup>

**348** ‘성분’ 제도는 북한 주민들에게 있어서 생계를 위한 직업, 특정 교육에의 진학, 또한 거주지 및 특히 평양과 같이 좋은 지역에 살 수 있는 기회를 포함한 기타 서비스의 접근성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였다. ‘성분’ 제도하의 전통적인 차별은 최근 들어 북한 내 시장경제의 확산 및 외화를 포함한 화폐의 영향으로 주민들이 경제·사회·문화적 권리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남에 따라 더욱 복잡해졌다. 외화의 증가와 부패의 심화는 새로 출현한 경영 엘리트와 그 밖의 신흥 계층들이 정부주도의 차별을 피할 수 있는 재산을 축적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었다. 게다가 이동전화와 같은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이 시장 제도의 운용과 지식 및 정보 교류를 용이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통상분야 중 가장 수익성이 좋은 사업에 대한 접근성은 여전히 일정 부분 ‘성분’에 의해서 결정된다. 기본 공공 서비스가 붕괴하거나 돈을 지불해야만 누릴 수 있게 된 상황에서 재산도 없고 유리한 ‘성분’도 아닌 주민 상당수가 점점 소외되고 추가적인 차별을 겪고 있다.

428\_ 종교에 기반한 차별은 IV장 A에 언급되었다.

429\_ III장 참조.

349 ‘성분’에 기초한 차별은 대도시 간 생활 여건상의 극명한 차이를 통해서 분명히 드러난다. 이러한 차이는 특히 최고 ‘성분’ 출신인 엘리트 계층이 집중화된 평양과 낮은 ‘성분’ 출신자들이 역사적으로 배치되었던 외지간에 크게 나타난다. 북한에서 차별은 지도층이 대내외적 잠재 위협으로부터 주민에 대한 통제권을 유지시킬 수 있는 주요 수단이다.

350 형식 및 법적 평등을 보장하고자 한 초기의 개혁에도 불구하고 성 평등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사회 모든 분야에서 아직까지 여성에 대한 차별이 만연하다. 실제 남성 주도의 북한 당국은 경제적으로 지위가 높아지는 여성과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여성 모두를 희생양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대우는 오히려 증가할 수 있다. 1990년대 대기근 당시 많은 여성들이 생계를 위해 개인적으로 장에 나와 물건을 팔기 시작했다. 그러나 북한 당국은 마흔 미만의 여성들이 시장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 여성이 주도권을 쥐고 있는 시장에 많은 제재를 가했다. 북한에서 성 차별은 여성에게만 뇌물이나 벌금을 내게 하는 형태를 띠기도 한다. 최근에는 북한 여성들이 그러한 부당한 처우에 저항하거나 거부하는 사례가 있었다.

351 북한 여성의 경제적 지위 향상에 걸맞는 사회·정치적 영역에서의 발전이 뒤따르지 못하였다. 북한에서 아직까지도 고질적인 가부장제와 여성에 대한 폭력이 지속되고 있다. 북한 당국은 순수하고 순결한 북한 여성이라는 성적 고정 관념을 유지시키려는 목적으로 여성에 대해서 노골적인 차별 대우 및 제재를 가했다. 북한 사회 전역에 여성에 대한 성 폭력 및 성별기반 폭력이 만연해 있다. 피해여성들은 북한 당국으로부터도 어떠한 보호나 지원 서비스, 또는 법적 구제도 받지 못한다. 정치 영역을 볼 때, 여성은 당 고위 간부급 중 겨우 5%만 차지할 뿐이며 중앙 정부 관료 중 10%만이 여성이다.

352 여성에 대한 차별은 다양한 인권 침해 상황과 맞물려 여성들을 불리한 위



치에 놓이게 한다. 식량권 및 이동의 자유에 대한 침해는 여성들을 인신매매에 노출시키고 점점 성 매매 및 매춘으로 몰고 갔다.<sup>430</sup> 표현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한 원천적 봉쇄는 여성이 남성에게 비해 불평등한 대우를 받는 현실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제약으로 인해 북한 여성들은 세계 여타 지역의 여성들처럼 집단행동을 통해 권리를 주장할 기회를 박탈 당하였다.

**353** 김일성이 맑스-레닌주의를 수용하고 북한이 사회주의 국제주의 대열에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외세로부터 순수성이 유지되는 한민족에 대한 순수 혈통주의를 표방함으로써 이러한 이데올로기에서 유리되었다. 이는 외부세력의 영향을 거부하고 주체사상에서 강조하는 내적 지향성을 강조하는 흐름을 구성하였다.<sup>431</sup> 이와 같은 외부세계의 의도적 단절은 김일성의 통치기반을 공고히 하는 근거가 되었다. 북한의 내적 지향성은 주체사상의 한 부분이다. 주체사상의 나머지 주요 부분은 김일성에 대한 개인숭배를 심화시키는데 할애되어 있다.<sup>432</sup> 주체사상은 고립주의 정책을 정당화시키고 김일성(이후 김일성 후계자들)을 적대적인 외부세계로부터 북한을 보호할 수 있는 최고의 아버지상으로 추앙하도록 만드는 동시에 북한의 순수한 이미지를 훼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참담한 결과를 가져왔다. 최근 북한 당국이 장애인에 대한 접근을 향상시키기 위해 긍정적인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성과 장애인들이 특히 차별을 받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354** 일정 정도의 차별은 어느 사회에나 존재하지만, 조사위원회는 북한에서는 공식적 차별 제도를 운영해 개개인의 인권 향유에 매우 심각한 악영향을 끼쳤다는 것을 확인했다. 북한 당국의 이례적인 주민통제 범위를 감안하여 볼 때, 이러한 공식적인

430\_ IV장 C 참조.

431\_ 주체사상에 대한 정보와 관련해서는 III장 참조.

432\_ 김일성에 대한 개인숭배 관련해서는 IV장 A 참조.

차별은 주민들의 생활 전반에 영향을 끼친다. 북한에서의 차별은 지도층이 대내외적인 잠재 위협으로부터 주민에 대한 통제권을 유지시킬 수 있는 주요 수단이다.

## C. 자국을 떠날 권리 및 강제송환 금지를 비롯한 이동 및 거주자의 자유 침해

355 이동의 자유를 고려함에 있어서 조사위원회는 특히 이동의 자유 및 거주자의 자유에 대한 권리, 자국을 포함하여 어떠한 나라로부터도 자유로이 떠날 권리, 자국으로 돌아올 권리를 자의적으로 박탈당하지 않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 자유권규약 제12조를 원용했다. 북한 주민들은 북한 당국이 지정하는 직업에 종사하므로 그들의 거주지 역시 당국에 의해서 결정된다. 따라서 조사위원회는 근로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 사회권규약의 제6조 또한 고려한다. 이 조항은 모든 사람이 자유로이 선택하거나 수락하는 노동에 의하여 생계를 영위할 권리를 인정한다.

356 조사위원회는 특히 국가안보, 공공보건, 도덕 또는 타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당해 규약에서 인정되는 기타 권리와 양립되는 조건하에 서만 권리에 대한 법률적 제한이 허용되고 있음을 밝히고 있는 자유권규약 제12조에 관한 유엔 자유권위원회의 일반 논평을 검토하였다. 또한 조사위원회는 자국을 포함하여 어떠한 국가도 부모와 함께 이탈 및 입국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 아동권리협약 제10조를 고려하였다.

### 1. 북한 내 이동 및 거주자의 자유

357 조사위원회는 북한 당국이 (외국인을 포함하여)북한 주민들의 북한 내 이동

및 거주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음을 발견했다. 이러한 정책은 정보의 흐름을 제한하고 평양에 거주하는 엘리트 계층과 외진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낮은 ‘성분’ 사람들의 생활 여건상 차별적 대우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고안되었다.

### (a) 당국이 지정하는 주거지 및 직장

**358** 자유권위원회에 북한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북한 주민과 외국인들은 자신의 거주지를 선택하고 변경할 수 있는 자유가 있으나, “거주지 변경을 원하는 경우 적법절차를 따를 것”이 요구된다.<sup>433</sup> 이러한 절차는 공민등록법과 출입국법 제4장(외국인의 체류, 거주 및 여행 관련)에 규정되어 있다.

**359** 북한 헌법 제70조는 주민들이 자신의 욕구 및 능력에 따라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주민들은 당국이 지정하는 근무지에 기반하여 거주지역을 배정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조선노동당은 북한 주민에게 주어지는 모든 직업을 지정함에 있어서 완전하고도 배타적인 권한을 갖는다. 주민들은 당이 필요하다고 여기는 일을 공장, 탄광, 건설부지에서 집단별로 배정받는다.<sup>434</sup>

**360** 법적으로 북한 주민들은 당국의 공식 허가 없이 지정받은 거주지로부터 다른 거주지로의 이동이 허용되지 않는다. 형법 제149조는 정부소유의 거주지를 양도, 인수, 또는 임대하는 자는 2년 이하의 단기 노동단련형에 처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sup>435</sup> 모든 부동산은 정부소유이므로, 이 규정은 허가되지 않은 어떠한 이동도

433\_ CCPR/C/PRK/2000/2, para. 77.

434\_ KINU,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3), pp. 355~356.

435\_ 2009년 북한 형법은 북한인권시민연합이 번역하였다.

사실상 불법화한다. 조사위원회가 입수한 증언에 의하면, 사람들이 자신의 거주권을 타인에게 불법으로 판매하는 것을 눈감아주도록 하기 위해 부패관리들을 뇌물로 쉽게 매수하고 있다.

- 조사위원회에서 한 증언자는 당이 거주해야 하는 장소를 배정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자신이 거주할 장소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없다고 진술했다. 그의 부모 세대는 주택을 배정받았고, 그는 개인적으로 거주지를 이동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 그러나 식량난의 결과 시장경제가 확산됨에 따라 정부 소유의 주택을 “구입”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그의 장인과 장모는 그와 부인을 위해 2층짜리 아파트를 구매할 능력은 있었으나, 등록된 거주지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주택에 관여하는 관리를 매수해야 했다.<sup>436</sup>

**361** 당국이 주민의 직장과 거주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개인의 ‘성분’에 따른 사회 계급이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sup>437</sup> 조사위원회가 서울 공청회에서 입수한 바에 의하면, 정치 성향을 의심받는 사람들은 탄광이나 농촌과 같이 거주하기 힘든 장소로 강제 이동된다.<sup>438</sup> 벽지에서 하찮은 일을 지정 받은 사람의 자식은 대개 동일한 직장과 거주지를 지정받는다.

**362** 북한 역사의 초기 수십 년 간의 숙청 기간 동안 낮은 ‘성분’ 출신이면서 정치범수용소 수감은 면했던 많은 수의 사람들이 강제적으로 더 외진 지역으로 재배치되었으며 농촌이나 탄광촌에서 고된 일에 재배정되었다. 그 결과 함경남북도과 같은 지역에서는 오늘날 다른 지역, 특히 주로 좋은 ‘성분’의 사람들에 대해서만 거주가 허용되는 평양에 비해서 낮은 ‘성분’ 출신자의 집중도가 훨씬 높게 나타난다. 조사위원회에 제출된 정보에 의하면, 북한 주민의 계급을 3개의 ‘성분’ 계급하 51개의 하위 범주로 재편성하면서 1만 5천 가구의 7만 명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적대 계층

436\_ TSH052.

437\_ ‘성분’ 제도에 관해서는 IV장 B 참조.

438\_ 국가인권위원회, 서울 공청회, 2013년 8월 22일, 오후.

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되었으며, 외진 산간지방으로 추방되었다. “그들이 추방된 많은 지역이 정치범수용소가 되었다.”<sup>439</sup>

**363** 조사위원회는 많은 증언자들로부터 낮은 ‘성분’ 때문에 평양을 비롯한 도시 지역에서 외진 지역으로 재배치를 받아서 대개는 탄광에서 강제노역하게 되었다는 진술을 들었다. 이들은 자신의 낮은 ‘성분’이 조부나 부모가 남한 출신이거나, 6·25 전쟁 당시 남한으로 내려갔거나, 지주계급 혹은 기독교인이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가족 구성원 한 명이 정치적으로 반체제인사 혐의를 받고 정치범수용소(‘관리소’)에 수감되었다는 이유로 그 가족 전체가 좌천될 수 있다.<sup>440</sup>

- 서울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진술한 지성호 씨는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탄광촌 근처 마을에서 자랐으며 주민의 대다수가 다른 지역에서 추방된 사람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벽지에서는 식량 배급이 제한된 상태로 고립되었기 때문에 특히 90년대 후반 대규모 기아사태로 인해서 주민들이 얼마나 영향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기술했다. “나는 탄광촌에서 태어났다.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 굶어 죽었다.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았다. 우리는 산으로 둘러싸인 곳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뿌리를 파고 나무 껍질과 풀을 파야 [먹어야] 했다.”<sup>441</sup>
- 남한에서 납북된 한 남성의 딸은 70년대 후반에 가족 전체가 처음에는 산악지역으로 추방되었다고 진술했다. 부친이 자살한 이듬해에 가족들은 더 외진 지역으로 재배치되었다.<sup>442</sup>

**364** 또한 조사위원회는 당 간부 또는 그의 가족 구성원이 자신의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정치적으로 경미한 잘못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이들에 대한 적법한 기소

439\_ 조사위원회 제출: SUB055, Kim Hirtae and Peter Jung, *The Persecuted Catacomb Christians of North Korea* (Seoul, Justice for North Korea, 2013), p. 41.

440\_ TSH020, TSH030. 정치범수용소 관련해서는 IV장 E 참조.

441\_ 서울 공청회, 2013년 8월 22일, 오전(01:18:30).

442\_ TSH032.

없이 중노동을 선고받았다는 진술을 입수했다. 한 증언자는 친지 한 사람이 김정일에 주재님은 충고를 하고 난 뒤 탄광에서 “혁명화”를 위한 강제노역 중에 숨졌다고 말했다.<sup>443</sup> 이러한 관행은 계속되고 있는데, 이는 2012년 4월 김정은이 그러한 처벌로 복역하고 있는 600명 이상의 관리들에 대해서 사면을 명령했다고 알려진 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sup>444</sup>

**365** 전술한 바와 같이 정부가 직업을 지정하는 관행은 특히 남성에게 대해서 가혹한 결과를 초래한다. 비록 남성과 여성 모두가 자신의 학업 또는 병역을 완수하고 나서 일하는 장소를 지정받지만, 일반적으로 20대에 결혼하는 북한 여성들의 경우 결혼 후 혹은 아이를 갖고 나서 당국이 지정한 직장을 이탈할 수 있다. 그에 반해 남성들은 60세까지 당국이 지정한 직장에서 벗어날 수 없다.<sup>445</sup> 따라서 남성들은 여성들처럼 쉽게 당국이 지정한 직장에서 중도하차할 수 없다. 이는 90년대 중반 대기근 동안 많은 국영기업이 가동을 완전히 중단했던 경우<sup>446</sup>에도 해당되었다. 월급 또는 식량 배급을 받지 못하면서 여성들과 남성들은 새로운 방식으로 수입과 가사물품을 확보할 수밖에 없었다. 기혼여성들이 새로 출현한 지하경제에 보다 용이하게 참여할 수 있었던데 반해, 남성들은 부업으로 상업활동에 참여할 수 있기 위해서 당국이 지정하는 직업의 경직성을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만 했다. 그러나 이러한 남성의 상업활동의 참여는 상당한 뇌물을 지불할 수 있을 정도의 재산을 가진 사람과 자신의 부채를 “눈감아 줄” 수 있는 사람과의 연줄이 있는 사람들로 국한된다.

443\_ TJH015.

444\_ Good Friends, “North Korea Today No. 456,” 2012년 3월 23일. <http://www.goodfriendsusa.blogspot.ch/2012/05/north-korea-today-no-456-may-23-2012.html> 참조.

445\_ KINU,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3), p. 351.

446\_ KINU,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3), p. 353. 당해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 악화와 낙후된 인프라로 평균 공장 가동률이 20 내지 30%에 그친다.

366 조사위원회는 당국이 주민들의 거주지 및 직장을 지정하며 자유 의사에 따라 이를 변경할 수 있는 선택권을 인정하지 않는 북한의 정책이 자유권규약 제12조가 규정하고 있는 거주지 선택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위반하는 것이며, 특히 그러한 지정이 ‘성분’이라는 사회 계급에 기반하여 이루어진다는 측면에서 사회권규약 제6조하의 모든 사람들이 자유로이 선택하거나 수락하는 노동에 의해서 생계를 영위할 권리에 대한 위반을 구성한다고 판단한다.

### (i) 평양으로부터의 추방

367 앞서 밝힌 바와 같이 평양의 지위는 특별하다. 좋은 성분 출신자만이 평양에 사는 것이 허용된다. 평양 거주자들은 평양 이외의 거주자들에게 발급되는 것과 확연히 구별되는 주민증을 특별히 발급받는다.<sup>447</sup> 만약 가족 구성원 한 명이 정치적 범죄 내지는 심각한 비정치적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가족 전체가 외진 지역으로 추방되어 다른 일을 다시 지정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북한 법에 근거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이러한 관행의 결과는 극단적이다. 성인 가족 구성원은 채굴, 채벌, 농사와 같이 가장 고되고 힘든 유형의 일을 재배정 받는다. 또한 가족들은 평양 주민들이 누리는 식량, 의료보험, 기타 공공 서비스에 대한 특권을 상실한다.<sup>448</sup> 그들은 그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한 가족들의 조력 네트워크를 갖지 못한다.

368 한 전직 관리는 평양 공원에서 성행하는 도박에 대한 2009년 6월 단속에 대해 진술했다. 그의 선배들이 그에게 이러한 명령을 내렸으며, 국가안전보위부, 인민보안부, 조선인민군, 검찰소로 구성되는 중앙 검열단을 조직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단속의 결과 700명이 체포되어 일반 감옥(‘교화소’)으로 이송되었으

447\_ KINU,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3), p. 235 각주 187.

448\_ IV장 D 참조.

며, 400가구가 평양에서 추방되었다고 알려져 있다.<sup>449</sup>

**369** 과거 북한 당국은 정신지체 또는 심각한 신체 장애를 가진 아동 또는 성인 가족들의 평양 거주를 금지하는 관행을 엄격히 추구했다. 이러한 정책은 순수한 조선 인종에 대한 이상에 부합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때문지 않은 도시의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한 동기에서 비롯되었다.

- 이재근 씨는 김일성이 평양을 혁명의 수도로 언급했던 것과 장애인이나 반체제인사 중 그 누구도 평양에 거주해서는 안되는 상황을 결부시켜서 이야기했다. 그에 의하면 만약 어떤 사람이 장애를 갖고 태어나거나 후천적으로 장애가 생기면 그 사람을 비롯한 가족 전체는 평양에서 시골지역으로 추방된다.<sup>450</sup>
- 손씨는 좋은 ‘성분’ 출신자만이 평양에 거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평양에 거주하는 남성이 수도 밖에 거주하는 여성과 관계를 맺는 경우, 그 여성이 좋은 ‘성분’을 갖고 있지 않으면 그 여성을 평양으로 데리고 들어올 수 없음을 예로 들었다. 대신 그 남성이 만약 그 여성과 결혼하기를 원한다면 그 여성이 거주하는 지방에서 함께 살아야 한다. 장애를 가진 구성원이 있는 가족들은 평양을 떠나야 하지만,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고 좋은 ‘성분’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평양의 외곽으로 재배치된다. 손씨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과 그들의 가족 전체가 이사가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평양이 외국인 방문객들에게 “신성한 장소”로 보여야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그와 마찬가지로 병약한 사람들도 평양의 이미지를 훼손하지 않기 위해 평양에 거주하지 못했다. 손씨는 부친이 당중앙위원회 간부인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의 자식은 “정상 신장에 미치지 못했다.” 손씨의 친구와 가족 전체는 평양에서 떠나야 했다.<sup>451</sup>
- 조사위원회가 만난 한 증언자는 평양에서 추방당한 사람들에 대한 이송 명령의 집행을 맡고 있었다. 그녀는 정부로부터 명령과 지침을 받아 평양시에서 평양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허가하는 증서를 발급했다. 그녀는 만약 자신의 부모가 당국에 충성하지 않는 경우 그 사람은 수도에서의 거주 자격을 갖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 사람

449\_ TGC004. 일반 감옥에 관해서는 IV장 E 참조.

450\_ 서울 공청회, 2013년 8월 23일, 오전. 장애아동 가족의 추방과 관련해서는 IV장 B 참조.

451\_ TAP011.



은 지방으로 이사가야 하며 이동을 증명하는 카드를 소지해야 한다. 또한 그녀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과 그의 가족들은 평양에 거주하는 것 자체가 애초에 허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sup>452</sup>

## (ii) 거리의 부랑아들의 상황

**370** 대량 기아 및 식량난의 결과로 인한 사망, 아동 보호, 교육 및 기타 공공 서비스의 붕괴는 고아가 되었거나, 버림을 받았거나, 혹은 어떠한 연유에서건 더 이상 부모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 세대를 양산했다. 이러한 아이들은 평양과 다른 도시로 몰래 들어갔다. ‘림진강(Rimjin-gang)’을 발행하는 아시아프레스 인터네셔널(Asia Press International)<sup>453</sup>의 관계자들이 비밀리에 찍어서 조사위원회에 제공한 비디오 영상에는 이러한 아이들이 거리를 배회하고 있는 것이 포착되어 있다. 영상에 나온 많은 아이들이 4세 내지 5세를 넘어보이지 않았다.

**371** 그들이 견디는 굶주림과 매일의 생존을 위한 투쟁을 고려해서 거리의 부랑아들은 완곡어법으로 ‘꽃제비’라고 불린다. 거주에 대한 제한 때문에 이들의 존재는 용인되지 않으며 이들은 계속적으로 보안당국의 체포를 피해야만 한다. 체포된 아이들은 보호시설이 위치한 원래의 고향으로 되돌려 보내지고 강제수용되어 의식주를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거나 혼자 힘으로 살아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관련 정부부처에서 일했던 전직 관료는 평양에만 해도 수십만 명에 이르는 꽃제비들이 있을 것이라 추산하였다.<sup>454</sup>

452\_ TAP007.

453\_ 아시아프레스(ASIAPRESS)은 아시아의 무소속 언론인들의 네트워크를 표방하며 1987년 도쿄에서 출범하였다. 2007년 아시아프레스는 “림진강: 북한내부소식”이라는 잡지를 한국어와 일어로 출판하기 시작했다(한국어 버전의 경우 2009년 4월에 4호지가 출판된 후 서울에 위치한 직원이 직접 출판하기 시작했으므로 더 이상 기존의 아시아프레스와 관련이 없다).

454\_ TAP024.

- 모친이 사망함에 따라 7살의 나이로 꽃제비가 되었던 김혁 씨는 조사위원회에 자신의 삶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증언했다. “우리는 밤에 청진 기차역에서 잤다. 우리는 기차역 근처에서 음식을 주워먹었고 우리가 구걸할 때 사람들은 우리에게 기꺼이 음식을 주려고 했다. 그래서 기차역에 사람이 없을 때는 청진시에 있는 관료들을 위한 주택들이 밀집되어 있는 장소로 갔다. 그리고 관료들의 주택 또는 아파트를 돌아다니면, 버리는 음식이 있어서 우리가 먹을 수 있었다.”<sup>455</sup>

대량 기아사태가 정점에 달했던 1997년에는 특별규찰대가 이러한 아이들을 체포하는 임무를 부여받았다. 부모가 없는 아이들은 음식을 제대로 제공받지 못하는 폐쇄형 보호시설에 강제로 수용되었다. “보호시설에는 줄 수 있는 음식이 없다. 그래서 심지어 이런 보호시설에서 많은 아이들이 굶어 죽는 사태가 발생한다. 심지어 경찰도 보호시설에 가면 아이들이 죽지만 꽃제비로 사는 것이 허용되면 살아남는다고 말한다.”<sup>456</sup>

### 372 꽃제비들을 모아서 강제로 이송하는 치안 활동이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다.

- 한 전직 관료는 2010년 8월에 김정은이 평양에 있는 꽃제비들과 등록되지 않은 주민들을 제거하는 임무를 국가안전보위부와 인민보안부에 맡겼다고 떠올렸다. 목표는 2010년 9월에 개최될 예정인 노동당 중앙위원회를 위해 수도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었다. 그 작업을 위해서 보위부와 보안부 관료들이 다른 지역에서 추가적으로 소집되었다. 엄청난 수의 꽃제비들이 체포되었고, 출신지역에 위치한 꽃제비들을 위한 “재활 시설”로 보내졌다. 성인들은 노동단련대 또는 일반 감옥(‘교화소’)으로 이송되었다.<sup>457</sup>
- 한 증언자는 평양행 열차를 타려고 할 때 인민보안부 관리에 의해 체포되어 폭행당했다. 그녀는 다른 아이들과 함께 아동 보호시설로 이송되었다. 처음 도착했을 때 이들은 의자 위에 서라는 지시를 받았고 두툼한 가죽 벨트로 맞았다. 아이들은 어두운 지하방에서 지내며 플라스틱 양동이를 화장실 대신 사용해야 했다. 아이들은 하루 두세번 양배추와 밀가루가 조금 섞인 소량의 국을 먹었다. 그녀는 항상 배가 고팠다고 기억했다. 4개월 후 그녀의 부모가 그녀를 찾아서 데려갔다. 다른 아이들은 일 년

455\_ 서울 공청회, 2013년 8월 22일, 오전(00:26:16).

456\_ 서울 공청회, 2013년 8월 22일, 오전(00:31:42).

457\_ TJH004.

동안 그곳에 머물렀다.<sup>458</sup>

- 또 다른 증언자는 함경북도에서 보건 분야에 종사했던 사람으로 얼마나 많은 엄마들이 먹일 수가 없다는 이유에서 출산 후 아이를 유기 또는 살해하는지에 대해 기술했다. 그녀는 1997년에 고아 및 유기아동의 수가 너무 많아서 김정일이 군인과 치안 관리의 가족들에게 그러한 아이들에 대한 입양을 명령했다고 기억했다. 입양한 가족들은 영웅으로 치사되었다.<sup>459</sup>

## (b) 자국 내 이동의 자유

373 1999년 12월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서면에서 북한은 “여행규정 (Regulation of Travel)”에 의하여 주민들은 자국 내 어디든지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당해 규정 제6조는 여행하기를 원하는 주민들에 대해서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제출한 서면에서 당해 규정 제4조는 “군사분계선 주변지역, 군사기지, 군수산업지구, 국가보안 관련 지역은 여행이 제한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을 밝혔다.<sup>460</sup> 자유권위원회 당사국에 의해 제기된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북한은 오직 공식적으로 사업을 하는 사람들 내지 친지를 방문하는 사람들만이 당해 규정 제4조하의 “제한” 지역에 대한 여행이 허용된다고 덧붙였다. 북한은 북한 내 나머지 지역을 여행하기 위해서 허가가 요구됨을 인정하는 동시에, 그러한 허가는 제한없이 획득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허가제에 대해서는 “국가 안보를 보장하고 간첩과 공작원들의 활동을 저지하기 위해서” 필수적이라고 말했다.<sup>461</sup>

- 한 증언자는 조사위원회에 일반 주민은 평양 방문이 허용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것이 최고지도자(수령)를 해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평양으로 가

458\_ TSH020.

459\_ TSH051.

460\_ CCPR/C/PRK/2000/2, para. 76.

461\_ CCPR/C/SR.1944, para. 35.

고자 하는 한국 잠입자들을 저지하기 위한 안보상의 조치라고 생각했다. 중국과의 접경지대 방문을 위한 허가를 얻는 것이 어려운 이유는 공식적인 허가를 얻지 못한 상태의 월경 행위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그는 평양 또는 접경지대로의 여행 허가가 친지의 결혼식 또는 장례식 참석과 같이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정된다고 덧붙였다.<sup>462</sup>

**374** 통일연구원에 의하면, 주민들은 본인이 거주하는 도(道) 내에서는 여행증명서 대신 자신의 공민증을 여행을 위한 서류로 사용할 수 있다. 타 도(道)로의 여행에 대한 허가를 요청하는 경우 주민들은 허가에 대한 승인을 위해 통상적으로 제한이 없는 지역은 2~3일, 제한 지역으로는 2주까지 기다려야 한다. 허가는 또한 여행의 기간을 제한하며 왕복여행 기간으로는 10일이 주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비록 이러한 허가가 무료로 발급됨에도 불구하고 뇌물을 제공하지 않으면 그 과정 자체가 지체되는 경향이 있다.<sup>463</sup>

**375** 여행 중인 주민들이 여행증명서를 제시해야 하는 경계초소가 매 도(道)와 매 군(郡)에 존재한다. 허가여부를 확인하는 보안 요원들이 기차에 탑승해있다. 만약 허가없이 여행하는 것이 발각되면 여행자는 열흘간 대기구류소(‘집결소’)에 구금되거나 노동단련대에 유치되는 방식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sup>464</sup> 북한의 인민보안단속법에서는 인민보안서가 여행규정 위반과 관련하여 통제권을 행사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으며 당해 법에 불복한 것으로 나타난 사람들은 경고, 벌금 및 무보수 노동 등의 처벌을 받는다.<sup>465</sup>

**376** 이웃감시제도(‘인민반’)<sup>466</sup>는 리 또는 군에 여행자가 들어오면 보고해야 한

462\_ TAP005.

463\_ KINU,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3), pp. 22, 234~239.

464\_ TAP002, TAP005, TBG024; NKDB, “Prisoners in North Korea Today,” 2012, pp. 29~30.

465\_ KINU,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3), p. 234.

466\_ 이웃감시제도 관련해서는 IV장 A 참조.

다. 여행자 또한 허가된 목적지에 도착하는 즉시 담당 보안서에 등록해야 한다. 경제난으로 주민감시체계가 붕괴됨에 따라 숙박검열이 더 이상 엄격하게 시행되지 못하고 있으며, 체포된 사람들도 뇌물로 빠져나가는 것이 가능하다. 실제로 검문소에서 뇌물 제공을 통해 허가제를 회피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sup>467</sup>

- 국경에서 떨어진 청진에 거주했던 한 증언자는 접경지역 거주자를 친구로 두었다. 컴퓨터로 발급되는 친구의 공민증 사진이 흐릿해서 본인으로 보일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그는 친구의 공민증으로 접경지역인 회령까지 여행했다.<sup>468</sup>
- 또 다른 증언자는 조사위원회에 직업 때문에 북한 내에서 돌아다닐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공적인 여행을 위해서 네 군데의 다른 기관으로부터 허가가 필요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여행을 해야할 때에는 담배로 관료들을 매수하면 되었다고 했다.<sup>469</sup>

**377** 고용에 대한 제한과 유사하게, 이동의 권리에 대한 제한이 여성보다는 남성에게 더욱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설사 당국이 지정해준 조직이 더 이상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지라도 남성에게는 고용주의 “승인”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여성 중에는 당국에 의해서 유급근로자로 고용되지 않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남성과 비교해서 더욱 장기적인 시간 동안 발각되지 않고 이동할 수 있다. 이것이 압도적으로 많은 수의 여성들이 북한을 이탈할 수 있는 근본적 요인 중 하나로 추정된다.

**378** 자유권위원회의 일반논평에 따르면 이동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된다. 제한기준은 반드시 법에 기초해야 하며, 법은 그러한 제한을 집

467\_ 국가인권위원회, 서울 공청회, 2013년 8월 22일, 오후; KINU,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3), pp. 22, 234~238.

468\_ TAP008.

469\_ TSH052.

행하는 사람에게 재량을 무제한적으로 부여해서는 안 된다. 제한은 국가안보, 공공 질서, 공공보건 및 도덕, 또는 타인의 권리 및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경우에만 부과되어야 한다. 제한적 조치는 권리의 본질을 손상시켜서는 안 되며 비례성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즉, 보호 기능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적정해야 하고, 바람직한 결과를 달성할 수 있는 수단 가운데 최소한의 피해를 주는 것이어야 하며, 보호되는 이익과 균형성이 있어야 한다. 특히 권리와 제한, 규범과 예외 간 관계가 전복되어서는 안 된다.<sup>470</sup>

**379** 국가안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제한조치가 필요한 지역(특히 군사분계선 근접지역)을 여행하기 위해서 여행증명서를 취득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비례성에 부합하는 조치로 사료된다. 그러나 조사위원회는 평양 또는 주민들에 대해서 거주지역 밖으로의 여행 일반에 대해서 허가 신청을 요구하는 것은 자유권규약 제12조제1항 규정 위반을 구성하는, 비례성 원칙에 어긋나는 조치라고 판단한다.<sup>471</sup>

## 2. 자국을 떠날 권리

**380** 조사위원회는 실제로 북한 주민들이 극단적인 폭력과 엄격한 처벌을 통해서 강제되는 만큼 일반 시민에 대한 사실상의 여행 금지에 해당하는 외국여행에 대한 제한을 받고 있다고 판단한다. 이는 국가에 의해서 통제되는 매체와 세뇌 및 정보통제를 위한 그밖의 수단을 통해서 선전되는 정보를 부정하는 지식에 노출되는 것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470\_ CCPR/C/21/Rev.1/Add.9, paras. 11, 13~14, and 16~17.

471\_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북한 내 여행을 위해서 허가 받을 것을 요구하는 것은 자유권규약 제12조제1항에 대한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CCPR/CO/72/PRK, para. 19 참조.

### (a) 여행의 전면적 금지

381 북한의 출입국법은 여권 또는 접경지역 여행증명서의 발급을 받음으로 해외여행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sup>472</sup> 북한 주민들은 법적으로는 중국에 있는 친척들을 방문하는 것이 허용되지만 연락처의 구체적 내용을 포함하여 친척들의 신상 정보에 대해서 여행서류상 기록을 남겨야 한다. 여권 신청시 중국에 있는 친척으로부터 초대장이 첨부되어야 한다. 단기로 중국을 여행하고자 하는 북한 주민에 대해서는 국경지역에서 도강중(river-crossing pass)이 발급된다. 국경무역에 종사하는 주민들의 경우 이론상으로는 신청 후 24시간 내지 49시간 내에 허가서가 발급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로 그러한 경우는 거의 없다.<sup>473</sup>

382 실제로 해외여행은 높은 사회 계급 또는 이념 보유자들만이 향유할 수 있는 일종의 특권이다.<sup>474</sup> 증언자들은 공무를 위해 북한 밖으로 나가는 것이 허용된 사람들은 철저히 조사되며 오점없는 배경을 증명해야 한다고 조사위원회에 진술했다. 만약 여행하는 사람이 후에 “변절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담당 관리는 해외여행 신청을 허가한 것과 관련하여 곤경에 처할 수 있다. 증언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만약 신청자가 해외에서 출생한 경우 그 신청을 담당한 관리는 해당 신청자가 변절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외부세계와 자본주의 방식에 노출되어 왔기 때문에) 그 신청을 거절한다.<sup>475</sup> 허가받은 해외여행에서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 북한에 남아있는 “북한이탈주민”의 가족들에게는 심각한 결과가 초래된다.<sup>476</sup>

472\_ 1996년에 제정된 북한 출입국법은 1999년과 2012년에 개정되었다. 제9조~제12조 참조.

473\_ KINU,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3), pp. 246~247.

474\_ 국가인권위원회, 서울 공청회, 2013년 8월 22일, 오후.

475\_ TAP002, TSH052.

476\_ TJH022.

**383** 조사위원회는 일반 북한 주민들이 자유권규약 제12조제2항상 보장되고 있는 자국을 떠날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중국으로의 불법월경 이외의 선택권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는 심각한 위법행위를 구성한다. 형법 제233조는 불법 월경행위(비법국경출입)를 2년 이하의 노동단련형, 심할 경우 최대 5년의 노동교화형으로 처벌받는 위법행위로 규정하고 있다.<sup>477</sup> 실제로는 불법 월경자에 대해서 형법 제62조의 “조국반역죄”를 위반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 보다 일반적이다. 이 범죄의 경우 최소 5년 이상의 “노동교화형”으로 처벌받는다. 불법 월경자는 모호하게 규정된 정치범죄인 “반국가 도는 반민족범죄”로 대체 기소된다.<sup>478</sup> 2010년 보안부가 변절죄를 “조국반역죄”로 다룰 것을 명령한 바 있다고 알려져 있다.<sup>479</sup> 특히 기독교, 한국이나 미국 시민들과 접촉했던 자, 한국 또는 기타 제3국으로 여행을 시도한 자들이 이 죄로 처벌된다.

**384** 중국 및 기타 국가로의 불법여행자를 정치범으로 고려하는 방식은 당국의 선전, 최고지도자와 기타 고위관료의 말로 더욱 확고해졌다. 탈북한 사람들(즉 “북한이탈주민”)과 자신의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통상적으로 “인간쓰레기”로 일컬어진다.<sup>480</sup> 그들은 “북한이라는 순결한 사회에서 살인, 강도, 줌도독질, 국가 재산 횡령과 부패에 대한 범죄로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하는 분자로 낙인” 찍힌다. 그들은 미국이 북한과의 대립을 고조시켜 북한의 사회주의 제도를 전복시키고자

477\_ 형법 제233조 참조. 국경관리 관련 종사자가 불법 월경자에 협조하는 경우의 처벌에 대해서는 제234조 참조.

478\_ 이에 대해서는 III장 E 참조.

479\_ HRNK, 미 의회-행정부 중국위원회의 공청회에 서면제출, 112대 의회, 2세션, “China’s Repatriation of North Korean Refugees,” 2012년 3월 5일, p. 50. [http://www.hrnk.org/uploads/pdfs/Congressionalpercent20Hearings/China\\_Repatriation\\_March\\_5\\_2012.pdf](http://www.hrnk.org/uploads/pdfs/Congressionalpercent20Hearings/China_Repatriation_March_5_2012.pdf) 참조.

480\_ 조선중앙방송은 이 용어를 사용하여 그 중에서도 탈북하여 공청회에서 조사위원회에 진술하고자 나타난 사람들을 지칭하였다. “N. Korea slams U.N. rights committee, calls defectors ‘human scum’,” Global Post, 2013년 8월. <http://www.globalpost.com/dispatch/news/kyodo-news-international/130827/n-korea-slams-un-rights-committee-calls-defectors-huma> 참조.



시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과 미국에 의해 조종되는 자들로 회자된다.<sup>481</sup> 중국과의 국경지대에서 근무했던 전직 보위부 관리 두 명은 “북한이탈주민들”은 반역자로 항상 인간 이하로 취급받았다는 점을 지적했다.<sup>482</sup> 또 다른 전직 보안 요원은 선배로부터 위대한 수령님이 “북한이탈주민들”과 기타 반체제인사에 대해서 “무자비한” 탄압을 명령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는 아직 연락하고 지내는 보안직 중 동료들로부터 김정은이 보위부와 보안부의 본부를 개인적으로 방문하고 나서 이와 유사한 명령을 내린 것을 들었다고 하였다.<sup>483</sup>

## (b) 탈북 유형과 근본 원인

385 조사위원회는 1980년 말까지 불법으로 탈북한 사람은 거의 없었으며, 탈북한 사람들도 그때까지는 정치적 이유에서 비롯된 것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1990년대에는 기아사태가 악화되면서 중국으로의 월경이 불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곤경과 인권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해 국경을 넘어 중국에 가는 것이 만연한 현상이 되었다. 다수의 절박한 북한 주민들은 식량과 일거리를 찾거나, 물품을 거래하거나, 북한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중국 내 지역에서 살고 있는 친척들로부터 도움을 얻기 위해 불법으로 월경했다. 이들은 대기근 기간 당시 당국의 통제가 붕괴된 상황을 이용했다.

- 김광일 씨는 90년대 대기근 동안 주민들이 생존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주민들이 중국으로 드나들면서 밀수를 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그 역시 그러한 행위가 불법이라는 점과 가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위험을 무릅

481\_ “Ministry of People’s Security Vows to Punish Defectors Keen on Escalating Confrontation,” KCNA, 2013년 6월 19일. <http://www.kcna.co.jp/item/2013/201306/news19/20130619-01ee.html> 참조.

482\_ TJH015, TJH041.

483\_ TCC014.

쓰는 행위라는 점을 알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씨는 북한 당국이 그와 그의 가족을 먹여 살리지 못했기 때문에 월경 이외의 다른 방도가 없었다고 진술했다.<sup>484</sup>

- 한 증언자는 굶주림 때문에 1998년에 월경을 결심하고 그곳에 사는 친척으로부터 도움을 요청하기로 계획했다. 그는 대학에서 학업을 마치고 싶었기 때문에 북한으로 되돌아올 의향이 있었다. 김일성의 죽음으로 상황이 악화되었다. 대학에서는 상황이 악화되어 학생들이 서로 도둑질을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는 접경지역으로 비밀리에 여행을 하였고 운 좋게도 걸리지 않았다. 그는 체포되면 구금된 사람들이 “인간 이하로 취급받는” 수용소에 수감될 수 있다고 들었다. 그가 묘사한 강제송환자들이 수용소에서 받는 취급은 조사위원회가 입수한 여타 증언들과 일치한다.<sup>485</sup>

**386** 1990년대에 북한에서 수십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굶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 당국은 여행금지령을 해제하거나 접경 지역의 주민들이 조선인 친지들이 많이 살고 있는 또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중국으로 가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다. 상황이 개선되고 난 뒤인 1999년과 2000년에 와서야 김정일이 식량과 일자리를 목적으로 중국에 다녀왔음을 밝힌 자에 대해서 관대하게 처벌하라는 지침을 명시적으로 내렸다.<sup>486</sup> 그러나 “관대함”이 부여되었던 짧은 기간 동안에도 중국에서 강제송환되는 사람들을 계속적으로 처벌하는 관행이 완전히 단념된 것은 아니었다.

**387** 더욱이 대량 기아사태가 다소 완화되었던 2000년 후반에 모든 “탈북”시도에 대해서 “가차없이 탄압할” 것을 요하는 명령이 다시 내려졌고 북한 당국은 국경에 대한 통제를 재강화하였다.<sup>487</sup>

**388** 가혹한 폭력과 엄중한 처벌을 통해 북한이탈주민들을 억압하고 허가받지

484\_ 서울 공청회, 2013년 8월 24일, 오전.

485\_ TAP005, IV장 D 참조.

486\_ TJH004, TJH041.

487\_ TJH004.

않은 어떠한 월경도 저지하려는 노력이 경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기근 시기에 출현한 불법 월경 행태는 2000년대에도 계속되었다. 2009년 김정은이 후계자로 유력 시되면서 당시 병세가 깊었던 김정일로부터 많은 업무를 물려받은 이후 국경을 봉쇄하고자 하는 압력이 가중되었다.<sup>488</sup> 이는 북한 주민의 중국으로의 유출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는 한국 입국 북한이탈주민이 줄어들었다는 사실로도 잘 드러난다.

- 북중 접경지역에서 활동하는 인권운동단체에서 일하는 김영환 씨는 조사위원회에 2009년에 북한이탈주민 수가 최고치를 경신했으며, 그 후 점차적으로 감소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김정은이 집권한 이래 탄압이 증가했다고 강조했다.<sup>489</sup>

**389** 한국 통일부가 제공한 수치에서도 2001년에서 2009년까지 한국으로 입국한 북한이탈주민 수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러한 수치는 2011년과 2012년 사이에 급격하게 감소를 보이고 이후로 계속 감소하였다.<sup>490</sup>

**390** 최근 북한 주민들의 탈북 동기는 더욱 다양해졌다. 2012년에 시행한 설문 조사에 의하면 대한변호사협회는 최근 “탈북”이 경제적 이유보다는 정치적인 이유에

488\_ EJK003은 정치적 이유 이외에도 김정은 자신이 젊은 시절 국경 통제를 위해 복무했었기 때문에 국경 통제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기울였다고 지적했다.

489\_ 서울 공청회, 2013년 8월 24일, 오후.

490\_ 2001년과 2013년 9월 사이에 한국으로 입국한 북한 주민의 수에 관한 표는 이하와 같다.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9	Total
남성	565	511	472	624	423	512	571	608	671	589	797	405	250	7829
여성	479	632	810	1272	959	1510	1977	2197	2258	1813	1909	1097	791	17820
전체	1044	1143	1282	1896	1382	2022	2548	2805	2929	2402	2706	1502	1041	25649
여성비율 (%)	46	55	63	67	69	75	78	78	77	75	70	72	76	69

출처: 한국,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수, [http://www.unikorea.go.kr/index.do?menuCd=DOM\\_00000010100700](http://www.unikorea.go.kr/index.do?menuCd=DOM_00000010100700) 1002 참조.

서 비롯되는 식으로 “탈북”의 추세가 변화해왔음을 발견하였다. 더욱이 가족단위의 “탈북”이 개인단위의 “탈북”을 추월하였으며, 이러한 “탈북”은 이전보다 더욱 항구적인 행태를 띠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sup>491</sup>

**391** 정치적 또는 종교적 이유로 가해지는 직접적인 박해를 피하기 위해 북한 주민들이 중국으로 탈북하는 경우가 있다.

- A씨는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식량을 구하러 정기적으로 중국으로 여행을 갔고 무역 활동에 관여했다. 그는 이런 방문을 통해서 기독교를 접하게 되었다. 보안부가 고문을 가하면서 그의 중국방문 목적에 대해서 심문하자 그는 영영 중국으로 탈북하기로 결정했다.<sup>492</sup>
- 함경북도에서 기독교 신자였던 한 증언자는 2011년 탈북하였다. 교인 한 사람이 처형 전 고문을 받는 과정에서 자신의 이름을 누설했기 때문이다. 조선인민군 보위사령부 관리가 체포하러 왔을 때, 그녀는 두만강을 건너 탈출하였다.<sup>493</sup>

**392** 많은 북한 주민들이 2000년대에 와서도 계속되었던 경제난과 식량부족을 피해 탈북했다. 이러한 현상은 식량권에 대한 차별이 초래한 결과로서 특히 중국과의 국경을 맞대고 있는 소외된 지역에서 현저하게 나타났다.<sup>494</sup> 이러한 연유에서 탈북한 사람들은 선조의 정치적인 충성도가 의심받았다는 이유로 낮은 ‘성분’이라는 사회 계급에 귀속된 결과 사회·경제적 결핍으로 고통받던 사람들이다.<sup>495</sup> 이들 중 제한된 기간 동안만 돈을 벌기 위해 중국에 가려고 계획했었지만 강제송환된 사람들도 있었다. 강제송환되어 처벌을 받은 결과 그들은 정치적 반역자로 낙인찍혀 직

491\_ KBA, 2012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pp. 54, 510~513.

492\_ 서울 공청회, 2013년 8월 22일, 오후(비밀이 보장된 면접에서 증언자가 제공한 추가 세부내용 포함).

493\_ TJH017.

494\_ IV장 D 참조.

495\_ IV장 B 참조.

업의 기회, 주거 및 그밖의 필수적인 물품에 대한 접근권을 상실했다.

**393** 북한 밖 생활에 대한 정보를 접하는 기회가 증가하면서 한국으로 입국을 원하는 북한이탈주민 수가 늘어났다. 한국에 성공적으로 입국한 북한이탈주민들은 한국으로 가족들과 친척들을 데리고 오고 싶어 했다. 인권운동가들과 밀수업자들<sup>496</sup>로 구성된 비밀 탈북 조직이 출현했다. 북한 주민들은 중국에서 몽골을 거쳐 한국으로 왔다. 국경의 통제가 삼엄해지면서 2007년 몽고를 경유하는 루트가 막혔다. 따라서 한국으로 들어오고자 하는 북한 주민들은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를 거쳐 태국으로 가거나 태국을 거쳐 한국으로 들어왔다.<sup>497</sup>

**394** 한국에서 집계한 공식 통계에 따르면, 2013년 11월 현재 26,028명의 북한이탈주민이 한국 시민이 되었다. 이들 중 80%가 함경북도와 양강도와 같은 접경 지역 출신이고, 한국에 정착한 사람들 중 70%가 20살과 49살 사이의 연령대에 속하였다. 여성 북한이탈주민과 가족단위의 북한이탈주민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여전히 많은 북한이탈주민들이 중국에 체류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공식 집계된 바는 없으나, 북한이탈주민의 70% 이상이 여성으로 추정된다. 북한 주민의 상당수가 미국, 영국, 일본 등 국가에서 난민 지위 또는 영주권을 획득했다.

**395** 북한이탈주민들은 중국 내에서 비밀리에 체류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북한이탈주민들이 현재 중국에 체류하고 있는지를 추산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다. 추산치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접경지역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

496\_ 밀수업자들이 반드시 인신매매에 관여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주지할 것. 인신매매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성 매매를 통한 착취 또는 기타 형태의 성적 착취, 강제노동 및 서비스, 노예화 또는 노예화와 유사한 관행, 노동력 또는 장기 적출”의 요소가 최소한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서는 팔레르모 의정서(Palermo Protocol) 참조.

497\_ EJH003.

고 중국에서 강제송환이 증가한 2000년대 후반에는 북한이탈주민이 감소되는 등 시기별 변동이 존재한다.

**396** 2005년 인권단체인 좋은벗들은 북한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중국 영토에 체류 중인 북한 주민의 수가 5만 명에 달한다고 추산했다. 2006년 국제위기감시기구(International Crisis Group)은 중국 현지인 및 조선족 대담자들과의 인터뷰 및 NGO 보고서에 기반하여 그 수가 1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존스홉킨스 대학의 커틀랜드 로빈슨(Courtland Robinson)교수가 2010년에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중국 동북3성에 사는 북한 주민의 수가 6,824명으로, 그 중 7,829명의 아이들이 북한 출신 여성으로부터 태어났다. 통일연구원에서 2013년에 추정한 바에 의하면 2012년 당시 조선족과 함께 중국의 접경지역에 해당하는 세개의 성(省)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 주민의 수가 성인이 약 7,500명(최소 4,500명에서 최대 10,500명), 아이가 2만 명(최소 15,000명에서 최대 25,000명)에 이른다.<sup>498</sup>

### (c) 국경 통제 조치

**397** 2009년 이래로 북한과 중국 모두 국경을 폐쇄하려는 시도를 해왔다. 중국은 북한으로부터의 마약 밀매뿐만 아니라 불법 이주민의 유입에 대해서 특히 우려하였다. 북한과 중국은 월경이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국경지대에 울타리와 장벽 등을 세웠다. 조사위원회는 최근에 국경 지역을 방문한 사람들의 증언을 입수하였고, 그러한 장벽의 설치를 보여주는 관련 사진도 확인하였다.

498\_ KINU,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3), pp. 44, 459~461. International Crisis Group, "Perilous Journey: The Plight of North Koreans in China and Beyond," 2009년 10월 26일 참조. <http://www.crisisgroup.org/en/regions/asia/north-east-asia/north-korea/122-perilous-journeys-the-plight-of-north-koreans-in-china-and-beyond.aspx> 참조. 10만이라는 대략적 숫자는 인도적 단체인 Life Funds for North Korean Refugees에 의해 2007년 제출되었다. <http://www.northkoreanrefugees.com/faq.html> .

398 국가안전보위부, 인민보안부, 조선인민군이 모두 국경지역에 배치되었으며, 탈북을 막기 위한 행동을 위해 서로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다. 김정은 집권 이후, 보위부는 국경통제의 지휘권을 조선인민군 국경경비사령부로부터 넘겨받아 해당 임무를 맡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군대 내 부패에 대한 불만에서 비롯되었다고 알려져 있다. 중국에서 북한 주민들과 일했던 경험이 있는 한 증언자는 국경 경비대들이 월경을 돕는 대가로 뇌물을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북한 당국이 2010년 이후로 빈번하게 보초를 변경해왔다고 진술했다.<sup>499</sup>

399 2009년에 발표된 통일연구원 보고서에 의하면, 보위부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새로운 조치들을 시행하였다. 여기에는 실종된 자 또는 “탈북”한 자의 가족 구성원에 대한 감시의 강화가 포함된다. 법을 집행하는 관리들조차도 “탈북”한 친척이 있는지에 대하여 조사를 받으며, 만약 그런 친척이 있는 경우 직위를 박탈 당한다. 2010년에 실시한 인구조사에서 “북한이탈주민 가족”에 대한 심층 조사가 실시되었다고 알려져 있다.<sup>500</sup> 현재는 시행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지만, “추방촌”이라 하여 “북한이탈주민 가족”들을 이주시킬 곳을 벽지에 지정하기도 하였다.<sup>501</sup>

400 2011년 12월 김정일이 사망함에 따라 북한 당국은 애도 기간 동안 숙박 검열을 보다 집중적으로 실시하였고 국경지역에 거주하는 모든 가구에게 교대로 보초를 서게 하는 등 주민의 이동을 크게 제한하였다. 4인치 짜리 쇠못이 박힌 판이 두만강 둑을 따라 설치되었고 철조망과 울타리, 감시카메라, 지뢰가 주요 탈북 경로를 따라 설치되었다.<sup>502</sup>

499\_ TJH010.

500\_ KINU,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3), pp. 461~462 각주 12.

501\_ <http://goodfriendsusa.blogspot.ch/2011/09/north-korea-daily-no-417-august-24-2011.html> 참조.

502\_ KINU,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3), pp. 45, 461~463.

401 2013년 11월 북한 당국은 이웃감시제도(인민반)의 보고 체계를 비롯하여 “탈북” 혐의자의 가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탈북한 자 또는 행방이 확인되지 않은 자의 가족은 지역별 인민보안국에 등록해야 한다 ... 실종자와 북한이탈주민 수의 증가가 북한 당국의 감시와 통제를 심화시켜 탈북 시도를 봉쇄하도록 만든 것으로 보인다”는 추가 보고도 있었다.<sup>503</sup>

402 북한의 전직 보안관리들은 월경을 시도하는 자에 대해서 총격을 가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정책이 적어도 90년대 초부터 시작되었고 아직도 유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sup>504</sup> 국경통제 관련 업무에 종사했던 한 전직 보위부 요원은 국경 경비대들이 북한에서 도망가려는 주민을 총으로 쏘는 행위는 처벌받지 않는다고 말했다.<sup>505</sup> 또 다른 전직 관리는 2011년 1월에 불법 월경하려는 자가 살해된 사건에 대해서 진술하였다.<sup>506</sup> 이 사건은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지원활동을 하고 있는 인권운동가인 김영환 씨<sup>507</sup>와 그와 유사한 활동을 하고 있는 또 다른 증언자의 진술에서도 확인되었다.<sup>508</sup> 이러한 총살 명령은 북한 관리들이 중국측 국경에서 많은 사람들을 사살한 사건 이후 2010년 또는 2011년에 상부의 명령에 의해 수정된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북한 관리들이 중국측 국경에서 사람들을 다치지 않도록 신경쓰라는 지시를 받고 있지만, 탈북을 시도하는 자를 사살하라는 기본 방침은 지속되고 있다.<sup>509</sup>

403 이러한 사살 정책은 국제인권법을 위반하므로 정당한 국경통제를 위한 조

503\_ “People’s Units Working to Limit Defection,” *Daily NK*, 2013년 11월 6일. <http://www.dailynk.com/english/read.php?catald=nk01500&num=11150> 참조.

504\_ TJH015, TJH041, TBG031.

505\_ TJH015.

506\_ TBG027.

507\_ 서울 공청회, 2013년 8월 24일, 오후.

508\_ TJH010.

509\_ TBG031, 한 전직 관리의 진술.



치로서 정당화될 수 없다. 북한은 자국을 떠날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허가없이 월경을 하는 것 외에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을 초래함으로써 사실상 일반 주민에 대한 전면적인 여행 금지를 유지해왔으며, 이는 국제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불법 월경을 막고자 하는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목숨을 빼앗는 것은 비례성의 원칙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것이며, 국가 관리에 의한 무력 사용을 자위 또는 직접적 위협으로부터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제한시키고 있는 자유권규약 제6조와 양립할 수 없다.<sup>510</sup>

404 또한 조사위원회는 중국 영토로부터 북한이탈주민을 납치해오는 관행이 국가안전보위부 관리들에 의해서 자행되고 있다고 판단하는 바이다. 북한 주민의 탈북을 돕는 인권 운동가들, 탈북한 전직 관리들, 민감한 정보를 흘린 자들이 그 대상이 되었다.<sup>511</sup>

#### (d) 탈북을 시도한 자에 대한 고문, 비인간적 대우 및 감금

405 북한 당국은 주민들의 탈북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중국으로부터 강제송환된 자 또는 중국으로 탈북하려던 과정에서 체포된 자에 대하여 고문, 비인간적 대우 및 감금을 자행하고 있다.

406 대기근을 피해 주민들이 탈북하는 사례를 처음 접하였던 90년대에는 당국이 주민들의 탈북 사기를 꺾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본보기로 삼고자 하였다.

510\_ 국제 인권법은 무력의 고의적 사용을 인명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로 한정하여 허용하고 있다. 재판 외의 즉결적이고 임의적 처형에 관한 특별보고관의 보고서, "Study on Targeted Killings" (A/HRC/14/24/Add.6, para. 32) 참조.

511\_ 이러한 납치와 관련해서는 IV장 F 참조.

- 권영희 씨는 조사위원회에 “탈북”을 시도한 이유로 1994년에 체포되었던 자신의 남동생에 대해서 이야기하였다. 남동생은 식량을 구하러 중국에 갔다. 그와 유사한 “반국가”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막기 위한 본보기로 남동생은 그의 고향인 무산까지 트럭 뒤에 묶여서 끌려갔다.  
“그가 무산에 도착했을 때 그의 얼굴은 피로 범벅되어 있었고 옷은 다 찢어졌다. 동생이 쓰러지면 그들은 트럭을 세우고 다시 일어나도록 재촉했다. 당시 동생은 영양실조로 [군대에서] 나왔고 당뇨가 있었다. 어머니가 동생의 당뇨병을 병원에서 고치려고 했었고, 중국에 갔을 당시 동생은 당뇨병이 있는 상태였다. … 동생이 쓰러졌을 때조차 트럭은 앞으로 달렸고 보위부 사람들은 동생이 쓰러지면 때려서 일어나게 만들었다. 무산은 대도시였지만 그들은 모든 사람들이 동생을 볼 수 있도록 무산시를 세바퀴나 돌도록 했다.”<sup>512</sup>
- 1993년에 한 가족이 중국으로 탈북했다가 그들의 고향인 함경북도 온성군으로 강제 송환되었다. 5살 먹은 남자아이를 포함하여 가족 전체가 수갑을 차고 마을을 가두행진했다. 그 때 부모는 코에 고리가 끼워져서 소처럼 질질 끌려 다녔다. (당시 13살이었던)증언자를 포함하여 마을 전체가 그 잔혹한 광경을 보도록 강요받았다. 관중들은 그들에게 옥살을 퍼붓고 돌을 던졌다. 증언자는 그 가족이 그 뒤로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였다.<sup>513</sup>
- 1996년 또 다른 증언자는 무산에서 당국이 코를 뚫어 고리를 건 남자를 차로 끌고 다니는 것을 목격하였다. 그들은 확성기를 사용하여 자신들이 반역자를 체포했으며 “그를 되돌려 받기 위해서 마을 예산의 네 배를 지불했어야 했다”고 알렸다. 어린 아이들이 차 뒤를 따라갔으며 그 남자에게 돌을 던졌다. 이 끔찍한 경험은 증언자가 탈북하도록 만드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sup>514</sup>

**407** 90년대 대기근 기간 동안 북한이탈주민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북한 당국은 송환된 사람들에 대한 처벌을 체계화한 것으로 보인다. 그 과정은 정형화된 양식을 따랐으며 다양한 보안기관들이 그 수행을 위해 서로 긴밀히 협조하였다. 조사위원회는 송환된 사람들 및 전직 관리들과 인터뷰한 결과, 이하 기술된 조치들이 중국으로부터

512\_ 서울 공청회, 2013년 8월 24일, 오전(02:14:00).

513\_ TJH038.

514\_ TJH018.

강제송환된 북한 주민들이 받는 처우를 대체로 반영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바이다.

408 불법으로 탈북하여 중국 당국에 의해 체포된 북한 주민들은 국경에서 보위부에 인계된다. 강제송환된 사람들이 이송 후 “처리되는” 것으로 알려진 접경지역은 적어도 다섯 군데로, 회령, 혜산, 무산, 온성, 신의주가 이에 해당된다.<sup>515</sup> 강제송환된 사람들은 처음에는 국경 근처에 있는 보위부 구류장으로 이송되어 반복적으로 불법적이고 성적 침해 소지가 있는 신체 내부 수색을 받는다(이하 참조). 그 뒤 보위부 보위원들은 그들이 탈북한 방법과 이유, 탈북 과정에서 조력한 자, 중국에서 무슨 일을 하였는지 등을 심문한다. 이 심문은 일반적으로 IV장의 D. 2.에서 묘사된 종류의 고문을 수반한다.

409 강제송환된 사람들의 운명은 그들의 배경 및 그들이 받는 불리한 혐의의 성격에 의거하여 보위부가 결정한다. 한국 국민이나 기독교 선교사들과 접촉을 한 것으로 드러난 사람들은 심층적으로 심문하기 위해서 도(道) 차원의 보위부로 이송된다. 이곳에서 재판이나 사법절차없이 정치범수용소(‘관리소’)로 바로 이송되거나, 불공정한 재판을 거친 후 일반 감옥(‘교화소’)에 수감된다.<sup>516</sup> 한국 국정원 관리들과 접촉하는 등 특히 중대한 사례에 해당한다고 여겨지는 경우에는 사형에 처한다.

410 이에 반해 식량 또는 일거리를 찾아 중국으로 월경한 주민들은 보안부로 넘겨져 심문 과정이 재개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보안부가 “일반” 월경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확인한 경우 그는 대기구류소(‘집결소’)에 구금된다. 집결소에 수감되는 사람의 경우 고향의 보안부 보안원이 그/그녀를 인도받으러 올 때까지 구금되며, 이

515\_ David Hawk, *The Hidden Gulag: The Lives and Voices of Those Who Are Sent to the Mountains*, Washington D.C. HRNK, 2012, p. 118.

516\_ IV장 E 참조.

기간이 수개월에 이르는 경우도 종종 있다. 이후 대개는 재판을 거치지 않고 ‘노동 단련대’에서 수개월에서 일년까지 구금된다.

- 국경 경계 관련 업무에 종사했던 한 전직 보위부 요원은 보위부에서는 이유가 어찌 되었든 중국으로 불법 탈북한 자를 반역자로 여기며 “사람으로 대우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북한이탈주민” 중 최악의 유형은 한국으로의 입국을 계획했던 자들 또는 한국 국정원과 접촉한 자이다. 한국 국정원을 위한 간첩활동에 동의한 자는 예외없이 처형되었다. 기독교인에 대해서 보위부는 해당 개인이 얼마나 오랜 기간 기독교인으로 살았는지에 대해서 알고 하였다. 또한 보위부 보위원들은 북한으로 성경을 반입하고자 했는지 여부와 같은 정황을 고려하였다. 그러한 경우에는 재판을 거치지 않고 정치범수용소로 이송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sup>517</sup>
- 한 전직 보안 관리는 상관으로부터 “북한이탈주민들”을 세 집단으로 분류할 것을 명령받았다고 진술하였다. 첫 번째 집단은 북한으로 되돌아 올 의도를 가지고 식량을 구하려 월경한 자들이다. 이들은 노동단련대로 이송되어 3달 내지 6달 동안 구금된다. 두 번째 집단은 한국으로 입국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탈북한 자들이다. 이들은 일반 감옥(‘교화소’)으로 이송된다. 세 번째 집단은 기독교 집단 내지 한국 국정원 네트워크의 조력을 얻는 방식을 통해 한국에 입국하려는 의도를 가진 자들이다. 이들은 정치범수용소(‘관리소’)로 이송된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공개 처형은 정치적으로 적절한 장소에서 집행된다.<sup>518</sup>
- 또 다른 전직 국가안전보위부 요원은 중국에서 강제송환된 자는 자발적으로 북한으로 돌아온 사람들과 완전히 다르게 취급된다고 말하였다. 강제송환된 자들은 교회 또는 한국인과의 접촉 여부에 대해서 심문받으며 접촉이 인정되는 경우 각 도의 국가안전보위부를 거쳐 ‘관리소’로 이송된다. 나머지는 보안부 구금시설을 거쳐 일반 감옥(‘교화소’)으로 보내진다.<sup>519</sup>

517\_ TJH015.

518\_ TJH004.

519\_ TJH041.

### (i) 심문 과정에서의 고문 및 비인간적 대우

411 조사위원회는 보위부와 보안부가 실시하는 심문 과정 중, 심문자들이 피해자가 진실을 진술하고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완전히 고백했다고 확신할 때까지 심각한 구타와 다른 형태의 고문을 조직적으로 자행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조사위원회의 면접에 임했던, 중국에서 강제송환된 100명이 넘는 사람들 모두가 하나도 예외 없이 심문과정에서 구타를 당했거나 악랄한 방식의 고문을 받았다. 보위부 및 보안부 구류장의 비인간적인 수감 환경은 수감자가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신속하게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추가적인 압박을 가하였다.<sup>520</sup>

412 심문 단계에서 피의자들은 고의적으로 기아상태를 초래하도록 계획한 배급을 할당받는다. 일부 구류장에서는 수감자들에게 농사, 건설 등의 강제노동을 시킨다. 이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유죄가 입증되지 않은 자에 대한 강제노동을 금지하는 국제 기준에 위배되는 것이다.<sup>521</sup> 심문받지 않거나 노동하지 않는 자는 극도로 밀집된 감방에서 고정된 자세로 하루 종일 앉아 있거나 무릎을 꿇고 있어야 한다. 이들에게는 허락없이 말하거나 움직이거나 보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규칙에 따르지 않으면 구타, 배급량의 감소, 또는 강제적 체력 단련으로 처벌을 받는다. 처벌은 종종 감방 동료 모두를 대상으로 집단적으로 실시된다.

- 김송주 씨는 런던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북한에 도착하자마자 나에게 대한 대우가 [내가 원래 그랬다는 듯이] 인간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심문 과정에서 그들은 나를 때렸습니다. 내가 한국인들과 접촉한 적이 있는지, 혹은 종교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물었는데 내 대답이 “아니오”였고, 그들은 특정 범죄를 씌우려고 했고 나를 [마치 내가 원래 그랬던 것처럼] 인간 이하로 취급했습니다.”<sup>522</sup>

520\_ 구류장에 구금된 개인에 대한 고문, 고의적인 굶주림, 비인간적 구금 조건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해서는 IV장 E 참조.

521\_ 국제기준과 관련해서는 IV장 E 참조.

- 지성호 씨는 가족을 먹일 식량을 구하러 2000년에 처음으로 중국에 갔다. 그는 북한으로 다시 돌아온 직후 국경에서 4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경찰에 체포되었다. 그는 중국에서 한국 라디오방송을 들은 적이 있는지, 한국인, 기독교인, 언론계 인사를 만난 적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받았다. 그를 때리고 고문한 심문자들은 외국 언론이 그를 보았다면 장애인이 식량을 구걸하러 중국에 간 것을 본 것이므로 북한의 수치라고 말하였다. 그는 다시는 중국으로 가지 않는다는 조건하에 결국 풀려났다.

**413** 지성호 씨가 세 번째로 중국에 간 것은 2006년이었고, 이 때에는 한국에 가려는 의도가 있었다. 지씨는 그의 아버지를 데리고 오는 것이 좋은 생각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한국에 아버지보다 먼저 도착하기를 원했다. 한국에 정착한 후 그는 아버지에게 연락을 취하러 노력하였다. 그러나 아버지가 월경을 시도하다가 체포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아버지가 보위부에 의해 심문과 고문을 받았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아버지는 그 후 수레에 실려 집으로 돌려보내졌으며, 거의 죽은 것과 마찬가지로의 상태였다.<sup>523</sup>

- A씨는 북한에 있는 소식통으로부터 자신의 여동생이 강제송환되어 요덕 수용소로 이송되기 전 심문과정에서 고문을 받았음을 들었다고 말하였다. 그는 여동생이 기독교인이었고 한국으로 입국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모질게 다루어졌으며, 중형을 선고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sup>524</sup>
- 지현아 씨는 세 번째로 강제송환되는 과정에서 최악의 대우를 받았다. 그녀는 알몸 수색 중에 탈의하는 것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구타를 당했다. 그녀는 교회에 참석한 적이 있는지, 한국인을 만난 적이 있는지 심문을 받았다. 그녀는 이에 긍정하는 대답을 하는 경우 관리소로 보내지거나 심지어 처형당할 수 있기 때문에 부정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았다. 그녀는 이러한 “범죄들”에 대해서 자백하지 않아서 구타를 당했다. 그 뒤 그녀는 ‘집결소’로 이송되었고, 그 후 다시 ‘교화소’로 보내졌다.<sup>525</sup>

522\_ 런던 공청회, 2013년 10월 23일, 1세션(00:19:45).

523\_ 서울 공청회, 2013년 8월 22일, 오전.

524\_ 서울 공청회, 2013년 8월 22일, 오후.

525\_ 서울 공청회, 2013년 8월 20일, 오후.

- 한 증언자는 보위부 구류장에서 2주 간 심문을 받았다. 대답이 늦거나 조서관이 그녀의 대답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을 때마다 그녀는 몽둥이로 구타 당했다. 조서관들은 최고의 고통을 주기 위해서 무릎 밑 정강이를 걷어차기도 했다. 그녀는 사람들이 소리지르는 것을 들으면서 다른 사람들도 자신과 같은 상황이었으리라고 생각하였다.<sup>526</sup>
- 또 다른 증언자는 보위부의 심문을 받느라 6주 간 구금시설에 유치되었다. 그녀를 심문한 보위부원은 한국인 또는 기독교인과의 접촉 여부를 알아내기 위해서 그녀를 때렸다. 이 구금시설에서 증언자는 계호원들이 18살 소녀를 발로 짓밟고 때리고 머리채를 잡는 것을 보았는데, 이 소녀는 이전에도 여러 번 체포되어 계호원들이 그녀를 잘 알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6주 후 증언자는 또 단위의 보위부 구금시설로 이송되어 한국인 혹은 기독교인과의 접촉 여부 및 그녀의 월경 경로를 조직해준 사람에게 대해서 자백을 강요당하면서 또다시 구타를 당했다. 심문이 없을 때나 구금시설에서 강제노동을 하지 않을 때, 증언자와 다른 수감자들은 허리 뒤로 손을 붙이고 고개를 숙인 상태로 무릎을 꿇고 있어야 했다. 계호원에 의해서 심문받을 때에도 동일한 자세를 유지해야 했다. 한 번은 증언자가 실수로 고개를 들었고 계호원이 육중한 부츠로 가슴을 찼다. 신발이 없었던 한 늙은 여성이 일을 하기 위해서 신발이 필요하다고 부탁하자 보위부원들은 수감자들은 동물이고 곧 죽어야 하기 때문에 신발을 얻을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이 여성은 계호원들에 의해서 구타 당하고 피를 흘렸다.<sup>527</sup>
- 중국에서 송환된 다른 사람들과 구류장에 구금되어 있는 동안 한 증언자는 보위부 심문 과정에서 한 젊은 여성이 기도하는 것처럼 두 손을 모으고 있는 것을 보았다. 보위부는 그녀가 기독교인이라고 의심했다. 그들은 그녀를 다른 방으로 끌고 가서 그녀가 자백할 때까지 때렸다. 그녀의 감방 동료들도 그녀가 고백할 때까지 잠을 자지 못하도록 했다. 증언자는 그 뒤로 그녀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했다. 증언자는 또한 보위부원이 한 가족에게 중국에서 기독교인과 접촉한 적이 있기 때문에 정치범수용소로 이송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우연히 들었다고 하였다.<sup>528</sup>

**414** 다른 증언자들도 북한으로 강제송환된 후 심문과정의 경험에 대해서 이와 유사한 진술을 하였다.<sup>529</sup> 한 증언자는 수감되어 있는 동안 열이 났었는데 그가 피

526\_ TBG013.

527\_ TJH028.

528\_ TJH032.

529\_ TAP010, TSH018, TSH029, TSH049.

병을 부리고 있다는 의심을 받고 더 심하게 맞은 적이 있었다고 증언하였다.<sup>530</sup>

## (ii) 성폭력 및 특히 신체 내부 수색을 비롯한 기타 여성 모욕적 행위들

415 구금시설에 도착하자마자 강제송환된 사람들은 알몸으로 운동을 하고 신체 내부 수색을 받아야 한다. 이러한 처사는 법정에 제시할 증거를 얻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송환된 사람들이 숨기고 있을 지 모를 돈을 몰수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이루어진다. 이와 같은 수색은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목적에서만 수색을 허용하는 형사소송법 제143조 위반이다. 특히 여성 피해자들과 관련해서 수색은 고의적으로 모멸감을 주며 비위생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416 피해자들은 대개는 이성인 계호원 및 다른 수감자들 앞에서 옷을 벗도록 강요당하고, 이후 알몸 상태로 “뽐뿌질(pumping)”로 알려진 “쪼그려앉기”의 연속동작을 하도록 강제된다. 이는 질 또는 항문 속에 감추고 있을지 모르는 물건이 나오도록 하기 위함이다. 조사위원회는 송환된 사람들이 벗은 채로 쪼그려앉기 동작을 하는 동안 계호원들이 돈과 귀중품을 찾기 위해서 그들의 옷을 조사한다는 여러 증언을 획득했다.

- 한 증언자는 구금시설 밖에 매우 큰 도랑이 있는데, 이것이 알몸 수색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었다고 진술했다.  
“수감자들은 구덩이로 들어가서 옷을 벗으라는 말을 들었다. 우리는 계호원들에게 옷을 던져야 했고, 이들은 옷이 마음에 들면 가져갔다. 우리는 뛰고 뽐뿌질을 하도록 강요당했다. 그 뒤 누군가가 모든 수감자들의 질과 항문 속에 손을 넣어 돈 혹은 귀중품이 있는지 검사를 했다. 이 때 우리는 남자와 여자 모두가 함께 있었다. 신체 수색이 끝나고 우리는 감옥에서 무릎을 꿇고 있어야 했다.”<sup>531</sup>

530\_ TSH031.



- P씨는 중국 당국에 의해 15일간 구금된 후 강제송환되었다. 강제송환되자마자 그녀는 알몸 수색을 받았고 보위부는 앉았다 일어서는 동작을 100번 할 것을 요구했다. 그녀는 심문과정에서 기절할 때까지 구타당했다.<sup>532</sup>
- 한 증언자와 다른 여성들은 이송되자마자 북한 관리에 의해서 알몸 수색을 당했다. 여성들은 여성 계호원이 수색하는 동안 머리 뒤로 깎지를 끼고 있어야 했다. 그 후 그들은 알몸 상태로 쪼그려 앉기를 100번 해야 했다.<sup>533</sup>

417 강제송환된 여성들은 비위생적인 질 수색도 받아야 했다. 다수의 여성들을 검사하면서 같은 장갑을 사용하거나 혹은 애초에 장갑을 끼지 않은 일반 계호원들이 수감자의 질 속에 손을 넣어 돈이 있는지 검사했다. 그러한 수색은 남성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었다. 전체 구금 기간 동안 계호원들은 몸 속에 돈을 숨기고 있는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수감자들을 엄격히 감시한다. 계호원은 수감자의 대변에서 숨길만한 물건들을 찾기도 한다. 그러한 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수감자들은 배변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도 구타 당했다.

- 중국에서 북한이탈주민들을 지원하는 것을 포함하여 북한이탈주민들과 함께 활동하는 김영환 씨는 강제송환된 사람들, 특히 여성 송환자가 겪는 비인간적인 대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여성들은 탈의하고 몸 안에 숨겨놓은 물건을 확인할 수 있도록 여러 차례 쪼그려앉기(‘뽀뽀질’)를 강요받는다. 같은 목적으로 질 및 항문 검사를 포함한 신체 내부 검사가 이루어진다. 남성 계호원들이 여성 수감자에 대해서 그러한 수색을 하는 경우도 있다.<sup>534</sup>
- 지현아 씨는 다른 북한 여성들과 함께 모여서 강제송환을 기다려야 했다. 그 중에는 임신 여성도 포함되어 있었다. 국경으로 이송되는 버스 안에서 그 임신 여성은 산기가 있었고 출산 중에 아이가 사망했다. 산모를 포함한 강제송환자들은 남성 계호원이 손으로 하는 신체 내부 검사를 포함한 수색을 받고 여러 차례 앉았다 서는 동작을 해

531\_ TSH029.

532\_ 서울 공청회, 2013년 8월 21일, 오후(비밀이 보장된 면접에서 증언자가 제공한 추가 세부내용 포함).

533\_ TJH028.

534\_ 서울 공청회, 2013년 8월 24일, 오후.

- 야만 했다. 지씨는 조사위원회에 그러한 수색이 “여성으로 모욕감을 느끼게 했습니다. 우리는 체포되었을 때 발가벗었고 그들이 우리의 신체, 심지어는 질을 수색했습니다. 그들은 앉았다 서는 동작을 반복할 것을 요구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sup>535</sup>
- 김송주 씨는 무산군 보안부 구류장에 있는 감방에서 중국에서 강제송환된 10명의 여성들이 일렬로 서있고 여성 요원이 차례로 질 속으로 손을 넣는 것을 지켜봤다. 김씨는 또한 계호원들이 그를 감방 반장으로 임명하고, 숨겨놓은 돈을 찾기 위해서 수감자들의 대변을 점검할 것을 명령했던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였다. 계호원들은 돈이 발견되면 이를 챙겼다.<sup>536</sup>
  - 한 증언자는 신의주에 위치한 보위부 구류장에서 관료들이 돈을 착취하려는 의도로 자신을 포함한 여성들의 신체를 수색했다고 회상했다. 그녀는 고위급의 한 나이든 여성 관리가 사적으로 수색을 실시했으며, 모든 피해자들에게 동일한 장갑을 사용하는 바람에 증언자가 전염병에 걸렸다고 진술했다. 그 고위급 관리의 매우 젊은 여성의 질 속에 손을 넣으면서 모욕적인 발언을 하였다.<sup>537</sup>
  - 또 다른 증언자도 온성에 위치한 보위부 구류장에서 계호원이 중국에서 강제송환된 여성들을 대상으로 질 수색을 실시했을 때 동일한 장갑이 반복적으로 사용되었다고 진술했다. 이 여성 또한 알몸으로 쪼그려앉기를 해야 했다.<sup>538</sup>
  - 또 다른 증언자는 조사위원회에 그녀가 북한으로 재입국했을 당시 신체적으로 학대 당했던 경험과 관련하여 심경을 토로했다. 그녀와 여성 수감자들은 남성 수감자들과 분리된 방에 수감되는 구금시설으로 이송되었으며 모든 옷과 소지품은 압수당했다. 그들은 다리를 벌리고 누워 있어야 했고, 현금, 편지, 연락처를 찾는 계호원들에 의해서 신체 내부 수색이 철저히 진행되었다. 고무 장갑을 낀 한 여성 계호원이 신체 내부 검사를 실시하였다. 증언자는 수색이 진행되는 동안 다른 계호원들이 시설의 공개된 창문을 통해서 자신들을 보고 비웃는 것을 보았다. 증언자는 신용카드를 숨긴 것이 탄로난 한 남자가 독방으로 끌려가 심하게 구타당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한 달 후 증언자는 다른 구금시설으로 이송되었고 또 한 차례의 신체 내부 수색을 받아야 했다. 자신과 함께 있었던 여성 중에는 늙은 여성과 출산이 얼마 남지 않은 임신 여성이 있었다. 두 사람 모두 신체적 및 언어적 모욕에서 예외가 아니었다. 그

535\_ 서울 공청회, 2013년 8월 20일, 오후(02:35:00).

536\_ 런던 공청회, 2013년 10월 23일, 1세션(비밀이 보장된 면접에서 증언자가 제공한 추가 세부내용 포함).

537\_ TBG013.

538\_ TBG018.

들은 앉았다 일어서는 동작을 100번 해야 했다. 늙은 여성이 이 동작을 하기 힘들어 하자 여성 계호원들은 그녀가 쓰러질 때까지 발로 차서 그녀 옆에 서 있던 임신 여성도 함께 쓰러뜨렸다. 임신 여성이 넘어지면서 고통을 호소했으나 계호원들은 그녀가 중국인 아이를 가졌다고 소리치르며 악담을 퍼부었다. 결국 계호원들은 그녀를 구금시설의 의료시설로 데려가게 되었다. 임신 여성이 3일 뒤 돌아왔을 때 그녀의 뱃속에는 더 이상 아이가 없었고 그녀는 다른 수감자들에게 유산했다고 말했다.<sup>539</sup>

**418** 조사위원회는 신체 내부 수색이 증거수집 내지 구금 및 기타 시설의 보안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한다. 그러나 합법성, 필요성, 비례성, 인도적 절차의 엄격한 기준은 준수되어야 한다. 이 기준들은 법으로 적법하게 보장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필요성 및 비례성 요건을 만족시키는 한에서 인도적이고 위생적인 방식으로, 적절한 훈련을 받은 적격자에 의해서 정당한 목적을 가지고 수행되어야 한다.<sup>540</sup>

**419** 조사위원회는 북한에서 실시되는 수색의 형태가 이러한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한다. 강제송환된 사람들은 조직적으로 신체 내부 수색을 받아야 한다. 이는 다른 수감자들이 있는 곳에서 일반 계호원들에 의해서 실시되었으며, 강제송환된 사람들이 소지하고 있을지도 모를 돈을 빼앗는 것에 그 일차적 목적이 있었다. 그러한 수색들은 증거 수집을 위한 목적으로만 수색을 허용하는 북한 형사소송법에 위반하는 행위이며 형사소송법상의 범죄를 구성한다.<sup>541</sup> 수색에 반항하는 사람들은 구타하여 복종하게 하고 있다.

539\_ TGC001.

540\_ World Medical Association, "Statement on Body Searches of Prisoners, adopted by the 45th World Medical Assembly held in Budapest, Hungary," 1993년 10월 참조. <http://www.wma.net/en/30publications/10policies/b5>. 또한 CAT/C/HKG/CO/4, para. 10 참조.

541\_ 형사소송법 제143조 및 형법 제252조 참조.

420 여성 계호원, 때로는 남성 계호원이 피해자의 질 속으로 손을 주입하는 것은 신체 강탈(bodily invasion)에 해당한다. 국제형사법은 가해자의 신체 일부를 피해자의 생식기에 정당하지 못한 방식으로 강제 삽입하는 어떠한 행위도 성폭행으로 간주한다.<sup>542</sup> 수색을 둘러싼 전반적인 모욕적 정황, 정당한 목표의 부재, 신체 내부 수색과 관련한 국제적 규범 무시를 고려했을 때, 조사위원회는 많은 경우 이러한 수색이 국제형사법에서 정의하는 성폭행에 해당된다고 판단한다.

421 강제송환된 여성들은 알몸 쪼그려뛰기와 질 수색을 겪을 뿐만 아니라 다른 형태의 성 폭력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 한 증언자는 중국에서 오는 트럭에 타고 강제송환되면서 북한 요원이 다른 여성의 가슴을 더듬는 것을 보았다. 그 요원은 증언자가 그를 쳐다보는 것을 알고는 그녀의 따귀를 때렸다.<sup>543</sup>
- 또 다른 증언자는 강제송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구금시설에서 여성들에 대한 성적 학대가 정기적으로 발생한다고 조사위원회에 진술했다. 알몸 쪼그려앉기와 질 수색을 강요당할 뿐만 아니라 여성들은 계호원들에 의해서 강제로 탈의되며 구타당한다.<sup>544</sup>

422 강제송환된 여성들은 구금시설에서 계호원들로부터 비인간적이고 모욕적인 대우를 받는다. 많은 증언자들이 모멸감을 느끼게 하는 말을 들었으며 고의적으로 행해지는 모욕적인 대우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조사위원회는 강제송환된 여성이 생리 중에 생리대를 빼앗겼다는 진술도 확보했다.<sup>545</sup>

542\_ 범죄요소, 국제형사재판소 로마규정 당사국총회, 제1차 회기, 2002년 9월 3~10일, 제7조제1항 사목, para. 1. 참조. 또한 Prosecutor v. Furundzija., IT-95-17/1-T, Trial Judgment, para. 185; Prosecutor v. Seasay et al, Case No. SCSL-04-15-T, para. 145; Prosecutor v. Sesay et al Prosecutor v. Brima et al, Case No. CSL-2004-16-T, Trial Judgment, para. 693. Prosecutor v Akeyesu, para. 688 참조. 르완다 국제형사재판소가 여성의 질 속에 나무 조각을 넣는 것이 성폭행을 구성한다고 밝힌 바 있다는 점을 참조.

543\_ TJH032.

544\_ TSH015.

- 지씨는 계호원들이 송환된 여성들을 대상으로 중국에서의 성경험에 대해서 질문했다고 회상했다.<sup>546</sup>
- 또 다른 증언자는 탈북함으로써 “조국을 배반”한 것에 대해서 질책을 당했고, 심문 과정에서 특히 “중국 남성의 맛을 좋아하는지”와 같은 모욕적인 질의를 받았다고 조사위원회에 진술했다.<sup>547</sup>
- 또 다른 증언자는 계호원이 강제송환된 여성을 때리면서 “중국 남자와 성관계가 좋았는지”에 대해 묻는 소리를 들었다고 했다.<sup>548</sup>
- 런던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조사위원회는 박씨가 강제송환 후 구금된 기간 동안 받은 모욕적인 대우에 대해서 들었다. 박씨는 알몸으로 질 내부를 수색당하였으며 알몸 뜨그려뒤틀기를 해야 했다. 그녀는 돈을 찾는 계호원들이 옷과 생리대를 찢었다고 조사위원회에 진술했다. 생리대가 훼손되자 박씨는 생리기간 동안 조그만 수건을 사용했는데, 계호원이 수건을 세탁하는 것에 대해 모욕적인 방식으로 처벌을 가했다. “매일 아침 우리는 얼굴을 씻기 위해 작은 용기에 담긴 물을 받았는데, 생리기간에는 생리혈이 묻은 수건을 빨기 위해서 그 물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물을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고 혼이 났습니다. 그 별로 하루종일 생리혈이 묻은 수건을 머리에 쓰고 있어야 했습니다”<sup>549</sup>

### (iii) 대기구류소(집결소)에서의 제반 여건

**423** 심문 결과 단순 월경자로 판정되면 강제송환자들은 대기구류소(‘집결소’)로 이송되어 보안부의 결정을 기다린다. 이들은 수일, 심지어 수개월 간 이곳에서 수용된다. 때로는 집결소가 강제송환된 사람들에게 선고받은 형을 집행하는 장소의 역할을 한다. 집결소의 제반 여건은 비인간적이고 수감자들에 대해서 고의적 기아를 초래하는 정책이 계속되고 있다.

545\_ TJH032, TSH050.

546\_ 서울 공청회, 2013년 8월 20일, 오후(02:38:00).

547\_ TSH029.

548\_ TJH032.

549\_ 런던 공청회, 2013년 10월 23일, 2세션(01:03:00) 및 증언자와 비밀보장을 조건으로 진행된 면접.

- 한 증언자는 조사위원회에 ‘집결소’에 구류되어 있을 당시 하루에 옥수수 두 손갈과 무짚지 국 한 사발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녀는 가로 2미터에 세로 2미터되는 감방에 10명의 사람들과 지내야 했다. 바닥에 있는 구덩이가 화장실로 사용되었고 수감자들은 구덩이를 사용하기 전에 계호원에게 허락을 구해야 한다. 허락없이 사용했다는 것이 발각되는 경우 수감자는 계호원에 의해 감방 밖으로 끌려나가 구타당했다. 수감자가 울거나 선처를 호소하는 경우 구타의 강도가 세진다. 증언자는 자신이 형을 복역할 곳으로 이송되기 전까지 5개월 간 두 번째 집결소에 유치되어 있었다.<sup>550</sup>
- 한 증언자는 심문이 종결된 이후 청진에 위치한 집결소로 이송되었다. 고향 지역의 보안부 관리들이 데리러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녀는 그 곳에서 일 년간 유치되었다. 유죄 선고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강제노동을 해야 했으며 매일 사상 교육을 받아야 했다. 그녀는 이가 들끓는 집결소의 열악한 여건으로 생긴 열병 때문에 거의 죽을 뻔 했다.<sup>551</sup>
- 또 다른 증언자는 청진 ‘집결소’에서 5개월을 보냈다고 조사위원회에 진술했다. 그 곳에서의 생활은 극도로 열악했다. 수감자들은 하루 세 끼, 야채나 소금도 없이 옥수수를 끓인 죽 다섯 손갈을 배분받았다. 또한 뜨거운 물을 받았다. 증언자는 친척들로부터 여분의 음식을 받은 다른 수감자들과 자신의 중국산 옷을 거래했다. 성인들은 하루 10시간 동안 강제로 미장일, 벌채, 농사일을 해야 했다. 만약 하루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더 늦게까지 남아서 작업을 해야 했다. 당국이 증언자를 아직 아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이러한 작업에서는 면제되었다. 그는 ‘집결소’에 있는 기간 동안 13명의 남자들이 죽는 것을 보았다. 공포감을 조장하기 위해서 그들의 시체는 묶어서 다른 수감자들이 볼 수 있는 곳에 수일간 방치되어 있었다. 계호원은 수감자들에게 “이것이 너희들이 조국을 버렸을 때 겪게 될 일이다”라고 말하였다.

시체가 부패하기 시작하면 다른 수감자들은 산으로 가서 구덩이를 파서 그 곳에 시체를 던져야 했다. 관, 장례식, 묘지표시는 허용되지 않았다. 계호원들은 죄의식이 낮아진 수감자들을 지정하여 다른 수감자들을 훈련시키는 임무를 주었다. 강제송환된 사람들은 이러한 “반장(disciplinarians)” 등에 의해서 일반 수감자들보다 더욱 가혹한 대우를 받는다. 어느 날 밤 이들은 중국에서 한국인과 접촉한 혐의를 받고 강제송환된 남자 한 명을 때려 죽였다. 증언자는 밤새 구타가 계속되는 소리를 들었으

550\_ TGC001.

551\_ TBG018.

며 계호원들은 말리지 않았다고 증언하였다. 증언자는 계호원들이 그 남자가 맞아서 죽는 것까지 바란 것은 아니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구타로 사망한 남자는 7살 내지 8살의 아들이 있는 사람이었고, 증언자와 같은 미성년자 감옥 수감자였다. 그 아들은 한 달 더 구금되어 있다가 고아원으로 보내졌다.<sup>552</sup>

### (e) 강제송환된 여성과 그 아이에 대한 강제낙태 및 영아살해

**424** 조사위원회는 강제송환된 여성 및 아이에 대한 강제낙태 및 영아살해가 만연하게 자행되고 있으며 이는 국내 및 국제법을 위반한다고 판단하는 바이다. 산당을 채워서 아이를 낳고 싶어하는 여성이 자신의 의사에 반해서 임신을 종료시켜야 하는 경우 강제낙태에 해당한다. 일반적으로 영아살해는 산모 혹은 제3자가 출생 직후 영아를 죽이는 행위로 정의된다. 영아살해는 중국에서 강제송환된 여성을 낙태시키려는 시도가 실패했거나 그 여성이 임신 말기였으며 아이가 산 채로 출생한 경우에 자행되는 것으로 보인다.<sup>553</sup>

**425** 중국으로부터 강제송환된 임신 여성과 그들이 낳은 영아에 대한 강제낙태 및 살해는 대부분의 경우 산모가 대기구류소(‘집결소’), 구금시설(보위부 ‘구류장’)에 구류되었을 때 발생한다. 극단적인 경우에는 여성이 임신한 것이 집결 내지 심문 과정, 또는 구금시설에서 감지되지 않은 경우 강제송환된 여성과 태어난 아이에 대한 강제낙태와 영아살해가 일반 감옥(‘교화소’) 혹은 정치범수용소(‘관리소’) 내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다. 임신한 여성은 강제적으로 낙태되는 것을 피할 수도 있는데, 임신 초기에는 뇌물 혹은 다른 수단을 통해서 이루어지거나, 또는 강제송환될 당시 임신 말기였다가 출산 전에 신속하게 감옥으로 이송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sup>554</sup>

552\_ TJH037.

553\_ TBG018, TSH049.

554\_ TSH029.

426 증언자들의 증언은 타 인종과 혼혈이 된 아이들 - 특히 중국 남성의 아이라고 여겨진 경우 - 에 대해 북한 당국이 갖고 있는 경멸감이 임신한 여성에 대한 강제낙태와 그들의 아기에 대한 영아살해를 부추기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sup>555</sup> 2차 자료와 증언자들의 증언은 외부인과 혼혈인 (한국계)아동들이 “순수성”을 오염시킨다고 간주하는 “순수 조선 혈통”에 대한 믿음이 북한의 사고방식 기저에 존재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sup>556</sup>

- 강제낙태는 강제송환된 임신 여성들 모두가 중국 남성에 의해 임신했으리라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 여성들은 아이 아버지의 인종에 대해서 질문받지 않는다.
- 여러 번 송환되어 두 명의 여성이 강제낙태를 받는 것을 목격한 바 있는 한 여성은 조사위원회에 다음과 같이 진술했다. “만약 중국에서 임신하면 중국 남성이 임신시켰다는 추정을 받으며, 이에 따라 북한으로 강제송환된 임신 여성은 강제로 낙태된다.”<sup>557</sup> 만약 강제낙태가 모든 임신 여성들이 중국 남성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가정 하에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북한 당국은 아이 아버지의 인종에 대해서 질문하지도 않은 채 그러한 가정을 함으로써 무모하게 행동하는 것이다.
- 전직 보위부원은 조사위원회에 “순수 조선 혈통” 개념이 아직 북한 사람들의 정신세계에 작동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므로 “100%” 조선인이 아닌 아이를 임신하는 것은 그 산모를 “인간 이하”로 만든다.<sup>558</sup>
- 한 증언자는 산모가 강제로 낙태수술을 받기 전에 겪는 학대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무산군에 위치한 구금시설에서는 계호원들이 언어 및 육체적 폭력을 가하면서, 그녀가 “자궁에 중국 남자의 아이를 갖고 있다”고 소리치며 이미 학대로 고통받고 있는 산모에게 욕설을 하였다.<sup>559</sup>
- 한 증언자는 온성군 보위부 구류장에서 계호원들이 강제송환된 여성이 낳은 아이를

555\_ TAP003, TSH029, TSH051, TBG024.

556\_ David Hawk, *The Hidden Gulag: The Lives and Voices of Those Who Are Sent to the Mountains*, p. 66.

557\_ TAP003.

558\_ TBG031.

559\_ TGC001.



데려가는 것을 보았다고 말했다. 아이가 의사의 도움 없이 감방에서 태어난 얼마 후, 계호원들은 “이 아이는 인간이 아니다” 혹은 “아이는 순결하지 않으므로 살 가치가 없다”고 말하면서 아이를 바구니에 넣어 데려갔다.<sup>560</sup>

- 또 다른 증언자는 조사위원회에 회령에 위치한 보위부 구류장에서 보위원들이 낙태를 종용하기 위해 임신 여성의 질 속에 화학약품을 넣는 것을 보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관리들은 “혼혈 인종”을 멸절해야 한다고 말했다.<sup>561</sup>
- 중국에서 북한이탈주민들을 지원하는 것을 포함하여 북한이탈주민들과 함께 활동하는 김영환 씨는 서울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조사위원회에 다음과 같이 진술했다. “강제낙태와 신생아에 대한 살해가 자행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임신한 탈북 여성들이 강제송환되면 중국 사람의 아이를 가졌다고 비난받으며 강제낙태를 당하고, 만약 출산한다면 그 아이가 살해당합니다.”<sup>562</sup>

**427** 한국 순수 혈통이 아닌 아이들에 대한 경멸은 당국 혹은 보안 기관에 국한되지 않으며 북한 사회 전반에 존재한다고 알려져 있다. 전직 보위부원의 진술에 따르면, “불결한” 아이를 낳았다는 것 때문에 이후에 받을 차별로부터 여성을 구해준다는 측면에서 볼 때, 강제낙태가 자비심에 의거한 이유로 시행되기도 한다고 하였다.<sup>563</sup>

**428** 또한 강제낙태는 탈북하여 중국에서 임신한 여성에 대한 추가적인 처벌 차원에서 의도한 것이기도 하다.

- 한 증언자는 조사위원회에 여성들이 반역죄(즉, 중국으로의 도망)에 대한 처벌의 한 형태로서 강제낙태를 받는 것이라고 말했다.<sup>564</sup>
- 여성그룹(Women’s Group)의 전직 위원은 (위원의 자격으로) 강제송환된 여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강제낙태를 직접 목격했고, 북한으로 강제송환된 여성들을 대상으

560\_ TJH028.

561\_ TLC009.

562\_ 서울 공청회, 2013년 8월 24일, 오후(00:28:20).

563\_ TBG031.

564\_ TAP003.

로 강제낙태를 시술하는 정책이 존재한다고 증언했다. 그녀는 중국에서 임신한 여성은 아이 친부의 인종과 무관하게 예외없이 강제로 낙태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수술은 병원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 대신에 보안 요원들이 임신 여성을 구타하고 고되고 격렬한 노동을 하도록 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증언자는 2007년경 북부지방의 한 ‘집결소’에서 한 임신 여성이 보위부 요원에게 구타당하는 것을 보았다. 보안 요원은 임신한 수감자 이름을 부르며, 중국 남자의 자식은 북한에서 태어날 수 없다고 말했다. 간부들은 그녀를 언어 및 육체적으로 학대했고, 그녀는 바로 유산했다. 태아는 버려졌다.<sup>565</sup>

- 한 전직 관리는 (1996~2000년 사이에) 강제송환된 여성들을 대상으로 낙태를 강제하는 구체적인 지침이 존재한 것은 아니었으나, 낙태를 자행한 조사관들은 처벌받지 않고 오히려 칭찬을 받았다고 증언하였다.<sup>566</sup>

**429** 또한 증언자들의 증언은 대기구류소(‘집결소’)와 구금시설(보위부 ‘구류장’)로 이송된 여성들은 강제적으로 피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었음을 보여준다.<sup>567</sup> 북한이탈주민들과 함께 일하는 한 전문가는 현재 강제송환된 모든 여성들을 대상으로 피검사가 관례적으로 실시되고 있다고 하였다. 피검사는 HIV 감염 및 임신 여부를 진단하려는 목적에서 시행된다.<sup>568</sup>

**430** 피해자들에 대한 강제낙태가 이루어진 방식은 다음과 같다.

1. 태아를 축출하기 위해 물리력을 통해 자궁에 충격을 가하는 방식으로는 임신 여성의 골반 및 복부를 구타, 발차기, 충격을 주는 방법이 있다.<sup>569</sup> 이러한 충격은 내부 출혈과 장기 손상도 초래할 수 있다.
2. 조산 또는 자궁 내 태반의 조기박리를 유도하기 위하여 임신 여성을 열악한 영양상

565\_ TAP007.

566\_ TBG031.

567\_ TAP010, TBG018, TSH015, TSH050.

568\_ 조사위원회 제출: 비공개 출처.

569\_ TAP003, TGC001, TSH039, TSH049, TJH032, P씨, 서울 공청회, 2013년 8월 21일, 오후.

태하에 극심한 육체적 노동 및 기타 활동에 종사하도록 강제하는 방식이다.<sup>570</sup>

3. 임신을 종결하거나 태아를 축출하기 위해 손을 이용하여 질내 삽입하는 화학약품 또는 유산시킬 수 있는 약제를 사용하는 방식이다.<sup>571</sup> 이런 방식으로 약제 내지 화학약품을 사용하는 것은 혈관에 쉽게 흡수될 수 있기 때문에 (장기 부전이나 사망 까지도 초래할 수 있는) 심각한 부작용을 가질 수 있다.
  4. 여성의 신체로부터 태아를 제거 또는 축출하기 위해서 집게처럼 생긴 기구 또는 날카로운 물건을 질 안에 밀어 넣음으로써 태아를 물리적으로 강제 제거하는 방법이다.<sup>572</sup> 이 유형의 강제낙태 방식은 상처, 유착, 내부 손상, 불임을 야기할 수 있다.<sup>573</sup>
  5. 자궁 내 태아를 살해하기 위해,<sup>574</sup> 인위적으로 태아를 축출시키기 위해, 또는 임신 단계에 따라 조산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경구 또는 주사)약을 투입하는 방법이다.<sup>575</sup> 미숙아는 일반적으로 의학적 도움이 없이는 스스로 생존할 수 없어 바로 사망한다.<sup>576</sup> 계호인들이 분만 유도로 조산아를 살해하는 경우도 있다. 태아에 가해지는 계호원들의 인위적 행동은 (산모의 의지에 반하여) 임신을 종결시키는 것으로, 그 행동이 있은 후에 아이가 (비록 잠시 살아있었는지 모른다고 해도) 사람의 개입이 없으면 죽는다는 측면에서 이런 경우도 강제낙태로 고려된다.
  6. 의료교육을 받은 전문인력이 (일반적으로 병원 또는 의료 시설에서) 실시하는 수술을 통해 태아를 제거하는 방법<sup>577</sup>(중국에서 이루어지는 “동정심에서 비롯된 낙태 (sympathy abortions)”와 관련해서는 이하 참조)이다.
- 지현아 씨는 강제송환당한 후 구금 초기에 다른 송환 여성들에 대한 강제낙태와 영아살해를 목격했으며, 세 번째로 강제송환되고 나서는 구금 중에 자신이 강제적으로 낙태되었다. 서울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그녀는 조사위원회 앞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했다. “임신한 것을 알았을 때 나는 임신 3개월이었습니다. 나는 임신했다는 사실

570\_ TAP007, TSH015, TSH050.

571\_ TLC009.

572\_ TAP010, TSH018, TSH030.

573\_ TAP010.

574\_ TLC008.

575\_ TAP010, TBG018.

576\_ TAP010.

577\_ TBG017.

에 놀랐었습니다. 1999년에 아이가 감옥에서 태어났던 일을 기억하고 있었고, 나도 똑같은 일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아이가 영아살해를 당하는 것을 지켜보아야만 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들은 내가 낙태수술을 받게 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낙태는 주사를 놔주는 대신에 나를 탁자에 눕히고 즉시 수술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출혈이 컸고 … 나는 서있지를 못했습니다.”<sup>578</sup>

지씨의 경우 탁자에 묶인 상태로 강제로 누군가가 자궁을 건드려서 태아를 물리적으로 제거하였다. 출혈이 과도해서 내부 손상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수술 후 그녀는 바로 ‘교화소’로 이송되었다. 그녀는 출혈이 너무 커서 담당 관리가 ‘교화소’에서 내 보내기로 결정하였다.

- 또 다른 증언자는 조사위원회에 그녀가 임신했으므로 강제로 낙태될 것을 잘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녀는 임신 9개월 된 감방 동료가 겪은 것과 유사한 과정을 겪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감방 동료는 분명히 출산을 유도하는 주사를 맞았고, 아이가 태어나자 아이는 얼굴이 아래로 가도록 엮어놓아 질식하여 죽었다. 그러나 증언자의 경우에는 마취제를 쓰지 않은 상태에서 한 여성이 손과 녹슨 장비를 이용하여 강제로 낙태수술을 했다. 증언자는 수술받는 동안 고통스러워하며 비명을 질렀으며 비명을 멈추라는 말을 들었다. 수술 후 그녀는 사방이 피투성이가 된 것과 양동이에 담긴 낙태된 태아를 보았다. 그녀는 이후 불임이 되었다. 강제로 낙태 수술을 받은 날 그녀는 허리에 통증과 경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해야 했다. 그녀는 3개월 간 ‘집결소’에 구류되었고 그 후 고향으로 이송되어 형을 선고 받았다.<sup>579</sup>

**431** 한 증언자는 조사위원회에 청진 ‘집결소’에서 7명의 임신 여성들이 강제로 낙태되는 것을 보았다고 말했다. 여성들은 눕혀져서 유산을 유도하는 주사를 맞았다.<sup>580</sup>

**432** 강제송환된 산모가 산기를 모두 채워서 아이를 낳을 경우, 산전·산후 및 출산 과정에서 어떠한 의료지원도 받지 못한다. 그러나 같은 감옥에 있는 다른 여성들이 출산의 과정에서 산고를 겪는 산모를 도와줄 수 있다. 대부분의 경우, 강제송

578\_ 서울 공청회, 2013년 8월 20일, 오후(03:09:45).

579\_ TAP010.

580\_ TBG018.

환된 사람들이 구류되어 있는 구금시설의 계호원들은 산모<sup>581</sup> 또는 제3자<sup>582</sup>에게 영아를 물에 빠뜨리거나,<sup>583</sup> 영아의 얼굴에 옷 내지 기타 물건으로 덮어서 질식사 키거나, 혹은 얼굴이 아래로 가도록 뒤집어서 숨을 쉴 수 없게 하여 죽이도록 강요한다.<sup>584</sup>

- 지현아 씨는 한 산모가 출산 직후 자신의 아이를 질식사시키도록 강요당하는 것을 보았다고 회상했다. “... 임신 9개월이던 임신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하루 종일 일을 했습니다. 아이들은 대부분 죽은 상태로 태어났으나, 이 경우에는 목숨이 붙은 채로 태어났습니다. 아이는 태어나면서 크게 울음을 터트렸고, 아기가 태어나는 것을 처음 보았기 때문에 우리는 신기해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돌보면서 행복해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발자국 소리를 들었습니다. 보위부의 보위 부원이 왔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 보통 아이가 태어나면 물로 씻겨주어야 하는데, 이 보위부원은 아이를 물 속에 거꾸로 넣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산모가 ‘나는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이지만, 운 좋게도 임신을 했으니 아이를 데리고 있게 해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하며 사정했지만, 이 보위 부원은 조금 전 출산한 이 여성을 계속해서 구타했습니다. 아이는 태어난 후로 계속 울어대고 있었다. 산모는 떨리는 손으로 아이를 들어서 아이의 얼굴이 밑으로 가도록 해서 물에 넣었습니다. 아이는 울음을 그쳤고 우리는 아이의 입에서 물방울이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출산 과정에서 도움을 준 한 나이든 여성이 아이를 물에서 건져서 조용히 방을 떠났습니다. 이러한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함경도의 청진시에 있는 구금시설에서 일어난 일입니다.”<sup>585</sup>
- 김영환 씨는 그의 단체가 여성들로부터 수집한 증언에 기초하여 서울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자신의 아이가 살해당하는 것을 지켜보아야 하는 산모들이 느끼는 공포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진술했다.
 

“... 아이가 태어나고 나면 그 아이는 즉시 살해당합니다. 입과 코를 젖은 천으로 덮어서 질식사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몇 가지 증언들을 입수했습니다. 아

581\_ 지현아, 서울 공청회, 2013년 8월 20일, 오후.

582\_ TBG018, TLC018.

583\_ TLC018.

584\_ TBG018, TSH051.

585\_ 서울 공청회, 2013년 8월 20일, 오후(02:42:00).

이를 얹어놓으면 아이가 숨을 쉴 수 없게 되는데, 이것은 아이를 살해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몇 분 또는 몇 시간 동안 아이는 숨을 쉴 수 없기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며 울부짖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의 엄마는 이 모든 것을 [자신의] 아이 곁에서 지켜봐야만 합니다.”<sup>586</sup>

**433** 조사위원회는 출산 전 3개월 내지 출산 후 7개월 동안은 여성들에 대한 구류를 금지하는 국내법을 위반하면서 임신 여성들에 대한 구금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sup>587</sup> 뿐만 아니라 강제낙태와 영아살해 과정에서 여성들은 사실상 어떠한 법적 보호도 받지 못하고 있다.<sup>588</sup>

**434** 강제낙태는 여성의 성적 및 생식권뿐만 아니라 개인의 신체적 온전성 및 안위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sup>589</sup> 여성의 생식 능력을 공격대상으로 했으므로 강제낙태와 영아살해는 성에 근거한 차별 및 박해 문제도 제기한다. 북한 관리들에 의해 자행된 강제낙태와 영아살해는 성과 인종 차별에 기반하는 것으로 여성들에게 극심한 정신 및 육체적 고통을 준다. 이러한 행위는 자유권규약 제7조에서 정의되는 고문의 기준을 충족시킨다.<sup>590</sup> 영아살해 관련 보고된 사례들은 특히 자유권규약 제6조를 위반하는, 사법절차를 거치지 않은 살인이라는 극악무도한 경우에 해당한다.

586\_ 서울 공청회, 2013년 8월 24일, 오후(00:30:50).

587\_ 인민보안단속법(1992), 제50조제3항.

588\_ 이와 관련하여 IV장 E 참조.

589\_ 여성에 대한 폭력, 원인, 결과에 대한 특별보고관, E/CN.4/1999/68/Add.4, paras. 45, 49 참조. 또한 제4차 세계여성대회에서 채택된 베이징행동강령(1995), para. 115;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일반권고 19, A/47/38, para. 22; CEDAW/C/CHN/CO/6, para. 32 참조.

590\_ 자유권규약 제7조에서 규정하는 고문의 정의를 따르고 있는 고문방지협약 제1조는 고문을 공무원이나 그 밖의 공무 수행자가 직접 또는 이러한 자의 교사·동의·묵인 아래, 어떤 개인이나 제3자로부터 정보나 자백을 얻어내기 위한 목적으로, 개인이나 제3자가 실행하였거나 실행한 혐의가 있는 행위에 대하여 처벌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또는 모든 종류의 차별에 기초한 이유로, 개인에게 고의로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강제낙태를 고문 행위로 인정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추후에 나온 고문 및 그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에 대한 특별보고관 보고서, A/HRC/22/53 (2013), para. 48; A/HRC/7/3, para. 69 참조. 또한 자유권위원회 일반논평 제28호, CCPR/C/21/Rev.1/Add.10, para. 11 참조.

## (f) 중국에 의한 북한 주민 강제송환

435 강제송환된 사람들이 북한에서 겪게 되는 고문, 자의적인 감금, 기타 중대한 인권 침해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적절한 증빙서류를 갖추지 못하고 중국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 주민들을 강제로 송환하는 정책을 엄격하게 추진하고 있다.

436 많은 증언자들은 그들이 북한 주민으로서 유효한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는 것이 발각되면 중국 관리들이 체포한다고 진술했다. 많은 경우 북한 주민들을 적발하고 체포하기 위한 표적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과의 접경 지대에서 활동하는 인권 운동기들은 중국 정부가 자국민들에게 북한 주민들을 고발하도록 요구하였으며 이들을 은닉하는 자들을 처벌했다고 증언하기도 하였다. 2013년 3월 중국 공안이 옌벤 지역을 대상으로 불법 월경자에 대한 단속 명령을 내렸다고 하였다. 이러한 단속활동은 불법 월경자 적발 시 필요한 정보 제공에 대한 금전 보상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전에도 실시된 적이 있다. 정보가 신속하게 제공될수록, 그리고 제공된 정보에 관련된 불법 월경자가 많을수록 제공되는 보상의 규모도 커진다.<sup>591</sup> 알려진 바에 의하면, 중국 공안은 북한 주민들까지 고용하여 한국으로 도망갈 계획을 세우고 있는 북한 주민들에 대한 정보를 밀고하도록 하고 있다.<sup>592</sup>

437 또한 중국은 북한 주민들이 보호 또는 망명을 요청하기 위한 목적으로 외국 대사관 및 영사관에 접근을 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온 것으로 보인다.<sup>593</sup> 한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대한 접근을 막는 것은 북한 주민들이

591\_ Life Funds for North Korean Refugees, "China Promises Bounty on All NK Refugees Turned In," 2013년 4월 31일. <http://www.northkoreanrefugees.com/2013-03-bounty.htm> 참조.

592\_ KINU,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3), p. 46.

593\_ 2002년 중국 외교부는 "제3국 주민이 중국 내 외국 대사관 및 영사관에 침입하여 (중략) 중국 법을 위반하고 공공의 안전과 중국의 안정에 영향을 끼쳤을 뿐만 아니라 대사관 및 영사관의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공무를 방해한 일이 연이어 발생한" 사건이 일어난 후 외국 공관에 서신을 발송하였다. 그러한 연유에서 "중

한국에 보호를 요청하거나 한국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한국 시민권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것을 의미한다.<sup>594</sup>

**438** 체포된 자는 대개 경찰서 또는 군사 시설 내 구금시설에 유치된다. 강제송환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중국 내 구금시설에서의 대우가 북한에서 경험한 조직적이고 중대한 인권 침해 상황보다는 낫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중국 경비요원에 의한 성적 및 육체적 폭력을 포함한 심각한 인권 침해의 사례들이 보고된 바 있다.

- 한 증언자는 2006년에 중국의 투먼지역에 위치한 구금시설에 몇 개월 간 구금되었다. 구금기간 동안 조사관들은 중국으로 데리고 온 브로커의 이름을 알아내기 위해서 손, 의자, 몽둥이로 그녀와 다른 북한 주민들을 때렸다. 북한으로 강제송환된 후 그녀는 “북한 감옥과 비교해서 중국 감옥은 천국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더 심각한 고문 및 성폭력을 당했다.<sup>595</sup>

국 내 많은 대사관과 영사관의 요구에 응하고 “양자 모두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중국 당국에 의해서 외국 외교 및 영사 대표기관의 보안을 유지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들이 채택되었다. 당해 서신에서는 “대사관과 영사관이 비호권을 갖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국제법의 원칙에 따라서 중국 측은 불법 침입자가 발견되는 경우, 관련 대사관들이 협조하여 중국외교부 영사국에 알려주고 당해 침입자를 중국 공공안전을 담당하는 기관에 인도해줄 것을 희망하는 바이다”라고 밝히고 있다. Human Right Watch(HRW), “The Invisible Exodus: North Koreans in the PRC,” 2002년 11월, pp. 29~30. <http://www.hrw.org/reports/2002/northkorea/norkor1102.pdf> 참조. 상기 서신의 발송을 촉발하는 계기가 되었던 중국 내 외국 대사관 및 영사관에 북한 주민들의 연이은 접근 시도와 관련해서는 상기 휴먼 라이츠 워치 보고서 28~29페이지 참조. 외교 및 영사 공관지역 내 비호 신청을 시도하면서 중국 관리에 의해 체포된 북한 주민들의 사례와 관련해서는 북한자유연합, “‘The List’ of North Korean Refugees and Humanitarian Workers seized by Chinese authorities,” 2013. [http://www.nkfreedom.org/UploadedDocuments/THELIST2013\\_English.pdf](http://www.nkfreedom.org/UploadedDocuments/THELIST2013_English.pdf) 참조.

594\_ 한국 헌법, 한국 국적법, 한국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공하는 규정에 의하여 북한 주민들은 일부 예외(즉,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를 저지른 자)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한국 시민권을 부여받는다. Elim Chan and Andreas Schloenhardt, “North Korean Refugees and International Refugee Law,” *International Journal of Refugee Law*, vol. 19, No. 2 (2007), p. 19. 참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는 당해 법률이 오직 “대한민국에 의해서 보호받으려는 의도를 명백하게 표현한 북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만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7조에서는 “해외에 주재하는 외교 또는 영사 공관의 공관장에게 비호” 신청을 비롯한 보호를 원용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HRW, “The Invisible Exodus: North Koreans in the PRC,” pp. 30~31 on ROK policy 참조).



- 또 다른 증언자는 중국에 도착한 지 일주일 만에 체포되어 처음에는 중국에 있는 육군 교도소로 이송되었다. 그녀와 북한출신 여성들은 알몸 수색을 받았다. 여성 경비요원들이 이 수색을 진행했으나 두 명의 남성 경비요원들도 참석했다. 옷을 벗기를 거부한 일부 여성들은 명령에 응할 때까지 폭언을 듣고 몽둥이로 구타당했다.<sup>596</sup>
- 한 증언자는 한국 영사관에 보호를 요청하고자 했으나 실패하여 상하이에서 체포되었다. 구금시설에서 그가 북한 출신임을 부정하고자 했을 때 두 명의 중국인 경비요원들이 그에게 벽 쪽에 기대어 물구나무 서기를 시키고는 머리를 발로 찼다. 그는 그의 국적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sup>597</sup>
- 또 다른 증언자는 농장에서 일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다는 핑에 빠져 중국으로 갔으나, 인신매매를 당하여 중국 남자에게 팔려가 3년간 붙잡혀 있었다. 그녀는 중국인 “남편”으로부터 도망친 후 체포되었다. 당시 그녀는 임신 7개월이었다. 그녀는 조사 위원회에 중국 구금시설에 성폭력이 만연하다고 진술했다. “지나갈 때마다 모든 경비요원들이 가슴을 때립니다. 조금이라도 더 매력 있는 사람이 구금시설에 들어오면 성적 노리개로 취급 당합니다. 감옥에서 임신하는 소녀들도 있습니다.” 증언자 자신도 중국 통화(通化)시의 구금시설에서 한 경비요원에 의해 성폭행당한 적이 있었다. 또한 그녀는 경비요원들이 여자들을 데려가 성폭행한 뒤 감옥으로 다시 돌려 보내는 것을 본 적도 있다. 경비요원들은 훔칠 돈을 찾기 위해 여성들의 질 속에 손을 넣기도 했다.<sup>598</sup>

**439** 체포된 사람들은 심문 절차가 걸리는 기간에 따라 짧게는 수일, 길게는 수개월간 중국에서 구금된다. 충분한 수의 북한 주민이 모이면 국경을 넘는 곳으로 이송되어 북한 당국에 인계된다.

**440** 또한 증언자들은 증언에서 강제송환정책 이행업무를 맡은 중국 관리들이 대부분 강제송환자들이 북한에서 당면하게 될 인권 침해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595\_ TBG013.

596\_ TJH028.

597\_ TJH037.

598\_ TSH029.

지적이다. 중국 관리들은 체포된 북한 주민에 대해서 연민을 보이는 경우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제송환에 따라야만 하는 것이다. 중국 관리들은 임신 여성들이 중국에서 강제송환되면 강제로 낙태를 받는다는 사실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 한 증언자에게 어떤 조선족 중국 관리가 강제송환된 많은 사람들에 대해 너무나 괴로운 마음이 드는 나머지, 강제송환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체포된 것을 질타하게 되더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었다.<sup>599</sup>
- 한 증언자는 중국 구금시설에 있는 한 경비요원이 임신 여성에게 북한에 강제송환되어 강제로 낙태되지 말고 중국에서 낙태하라고 제안하는 것을 본 적이 있다. 그 후 증언자는 그 임신 여성이 더 이상 임신 중이 아님을 알았고, “위생 여건상 중국에서 낙태하는 것이 그녀에게 더 낫기” 때문이었을 것이라고 결론내렸다.<sup>600</sup>

**441** 2005년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및 유엔 인권이사회 다른 특별보고관 5명은 “북한 주민들이 잔인하고 비인도적이며 열악한 여건 속에서 부당한 대우 및 고문을 받으며 수감생활을 할 뿐 아니라, 극단적 경우에는 북한 내에서 즉결처형되는 경우가 있다”는 데에 근거하여 중국으로부터의 강제송환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였다.<sup>601</sup> 이에 대하여 중국 정부는 자신의 영토 내에서 외국인의 법적 권리 및 이익을 보장하고 있다고 특별보고관들에게 확인하였다.

**442** 중국은 이러한 확인과 달리 북한 주민들을 강제로 송환하는 정책을 유지해 오고 있다. 2013년 5월 15세에서 23세의 북한 주민 9명은 라오스 정부에 의해 중국을 경유하여 북한으로 강제로 송환되었다. 인권최고대표와 난민최고대표 모두 중국과 라오스 정부에 우려를 전달하고 국제인권법과 국제난민법에서 강제송환을 금지하고 있음을 상기시켰다.<sup>602</sup>

599\_ EJIH003.

600\_ TBG017.

601\_ A/HRC/4/34/Add.1, para. 129 참조.

443 중국이 1988년 10월 4일 비준한 고문방지협약 제3조에 의해 해당 개인이 고문을 받을 우려가 있다고 여겨지는 중대한 근거가 있는 다른 나라로 추방, 송환, 인도하지 않아야 하는 의무가 발생한다. 송환은 일반적으로 북한 주민들을 그들의 종교, 특정사회 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특정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그 생명 또는 자유가 위협받을 수 있는 곳으로 보내는 행위로서 중국이 회원국 지위를 가지고 있는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33조에 반한다. 심각한 인권 침해를 받을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확실한 근거가 있는 국가로 사람들을 추방하지 않을 의무도 국제관습법의 요건으로부터 도출된다.

444 유엔난민기구(UNHCR)는 동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을 담당하는 베이징 사무국을 운영하고 있다. 베이징 사무국에서는 중국 정부가 자신의 국가 지침을 마련하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개인 망명 신청자들의 난민 지위를 결정하는 임무를 갖는다. 조사위원회는 중국이 유엔난민기구 직원에게 북한 출신자를 포함한 망명 신청자들에 대한 제한없는 접근을 허용하겠다고 유엔난민기구와 합의하였으나 이를 무시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445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2012년 7월 새로운 ‘중화인민공화국출입경관관리법’을 채택하면서 난민의 대우 관련 조항(제46조)이 최초로 중국 국내법에 추가되었다. 새로운 규정들이 2013년 7월 시행되었고, 난민 아동 관련 조항이 포함되어 포괄적이며 국가적 차원의 난민 법률의 토대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602\_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Press briefing notes on North Korean defectors and Papua New Guinea,” 2013년 5월 31일, <http://www.ohchr.org/EN/NewsEvents/Pages/DisplayNews.aspx?NewsID=13390&> 참조; UNHCR, “UNHCR chief calls on states to respect non-refoulement after North Koreans deported from Laos,” 2013년 5월 30일, [www.unhcr.org/51a7510b9.html](http://www.unhcr.org/51a7510b9.html) 참조.

있다.<sup>603</sup> 그러나 조사위원회는 중국이 당해 법률을 효과적으로 이행하는데 있어서 특히 북한 주민과 관련한 경우, 난민 협약상의 국제적 의무에 합치하는 방식의 어떤 진전 상황도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

**446** 조사위원회가 입수한 증언의 내용 및 기타 정보를 통해서 볼 때, 조사위원회는 중국으로 월경하는 북한 주민들의 많은 수가 종교 내지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이유가 있는 공포에 근거하여 월경한다고 판단한다. 또 다른 사람들은 낮은 ‘성분’의 사회 계급 출신을 이유로 하는 심각한 사회·경제적 박탈의 형태를 띠는 박해를 받는다. 뿐만 아니라 북한으로 강제송환된 자들은 고문 및 자의적 구금을 당하고 성폭행, 강제실종, 즉결처형, 그 밖의 중대한 인권 침해의 대상이 된다. 또한 그들은 형법 제62조하의 “다른 나라로 도망친 조국반역죄” 또는 애매하게 정의되는 “반국가” 또는 “반민족” 정치 범죄를 저질렀다고 여겨질 가능성이 크다.

**447** 따라서 조사위원회는 중국이 단순 경제적 불법 이주민으로 생각하는 북한 주민들의 많은 수가 박해를 피해 탈북한 난민 또는 현장 난민(refugees sur place)<sup>604</sup>으로 인정받아야 하며 국제적 보호를 받을 자격이 주어져야 한다고 판단하는 바이다.

**448** 중국 관리들이 북한 당국에 체포 정황, 체포 장소, 중국 내 연락처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여 자신들이 체포한 북한 주민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근거도 있다.

603\_ 유엔난민기구가 중국의 보편적 정례인권검토에 낸 제안, 2013년 3월, <http://www.ohchr.org/EN/HRBodies/UPR/Pages/UPRCNUNContributionsS17.aspx> 참조.

604\_ 현장난민에 관해서는 UNHCR, “Handbook on Procedures and Criteria for Determining Refugee Status under the 1951 Convention and the 1967 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1992년 1월, paras. 94~96 참조.

- 김송주 씨는 런던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했다. “내가 중국에서 북한으로 강제송환되었을 때 북한 보안당국은 중국 공안이 제공한 보고를 이미 수집한 상태였고, 나의 탈북은 남한으로 가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중국이 제공한 보고와 다르게 말하면 나는 구타당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계속해서 얻어맞았습니다.”<sup>605</sup>

**449** 국경 보안 업무를 맡았던 한 전직 관리는 중국 당국이 북한 주민을 강제송환할 때 송환자의 중국 내 생활 환경에 관한 서류를 제공한다고 말하였다. 그 서류는 해당 북한 주민이 단순히 그들의 “배우자”와 살았는지, 혹은 기독교인 내지 한국 국정원 요원을 포함한 한국인과 접촉했는지 여부에 관한 내용을 담고있었다. 이러한 정보는 북한 당국이 강제송환자의 운명을 결정하는데 사용된다. 한국 국정원에 협조했다고 생각되는 주민들은 북한에서 처형되며 기독교 선교사들과 관계한 자는 재판을 거치지 않고 정치범수용소로 이송된다.<sup>606</sup> 이 증언자는 중국 관리들이 송환자의 목적국이 한국이었는지 여부에 따라 북한 당국에 건내는 서류상 도장의 색을 달리하여 표시했다는 점도 증언하였다.<sup>607</sup> 또 다른 증언자도 중국 당국이 북한 당국에 자신을 인계할 때 자신의 사건 관련 서류를 함께 제공했다고 진술했다.<sup>608</sup>

**450** 중국과 북한에서 비밀리에 왕성한 활동을 했던 한 인권운동가는 조사위원회에 중국 당국이 북한 당국에게 정보를 제공했으며 이러한 정보를 대가로 목재를 전달받았다고 증언하였다.<sup>609</sup>

605\_ 런던 공청회, 2013년 10월 23일, 1세션(00:55:01).

606\_ TJH015. IV장 A.4 참조.

607\_ 이러한 묘사는 다른 북한이탈주민들이 개진한 진술과도 일치한다. Suzanne Scholte, 미 의회-행정부 중국위원회의 공청회, “China’s Repatriation of North Korean Refugees,” 2012년 3월 5일, p. 6 참조.

608\_ TBG018.

609\_ EJH003. Roberta Cohen, 워싱턴 공청회, 2013년 10월 31일, 오후 참조.

451 이러한 정보 교환은 북한 국가안전보위부와 중국의 공안부 간에 1986년 체결되어 1998년에 개정된 의정서에 의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의정서에 나타난 교환 목적은 북한과 중국의 변경지역에서의 국가안전 및 사회질서 유지이다. 당해 의정서 제5조에서 “범죄자 처리 문제” 관련 상호 협력을 위한 합의를 수립했다. 당해 의정서는 무엇보다도 국경을 넘어 도망쳐 국가안전을 교란하고 사회질서를 위태롭게 한 자와 관련한 모든 위협성에 대하여 서로 알려줄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양 측 모두 상대방 국경 쪽의 안전 및 사회질서와 관련하여 입수한 정보 또는 자료를 상대방 국가에 제공해야 한다.<sup>610</sup>

452 조사위원회 위원장이 주 제네바 중국대표부 대사에게 보낸 2013년 12월 16일자 편지에서 조사위원회는 중국에 대한 상기 우려사항을 제기하였다. 조사위원회는 중국이 북한 주민들에게 난민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 않고 이들을 강제송환하는 정책을 지속하고 있는 점과 관련하여 특히 우려를 표명했다. 이러한 강제송환은 북한 주민의 많은 수가 종교 또는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이유가 있는 공포에 근거하여 중국으로 월경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속되고 있다. 또한 조사위원회는 북한으로 강제송환된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고문 및 자의적 구금의 대상이 되며, 성폭행, 강제실종, 즉결처형 및 그 밖의 중대한 인권 침해를 겪게 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조사위원회는 중국인을 아버지로 두었다고 생각되는 아동에 대한 강제낙태 및 영아살해가 자행되고 있다는 주장이 많이 제기되고 있음을 중국 정부에게 통보하였다.<sup>611</sup>

453 조사위원회는 강제송환되는 사람들이 북한으로 송환되어 그러한 인권 침해를 겪지 않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중국이 취한 어떤 조치가 있는지 중국의 해명을

610\_ 중국 외교부, *Zhonghua Renmin Gongheguo bian jie shi wu tiao yue ji. Zhong Chao juan* (중국의 국경에 대한 조약 모음: 중국북한 호), pp. 388~389 (Beijing, World Affairs Press, 2004) (비공식 영어 번역).

611\_ 위원회 보고서의 부록 2 참조.

요구하였다. 중국 공안부와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간에 체결된 국경 통제 관련 합의와 관련하여, 조사위원회는 특히 기독교 교회나 한국인과 접촉, 또는 한국으로 입국을 시도했다는 정보가 제공되는 경우 북한으로 강제송환되는 주민들이 고문, 강제실종, 즉결처형을 당할 위험이 배가된다는 우려를 전달하였다.

454 2013년 12월 30일자 회신에서 중국은 “불법으로 중국에 입국한 북한 주민들은 경제적 이유로 입국”했으므로 난민이 아니라는 입장을 반복하였다. 따라서 그들의 “불법 입국은 중국 국내법을 위반할 뿐만 아니라 중국의 국경 통제를 저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중국은 “법에 따라 [여타 불법 및 범죄 행위를 포함하여] 그러한 상황을 바로잡을 수 있는 정당한 권리를 보유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중국은 중국 공안 당국과 국경 경비대들에 의해 체포된 북한 주민들이 반복적으로 중국에 불법 입국한다는 사실에 근거, 중국에서 강제송환된 북한 주민들이 북한에서 고문을 당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sup>612</sup>

### (i) 여성 및 여아를 대상으로 한 인신매매

455 유엔의 인신매매, 특히 여성과 아동의 인신매매 예방, 억제, 처벌을 위한 의정서<sup>613</sup>에서 규정하는 인신매매는 북한 여성과 여아에 대한 가장 심각한 인권 침해의 한 형태이다.

612\_ 위원회 보고서의 부록 2 참조.

613\_ 유엔의 인신매매, 특히 여성과 아동의 인신매매 예방, 억제, 처벌을 위한 의정서, 2000년. 유엔 국제조직범죄 방지협약을 보충하는 “인신매매, 특히 여성과 아동의 인신매매 예방, 억제, 처벌을 위한 의정서”에서는 인신매매를 착취의 목적을 위해서 협박, 폭력, 기타 강제력 사용, 납치, 사기, 기망, 권한의 남용, 혹은 취약한 지위를 남용 등의 수단을 통해서 사람을 모집, 운송, 이동, 은닉, 인수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착취에는 “성 매매를 통한 착취 또는 기타 형태의 성적 착취, 강제노동 및 서비스, 노예화 또는 노예화와 유사한 관행, 노동력 또는 장기 적출”의 요소가 최소한으로 요구된다.

456 엄격한 국경 통제로 인해 월경자들은 발각되지 않고 국경을 넘기 위해서 조직적인 도움에 의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 활동과 관련된 종사자들은 다음과 같은 여러 범주로 나타난다. 다양한 범주의 한쪽에는 탈북하고 싶어하는 주민들을 돕고자 하는 동기를 가지고 활동하는 인권 운동가들이 있다. 흔히 “브로커”로 일컬어지는 상업적인 밀수업자도 존재하며, 최근 정보에 따르면 이들은 수천 달러에 이르는 돈을 받는 대가로 자발적으로 국경을 넘기를 원하는 자들을 도와주는 일을 한다. 이 범주 중 어두운 극단에는 대부분 브로커로 위장한 인신매매업자들도 있으며, 이들은 여성과 여아를 대상으로 무력 또는 속임수를 사용하여 피해자들을 착취 상황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457 조사위원회는 북한에서 중국으로 혼자서 월경하는 여성과 여아들이 강제결혼과 강제 첩살이의 형태로 이들을 착취하려는 목적에서 자행되는 인신매매의 피해자가 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많은 여성들과 여아들이 타인의 통제를 받으며 매춘을 강요받기도 한다.

458 여성차별철폐협약 제6조는 회원국들에게 “모든 형태의 인신매매 및 매춘에 의한 착취를 금지하기 위하여 입법을 포함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을 의무로 부과하고 있다. 아동권리협약 제34조는 국가들로 하여금 아동들을 성적 착취로부터 보호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조사위원회는 북한과 중국 모두 중국 체류 중인 북한 출신의 여성과 여아에 대해서 이들이 취약계층에 속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보호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하는 바이다. 조사위원회는 중국과 북한 모두 인신매매업자를 검거하기 위해서 엄중한 형사 처벌을 적용하고 있으며, 북한의 경우에는 사형도 선고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였다. 그러나 중국의 강제송환 관행과 북한의 강제송환자에 대한 고문 및 처벌은 피해자들이 효과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되게 하는 행위이다. 많은 피해자들은 당국에 도움을 요청하기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강제송환시 북한에서 당면하게 될 심각한 인권 침해보다는 현 상황을 견디



는 쪽을 선택한다.

**459** 2005년 여성폭력 문제의 원인 및 결과에 관한 특별보고관, 북한인권특별보고관, 그리고 기타 네 명의 특별보고관들은 인신매매업자들이 조직적으로 배고프고 절박한 북한 여성을 목표로 삼고 있다는 것을 중국 측에 통보하였다. 인신매매업자들은 국경 지역의 여성들에게 접근해서 중국 남성과 “결혼” 또는 첩살이를 강요하기 전에 식량, 은신처, 고용, 보호를 약속함으로써 인신매매를 했다. “결혼”은 법적으로 인정된 관계는 아니지만, 인신매매되거나 거래된 여성들, 결과적으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여성들에게 강제되는 사실상의 지위가 된다. 여성폭력 문제의 원인 및 결과에 관한 특별보고관들은 중국의 강제송환 관행이 여성들을 인신매매에 극도로 취약하게 만들었고, 인신매매업자들이 이 정책을 잘 인지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저항하는 경우 중국 당국에 보고하겠다고 위협함으로써 이들을 복종시키고 있다고 강조하였다.<sup>614</sup> 이에 대한 구체적 답변에서 중국은 여성과 아동에 대한 인신매매를 포함한 범죄가 중국 내에서 발생하기 시작하였음을 인정하고, 중국 공안 당국은 이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불법 인신매매를 단속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sup>615</sup> 그러나 중국의 이러한 답변은 불법 강제송환과 인신매매 간의 인과관계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고 있다. 특별보고관들은 동일한 우려를 북한에 전달하였으나 북한은 이에 대해서 “날조된 내용”이라고 일축하였다.<sup>616</sup>

**460** 탈북하는 여성의 수가 남성에 비해 많은 데에는 다양한 이유가 존재한다. 여성들은 정치 체제에서 비롯되는 고질적인 문제들뿐만 아니라 특히 대기근 기간 동안 북한 내에서 당면한 곤경 때문에 탈북하게 되었다. 게다가 일반적으로 더 엄격

614\_ A/HRC/4/34/Add.1, paras. 125~129 참조.

615\_ *Ibid.*, para. 144 참조.

616\_ *Ibid.*, paras. 215~218. 참조.

한 감시의 대상이 되는 남성과 비교하여 여성들에게는 상대적으로 더 많은 이동의 자유가 있고 장기간 발각되지 않고 이동할 수 있다(앞부분 참조). 여성들이 알든 알지 못하든, 혹은 동의하든 그렇지 않든 간에, 브로커들이 중국 가정에 팔거나 중국 내 매춘을 목적으로 매매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여성의 이동을 더 돕고자 하기 때문에 여성들의 탈북 기회 또한 더 크다. 북한 사회에서 주된 생계부양자로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여성들이 가족을 부양하기 위하여 식량 또는 경제적 기회를 찾으러 갈 가능성도 더 크다. 마지막으로 북한 내 인권 상황이 여성들에게 더 열악하기 때문에<sup>617</sup> 남성보다는 여성들이 학대와 인권 침해 상황을 피해 탈북하는 것도 하나의 잠재적 이유이다.

**461** 뿐만 아니라 중국 사회에 미혼 여성에 대한 수요가 존재한다.<sup>618</sup> 중국 경제가 성장하고 도시가 발달함에 따라 도시화가 시작되었다. 시장경제의 도입으로 중국의 산업이 번창하면서 농촌 여성들에게 도시에서 일할 기회를 제공하였다.<sup>619</sup> 농촌 여성들의 도시로의 이주는 한 자녀 갖기 정책 및 그 정책의 결과 나타난 남성에 대한 여성 비율의 감소와 더불어 중국 교외지역에서 노동연령층 내 성별 불균형을 초래하였다.<sup>620</sup>

**462** 가족을 동반하지 않은 북한 여성들이 중국으로 여행하는 방법은 많다. 탈북을 도와줄 수 있는 브로커를 물색하고 외국에 있는 친척들에게 그 브로커에게 비

617\_ 성차별에 대해서 추가적인 정보를 위해서는 IV장 B 참조. 식량권 위반의 성별 영향과 관련해서는 IV장 D 참조.

618\_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Fact-finding Study on Human Rights Violations against North Korea Refugee Women in the Process of Flight and Settlement* (Seoul, 2009), pp. 134~135.

619\_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Fact-finding Study on Human Rights Violations against North Korea Refugee Women in the Process of Flight and Settlement*, p. 134.

620\_ 비의학적인 성별 선택적 낙태로 인하여 중국 내 “실종” 여성의 수가 약 3천 내지 4천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Jing-Boo Nie, “Non-medical sex-selective abortion in China: ethical and public policy issues in the context of 40 million missing females,” *British Medical Bulletin*, vol. 98, No. 1 (2011) 참조. 공산당 제 18차 3중전회에서는 2013년 12월에 한 자녀 갖기 정책을 완화하겠다는 결정을 발표했다.

용을 지불하도록 준비하기도 한다. 브로커들도 북한 시장에 가서 여성들에게 접근하여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중개 수수료를 지불할 여력이 없는 여성들은 중국 남성과 비공식적인 “결혼”을 하기로 동의하는 방식을 택할 수 있다. 중국에서 브로커가 제공한 식당 또는 공장에서 일하면서 중개수수료를 갚을 수 있다는 기만적인 약속에 현혹되기도 한다. 중국에 도착하면 부정직한 브로커들은 자신들이 인신매매업자임을 공개하고 그들이 약속했던 사람들 혹은 일자리로 연결해주는 대신에 해당 여성을 매매할 준비를 한다.

- 한 증언자는 농장에서 일할 수 있다는 말에 속아서 중국으로 갔으며, 도착한 후 자신이 인신매매업자들의 손에 놓여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2003년에 정기적으로 시장에 오는 한 브로커가 내가 중국에서 일할 수 있으며, 인삼을 키워서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설득했습니다. 브로커들은 북한에서 여성들을 빼내기 위해서 매일같이 시장에 왔습니다. 나는 이런 식으로 북한을 떠난 여성들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나는 농장으로 가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브로커를 따라 북한을 떠났지만, 중국에 와서 내가 인신매매를 당했으며 브로커가 나를 팔았음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8명의 다른 여성들과 함께 있었고, 중국 내 ... 장소에 도착했을 때 네다섯 명의 남자들이 차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후에 나는 내가 북한돈 8,000원에 팔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sup>621</sup>

**463** 브로커로 위장한 인신매매업자들이 접근하여 북한의 다른 지역에서 보수가 좋은 농업 관련 일자리를 얻을 수 있다고 설득하여 여성들이 그들과 함께 그 지역으로 가기로 합의하는 경우도 있다. 북한 내 이동의 자유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타도(道) 지역은 말할 것도 없이 자신의 동네 또는 도시 밖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유형의 피해자들은 그들이 중국에 도착한 후에야 비로소 자신이 중국으로 유인되었음을 깨닫게 된다.

621\_ TSH029.

- 서울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조사위원회는 기아로 모든 가족을 잃고 자신도 병들었을 때 중국으로 인신매매된 C씨로부터 증언을 입수했다. C씨는 북한 내 다른 도(道)에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말에 속았고 다른 두 명의 여성과 강을 건널 때에야 비로소 사실 자신이 중국으로 국경을 넘어왔다는 것을 깨달았다. 세 명의 여성을 데려간 북한 브로커는 강을 건너고 나서 이들을 중국인 브로커에게 넘겼고, 중국인 브로커는 또 다시 그녀를 중국 남자에게 팔았다. “나는 그 집으로 팔려갔습니다. 나는 노동자로 팔려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중국에는 미혼 남성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여자가 부족했고 그 남자가 나를 사서 아내로 삼았습니다. 나는 돈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중국에서 나는 적어도 굶지는 않았으며, 북한에 있을 때는 굶었습니다.”<sup>622</sup>
- 지현아 씨는 북한 내 타 도(道)에 일자리가 있다고 말하는 인신매매업자에 끌려 중국으로 갔다. 서울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그녀는 조사위원회에 다음과 같이 진술했다. “[어떤 남자는] 우리, 즉 나와 이웃에 살던 소녀들에게 우리가 [북한 내에서] 고사리를 키워 팔아서 돈을 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9살 먹은 남동생을 남겨두고 떠났습니다. 그러나 도착했을 때 우리는 우리가 중국에 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 우리를 어떤 집으로 데리고 갔는데 그곳에는 다섯 명의 인신매매업자가 있었습니다. 녹색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남자였습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 우리는 그 브로커들이 우리를 결혼 못한 늙은 중국 남자에게 팔려고 한다는 것을 몰랐습니다.”<sup>623</sup>

**464** 인신매매업자들과 어떠한 조건 하에 동행하기로 결정했는지를 막론하고, 중국에 도착하면 여성들은 중국 남자와의 “결혼” 혹은 성 관련 업종 종사라는 두 가지의 선택지 중 반드시 하나를 선택해야 했다. 중국에서 이 여성들과 여아들은 중국 공안을 피해 다녀야 하고 언어 장벽에 부딪혀 정보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취약한 상태에 놓이게 된다. 인신매매업자들은 이런 취약함을 이용하여 여성들에게 압박을 가한다. 즉 강제송환에 대한 협박을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조직적으로 이용하여 여성들이 중국어 실력이 형편없고, 중국 내 법적 지위가 없기 때문에 일자리를 얻거나 (육로를 통한 한국으로의 입국 시도를 비롯하여) 자유롭게 돌아다

622\_ 서울 공청회, 2013년 8월 24일, 오전(03:31:16).

623\_ 서울 공청회, 2013년 8월 20일, 오후(02:27:15).

닐 수 없다고 말함으로써 압박을 가한다. 인신매매업자들은 중국 남자들과의 동거와 성 관련 업종 종사가 이들 여성 및 여아들이 한국으로 입국을 시도하기 전에 안전한 피난처를 열고 “일 년여 간” 중국어를 배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제시한다. 또한 인신매매업자들은 여성들이 일정 액수의 돈을 빚지고 있으나 그들이 유급 노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빚을 갚기 위해서는 중국인 남자에게 팔려가야 한다고 말한다. 극단적인 경우에는 인신매매업자들이 여자들을 중국 남자와 “결혼” 또는 매춘 중 하나에 동의할 때까지 이들을 억지로 폐쇄된 공간에 가두어 놓는다. 그러나 이들 여성들은 대개 중간업자의 관리 하에 놓이게 된다. 성 관련 업종을 선택한 여성들은 구직 활동이 가능한 상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 산업의 브로커에게 판매되는 것이다.<sup>624</sup>

- 서울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조사위원회는 중국에서 북한 주민들을 지원하는 김영환 씨의 진술을 입수했다. 김씨는 식량난 및 북한 정책의 결과로 초래된 인신매매업자들의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다고 조사위원회에 증언하였다.  
“과거 인신매매의 유형을 보면 북한 내에서 이러한 여성들을 찾는 사람들이 있고 중국에 브로커가 있습니다. 북한에서 북한 여성들을 모으는 사람들이 여성들을 모은 다음 브로커들[인신매매업자들]에게 보냅니다. 이 브로커들[인신매매업자들]은 중국에서 중국인에게 돈을 받고 이 여성들을 팝니다. ... 인신매매는 6년 내지 7년 전에 최고로 성행했었습니다. 여성들은 인신매매의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자신이 팔려가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통해서]가족에게 식량을 구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여성들도 있지만, 속거나 핍에 빠져 팔려간 경우도 있습니다.”<sup>625</sup>
- 한 증언자는 그녀가 자신과 딸이 굶주렸기 때문에 알면서도 중국으로 가기 위해 북한 인신매매업자들에게 도움을 청했다고 말했다. 당시 27살이었던 그녀는 50대 중국인 남자에게 팔려갔다. 처음 도착하여 그 남자와 성관계를 거부했을 때 그는 그녀를 칼로 위협했다.<sup>626</sup>

624\_ Good Friends: Centre for Peace, Human Rights and Refugees, “Alternative NGO Report on the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First Periodic Report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2005년 6월, p. 11, <http://www.refworld.org/pdfid/46f146320.pdf> 참조.

625\_ 서울 공청회, 2013년 8월 24일, 오후(00:33:45).

626\_ TAP010.

- 중국에서 북한 주민들과 일했던 한 증언자는 많은 강제결혼이 중국의 한 자녀 갖기 정책과 그로 인한 성비 불균형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는 북한 여성들이 인신매매되어 매춘에 종사하게 되는 경우에 개입했던 경우도 있었다고 하였다. 그는 중국에는 인신매매를 금지하는 법이 존재하지만 관련 법률이 엄격하게 시행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sup>627</sup>

**465**     브로커의 도움 없이 중국으로 간 여성들 혹은 인신매매업자들이나 그들을 산 남자들로부터 도망친 여성들은 인신매매업자들에게 걸려서 “결혼”하거나 매춘을 하도록 (재)판매되기 쉽다.

- 한 예로 인신매매업자로부터 도망친 한 증언자는 전화를 걸기 위해서 전화서비스 제공업자를 찾아갔다. 전화를 사용하려고 하는 동안 또 다른 인신매매업자가 와서 그녀를 잡아갔고, 그녀는 전화 서비스 관리인이 그 인신매매업자에게 연락했기 때문이라고 의심하고 있다.<sup>628</sup>
- 지현아 씨는 중국 공안으로부터 도망치고 난 뒤 중국의 거리에서 인신매매업자들에 의해 붙잡혔다고 진술했다.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서 우리는 브로커들을 만났습니다. 북한 남자처럼 생기면 브로커라는 것을 … 알았습니다. 그들은 중국어로 우리가 어디에서 왔는지 물었지만, 그들이 중국어로 말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북한 사람으로 탈바꿈하고는 북한에서 왔냐고 물었습니다. … 우리는 다시 붙잡혔고, 브로커들을 다시 만났습니다. 브로커들에 의해서 우리는 랴오닝성에 팔려갔습니다. 나는 2만 내지 3만 위안에 팔렸었습니다.”<sup>629</sup>
- 김영환 씨는 중국에서 북한 여성들을 붙잡아서 강제로 팔고자 여성들을 찾아 다니는 “인간 사냥꾼”들의 활동에 대해서 언급했다. “접경지역 근처에 살면서 북한 여성들을 노리는 이러한 ‘인간 사냥꾼들’이 있습니다. ‘인간 사냥꾼들’은 여성들이 국경을 넘기를 기다렸다가 [그들을]잡아서 중국에 매매합니다.”<sup>630</sup>

627\_ EJJH003.

628\_ TSH015.

629\_ 서울 공청회, 2013년 8월 20일, 오후(02:30:46).

630\_ 서울 공청회, 2013년 8월 24일, 오후(00:35:25).

466 인신매매업자들이 여성들을 서로 사고 파는 과정에서 여성들은 보통 강제 결혼 전에 적어도 두 번 정도 팔린다. 여성을 북한으로 데리고 오거나 북한에서 선택한 인신매매업자는 해당 여성을 중간업자에게 파는 것이 통상적이며, 이 중간업자가 그녀를 시골 가정에 재판매함으로써 “결혼”이 성사되게 만든다. 이 과정에는 종종 유력한 구매자(“남편”)가 살펴볼 수 있도록 폐쇄된 장소에 여성을 유치하는 것이 포함된다.

- P씨는 북한에서의 식량 상황이 매우 심각했기 때문에 생계를 위해서 중국으로 가는 것을 선택했다. 그러나 그녀는 결국 인신매매되었다. 조사위원회는 그녀로부터 그녀가 체포되어 강제송환되기 전 7년 동안 함께 살았던 중국인 남자에게 팔려가기 전에 자신이 브로커들 사이에서 양도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에 관하여 들었다. “[당시 국경을 넘는 것은 쉽지 않았으나] 적어도 북한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죽는 것보다는 나왔습니다. 나는 적어도 내가 중국에 가면 생존할 수 있는 수단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를 들어, 적어도 돈을 좀 벌 수 있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내가 기대했던 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 우리는 중국에 팔렸는데, 이는 북한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 나는 내가 팔려가고 있다는 것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냥 나를 다른 사람들에게 양도한 것입니다.”<sup>631</sup>
- 런던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박지현 씨는 조사위원회에 중국에서 살 수 있는 장소를 찾기 위해 애쓰던 자신의 모친이 중국에서 결혼하라고 자신을 부추겼으며 사실은 자신이 결국 팔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조사위원회에 진술했다. 박씨는 자신의 “남편”을 찾기 위해서 한 중국 여성에게 위탁되었다고 말했다. “나는 “결혼”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약 한 달 동안 한 중국인 여성과 지냈습니다. 늙거나 젊은 남자들 다수가 내가 적합한 신부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나를 보러 왔고, 나는 동물원에 있는 동물처럼 느껴졌습니다.”<sup>632</sup>

467 강제결혼을 하도록 팔리면 여성들은 자신의 임무에 충실하고 성적 착취의 대상이 되는 것에 충분히 복종하게 되었다고 생각될 때까지 (자물쇠와 열쇠가 사용

631\_ 서울 공청회, 2013년 8월 21일, 오후(01:32:02).

632\_ 런던 공청회, 2013년 10월 23일, 2세션(비밀이 보장된 면접에서 증언자가 제공한 추가 세부내용 포함).

되는)장소에 강제로 구금된다. 여성들은 성적 행위에 복종할 것을 요구받고, 그들의 “남편”과의 성관계를 거부하면 폭력을 당하게 된다. 극단적인 경우, 여성들은 남편의 남자 형제, 아버지, 아들과 같은 집안 내 다른 동거인들에 의해서도 성적으로 착취당한다. 뿐만 아니라 여성들은 집안일이나 농사일과 같은 강제노동을 해야 하며 가정 내 폭력에 시달린다.

- 김영환 씨는 중국에서 인신매매 피해자들과 일한 경험을 바탕으로 여성들과 여아들이 중국 내 또는 중국으로 인신매매되는 과정에서 겪는 인권 침해와 관련하여 조사위원회에 다음과 같이 진술했다.  
“... 이들 여성들은 중국의 시골 지역(에 있는 남자들)에 팔려가서 인간 이하의 대우를 받습니다. 중국의 이런 시골 지역에 팔린 여성들은 아주 심각할 정도로 비정상적인 생활 조건으로 고통을 받습니다. 이들 중 20~30%가 어느 정도 먹고 살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지만, 대부분이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습니다. 이들은 때로 성노예로 착취당하거나 ‘24시간 주 7일’ 동안 족쇄가 채워져 감금되었습니다. 만약 이 여성이 아들에게 팔린 경우 가족 내 모든 남성들, 즉 아버지, 삼촌, 남자형제들이 이 여성을 착취하려 했으며, 이 여성은 이 가족의 모든 남자들에게 성적으로 학대당했습니다.”<sup>633</sup>
- 인신매매에서 살아남은 한 여성은 조사위원회에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  
“나는 장애가 있는 남성에게 팔려갔습니다.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나를 자주 때렸습니다. 그는 한국말을 못했고 나는 중국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몸짓으로 의사소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는 6개월간 집 안에 갇혀 있었으며 내가 어디에 있는 것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6개월이 지나고 나서 나는 마침내 내가 도망가지 않고 일할 것이라는 것을 그에게 설득시킬 수 있었고 그러고 나서야 집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나에게 동침할 것과 성관계를 가질 것을 첫날부터 요구했습니다. 나는 그때마다 성관계를 하지 말자고 빌었으나 내가 저항할 때마다 구타당했습니다. 그는 내가 멍이 들고 피를 흘릴 때까지 뭐든지 들고 때렸습니다. 나는 임신 가능기간에는 아프다고 말하여 성관계를 회피하고 임신하지 않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내가 그와 의사소통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가 아이를 원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나는 그 남자와 3년간 살았는데, 동일한 지역에 나와 함께 인신매매를 당한 8명의 여성이 살고 있었습니다.”<sup>634</sup>

633\_ 서울 공청회, 2013년 8월 24일, 오후(00:35:49).



- 서울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C씨는 조사위원회에 돈을 주고 그녀를 산 남자로부터 받았던 대우에 대해서 증거를 제시하였다. “내 ‘남편’은 11살 많았습니다. 그는 술꾼이었고, 술을 마실 때마다 나를 때렸습니다. 구타가 계속되었습니다.”<sup>635</sup>
- 런던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조사위원회는 박씨로부터 그녀가 했던 “결혼” 환경에 대한 진술을 입수했다.  
“두 명의 다른 북한 여성들이 같은 마을에 사는 남성들에게 팔려왔습니다. 그 중 한 명은 두 명의 남자 형제들에 의해서 공유되었습니다. 그 남자가 결혼하기 위해 우리를 돈으로 사기는 했지만, 나는 내가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매일같이 굴욕적인 경험을 했습니다. 마을사람들은 북한 여성들을 동물처럼 취급했으며, 마을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주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롭게 돌아다니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놀렸습니다. 나와 함께 살았던 가족은 내가 생리대가 있으면 도망갈 것이라고 생각해서 나에게 생리대를 주지 않았습니다. 나는 매일 논에서 강제적으로 일했고 실질적으로 그 집에 노예가 되어 있었습니다.”<sup>636</sup>

**468** 조사위원회는 전술한 방식으로 강제 “결혼” 한 취약 여성들에 대해 많은 설명을 들었다. 강제결혼 현상은 중국 내, 혹은 적어도 접경지역에서는 상당히 알려진 것으로 보인다. 인신매매된 여성 또는 여아에 대해서 돈을 지불한 남성들은 이들이 북한으로 강제송환된 후 중국으로 되돌아오면 동일한 사람에 대해 다시 몸값을 지불하는 경우도 있다.

- 한 증언자는 2010년에 탈북하여 중국에 와서 처음으로 중국 남자와 “결혼”을 하였다. 후에 그녀는 체포되어 2011년에 북한으로 강제송환되었다. 심문과 구금 과정이 끝나고 나서 그녀는 가족이 준 뇌물을 주고서 풀려날 수 있었다. 그녀가 중국으로 다시 도망쳤을 때, 그녀는 인신매매업자들에게 붙들려서 다시 매매되었다. 그녀가 첫 번째 “남편”에게 연락을 하자, 그는 그녀의 두 번째 “남편”으로부터 그녀가 풀려나도록 몸값을 지불하였다.<sup>637</sup>

634\_ TSH029.

635\_ 서울 공청회, 2013년 8월 24일, 오전(03:32:10).

636\_ 런던 공청회, 2013년 10월 23일, 2세션(비밀이 보장된 면접에서 증언자가 제공한 추가 세부내용 포함).

- 또 다른 증언자와 그녀의 딸은 일거리를 찾아 중국으로 가기 위해 북한을 떠난 후 각기 다른 방식으로 중국 남자들에게 팔려갔다. 증언자는 딸이 강제결혼한 후에 강제로 결혼하게 되었는데, 자신의 본래 “남편”으로부터 증언자가 풀려나도록 돈을 지불한 새로운 남편이 사실은 딸의 “남편”이었다고 하였다.<sup>638</sup>

**469** 조사위원회는 증빙서류를 소지하지 못한 채 중국에 체류하는 북한 주민들이 발각되고 체포되어 북한으로 강제송환될지 모른다는 지속적인 두려움을 가지고 살고 있다고 보고 있다. 그들은 중국에서 마음대로 이동할 수도, 중요한 서비스에 접근할 수도 없다. 그들은 불만이 있는 가족 구성원 또는 새 가족의 이웃들이 그들의 존재를 당국에 제보할지 모른다는 지속적인 두려움 속에서 산다. 이런 문제는 인신매매를 통해 그들의 몸값을 지불하고 그들을 하위계급의 존재로 여기는 사람들의 실질적인 통제하에서 살며, 강압적 환경 속에서 강제결혼 또는 강제첩살이, 매춘을 하게 된 여성 및 여아들에게 특히 더 일반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 한 증언자는 조사위원회에 그녀의 몸값을 지불했던 남자가 가정 내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이었다고 하였다. 목숨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도망가지 못했다. 그녀는 “나는 그 남자와 3년을 살아야 했습니다. 나는 돈을 모아서 도망치려고 했지만 장애가 있는 그[즉, ‘남편’]의 아버지가 나를 공안에 신고했습니다.”<sup>639</sup>
- 문화대혁명 때 자신의 중국인 가족들을 데리고 북한으로 이주했었던 한 조선족 남성은 조사위원회에 중국에서 법적 서류를 갖추지 못한 채로 체류했던 경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증거를 제시했다(그의 중국 호구등록은 그가 수년 간 북한에서 산 후 폐지되었다).  
 “만약 체포되면 보통 이틀 간 경찰서에 유치된 후 구금시설로 이송됩니다. 그러나 나는 하루만에 구금시설로 이송되었기 때문에 의심스럽게 생각했습니다. 나중에 나는 사촌 두 명이 나를 제보하기로 공모하고 경찰서를 여러 차례 방문했었으나 그곳에서 내 가족을 아는 경찰관들이 제보 접수를 거부했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

637\_ TSH014.  
 638\_ TSH039.  
 639\_ TSH029.

다. 내가 구금시설로 바로 이송되었던 이유는 내가 풀려나는데 필요한 경찰서 인맥을 이용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구금시설에 석 달간 구류되어 있었습니다. 중국 경비요원들은 내 입장을 동정했고 나에게 ‘다음번에는 더 내륙지역에 살아라,’ 혹은 ‘주변 사람들을 조심해라’라고 말해주었습니다.”<sup>640</sup>

**470** 인신매매된 여성들과 여아들은 대개 인신매매 전후에 성적, 육체적, 정신적 폭력 및 성폭행, 감금을 겪게 되어 심각한 인권 침해를 당한다. 그들은 상품으로 취급되며 비인간적이고 모욕적인 대우를 받는다.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므로 북한 주민들은 부당함을 겪었을 때 의지할 곳이 없다. 강제결혼을 하는 많은 여성들이 심각한 가정 폭력과 살해의 위협으로 고통받는다. 그들은 가정 폭력을 당하거나 (인신매매와 같은)범죄의 피해자가 되었을 때 경찰 또는 국가 보안 당국에 도움을 구할 수 없다. 그러한 보호의 결여 및 필수 서비스에의 접근 차단은 그들을 매우 취약한 처지로 몰아 착취당하기 쉬운 상황을 초래한다.

- 한 증언자는 조사위원회에 다음과 같이 말했다. “비록 당신이 중국에서 죽는다고 할 지라도 묻힐 곳이 없습니다. 당신은 그 곳에서 권리가 없습니다. 등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설령 ‘남편’한테 맞아죽어도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없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면 당신의 친구들이 주검을 가져가서 물어줄 것입니다. 이런 일이 내 친구한테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sup>641</sup>

**471** 이러한 우려와 더불어 중국에 체류 중인 북한 주민들은 기본 보건 서비스에 접근이 불가능하다. 여성들은 임신 기간 동안 반드시 필요한 보건 서비스를 받지 못하며 출산 과정 혹은 산후조리 기간 동안 어떠한 도움도 얻지 못한다. 자신이 아이의 주요한 (그리고 종종 유일한)부양자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에게 예방접종 또는 기타 필요한 의료 조치를 받도록 할 수가 없다.

640\_ TSH049.

641\_ TSH029.

## (ii) 탈북했거나 인신매매된 산모가 출산한 아동의 상황

472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가 실시한 2010년 설문조사에 따르면 2만 명에서 3만 명의 아동들이 중국에 체류 중인 북한 출신 여성들로부터 태어난다고 추정된다.<sup>642</sup> 중국에 있는 북한 여성들의 대다수가 허가없이 거주하므로 중국의 관행상 이들의 아이들도 출생시 등록을 할 수가 없다. 게다가 이런 아이들의 많은 수가 강제결혼 또는 첩살이를 통해서 태어난 중국 남성들의 아이들이다. 사실 국적법에 따르면 이들은 중국 국적을 취득할 자격을 갖는다.<sup>643</sup> 그러나 출생 등록을 하면 불법 체류자로서의 어머니의 신분이 들통나 강제송환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탈북여성이 낳은 아이들 대다수가 이 권리를 부정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 아이들은 실질적으로 국적이 없는 상태가 된다. 이런 관행은 모든 아이들이 법적인 이름과 국적을 가질 권리가 있다는 아동권리협약 제7조를 위반하는 것이다.

473 중국의 의무교육법에 따르면 중국에 거주하는 아이들은 국적과 인종에 상관없이 9년 간의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학교 등록을 위해서는 호구등록에 올라 있어야 한다는 요건이 있다. 한 NGO가 중국의 제2차 보편적 정례인권검토 당시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강압적인 송환 정책은 북한이탈주민들에게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다. 많은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들이 그들의 부모가 당국에 발각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호적에 오르지 못하고 있다. 학교에서 입학할 위해 호적을 요구하는 경우 이런 아이들은 교육을 받지 못하게 된다.” 이 보고서는 일찍이 “중국인 아버지와 이웃국가로부터 도망쳐 나온 어머니를 둔 아이들(혹은 피난민 부모를

642\_ KINU,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3), pp. 44, 461.

643\_ 조사위원회에 비공개 제출문에 의하면, 중국 국적법은 중국에서 출생한 자에 대해서 부모 중 일방이 중국 국적인 경우 중국 국적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중국 국적법은 부모가 무국적자 또는 국적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고 중국에서 정착한 자는 중국 국적을 취득한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그러한 규정이 특히 부모 중 일방이 중국 국적자이며 나머지 일방은 불법체류 중인 북한 주민인 경우 실제로 어떠한 방식으로 아에게 유리하도록 실행되는지는 불분명하다.

둔 아이들)은 매우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으며, 이는 중국의 난민 불인정 정책 때문이다. 중국은 이들을 경제적 피난민으로 보기로 선택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sup>644</sup>

**474** 탈북 어머니를 둔 아이들이 겪는 고초는 이뿐만이 아니다. 이들은 아동권리협약 제24조와 제28조에서 정한 것과는 달리 실질적으로 국적이 없으며, 보건과 교육과 같은 기본적인 인권을 박탈 당한 채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어머니가 체포돼 북한으로 강제송환 당하기라도 하면 부모와 강제이별을 한 채로 살아가야 한다. 이는 부모와의 분리가 자녀에게 최우선책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모와 강제로 분리되지 않을 자녀의 권리를 보장하라는 아동권리협약 제9조와 상반되는 것이다. 위원회는 이런 아이들의 복지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

- 서울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김영환 씨는 위원회 앞에서 탈북 어머니를 둔 중국의 아이들이 직면하고 있는 심각한 상황에 대해 증언했다. “북한 여성들이 중국에서 아이를 낳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태어난 아이들의 인권은 오늘날 간과되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은 중국 남성과 탈북여성 간의 혼인을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탈북 여성을 보호하는 것이 중국에선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이런 혼인은 중국 당국에 신고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혼인 관계에서 태어난 아이의 출생은 불법이 됩니다. 이 아이들은 자라나면서 교육이나 이후의 어떤 보호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만약 탈북여성인 어머니가 중국 공안에 체포되어 북한으로 송환된다면... 만약 그 여성의 아이가 자신의 어머니와 이별을 하게 되면 이 아이는 중국 당국으로부터 어떠한 보호도, 인정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처한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탈북여성을 어머니로 둔 이 아이들은 남한 정부로부터 합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sup>645</sup>

644\_ Life Funds for North Korean Refugees, “Universal Periodic Review Second Cycle-China-Reference document,” 2013년 3월, <http://www.ohchr.org/EN/HRBodies/UPR/Pages/UPRCNSTakeholdersInfoS17.aspx> 참조.

645\_ 서울 공청회, 2013년 8월 24일 오후(00:37:32).

475 전하는 바에 따르면 어떤 탈북여성들은 중국에서 오랜 시간 머문 후 호구를 얻을 수 있었으며, 이들 여성이 낳은 아이들 역시 호구를 얻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어떤 지역에서는 뇌물을 주고 호구를 얻을 수도 있다고 한다.<sup>646</sup> 한 증언자는 중국 남성과의 사이에서 아이를 낳은 자신의 딸에 대해 이야기를 했는데, 어느 시점에 딸의 중국 남편이 그녀의 딸을 위해 중국 신분증을 샀다고 했다.<sup>647</sup> 그러나 대다수의 탈북여성과 그의 자녀들에게 이것은 결코 가능한 일이 아니다.

- 박지현 씨가 중국에서 강제로 결혼한 “남편”과의 사이에서 처음 임신을 했을 때 마을의 이장은 그녀에게 낙태를 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녀가 아이를 낳으면 적법하게 출생 신고될 수 없으며 따라서 적절한 의료를 받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었다.<sup>648</sup> 그녀는 위원회에 계속해서 설명하였다. “북한 사람들이 중국으로 팔려가 그곳에서 아이를 낳으면 아이들은 공식적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에서는 신고 시 어머니의 이름이 등록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중국의 탈북여성들이 낳은 아이들은 신고되지 않으며, 학교교육도 받을 수 없고 어떠한 개인의 권리도 누릴 수 없습니다.”<sup>649</sup>

476 중국의 탈북여성들이 낳은 아이들은 인간으로서 누릴 권리를 누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어머니와 강제로 분리될 위험에 노출돼 있다. 탈북여성들은 언제라도 체포돼 북한으로 강제송환될 수 있기 때문이다. 탈북한 이들은 강제로 본국으로 송환되면 가혹한 처벌을 받을 것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아이들을 고문과 심하면 죽음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두고 떠나는 수밖에 없다.

- 북한이탈주민 박씨 역시 이런 딜레마에 처하였다. 그는 자신이 두고 떠나야 했던 아이들과 다시 만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도 설명하였다. 박씨의 경우 자신의

646\_ KINU,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3), p. 468.

647\_ TSH039.

648\_ 런던 공청회, 2013년 10월 23일 2세션(00:46:43)

649\_ 런던 공청회, 2013년 10월 23일 2세션(00:46:43)

아들과 다시 만나는데 수개월이 걸렸다. 그는 자신의 아들을 다시 만났을 때 아이가 부랑아처럼 보였으며 당시를 회고하였다. 박씨의 아들은 비쩍 마르고 더러웠으며, 땅바닥에서 음식을 구걸하고 있었다. 아들은 아버지, 조부모와 남겨졌지만 박씨는 조부모가 아들에게 거의 음식을 주지 않아 굶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박씨는 자신의 아들과 다시 만난 것에 대해 스스로 매우 운이 좋았다고 여긴다. 그는 다른 비슷한 상황에 처한 이들이 자녀들과 다시 만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고 있다. “탈북여성이 낳은 아이들은 호구가 없습니다. 학교도 갈 수 없습니다. 그들의 어머니가 체포돼 북한으로 송환되면 이 아이들은 말 그대로 노숙자가 돼버립니다. 그들의 어머니가 남한으로 가 자신의 아이들을 찾으려고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런 상황을 이용해 이 여성으로부터 돈을 뜯어내기도 합니다. (그들은) ‘이 정도 돈을 보내면 아이를 보내주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절대로 아이를 보내주지 않습니다. 이 여성들은 체포되어 강제송환될까봐 두려워 직접 중국에 가서 아이를 찾지 못합니다.”<sup>650</sup>

- 서울 공청회에서 증언대에 오른 C씨는 중국인 남편과의 사이에서 아이를 낳았다. 하지만 중국에서 체포돼 강제송환을 당하며 아이를 두고 떠날 수밖에 없었다. C씨는 북한에 구금되어 형을 사는 동안 아이와 생이별해야 하였다. C씨가 두 번째로 탈북했을 때 그는 자신의 아이와 겨우 만날 수 있었다. 중국에서 몇 개월 지낸 뒤 그는 한국행을 결심하였다. 이번에도 아이는 두고 올 수밖에 없었다. 아이의 아버지가 양육권을 포기하지 않으려 했기 때문이었다. C씨는 남편을 한국으로 오도록 설득하거나 아이를 포기하지 않는 이상 자신이 언제 다시 아이를 만날 수 있게 될지 알 수 없다고 말하였다.<sup>651</sup>

**477** 2013년 12월 16일 작성된 서한에 드러난 바와 같이, 위원회는 이 사안을 우려했으며, 이에 대해 주 제네바 중국대표부는 “중국 정부는 위원회가 언급한 탈북 여성과 아이들 문제와 같은 사례를 찾지 못하였다”라고 답하였다. 하지만 위원회는 이 같은 사례들을 찾았으며, 이는 중국 관료들이 진행한 조사 과정에서 명명백백히 밝혀질 것이다.

650\_ 런던 공청회, 2013년 10월 23일 2세션(비밀이 보장된 면접에서 증언자가 제공한 추가 세부내용 포함).

651\_ 서울 공청회, 2013년 8월 24일 오전.

### 3. 자국으로 돌아올 권리와 가족권

478 이동의 자유는 자국으로 돌아올 권리 또한 내포한다. 자유권위원회에 따르면 자유권규약 제12조제4항에 명시된 바에 따라 “자국”의 범위는 국적에 따른 조국의 개념보다 광범위하다. 이 범위에는 최소한 한 개인이 특정 국가에 대한 특별한 연대를 갖거나 그런 연대를 주장한다 해서 외국인으로 간주될 수는 없다는 점이 포함된다. 자국으로 돌아올 권리를 박탈당하는 것이 합리화되고 따라서 임의적인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란 것은 거의 없다.<sup>652</sup>

479 북한에서 태어났지만 한국에 거주하면서 북한에 있는 자신의 고향을 다시 방문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다. 1955년 한국 통계청에서 실시한 인구 및 가구 통계에 따르면 전체 인구 중 73만 5,501명이 이북 출신(6·25전쟁 이전과 전쟁 중에 월남한 사람들)이라고 한다. 이북 출신이라고 신고한 한국 거주자는 1995년에는 40만 3천 명이었으며, 2000년에는 35만 5천 명, 2005년에는 16만 1,605명이었다. 통일연구원은 특히 2000년 이후 이들 중 많은 수가 고령으로 사망한 것에 주목하였다.<sup>653</sup> 6·25전쟁 발발을 기점으로 월북한 남한 출신 인구 역시 비슷한 운명에 처하였다. 2013년 말 한국 통일부, 대한적십자사, 이북5도위원회가 공동 설립, 운영하는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이 집계한 바에 따르면 “이산가족”은 12만 9,264명이 등록되었다(이 가운데 7만 1,480명이 생존, 5만 7,784명이 사망하였다).

480 위원회는 남북으로 갈라진 가족들은 모두 60년 이상 서로를 만나거나 편지를 교환하거나 전화 통화를 할 기회가 없었음을 발견하였다. 이는 자유권규약 제23조가 보장하는 가족권을 위반하는 것이었다.

652\_ CCPR/C/21/Rev.1/Add.9, paras. 20~21.

653\_ KINU,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3), p. 509.



481 일시적인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위한 협상이 1971년 남북한 적십자 사이에 시작되었다. 1971년 이래로 남한은 관련 대화의 진전에 큰 중요성을 두고 있으나 북한 쪽의 반응은 냉담하다. 첫 이산가족 상봉행사는 1985년 이뤄졌다. 당시 각각 50명의 상봉단이 국경을 넘어 친지들을 만났다.<sup>654</sup> 그 후에 관련 협의는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역사적인 만남이 있었던 2000년 남북 정상회담 이전까지 소강 상태에 머물렀다. 2000년부터 2010년까지 18회의 이산가족 상봉행사가 이뤄졌으며 4,321명이 가족을 만날 수 있었다.<sup>655</sup> 이산가족 상봉 프로그램은 2010년 11월 북한의 연평도 도발로 인한 남북관계 악화로 중단되었다.<sup>656</sup>

482 2013년 8월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남북관계가 개선되면서 이산가족 상봉행사가 재개될 수 있다는 발표가 나왔다. 상봉행사는 추석 직후인 9월 25~30일에 이뤄지는 것으로 되었으며, 남한과 북한에서 각각 100명의 사람들이 북한 금강산 호텔에서 만날 수 있게 되었다.<sup>657</sup> 그러나 상봉을 고작 며칠 앞두고 평양은 이산가족 상봉행사의 무제한 연기를 통보하면서 비난의 화살을 서울에 돌렸다.<sup>658</sup>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2014년 신년인사에서 서울과 평양의 분위기 개선을 촉구하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에 대하여 이산가족 상봉행사 재개로 남북한 대화 무드를 열어볼 것을 제안하였다.<sup>659</sup>

654\_ "Korea family reunion lottery," *BBC News*, 2000년 7월 5일, <http://news.bbc.co.uk/2/hi/asia-pacific/820667.stm> 참조.

655\_ KINU,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3), p. 513.

656\_ "N Korea postpones family reunions over South's 'hostility,'" *BBC News*, 2013년 9월 21일. <http://www.bbc.co.uk/news/world-asia-24184696> 참조.

657\_ 금강산은 2대 남북 공동 사업 중 하나로, 2008년 남한 관광객이 북한군에 의해 사살된 이후 정체 상태에 빠졌다. 남한은 금강산 관광 재개 관련 회의를 9월 25일 갖자고 제안하였다.

658\_ "N Korea postpones family reunions over South's 'hostility,'" *BBC News*.

659\_ "South Korea Proposes Resuming Reunions of War-Divided Families," *New York Times*, 2014년 1월 6일. [http://www.nytimes.com/2014/01/07/world/asia/south-korea-proposes-resuming-reunions-of-war-divided-families.html?ref=world&\\_r=0](http://www.nytimes.com/2014/01/07/world/asia/south-korea-proposes-resuming-reunions-of-war-divided-families.html?ref=world&_r=0) 참조.

**483** 이산가족 상봉행사는 언제나 감정적으로 채워져 있다. 상봉행사가 중단되어 있을 때에도 적십자사는 계속 상봉 신청 접수를 받았다. 2013년 12월 현재 7만 1,480명이 사랑하는 가족을 한번이라도 보기 위해 대기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들 가운데 100명만이 추첨을 통해 언론사의 카메라와 경호원들 앞에서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가족들과 짧게 상봉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것이다. 이조차도 비디오를 통해 만나는 경우도 있을 것이며, 한 번 만나면 다시는 만날 기회가 없을 것이다. 2012년 말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에 등록된 이산가족 중 79%가 70세 이상이다. 상봉행사가 한 해 한 해 연기되는 것은 잠시나마 가족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사람들의 수가 점점 더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484** 위원회는 명백한 국제법 준수 문제는 차치하고서라도 노년 인구를 고려해 인간의 품위와 존중이라는 기본 원칙 아래 이산가족 상봉이 이와 무관한 정치적 이해관계로 인해 더 이상 지체되어서는 안 된다고 결론내렸다.

#### 4. 조사위원회의 주요 조사결과

**485** 주민들끼리의 연대를 막고 외부 세상으로부터 단절시키는 북한의 정책은 국가가 부여한 사회 계급을 기반으로 한 사상 세뇌와 계급차별이라는 시스템을 지키고 강화하며, 이동의 자유라는 기본적 권리의 모든 측면을 침해하고 있다.

**486** 북한에서는 당국이 주민 개인에게 살 곳과 일할 곳을 지정한다. 이는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이를 어길 시에는 형벌에 처해진다. 게다가 거주, 직업의 제한은 '성분'에 기초한 차별에 의해 강하게 좌우된다. 이것은 사회경제학적, 물리적인 계급 차별사회를 만들었다. 정치적으로 충성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사람들은 좋은 환경에서 거주하거나 일하는 반면,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들

은 낙후된 곳으로 좌천된다. 평양은 차별적인 시스템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곳으로, 이 특별한 곳에는 당국에 대해 가장 충성도가 높은 이들과만 어울 수 있다.

**487** 주민들은 당국의 허가 없이는 자신의 지역을 잠시 떠나거나 국내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조차 할 수 없다. 이 정책은 차별적인 생활 환경을 유지하고 정보의 흐름을 제한하며 국가 통제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사회적 유대 및 가족의 유대를 희생하는 것이다. 이 강압적 정권은 특히 1990년대 식량위기가 절정에 치달는 동안 식량, 생계수단 및 다른 기본적인 생활에 비참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488** 평양의 “순수”하고 때문지 않은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해서 당국은 평양에 살고 있는 가구의 가족 구성원 중 한 명이라도 심각한 범죄나 정치적 잘못을 저질렀다고 간주되면 해당 가족 전체를 수도 밖으로 추방시켰다. 같은 이유로 주로 식량을 찾기 위해 몰래 평양과 다른 도시에 숨어들어온 수많은 부랑아들이 체포와 강제이송의 대상이 되어 고향으로 보내졌고, 도착과 함께 방치되거나 강제수용되기도 하였다.

**489** 일반 주민들의 해외 여행은 실질적으로 원천 봉쇄돼 있고, 이는 자국을 떠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엄격한 국경 통제로 이동을 금지하고 있지만 주민들은 여전히 탈북의 위험을 감수하려 하며, 주로 중국으로 탈북한다. 북한이탈 주민들이 체포되거나 강제송환되면 북한 관리들은 조직적으로 박해, 고문, 장기간의 임의적 구금을 하며, 경우에 따라 성폭행을 하기도 하는데, 이는 신체 강탈적인 수색을 포함한다. 강제송환된 임신 여성은 정기적으로 강제낙태를 당하는데, 그 배경에는 중국에서 온 사람에 대한 인종차별적인 태도가 자리하고 있으며 조국을 떠남으로써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여성을 처벌하는 것이기도 하다. 만약 아이가 태어나면 당국은 그 아이를 죽인다. 한국의 관료나 주민들, 혹은 기독교 교회와 연락을 한 주민은 강제 “실종”되어 정치범수용소나 일반 감옥에 수감되기도 하고, 심지어 즉결 처형에 처해지기도 한다.

490 강제송환자에게 이 모든 인권 침해 상황이 기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불법월경한 북한 주민을 강제송환한다는 엄격한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중국은 북한이탈주민을 경제적(그리고 불법) 이주민으로 보는 시각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불법적으로 국경을 넘는 많은 북한 주민들은 박해를 피해 도망친 난민 혹은 현장난민(refugees sur place)으로 봐야 한다. 따라서 국제적인 보호의 대상이다. 조사위원회는 북한이탈주민 강제송환 문제에 대해서, 망명자를 박해가 우려되는 국가로 송환해서는 안 된다는 국제난민법과 국제인권법상의 ‘강제송환금지’ 원칙 준수 의무를 중국이 위반하는 것이라고 본다. 몇몇 사례에서는 중국 관료가 위협을 알면서도 북한 당국에 체포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491 북한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과 그들의 취약한 지위, 그리고 강제송환의 우려로 북한 여성은 인신매매에 대단히 취약한 입장에 처하게 된다. 북한에서 중국으로, 혹은 중국 안에서, 많은 여성들이 강제로, 혹은 속아서 인신매매되어 강제결혼 혹은 첩살이, 혹은 강압적 상황에서의 매춘을 하게 된다. 중국의 현행 정책하에서 어머니의 존재가 드러나면 ‘강제송환’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북한 여성 밑에서 태어나 출생등록, 국적, 교육, 보건 등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박탈 당하고 있는 아이들의 수가 2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492 조사위원회는 또한 북한이 다른 나라(이 경우 한국)에 특별한 유대가 있거나 요구 사항이 있는 주민들의 권리를 존중해야 할 의무, 즉 이들을 그곳으로 돌려 보내거나 오랫동안 이산가족에게 만날 기회를 제공할 의무를 반복적으로 불이행해 왔다는 사실을 밝히는 바이다. 다른 모든 곳에서는 사람들이 현대 기술을 이용하여 여행하고 소통하는 것이 당연한 시대에, 북한이 불합리하게도 주민이 서로 접촉하고 소통하는 것을 심각하게 방해하는 것은 국제적 인권법하에서 북한의 의무를 파기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자의적이고 잔인하며 비인간적인 행동이다. 특히 해당 주민들이 나이가 들어가는 시점에서 전혀 납득되지 않는 이유로 이산가족의

재회에 대해 이전에 합의되었던 사항을 취소한다는 것은 더욱 그렇다.

## D. 식량권 및 관련 생명권 침해

493 적당한 식량에 대한 인간의 권리는 세계인권선언 제25조,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대한 국제 규약(ICESCR, 이하 사회권규약) 제11조, 아동권리협약(CRC) 제24조 및 제26조를 비롯한 다수의 국제 인권 조약에 명시되어 있다.

494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위원회(CESCR, 이하 사회권위원회)는 식량에 대한 권리를 “모든 남성, 여성, 아동이, 각자 혹은 공동체의 타인과 함께 언제나 적절한 식량 및 그것을 조달할 수단에 대한 물리적 및 경제적 접근을 가질 때” 실현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sup>660</sup> 식량권에 대한 특별 보고서는 이 권리를 다음과 같이 말한다.

직접적으로 혹은 재정적 구매를 통해서 소비하는 사람들이 문화적 전통에 부응하여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적절하고 충분한 식량에 정기적으로, 영구적으로, 그리고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으며, 두려움 없이 물리적·정신적으로, 개인적·집단적으로 충족감 있고 품위 있는 삶을 실현할 수 있는 권리이다.<sup>661</sup>

495 사회권규약은 식량권의 요소로 1) 가용성 2) 경제적 접근성, 3) 물리적 접근성, 4) 적절성을 정의하고 있다. 적당한 식량에 대한 권리에서 가용성은 “생산지나 자연자원으로부터 직접 먹을 것을 구할 가능성 또는 수요에 따라 식량을 생산지로부터 그것이 필요한 곳으로 운반할 수 있는 원활한 유통, 가공 및 시장 시스템”을 의미

660\_ CESCR, 일반논평 제12호, E/C.12/1999/5, para. 6.

661\_ E/CN.4/2001/53, para. 14.

한다.<sup>662</sup> 접근성은 식량에 대한 경제적이며 물리적인 접근이 보장되어야 한다. 경제적 접근성(affordability)은 적절한 식사를 위한 식량의 획득과 관련된 개인 및 가정의 재정 비용이 그로 인해 다른 기본적 필수품의 획득과 충족을 위협하거나 손상하지 않는 수준이어야 한다. 물리적 접근성이란 식량을 구하러 나가기 어려울 수도 있는 아동, 환자, 장애인, 노인 등 육체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들이 식량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식량에의 접근은 멀리 떨어진 지역에 사는 사람들, 무력 분쟁이나 자연재해의 피해자들뿐 아니라 수감자들에게도 보장되어야 한다. 적절성이란 식량이 개인의 연령, 생활조건, 건강상태, 직업, 성별을 고려한 식이요법적 요건을 충족시켜야 함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아동의 식량이 그들의 육체적·정신적 발달에 필요한 영양분을 충분히 포함하고 있지 않으면 적절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식량은 인간의 섭취에 안전하며 유해 성분이 없어야 한다. 적당한 식량은 또한 문화적으로 수용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496 “기아로부터의 해방이라는 모든 사람의 기본적인 권리”는 사회권규약의 제 11조제2항에 명시되어 있다. 자유권규약의 제6조는 모든 인간은 고유한 생명권을 가지며, 국가는 특히 영양실조를 퇴치하여 수명을 연장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sup>663</sup> 이 두 권리는 아동의 권리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497 식량에 대한 권리는 많은 함의를 내포한다. 이 권리는 최소한의 필수적인 칼로리, 단백질 및 기타 특정 영양소의 섭취에 대한 논의로 제한될 수 없다. 마찬가지로 식량에 대한 권리는 특정 상품에 대한 접근에만 제한되는 것도 아니다. 이러한 이유로 “기아”에 대한 논의는 식량의 부족과 부족한 식량을 해결하기 위한 기술적인 방법으로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sup>664</sup>

662\_ CESCR, 일반논평 제12호, E/C.12/1999/5, para. 12.

663\_ 자유권위원회, 일반논평 제6호, HRI/GEN/1/Rev.1, para. 5.

498 위원회가 조사한 바로는 북한에서의 기아는 1980년대 말에 시작되어 1990년대에 절정에 달했으며, 1990년대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다. 위원회의 취지에 따라 위원회는 식량에 대한 권리와 연관되는 인권 사안에 주목해왔다. 왜 사람들이 고통을 받으며 굶어 죽어가는지, 누가 이 상황에 대해 책임이 있는지에 대한 것이다. 본 보고서에서 위원회는 “기근,” “굶주림,” “기아” 등의 용어를 동일하게 신체적 손상 및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적당한 식량에 대한 접근의 결여로 정의한다.<sup>665</sup> 이러한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생명, 적당한 식량,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건강과 관련된 국제적 의무를 조사할 수 있다.

499 위원회는 다음에 논의될 내용과 관련하여 북한 내부와 외부에서 얻은 북한에 대한 자료 및 통계의 신뢰성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하였다.<sup>666</sup> 위원회는 증언, 전문가 의견, 상호참조를 통하여 충분히 확증할 수 있는 수준의 자료와 통계를 참조하였다.

## 1. 북한의 식량 가용성, 적절성 및 경제적 접근성

### (a) 1990년대 초기까지의 상황

500 북한 경제는 생산수단의 국가 소유,<sup>667</sup> 중앙계획<sup>668</sup> 및 자력갱생이라는 ‘주

664\_ 유엔은 다음과 같은 사망률, 영양부족상태, 굶주림의 기준에 맞을 때 기근을 선포한다: 1) 한 지역에서 적어도 20%의 가구가 극심한 식량부족에 직면해 있으나 대처할 능력이 제한되어 있을 때; 2) 급성 영양부족율이 30%를 넘을 때; 3) 하루 1만 명 당 두 명 이상의 사망자가 생길 때. FAO, “The Integrated Food Security Phase Classification, technical manual V.2,” 2012 참조. [http://www.ipcinfo.org/fileadmin/user\\_upload/ipcinfo/docs/IPC-Manual2-Interactive.pdf](http://www.ipcinfo.org/fileadmin/user_upload/ipcinfo/docs/IPC-Manual2-Interactive.pdf) 참조.

665\_ 양적으로 질적으로 생리학적 칼로리 소요량을 충족시키며 신체적이고 정신적인 발달에 필요한 영양분을 함유하고 있는 식품.

666\_ IV장 D.4 참조.

667\_ 북한 헌법 제20조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생산수단은 국가와 사회협동단체가 소유한다”고 못박고 있

체 사상'의 원칙에 입각해서 건설되어 왔다.<sup>669</sup> 북한 헌법 제25조제3항은 “국가는 모든 근로자들에게 먹고 입고 쓰고 살 수 있는 온갖 조건을 마련하여준다”고 선언한다.

501 지리학적·역사적인 이유로 농업은 농사에 적합한 기후와 경작가능한 토지의 대부분이 위치해 있는 한반도 남부에 집중되었다. 한반도 북부는 남부보다 기후적으로 더 춥고 덜 비옥하며 산지가 많아 주로 산업이 활발한 지역이었다.<sup>670</sup> 6·25 전쟁 이후 북한은 자급자족을 통해 식량 안보를 확보하려는 전략을 추구하였다. 이를 위해 정부는 세 가지 핵심 전략을 채택하였다. 첫째, 경작지를 늘리고, 둘째, 무, 기장, 감자 등의 전통적 식량작물을 보다 다수확 곡물인 쌀과 옥수수로 변경하고, 가장 중요한 셋째, 농업 생산에 공업화를 적용한다는 것이었다.<sup>671</sup> 1960년대에 김일성은 국가의 농업발전을 위한 틀이 기계화, 화학화, 수리화, 전기화의 4가지 원칙을 기초로 해야 한다고 선언하였다. 북한의 농업조건은 식량의 자급자족에 적합하지

다. 협동농장은 국가 농장으로 전환되어, 거기서는 노동자-농부들이 집단적 노동의 결실을 나누어 갖는 것이 아니라 국가로부터 월급을 받는다. 이런 전환은 헌법 제23조에 근거한다: “국가는 농민들의 사상의식과 기술 문화수준을 높이고 협동적소유에 대한 전인민적소유의 지도적역할을 높이는 방향에서 두 소유를 유기적으로 결합시키며 협동경리에 대한 지도와 관리를 개선하여 사회주의적협동경리제도를 공고발전시키며 협동단체에 들어있는 전체 성원들의 자원적의사에 따라 협동단체소유를 점차 전인민적소유로 전환시킨다.”

668\_ 북한 헌법 제34조는 다음과 같이 명시한다. “국가는 계획의 일원화, 세부화를 실현하여 생산장성의 높은 속도와 인민경제의 균형적발전을 보장한다.”

669\_ III장 D 참조. 1992년 헌법 개정과 함께 주체 사상은 경제 관련 첫 번째 조항인 제19조에서 두드러진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회주의적 생산관계와 자립적 민족경제의 토대에 의거한다.” 1970년대 초기, 주체 사상은 국가의 주도적 지침으로 공표되었다. 식량 자급자족은 공식적으로 주체 경제에 통합되었고, 주체농법이 농업 기술에 있어서 제1순위가 되었다. 그것은 3개 부분으로 구성된다. 영농 원칙, 영농 방법, 그리고 세부 공정이다. 우선 영농 원칙은 좁은 국토와 추운 기후라는 비우호적인 자연적 조건하에서 농업 행정가와 생산자가 농업 생산 증대를 위해 지켜야 할 네 가지 기본적 규칙을 제공한다. Lee Suk, “Food shortages and economic institution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Warwick, 2003, p. 128.

670\_ Lee Suk, “Food shortages and economic institution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p. 128.

671\_ Stephen Haggard and Marcus Noland, *Famine in North Korea: Markets, Aid, and Reform*, p. 26.



않은 것이었다. 국토 전체 면적 12만km<sup>2</sup> 중 14%만이 경작 가능한 땅이며, 국토의 80%가 산지다. 뿐만 아니라 북한은 스스로 선택한 농경 유형에 필요한 산업적 요소, 즉 농기구나 연료와 같은 것들을 외국에서 수입해야 했다. 북한은 자력갱생을 천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애초부터 외부 원조에 크게 의존해야 하는 체제를 채택한 것이다.

**502** 북한 경제체제의 취약성은 1990년대 중반 북한이 붕괴되기 이전에 드러났다.<sup>672</sup> 북한의 식량 부족에 대한 첫 번째 징후는 1980년대 후반에 나타났다. 국가 경제가 파탄지경에 있었던 소련이 1987년부터 북한에 대한 모든 형태의 원조, 무역, 투자를 중단하면서 북한의 경제상황에 큰 변화를 초래하였다.<sup>673</sup> 소련과의 무역은 1988년 북한 무역 총액의 3/5을 차지할 뿐 아니라, 할인된 금액으로 거래되고 있었다. 예를 들어 북한에 수출되는 소련산 석탄과 석유는 국제시장 가격에 비해 훨씬 더 낮게 공급되었다.<sup>674</sup>

**503** 소련 붕괴 이후 북한은 석유와 석탄대금을 국제 표준가격에 맞춰 현금으로 지불해야 했다. 북한은 국제용자에 대한 채무를 이행할 수 없었고,<sup>675</sup> 따라서 외화에 대한 접근도 더욱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북한은 농업계획을 수행하고 식량 생산에 충분한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연료, 비료, 화학약품 및 부품 등을 구입할 수 없었다.

672\_ Stephen Haggard and Marcus Noland, *Famine in North Korea*; Hazel Smith, *Hungry for Peace: International Security, Humanitarian Assistance, and Social Change in North Korea* United States Institute of Peace Press, 2005, p. 66.

673\_ Victor Cha, *The Impossible State: North Korea, Past and Future* (Ecco, 2012), p. 186.

674\_ Meredith Woo-Cumings, "The Political Ecology of famine: The North Korean Catastrophe and Its lessons," No. 31 (Tokyo, Asian Development Bank Research Institute, 2002), p. 26.

675\_ 예를 들면, "North Korea Is Told of Loan Default," *New York Times*, 1987년 8월 23일.

504 소련의 원조 중단으로 북한의 농업에 필요한 투입요소들의 유입이 줄어들면서 북한의 식량생산도 감소하였다. 소련의 붕괴에 의해 발생한 경제적 공백을 중국이 북한에 상당한 원조를 제공하면서 채워주었다.<sup>676</sup> 1993년까지 중국은 북한 연료 수입의 77%, 북한 식량 수입의 68%를 담당하였다.<sup>677</sup> 북한의 소련에 대한 의존은 실질적으로 중국에의 의존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1993년 중국도 식량 부족에 직면하면서 현금이 필요하게 되었다. 중국은 북한에 대한 지원을 대폭 삭감하였다.<sup>678</sup> 보고에 의하면 1992년과 1993년 중국에서 북한으로 보내는 곡물 선적량은 평균 80만 톤에 달하였다. 1994년 중국은 “우호라는 조건으로” 북한에 보내는 주요 곡물 선적에 대한 재정지원을 꺼려했으며, 그 결과 28만 톤 미만으로 감소하였다.<sup>679</sup>

## (b) 국가 식량배급체계

505 북한 헌법 제25조제3항은 “국가는 모든 근로자에게 먹고 입고 쓰고 살 수 있는 온갖 조건을 마련하여준다”고 명시한다. 이는 모든 경제가 국가소유로 되어 있으므로, 국가가 북한 주민 모두에게 충분하고 적절한 식량을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의미한다.

506 북한의 식량배급체계에는 두 가지 하위 배급구조가 병존하는데, 하나는 중

676\_ 조사위원회 제출: Stephan Haggard and Marcus Noland, *Hunger and Human Rights: The Politics of Famine in North Korea* (U.S. Committee for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5), p. 14.

677\_ Haggard and Noland, *Hunger and Human Rights*, p. 4.

678\_ 조사위원회 제출: U.S. Committee for Human Rights in North Korea, “Failure to Protect, A Call for the UN Security Council to Act in North Korea,” 2006, p. 18.

679\_ Nicholas Eberstadt, “The North Korean economy. Between Crisis & Catastrophe,” p. 110. 북한에 대한 중국의 정책 변화를 좀 더 자세히 보려면 Liu Ming, “Changes and Continuities in Pyongyang’s China Policy” in Park Kyung-ae and Scott Snyder, eds., *North Korea in Transition. Politics, Economy, and Society*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2013), pp. 219 ff.

양배급체계(Public Distribution System: PDS), 다른 하나는 협동농장의 식량배급 제도다. 이론상으로 모든 비농가 가구들은 당국이 제공하는 국가배급식량을 받을 자격이 있다. 각 도의 행정 및 경제위원회는 독립적으로 사람들에게 식량을 공급하고 분배 과정을 조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당국이 국가배급기준을 정하며 모든 지역에서 그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해서 각 도 사이의 교역을 조절한다.<sup>680</sup>

**507** 협동농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중앙배급체계에 속할 수 없다. 협동농장은 한 마을의 농가, 토지, 기타 농업적·사회적 자산들을 통합하여 만든 것이다. 협동농장의 구성원인 농장원이 농장의 형식적 소유자이다. 이들은 국가로부터 월급을 받지 않는다. 대신 농장원들은 농장 소출 중 일부를 식량배급으로 받는다. 군 단위 국가 농업기관인 군운영위원회가 작물 선택, 소출 분배, 농장 마케팅 등 협동농장에 관련된 모든 결정을 내린다. 중앙배급체계와 마찬가지로, 협동농장도 모든 농장 가구의 표준 분배량을 정한다. 성인 농장 노동자를 위한 분배량은 보통 중앙배급체계의 중공업 노동자를 위한 배급량에 해당한다. 협동농장의 배급 구조는 1년치 식량을 한 번에, 가을 추수가 끝난 다음에 각 농가에 공급하는 것이다. 협동농장체계에 속하지 않는 다른 주민들은 중앙배급체계를 통해 2개월에 한 번 식량을 받아야 한다. 만일 한 농가당 배분되는 곡물이 표준 분배량을 초과할 경우 협동농장은 그 잉여물을 국가조달청에 판매할 수 있으며, 곡물 분배량이 표준 분배량보다 적으면 농장은 곡물을 대출하거나 혹은 공동기금으로부터 원조를 받아 그 부족량을 채운다.<sup>681</sup>

**508** 중앙배급체계에 있어서 배급량의 이론적 산출 근거는 노동량 및 기타 요인에 의한다. 예를 들어 평균 성인 노동자는 하루 700g의 곡식을 받으며 주부는 300g밖에 받지 못한다. 가장 많이 받는 사람은 고된 육체노동을 하는 사람(예를 들

680\_ Lee Suk, "Food shortages and economic institution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681\_ *Ibid.*, pp. 21~22.

어 광부)으로 하루 900g을 받을 수 있다.<sup>682</sup> 쌀과 (영양가가 낮은) 잡곡의 비율은 주로 거주지에 따라 달라진다. 국가에 중요한 일일수룩 노동자가 받는 배급량은 쌀의 비율이 더 높다.<sup>683</sup>

**509** 1990년대 중반 북한의 붕괴 이전부터 중앙배급체계는 배급 목표량을 달성하지 못하였다. 다음 도표는 1955년 이후 식량 배급량의 감소를 요약한 것이다. 1970년대에는 배급량이 정상 성인의 필요량을 충족시킬 수 있었지만, 1987년부터는 꾸준히 감소해왔다.

	기준	공식적 노동자를 위한 배급량
1955	기준 공식: 중공업 노동자 하루 900g에서 어린이 하루 300g까지	하루 700g 일년 256kg
1973	소위 “전시 식량 비축” 명목으로, 한 달 배급량에서 4일치를 감축 (평균 13% 감축)	하루 608g 일년 222kg
1987	소위 “애국미”로 10% 감축	하루 547g 일년 200kg
1992	성인 배급량에서 10% 감축	하루 492g 일년 179kg

[그림 1] 1994년 이전 북한 식량 배급량의 변화<sup>684</sup>

**510** 북한의 기근 시점은 1980년대 말로 보고 있다. 1973년부터 안정되었던 중앙배급체계 배급량이 1987년 10% 감소하였다.<sup>685</sup> 1990년대가 되자 배급은 훨씬 더 불안정해졌다.

682\_ 한국 통일부, “Food rations by class: Understanding North Korea 2005,” Education Centre for Unification, 2006년 3월, pp. 245~247.

683\_ 조사위원회 제출: Andrew Natsios, *The Great North Korean Famine* (US Peace Institute Press, 2002).

684\_ Lee Suk, *The DPRK famine of 1994~2000: Existence and Impact* (KINU, 2005).

685\_ Oh Gyung-chan이 Lee Suk “*The DPRK famine of 1994~2000: Existence and Impact*,” 2005, p. 6 재인용.

- 한 증언자는 1987년 굶어죽는 사람을 나선시에서 처음 보았다고 말했다. “한 여자가 굶어 죽었습니다. 당은 그 사람이 심장마비로 죽었다고 말했습니다.”<sup>686</sup>
- 또 다른 증언자는 1990년대 초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15일에 한 번, 꾸준히 식량을 배급받았다고 했다. 통밀, 옥수수, 그리고 감자를 배급받았고, 배급량은 수령자의 지위에 따라 차등지급됐다. 예를 들어 노동자들은 700g, 학생은 500g, 부양가족은 300g이었다.<sup>687</sup>
- 다른 증언자는 1991~1992년에 처음 식량 부족을 경험하였다고 증언했다.<sup>688</sup>

511 1991년 북한 당국은 더 많은 배급량 삭감을 북한 주민들이 수용하도록 하기 위해 “하루 두끼 먹기” 운동을 시작했다.<sup>689</sup> 1992년에는 군인과 중공업 노동자를 제외한 북한 주민에게 주어지는 중앙배급체계배급량의 10%가 추가로 감축되었다.<sup>690</sup>

- 전직 군인이었던 북한이탈주민은 1990년대 초부터 군인에게 주어지는 식량도 귀해지기 시작하였다고 말하였다. 1991년 애국미 기부 운동이 시작되어, 각 가구당 쌀 10kg을 모아서 다시 당국에 기부, 군대에 보내도록 하였다.<sup>691</sup>

### (c) 1990년대의 기근과 대규모 아사

512 식량 상황은 악화되기 시작하였다. 보고된 바에 따르면 1993년 식량문제에 의한 봉기가 있었다.<sup>692</sup> 북한은 긴급식량 수송을 위해 아시아의 다른 국가들과 외교

686\_ TLC033.

687\_ TAP001.

688\_ TAP011.

689\_ Lee Suk, *The DPRK famine of 1994-2000: Existence and Impact*, p. 6.

690\_ *Ibid.*

691\_ TJH027.

692\_ “North Korean defector tells of food riots,” *The Guardian*, 1993년 8월 23일. <http://www.theguardian.com/world/1993/aug/23/northkorea> 참조.

적 교섭을 시작하였다.<sup>693</sup> 1994년부터는 국가는 특정 주민들에 대하여 점차 가혹해지기 시작하였다. 함경남도, 함경북도, 양강도 및 강원도의 4개 도에서 중앙배급체계가 중단되었다.<sup>694</sup> 뿐만 아니라 이미 농부들에게 연간 배급량으로 나누어주었던 곡식 중 5kg을 다시 회수하는 캠페인이 시작되었다.<sup>695</sup> 그 결과 더 많은 북한 주민들이 식량을 구하기 위해 중국과 러시아로 떠나게 되었다.<sup>696</sup>

**513** 초기에 북한은 국제 원조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였다. 대규모 기근에 직면하였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게 되자, 북한의 태도는 점차 바뀌었다.<sup>697</sup> 1995년 2월, 북한 당국은 국제 NGO로부터 식량 원조를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1995년 5월, 한국의 김영삼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무조건적인 식량 지원을 약속하였다. 그달 말 북한 당국은 식량 부족을 인정하였다. 북한은 한국과 일본, 미국에 식량지원을 요청하였다.

**514** 자연재해가 식량의 가용성을 더욱 악화시켰다. 1995년 7월 30일부터 8월 18일까지 폭우로 북한전역이 침수되었다.<sup>698</sup> 1995년 8월 31일, 유엔 인도주의사무국 (UN Department of Humanitarian Affairs)은 북한이 처음으로 유엔에 지원을 요청하였다고 발표하였다.<sup>699</sup> 1996년에는 “기록에 남은 역사상 가장 심한 봄 가뭄”

693\_ Lee Suk, *The DPRK famine of 1994~2000*, p. 7.

694\_ Lee Suk, “The DPRK famine of 1994~2000,” p. 8. 또한 Natsios의 증언 참조. 워싱턴 공청회, 2013년 10월 31일, 오전.

695\_ Ahn Jong-Chui가 Lee Suk, “The DPRK famine of 1994~2000,” p. 8을 인용.

696\_ Lee Suk, “The DPRK famine of 1994~2000,” p. 8.

697\_ 보고에 의하면 어떤 경우 경제적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기도 한다고 한다. “North Korea: It's bad-Official” 참조. *The Economist*, 1993년 12월 18일 and “North Korea: A dangerous game,” 1994년 5월 28일.

698\_ United Nations Department of Humanitarian Affairs, “United Nations Consolidated UN Inter-Agency Appeal for Flood-Related Emergency Humanitarian Assistance to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 1 July 1996-31 March 1997,” 1996년 4월.

699\_ “Floods Strike 5 Million, North Korea Reports,” *New York Times*, 1995년 8월 31일. <http://www.nytimes.com/>

에 이어 역시 대홍수가 있었다.<sup>700</sup> 유엔의 보고에 따르면 이런 자연재해의 결과 “농업 부분에 대규모의 심각한 피해”가 있었으며, 1천5백만 톤의 곡물이 유실되었다.<sup>701</sup> 뿐만 아니라 운송 체계도 심각하게 파손되어, 주민들 대다수에게 식량을 제대로 배급하지 못했다.

**515** 북한 당국은 식량난의 주 원인이 홍수라고 반복적으로 강조하지만 앞에서 일어난 일련의 일들은 다른 설명을 한다. 기근은 1995년 홍수가 발생하기 전에 이미 문제가 되고 있었다. 1995년 9월 일본의 외무성 대변인 시마노우치 켄은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홍수 이전인 1995년 6월 30일, 일본 정부는 [북한 당국의] 요청에 따라 심각한 식량 부족으로 고통 받고 있는 [북한에]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총 30만 톤의 쌀을 공급하기로 결정하였다.”<sup>702</sup>

**516** 위원회는 이 기간 동안 기근에 시달렸으며 친척과 아이들의 죽음을 목격한 다수의 사람들의 증언을 들었다. 북한 주민들은 살아남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다. 어떤 이는 풀뿌리로 죽을 끓이기도 했고 어린 소나무 가지의 내피를 끓여 먹기도 하였다. 추수가 끝난 다음에는 벼 뿌리를 캐서 옥수수과 함께 갈아 국수를 만들어 먹기도 하였다. 그런 거친 대체식량을 먹은 사람들은 끊임없는 소화불량과 설사에 시달렸으며, 심한 경우에는 죽음에 이르렀다.

- 서울 공청회에서 C씨는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 “저희 부친은 1996년 2월 16일 새

1995/08/31/world/world-news-briefs-floods-strike-5-million-north-korea-reports.html 참조.

700\_ FAO/WFP, “Crop and Food Supply Assessment Mission to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2001년 7월 27일.

701\_ *Ibid.*

702\_ “Press Conference by the Press Secretary 19 September 1995,” Ministry of Foreign Affairs, Japan, <http://www.mofa.go.jp/announce/press/1995/9/919.html#2>. 또한 <http://www.mofa.go.jp/policy/other/bluebook/1996/lc.html> 참조.

벽에 영양실조로 돌아가셨습니다... 1997년 4월 저의 언니와 여동생이 굶어 죽었고, 1998년 남동생 역시 죽었습니다.”<sup>703</sup>

- 워싱턴 공청회에서 조진혜 씨는 1990년대 기근 동안 자신과 가족이 경험한 영양실조에 대해 증언하였다. 그녀의 두 남동생과 할머니가 굶어 죽었다.  
“남동생이 태어났을 때... 할머니는 남동생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심한 영양실조 상태여서 젖을 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할머니에게 애원했어요. “제발 아기를 죽이지 마세요.” ... 제가 이 아기를 돌봐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기를 업고 동네를 다녔고, 아기가 너무 심하게 울어서 할머니가 업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먹을 게 없었으니까 아기는 계속 울었습니다. ... 아기는 먹지 못해 결국 내 품에서 죽었습니다. 내가 항상 안고 있으니까 내가 엄만줄 알았나봅니다. 물을 먹여주면 어쩌다가 나를 보면서 방긋 웃었습니다.”<sup>704</sup>
- 런던 공청회에서 최종화 씨는 이렇게 말하였다. “1990년대 군대에서 돌아와 5개월 안에 형이 죽었고, 다음 해에는 동생이 죽었습니다. 셋째 동생도 ... 그 뒤에 영양실조로 사망했습니다.”<sup>705</sup> 굶어 죽은 형제를 셋이나 묻고 나니, 최씨는 북한이 뭔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 형은 1950년대 전쟁기간에도 살아남았는데, 왜 1990년대에 죽어야 하나? 왜 평화시인데도 죽었을까?”<sup>706</sup>
- 한 여성은 1995년 이후 함경남도의 식량 상황에 대해 말했다. 1995년 2월 아버지가 죽고, 두 여동생이 영양실조에 시달렸다. 그녀는 이렇게 증언했다. “큰 동생이 죽어가면서 소원이 국수를 먹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국수 한 그릇 살 돈이 없었습니다. 그 애는 19997년에 죽었습니다. 한 달 후 작은 동생도 죽었습니다. 죽기 전 소원은 빵 한 조각이 먹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남동생은 1995년부터 구원단광에서 일했는데, 너무 몸이 약해 해고되었습니다. 그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 기차 안에서 영양실조로 죽었습니다. 제가 그 시체를 보았습니다.”<sup>707</sup>
- 서울 공청회에서 P씨는 이웃의 아들 다섯 명이 굶어 죽었으며, 산에서 먹을 것을 찾던 사람들이 독버섯을 먹고 죽기도 하였다고 말하였다.<sup>708</sup>
- 서울 공청회에서 김광일 씨는 “대기근”에 대해 이렇게 말하였다.

703\_ 서울 공청회, 2013년 8월 24일, 오전(03:20:45).

704\_ 워싱턴 공청회, 2013년 10월 30일(00:45:19).

705\_ 런던 공청회, 2013년 10월 23일, 3세션(00:52:32).

706\_ 런던 공청회, 2013년 10월 23일, 3세션(01:08:02).

707\_ TSH016.

708\_ 서울 공청회, 2013년 8월 21일, 오후.



“어제 있었던 일처럼 선명합니다. 1990년대, 특히 함경도 지방에서 있었습니다. 기근이 시작된 것은 1994년이었습니다. … 한 동네에서 하루에 80명이 죽기도 했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이 죽어서 관이 모자라, 옛날식으로 시체 나르는 널을 빌리기도 했습니다. 묘비를 만들 나무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sup>709</sup>

- 서울 공청회에서 A씨는 1997년과 1999년 동안이 가장 힘든 “대기근” 시기였으며, 이 기간에는 배급이 중단되었다고 말하였다.<sup>710</sup>
- 지성호 씨는 1996년 3월 왼손과 왼쪽 다리 일부를 잃게 된 경위를 설명하였다. 너무 배고파 먹을 것이나 식량 살 돈을 찾았다. 움직이는 기차 위에 올라 타 석탄을 훔쳐 팔 생각이었는데, 며칠을 먹지 못해 기차에서 떨어져 치이는 바람에 왼쪽 손과 다리가 잘려나간 것이다. 지씨는 1990년 겨울에는 그와 가족이 먹을 게 전혀 없었다고 말하였다. “나무 껍질도 먹고 땅 속의 배추 뿌리도 먹었지만 그조차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할머니와 몸이 약한 사람들은 전혀 움직이지도 못하게 되었습니다.”<sup>711</sup>

517 1996년 초 북한 당국은 그 해 5월까지 식량 배급을 중단한다고 선포하였다. 보고에 따르면 1996년경에는 북한 주민 식단의 30%가 야생식량으로 충당되었다고 한다.<sup>712</sup> 1997년 중앙배급체계는 전체 인구의 6%에게만 식량을 공급한 것으로 추정된다. 1998년이 되자 북한 당국은 대부분의 북한 주민들에게 식량을 공급할 수 없게 되었다.<sup>713</sup> 1998년 1월, 북한 주민들은 당국으로부터 중앙배급체계에 의존할 게 아니라 각자 알아서 식량을 구해야 한다는 공식적인 발표를 들었다.<sup>714</sup> 급속

709\_ 서울 공청회, 2013년 8월 24일, 오전(00:10:58).

710\_ 서울 공청회, 2013년 8월 22일, 오후.

711\_ 서울 공청회, 2013년 8월 22일, 오전(01:42:55).

712\_ FAO/WFP, “Crop and Food Supply Assessment Mission to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Special Report,” 1996년 12월. 야생 식품(야생 과일, 식물, 풀 등)에 대한 의존은 설사 및 기타 질병으로 연결되어 5세 미만 아동의 영양부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가장 극단적인 대처 방안으로 간주된다.

713\_ Andrew Natsios, “The Politics of Famine in North Korea,” Special Report 51, United States Institute of Peace, 1999년 8월, pp. 5~11.

714\_ Amnesty International, “Starved of Rights: Human Rights and the Food Crisi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North Korea),” 2004년 1월, pp. 9~10.

도로 악화되어가는 북한의 식량 상황은 1998년 12월 유엔이 발표한 영양실태조사에 반영되어 있는데, 북한 어린이의 16%가 심각한 영양실조 상태이며 62%가 만성 영양실조 상태라고 밝혔다.<sup>715</sup>

**518** 한 주민들은 식량 배급을 받지 못하자 구걸하거나 불법적인 행위를 통해 식량을 구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러한 사정을 말해주는 많은 증언들이 있다.<sup>716</sup>

- 서울 공청회에서 C씨는 함경남도에서 중앙배급체계를 통한 식량 배급은 1994년에 중단됐다고 말하였다.<sup>717</sup>
- 서울 공청회에서 김광일 씨는 함경남도 식량 배급 사정에 대해 말하였다. “1996년 저는 자유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정부가 쌀과 음식을 주니 저는 일만 하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만 했습니다. 그런데 1996년 배급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장사도 하고 범죄를 저지르고 훔치기 시작했습니다.”<sup>718</sup>
- 1995년 중앙배급체계가 중단되자 한 증언자는 물건을 시장에 내다팔면서 장사를 시작하였다고 말한다. 남편의 학부모들을 찾아가 음식을 얻기도 하였다.<sup>719</sup>
- 다른 증언자는 살아남기 위해 마약이나 국영 기업소로부터 훔친 구리 등 온갖 것을 다 팔았다. 그는 북한 주민이 처한 곤경을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북한의 법규를 준수하면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법규를 어기다가 잡히면 체포되어 목숨을 잃습니다.”<sup>720</sup>
- 도쿄 공청회에서 사이토씨는 먹고 살기 위해 나라 안을 돌아다니면서 철사를 판 이야기를 하였다. 이 불법 사업은 철사를 기차로 눈에 띄지 않게 운반해야 했다. 사이토씨는 옷 안에 철사를 꿰매어 넣어 무겁고 입기 불편했지만 기차 감시원의 눈을 피할 수 있었다. 그녀는 한 젊은 여성이 얼마나 절박했었는지에 대해 조사위원회에서

715\_ WFP, “Nutrition Survey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1998년 11월.

716\_ TBG028, TSH018, TSH016.

717\_ 서울 공청회, 2013년 8월 24일, 오전.

718\_ 서울 공청회, 2013년 8월 24일, 오전(01:52:06).

719\_ TBG032.

720\_ TAP001.

증언하였다.

“제 앞에는 한 스무 살쯤 되어 보이는 젊은 여자가 아기를 등에 업고 있었습니다. 아마 뭔가 장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인 것 같았습니다. 정말 북한 사람들은 식량 부족으로 고생하고 있었지만, 그때만 해도 북한 사람들은 참 마음씨가 좋았습니다. 그 아기 업은 여자는 내 앞에 서 있었는데, 아기가 놀리지 않도록 신경 쓰는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부축하면서 “아기가 놀리지 않도록 조심해요”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 사이토씨와 그 여성은 기차에서 경찰에게 붙들려 하차하게 되었다. 사이토씨는 자기는 철사를 운반하고 있었기에 경찰에 붙여가고 있었지만, 그 젊은 아기 어머니는 왜 붙여가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등에 아기를 업고 손에 아주 작은 가방을 들었는데, 그녀가 왜 끌려가는지 이상했습니다. 기다리고 있는데 경찰이 들어왔습니다. 혼자 들어왔습니다. 저하고 그 아기엄마, 경찰 셋뿐이었어요. 나는 아기엄마에게 말했습니다. ‘아기 젖을 먹여야 하지 않아요? 시간이 오래 되었는데.’ 그녀는 ‘괜찮아요’하고 대답했습니다. 기차 안에서 여섯 시간에서 일곱 시간이나 타고 오면서 아기가 왜 그렇게 조용했는지 이상했습니다 …

나에 대한 심문이 끝난 후 경찰은 그 여자에게 아기를 책상에 올려놓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자가 갑자기 울기 시작했고, 난 왜 그럴까 했습니다. 그 여자는 아기를 내려놓지 않고 울기만 했고 경찰도 영문을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여자는 폭넓은 띠로 아기를 둘러 업고 있었는데, 띠를 풀고 아기를 책상에 올려놓았습니다. 아기는 18개월에서 두 돌쯤 되어 보였습니다. 남자아이였습니다. 아기 배 주변을 빙 돌아가면서 피가 묻어 있어서 경찰이 왜 그런 거냐고 물었습니다. 여자는 계속 울기만 했고 경찰이 아기 몸통을 잡아당기자 약 2Kg 정도 되는 구리 철사가 아기 배 안에서 나왔습니다. 북한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어디까지 가야 하는지 말해주는 사건이죠.”<sup>721</sup>

#### (d) 국가 배급에 대한 대안 모색

519 중앙배급체계가 붕괴되자 사람들은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나름대로 대책을 찾아야 했다. 국가 시책이 아닌 비공식적 시장이 자연스럽게 형성되었다. ‘장마

721\_ 도쿄 공청회, 2013년 8월 30일, 오전(01:12:00).

당(시장)’은 “농민 시장”에서 출발했는데, 여기서는 사람들이 자기 집 주변의 밭에서 가꾼 농산물을 팔았다. 협동농장 역시 생산한 쌀의 일부를 비축해서 다음 철 농사에 필요한 농업 장비를 구하는데 사용하려고 하였다. 국가가 농업 장비를 농가에 대줄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가장 초보단계의 ‘장마당’ 경제는 법규와 관계 없이 발생한 것으로, 초기에는 불법적인 시장, 혹은 암시장이었다. 하지만 1990년대 후반이 되자 장마당은 북한 전역으로 확산되었다. 2008년이 되자 북한 가구 수입의 78%가 비공식적 경제활동에서 발생하였다.<sup>722</sup>

**520** 위원회가 수집한 증언에 의하면 사람들은 비디오, 담배, 기타 물품들을 팔아서 식량을 살 뿐 아니라 중앙배급체계를 통해서도 충족되지 않는 것들을 샀다고 했다.

- 한 증언자는 1990년대 식량 배급이 반으로 감소했다고 했다. 따라서 그의 가족은 중국에서 장사를 해서 부족분을 충당하였다고 했다.<sup>723</sup>
- 또 한 증언자 역시 1990년대부터 식량이 부족해지기 시작하였다고 했다. 그 결과 식량 밀수 및 쌀 암시장이 등장하였다. 식량이 귀해지기 전에는 제대로 된 시장이 없었다. 김일성이 사망했을 때 식량 배급도 완전히 중단되어 식량을 구할 장소는 시장밖에 없었다.<sup>724</sup>
- 당시 14세였던 또 한 증언자는 암시장에서 비디오를 팔면서 장사를 시작하였다. 이로 인해 종종 체포되었다고 한다.<sup>725</sup>
- 다른 증언자는 1995년까지는 식량 상황이 좋았다고 했다. 1996년이 되자 그의 가족은 집안의 물건을 내다 팔기 시작하였다. 물건을 모두 팔아버린 후 그는 시장에서 담배와 채소를 팔기도 하였다.<sup>726</sup>

722\_ Kim Byung-yeon and Song Dong-ho, “The Participation of North Korean Households in the Informal Economy : Size, Determinants, and Effect,” *Seoul Journal of Economics*, vol. 21 (2008), p. 373.

723\_ TAP011.

724\_ TAP001.

725\_ TSH035.

- 다른 증언자는 1990년대에 “달리기 경제”가 생겨났다고 증언한다. “달리기”란 작은 도시에서 구한 물건을 시골로 가져가 판매함으로써 그 차익을 얻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사람들은 주로 라진-선봉(라선경제특구)에서 오는 물건들을 팔았는데 대부분 중국산이었다.<sup>727</sup>
- 두 아이를 둔 한 아버지는 식량 배급이 네 식구가 먹기에 충분했던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한다. 그와 아내는 자녀들과 먹고 살기 위해 불법적인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의 아내는 농사를 지어 콩으로 몰래 두부를 만들어 팔고 술도 팔았다고 한다.<sup>728</sup>

521 시장의 발달은 북한 경제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시장은 중앙배급체계의 대안으로 떠올랐으며, 일부에게는 예컨대 거래를 함으로써 수입을 증대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시장으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요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여기에는 거주지, 직업, 부정부패 행위, (공직에 있으면서 비공식적 경제활동을 함으로써 중국, 일본, 한국 등에 있는 친척으로부터 송금을 받는 등으로) 외환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가 포함된다.<sup>729</sup> 일부 관료들은 시장으로부터 식량을 전용해서 이윤을 얻거나 시장 활동과 관련된 뇌물을 받음으로써 이득을 취하였다. 기존의 소외 집단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 더욱 취약해졌다.

522 시장은 계속적으로 식량에 대한 물리적 및 재정적 접근성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재원이 없거나 거래를 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시장으로의 접근이 사실상 차단되었다.

- 평안남도 남포에서 온 한 증언자에 따르면, 시장에서 쌀 가격이 1kg 당 500~600원으로 거래되었는데 이는 본인의 능력으로 살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다고 한다.<sup>730</sup>

726\_ TSH018.

727\_ TLC013.

728\_ TLC038.

729\_ Stephen Haggard and Marcus Noland, *Famine in North Korea*, p. 172.

730\_ TSH052.

- 또 다른 증언자는 2010년에서 2011년 사이에 식량이 전혀 배급되지 않았다고 증언하였다. 그녀는 자신이 북한을 떠나올 시점에서 인구의 40%는 식량을 구입할 능력이 없었다고 추정한다.<sup>731</sup> 증언자는 “돈 없는 사람은 굶어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라고 강하게 말했다.
- 북한에 지하 언론인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Asia Press에서 임진강 지부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시마루 지로씨는 현재 시장에서 쌀 가격이 1kg 당 5,000원 정도라고 말한다. 이시마루씨는 북한 공무원의 평균 월급이 2,000~3,000원이라고 강조하였다. 그에 따르면 북한의 문제는 식량에 대한 접근성이다. 시장에서는 많은 식량이 거래되고 있지만 사람들은 구입할 능력이 없다.<sup>732</sup>
- 비공개 면접에 응한 한 여성은 2012년에 쌀 가격이 급등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더 이상 쌀을 구입할 수 없게 되었다고 말했다.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은 굶어 죽었습니다”라고 그녀는 덧붙였다.<sup>733</sup>

### (e) 2000년 이후 기아와 굶주림의 지속

**523** 2000년 이래 기아로 인한 사망자 수는 감소하고 있는 듯 하지만, 여전히 인구의 상당수가 굶주림과 영양실조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서와 연구들은 지적한다.<sup>734</sup> 유엔 식량농업기구(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FAO)에 따

731\_ TBG028.

732\_ 도쿄 공청회, 2013년 8월 29일, 오후.

733\_ TBG032.

734\_ 영양실조는 영양부족과 영양과잉을 포함하여 영양상의 부조화를 나타내는 모든 형태로 정의된다. 에너지 불균형뿐 아니라 특정 대량영양소와 미량영양소 및 식이 패턴에 관련된 불균형도 관련된다. 통상 불완전한 영양이 강조되어 왔지만 과잉 또는 불균형 섭취에도 적용되는 개념이다. 영양실조는 필수 대량영양소와 미량영양소의 섭취가 이들 영양소에 대한 대사적인 요구량에 미달하거나 초과하는 경우 발생한다. 이들 대사적 요구량은 연령, 성별 기타 생리학적 조건들에 따라 달라지며, 수인성 설사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위생상태 불량 등의 환경 조건에도 영향을 받는다(WHO Global Nutrition Policy Review). 미량영양소의 실조가 정상 체중인이나 비만인에게 나타날 경우 숨은 기아라고 부르기도 한다. 숨은 기아는 가시적인 자각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아서, 이를 경험하는 개인은 자신의 식이적인 결핍이나 이로 인한 건강상의 피해에 대해 알지 못하게 된다. 임신 혹은 수유중인 여성은 특정 영양소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임신 및 수유 중에는 태아의 발육과 모유 생산에 양적·질적으로 충분한 영양분을 섭취하기 위해 반드시 추가적인 음식 섭취를 하여야 한다. 이 단계에서

르면, 2000년에서 2002년 사이에 북한에서 영양실조로 고통 받는 인구가 840만 명(즉, 인구의 36.6%)이었으며, 2005~2007년에는 860만 명(인구의 36%), 2008~2010년에는 970만 명(인구의 40.2%), 그리고 2011~2013년에는 760만 명(30.9%)이었다고 한다.<sup>735</sup> 기아로 인한 사망 사례도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524** 2000년 겨울과 2001년 봄, 북한은 가뭄으로 인해 밀, 보리, 감자 작황에 심각한 타격을 받았다. 가뭄으로 인해 토양 수분이 급감했으며 저수지가 고갈되고 관개 시설이 손상되었다.<sup>736</sup> 한국의 정보에 따르면, 2001~2002년 동안 식량 부족으로 인해 15,000명의 북한 군인들이 탈영했다.<sup>737</sup>

**525** 2002년에 북한은 “7·1 경제관리개선 조치(7·1조치)”를 도입하였다.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이윤을 극대화하면서도 사회주의사상을 보존하기 위해 도입된 새로운 정책이었다. 북한은 다음과 같은 것들을 목표로 하였다: 1) 일부 대출을 조정하고 공식 가격을 실질 시장 가격에 일치시킨다; 2) 국영기업의 경영 재량권을 증대시키고 독자적인 경영을 장려한다; 3) 계속 성장하고 있는 암시장을 폐쇄한다; 4) 소비재의 배분을 다시 당국 소관으로 가져온다. 7·1 조치를 통해 구상한 것은 “상설 시장(general markets)”의 설립이었다.<sup>738</sup> 국영 기업소의 이윤 증대 등 몇 가지 부분에서 개혁적 성향이 엿보이기는 하나, 당국의 계획경제체제를 근본적으로 개혁

어머니의 영양부족은 자궁내 발육지체 또는 모유에서 특정 영양소 농도의 저하를 야기한다. FAO, Committee on World Food Security, “Coming to terms with terminology,” CFS 2012/39/4. <http://www.fao.org/docrep/meeting/026/MD776E.pdf> 참조.

735\_ FAO, *The State of Food Insecurity in the World* (2013).

736\_ FAO/WFP, “Crop And Food Supply Assessment Mission to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2001년 7월 27일.

737\_ “15,000 North Korean soldiers desert amid famine in 2001-2002: report,” Agence France-Presse, 2003년 9월 26일.

738\_ Exhibit T8: Ishimaru Jiro ed., *Rimjin-gang: News From Inside North Korea* (Osaka, Asiapress Publishing, 2010), p. 49

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았다. 북한 당국이 공적 배분체제를 복구하기 위한 충분한 대책도 없이 암시장을 폐쇄하려고 했기 때문에 7·1조치는 초인플레이션을 초래하면서 실패로 막을 내렸다.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 북한 당국은 2003년 4월 암시장을 합법화하기로 결정하였다.<sup>739</sup> 수십 년 동안 북한에서 쌀은 중앙배급체계를 통해 국정 가격에 “판매”되어 왔다. 개혁조치 이후 국정 가격은 1kg 당 0.08원에서 44원으로 550배 증가했고, 이는 당시의 시장 가격에 근접한 것이었다. 이로 인해 많은 북한 주민들이 개혁의 의도치 않은 부작용으로 피해를 보게 되었다.

**526** 2005년에 북한은 원조와 안전 보장의 대가로 핵개발 프로그램을 폐기하기로 합의하였다. 같은 해에 세계식량계획(World Food Programme: WFP) 대표가 “지금 북한 당국이 북한 주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하루 250g의 식량은 기아 배급 수준”이라고 말하였다고 보도된 바 있다.<sup>740</sup> 한 증언자에 따르면 2005년에 태어난 그녀의 둘째 손녀는 식량 부족으로 건강에 이상이 생겼다고 한다: “손녀는 음식을 비교적 잘 먹고 있는 지금까지도 건강이 좋지 않습니다.”<sup>741</sup>

**527** 2006년 7월과 2007년 8월에 두 차례의 홍수가 북한을 강타하였다. 유엔의 보고서에 따르면, 그 해 여름 홍수로 인해 북한의 국내 식량 생산이 큰 타격을 받아 겨울 동안 취약 인구의 영양실조 위험은 더욱 높아졌다.

**528** 인도주의적 상황이 악화되어가자 사람들은 필사적인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 통일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고난의 행군 기간 동안 인육 매매에 관한 증

739\_ *Ibid.*

740\_ “North Korea, Facing Food Shortages, Mobilizes Millions From the Cities to Help Rice Farmers,” *New York Times*, 2005년 6월 1일. [http://www.nytimes.com/2005/06/01/international/asia/01korea.html?\\_r=0](http://www.nytimes.com/2005/06/01/international/asia/01korea.html?_r=0)  
참조.

741\_ TAP001.



언들이 있었지만 2000년 이후 그러한 증언들이 거의 사라졌었다. 그런데 2006년에는 경제의 붕괴와 식량부족으로 인하여 인육 사례에 대한 증언들이 다시 나타났다.”<sup>742</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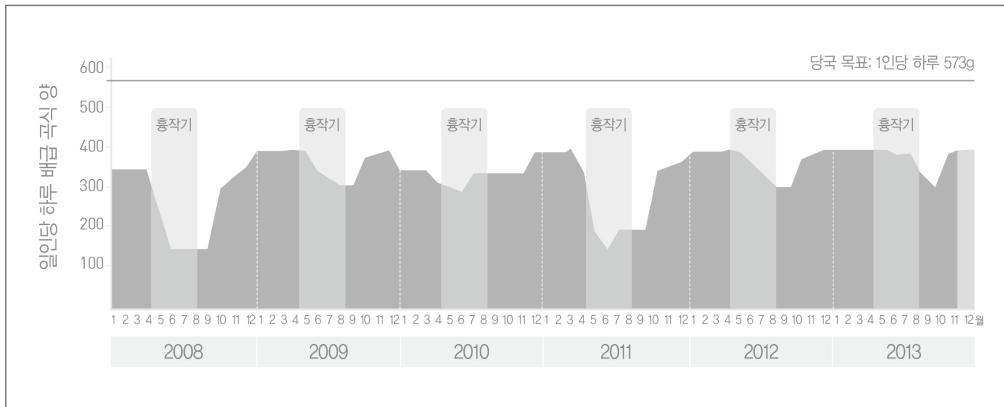
529 북한은 중앙배급체계를 계속 운영하면서 “비공식 경제”를 엄중히 단속하는 동안 공식 부문을 재개하려는 다양한 시도를 해왔다.<sup>743</sup> 식량농업기구와 세계식량계획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2005년에 중앙배급체계를 재개하려고 시도했었다. 이를 통해 약간의 개선이 있었지만 곧 이전 수준으로 되돌아갔다.<sup>744</sup> 저조한 식량 생산, 높은 연료가격 그리고 인프라의 피해 등 다양한 요인들로 인해 식량 배급은 불규칙해졌다. 2003년에서 2007년 사이에 중앙배급체계 가구의 25% 이하, 그리고 농민의 3분의 2만이 식량 배급을 받았고, 그나마도 충분히 받지 못하였다. 중앙배급체계를 재개하려는 당국의 다양한 시도들이 실패하였다. 2004년에서 2008년 사이에 1인당 1일 식량 배급량은 150g에서 350g 사이를 오갔다. 2008년에는 연초에 350g이던 것이 5월에는 250g이 되었다. 6월부터 9월까지의 최소 영양 요구량의 약 4분의 1에 해당하는 150g이 배급되었고, 10월이 되어 다시 300g으로 증가하였다.<sup>745</sup> 아래 그림에 나타나듯이 1일 573g이라는 당국 목표치는 2008년 이래 달성되지 못했다.

742\_ KINU,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2), p. 98. 인육을 이유로 한 처형 및 구금시설에서의 인육 관련 설명도 TSH009, TBG011, TLC025에 언급되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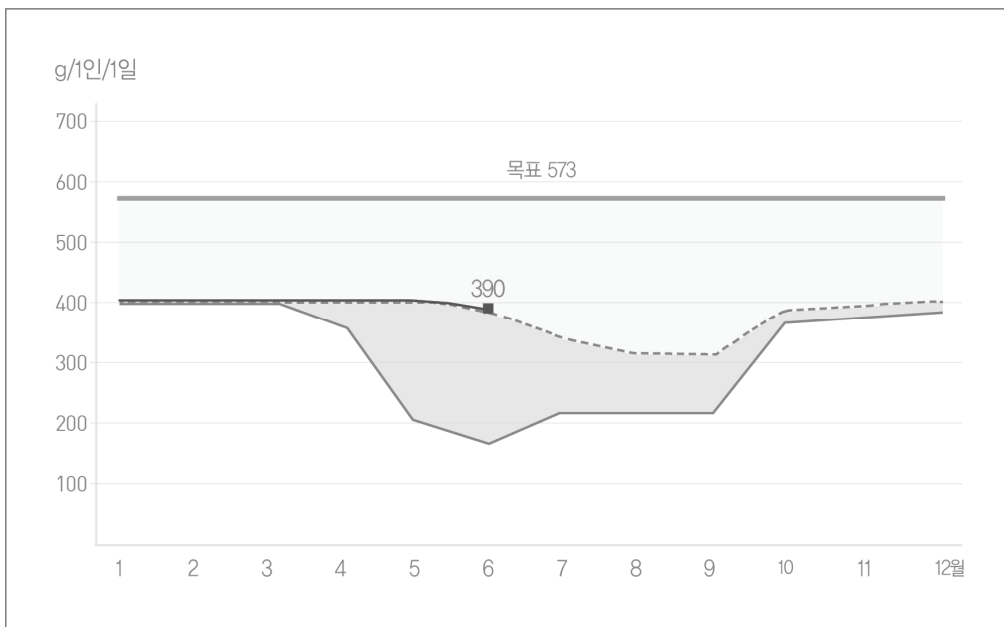
743\_ Andrei Lankov, *The Real North Korea*; WFP, “WFP Emergency Reports,” 2005년 9월 30일. Human Rights Watch, “A Matter of Survival: The North Korean Government’s Control of Food and the Risk of Hunger,” 2006, 참조.

744\_ FAO/WFP, “Special Report: Crop and Food Security Assessment Mission to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2008년 12월 8일.

745\_ *Ibid.*, p np. 23~24.



[그림 2] 2008~2013년 당국 목표치 대비 월별 평균 중앙배급체계 배급량<sup>746</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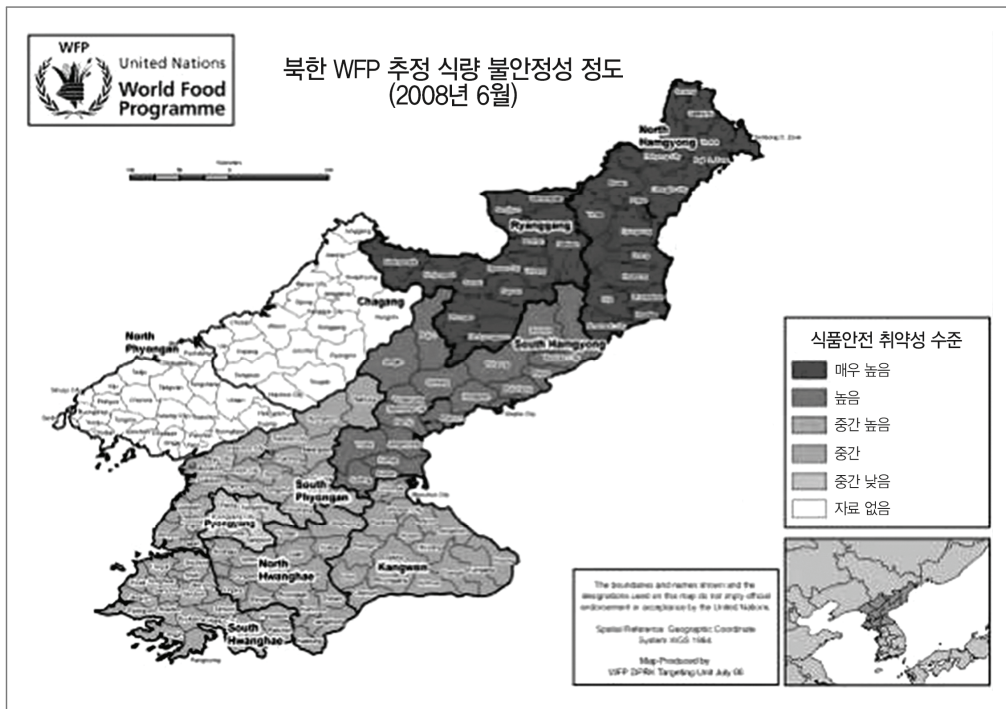
[그림 3] 2011~2013년 중앙배급체계 배급량(g/인/1일)<sup>747</sup>

746\_ FAO/WFP, "Crop and Food Security Assessment Mission to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2013년 11월 28일, p. 30.

747\_ OCHA, "DPR Korea 2013: Humanitarian Needs and Priorities," p. 6.

530 2008년에 세계식량계획은 북한이 심각한 식량부족을 경험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sup>748</sup> 같은 해에 발표된 식량농업기구와 세계식량계획의 식량과 안보 평가에 따르면 2003~2005년과 비교해 볼 때, 야생식량의 소비는 거의 20% 증가하였다.

- 야생식량의 소비가 늘어나면서 발생하는 설사가 5세 이하 어린이, 특히 도시지역 아동의 주된 영양실조의 원인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대부분의 병원과 아동 기관들은 유아를 위한 강화 식품이 부족해서 영양실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sup>749</sup>



[그림 4] 식량 불안정성 정도<sup>750</sup>

748\_ FAO/WFP, "Special Report: Crop and food security assessment mission to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2008년 12월 8일.

749\_ FAO/WFP, "Executive Summary: Rapid Food Security Assessment: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2008년 6/7월, p. 3.

750\_ FAO/WFP, "Executive Summary: Rapid Food Security Assessment: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531** 2009년 11월 30일, 북한 당국은 100:1의 비율로 화폐 개혁을 하겠다고 발표하였다. 북한 주민들이 구 화폐를 신 화폐로 바꿀 수 있도록 주어진 시간은 겨우 일주일이었다. 그들이 교환할 수 있는 화폐의 액수는 엄격히 제한되었다.<sup>751</sup> 국영방송에 의하면 이 개혁의 공식적 목표는 “생활을 안정시키고 개선함으로써 인민의 이익을 수호하기 위한” 것이었다.<sup>752</sup> 특히 당국은 첫째, 물가상승과 싸우고 둘째, 시장의 역할을 감소시켜 중앙에서 계획하는 경제 체계를 회복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sup>753</sup> 북한의 전직교수로서 현재 서울의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조명철 박사는 “북한의 시장폐쇄가 실패한 후, 부유한 상인계급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화폐 개혁이었다”고 말하였다.<sup>754</sup> 조씨는 또한 지배계급인 김씨 일가의 권력을 회복하려는 목적으로 화폐 개혁이 단행되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북한의 새로운 계급인 부유한 상인들은 전통적인 엘리트가 아니며 “이상적인” 공산주의자도 아니어서 현재의 지도체제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고 언급했다.

**532** 화폐 개혁은 결과적으로 기아 상태를 더욱 악화시켰다. 2009년이 되자 쌀의 시장가격은 2천 원대를 맴돌았다. 화폐 개혁 이후 거리로 내몰리는 아이들의 수가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였다.<sup>755</sup> 화폐 개혁 후 두 달도 채 지나지 않아 김영일 총리는 각 지역의 인민대표들에게 사과하였다.<sup>756</sup> 이것은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계

---

Korea,” 2008년 6/7월.

751\_ Scott Snyder, “North Korea Currency Reform: What Happened and What Will happen To Its Economy?,” The Asia Foundation, 2010년 3월 31일, p. 4. “North Korea revalues currency, destroying personal savings,” *Washington Post*, 2009년 12월 2일 참조.

752\_ Exhibit T8, Ishimaru Jiro ed., *Rimjin-gang: News From Inside North Korea*, p. 169.

753\_ Exhibit T8, p. 167.

754\_ “N. Korea’s Currency Reform ‘a Bid to Cement Power,” *Chosun Ilbo*, 2009년 12월 2일, [http://english.chosun.com/site/data/html\\_dir/2009/12/02/2009120200656.html](http://english.chosun.com/site/data/html_dir/2009/12/02/2009120200656.html)

755\_ KBA, *2012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p. 349.

756\_ 김영일은 당시 북한 정권의 제3인자로 간주되었다. “North Korea’s Premier Apologizes Over Chaotic Currency Reform,” *Associated Press*, 2010년 2월 10일; “N. Korean technocrat executed for bungled currency

획재정부장인 박남기의 해임 - 및 처형 관련 보도 - 직후 있었던 일이다.<sup>757</sup> 어떤 해설자들은 이런 식으로 정부의 과오를 인정한 일이 이전에는 없었는데, 그만큼 전반적인 불만의 분위기가 지도층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까지 팽배했기 때문이 아닌가 추측하고 있다. 2009년 12월 28일, 북한은 외화 사용을 금지함으로써 한층 더 시장을 압박하였다.<sup>758</sup> “외화 사용자에 대한 엄벌”이라는 제목의 포고령이 발표되었다.<sup>759</sup> 뿐만 아니라 북한 당국은 상설 시장을 폐쇄하였다. 이 조치로 사람들은 식량을 구하지 못하게 되었다. 그것은 특히 사적 혹은 자유 시장에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의 생계에 타격을 주었다. 화폐 개혁으로 인해 발생한 극심한 인플레이션이 일반인들의 식량 구매력을 감소시켰으며 모아둔 돈을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렸다.<sup>760</sup>

533 시장을 폐쇄했어도 북한 당국은 중앙배급체계를 적절하게 재가동할 수 없었다. 이로 인해 전 지역에서 대규모 기아가 발생하였다.<sup>761</sup> 주민들 사이에는 엄청난 불만이 생겼고, 시위도 자주 발생하였다.<sup>762</sup>

reform: sources.” Yonhap News, 2010년 3월 18일 참조. <http://english.yonhapnews.co.kr/northkorea/2010/03/18/72/0401000000AEN20100318004400315F.HTML> 참조.

757\_ 화폐 개혁에 관련된 처형에 대해서는 IV장 E.5.1도 참조할 것.

758\_ “North Korea bans foreign currencies,” USA Today, 2009년 12월 31일. [http://usatoday30.usatoday.com/money/world/2009-12-31-north-korea\\_N.htm](http://usatoday30.usatoday.com/money/world/2009-12-31-north-korea_N.htm) 참조.

759\_ Exhibit T8, *Rimjin-gang: News From Inside North Korea*, pp. 156~157 (2010년 1월 거리에 게시된 공식 법령의 사진)

760\_ KINU,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2), p. 341.

761\_ Scott Snyder, “North Korea Currency Reform: What Happened and What Will happen To Its Economy?,” p. 3. “Economic ‘Reform’ in North Korea: Nuking the Won,” Time, 2009년 12월 3일. <http://content.time.com/time/world/article/0,8599,1945251,00.html> 참조.

762\_ “North Koreans fear another famine amid economic crisis,” *Los Angeles Times*, 2010년 3월 25일. <http://articles.latimes.com/2010/mar/23/world/la-fg-korea-famine24-2010mar24>; “North Korea Backtracks as Currency Reform Sparks Riots,” *The Chosun Ilbo*, 2009년 12월 15일 참조. [http://english.chosun.com/site/data/html\\_dir/2009/12/15/2009121500361.html](http://english.chosun.com/site/data/html_dir/2009/12/15/2009121500361.html) 참조.

534 이 모든 증거에도 불구하고 북한 대표부는 2009년 12월 보편적 정례인권 검토 당시 “심각한 영양실조는 과거지사”였다고 주장하였다.<sup>763</sup>

535 비정부 인도주의단체인 “좋은벗들”은 2010년 1월 중순과 2월 중순 사이에 순천과 평성에서 수천 명의 아사자가 발생했다고 보고하였다. “좋은벗들”은 신의주 노동당의 통계를 인용해서 2010년 2월 20일 이후 300명 정도가 기아로 사망했으며, 1,000가구 이상이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림의 위기에 처해 있다고 언급했다.<sup>764</sup> 보고에 의하면 2010년 5월 조선노동당은 정부로부터 즉각적인 지원은 없을 것이라고 발표하면서, 당국은 “예상보다 악화된 식량 상황으로 인해 어떤 즉각적인 조치도 취할 수 없다”고 알렸다.<sup>765</sup> 최후의 수단으로 북한 당국은 2010년 시장(장마당)에 대한 제재를 풀었다.<sup>766</sup>

536 2011년 1월, 북한은 농촌 지역에서 심각한 영양실조 상태에 있는 아이들에 대한 촬영을 허가하였다. 세계식량계획은 중앙배급체계가 보통 성인 하루 필요량의 3분의 1에 지나지 않는 200g을 배급하고 있었다고 보고하였다.<sup>767</sup> 2011년 유엔은 북한 주민 600만 명 이상이 식량 구호가 절실한 상태라고 보고하였다.<sup>768</sup> 농장원의 상황은 식량 안정성이라는 측면에서 대단히 심각하였다.

763\_ A/HRC/13/13, para. 82.

764\_ Good Friends, “North Korea Today, No. 335,” 2010년 3월.

765\_ Good Friends, “North Korea Today, No. 340,” 2010년 6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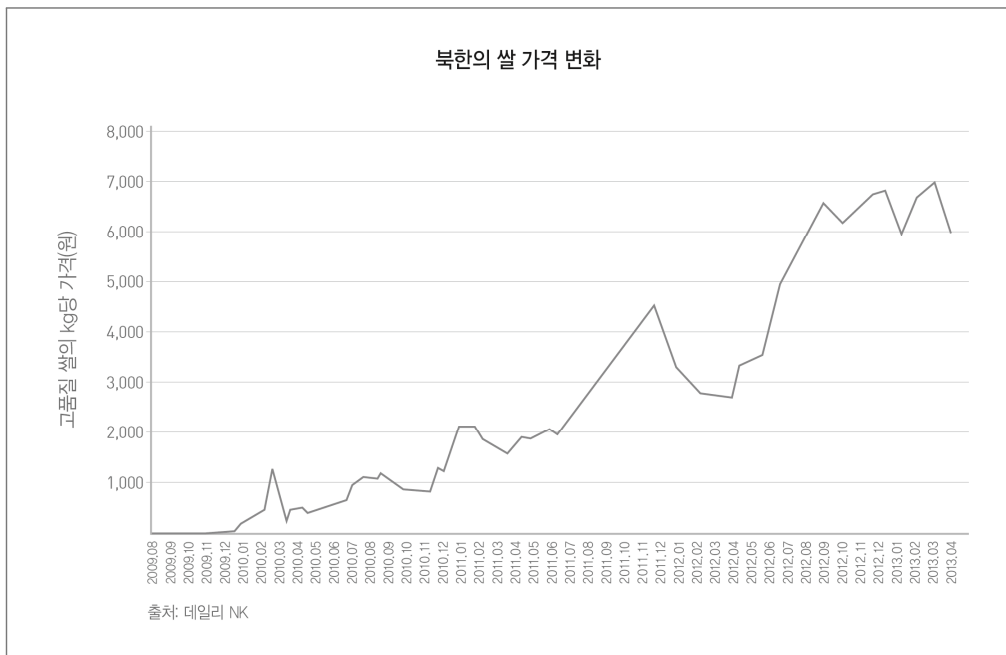
766\_ “North Korea lifts restrictions on private markets as last resort in food crisis,” *The Washington Post*, 2010년 6월 18일. <http://www.washingtonpost.com/wp-dyn/content/article/2010/06/18/AR2010061802837.html> 참조.

767\_ “Children pay for North Korea food crisis,” *Reuters*, 2011년 10월 6일. [https://www.youtube.com/watch?v=IOa0\\_Df62fo](https://www.youtube.com/watch?v=IOa0_Df62fo). 참조 또한 WFP는 영상을 배포함, “The Face of Hunger in DPR Korea,” 2011년 9월 12일. <https://www.youtube.com/watch?v=zAcwHZraZGs> 참조.

768\_ WFP/ FAO / UNICEF, “Rapid Food Security Assessment Mission To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2011년 3월 24일.

- 한 농장원의 증언에 의하면, 2011년 농장원들이 생산 할당량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농장은 그들을 먹일 의무가 없다”고 협동농장 관리자가 말하였다고 한다.”<sup>769</sup>

537 2013년을 포함하여 최근 북한이탈주민들은 조사위원회에서 북한의 최근 경제 및 식량난에 대해 증언하였다. 영양실조는 심각한 문제이며, 특히 농촌 지역에서 더 심하다. 시장에서 식량을 살 수는 있지만 가격 때문에 식량을 구입할 수 있는 사람들은 소수에 지나지 않는다. 역설적으로 자본주의를 강력하게 부정해왔던 국가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생필품을 구할 수 있는 능력은 여전히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으며, 그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다음 그래프는 북한에서의 쌀 가격 변화를 보여준다.



[그림 5] 2009년 8월부터 2013년 4월까지 북한의 쌀 가격 변화<sup>770</sup>

769\_ TBG032.

770\_ “Why the World Should Be Rallying For The ‘Yuanization’ Of North Korea,” *Business Insider*, 2013년 6월 22일. <http://www.businessinsider.com/north-korea-hyperinflation-dollarization-shift-2013-6> 참조.

**538** 북한에 대한 놀라운 보고들이 계속 나왔다. 2012년 황해북도와 황해남도에 서 1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굶어 죽었다고 한다.<sup>771</sup> 이 보고는 2011년 이 지역들을 방문했던 톰슨 로이터즈 재단(Thomson Reuters Foundation)의 인도주의 뉴스 서비스인 얼러트넷(AlertNet)이 제공한 정보를 확인해주는 것이다.<sup>772</sup> 최근 탈북한 사람들의 증언은 이 정보를 더욱 입증해준다.

- 어떤 증언자는 2012년 자기가 살던 지역에서 12명이 죽는 것을 보았다고 한다. 그 중 한 남자는 풀밖에 먹을 것이 없었다고 한다.<sup>773</sup>
- 청진에서 온 다른 증언자는 2012년에 배급을 전혀 받지 못했다고 하였다. 2013년 1월에 1kg, 3월에 1kg의 배급을 받았다고 한다. 그녀는 김정일이 집권한 후 식량사정이 더욱 나빠졌다고 하였다.<sup>774</sup>

**539** 2013년 북한 당국은 1월에서 5월까지 하루 400g, 6월과 7월에 390g의

771\_ Asiapress International, "North Korea: Report on the Famine in the Hwanghae Provinces and the Food Situation," 2012.

772\_ "Special Report: Crisis grips North Korean rice bowl," *Reuters*, 2011년 10월 7일. <http://www.reuters.com/article/2011/10/07/us-korea-north-food-idUSTRE7956DU20111007> 참조.

773\_ TBG032.

774\_ TLC042. 다른 곳에서도 이러한 진술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나온다. Amnesty International, "Starved of Rights": North Koreans forced to survive on diet of grass and tree bark, 2010년 7월 15일; Will Morrow, "Famine threatening millions in North Korea," World Socialist website, 2011년 10월 15일. <http://www.wsws.org/en/articles/2011/10/kore-o15.html> 참조; "North Korea faces famine: 'Tell the world we are starving'," *The Telegraph*, 2011년 7월 16일. <http://www.telegraph.co.uk/news/worldnews/asia/northkorea/8641946/North-Korea-faces-famine-Tell-the-world-we-are-starving.htm> 참조; "Hunger Still Haunts North Korea, Citizens Say," NPR, 2012년 12월 10일. <http://www.npr.org/2012/12/10/166760055/hunger-still-haunts-north-korea-citizens-say> 참조; "The Dangers of the Coming North Korean Famine," *US News Weekly*, 2012년 11월 12일. <http://www.usnews.com/opinion/blogs/world-report/2012/11/12/the-political-consequences-of-famine-in-north-korea> 참조; "The Cannibals of North Korea," *Washington Post*, 2013년 2월 5일. <http://www.washingtonpost.com/blogs/worldviews/wp/2013/02/05/the-cannibals-of-north-korea/> 참조; "The North Korea we rarely see," *CNN*, 2013년 4월 12일. <http://edition.cnn.com/2013/04/12/world/asia/north-korea-werarely-see/> 참조.



식량을 공급하였고, 2013년 1월부터 7월까지의 식량 공급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말하였다. 어떤 곳에서는 전시를 대비하여 비축해 두었던 비상 식량까지도 배급에 포함되었다고 보고되고 있다.<sup>775</sup>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Office for the Coordination of Humnitarian Affairs: OCHA)에 의하면, “2013년 중앙배급체계 배급은 2012년과 유사한 유형을 보이고 있다. 2011년보다는 공급량이 많아졌지만, 1인당 하루 573g이라는 목표치에는 한참 못 미친다.”<sup>776</sup> 뿐만 아니라 연령에 따라 배급량에 큰 차이가 있는데, 다음 표에서 볼 수 있다.

연령집단(세)	평균 배급량	
	390g/1인/1일	400g/1인/1일
< 1	65	67
1~4	130	134
5~6	195	200
7~10	265	270
11~16	330	340
17~59	460	475
> 60	395	400

[그림 6] 연령집단별 배급량과 평균 배급량<sup>777</sup>

775\_ “PDS Distribution Volumes Rise in 2013,” *Daily NK*, 2013년 8월 7일. <http://www.dailynk.com/english/read.php?catald=nk00100&num=10815> 참조.

776\_ OCHA, “DPR Korea 2013: Humanitarian Needs and Priorities,” p. 6.

777\_ FAO/WFP, “Crop and Food Security Assessment Mission to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2013년 11월 28일, p. 30.

## (f) 다양한 집단에 대한 영향

**540** 중앙배급체계의 실패와 장기간의 대규모 기아 상황은 다수의 북한 주민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 조사위원회는 특별히 더 심각한 고통에 시달리는 세 집단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았다.

### (i) 아동에 대한 영향

**541** 2009년 보편적 정례인권검토에 실린 국가보고서에 의하면 북한 당국은 “국가는 창건 이래로 어린이들은 이 나라의 미래이자 나라의 ‘왕’이라는 원칙적 입장을 변함없이 유지해왔다”고 보고하고 있다.<sup>778</sup> 하지만 아동은 절박한 식량 상황에 의해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집단 중 하나이다. 세계은행(World Bank)의 통계는 1990년에 태어난 신생아 1천 명 중 45명이 영아기를 넘기지 못하고 사망한 것에 비해 1999년에는 신생아 1천 명 중 58명이 영아기를 넘기지 못하고 사망했음을 보여준다.<sup>779</sup> 2002년 북한은 1993년 영아사망률이 1천 명 신생아 중 27명에서 1999년 영아사망률이 1천 명의 신생아 중 48명으로 증가했다고 발표하였다.<sup>780</sup>

**542** 굶주림과 기아는 많은 아동들을 사망에 이르게 할 뿐 아니라 아동의 장기적인 발달에도 심각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식량농업기구에 의하면,

영양실조는 특히 생애 초기 1,000일(임태에서 2세까지) 동안의 영아에게, 그리고 유아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치며, 아동이 성장하고 학습하는 능력에 있어서, 또한 이후 성

778\_ A/HRC/WG.6/6/PRK/1.

779\_ The World Bank Group, “Poverty reduction and Economic management/Human Development/Development Economics,” 2001년 5월, p. 27.

780\_ 2002년 5월 사회권위원회에 제출된 제2차 정기 보고서(E/1990/6/Add.35).

인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 장기적으로 회복 불가능한 영향을 미친다. 이는 국가와 사회전체의 발전 잠재력을 제한하고 국가로 하여금 보건 유지를 위한 고비용과 인도주의적인 부담을 갖게 한다.<sup>781</sup>

**543** 1998년 유엔의 영양실태조사는 9세 이하 아동들의 62%에서 발육장애가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sup>782</sup> 이러한 수준의 발육장애는 WHO의 등급에 의하면 “매우 높음”으로 간주되고 있다(그림 7). 발육장애에 대한 높은 비율은 기아가 1980년 대 말부터 시작되었음을 보여주는데, 1998년 발육장애로 판정된 9세 아동의 경우 1989년 이래 만성 영양실조를 경험했다고 볼 수 있다.<sup>783</sup>

지표	증상 범위(%)에 따른 영양실조의 심각성			
	낮음	중간	높음	매우높음
발육장애	< 20	20~29	30~39	>=40
체중 미달	< 10	10~19	20~29	>=30
소모성 질환	< 5	5~9	10~14	>=15

[그림 7] 5세 이하 아동의 증상 범위에 따라 영양실조의 심각성을 표시하는 WHO 등급표<sup>784</sup>

**544** 2002년 유엔아동기금(United Nations Childrens’s Fund: UNICEF)과 WFP의 협력으로 북한 당국은 다양한 단계의 샘플링 방법을 이용하여 7세 이하의 아동이 있는 6천 가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자료는 사회인구학적 변수, WFP

781\_ FAO, Committee on World Food Security, “Coming to terms with terminology” (CFS 2012/39/4).

782\_ 발육장애는 연령에 비해 신장이 작은 것에서도 알 수 있으며 만성 영양실조의 지표이다. 이것은 영양이 충분하며 건강한 어린이 집단의 체중 대 신장 비율과 비교해서 산정된다. 영양에 대한 유엔 상서 위원회가 펴낸 <세계 영양 상황> 제5차 보고서(2005)에 따르면 모든 어린이의 3분의 1 정도가 발육장애를 보인다(WFP, <http://www.wfp.org/hunger/glossary>). 발육장애는 밀레니엄 개발 목표의 성과를 측정하는 데 쓰인다. <http://www.wfp.org/hunger/glossary>). Stunting

783\_ EBG007.

784\_ World Health Organization, “Global Database on Child Growth and Malnutrition.” <http://www.who.int/nutgrowthdb/about/introduction/en/index5.html> 참조.

식량 지원, 각 가구에서 가장 어린 아동에 대한 신체 계측조사에 기초하여 수집되었다. 소모성 질환의 발현<sup>785</sup>은 1997년(16.5%)과 2002년(8.2%) 사이에 줄어들었지만, 발육장애의 발현은 변화가 없었다(38.2%, 39.4 %).<sup>786</sup>

**545** 199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심각한 경제난으로 북한 주민, 특히 여성과 아동의 건강이 더욱 악화되었다. 북한은 인권이사회에서 2000년대 초부터는 영양가 있는 식품의 공급과 영양 및 의료 서비스의 제공이 크게 개선되었다고 주장하였다.<sup>787</sup> 그러나 이 주장은 조사위원회가 수집한 정보와 배치되는 것이었다. 2009년 UNICEF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5세 이하 아동의 중도 및 고도 발육장애 비율이 가장 높은 18개국 가운데 하나였다. 2003년과 2008년 사이에 북한의 5세 이하 아동의 45%가 발육장애를 보였다. 동일 연령 집단에서 9%는 소모성 질환으로 고통 받고 있었고, 7%는 극도의 저체중이었다.<sup>788</sup> UNICEF의 후원하에 최근에 실시된 영양실태조사에 따르면, 북한의 2세 어린이 중 27.9%가 발육장애를 보였으며, 같은 연령집단의 8.4%는 심각한 발육장애를 보였다.<sup>789</sup> 따라서 WHO의 분류에 따르면 발육장애율이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785\_ 소모성 질환은 기아나 질병과 관련된 상당한 체중 감소를 낳은 심각한 생리적 과정으로 최근에 밝혀진 개념이다. 소모성 질환은 영양상태가 좋고 건강한 어린이 집단과 비교해서 체중 대 신장 비율을 비교해서 산정된다. 이것은 사망률과 강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위기의 심각성을 측정하는 데 많이 이용된다(WFP, <http://www.wfp.org/hunger/glossary> 참조).

786\_ Daniel J. Hoffman and Lee Soo-kyung, "The Prevalence of Wasting, but Not Stunting, Has Improved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Journal of Nutrition*, vol. 135, No. 3 (2005), pp. 452~466.

787\_ A/HRC/WG.6/6/PRK/1.

788\_ UNICEF, "Tracking Progress on Child and Maternal Nutrition: A survival and development priority," 2009년 11월, pp. 11 and 104. [http://www.childinfo.org/files/Tracking\\_Progress\\_on\\_Child\\_and\\_Maternal\\_Nutrition\\_EN.pdf](http://www.childinfo.org/files/Tracking_Progress_on_Child_and_Maternal_Nutrition_EN.pdf) 참조.

789\_ UNICEF,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Final Report of the National Nutrition Survey 2012," 2013년 3월. [http://www.unicef.org/eapro/DPRK\\_National\\_Nutrition\\_Survey\\_2012.pdf](http://www.unicef.org/eapro/DPRK_National_Nutrition_Survey_2012.pdf) 참조.

546 조사위원회가 영양 전문가에게 문의한 바에 따르면 영유아기에 성장 발달이 저해되면 성장하고 난 이후에 회복되거나 보상받을 수 없다. 만성 영양실조는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증가하다가 3세가 되면 정체되지만 2세 이후에는 회복이 불가능하다.<sup>790</sup> 발육장애는 생존과 신체 성장의 측면에서는 물론, 아동의 전반적인 발달에 있어서도 중대한 우려 사항이다.<sup>791</sup> 발육장애로 이어지는 만성 영양실조는 인지적 개발, 학업 성취, 그리고 성인이 되었을 때의 경제적 생산성과 여성의 출산에까지 장기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sup>792</sup> 발육장애의 세대간 영향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 키가 작은 저체중인 여성은 키가 작고 저체중인 아이를 출산할 위험성이 더 높다.<sup>793</sup>

547 또한 만성 영양실조 아동은 다양한 질병에 더 취약하다. 여러 연구들과 북한이 WHO, UNICEF, 국제적십자사 등 여러 국제기구에 보고한 바에 따르면, 2002년 북한의 5세 이하 아동의 60% 이상이 급성 호흡기 질환에 걸렸으며 20% 이상이 설사병을 앓고 있다. 동일 기간 동안 이러한 질병에 의한 사망률은 거의 80%에 달하였다. 의료기관을 방문한 아동의 약 40~50%는 오염된 물로 인한 질병을 앓고 있었다.

790\_ UNICEF, "DPRK National Nutrition Survey 2012," 2013년 3월.

791\_ Kristen Devlin, "Stunting Limits Learning and Future Earnings of Children," Population Reference Bureau, 2012년 10월. <http://www.prb.org/Publications/Articles/2012/stunting-among-children.aspx> 참조; World Bank, <http://worldbank.org/children/devstages.html>. 네덜란드 기근 출산 집단 연구(The Dutch Famine Birth Cohort Study)는 암스테르담 아카데미 메디칼 센터 임상 역학 및 생리통계학과, 산부인과, 내과가 영국 사우샘프턴 대학 MRC 환경 역학 유닛과 공동으로 낸 보고서로, 이에 따르면 기근을 경험한 임산부가 낳은 아이는 당뇨병, 비만, 순환기계 질병, 미세단백뇨, 기타 건강 장애를 겪기 쉽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기근 중 임신한 임산부가 낳은 아이는 당연히 평균보다 작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이런 아이가 어른이 되어 아이를 갖게 되면 그 아이는 역시 평균보다 더 작다는 것이다. 이런 데이터는 어머니가 경험한 기근이 일종의 후생유전적 변화를 일으켜 다음 세대로 전해진다는 점을 시사한다.

792\_ Kathryn G. Dewey and Khadija Begum, "Long-term consequences of stunting in early life," *Maternal and Child Nutrition*, vol. 7, suppl. 3 (2011), pp. 5~18.

793\_ Cesar G. Victora and others, "Maternal and child undernutrition: consequences for adult health and human capital," *Lancet*, vol. 371 (2008).

장마철이 되면 그 비율은 60~70%로 급증하였다.<sup>794</sup>

**548** 북한의 심각한 식량상황으로 집 없는 아이(소위 ‘꽃제비’)의 숫자가 급증하였다.<sup>795</sup> 이들은 부모를 잃은 아이들이거나, 또는 가족들이 먹여 살릴 수 없고 국가로부터 지원도 받지 못해서 시장이나 기차역 대기실에 버려진 아이들이다.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20조에 따르면, “일시적 혹은 항구적으로 가족환경을 박탈당한 아동은 국가로부터 특별한 보호와 원조를 부여받을 권리가 있다.” 2002년 5월에 아동권리위원회에 제출한 두 번째 보고서에서 북한 당국은 부모를 잃은 어린이에게 가족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가족적, 사회적 차원에서 아동의 양육에 더 큰 관심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북한 당국은 대부분의 고아들이 시설로 보내져 당국의 보호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였다.<sup>796</sup>

**549** 조사위원회가 들은 바에 따르면, 북한의 고아원에는 여러 유형이 있는데, ‘일반’이라고 부르는 보통의 고아원 체계가 있고, ‘계부모’라고 불리는 시설들, 그리고 길거리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구호소’가 있다.<sup>797</sup>

**550** 1997년에는 당국의 허가 없이 이동하거나 특히 음식을 찾아 다니는 아동들을 엄중 단속하기 위해 각 군에 “9·27 상무”라고 불리는 시설들이 설립되었다.<sup>798</sup> 이는 “길거리 아이들을 보호한다는 목적으로 세워진 시설들이 사실상 어린이 보호시설이라기보다는 구금시설에 유사하며, 시설에 수용된 아동들은 교육도 받지

794\_ Center for Children Medicine Support Inc., “Symposium on the Health Conditions of North Korean Children,” 세종문화회관, 2002년 11월 14일.

795\_ 집 없는 아이의 상황에 대해서는, 또한 IV장 C.1 참조.

796\_ CRC/C/65/Add.24.

797\_ 비공개 면접 내용.

798\_ 이 이름은 김정일이 이런 시설을 지으라고 지시했던 1995년 9월 27일이라는 날짜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고되었다. Amnesty International, “Starved of Rights,” p. 16.

못하고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있다”는 보고가 있다.<sup>799</sup> 이런 시설들에 대한 인도주의 기구들의 접근은 차단되었다.<sup>800</sup>

- 서울 공청회에서 김혁 씨는 자신이 1995년에 아버지에 의해 고아원에 보내졌을 때의 상황을 진술하였다. 그에 따르면 1997년에 “75명의 고아 중에 24명이 굶어 죽었습니다 … 고아원에 제공되는 식량보조는 전혀 없었습니다. 당시 우리가 먹었던 것은 옥수수를 다 먹고 난 나머지 부분이었습니다. 우리는 옥수수 속대를 말린 다음 갈아서 가루로 만들었습니다. 그것으로 음식을 해서 먹으면 영양가도 전혀 없을 뿐 아니라 그것 때문에 변비에 걸렸습니다 … 고아원에는 먹을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1996년과 1997년에 고아원은 더 이상 아이들에게 먹일 것이 없어서 최대한 많은 아이들을 내보내려고 하였습니다. 차라리 길가에서 구걸하는 것이 아이들에게 나올 거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고아원에 앉아서 굶어 죽은 것보다는 나올 것이기 때문입니다.”<sup>801</sup>
- 한 증언자는 11살 때 다른 여섯명의 아이들과 함께 간동에 있는 ‘구호소’로 보내졌다. 그녀는 고난의 행군 동안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한 아이들이나 부모가 도망치면서 남겨진 아이들이 그 시설로 보내졌다고 말한다. 그녀는 ‘구호소’에서 그곳에 온지 1년이 된 아이들을 만났다. 처음 시설에 도착했을 때 새로 온 아이들은 의자 위에 세워져 두꺼운 가죽벨트로 구타당하였다. 아이들은 천장 위에 작은 창문들이 달린 지하실로 보내졌다. 그녀는 14~15세 정도 되는 남자 아이 세 명과 12세 여자 아이 한 명과 한 방에 갇혔다. 아이들은 하루 종일 앉아 있어야 하고 노는 것은 금지되었다. 그들이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은 일주일에 한 번 변기를 비우러 갈 때뿐이었다. 아이들은 시설을 떠나고 싶은 마음에 스스로 모래를 먹거나 손가락을 삼켜 병에 걸리기도 하였다. 하루 2~3번의 식사는 무 약간과 밀가루 약간이 들어 있는 짠 죽을 조금 먹는 것이 전부였다. 그녀는 늘 배가 고팠다고 회고했다.<sup>802</sup>

799\_ Citizens' Alliance for North Korean Human Rights (NKHR), “Child is the King of the Country, Briefing Report on the Situation of the Rights of the Child in the DPRK,” 2009, p. 22.

800\_ 예를 들면, Doctors Without Borders, “MSF Calls on Donors to Review Their Policy in DPRK,” 1998년 9월 30일. <http://www.doctorswithoutborders.org/press/release.cfm?id=460> 참조.

801\_ 서울 공청회, 2013년 8월 22일, 오전(00:08:57).

802\_ TSH020.

551 ‘꽃제비’의 공공 서비스, 특히 보건 서비스 이용실태는 매우 우려할만한 수준이다.

- 함경북도에서 간호사로 일했던 한 증언자는 그녀가 근무했던 병원에 기본적인 필수 품이 없어서 사망한 많은 ‘꽃제비’들을 보았다. 그녀는 조사위원회에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 “나는 많은 꽃제비들이 죽는 것을 보았습니다. 병원에서 그들을 지원하고 위생상태를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나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몸을 감쌀 옷이 없어서 온기를 찾아 석탄공장 옆에서 잠을 잤습니다. 난로에서 사용한 석탄을 꺼내서 부수어 석탄 더미를 만드는데, 아이들은 석탄 더미에 깔리거나 질식하곤 하였습니다.”<sup>803</sup>

552 2009년 화폐 개혁 이후, 북한의 경제 상황이 악화되면서 ‘꽃제비’의 수가 눈에 띄게 증가하였다.<sup>804</sup>

- 북한의 전직 고위 관료에 따르면, 2010년 8월에 김정은은 최고지도자가 되기 위한 준비를 위해 2010년 9월 28일 평양에서 열린 제3차 당대표자회 이전에 평양의 ‘꽃제비’와 노숙자를 소탕할 것을 국가안전보위부와 인민보안부에 지시하였다. 보위부와 보안부는 지방에 있는 조직까지 불러들여 긴급 소탕 부대를 조직하였다. 잡힌 ‘꽃제비’들은 잘못의 경중에 따라 일반 감옥이나 노동단련대, 혹은 고향의 “갱생 시설”로 보내졌다. 작전 후 보위부와 보안부는 ‘꽃제비’와 미등록 주민의 상당수가 체포되고 고향으로 보내져 상기 시설에 수감되었다고 보고하였다.<sup>805</sup>
- 위원회는 집없는 아이들을 비밀리에 촬영한 영상을 검토하였다. 영상에는 2012년 평양의 시장에 있는 ‘꽃제비’와 2011년 다른 지역에 있는 ‘꽃제비’가 식량을 찾아다니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sup>806</sup>

803\_ TSH051.

804\_ KINU,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3), p. 431.

805\_ TJH004.

806\_ 2013년 8월 29일 도쿄 공청회에서의 이시마루 지로 씨 증언 참조.



553 위원회는 북한 당국이 모든 지역의 어린이들에 대한 인도주의 기구와 NGO의 접근을 지속적으로 차단하고 있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또한 접근이 허용된 경우에도 인도주의 기구들이 시설과 병원에 수용된 어린이에 대한 표준적인 평가를 실시하는 것을 금지하는 경우가 많다.

### (ii) 여성에 대한 영향

554 북한은 여성차별철폐협약의 당사국으로, 농촌 지방 거주 여성에 관해서도 특정한 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sup>807</sup>

555 앞서 언급했듯이<sup>808</sup> 성 평등(gender equality)을 지향하는 법률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가정과 직장에서 성 평등은 실현되지 않고 있다. 전통적으로 가정에서 식량을 구하고 준비할 책임이 전적으로 여성에게 있었다. 이러한 성 역할은 기근을 겪는 동안에도 변함이 없었다. 그러나 식량을 구하기는 더 어려워졌다.<sup>809</sup>

556 1990년대에 경기가 악화됨에 따라 여성의 경제적 부담도 증가하였다. 남성에게는 당국이 지정하는 공장, 기업소에 보고할 철저한 의무가 있었고, 이는 더 이상 기능하지 않는 공장, 기업소에서 급여나 배급이 줄어들거나 아예 중단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sup>810</sup> 국가 고용으로부터 배급과 급여의 삭감 및 남성에 대한 제한으로 여성들은 기존에 담당하던 가사 이외에 경제활동도 담당하도록 요구되었다. 동시

807\_ 여성차별철폐협약 제14조.

808\_ IV장 B 참조.

809\_ Hazel Smith, *Hungry for Peace: International Security, Humanitarian Assistance, and Social Change in North Korea*, p. 89.

810\_ Lim Soon-hee, "The Food Crisis and the Changing Roles and Attitudes of North Korean Women," p. 38.

에 사회보장제도가 붕괴되면서 가사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해 제공되던 메커니즘이 크게 축소되어 여성의 가사 부담이 급증하였다. 예를 들어 보육과 교육시설의 운영 시간이 단축되거나 서비스 자체가 아예 없어져 버렸다.<sup>811</sup> 가족의 생존을 위해 필요한 식량을 찾는 여성의 역할 자체가 더욱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여성이 담당해야 하는 경제활동, 가사, 그리고 육체적 노동량이 더욱 증가하였다.

**557** 많은 여성들은 필요한 물품을 얻기 위해 스스로 경제활동을 시작하였다. 식량 배급과 노임이 주어지지 않는 경우, 가정을 위해 음식을 구하려면 주로 시장(private market)을 이용해야 했다. 하지만 동시에 북한 당국의 시장 활동을 통제하기 위한 엄격한 규제가 실시되고 있다.<sup>812</sup> 40세 이상의 여성만이 시장에서 거래에 참여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인해 대부분의 젊은 여성들은 식량을 구하기가 더욱 어려워졌다. 이에 따라 당국에 고용될 수도 없고 시장에서 일할 수 없게 된 북한의 젊은 여성에게 성의 상업적 매매만이 생존을 위한 유일한 수단이 되었고, 성 매매가 증가하게 되었다.

**558** 여성이 시장에 접근하기 위해 직면해야 하는 육체적인 문제들도 있다. 시장에서 거래를 하려면 무거운 짐을 옮겨야 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교통이 통제되기 때문에 여성들이 30~50kg이나 되는 짐을 등에 메고 시장과 시장, 또는 시장에서 집까지 이동하거나, 심지어 물건을 팔기 위해 먼 지역까지 이동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여성들이 물건을 자전거로 옮기기 시작하자, 당국은 여성이 자전거를 이용하는 것을 제한하기 시작했고, 여성이 자전거를 타거나 바지를 입었다는 이유로 벌금을 부과하였다.<sup>813</sup>

811\_ KBA, *2012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p. 337.

812\_ *Ibid.*, p. 341.

813\_ NKHR, *"Status of Women's Rights in the Context of Socio-Economic Changes in the DPRK, Briefing Report"*, 2013년 5월, p. 28.

559 식량난으로 많은 여성들이 북한을 떠나고 있다.<sup>814</sup> 식량을 구하는 것이 여성들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기 때문에, 2002년 이후 여성들은 북한을 떠나 중국으로 식량과 고용 기회를 찾아 떠나는 북한 주민의 대다수를 차지한다.

- 서울 청문회에서 P씨는 중국에서 네 번이나 본국으로 송환되었던 경험을 말하였다: “국경을 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적어도 북한에서 그냥 죽는 것보다는 나았습니다. 나는 중국에 가면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수단을 얻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sup>815</sup>

560 식량난 동안 지하 경제에서 여성의 활동은 북한의 경제적 자립에 중요한 기여를 하였다. 하지만 남성 우위의 가부장적 가족 문화로 인해<sup>816</sup> 북한의 여성, 특히 어머니들은 건강이 심각하게 악화되었다. 이는 그들이 다른 가족들을 위해 식사를 거르거나 식사량을 줄였기 때문이다. 어머니들은 가족들을 먹이기 위해 하루 한 끼도 못 먹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sup>817</sup>

### (iii) 하급 군인에 대한 영향

561 북한은 오랫동안 비대한 군대 조직에 적절한 수준의 음식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었다.<sup>818</sup> 그러나 장교들에 대한 식량 제공은 항상 우선 순위에 있었다.

814\_ 여성 인신매매 관련 이슈에 대해서는 IV장 C 참조.

815\_ 서울 공청회, 2013년 8월 21일, 오후(01:32:00).

816\_ Lim Soon-hee, “The Food Crisis and the Changing Roles and Attitudes of North Korean women,” p. 26.

817\_ Hazel Smith, “Crimes against Humanity in North Korea? Unpacking ‘Common Knowledge’ about Violations of the Right to Food,” KINU, *UN Human Rights Mechanisms & Improvement of Human Rights Conditions in North Korea*, (Seoul, 2013), pp. 235, 245.

818\_ KINU, *Relations between corruption and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3, p. 35. 헤이젤 스미스는 “군대의 장교라해서 특히 많은 배급을 받는다는 증거는 없었지만, 일반 주민들과는 달리 이런 사람들은 일년 내내 어느 정도 기본적인 식량 배급을 보장받는다. 하지만 이런 것 역시 기본적인 배급이며, 백만 명이 넘는 군

**562** 일반 병사들에 대한 식량의 부족은 1970년대 후반부터 시작되어 1990년대 초에 더욱 가시화되었다. 군대에 배급이 불충분해서 굶어 죽은 병사들에 대한 여러 증언이 있었다.

- 런던 공청회에서 조선인민군 병사 출신의 최중화 씨는 이렇게 증언하였다:  
“1987년에 나 자신이 영양실조에 걸렸습니다. 군대에 있는 사람들은 왜 음식과 생필품이 제공되지 않는지 의아해 했습니다. 그들은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고립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알고 있었습니다.”<sup>819</sup>
- 전직 조선인민군 장교에 따르면 1990년대 초부터 군대에서 식량이 부족해지기 시작하였다. 1991년에 애국미 기부 운동이 추진되었는데, 가구 당 10kg의 쌀을 절약해서 국가에 기부하여 군대로 보내는 것이었다. 그는 당시 병사들의 3~4%가 영양실조였다고 추정하였다.<sup>820</sup>
- 런던 공청회에서 전직 인민군 대위였던 김주일 씨는 병사들에 대한 식량배급이 삭감되고 있었다고 설명하였다:  
“병사들에게는 하루 800g의 식량이 배급되었습니다. 김일성 사후에 김정일이 집권하고 나서 배급량은 600g으로 줄었는데, 그 양은 밥 한 공기가 약간 넘는 양이었습니다. 수북하게 한 공기가 아니라 밥그릇보다 약간 높이 올라오는 정도였습니다.”<sup>821</sup>

**563** 일반 병사들에 대한 음식의 제공은 앤드류 내치어스(Andrew Natsios)가 말한 “농업의 군사화”로 인해 추가적인 영향을 받았다.<sup>822</sup> 기근이 북한 전역을 휩쓸자 북한 당국은 1997년부터 농가의 일손을 돕고 식량의 비축을 방지하기 위해 군인들을 국영 농장으로 보냈다.<sup>823</sup> 농장원들은 군인들에게 식량을 뇌물로 바쳤다. 따라

대의 일반 군인들은 종종 배고픔을 겪을 때가 많다. 또한 이런 군인들의 가족은 군인 가족이라 해서 더 특별 대우를 받는 것은 아니므로 역시 배고픔을 겪는다”고 말한다. Hazel Smith, *Hungry for Peace: International Security, Humanitarian Assistance, and Social Change in North Korea*, pp. 87~88.

819\_ 런던 공청회, 2013년 10월 23일, 3세션(00:25:55).

820\_ TJH027.

821\_ 런던 공청회, 2013년 10월 23일, 4세션(00:24:18).

822\_ Andrew Natsios, *The Great North Korean Famine*, p. 117.

823\_ Stephen Haggard and Marcus Noland, *Famine in North Korea*, p. 111; Andrew Natsios, *The Great*

서 농촌 지역으로 배치되었는지 도시 지역으로 배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군인들의 식량 사정이 달라지게 되었다. 군인들에게는 식량 배급의 부족분을 채우기 위해 시장 활동에 참가하거나 다른 수단을 강구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다.

- 런던 공청회에서 최중화 씨는 자신과 같은 병사들은 “스스로를 챙길 수 있는 자유가 없었기 때문에 당국만 쳐다보면서 굶어야 했습니다.”고 말하였다.<sup>824</sup>

**564** 일반 병사들에게 배당된 배급량은 부패한 고위 장교의 사익을 위해 전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 전직 조선인민군 장교였던 김주일 씨는 그가 경험한 부패의 유형을 이렇게 설명하였다: “부패로 인해 … 일정량이 고위 장교에게 주어질 경우 최하위 병사들이 배급을 받는 차례가 되면 거의 배급할 것이 남아있지 않게 되었습니다.”<sup>825</sup>
- 도쿄 청문회에서 이시마루 지로 씨는 고위 장교들이 식량을 횡령해서 시장에 팔아 사익을 챙겼다고 말하였다.  
“위계의 가장 꼭대기에서 여단장들이 원하는 만큼을 다 가져가고 나머지를 아래로 내려 보냅니다 … 일반 병사들에게는 아주 한정된 양의 식량만이 돌아가는 것입니다.”<sup>826</sup>

**565** 군대 내의 기아로 인해 민간인의 식량에 대한 권리도 영향을 받았다. 1990년대 초부터 굶주린 병사들이 당국이 제공한 형편없는 배급량의 부족분을 보충하기 위해 농가나 민간에서 식량을 훔치기 시작하였다.<sup>827</sup>

- 김주일 씨는 위원회에 주민들로부터 식량을 훔치는 일이 일상화되었으며, 장교들은

North Korean Famine, pp. 117 ff.

824\_ 런던 공청회, 2013년 10월 23일, 3세션(00:54:12).

825\_ 런던 공청회, 2013년 10월 23일, 4세션(00:24:53).

826\_ 도쿄 공청회, 2013년 8월 29일, 오후(01:51:19).

827\_ KINU, *Relations Between Corruption and Human Rights in North Korea*, p. 36.

이러한 행동을 독려하기까지 했다고 말하였다. 그에 따르면,

“병사들은 죽지 않기 위해 훔쳐야 했습니다 … 군대에 들어오기 전에 나는 군인들이 명예로운 일을 수행하고 인민을 보호한다고 세뇌 당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사실과 전혀 다르다는 것을 곧 깨닫게 되었습니다 … 병사들이 식량과 생필품을 일상적으로 훔쳐야 한다는 사실은 군대가 정말로 인민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지에 대해 의문을 갖게 하였습니다. 군대라기보다 해적 집단에 가까웠습니다.”<sup>828</sup>

- 최종화 씨는 증언에서 식량 부족으로 군인들은 주민에 반하는 일들을 하기 시작했고, 식량을 구하기 위해 무슨 일이든 하였다고 말하였다. 밤에는 민간에 내려가 식량과 가축을 훔쳤다. 한번은 조선인민군 부대가 밤에 시장에 물건을 팔러 가는 세 명의 민간인 여성을 멈춰 세운 뒤, 군인들은 이들에게 짐을 내려 놓고 옷을 벗고 뒤돌아서 노래를 부르도록 명령하였다. 노래가 끝나고 뒤를 돌아 보니 군인들이 물건과 옷을 챙겨서 달아난 뒤였다. 최씨에 따르면 고위 장교들은 상부로부터 식량을 훔친 병사들은 엄하게 벌해야 하고 병사들이 자신의 부대를 이탈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는다는 지시를 받았지만 약탈의 문제는 근절되지 않았다:

“하지만 그들이 우리에게 대한 통제를 더욱 강화하고 군 부대를 떠나지 못하게 하더라도 우리는 떠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병영을 둘러싼 담에 철조망을 설치하겠다는 얘기도 있었지만, 그 어떤 것도 굶주린 군인들이 담을 넘어 도망치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는 게 우리의 입장과 반응이었습니다.”<sup>829</sup>

- 한 증언자는 함경북도 청진에서는 이미 1980년대에 군대가 민간을 약탈하였다고 증언하였다.  
“협동 농장에서 일 년 내내 일해도 군대가 와서 가져가니까 식량은 충분하지 않습니다.”<sup>830</sup>

**566** 북한 당국은 굶주린 군대를 먹일 능력이 없다는 것을 오래 전부터 인식하고 있었다. 1996년 12월 연설에서 김정일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고 한다:

“조선인민군은 식량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고 있다. 우리가 일시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는 것을 알고 적들은 우리의 사회주의도 망할 거라고 헛소리를 하면서 틈만 나면

828\_ 비공개 면접 내용.

829\_ 런던 공청회, 2013년 10월 23일, 3세션 및 비공개 면접 내용.

830\_ TSH004.

우리를 침입하려고 노리고 있다. 우리에게 군량이 없다는 걸 아는 순간 미 제국주의자들이 쳐들어 올 것이다.”<sup>831</sup>

군인들조차도 굶주리고 있다는 걸 알면 서양이 침략해 들어올 것이라고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우려했을 때 이미 “기근은 영양적 위기를 넘어 국가적 안보 문제로 변해 있었다.”<sup>832</sup>

**567** 지금도 여전히 군대에 제공되는 식량 배급은 터무니없이 불충분하다. 이 문제는 이시마루 지로 씨가 도쿄 청문회에서 위원회에 보여준 영상물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영상은 최근에 북한에서 비밀리에 촬영된 것으로, 굶어 죽어가는 군인들의 모습을 생생하게 담고 있다.<sup>833</sup> 북한 당국은 여전히 군대를 먹여 살릴 능력이 없다. 당국이 일반인들에게 군대에 식량을 기부할 것을 강요함에 따라 민간의 식량상황은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 있다.

• 한 증언자는 이렇게 증언하였다:

“군인들은 배가 고파서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 2013년 3월에는 함경북도 무산에 있는 27연대에서 식량과 관련된 다툼이 있었습니다. 한 병사가 밤에 먹다 남은 밥을 먹다가 걸렸습니다. 다른 병사들이 그를 구타했고, 굶주린 상황에서 이런 식의 취급을 받는 것이 화가 난 그 병사는 총을 빼 들고 여러 병사들을 죽였습니다.”<sup>834</sup>

## 2. 지리적 격리와 차별의 결과

**568** 다른 인권과 마찬가지로, 적당한 식량에 대한 권리는 인종, 피부색, 성별,

831\_ “Kim Jong Il Berates Cadres for Food Anarchy” (한국어), 월간조선, 1997년 3월 20일, pp. 306~317; “Kim Jong Il, Speech at Kim Il Sung University, December 1996,” *British Broadcasting Corporation*, 1997년 3월 21일.

832\_ Andrew Natsios, *The Great North Korean Famine*, p. 40.

833\_ 도쿄 공청회, 2013년 8월 29일, 오후(01:40:00).

834\_ TBG027.

언어, 종교, 정치적 및 기타 견해, 국적 혹은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혹은 기타 지위에 상관 없이 차별 없이 보장되어야 한다. 식량에 대한 접근과 식량을 얻는 수단과 권리에 대한 차별은 국제법 위반에 해당한다. 비차별 원칙은 국가의 식량배급체계뿐 아니라 국제적인 인도주의적 원조의 분배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569**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위원회가 지적하였듯이,

국가는 경제적 구조조정 과정, 경기침체, 기수 상황 또는 기타 요인으로 심각한 자원 부족에 직면하는 경우에도 적당한 식량에 대한 권리가 특히 취약한 집단 및 개인에 대하여 실현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sup>835</sup>

이러한 맥락에서 취약한 인구에 대한 우선순위를 미루는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

**570** 북한은 창건 이래 ‘성분’에 의한 사회적 구분체계가 모든 주민들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 성분이 낮은 사람은 중앙배급체계에 의한 배급량과 구성에 있어서 차별을 받아 왔다.

**571** 위에서 본 바와 같이,<sup>836</sup> ‘성분’ 제도는 교육과 고용 기회를 결정하는데 중요하다. 그리고 누가 어떤 일을 하느냐가 중앙배급체계에서 받는 배급량을 결정한다. 예를 들면 특별 보안 기구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하루 800g의 식량을 할당 받는 데 비해 일반 노동자들은 600g을 받을 수 있을 뿐이다.<sup>837</sup> 실제로 성분이 높은 사람들은 식량에 대해 특권적 접근이 가능해 그 차이는 더 크다.

• 앤드류 내치어스(Andrew Natsios) 씨는 워싱턴 공청회에서 위원회에 다음과 말하였다.

835\_ 사회권위원회, 일반논평 제12호, para. 28.

836\_ IV장 B 참조.

837\_ 한국 통일부, “Food rations by class: Understanding North Korea 2005,” Education Center for Unification, 2006년 3월, pp. 245~247.



“계급제도 기반의 체계로 인해 상류 계급 사람들은 더 많은 자원에 접근할 수 있으며, 계급이 낮은 사람들은 차별당한다.”<sup>838</sup>

- 농업 연구기관에서 일했던 전직 북한 관료는 북한의 식량 생산과 분배 체계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중앙배급체계는 노동자 보상 체계이지 사회 서비스 체계가 아닙니다. 사회의 통치자로서, 만일 식량이 부족하다면 가장 중요한 사람들에게 먼저 주게 됩니다. 당국은 인민군, 당과 같은 중심부에 식량의 대부분을 주었습니다. 나머지가 다른 사람들에게 배분되는 것입니다.”<sup>839</sup>
- 양강도 혜산에서 온 한 증언자는 지위가 높은 사람은 보통 사람들보다 세 배 이상의 식량을 받는다고 말하였다.<sup>840</sup>

**572** 일단 식량이 부족해지면 당국은 정치 체계 및 그 지도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하다고 간주되는 사람에게 우선순위를 두고, 나머지는 소모품처럼 희생된다. 증언에 의하면 식량은 당, 중요 산업, 중요 군대 및 보안기관 관료, 그리고 수도인 평양으로 흘러 들어갔다. 배급량이 달라지는 것은 식량의 양뿐만 아니라 질도 관계가 있는데, 예를 들면 백미와 같이 선호되는 곡물은 주로 중요한 곳에 할당된다.

- 평양에서 온 전직관료는 “기근은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전처럼 무엇이든 구할 수 있었습니다”라고 말하였다. 그 관료는 정치적 위원회 및 인민위원회의 당 간부, 보위부 관리, 군수공장의 노동자들에게 적절한 배분이 주어 지도록 지시가 내려지곤 했었다고 말하였다.<sup>841</sup>
- 한 전직 평양 소재 연구자는 “기근 동안 평양에는 굶어 죽은 시체가 없었습니다. 시골 친척을 방문했을 때 그런 시체를 보았습니다. 그 시체를 보고 나서 정권을 불신하게 되었습니다.”<sup>842</sup>

838\_ 워싱턴 공청회, 2013년 10월 31일, 오전(00:23:35).

839\_ TLC033.

840\_ TAP001.

841\_ TGC004.

842\_ TBG004.

- 최고지도자 및 그 가족을 호위하는 임무를 맡은 엘리트 군부대인 조선인민군 호위사령부 요원이었던 한 증언자는 기근 동안에도 호위사령부 사람들은 “좋은 식량”을 받았다고 한다. 그들은 하루 세끼 식사와 주 2회의 고기를 제공받았다.<sup>843</sup>
- 전직 보위부 요원은 자기는 특권이 많았다고 인정한다. 특히 기근 동안에도 그는 상당히 질 좋은 쌀을 받았다고 한다. 이 관리의 말에 의하면 대부분의 식량은 평양, 군대 및 보안기관으로 간다고 한다. 그는 1kg의 배급(돼지고기, 생선, 기름, 쌀 포함)을 받았다고 한다.<sup>844</sup>
- 평양에서 공부하고 있었던 한 증언자는 그녀의 고향보다 수도에서의 삶은 훨씬 더 나았다고 말하였다. “당국은 다른 곳은 다 굶주려도 평양은 잘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평양의 식량 배급은 함경남도 제 고향에서 받았던 것보다 훨씬 더 많았습니다. 질도 좋았고요. 물론 최고로 좋은 것은 최고위 간부들 몫이었죠.”<sup>845</sup>

**573** 성분이 낮은 사람들이 특정 지리적 지역에 집중되면, 지리적 차원은 북한의 식량 상황과 그 근처에 자리한 차별에 연관된다.

**574** 평양과 같은 곳에는 엘리트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식량 사정에 있어서 특권적인 혜택을 받는다. 반대로 멀리 떨어진 동북부 지방은 전통적으로 사람들이 추방되는 지역이어서 1950년대와 60년대에 숙청된 사람들과 전쟁포로 등이 여기로 보내진다.<sup>846</sup> 당국이 제일 먼저 버리는 사람이 이들이라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앞서 보았듯이 1994년, 중앙배급체계에 크게 의존하고 있던 동북부 4개도, 즉 함경북도, 함경남도, 양강도, 강원도가 배급체계에서 단절되었다.

- 한 전문가는 이 문제를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대기근은 절대적으로 식량이 부족해서 생긴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분배 불평등

843\_ TSH019.

844\_ TLC040.

845\_ TJH019.

846\_ IV장 C 참조.

으로 인한 것이기도 합니다. 분배 우선순위의 차이는 성분에서 옵니다. 평양의 ‘로알 패밀리’는 잘 먹을 수 있지만, 성분이 낮은 사람들이 사는 함경북도 같은 곳에는 식량이 적게 전달되거나 전혀 가지 않습니다.”<sup>847</sup>

**575** 북한이 결국 국제 원조를 요청했지만, 조사위원회는 그렇게 해서 받은 원조를 평양 등 특수한 지역에만 집중해서 배분하기를 원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방대한 양의 증언과 정보를 입수하였다.<sup>848</sup> 인권단체들이 동북부 지역으로 가는 것은 허락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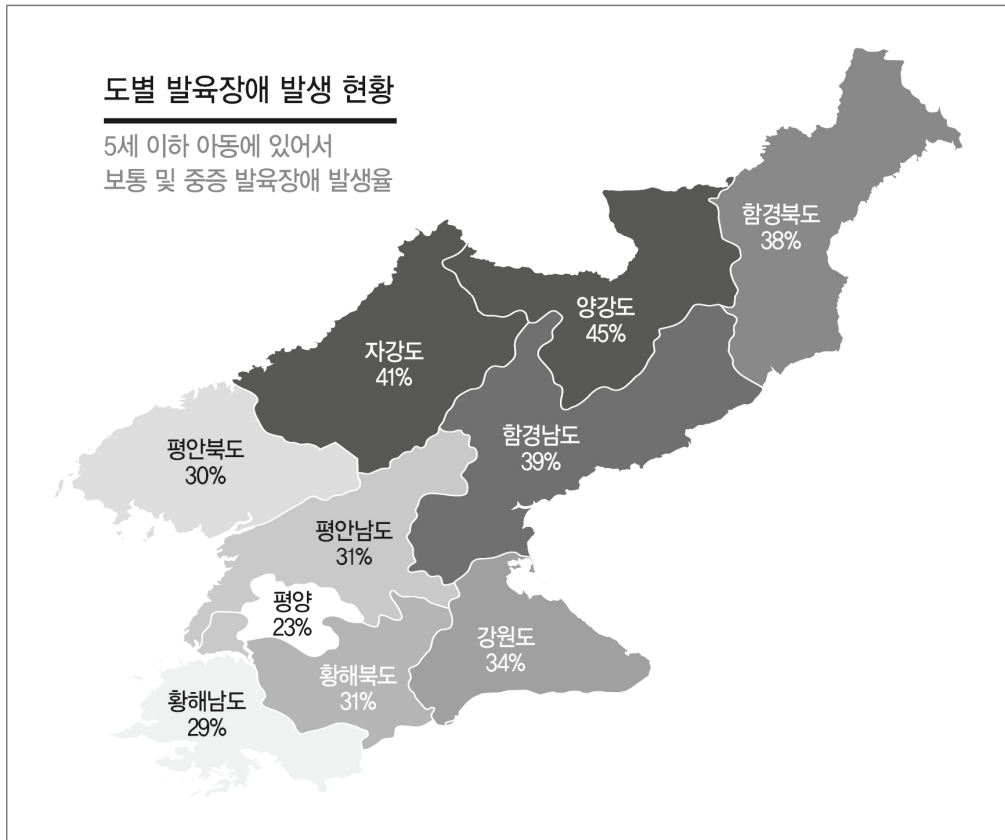
- 워싱턴 공청회에서 앤드류 내치어스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제가 조사한 바와 WFP에서 입수한 증거에 의하면 기근 동안 동북부 지역은 순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 지역은 북한 체제 안에서 가장 성분이 낮은 사람들이 거주하기 때문에 식량을 그곳으로 보내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이곳은 19세기 왕조시기도 정치적 반란분자들이 보내지는 곳이었습니니다. 유배지였죠. 이전에도 이곳에서는 반란이 있었으며, 따라서 이곳은 항상 반동적이고 위험한 지역으로 간주되어 왔고, WFP, NGOs, 국제적십자사는 기근이 있었던 2년간 이 지역으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sup>849</sup>

**576** 조사위원회는 북한의 식량 가용성의 감소에는 지리적, 기후적, 기타 요소들이 작용했다는 것을 인정한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지역간 차별의 양상은 발육장애 및 급성 영양실조의 발생률을 보여주는 다음 지도에서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

847\_ EJK0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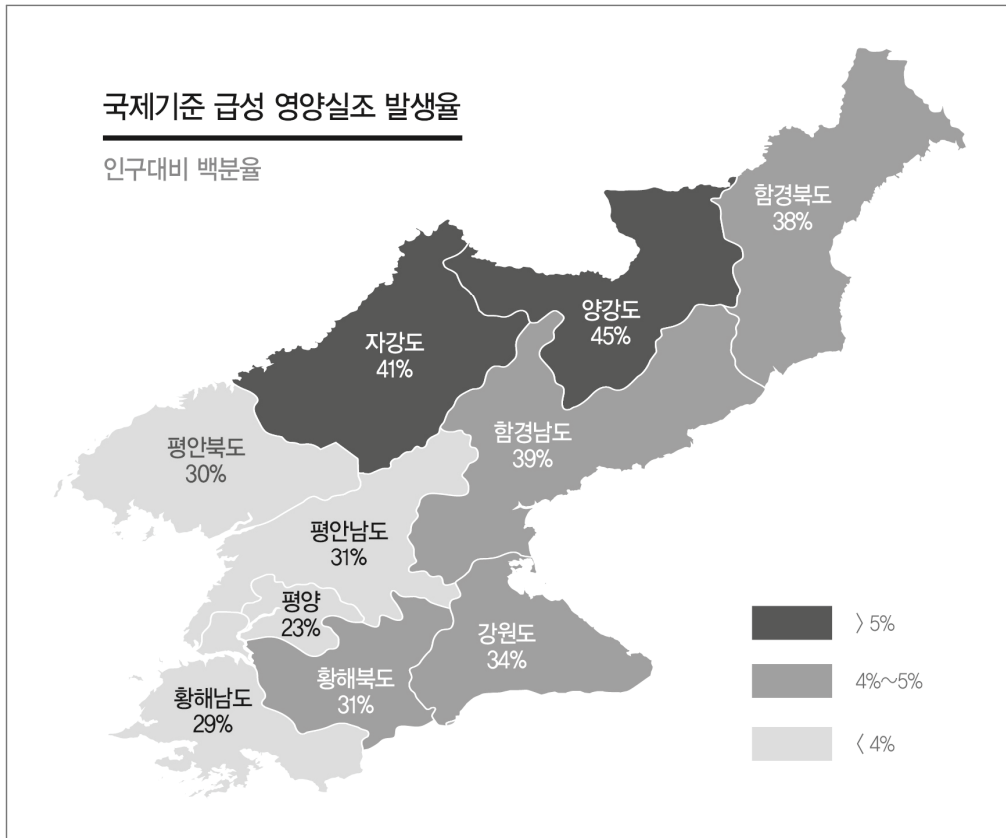
848\_ 자강도 동신과 희천에서 프로그램을 시작하고자 했던 민간단체 CARE가 북한 당국과 교섭했던 영상 참조. “The 1997 Famine Still Affecting North Korea Today.” <https://www.youtube.com/watch?v=30-2sPONGEw> 참조.

849\_ 워싱턴 공청회, 2013년 10월 31일, 오전(00:23:53). 보다 구체적 내용은 Andrew Natsios, *The Great North Korean Famine*, particularly p. 89 이후.



[그림 8] 도별 발육장애 발생 현황<sup>850</sup>

850\_ WFP 제공 지도 DPRK, April 2011 in "Overview of Needs and Assistance," 2012.



[그림 9] 국제기준 급성 영양실조 발생율<sup>851</sup>

### 3. 인식과 은폐

577 식량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당국은 관련 정보를 외부 세계와 자국 주민에게까지 숨겨왔다. 이것은 세 가지 측면에서 기아를 악화시켰다. 첫째, 북한 내의 기아 현실을 숨김으로써 북한은 주민들의 정보접근 권리를 짓

851\_ OCHA, "DPR Korea 2013, Humanitarian Needs and priorities," p. 4. <http://www.wfp.org/sites/default/files/DPRK%20Overview%20of%20Needs%20And%20Assistance%202012.pdf> 참조.

밟았으며 초기에 북한 주민들이 나름대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저해하였다. 사람들이 배급이 다시 시작되기를 기다리면서 자기 집에서 굶어 죽어갔다는 증언이 상당히 있었다. 둘째, 정보를 숨긴 것은 여러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국제 식량 원조를 지연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셋째, 자료를 은폐함으로써 국제사회가 북한에 인도주의적 지원 및 개발 지원을 제공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578**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위원회에 따르면 국가는 적어도 굶어 죽는 것은 면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기본적 수준을 충족시키지 못할 때 국가는 사회권 규약을 위배하는 것이다.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혹은 어떤 것을 배제하는 것이 식량에 대한 권리 침해인가 하는 것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국가가 이 의무를 따르지 못하는 것과 따르려 하지 않는 것을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식량에 대한 접근을 할 수 없었던 사람들에게 정말 자원이 부족해서 그들이 접근할 수 없었다고 국가가 주장하려 한다면, 그 국가는 모든 것에 앞서 그런 최소한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했음을 증명해 보여야 할 것이다.<sup>852</sup> 스스로 어쩔 도리가 없는 이유로 인해 이런 의무를 이행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는 국가는 a) 이 경우가 그에 해당되며, b) 국가가 필요한 국제적 지원을 얻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했고 그런 지원이 주어지는 데 어떠한 방해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할 필요가 있다.

**579** 북한 당국은 1995년 지원을 호소하기 훨씬 이전부터 당국의 식량 상황이 악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배급량을 줄이거나 “하루 두끼 먹기 운동”같은 운동을 당국 주도하에 하였다는 것은 북한 당국이 국제적 지원을 요청하기 보다는 적절한 식량에 대한 주민의 권리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보를 선호했음을 보여준다.

852\_ 사회권위원회, 일반논평 제12호: The right to adequate food (1999), para. 17. 또한 사회권위원회, 일반논평 제3호, para. 10 참조.

580 전직 북한 고위 관료였던 황장엽 씨는 그의 회고록에서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1994년에도 북한 주민들이 굶주렸지만, 그로 인해 죽기까지 하였다는 소식은 없었다.”<sup>853</sup> 사실 북한은 식량 부족에 대한 모든 추정들을 일체 부인해왔다. 1994년 북한 농업위원회 대변인은 서구 언론에 발표되는 식량 부족에 대한 보도를 “북한의 사회주의 이미지를 폄하하려는 사악한 사기극”이라고 비난하였다.<sup>854</sup> 그는 북한이 식량을 중요한 전략적 자원으로서 대량 비축해두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581 조사위원회에 증언한 전직 북한 관료에 의하면 평양의 고위 당국자들은 기근의 세부 사항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고 한다. 각 도는 정기적으로 사람이 몇 명이나 굶어 죽었으며 집을 나간 사람들이 몇 명인지 보고해야 하였다. 그런 문건들은 비밀에 붙여졌다.<sup>855</sup>

- 워싱턴 공청회에서 앤드류 내치어스 씨는 학교 아동들의 신장과 체중을 측정하는 시스템 역시 국가가 좌우하고 있던 중요한 정보출처라고 말하였다. 북한 군대에 들어가는 18세 소년의 최단신장 기준을 낮춘 것은 이런 자료에 입각해서라고 말하였다.<sup>856</sup>

582 조사위원회는 이런 인식이 분명히 최고지도자에게까지 전달되었을 것으로 본다. 전직 관료였던 북한이탈주민들은 도 차원에서 상세한 보고서를 평양으로 보냈다고 진술하였다. 김정일 또한 “군대 우선,” “현장 지도”차 여러 지역을 방문했었다.<sup>857</sup> 그 과정에서 북한 내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채지 못했을 리 없다.

853\_ 황장엽 회고록(Hwang Jang-yop's memoirs) (Zeitgeist 출판, 2006, 데일리 NK 번역).

854\_ 북한 농업위원회 대변인, North Korean Policy Trend, No. 27 (January 1994), p. 47 Lee Suk, *The DPRK famine of 1994~2000: Existence and Impact* (KINU, 2005), p. 8 인용.

855\_ TBG022, 전직 북한 외무성 관계자; TLC033.

856\_ 워싱턴 공청회, 2013년 10월 31일, 오전.

857\_ 공식적인 북한 자료는 김정일이 군대와 기타 작업장을 자주 방문해서 “군인 및 인민들과 대화하고 그들의 생활 환경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본다”고 강조해왔다. 1964년에서 2002년까지 김정일은 “적어도 8,460단 위를 방문하는데 4,200일 이상을 소요해왔다”고 한다. “Kim Jong Il's Hobbies,” KCNA, 2002년 5월 24일

- 런던 공청회에서 전직 인민군 장교였던 김주일 씨는 김정일이 자신의 부대를 시찰하러 와서 군인들이 식량부족으로 고통받는 것을 알았다고 말하였다.  
 “1996년 김정일이 강원도 철원군을 방문했습니다. 그는 직접 일개 대대를 시찰해서 군인들에게 주어지는 식사를 보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김정일에게 죽 한 그릇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릇을 뒤집어 엎자 바닥에는 겨우 쌀이 세 톨 있었습니다.”  
 김정일은 아주 화가 나서 대대장의 지위를 박탈하고 그를 영창으로 보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부대에서 주어지는 식량 사정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sup>858</sup>

**583** 당국이 정보를 은폐하는 관행은 가장 취약한 계층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효율적인 맞춤형 국제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조달하는데 지장을 초래하였다.<sup>859</sup> 인권 조약기구들도 북한 당국에게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와 지표를 반복해서 요청하였다.<sup>860</sup> 북한 당국에서 나오는 데이터, 지표, 수치들은 대체로 믿을 수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왔다.

**584** 국제 기구가 발표하는 데이터는 주의 깊게 취급되어야 한다.<sup>861</sup> 데이터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무작위적이며 자유로운 샘플 선택을 할 수

---

참조. <http://www.kcna.co.jp/item/2002/200205/news05/24.htm>, “In the period from 1995 to 2001, he gave on-site guidance to 1,300 units, covering some 116,700 kilometres.” “Splendid fruition of Songun politics,” KCNA, 2003년 4월 9일 참조. <http://www.kcna.co.jp/item/2003/200304/news04/10.htm> 참조.  
 858\_ 런던 공청회, 2013년 10월 23일, 4세션(00:25:27).

859\_ 몇몇 기관들은 자료의 부족 및 이용 불가능으로 인해 이 분야의 작업에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을 걱정한다. “초등학교 학생들은 음식 및 책·연필·공책 같은 기초 필수품이 필요하다. 정부는 정보통신 기술에 대한 자료를 전혀 밝히지 않고 있어 컴퓨터를 쓰는 사람들이 몇 명인지조차 알 수 없다.” (ICT, UNESCO, <http://www.unescobkk.org/education/ict/themes/policy/regional-country-overviews/north-korea/>).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Country Cooperation Strategy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2009-2013,” p. 16 참조.

860\_ CRC/C/15/Add.88 and CEDAW/C/PRK/CO/1 참조.

861\_ 휴먼 라이츠 워치(Human Rights Watch)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북한은 국내 생활의 기본적 사실들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발표하는 일이 거의 없다. 어쩌다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자료는 종종 제한적이고 일관성 없으며 별 쓸모 없는 것들이 많다. 북한은 외국인이 국내에서 조사하도록 허용하는 일이 거의 없다. 이 보고서를 위한 조사도 이런 한계 내에서 수행된 것이다.” Human Rights Watch, “A Matter of Survival,” 2006년 5월.



없기 때문이며, 그를 위해 북한 영토의 대부분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주 통제된 상황에서, 북한 내에서도 제한된 지역에서 수집된 데이터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발표된 데이터는 북한 전체에 대한 개괄적인 추론에 불과하다.

#### 4. 북한의 작위(作爲)와 부작위(不作爲)

##### (a) 변화의 기피

585 (국제)인권법은 특정 경제체제 혹은 영양학적 식량 생산 전략을 처방해주지는 않는다. 하지만 국가가 선택할 때는 국제인권법에 의거하여 국가의 의무를 다하는 방향으로 선택해야 한다. 조사위원회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위원회와 동일한 견해를 갖는다.

각 국가는 자신의 접근법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하지만, 모든 국가는 국민이 기아에서 벗어나 적당한 식량을 섭취할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약에 명시되어 있다. 이에 따라 국가는 그런 목표를 규정하는 인권 원리에 기초하여 모든 국민에게 식량과 영양 안전성을 확보해줄 국가 전략 및 그에 부응하는 정책과 목표를 채택해야 한다. 국가는 또한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자원 및 그 자원을 사용할 가장 비용 효율적인 방식을 찾아야 한다.<sup>862</sup>

586 적당한 식량에 대한 권리에 관해서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위원회는 국가 식량 전략이 지켜야 할 인권 원리를 규정하였다.

식량에 대한 권리를 형성하고 시행하는 것은 신뢰가능성, 투명성, 국민 참여, 분권화, 입법 역량 및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원칙에 완벽히 부응할 것을 요구한다. 빈곤을 퇴치

862\_ 사회권위원회, 일반논평 제12호.

하고 모든 이에게 만족스러운 생계를 보장해주는 것을 포함한, 모든 인권을 실현하는 데는 선정(good governance)이 필수적이다.<sup>863</sup>

**587** 2009년 보편적 정례인권검토에서 북한 당국은 다음과 같이 보고하고 있다.

1990년대 초 사회주의 시장이 해체되고, 1990년대 중반 시작된 일련의 자연 재해에 의한 엄청난 재정적, 경제적 손실은 이 나라의 경제발전에 심각한 난관을 초래하였다. 가장 심각한 난관은 식량 공급 조건의 악화였다. 1996년 한 해 동안 식량 318만 톤의 공급이 부족하여 배급량을 크게 감소시켰다. 결과적으로 주민들의 일반적인 건강상태가 악화되었다. 유아 및 아동 사망률이 증가하고 유아 설사, 호흡기 감염 및 결핵이 발생하였다.<sup>864</sup>

**588** 국가가 통제할 수 있는 수준 이상의 요인들이 식량 상황에 영향을 미쳤다고는 하지만, 기근의 원인을 오로지 이런 요인들에게만 돌림으로써, 북한은 적당한 식량에 대한 권리를 온전히 실행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된 체계를 국민들에게 강제해 온 리더십의 책임을 묵과하고 있다. 더욱 중요한 것인 북한 당국이 이 체계의 명백한 비효율성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589** 위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sup>865</sup> 북한은 그 농업을 강도 높게 산업화하여 산업적 생산품과 연료에 의존하도록 만드는 길을 택하였다. 이로 인해 북한의 농업은 외부에서 투입되는 요소에 의존하게 되었으며, 그런 요소들 중 대부분을 북한은 1990년대 초기까지 우호적인 외국으로부터 저렴한 가격으로 받아들여 왔다. 북한 농업 생산에 대한 계량경제학적인 분석 결과, 헤더 스미스(Heather Smith)와 이핑 후앙(Yiping Huang) 등의 학자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863\_ *Ibid.*

864\_ A/HRC/WG.6/6/PRK/1.

865\_ IV장 D.2.a 참조.

위기를 촉발시킨 가장 큰 요인은 1980년대 후반 사회주의 블록과의 무역이 교란되면서 농업 투입 요인이 급격히 감소했기 때문이다 … 북한 정책 결정자들이 강조하는 기후적 요인이 농업에 미친 영향은 부차적인 것이다.<sup>866</sup>

**590** 북한은 매년 심한 폭우와 태풍에 시달리고 있다. 조사위원회와 면담한 몇몇 전문가들은 농업 정책이 이렇게 통상 일어나는 자연재해의 영향을 더욱 악화시켰다고 한다. 조금이라도 경작할 땅을 넓히기 위해 숲이 파괴되고 산이 계단식 밭으로 바뀌어졌다. 연료의 부족에 대처하기 위해 나무를 잘라 에너지원으로 썼다. 이 상황은 폭우가 쏟아져 산사태를 일으키면서 더욱 악화되었다. 토양이 침식되어 하상에 축적되면서 비교적 약한 비에도 홍수가 일어날 수 있게 되었다.<sup>867</sup> 토지를 집약적으로 이용하고 비료를 많이 사용하는 것은 토양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조사위원회는 비료의 과다 사용으로 북한의 경작 가능한 땅이 점점 더 빠르게 감소하였다는 증언을 전문가들로부터 들었다.<sup>868</sup>

**591** 북한은 이러한 결정을 내린 데 대한 책임이 있다. 하지만 국가의 더 큰 책임은 이렇게 어마어마한 실패에도 불구하고, 이 고도로 집단적인 농업 체계를 포함하여, 이 경로를 계속 유지해나가려는 결정을 내렸다는 점에 있다. 이 체계를 개선하고, 농장원들에게 더 많이 생산하게 하기 위한 유인을 개발하려는 노력은 거의 행해지지 않았다.

866\_ Heather Smith and Yiping Huang, "Trade disruption, collectivisation and food crisis in North Korea," in Peter Drysdale, Yiping Huang, and Masahiro Kawai, eds., *Achieving High Growth: Experience of Transitional Economies in East Asia* (London, Routledge, 2003).

867\_ Lee Suk, "Food Shortages and Economic Institution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EBG003; Jean François, "Corée du Nord: Un régime de famine," *Esprit* (February 1999), p. 5.

868\_ EBG002, ELC007.

**592** 저명한 북한 전문가 안드레이 란코프(Andrei Lankov)는 북한의 농업 시스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농장을 강제로 국유로 전환한 것은 거의 모든 공산주의국가의 공통된 특징이지만 북한 국영 농장에는 몇 가지 독특한 점이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농장원들에게는 아주 작은 텃밭 정도만 가꿀 수 있도록 하였다는 것이다. 스탈린 체제하의 소련에서는 보통 농부들이 자기 경작지를 가지고 있어서 때로는 그 면적이 1,000㎡를 넘기도 했는데, 김일성 시기 북한에서 개인 경작지는 100㎡를 넘을 수 없었으며, 그만한 경작지조차도 모든 농장원들이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다른 방법으로는 수입이나 식량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북한의 농장원들은 당국의 밭을 경작하는 데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쓸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sup>869</sup>

**593** 최근의 논문에서 란코프는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만일 북한 당국이 1990년대 중국이 했던 것과 같은 노선으로 토지 개혁을 하였다면 단 한 사람의 북한 주민도 굶어 죽지 않았을 것이다. 1970년대 중국은 북한의 협동농장에 해당되는 국영 농지를 모두 해체하여 농부들에게 분배하였다. 중국 농부들이 자기 소유의 땅에서 일하기 시작하자 국가의 농업 생산은 급속히 증가하였다. 토지 개혁을 시행한지 5~6년 만에 중국의 식량 생산은 1.3배로 늘어났다.<sup>870</sup>

**594** 이와 대단히 유사한 결론이 서울 공청회에서 농업 전문가 김영훈 박사에 의해 제시되었다. 그는 북한의 협동 농장은 농장원에게 인센티브가 전혀 없는 대단히 비효율적인 것이라고 말하였다.<sup>871</sup> 조사위원회가 농장원이었던 북한이탈주민을 포함한 북한 주민들에게서 받은 증언들 역시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sup>872</sup>

869\_ Andrei Lankov, *The Real North Korea*, p. 36.

870\_ Andrei Lankov, "North Korea Makes Mistake by Not Emulating China-Style Land Reform," *Radio Free Asia*, 2013년 10월 14일. <http://www.rfa.org/english/commentaries/famine-10142013151315.html> 참조.

871\_ 서울 공청회, 2013년 8월 21일, 오전.

872\_ TLC033, TBG032.

595 개인 농지 면적의 증대 등 당국이 주도한 개혁이 시작되긴 했지만, 체제의 기본적 원리는 거의 변화되지 않고 있다.<sup>873</sup> 북한 당국은 식량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체제를 근본적으로 구조조정하지는 않았다. 그 대신 초점을 특정 위기 관리에만 두었으며 여전히 북한 당국이 상황을 통제하려 해왔다. 대규모 기아가 최악이었던 시기 이래 북한의 경제 및 식량 상황이 나아진 점이 있다면 그것은 주로 주민의 자발적인 노력에 의한 것이었으며, 북한 당국이 주도한 개혁에 의한 것은 아니었다. 심지어 공식적으로 일반 시장을 수립했던 것조차 1990년대 중반 생겨난 비공식적 시장에 대한 통제권을 회복하기 위한 시도로 간주될 수 있다. 한 전문가는 “시장은 북한 당국의 최대 딜레마이다. 북한 당국은 시장을 혐오하며 아마도 두려워하는 듯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시장을 폐쇄할 수는 없다.”<sup>874</sup>

596 체제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기를 꺼려하는 태도의 기저에 주민들에 대한 통제를 상실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점은 명백하다. 워싱턴 공청회에서 앤드류 내치어스 씨는 김일성이 했던 말에 대해 언급했는데, 여기서 북한 당국의 정치적 계산을 읽을 수 있다.

“기근이 시작되자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당국은 알고 있었고, 주민을 보호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덩샤오핑이 김일성에게 서구에 문호를 개방하고, 시장 경제로 이행하며 경제를 개혁해야 한다고 말하자 김일성은 이렇게 말하였다. ‘창문을 열면 파리들이 들어올 것이다… 파리들을 들이면 경제는 통제되지 않을 것이다. 우리 힘으로 통제할 수 없을 것이다.’”<sup>875</sup>

597 이후 김정일이 선포한 내용 역시 북한은 고통 받는 주민의 현실보다는 정

873\_ Andrei Lankov, *The Real North Korea*, p. 194.

874\_ John Everard, “The Markets of Pyongyang,” Korea Economic Institute, Academic Paper Series, Vol. 6, No. 1, 2011년 1월.

875\_ 워싱턴 공청회, 2013년 10월 31일, 오전(00:16:26).

치적 권력과 이념을 우선시하였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북한에서 이미 대규모 기아가 진행되고 있던 1995년 발표된 논문에서 김정일은 이념이 최우선임을 강조하였다:

이념의 보루가 무너지면, 사회주의는 아무리 경제적 및 군사적 힘이 강하다 하더라도 스스로를 지키지 못하게 될 것이다. 반면 바로 그렇기 때문에 사회주의의 달성에 있어서 이념이 엄청난 역할을 수행할 수도 있게 되는 것이다.<sup>876</sup>

**598** 1996년 12월 김일성종합대학에서 행한 연설에서 김정일은 구조적 개혁을 하기를 거부하는 자신의 입장에 대하여 정치체제와 리더십을 보호하고 동유럽에서 일어났던 것과 같은 유형의 대중 시위를 예방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정당화하였다. 김정일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사회주의 사회에서 식량의 문제는 사회주의적 방법에 의해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만일 당이 사람들이 알아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내버려둔다면 농장원과 상인들만 잘 살게 될 것이고 이기주의가 팽배할 것이며 계급 없는 사회의 사회적 질서는 붕괴될 것이다. 그러면 당이 인민의 기반을 잃게 되어 폴란드나 체코슬로바키아 같은 와해를 겪게 될 것이다.<sup>877</sup>

**599** 2009년 보편적 정례인권검토에서 북한 당국은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다:

국가는 모든 국민에게 식량을 공급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정책을 추구한다. 국가는 식량행정법, 노동법, 식량분배의 규칙에 의거하여 값싸고 시기 적절하며 평등한 식량을 모든 노동자, 사무 노동자 및 그들에게 의존하는 사람들에게 공급해왔다. 하지만 1990년대 중반 이래 거듭해서 국가를 강타한 심각한 자연재해로 인해 곡물생산이 크게 감소하면서 국민들 생활 전반 및 특히 적절한 식량에 대한 그들의 권리가 심각하게

876\_ Kim Jong-il, "Giving Priority to Ideological Work Is Essential for accomplish Socialism," 1995, <http://www.korea-dpr.com/lib/101.pdf> 참조.

877\_ John Everard 번역, "The Markets of Pyongyang," 1997년 4월 월간조선 인용.

훼손되었다. 정부는 국제적 인도주의적 지원을 통하여 다량의 식량을 획득, 긴박한 수요에 부응하는 한편 농업 생산량을 증대하여 자국의 힘으로도 식량문제를 해결할 조치를 취해왔다.<sup>878</sup>

**600** 2012년 6월, 북한 당국은 일련의 경제개혁을 단행하였다고 한다. 이 개혁에 대해 조사위원회는 제한된 정보만을 얻을 수 있었다. 공식적으로 “우리식 경제관리체계(Economic Management System in Our Style)”라는 표제로 공표된 이 개혁의 주된 개념은 운영권을 당국으로부터 개별적 공장, 사업장, 농장으로 옮기는 것이었다.<sup>879</sup> 농업 부문에 관한 한 농장원들은 전체 경작의 70%를 주고 30%를 자신들이 갖도록 하는 것이었다. 과거에는 당국이 한 해 수확량에 관계 없이 일정량의 식량을 거둬갔다. 새로운 계획하에서는 당국의 몫이 각 농장에서 수거된 생산량의 5년치 평균을 가져가는 것이다. 이에 따라 수확이 많은 해에는 농장원들이 더 많은 몫을 갖게 될 것이고, 수확이 줄어들면 더 적게 갖게 될 것이다.<sup>880</sup> 위원회는 개혁의 성과 혹은 개혁이 실제로 어느 정도 시행되었는지 평가할 수 없다.

**601** 2014 신년사에서 최고지도자 김정은은 “경제 사업의 지도와 관리에 있어서 결정적인 개선”을 요구하였다. 하지만 농업 개혁과 경제 개방을 위한 방법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sup>881</sup>

878\_ A/HRC/WG.6/6/PRK/1, para. 56.

879\_ “*Uli sig-ui gyeongjegwanlibangbeob-ui wanseong-eul/naegag gwangyeja inteobyu sahoejuuiwonchig gosu, guggai tong-iljeogjido*,” [Completing our way of economy management method—Interview with a government official] *Choson Sinbo*, 10 May 2013, <http://chosonsinbo.com/2013/05/0510th-4/> 참조. Andrei Lankov, “How economic reforms are changing N. Korea’s farming industry,” *NK News*, 2 January 2014 참조, <http://www.nknews.org/2014/01/how-economic-reforms-are-changing-north-korea-s-farming-industry/>

880\_ “North Korea’s ‘New Economic Management System’: Main features and Problems,” *Korea Focus*, October 2013, [http://www.koreafocus.or.kr/design2/layout/content\\_print.asp?group\\_id=105092](http://www.koreafocus.or.kr/design2/layout/content_print.asp?group_id=105092) 참조.

881\_ KINU Center for North Korean Studies, “Analysis of North Korea’s 2014 New Year’s Address by Kim Jongun and Domestic and Foreign Policy Prospects,” Online Series CO 14-01.

- 북한 외부에서 구할 수 있는 정보에 기초하여 앞서 말한 경제개혁에 대해 연구했던 농업 전문가 김영훈 박사는 그것이 뚜렷한 개선 효과를 가져올지에 대해 회의적이다. “김정은 정권 역시 (김정일과 마찬가지로)자본이 부족해서 체제 개혁이 진행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저는 별로 나아지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sup>882</sup>
- 평양대학교 연구원이었던 또 다른 농업 전문가는 새로운 체제하에서도 역시 수확의 70% 이상을 국가에 바쳐야 하므로 농장원들은 더 많이 생산할 유인이 없다. 뿐만 아니라, 북한이 세계 경제로부터 고립되어 있기 때문에 생산을 효율적으로 증대시키는 데 필요한 새로운 기술에 접근할 수가 없다.<sup>883</sup>

**602** 안드레이 란코프는 이 개혁이 불확실성에 가득 찬 것이었지만, 첫 번째 결과는 상당히 고무적이었다고 말하였다. 그는 최근 북한을 방문한 중국 전문가가 이 개혁이 실시되자마자 생산량이 30% 증가하였다고 말하였다는 점을 들었다.<sup>884</sup>

### (b) 대안적 견해의 차단 및 처벌

**603** 주민들, 특히 농장원들과 대화를 하고 참여적 접근법을 채택하여 식량 상황에 대한 해법을 찾으려 하는 대신, 북한은 위기 기간 내내 이념적인 세뇌 공작을 통해 비판을 미리 배제하려고 하였다.

**604** 1991년 당국은 “하루 두 끼 먹기 운동”을 전개하였다. 나중에 고난의 행군이라는 수사를 붙여 점점 심해져 가는 경제적 궁핍을 이겨낼 수 있도록 사람들을 도와준다는 명분으로 그들이 대안적 경제 체계에 대해 생각하고 공개적으로 토론하는 것을 막으려 하였다.<sup>885</sup> 이런 맥락에서 그 상황의 근거에 자리하는 정치적 이유에

882\_ 서울 공청회, 2013년 8월 21일, 오전(03:22:00).

883\_ TLC033.

884\_ Andrei Lankov, “How economic reforms are changing N. Korea’s farming industry,” NK News, 2014년 1월 2일. <http://www.nknews.org/2014/01/how-economic-reforms-are-changing-north-koreas-farming-industry> 참조.



대한 어떠한 비판적인 발언도 정치적 범죄로 간주되어 가혹하게 처벌되었다.

- 한 증언자는 당국이 결국에는 주민들이 식량을 받게 될 것이라고 계속 약속했으며, 심지어 위대한 지도자조차 음식을 넉넉히 드시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고 증언하였다. 사람들은 식량 상황에 대한 정기적인 강연에 강제로 참여해야 했으며, 그러는 사이에 실제로 식량이 지급되는 것은 연기되고 있었다. 이런 강연의 내용은 특히 주민들이 충분한 음식을 먹지 못하기 때문에 위대한 지도자가 잠을 잘 자지 못한다는 내용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sup>886</sup>
- 또 다른 증언자는 기근 동안 북한 주민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의무적 강연과 교육이 굶주리는 주민들에게 종종 강제로 부과되었다고 한다. “고난의 행군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이걸 버텨내야 한다고 교육을 받았습니다. 아무도 불평할 수 없었습니다. 그랬다가는 정치범수용소로 보내질 테니까요.”<sup>887</sup>

**605** 북한은 또한 조국이 견디고 있는 역경의 원인 제공자로 외국 세력, 특히 한국과 미국을 비난하였다.

- 고위직 관료의 말에 따르면, 자신은 사람들이 굶주려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이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말한다. 그는 당이 말하는 것을 모두 곧이곧대로 들어, 북한이 식량 결핍에 시달리는 것도 “자본주의 국가가 북한에 제재 조치를 취했기 때문”이라고 믿었다고 한다.<sup>888</sup>
- 런던 공청회에서 김주일 씨는 남북한 사이의 비무장지대 가까운 곳에서 군인들은 종종 한국 국민이 휴전선 가까운 곳에서 풍선에 실어 보내는 라디오, 쌀, 설탕이 든 뼈라를 발견하곤 하였다고 말하였다. 군인들은 한국에서 보내는 것을 조금이라도 먹으면 병에 걸려 “살이 썩어 들어가게” 된다고 세뇌 교육을 받았다고 한다.<sup>889</sup>

885\_ Kongdan Oh and Ralph C. Hassig, *North Korea Through the Looking Glass* (Brookings Institute, 2000), p. 55 참조.

886\_ TLC013.

887\_ TBG028.

888\_ TCC014.

889\_ 런던 공청회, 2013년 10월 23일, 4세션(00:59:30)

606 당국의 정책과 프로그램에 대해 이견은 자유롭게 표현할 수 없었다. 조사 위원회는 체제의 심각한 비효율성 및 이를 개혁할 필요성에 대해 알면서도 그 사안을 논의할 수 없었다는 증언을 여러 사람으로부터 들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려고 시도조차 하지 않았는데, 이는 그로 인해 자신과 자신의 가족에게 생길 수 있는 결과에 대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 전직 평양 대학의 연구원의 말에 따르면, 북한 당국 관료들은 협동 농장 체제가 작동하지 않고 있지만, 진정한 개혁이 시도조차 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는 이렇게 지지부진한 상황에 좌절감을 느껴 최고지도자에게 직접 편지를 썼다고 한다. 편지에 그는 협동 농장과 개인 농장의 생산성을 비교하고 후자가 전자보다 5배 더 생산적이라고 말하였다고 하였다. 그는 이런 연구결과를 입증하는 문헌들도 첨부하였다. 그 결과로 그는 협박을 당하였다.  
“3개월 후 중앙당 요원이 찾아 왔습니다. 그는 저보고 학문이나 하지 정치에 참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sup>890</sup>

### (c) 식량의 징발과 몰수

607 다양한 상황 안에서 일반 주민들은 생존 수단을 빼앗긴다. 농장원들은 법적 근거도 없이 수확물을 빼앗긴다. 주민들은 식량을 강탈당하고 그들을 위한 해외 원조를 빼앗긴다. 조사위원회는 군인들이 식량을 탈취하는 관행에 대해 증언을 통해 확인하였다.

- 전직 군인에 의하면,  
“북한 군대에서는 차례로 돌아가면서 다른 군인들을 위한 식사를 마련해주어야 합니다. 제 차례가 되었을 때 저의 지휘관은 쌀을 좀 주기는 했지만 양념이나 반찬을 만들 거리는 주지 않았습니다. 나의 식사 당번 전날 밤, 우리 부대에서 가장 고참

890\_ TLC033.

인 병사 중 하나가 나를 깨웠습니다. 다른 병사들은 이미 일어나 있었습니다. 고참은 자루를 주면서 마을로 가서 훔칠 수 있는 것을 훔쳐오라고 했습니다. 약탈을 아주 잘 했기 때문에 저는 반찬을 여섯 가지나 만들 수 있었습니다. 다음날 저는 온 부대의 병사들 앞에서 이 행동으로 인해 칭찬을 들었습니다.”

이 증언자는 주민들에게서 먹을 것을 훔치는 행위는 기근의 고비가 지난 다음에도 사라지지 않고, 그가 군대에 있는 내내 계속되었다고 진술했다. 그가 알기로는 지금까지도 그렇다는 것이다.<sup>891</sup>

- 광부로 일했던 어떤 이는 추수기가 되면 수확량의 70%를 군대에게 제공하라는 명령을 당으로부터 받았다고 한다.<sup>892</sup>

#### 608 증언자들은 이런 관행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고 확인하였다.

- 한 농장원은 “2012년에 우리는 수확량의 90%를 우리가 가질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 그런데 추수를 하고 나자 군인들이 와서 모든 것을 가져가버렸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이 증언자는 그 시기에 그녀의 마을에서 아사자가 있었다고 보고하였다.<sup>893</sup>

609 조사위원회가 수집한 증언, 그 중에서도 특히 전직 장교나 병사들의 증언은 국제 구호 식량을 군인들이 빼돌리는 관행이 있음을 확인해준다.<sup>894</sup> 조사위원회가 면담한 일반 주민들은 대부분 인도주의적 구호물자라는 것을 본 적이 없었다.<sup>895</sup> 어떤 원조 기부자들은 지원 식량을 분배할 때 국제적 참관자가 현장에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탈북한 몇몇 증언자는 외국 모니터 요원이 그 장소를 떠나고 난 후 당국이 주민들에게 나누어주었던 식량의 대부분을 다시 강제로 내놓도록 했다고 말하였다.

891\_ TJH044.

892\_ TLC038.

893\_ TBG032.

894\_ TJH027, TJH044, TSH052.

895\_ TBG015, TBG016.

- 한 증언자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인도주의적 지원을 통해 공급된 식량은 당국에게 주어집니다. 나는 시장에서 파는 구호 식량을 돈 주고 사야 했습니다. 주민들에게 주어진 식량은 다시 당국에게 돌아갑니다. 원래 배분된 5kg의 음식 대신에 주민들 손에는 500g밖에 남지 않습니다.”<sup>896</sup>
- 전직 고위 관료였던 한 증언자는 국제적 모니터링이 행해지고 난 다음 80% 정도의 식량이 다시 당국에 의해 몰수되었다고 한다.<sup>897</sup>
- 한 증언자는 자기가 평양 군사학교에 있을 때, 하루는 자기와 동료들이 군복을 벗고 계급장을 떼라는 지령을 받았다고 한다. 그 다음 그들은 지금부터 하게 되는 일에 대해 전혀 발설하지 않겠다는 문서에 지장을 찍으라는 지시를 받았다. 그들은 남포항으로 실려가서 미국과 한국의 로고가 있는 40kg의 쌀 부대를 열고, 그것을 기계에 부어, 로고가 없는 50kg의 부대에 부어야 하였다. 그들은 그렇게 바꾼 부대를 표시가 없는 30~40대의 트럭에 실었다.<sup>898</sup>
- 다른 증언자의 말이다:  
 “1996년부터 1998년까지 많은 양의 원조물자(식량과 비료)가 남포항을 통해 들어왔다. 우리 집에서는 차들이 줄지어서 미국 국제개발처(USAID)와 한국 표시가 붙은 원조 물자를 실어 나르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군인들은 민간인 옷을 입고 차량의 군대 번호판을 페인트로 지워서 군인처럼 보이지 않게 해서 식량을 얻어갔다. 군 장교들은 쌀과 장비를 암시장에 팔아 술과 담배를 샀다. 우리 집까지 와서 우리에게 그런 물자들을 사라고 강요하기도 하였다.”<sup>899</sup>
- 한 증언자는 똑같은 일이 다른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증언한다. “나는 직업상 1998년부터 1999년까지 청진항에서 유엔을 포함한 외국에서 원조 식량이 오는 것을 보았다. 북한 경비병들은 식량을 얻기 위해 민간인인 척하며 평범한 옷을 입고는 했다.” 이 증언자는 2만 톤이 넘는 식량을 실은 배가 청진항으로 오던 것을 기억한다고 말했다.  
 “유엔 직원들이 떠나면 식량은 군인들에게 주어졌다. 보통 유엔 감찰단은 식량이 잘 분배되는지 확인하고 싶어했다. 그들은 현장을 방문하기 전에 사전 통보를 해야

---

896\_ TBG005.

897\_ TBG020.

898\_ TSH019.

899\_ TSH052.

하였다. 북한 당국은 유엔 관료들을 식량 배급소로 데려가고는 했다. 유엔 관료가 떠나면 북한 당국은 주민들로부터 식량을 거두어들였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동안 거리에는 굶어 죽은 사람들의 시체가 널려 있었다.”<sup>900</sup>

- 전직 고위 관료는 북한 노동당 위원회 제2부(군사 담당)에서 일하는 동료에게서 NGO가 식량 분배를 지켜보겠다고 주장하면 북한 당국이 어떻게 대처하는지 들은 이야기를 해주었다. 당국은 주민들에게 원조 식량에 일체 손을 대지 않도록 철저한 지령을 준다. 그 대신 이 식량은 비밀리에 당국에게 주어진다. 주민들에게는 이 식량이 군대의 생존에 꼭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대부분의 가정에는 가족 중에 누군가가 군인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말에 순응한다. 주민들은 NGO로부터 받은 쌀 20kg 대신에 당국이 제공하는 질 낮은 옥수수 1kg을 받는다.<sup>901</sup>

#### (d) 대응 기제의 범죄화

**610** 세계식량계획에 의하면 식량이 부족한 가구는 다음의 4가지 소비 전략을 채택한다고 한다.

- 첫째, 각 가구는 식단을 바꾼다. 예를 들어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 대신에 싸고 덜 선호하는 대체식으로 바꾼다.
- 둘째,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없는 단기 전략을 통해 식량 공급을 늘리려고 한다. 대표적인 예가 꾸거나 외상거래를 하는 것이다. 더 극단적인 예는 구걸을 하거나 야생 곡물, 덜익은 곡물, 심지어는 종자까지도 먹는 것이다.
- 셋째, 그래도 식량이 부족하면 자기들이 먹어야 할 식구를 다른 곳으로 보내서 입을 줄인다(예를 들면, 이웃이 밥을 먹고 있을 때 자기 아이를 그 집에 보내기).
- 넷째이며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으로, 자기 가족에게 할당된 양으로 지내도록 노력한다(일 인당 식사량이나 끼니 수를 줄이고, 가족 중 특정 성원에게 더 많이 주거나 하루종일 먹지 않고 굶기 등).<sup>902</sup>

900\_ TLC013.

901\_ TJH027.

902\_ WFP, “The Coping Strategies Index: A tool for rapid measurement of household food security and the

611 식량이 부족한 시기 동안 이런 전략들은 북한 당국에 의해 장려되었다. 여기에는 의학적 위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생 곡물을 먹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당국은 주민에 대한 통제를 유지하기 위해 식량을 찾아 이동한다든지, 교역을 한다든지 기타 유사한 행동 등의 가장 효율적인 대응 기제를 금지하였다.

### (i) 이동의 자유

612 보통 먹을 것이 부족해지면 사람들은 식량을 찾아 움직인다. 하지만 북한에서는 이동의 자유가 철저히 제한되어 있으며, 이는 대량 기근이 가장 심했던 시기에도 마찬가지여서 사람들이 이 선택을 추진할 기회는 사실상 주어지지 않았다.<sup>903</sup>

613 북한에서는 나라 안을 여행하려면 지방 당국이 발행하는 여행증명서를 필요로 한다. 증명서 없이 여행하는 사람은 체포, 자국으로 송환, 처벌을 받는다.<sup>904</sup> 중앙 배급체계가 작동할 때는 양이 부족하나마 배급을 받으려고 사람들이 자기 거주지에 머물러 있었다. 하지만 중앙배급체계가 붕괴되자 당국은 주민들의 이동을 이전 수준으로 통제할 수 없게 되었다. 절박해진 주민들은 살아남기 위해 식량을 찾아 나라 안을 돌아다니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당국은 기근 동안에 국내 여행 제한을 철폐하지는 않고 여행증 없이 자신의 지역을 떠나는 것을 여전히 금지하였다. 1996년 12월 김정일은 인구 이동의 시작은 나라의 혼란과 무질서를 초래한다고 경고하며 정부가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행동을 즉각 취할 것을 명령하였다.<sup>905</sup> 당국은 길거리 버려진 아이들 및 부모가 아사해서 고아가 된 아이들의 이동을 포함한 국내 불

impact of food aid programmes in humanitarian emergencies, Field Methods Manual,” 2008년 1월, p. 3.

903\_ IV장 C 참조.

904\_ IV장 C.1 참조.

905\_ Andrew Natsios, “The Politics of Famine in North Korea,” p. 12.

법 이동에 대처하기 위해 임시 구류시설 네트워크를 만들었다.<sup>906</sup>

**614** 기근은 또한 1990년대 중반부터 시작하여 필사적으로 중국으로 탈북하는 사람들을 급증하게 하였다. 많은 북한 주민이 국경 부근 중국에 사는 조선인 친척에게서 도움을 구하였다. 다른 이들은 자신과 가족들을 위한 식량이나 돈을 위해 중국에서 일을 구하기도 하였다.<sup>907</sup> 당국은 이런 대응 방법들을 촉진하기는 커녕 사람들이 국경을 넘지 못하도록 처벌과 폭력을 사용하였다.

**615** 위원회는 먹을 것을 구하러 중국에 갔다가 송환되어 투옥된 사람들의 증언을 많이 수집하였다.<sup>908</sup>

- 조진혜 씨는 위원회에 자기 아버지와 임신했던 자기 어머니가 먹을 것을 찾아 중국을 드나들었다고 말하였다. 김정일이 국경을 넘는 것을 더욱 강하게 단속하라고 말한 이후 조씨의 부모는 체포되고 구금되어 고문을 당하였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두 번 정도 중국으로 건너 가서 우리가 먹을 쌀, 된장, 식용유 같은 것을 가지고 돌아오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부모님이 중국에서 돌아오신 후에는 음식을 아주 잘 먹었던 것이 기억납니다. 세 번째로 부모님이 중국에 갔다 돌아올 때 체포되었는데, 그때는 북한과 중국을 왕래하다가 체포되는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게 사형을 당할 정도의 죄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다가 김정일이 중국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을 줄여야 할 필요가 있다는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김정일은] ‘총소리가 크게 들리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였습니다.”<sup>909</sup>

조씨의 아버지는 구금시설에서 고문을 당하였다. 그는 다른 구금시설로 옮겨지는 과정에서 사망하였다. “[한 구금시설에서 다른 구금시설로] 옮겨지는 과정에서 아버지는 먹을 수 없었고 물 한 모금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전 구금시설에서 고문을

906\_ Amnesty International, “Starved of Rights,” p. 16.

907\_ IV장 C 참조.

908\_ IV장 C 또한 참조.

909\_ 워싱턴 공청회, 2013년 10월 30일(00:35:00).

당해 몸에 상처가 많이 나셨었는데, 그로 인해 돌아가실 수밖에 없었습니다.”<sup>910</sup>

- 김광일 씨는 중국으로 몰래 넘어가서 송이버섯을 팔았는데, 그것만이 유일하게 살 수 있는 길이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중국에서 강제송환되었을 때, 그는 인민보안부에 의해 구류되어 고문을 당하였다. 불공정한 재판을 받은 후, 그는 전거리에 있는 제12호 ‘교화소’에 수감되었다.<sup>911</sup>

**616** 1990년대 후반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당국은 국경을 넘는 이동에 형법 처벌을 적용하는 것을 지속하였다. 국경 경비대들이 불법적으로 국경을 넘는 사람들을 사살할 수 있다는 정책은 변함없이 유지되었다.<sup>912</sup> 특히 중국에 있는 동안 한국 국민이나 교회에 도움을 요청한 사람들에게는 더욱 가혹한 처벌이 가해졌다.<sup>913</sup> 국경을 넘는 죄에 대해서는 2년에서 5년까지의 노동교화형이 부과되었다. 보고된 바에 따르면 기근의 절정이 지난 2000년, 김정일은 먹을 것을 구하려고 국경을 넘는 사람들의 정상을 참작해주라는 포고령을 내렸다고 한다. 하지만 이 포고령은 불과 몇 달밖에 실행되지 않았다. 심지어 그 기간 중에도 중국에서 강제로 송환된 사람들은 여전히 체포되어 처벌 받았다.<sup>914</sup>

**617** 조사위원회는 북한 당국이 한국에 일시적으로라도 국경을 열어 달라고 요청하여 굶주리는 북한 주민을 한국으로 넘어가도록 허락하였다면 친척이나 다른 한국인들로부터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었을 텐데, 그런 방안은 생각조차 하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는 점을 특별히 언급하는 바이다.

910\_ *Idid*,(00:36 :00).

911\_ 서울 공청회, 2013년 8월 24일, 오전.

912\_ IV장 C.2 참조.

913\_ IV장 C.2 참조.

914\_ HRW에 따르면, 김정일의 포고문에는 이런 내용이 있다. “식량이 필요해서 국경을 넘으면 목숨을 살려준다.” 이 포고문은 2000년 2월 16일(김정일의 생일)로부터 2000년 10월 10일(조선노동당 창립 50주년 기념일)까지 유효하였다. HRW, “The Invisible Exodus: North Koreans in the PRC,” <http://www.hrw.org/reports/2002/northkorea/norkor1102.pdf> 참조.



## (ii) 기타 대응 방안

**618**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북한 당국은 국내에서 사실상의 시장화를 포함하여 상당한 경제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관리들은 어쩌다 그런 사실을 인정한다 해도 일시적인 비상 수단일 뿐이라고 말하였다.<sup>915</sup> 이런 입장은 북한 당국이 시장 행동을 제한하고 심지어는 범죄시 하는 것을 설명한다. 정부는 식량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시장이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발달을 받아들이기를 주저하였다. 그렇게 되면 국가를 통제하기 어려워질 것이기 때문이다.

**619** 1999년 형법에서 “사회주의경제를 침해한 범죄”에 관한 장에는 8개 조항만 있었다. 2004년 이 장은 “경제 유지에 위반하는 행동”이라고 개명되어 74개 조항을 포함하는 것으로 늘어났다. 형법에는 110조가 추가되어, 불공정한 상업적 행동에 불법적으로 관여함으로써 큰 이윤을 얻는 행동을 범법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한 처벌은 노동단련대에 2년간 수감되는 것이다. 2007년, 최고인민회의 간부회의 결정사항으로 “추가 조항”들이 삽입되었다.<sup>916</sup> 그것은 불법적 사업 행위 등의 범죄 사항을 신설한다는 결정이었다. 특히 중범죄로 간주되는 보석이나 귀금속의 밀수와 국유 자원의 불법적 매매는 사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620** 북한의 처벌 체계는 북한 주민이 흑심한 식량 부족에 대처하기 위해 채택한 전략에 대한 정부의 반응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해왔다. 기근 시기 동안 북한은 ‘노동단련대’라고 하는 구금시설의 방대한 체계를 구축하였다.<sup>917</sup> 노동단련대 및 기타 단기 강제노동 구금시설은 국경을 넘어 중국으로 들어가다 붙잡힌 사람들과 시

915\_ Meredith Woo-Cumings, “The Political Ecology of Famine: The North Korean Catastrophe and Its Lessons”.

916\_ 2007년 12월 19일에 채택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483호 참조.

917\_ 이런 구금시설에서 횡행하고 있는 비인간적인 조건들에 대해서는 IV장 E.4(b)를 참조할 것.

장 활동을 한 사람들을 감금하기 위해 이용되었다. 2004년의 형법 개정은 이런 시설들을 정례화하였다. 형법은 ‘노동단련대’에서 2년까지 감금되는 것을 점점 증가하는 경제적·사회적 범죄에 대한 처벌로 수립하였다.

- 한 증언자는 북한 주민들이 불가능한 상황의 덫에 걸려 있다고 말하였다. 국가의 지침에 따라 노동했던 사람들은 굶어 죽었다. 살아남기 위해 다른 행동 - 시장 활동 참여 등 - 을 한 사람들은 체포될 상황이었다.<sup>918</sup>

**621** 기근과 그 여파에 대한 명령-통제 반응을 보여주는 측면 중 하나는 협동농장과 산업 작업장에서 권위를 강화하기 위해서 경찰과 군대를 이용하는 것이었다. 1997년 8월, 당국은 식량의 비축과 절도에 대한 법령을 발표하였다. 이 법령은 곡식을 훔치거나 매매하는 일에 관여한 개인에 대한 형벌을 규정하였다. 굶주린 농장원들이 살아남기 위해 그들 수확의 일부를 빼돌리는 일이 없도록 군대가 농장에 배치되었다.

- 한 여성은 기근 시기 동안 5건의 공개처형을 목격하였다고 증언하였다. 관리들은 처형될 사람이 어느 정도의 식량을 훔치거나 혹은 낭비했는지 발표하였다. 그리고 난 후 그 사람은 머리에 총을 맞고 죽었다.<sup>919</sup>
- 또 다른 여성은 그녀의 남편이 1996년 석유를 팔다가 체포되었다고 증언하였다. 그는 노동교화소에 11년 수감되는 노동교화형을 선고 받았다. 그가 교화소에 있는 동안 그녀는 그에게 갖다 줄 음식을 살 돈이 없었다. 그는 일 년 후 굶주림과 심한 노동으로 교화소에서 죽었다. 이어서 그녀의 아이, 그녀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굶어 죽었다. 1997년 12월 그녀는 먹을 것을 구하려고 중국으로 건너갔는데, 거기서 조선족 남성에게 팔려 강제결혼을 하게 되었다.<sup>920</sup>

---

918\_ TSH038.  
919\_ TBG001.  
920\_ TBG010.

622 당국은 또한 기근 시기 동안 의사소통을 철저히 통제하였다. 그들은 주민들이 도움을 청하기 위해 해외의 친척과 접촉하는 것을 금지하였다. 이 금지는 아직도 효력이 있다. 하지만 많은 북한 주민들은 소위 “브로커”를 통해 해외의 친척을 접촉하거나 중국 국경 인근에서 작동하는 휴대폰을 사용함으로써 금지 조항을 피해 접촉을 시도하고 있다.<sup>921</sup> 브로커를 통해 사람들은 해외의 친척들로부터 불법적으로 송금을 받기도 한다. 이런 식으로 도움을 구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부담이 큰 일로, 붙잡히면 중형을 받게 된다.

- 어떤 남성은 2009년 중국제 휴대폰으로 해외와 통화를 하다가 국가안전보위부에 단속되었다. 그는 간첩혐의를 받고 구타 당하고 고문을 받았다. 그는 보위부가 이동전화로 추적할 수 있는 고성능 전자 기기를 사용한다고 하였다.<sup>922</sup>

## 5.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과 접근의 방해

623 사회권규약 제2조제1항과 제11조제2항에 의해 모든 국가는 개인에게 기아로부터의 해방을 보장해주어야 하며 이를 위해 국제적 지원과 협력을 가능하게 해주어야 한다. 만일 한 국가가 주민에게 적절한 식량을 제공해주지 못하면, 그 국가는 자신의 영토 안에 있는 주민들이 기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외부의 지원을 모색하는 것을 포함해서 모든 가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위원회에 의하면,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이유로 인해 국민들에게 기아로부터의 자유를 보장해준다는 자신의 의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나라는 그것이 사실임을, 그리고 필요한 식량에 대한 가용성과 접근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주는 국제적 지원을 얻으려 노력했으나 잘 되지 않았음을 증

921\_ 중국제 휴대폰 사용에 대한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IV장 A를 참조할 것.

922\_ TBG004.

명해야 한다.<sup>923</sup>

**624** 이런 점에서 볼 때 국가들은 또한 인도주의적 지원을 자의적으로 거부하지 말아야 할 의무를 지고 있는 것이다. 인도주의적 지원을 자의적으로 거부했는지 판단하는 데는 몇 가지 기준이 있을 수 있다. 만일 정당한 근거를 대지 않고 지원을 거절하거나 제시된 이유가 사실의 왜곡(예를 들면 적절한 평가 없이 인도주의적 지원 필요성을 부인한다든지)에 기초한 것일 경우, 국가는 자신의 의무를 존중하지 않는 것이다. 또한 국가가 국제적 의무와 부합하지 않는 이유로 접근을 거부할 경우 그것도 자의적으로 행동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다른 방식으로는 필요한 지원을 확보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애, 공정성, 중립성, 독립성이라는 인도주의적 원칙에 부합하여 제공되는 지원을 국가가 거부할 경우, 그 국가는 자의적으로 행동하는 것이다.<sup>924</sup> 국제적인 식량 지원을 인도주의적 수요에 입각하여 차별 없이 지원을 분배한다는 원칙에 어긋나는 용도로 전용하는 것도 자의적인 지원 거부이며 따라서 식량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 인권을 침해하는 행동이다.<sup>925</sup>

**625** 1990년대 중반 구호단체가 처음 도착한 이래 국제기구와 민간단체는 북한 당국이 부과한 매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일해왔다.<sup>926</sup> 조사위원회는 북한 당국이 인도주의적 활동가들에게 인도주의적 입장이나 안보에 대한 고려에서 볼 때, 전혀 합당하지 않은 방식으로 이동 및 접촉을 제한하여 이들의 접근을 부당하게 방해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북한 당국은 지원 기구들이 신뢰할 수 있는

923\_ 사회권위원회, 일반논평 제12호, para. 17 (E/C.12/1999/5).

924\_ A/65/282, paras. 81 and 82.

925\_ A/65/282, paras. 86 ff.

926\_ 예를 들면, Doctors Without Borders, "MSF Calls on Donors to Review Their Policy in DPRK," 1998년 9월 30일 참조. <http://www.doctorswithoutborders.org/press/release.cfm?id=460> 참조. 또한 L. Gordon Flake and Scott Snyder, *Paved with Good Intentions. The NGO Experience in North Korea* (Praeger Publishers, 2003), p. 111 참조.

자료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용의주도하게 방해해왔다. 이런 자료들이 제공되었다면 인도주의적 대응의 효율성을 크게 증대시켜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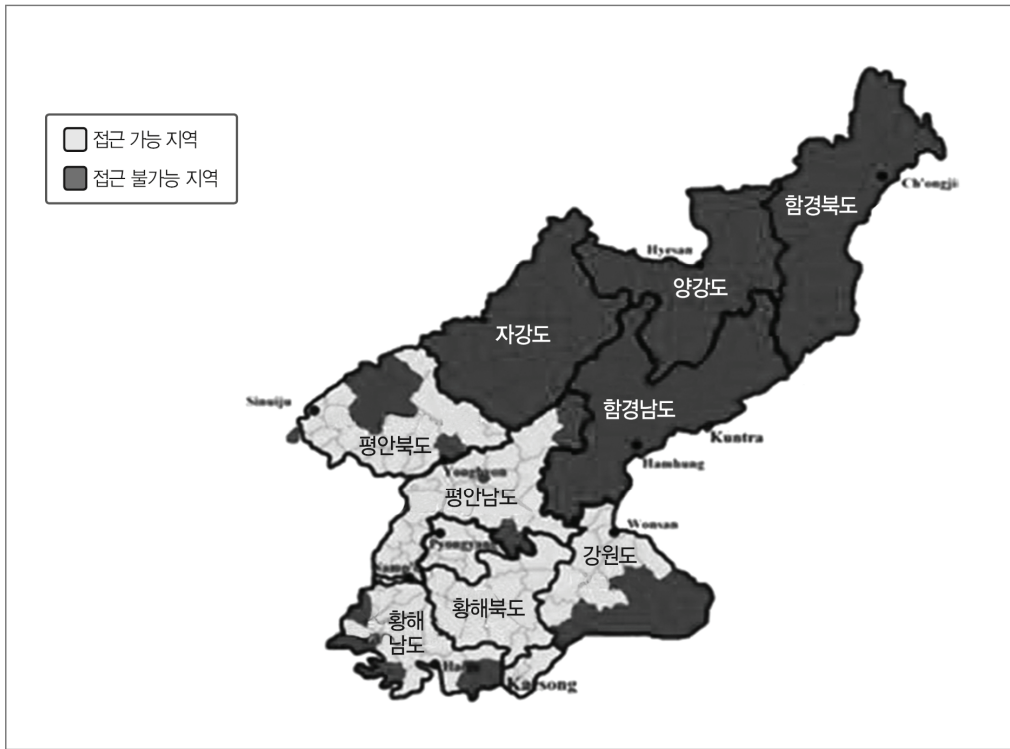
**626** 북한 당국은 북한의 동북부 지역에 지원을 제공하려는 국제 구호기구의 초기 요청에 불응하였다. 세계식량계획의 구호 물자는 1997년이 되어서야 동해안에 도달할 수 있었다. 1990년대 말에는 세계식량계획의 구호물자 중 5분의 1 정도만이 북한 총 인구의 3분의 1이 존재하는 지역으로 갈 수 있었다.<sup>927</sup> 그 이유에 대한 설명으로 위원회는 여러 가지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예를 들면 기근이 심한 어떤 지역에는 정치범수용소와 민감한 군사시설이 있는 곳이 있다는 것 등이다.<sup>928</sup> 하지만 위원회는 ‘성분’이 낮은 사람들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 전체에 인도주의적 접근이 거부당하였다는 사실도 주목한다.<sup>929</sup> 아래 그림이 보여주는 Exhibit W-2는 1995년에서 1996년 동안 다수의 북한 주민이 굶주림으로 죽어가고 있는 동북부 지역에 북한 당국이 인도주의적 접근을 거절했음을 보여준다. 또한 인도주의적 지원이 접근할 수 없었던 4개 도(함경남·북도, 양강도 및 자강도)는 중앙배급체계 분배가 가장 먼저 중단된 지역이기도 하다.<sup>930</sup>

927\_ John Feffer, “North Korea and the politics of famine, Part 2: Human rights violations,” *Asia Times*, 23 September 2006. <http://www.atimes.com/atimes/Korea/HI23Dg01.html> 참조.

928\_ TLC033, ELC003.

929\_ 이와 관련해서는 IV장 B, IV장 C, IV장 D.2 참조.

930\_ 위 참조, IV장 D.1.



[그림 10] 1995~1996년 기간 중 접근 가능 및 불가능 지역<sup>931</sup>

**627** 북한이 해외원조를, 그것도 “적”으로 간주되었던 나라에서 지원하는 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종종 주민의 고통보다 그 정치적 의미가 더 크게 작용한다.

- 워싱턴 공청회에서 앤드류 내치어스 씨는 조사위원회에 미국이 제공하는 지원의 전달과 관련한 문제점을 이야기하였다.  
 “북한의 항구에 구호물자를 전달하는 함선에 꽂힌 미국 국기를 내려야 한다는 것에 대해 큰 논란이 있었습니다. 처음 들어간 배는 선장이 배에서 미국 국기를 내릴 수 없다고 하여 항구에 사흘 동안 정박해 있었다고 세계식량계획으로부터 들었습니다. 단순히 이미지의 문제만 가지고 말입니다. 지난 2년 동안 중앙 당국은 이 항구로 어

931\_ Marcus Noland가 제공한 Exhibit W-2, “Accessible & Restricted Counties 1995-1996,” WFP Asia Regional Bureau (2005).

떤 물자도 보낸 일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거리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미국이 이 사람들을 다 구제해 줄 거라는 생각이 정치 당국에게는 상당히 거슬렸던 거죠.”<sup>932</sup>

**628** 북한의 인도주의적 활동가들에 대한 제약은 과거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계속해서 인도주의적 협약의 기본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었다. 1998년부터 2000년 사이에, 국경없는의사회(Médecins sans Frontières: MSF), 옥스팜(Oxfam), 케어(CARE), 세계의 의사들(Médecins du Monde: MDM) 등 신뢰할 만한 인도주의 기구들 다수가 북한에서의 활동을 중지했는데, 그 이유는 북한이 부과한 조건하에서는 활동을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2002년 당시 국경없는 의사회 연구실장이었던 피오나 테리(Fiona Terry) 씨는 자기 단체와 같은 인도주의 기구가 북한에서 활동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오늘날 북한에는 인도주의적 특성의 공간이 전혀 없어서 북한으로 들어가는 식량 지원이 기근을 해결해주는지 아니면 지구상 최고의 스탈린식 독재국가의 정치적 프로젝트를 유지시켜주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 북한에 대한 지원은 그 의도를 보나 -주요 기부국의 의도가 이 지역의 안보를 위해 북한 당국이 갑자기 붕괴되는 것을 막는 것이므로- 방법론을 보나 “인도주의적” 성격이 있다고 말하기 어렵다.<sup>933</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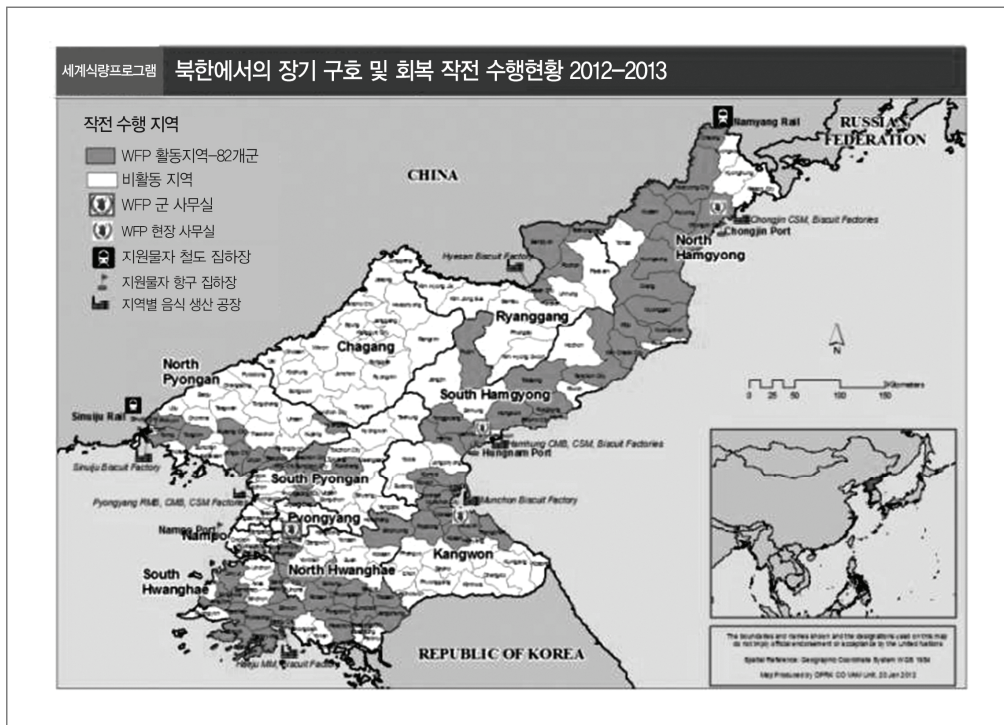
**629** 북한에서 도움이 필요한 주민들에게 물리적으로 다가갈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인도주의적 활동가들은 그들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상황을 적절하게 평가할 수 없었다.<sup>934</sup> 분명히 지원이 가장 취약한 주민들에게 미치지 못한다는 문제에 직면한 다수의 인도주의 단체들은 “접근할 수 없으면 지원도 없다”는 정책을 채택하여 어느 정도는 지원 분배를 모니터할 수 있도록 접근상황이 개선되기도 하였다.

932\_ 워싱턴 공청회, 2013년 10월 31일, 오전(02:51:38).

933\_ Fiona Terry, *Condemned to Repeat?: The Paradox of Humanitarian Action* (Cornell University Press, 2002), p. 243.

934\_ Stephen Haggard and Marcus Noland, *Famine in North Korea*, p. 89. IV장 D.1 역시 참조.

630 세계식량계획이 접근할 수 있는 군의 수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변해왔다. 세계식량계획이 2013년 제공한 최신 지도(다음 그림)는 이제 약 200개의 군 중에서 82곳에 접근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sup>935</sup> 양강도와 함께 급성 영양실조 및 발육장애 면에서 최고 수준을 보여주는 자강도에는 세계식량계획의 활동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림 11] WFP의 활동 현황<sup>936</sup>

631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위원회,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아동권리위원회는

935\_ 웹사이트에서 WFP는 그들의 활동이 “북한의 210개 시·군 중 87개 시·군의 24만 여성과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http://www.wfp.org/countries/korea-democratic-peoples-republic-dprk/overview> 참조.

936\_ WFP,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Newly Proposed PRRO Operational Coverage 2012-2013,” [http://reliefweb.int/sites/reliefweb.int/files/resources/Democratic%20Peoples%20Republic%20of%20Korea%20Newly%20Proposed%20PRRO%20Operational%20Coverage%202012%202013\\_0.pdf](http://reliefweb.int/sites/reliefweb.int/files/resources/Democratic%20Peoples%20Republic%20of%20Korea%20Newly%20Proposed%20PRRO%20Operational%20Coverage%202012%202013_0.pdf) 참조.



모두 북한에 농촌 및 경제적으로 어려운 여성과 아동 같은 취약계층에게 식량 지원 및 기타 국제적 원조가 닿게 해달라고 요청하였다.<sup>937</sup> 북한과 같은 상황에서는 임신 부나 수유부, 아동, 노인들이 특히 취약하다고 고려된다.<sup>938</sup> 하지만 조사위원회가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식량 지원 및 기타 인도주의적 원조가 대상 집단에 도착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한다. 특히 조사위원회는 북한이탈주민, 북한에 파견되었던 인도주의 단체 직원, 기타 정보원으로부터 거리에 버려진 아이들을 비롯하여 가장 지원이 필요한 아동들에게 지원이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흔하다는 정보를 입수하였다.

**632** 2000년 빈곤퇴치활동(Action Against Hunger, AAH)은 북한 당국이 가장 취약한 아동들에게의 접근을 금지했기 때문에 북한 어린이들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 프로그램을 중단하기로 결정하였다. 빈곤퇴치활동은 이 결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AAH는 모든 방문 전에 통보를 했지만, 실제로 [빈곤퇴치활동의 지원을 받은] 그런 시설에 있는 어린이의 수는 공식적으로 인용된 것보다 적었다. 유엔아동기금, 세계식량 계획, 유럽연합이 실시한 영양조사에 의하면 북한 아동의 16%가 영양실조라고 밝혀졌지만, 이런 시설에서 확인된 영양실조 아동은 약 1% 정도였다. 우리 팀이 목격한 바에 의하면 대부분의 아동 영양실조 사례는 그런 시설에 갈 수 없는 아동에게서 나타났다. 특히 타격이 큰 집단은 “거리의 아이들”로, 많은 아이들이 3~4세 사이로, 보기도 대단히 약한 가운데 혼자 돌아다니며 음식을 얻기 위해 싸운다. 이런 상황에서 당국이 운영하는 시설을 통해 들어가는 지원은 가장 취약한 집단에 도달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확신하며, 빈곤퇴치활동은 북한 당국에게 공식 시설 외부에 고위험 집단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무료 급식소를 설치하자고 협상하였다. 하지만 이 프로그램을 이행하기 위한 조건은 북한 당국에 의해 거절당했다. 우리는 북한으로 흘러 들어가는 국제적 지

937\_ 사회권위원회, 북한에 대한 최종 견해, E/C.12/1/Add.95, para. 21; 아동권리위원회 최종 견해 CRC/C/PRK/CO/4, para. 16;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최종 견해 A/60/38, para. 60.

938\_ 예를 들면 WFP, “Emergency Food Assistance to Vulnerable Group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참조. [http://one.wfp.org/operations/current\\_operations/project\\_docs/200266.pdf](http://one.wfp.org/operations/current_operations/project_docs/200266.pdf) 참조.

원이 가장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달하지 못한다고 확신한다. 우리가 가장 가난한 가정을 방문하는 권한은 거절 당하였는데, 이런 가정에서는 아동들이 집 안에만 박혀 있어 지원을 받지 못하고 결국 굶어 죽을 수밖에 없다고 본다. 이런 아동에게 적절한 지원이 미치기만 한다면 쉽게 생명을 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정말 혐오스러운 상황이다.”<sup>939</sup>

1998년 국경없는의사회는 “고위급의 정책 변경으로 인해 효율적인 인도주의적 지원이 더욱 제한되었기 때문에 지원을 원칙에 입각해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이 불가능해졌다”고 말하면서 북한에서의 활동을 중단하였다. 국경없는의사회는 집이 없거나 고아가 된 아이들과 같이 특별히 취약한 집단을 대상으로 활동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북한 당국은 의학적·영양학적 지원을 해주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국경없는의사회가 의약품 원료 제공을 진지하게 고려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sup>940</sup>

**633** 상이한 시점에 북한에서 근무했던 인도주의 단체의 직원들이 조사위원회에 제공한 증언에 의하면, 과연 그들이 접근하도록 허용된 지역 안에서조차 그들이 만날 수 있었던 사람들이 제일 도움이 필요한 사람인지 의심된다고 한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방문이 “잘 연출된 공연”이라고 지적한다.<sup>941</sup> 다른 이들은 북한에 주어지는 그 다량의 지원이 가장 취약한 사람들에게는 미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다.<sup>942</sup>

939\_ Action Contre la Faim, “Action Against Hunger stops its activities in North Korea,” 2000년 3월 10일, <http://reliefweb.int/report/democratic-peoples-republic-korea/action-against-hunger-stops-its-activities-north-korea#sthash.Yp6AJhK8.dpuf> 참조.

940\_ Doctors Without Borders, “MSF Calls on Donors to Review Their Policy in DPRK,” 1998년 9월 30일, <http://www.doctorswithoutborders.org/press/release.cfm?id=460> 참조.

941\_ EBG003.

942\_ 1999년 7월 15일 함경북도 청진의 보육원과 고아원을 방문한 한 영양학자에 의하면, 가장 취약한 아동들에게는 지원이 미치지 않았다고 한다. 보육원에서 이 학자는 심각한 영양실조에 걸린 아동 20명을 보았는데 그 중 세 명은 거의 죽어가고 있었다고 한다. 고아원에서 그녀는 11명의 영양실조 아이들을 보았다. 아동들은 더럽고 움과 같은 피부 감염증에 시달리고 있었으며, 누구도 돌보지 않고 버려져 있던 것처럼 보였다. 아동들은 물에 탄 염소 젖과 설탕을 탄 물을 받고 있었는데, 둘 다 영양실조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아니다. 1999년 5월 UNICEF는 청진의 고아원에 고열량 우유를 2톤 제공했는데, 이 고아원은 그것을 받지 못하였다. Jean-Fabrice Pietri, Action Contre la Faim, “The Inadequacies of Food Aid In North Korea,” Summary of Comments (Plenary Session II), IV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North Korean Human Rights and Refugees, Prague,

634 북한 당국은 국제적 지원의 제공자들이 인도주의적 지원에 대해 효율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금지해왔다. 북한에서 계속 활동하기로 결정한 인도주의 단체들은 북한 내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이해하기가 대단히 어렵다. 물리적으로도 접근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WFP와 같은 국제적 구호기구들은 한국어를 할 줄 아는 직원을 두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다. 대신 북한 당국이 제공하는 그 지역의 북한 주민이 통역을 하였다. 그런 직원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명백한 의문은 차치하더라도, 제공된 현지직원들은 지원 활동을 관리하는 구체적인 기술적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인도주의적 업무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sup>943</sup> 북한 아동들의 영양 상태에 대한 무작위 조사를 실시하게 해달라는 유엔의 요청도 반복적으로 거부되었다.<sup>944</sup>

- 2001년부터 2006년까지 미국 국제개발처(USAID)에서 근무했던 앤드류 내치어스는 워싱턴 공청회에서 1990년대 북한에서의 미국 국제개발처 활동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기근 초기, 북한 사람들은 우리들이 아동의 상태를 측정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하겠다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표본 조사대상지’도 북한 당국이 정했는데, 그러면 정확한 조사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안 한 것보다는 낫겠지만, 그렇게 하면 쉽게 정치적 의도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정확하지 않습니다.”<sup>945</sup>

635 보고에 의하면 국제기구에 지나치게 협조적이었다 해서 직위에서 파면된 지방 관료들도 있었다고 한다.<sup>946</sup> 1998년 국경없는의사회는 북한이 “가장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효율적이고 신뢰할 만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보다는 자급자족이

2003년 3월.

943\_ Stephen Haggard and Marcus Noland, *Famine in North Korea*, p. 96.

944\_ L. Gordon Flake and Scott Snyder, *Paved with Good Intentions. The NGO Experience in North Korea*, p. 115.

945\_ 워싱턴 공청회, 2013년 10월 31일, 오전(01:44:48).

946\_ Humanitarian Practice Network, “North Korea: Conflict Management, Food Aid and Humanitarian Principles.” <http://www.odihpn.org/general/north-korea-conflict-management-food-aid-and-humanitarian-principles> 참조.

라는 이념을 지키고자 하는 것”에 더 우선순위를 두는 것 같다고 말하였다.<sup>947</sup>

**636** 어떤 관찰자들은 인도주의 단체들이 북한 내부에서의 접근 및 모니터링을 한다는 측면에 있어서 지난 몇 년간 상황이 좋아진 것이라고 주장한다. 어떤 인도주의 기구들은 점차적으로 더 많은 군들에 접근해갈 수 있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어떤 단체에게는 북한이 지정해준 통역이 아닌 통역자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기도 하였다. 식량 지원 모니터링 분야에 있어서 작은 진보가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인도주의 단체들이 북한에서 활동을 시작한지 20년이 지난 지금도 인도주의적 활동가들은 도움이 절실한 사람들에게 접근을 방해하는, 받아들일 수 없는 제약에 여전히 직면하곤 한다. 북한 담당 유엔 국가팀에 의하면,

활동의 제약으로 인해 기부자의 신뢰와 자원 동원에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으며, 이는 결국 더 나은 활동 조건에 대한 논의를 저해한다. 북한 내 접근에 대해 협상하는 것은 길고도 어려운 과정이다. 인도주의 기구들의 프로그램 이행, 모니터링, 활동 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접근에 당국은 받아들일 수 없는 제약들을 자주 가하고는 한다.<sup>948</sup>

## 6. 최대 가용 자원의 불가용성

**637** 사회권규약 제2조제1항은 “이 규약의 각 당사국은 특히 입법조치의 채택을 포함한 모든 적절한 수단에 의하여 이 규약에서 인정된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점진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개별적으로 또한 특히 경제적, 기술적인 국제지원과 국제 협력을 통하여 자국의 가용 자원이 허용하는 최대한도까지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한

947\_ Doctors Without Borders, “MSF Calls on Donors to Review Their Policy in DPRK,” 1998년 9월 30일.

948\_ United Nations Country Team, “Overview of needs and assistance,” 2012, [http://www.wfp.org/sites/default/files/DPRK per cent20Overview per cent20of per cent20Needs per cent20And per cent20Assistance per cent202012.pdf](http://www.wfp.org/sites/default/files/DPRK%20Overview%20of%20Needs%20And%20Assistance%202012.pdf) 참조.

다”고 명시하고 있다(강조하여 덧붙임).

638 “점진적인 실현”이란 개념은 국제 인권 협약하에서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와 관련한 국가의 의무 중 중심적인 측면에 대해 말하고 있다. 그 핵심은 국가가 가용 자원을 극대화하여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를 최대한 실현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이다. “가용 자원”에 대한 언급은 이런 권리의 실현이 자원의 부족에 의해 지장을 받을 수 있으며 어느 정도 기간이 흘러야 성취될 수 있음을 나타낸다. 마찬가지로 그것은 국가가 적절한 수단을 취해야 할 의무에 부응하는 것은 재정적 및 기타 방식으로 국가가 이용할 수 있는 자원에 비추어서 평가된다는 뜻이다.<sup>949</sup> 하지만 점진적 실현의 개념은 국가가 충분한 자원을 갖추기 전까지는 이런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으로 잘못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협약은 경제적·사회적·권리를 온전히 실현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즉각적인 의무를 부과한다. 자원이 없다고 해서 이런 권리를 이행하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든지 혹은 무한정 연장하는 것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자기가 가용할 수 있는 자원과 상관 없이 한 국가는 모든 사람이 적어도 최소 수준의 권리에 대한 접근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어야 하며, 가난하고 주변화되어 있으며 불이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프로그램들을 보장해주는 것을 최우선 순위로 해야 한다. 국가는 이용 가능한 모든 자원을 긴요한 경제적 및 사회적 수요에 우선적으로 이용하였다는 사실을 보여주지 못하는 한, 기아로부터의 자유를 포함한 최소한의 사회경제적 복지를 보장하지 못한 것을 자원의 부족을 이유로 내세워 정당화할 수 없다.<sup>950</sup>

949\_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Frequently Asked Questions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Geneva, 2008, p. 13.

950\_ 사회권위원회, 일반논평 제12호, para. 17, (E/C.12/1999/5) 참조; 사회권위원회, 일반논평 제3호, 부록 III, para. 10 (E/1991/23).

**639** 수집된 증언에 기초하여 위원회는 북한의 자원 분배가 특히 대규모 기근 시기에 기아 및 만성 영양실조로부터 사람들을 자유롭게 해준다는 목표를 우선시하는데 크게 실패해왔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북한은 북한 주민 다수의 생존에 필요한 식량의 구매에도, 자국에서 식량에의 접근성과 가용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농업, 인프라구조, 기타 방법들에 대한 투자에도 우선순위를 두지 않았다. FAO와 WFP가 지속적으로 하루 일 인당 573g의 곡물에 해당되는 북한 당국의 공식 목표를 어느 시기에도 달성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은 식량 가용성 문제뿐 아니라 저장, 운송 및 상품 유통 과정이라는, 보다 광범위한 공급 사슬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한다.<sup>951</sup>

**640** 위원회가 수집한 증언 및 기타 정보들은 북한이 군사, 최고지도자 개인 승배, 그와 관련된 우상화 행사, 엘리트들의 사치품 구매 등에 불균형적인 양의 자원을 계속 할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 (a) 군사비의 최우선적 지출

**641** 북한의 상비군은 120만 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에 속한다. 이것은 전체 인구 대비로 보면 세계에서 군인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이다. 이 국가의 비밀스러운 성격으로 볼 때 실제로 군사비를 어느 정도 지출하는지 그 숫자를 입수하기는 어렵다. 공식적 자료는 전체 국가 예산의 16%가 국방에 할당된다고 한다.<sup>952</sup> 다른 자료들은 군사비가 국민총생산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한다.<sup>953</sup>

951\_ FAO/WFP, "Crop and Food Security Assessment Mission to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2013년 11월 28일.

952\_ "Report on Implementation of 2009 Budget and 2010 Budget," KCNA, 2010년 4월 9일. <http://kcna.co.jp/item/2010/201004/news09/20100409-10ee.html> 참조.

953\_ The Center for Arms Control and Non-Proliferation, "U.S. Defense Spending vs. Global Defense Spending", 2013년 4월 24일. [http://armscontrolcentre.org/issues/securityspending/articles/2012\\_topline\\_global\\_defense\\_](http://armscontrolcentre.org/issues/securityspending/articles/2012_topline_global_defense_)

642 1990년대 말 기근을 겪는 동안 자원을 시급한 수요에 할당하는 대신, 김정일은 “선군(Military First)” 정책에 맞추어 더욱 군대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sup>954</sup> 조선중앙방송의 공식 방송은 이 정책을 이렇게 설명한다.

우리 역사에서 “고난의 행군”이라고 불리는 이 기간 동안 위대한 김정일 수령동지는 인민의 운명과 혁명의 미래가 총대에 달려 있다고, 오직 군대에 의존할 때만이 우리가 역경을 헤치고 나아가 혁명을 승리로 이끌 수 있다고 굳게 믿으셨습니다 … 총대가 약해지면 아무리 경제가 막강해도,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달해도 결국 외부 세력이 나라를 집어삼킬 것입니다.<sup>955</sup>

643 2003년 조선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에 발표된 논설도 비슷한 논지를 전개한다.

군대와 경제의 상관 관계에서 우선적 위치를 점하는 것은 역시 군대이다 … 경제력이 군사력에 기초한 것이라면 군사력은 경제력을 보장해주는 것이며 또한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 되어주는 것이다. 강한 군사력이 없다면 국가 산업을 수호할 수 없을 것이며 평화로운 경제 환경을 보장해줄 수도 없을 것이다. 막강하고 자족적인 국방 산업을 위한 기초를 놓아야만이, 우리는 경공업 및 농업을 비롯한 모든 경제 분야를 활성화시킬 것이며 인민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sup>956</sup>

spending/ 참조.

954\_ 또한 III장 E 참조.

955\_ 2003년 3월 21일, 북한의 노동신문 특별논설 “선군 이념은 우리 시대의 신념인 독립을 위한 승리와 불패의 이데올로기”가 평양조선중앙방송(KCBS)을 통해 방송되었다. 번역된 논설문은 <http://nautilus.org/publications/books/dprkbb/military/dprk-briefing-book-dprk-military-first-doctrinal-declaration/> 참조.

956\_ “Military- First Politics is a Precious Sword of Sure Victory for National Sovereignty,” *Rodong Sinmun*, 2003, 번역된 논설문은 <http://nautilus.org/publications/books/dprkbb/military/dprk-briefing-book-dprk-military-first-doctrinal-declaration/> 참조.

**644** 조사위원회에 제출된 전문가 분석에 의하면 군사비 지출의 일부만이라도 식량 구매 비용으로 돌렸다면 북한 주민들이 기아와 영양실조에 시달리지 않았을 것이라고 한다. 경제학자 마커스 놀랜드(Marcus Nolan)는 최근의 FAO/WFP 작물 평가에 기초한 분석에서 밝혀진 것만으로도 4만 톤의 곡물 부족을 겪었다고 한다. 2013년 9월 IMF에 의하면 쌀 가격은 1톤 당 약 470달러, 옥수수는 1톤 당 약 207달러라고 한다.<sup>957</sup> 유엔 자료에 근거해서 놀랜드는 2011년 북한 경제의 규모를 124억 달러로 추산한다.<sup>958</sup> 따라서 곡물 부족액을 메꾸기 위해서는 오직 국가 수입의 0.02%만 있으면 되었다는 것이다. 만일 국가 수입의 25%가 군사비로 쓰이고 있다는 추산이 맞는다면, 곡물 부족은 군사비를 1% 이내만 줄여도 막을 수 있었다는 결론이 된다.<sup>959</sup>

**645** 마커스 놀랜드는 또한 대규모 기근 절정기에서도 곡물 부족을 메우는 데 필요한 돈은 겨우 1억에서 2억 달러였다고 한다. 이는 재화와 용역 수출 예산의 5~20%, 혹은 현재 북한 당국 수입의 1~2%에 지나지 않는다. 워싱턴 공청회에서 놀랜드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 “[1990년 기근 기간 동안] 필요했던 곡식의 양은 훨씬 많았지만, 1990년대의 곡식 값은 지금보다 훨씬 쌌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데이터를 분석하느냐에 따라, 기근 절정기에도 1억이나 2억 달러 정도만 곡식을 구입했어도 부족분을 메울 수 있었을 것입니다. 심지어 기근 시기 동안에도 북한 당국은 마음만 먹었다면 곡식을 수입해서 재앙을 피할 만큼의 자원은 충분히 가지고 있었습니다.”<sup>960</sup>

957\_ 2013년 11월 IMF가 쌀 가격을 448달러로 추산한 것 참조. <http://www.imf.org/external/np/res/commod/pdf/monthly/121313.pdf>

958\_ 위원회가 입수한 다른 수치는 이 수치보다 높아서 약 147억 달러 정도라는 점을 시사한다.

959\_ 조사위원회 제출: Marcus Nolan.

960\_ 워싱턴 공청회, 2013년 10월 31일, 오전(01:16:00).



646 심지어 군장비를 구입하는 것을 연기하고 국제시장에서 식량을 구매하는데 외화를 사용하기만 했어도 많은 숫자의 사람을 구했을 것이다. 1994년 북한 당국이 식량 부족에 대해 이미 알고 있을 때도 북한은 잠수함 몇 대를 구입한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sup>961</sup> 1999년, 북한 당국은 상업적인 곡식 수입을 20만 톤 이하로 줄이면 서도, 벨라루스로부터 40대의 MiG-29 제트 전투기와 카자흐스탄으로부터 8대의 군 사용 헬리콥터를 구입하는데 외화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sup>962</sup>

647 2005년 유엔 사무총장은 북한 당국이 군사/방위비 지출을 줄이고 자원의 공평한 재분배를 확보함으로써 식량 위기 및 기타 개발이 필요한 영역에 사용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하였다.<sup>963</sup>

648 하지만 조사위원회는 북한이 인도주의적 관심사보다 군대를 우선시하는 태도를 바꾸었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 오히려 현 최고지도자 김정은은 “선군” 정책은 여전히 북한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 중 하나라고 주장하였다. 2012년 4월 15일 당 제1비서, 즉 최고지도자로서 행한 첫 번째 연설에서 김정은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우리가 선군 조선의 영광을 영원히 기리고 강력한 사회주의국가라는 이념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려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도, 모든 면에서 인민군을 강화해야 한다.”<sup>964</sup>

961\_ 예를 들면, “North Korea Buying Old Russian Subs,” *New York Times*, 1994년 1월 20일. <http://www.nytimes.com/1994/01/20/world/north-korea-buying-old-russian-subs.html> 참조.

962\_ 조사위원회 제출: Stephen Haggard and Marcus Noland, *Hunger and Human Rights*, p. 16.

963\_ A/60/306, para. 17.

964\_ 2012년 4월 15일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김정은이 한 연설. 전문 공식적 영어 번역문을 <http://www.northkoreatech.org/2012/04/18/english-transcript-of-kim-jong-uns-speech/>에서 볼 수 있음.

649 2012년 최고인민회의에서 국가 예산에 대한 보고를 할 때, 재정상 최광진은 오직 “전체 예산의 38.9%만 사회주의하에서 보편적인 무상 의무 교육 시스템, 무상 건강 관리, 사회 보장, 사회 안전, 재활, 휴식 및 문예 발전과 스포츠 능력 증진 같은 사회 문화를 위한 대중적 정책들과 조치들을 집행하는 데 쓰였다”<sup>965</sup>고 말하였다. 최광진의 보고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분야에 더 많은 예산이 쓰이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었지만, 그러면서 “국가 예산의 일부는 국방으로 가고 있다”고 어렴풋이 언급하고 있기도 하다.<sup>966</sup>

#### (b) 식량 관련 국가 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원조 이용

650 북한은 외국으로부터의 원조에 대해 애매한 태도를 취해왔다. 처음에는 그런 원조를 북한 체제의 실패를 승인하는 것이며 외국의 간섭이 들어오는 시점으로 간주하였다. 북한 식량 피해 복구 위원회 위원장 리종화는 북한이 기근에 시달리고 있다는 말을 “순전한 거짓말”이라고 하였다. 그는 정치적 목적이 있는 식량지원은 당국의 자존심을 손상시키며, 경제 및 정치적 변화에 대한 요구를 불러 일으킬지도 모르기 때문에 북한은 어떠한 식량 지원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말하였다.<sup>967</sup> 1997년 김정일은 “제국주의자들의 지원은 하나를 주고 열이나 십지어 백까지 빼앗아가려는

965\_ “Review of Fulfilment of State Budget for Last Year and State Budget for This Year,” KCNA, 2013년 4월 1일. 최광진의 보고서는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7차 회의 전에 제출되었다.

966\_ 보고에 의하면 북한은 2012년 두 대의 로켓을 쏘아올리기 위해 134억 달러를 소비하였다. “North Korea’s rocket costs as much as a year’s worth of food,” *The Hankyoreh*, 2012년 12월 8일. [http://www.hani.co.kr/arti/english\\_edition/e\\_northkorea/564382.html](http://www.hani.co.kr/arti/english_edition/e_northkorea/564382.html).

967\_ Kristin Gustavson and Jinmin Lee Rudolf, “Political and Economic Human Rights Violations in North Korea” in Thomas H. Henrikson and Jongryn Mo, eds., *North Korea after Kim Il Sung : Continuity or Change?* (Hoover Institution Press, 1997), p. 142.

약탈과 복속의 올가미”<sup>968</sup>라고 말하였다. 2000년 노동신문은 인도주의적 지원에 대한 북한의 공식 입장을 보도하였다. “제국주의자들의 지원은 공격의 도구이다 … 번영이 아니라 가난, 기근, 죽음을 가져오는 위험한 독이다.”<sup>969</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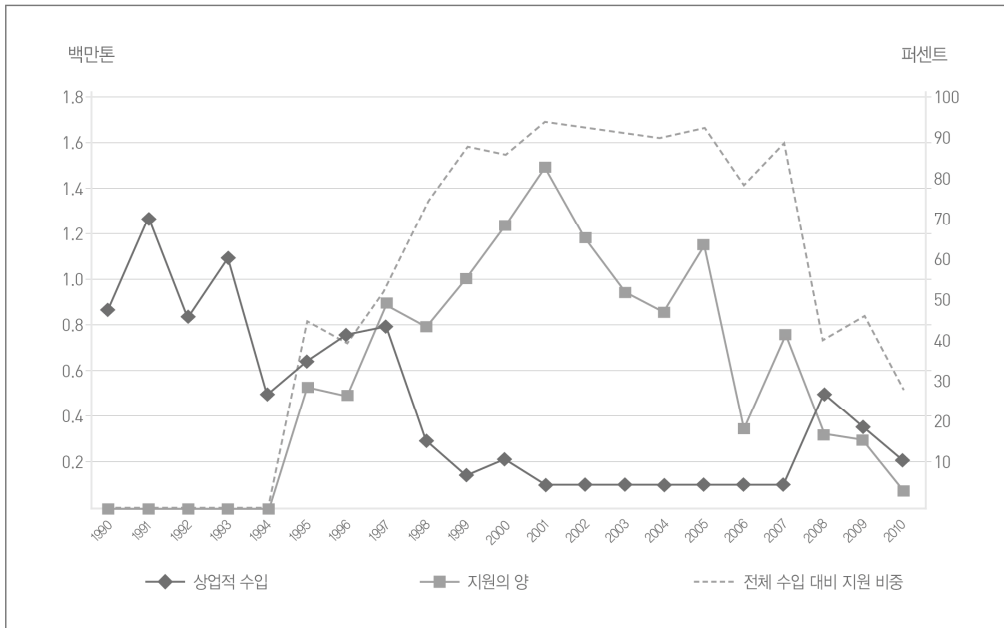
**651** 하지만 북한은 자기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지원을 사용하였다. 북한은 지원 활동의 조건 여부와 북한 내로 들어오는 국제적 활동가의 수를 인도주의 단체가 협상 테이블로 가져오는 돈의 액수와 연계시켰다.<sup>970</sup>

**652** 가장 큰 문제는 북한이 국제적 지원을 가장 취약한 주민들의 굶주림과 아사를 완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한 것이 아니라 국제 수지 적자를 메우는 데 썼다는 점인데, 이는 통계 수치로 알 수 있다. 북한은 지원이 들어오자 그만큼 더 식량을 수입한 것이 아니라, 상업적 수입 대응으로 사용했다는 것이 분명하다. 마커스 놀랜드가 워싱턴 공청회에서 제시한 다음 그래프(그림 12)는 북한에 대한 지원이 증가함에 따라 북한의 식량 수입은 감소하는 것을 보여준다.

968\_ Kim Jong-il, “On preserving the Juche Character and National Character of the Revolution and Construction” (1997년 6월 19일). <http://www.koreadpr.com/lib/111.pdf> 참조.

969\_ “North Korea warns against outside aid,” *The Associated Press*, 2000년 10월 4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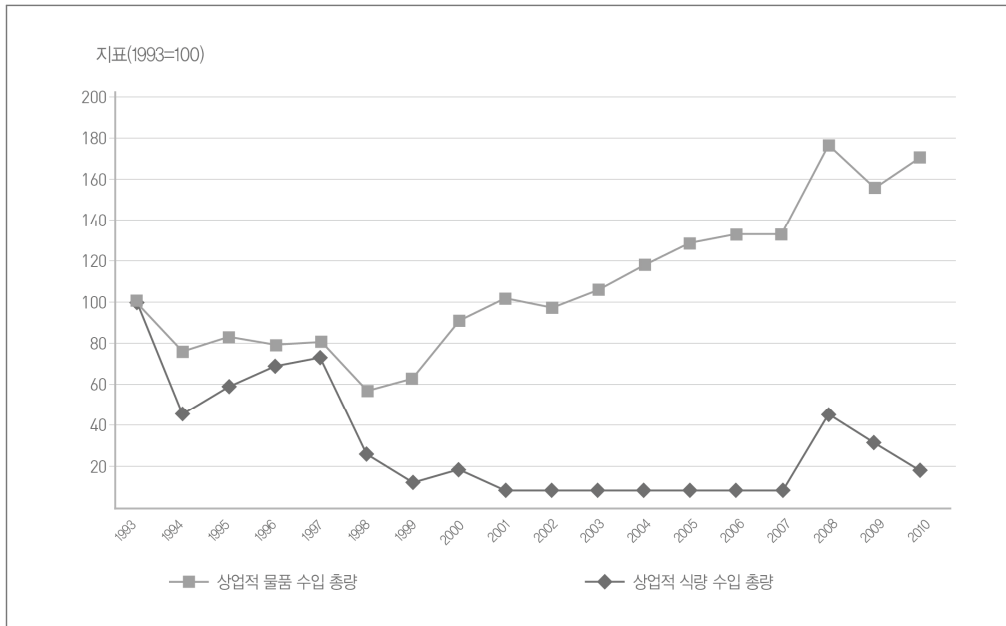
970\_ 유엔 국가팀 북한 담당에 의하면 “북한 당국은 활동 조건을 개선해주는 문제를 계속해서 북한에 주어지는 물자의 양과 연계시키는데, 이로 인해 자금이 부족한 기구들은 그만큼 북한 주민에게 접근하는 데 제약을 받는다는 것이다.” “Overview of needs and assistance” 참조, 2012.



[그림 12] 북한의 식량 지원 대비 상업적 식량 수입<sup>971</sup>

**653** 다음 그래프(그림 13)는 역시 마커스 놀랜드가 조사위원회에 제출한 것으로, 북한 식량 수입의 변화와 비교하여 전반적 상업적 수입의 변화를 보여준다. 북한이 만성 영양실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1993년과 2010년 사이 식량 수입은 줄고, 다른 상업적 수입은 현저하게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971\_ 조사위원회 제출: Marcus Noland는 International Food Aid Information System (INTERFAIS) 자료 내 이용 가능한 FAO/WFP 자료에 기초했다.



[그림 13] 북한: 물품 및 식량 수입<sup>972</sup>

### (c) 양자 공여국의 역할

654 다자간 기구는 북한의 지원 전달에 있어서 역할이 상대적으로 미약하였다. 1995년 이래 북한에 전달된 전체 식량 지원의 75%가 중국, 한국, 미국, 그리고 일본에 의해 제공되었다. 이 국가들이 지원을 제공한 조건은 각각 다르다. 햇별정책 기조하에 한국은 많은 양의 지원을 조건없이 하였다. 미국은 지원을 북핵 관련 사안의 진전과 연계시켰다. 1995년에서 2009년 사이, 미국은 에너지 지원금으로 북한에 6억 달러를 제공하였다. 이 지원은 1995년부터 2003년, 그리고 2007년부터 2009년에, 북한이 플루토늄 추출 핵 시설을 동결한다는 조건으로 주어졌다.<sup>973</sup>

972\_ 조사위원회 제출: Marcus Noland는 한국 등 일부가 제공한 자료에 기초했다, FAO Special reports, and Mr Noland's own calculations.

973\_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CRS), "Foreign Assistance to North Korea," 2013년 6월 11일.

**655** 양자 공여국들이 지원을 다루는 방식은 유엔과 기타 인도주의적 기구들에 영향을 주었다. 2000년대 중반 중국과 한국이 제공한 무조건적인 지원은 북한으로 하여금 WFP가 정착시키고자 한 몇몇 모니터링 계획들을 거부하게끔 하였다고 참관인들은 말한다.<sup>974</sup> 미 의회조사국(U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CRS)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2006년 북한 당국이 WFP의 규모를 줄이고 지원 물자를 분배하고 모니터링하기 어렵게 만드는 새로운 제약을 부과하자 WFP는 프로그램 규모를 현저히 줄였다. 그 후 WFP와 평양은 WFP가 원래 목표로 했던 지원 대상 규모인 640만 명의 3분의 1도 안 되는 190만 명 분에 해당되는 식량을 제공하기로 교섭하였다. 북한 총 인구는 약 2200만 명이다. 이 교섭 이후 북한 주재원의 75%가 삭감되어 10명만 남게 되었으며, 이들 모두 평양에 주재하고 있다. 2006년 이전에는 40명 이상이 북한 6개 지역에 주재하면서 매년 수천 건 이상의 이동 모니터링을 하고 있었다. 북한은 자국 주재 WFP 직원들에게 한국어 가능자 고용을 허락하지 않고 있다.<sup>975</sup>

#### (d) 최고지도자의 이익을 위한 평행 기금(Parallel fund)

**656** 1990년대 북한이 겪은 경제적 및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북한 당국은 외화를 벌어들이기 위해 다양한 합법적 및 불법적 활동에 관여하기 시작하였다.<sup>976</sup> 하지만 그렇게 해서 획득된 외화는 기근 시기 동안 북한 주민이 절실하게 필요로 했던 식량, 약품, 기타 물품을 사는 데 쓰이지 않았다. 대신 그것은 정규 당국의 예산 외에 평행 기금으로 흘러 들어갔다.<sup>977</sup>

974\_ "North Korea rejects UN food aid" 참조, *BBC News*, 2005년 9월 23일. <http://news.bbc.co.uk/2/hi/asia-pacific/4273844.stm> 참조.

975\_ CRS, "Foreign Assistance to North Korea".

976\_ Stephen Haggard and Marcus Noland, *Famine in North Korea*, p. 245.

977\_ TBG025, TJH015.

657 이런 기금은 전부터 있었던 것으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와 제도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부서를 통해 최고지도자가 직접 관리하는 것이다. 이것은 최고지도자 자신, 그 가족, 그 주변에 있는 다른 엘리트 등의 사적 비용 및 기타 공식적 예산에서는 드러나서는 안 되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최고지도자 자신이 직접 관리하는 것이다.

658 관료들로부터 얻은 증언은 북한 당국이 외화를 벌기 위해 다양한 범죄 행위에 관여하였다는 점을 보여준다. 범죄 행위로부터 얻은 수익은 2008년에 연간 5억 달러 정도 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북한 연간 수출의 3분의 1에 이른다.<sup>978</sup> 정보에 의하면 북한 당국이 해외파견한 노동자 임금의 상당 부분이 이러한 돈의 유형에 해당한다고 한다.<sup>979</sup>

- 한 증언자는 1997년에 조선국제보험회사(KFIC)의 동북아시아 은행에서 자기가 했던 일에 대해 기술하였다. 그는 북한 당국의 두 가지 평행한 예산의 존재를 상세히 설명하였는데, 그는 이것들을 “인민 경제”와 “공정 경제”(최고지도자에 의해 운영되는 것)라 불렀다. 그는 외국 보험 회사에 사기를 쳐서 외화를 버는 일을 맡았다. 이후 이 돈은 “왕실 경제”에 재배치되었다. KFIC에서 생산된 모든 문서들은 외화 벌이가 대부분 김정일의 개인적 “혁명 기금”에 기여하기 위해서 사용됐다는 증거를 제거하기 위해서 파기되었다. 그 증언자 자신이 많은 문서들, 예컨대 회계 기록과 인출 정보 등을 파기했다고 한다.<sup>980</sup>
- 1990년대에 금수산 태양궁전에서 일했던 한 명의 증언자는 조선노동당의 경리부는 김씨 가족이 원하는 것을 생산, 처리,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데, 심지어 그들의 쌀은 독립적으로 생산된다고 진술하였다. 그는 무역회사 중 하나인 능라 888이 이 펀드를 위한 재정을 생성한다고 진술하였다.<sup>981</sup>

978\_ CRS, “Report for Congress, North Korean Crime-for-Profit Activities,” 2008년 8월 205일.

979\_ 예를 들면, “Overseas North Koreans Work like Kim Jong Il’s Slaves,” *Daily NK*, 2011년 4월 29일 참조.

980\_ TLC032.

981\_ TBG025. 이 회사의 이름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874호(2009), S/2013/337에 따라 설립된 안전보장

- 전 보위부 요원은 모든 당국 기관들에게 매년 그들이 벌어야만 하는 외화 할당량이 주어졌다고 진술하였다.  
“당국은 돈이 어디서 오는지 신경 쓰지 않았고, 요원들은 무슨 짓이든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중국 상인과 무기, 마약을 거래했던 보위부 요원들을 알고 있었다. 그 요원들은 북한에 있는 당국의 마약 공장과 창고로부터 무기과 마약을 획득하였다. 그 증언자는 중앙의 당국 관계자에 의해 공식적으로 허가 받은 마약 각성제의 밀매에 대한 직접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sup>982</sup>
- 한 증언자는 어떤 회사가 한방약의 생산을 위해 사용되는 재료들을 사서 그것들을 한약 생산자에게 팔았다고 말하였다. 1990년대에 그는 정기적으로 교화소에 가서 그곳에서 생산되는 아편을 샀고, 그것들을 무역회사에 팔았다. 그는 약재 관리를 위한 지방정부의 경제 계획을 본 적이 있는데, 그 계획은 특히 아편이 수출을 목적으로 생산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sup>983</sup>
- 국영 기업소의 관리자였던 또 다른 증언자는 조선노동당의 중요 인물이 외화 창출을 위해서 그 증언자의 회사에 아편을 재배하고 거래하라는 지시를 내렸던 것을 기억하였다.<sup>984</sup>
- 또 다른 전직 관료는 전세계에 있는 북한 대사들의 불법 행위에 대한 세부적인 정보를 제공하였다. 그들은 이슬람 국가에서의 불법 주류 판매나 국제적으로 금지된 아프리카 국가들에서 중국으로의 상아 밀매 등의 행동에 가담하였다.<sup>985</sup>

### (e) 개인송배 심화와 정치조직 찬양

**659**     이전 고위 공직자 출신들을 포함한 다수의 증언자들의 증언은 북한 자원의 상당 부분이 개인송배와 김씨 정권 찬양을 고취시키기 위해 사용되어 왔다고 증언

---

이사회 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한 전문가 패널의 보고서에도 언급되어 있다.

982\_ TJH015.

983\_ TJH005.

984\_ TJH022.

985\_ TBG022.



하였다.

- 1973년에 세워진 금수산 의사당은 이후 어마어마한 김일성의 묘로 변하였다. 그 작업은 대규모 기아가 국가를 황폐화시킨 1995년에 시작하였다. 금수산 태양궁전은 기근의 절정기에 만들어진 기념비적 건물의 한 예이다. 그것은 20만 명이 모일 수 있는 10,000㎡의 주 광장을 가지고 있는 34,910㎡나 되는 건축물이다. 전하는 바에 따르면, 건물을 꾸미기 위해 70만 개의 화강암 조각품들은 20가지 다른 모양으로 조각되었다.<sup>986</sup> 고위 공직자 출신의 어떤 사람은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 “김일성이 1994년에 죽었습니다. 수개월 간의 애도가 있었고, 그의 무덤과 다른 기념물들의 건축을 위해 7억 9천만 달러 정도의 비용이 사용되었습니다. 이미 열악한 상태에 있는 북한 경제는 바닥을 쳤습니다.”<sup>987</sup>
- 또 다른 전직 관료는 김일성 장수연구소에서 했던 일을 설명했는데, 이것은 상당히 전문성이 있는 연구시설로, 그 목적은 오로지 김일성과 김정일의 장수와 건강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었다.<sup>988</sup>
- 또한 조사위원회는 평양에서 1989년 7월 1~8일에 개최된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에 사용된 엄청난 지출에 대한 증언을 들었다.<sup>989</sup> 세계청년학생축전은 누가 봐도 1988년 한국에서 개최한 올림픽에 대한 반응으로 개최된 것이었다.
- 김정일을 보호하기 위해 선임된 조선인민군 경호 조직의 멤버였던 한 증언자는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김정일은 비행기, 배, 기차, 헬리콥터, 차 등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는 비행기를 이용하지 않았는데, 그래도 한 대 갖기를 원하였습니다.”<sup>990</sup>

**660** 당국 지출의 상당한 부분이 김일성과 그의 후계자의 거대한 동상 및 이들에 대한 개인승배를 고취시키고 그들의 업적을 진열하기 위해 계획된 여타 다른 프

986\_ “The First disclosure of the Kim Il Sung Tomb Castle which was built at the expense of 3 million lives,” *Daily NK*, 2006년 7월 3일. <http://www.dailynk.com/english/read.php?catald=nk00100&num=606>와 이러한 시설의 사진이 게재되어 있는 북한 우리민족끼리 웹사이트([www.uriminzokkiri.com](http://www.uriminzokkiri.com)) 참조.

987\_ TBG022.

988\_ TSH019. 또한 “Oriental medicine doctor gives S. Koreans tastes of N. Korea’s ‘royal court medicine’” 참조, *Yonhap News*, 2011년 8월 22일.

989\_ TAP011.

990\_ TBG012.

로젝트들에 바쳐지고 있다. 이러한 프로젝트들은 절대적으로 우선권이 주어지는데, 이는 그것들이 자주 짧은 기간에 완성된다는 사실에 의해 입증된다.<sup>991</sup> 북한 재정상 최광진은 2012년 북한의 예산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다.

경제발전과 주민의 생활수준 향상을 위한 전체 당국 예산 지출의 44.8%는 김일성의 100번째 생일을 기념하기 위한 건물을 세우는 비용으로 사용되었는데, 이는 주체사상에 기반한 현대적이고 자급자족적인 경제의 물질적이며 기술적인 결집으로, 국가의 체면을 세우기 위한 작업이었다.<sup>992</sup>

**661** 2013년 김정은은 조선인민군에 한국에서 2018년 동계올림픽 개최 준비로 세워지고 있는 겨울 스포츠 시설들에 필적하는 세계 최상급의 스키 리조트 건설을 명령하였다. 2013년 5월 그 장소를 방문했을 때, 보고에 따르면, 김정은은 “군인인 건축 노동자들이 총 길이 11만m, 40~120m 폭의 초급, 중급, 고급 코스를 포함하여 수십만 제곱미터 범위에 달하는 스키장을 산에 건설한다는 것을 알고 매우 만족하였다”고 한다.<sup>993</sup>

**662** 평양의 문수 워터 파크, 능라 돌고래 수족관, 기쁨 공원 및 원산의 해안 비치 리조트 타운 건설 등 일반적인 국민들의 상황에 즉각적으로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다수의 유사한 고급 프로젝트들이 추진되고 있다.<sup>994</sup>

991\_ 예를 들어 승리조국 전쟁박물관 확장 공사는 10개월 걸렸다. “Report on WPK Leadership over Construction of War Museum,” KCNA, [http://www.youtube.com/watch?v=KDK3WjuRkw4&feature=player\\_embedded](http://www.youtube.com/watch?v=KDK3WjuRkw4&feature=player_embedded) 참조.

992\_ “Review of Fulfilment of State Budget for Last Year and State Budget for This Year,” KCNA, 2013년 4월 1일. <http://www.kcna.co.jp/item/2013/201304/news01/20130401-20ee.html> 참조.

993\_ “Kim Jong Un Visits Masik Pass Skiing Ground,” KCNA, 2013년 5월 26일.

994\_ “Songdowon Bathing Resort Crowded with Visitors,” KCNA, 2013년 8월 24일. <http://www.kcna.co.jp/item/2004/200408/news08/25.htm> 참조; “Munsu Water Park Completed,” KCNA, 2013년 10월 15일. <http://www.kcna.co.jp/item/2013/201310/news15/20131015-30ee.html> 참조; “Runga Dolphinarium Crowded with Visitors,” KCNA, 2013년 8월 21일. <http://www.kcna.co.jp/item/2013/201308/news21/20130821-15ee>.

## (f) 사치품 구입

663 북한 당국은 계속해서 국가 자원의 상당한 부분을 사치품 구매와 수입에 할당하고 있으며, 이는 사치품 수입을 금지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가 잘 이행되고 있는지 모니터하기 위한,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874호(2009년)의 취지에 따라서 설립된 유엔 전문가 위원회의 보고서들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한 보고서에서 전문가 위원회는 이탈리아에 의한 12,000유로(17,290달러)의 가치가 있는 고가의 꼬냑과 위스키, 그리고 130,000유로(187,310달러)의 가치가 있는 1,000명을 수용하는 극장을 위한 장비 같은 사치품들을 압수하였다고 기술하였다. 더 나아가 그 보고서는 북한 당국이 메르세데스-벤츠 12대, 고급의 음악 레코딩 장비, 36대 이상의 피아노와 화장품을 구매하고 수입하려고 시도하였다고 밝혔다.<sup>995</sup>

664 북한 당국의 사치품 지출은 2012년에 6억 4,580달러(4억 7천만 유로)에 이르렀다. 2013년 10월 보고에 따르면 이 수치는 김정일 치하의 연평균 3억 달러 지출 규모에서 급격히 증가한 것이다.<sup>996</sup>

## 7. 기아로부터의 자유 침해, 아사, 기아 관련 질병

665 기아로부터의 자유는 적당한 식량을 가질 권리(사회권규약 제11조제1항)와

html 참조. 또한 “Kim splurges on vanity projects while his people go hungry,” *DW*, 2013년 11월 1일. <http://www.dw.de/kim-splurges-on-vanity-projects-while-his-people-go-hungry/a-17198244> 참조.

995\_ 2010 보고서 S/2010/571; 결의 1894호(2009)에 따라 설립된 전문가 패널의 보고서. <http://www.un.org/sc/committees/1718/panelofexperts.shtml> 참조.

996\_ “North Korea’s Kim Jong-un splurges on luxury goods in bid to strengthen rule,” *The Telegraph*, 2013년 10월 14일. [www.telegraph.co.uk/news/worldnews/asia/northkorea/10377154/North-Koreas-Kim-Jong-un-splurges-on-luxury-goods-in-bid-to-strengthen-rule.html](http://www.telegraph.co.uk/news/worldnews/asia/northkorea/10377154/North-Koreas-Kim-Jong-un-splurges-on-luxury-goods-in-bid-to-strengthen-rule.html) 참조.

생명권(자유권규약 제6조)의 결합 지점에 있다. 국가는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해 일부 국민이 식량권을 보장받지 못할 경우, 필요하다면 외부의 원조를 받아 식량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

**666** 1990년대 북한에서 얼마나 많은 인구가 기아나 연관된 질병에 의해 죽었는지에 대한 많은 논쟁이 있어왔다. 보고에 따르면 1999년 전인찬 큰물복구위원회 고위 관리는 1995년에서 1998년 사이에 사망자 수가 37% 증가했음을 보여주는 수치를 발표했고, 이는 기아로 인해 22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음을 보여주었다.<sup>997</sup>

**667** 다른 자료들은 사상자 수가 더 많을 수도 있음을 보여준다. 어떤 전직 고위 관료의 주장에 따르면 1995년에만 기근으로 50만 명이 죽었고, 1996년과 1997년에는 매년 100만 명이 사망했다고 한다.<sup>998</sup> 한국의 어떤 정보통은 인민보안부에서 1998년 7월에 수행한 조사에서 1995년에서 1998년 사이에 250만~300만 명의 인구 감소를 기록하였다고 보고한 바 있다.<sup>999</sup> 그러나 이 수치는 이주자를 포함하거나 추가적인 식량 지원을 확보하기 위해 부풀린 것일 수 있다. 1998년 북한의 고위급 북한이탈주민 황장엽은 여러 공적인 자리에서 1995년에서 1997년 사망자의 수가 250만 명이라고 말하였다.

“1996년 11월 나는 국가 경제가 우려된 나머지 농업에 관한 통계와 식량을 담당하는 고위 간부에게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굶어 죽었는지 물어보았다. 그에 따르면 1995년에 5만 명의 당 간부단을 포함해서 약 50만 명이 굶어 죽었고, 1996년에는 약 100만 명이 굶어 죽은 것으로 추정되며, 만약 국제 원조가 제공되지 않았다면 1997년에는 약 200만 명이 굶어 죽었을 것이라고 대답하였다.”<sup>1000</sup>

997\_ “North Korea Admits Its Famine Killed Hundreds of Thousands,” *Associated Press*, 1999년 5월 10일.

998\_ TBG020.

999\_ “North Korea ‘loses 3 million to famine,’” *BBC News*, 1999년 2월 17일, <http://news.bbc.co.uk/2/hi/asia-pacific/281132.stm> 참조.

668 다양한 학자들이 사망자 수의 추정치를 구하기 위해서 현존하는 데이터에 통계적 방법론을 적용해 왔다. 2001년 다니엘 굿카인드(Daniel Goodkind)와 로레인 웨스트(Lorraine West)는 기근으로 인한 추가 사망자는 1995년에서 2000년 사이에 거의 60만 명에서 100만 명에 이른다고 결론을 내렸다.<sup>1001</sup> 2011년 그들이 추정치를 49만 명으로 하향조정하 바 있다.<sup>1002</sup> 존스 홉킨스 의과대학 공중보건 연구소는 1995년부터 1998년까지 210만 명이 사망했을 것으로 추산하였다.<sup>1003</sup> 스티븐 해저드와 마커스 놀랜드는 기근으로 인해 60만 명에서 100만 명, 혹은 기근이 오기 전의 인구의 3~5%의 수가 사망했을 것으로 추산하였다.<sup>1004</sup>

669 조사위원회는 1990년대 “대기근” 혹은 고난의 행군과 관련하여 위원회 나름의 추산을 제시할 입장이 아니다. 하지만 어느 모로 보나 대규모의 국제인권법 위반으로 인해 아무리 적게 잡아도 수십만의 무고한 생명이 희생되었다는 것은 분명하다. 더욱이 이런 고통은 죽은 자뿐만 아니라 생존한 수백만 명에게도 영향을 주고 있다. 생존한 사람들은 그들이 경험했던 기아와 영양실조로 인해 장기간 지속되는 신체적, 심리적 장애를 입게 된 것이다.

670 지난 20년간 제공되었던 대량의 국제 원조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영양실조와 발육장애 비율은 대단히 높으며, 그 분포 또한 불균등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

1000\_ Hwang Jang-yop, *North Korea: Truth or Lies*, (Intitute for Reunification Policy Studies, 1998), p. 15. SUB0064.

1001\_ Daniel Goodkind and Lorraine West, “The North Korean Famine and Its Demographic Impact,”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vol. 27, No. 2 (June 2001). <http://www.jstor.org/stable/2695207> 참조.

1002\_ Daniel Goodkind, Lorraine West and Peter Johnson, “A Reassessment of Mortality in North Korea, 1993~2008,” 2011년 3월 28일. <http://paa2011.princeton.edu/papers/111030> 참조.

1003\_ W Courtland Robinson and others, “Rising Mortality in North Korean Households Reported by Migrants in China,” *Lancet*, vol. 354, No. 9175 (July 1999).

1004\_ Stephen Haggard and Marcus Noland, *Famine in North Korea*, pp. 72~76.

사위원회는 특히 북한에서 진행되고 있는 아동 관련 상황에 대해 우려하는 바이다. 북한도 성원국인 아동권리협약 제6조는 모든 아동의 고유한 생명권을 인치하며 회원국들에게 “가능한 한 최대한도로 아동의 생존과 발달을 보장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671 임신 중 모체의 영양부족, 출생 시 저체중, 아동 발육장애 및 체중 미달의 밀접한 상관성에 대해서는 오래 전부터 알려져 있으며, 그 세대 간 영향도 심각하다.<sup>1005</sup> 이 세대 간 순환 고리를 끊는 것은 특히 중요한 일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근본적인 윤리적 사안일 뿐 아니라, 자국민의 미래의 지적·경제적 역량에 대해 관심을 갖는 모든 정부에게 있어서 우선순위가기 때문이다.”<sup>1006</sup> 위원회의 견해로는 기아의 세대 간 영향도 인권 및 신뢰성 관점에서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672 기아는 식량권에 대한 가장 심각한 침해이다. 기아를 상정할 때 4가지의 대략적인 상황을 고려해 볼 수 있다.

- 당국의 통제를 벗어나는 요인으로 인한 기아(자연재해 등)
- 국가의 역량 부족, 무능력, 부패 및 기타 요인으로 인한 기아
- 국가가 상황을 알면서도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무관심해서 발생하는 기아
- 고의적으로 유발된 기아

673 이 4가지 상황은 각기 다른 수준의 국가 책임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들은 개인적 책임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의미를 갖는다. 조사위원회는 이 보고

1005\_ 예를 들면 “Ending Malnutrition by 2020: an Agenda for Change in the Millennium,” Final Report to the Administrative Committee on Coordination of the United Nations Standing Committee on Nutrition (ACC/SCN) by the Commission on the Nutrition Challenges of the 21st Century, 2000년 2월 참조.

1006\_ E/CN.4/Sub.2/1999/12, para. 22 참조.

서의 제5장에서 대규모 기아를 촉발하고 이로 인한 인명피해를 발생시킨 것으로 알려진 결정에 입각해서 저질러진 반인도범죄의 책임을 고려할 것이다.<sup>1007</sup>

**674** 북한은 자연재해의 발생 및 적대적인 국가의 제재 등을 포함한 조치들이 자국의 영양실조와 기아에 대한 공식적인 원인이라고 계속해서 발표하였다. 식량 상황에 대해 국가의 통제를 넘어서는 요인의 영향에 대해서도 적절하게 고려하지만, 동시에 조사위원회는 북한과 그 지도층의 결정, 행동, 부작위 등이 이런 상황을 만들고 악화시켰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그것들은 적어도 수십만 명의 인명을 희생시켰던 것이다. 살아남은 사람도 세대 간 손상을 포함한 항구적인 신체적 및 생리학 적 손상으로 고통 받고 있다. 북한의 기근 유발적 조건을 만든 행동과 부작위는 다음과 같다.

- 대중의 식량 안보보다 엘리트의 이념, 정치, 이해관계를 우선시함.
- 식량을 대중 통제의 수단으로 사용함.
- 인명을 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었던 정보와 자료를 은폐함.
- 국민이 식량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줄 정보의 자유, 이동의 자유의 권리를 침해함.
- 국가가 대규모 기아에 직면하고 있을 때조차 국제 인도주의 단체가 완전히 접근하여 모니터링하는 것을 금지함.
- 인도주의 단체의 유형과 범위에 재정적 조건을 부과함.
- 식량 및 국제 지원을 ‘성분’에 기초하여, 또한 북한에 대한 충성스럽고 유용하다고 생각되는 정도에 따라 차별적인 방식으로 분배, 전용함.

**675** 조사위원회는 1990년대 이래 전개되었던 몇 가지 요인 외에도 기아를 악화시키거나 야기하는 요소들이 북한 당국의 통제 아래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을 우

1007\_ V장 F 참조.

려하고 있다. 이러한 요인들이 북한의 기근과 대규모 기아를 재발시키고 있을지 모른다. 북한은 인도주의적 구호단체의 접근을 방해하고 도움을 계속해서 거부하고 있다. 북한은 이렇게 진정한 협력을 거부하는 것이 북한 내부의 기아, 발육장애, 기타 식량 관련 문제들로 인한 사망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 북한은 주민의 생명과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에 대해 계속 비밀스러운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문제에 대한 접근을 막고 적절한 모니터링을 방해함으로써 북한 당국은 사람들, 특히 가장 취약한 사람들에 대한 효율적인 식량 원조 프로그램 개발을 방해하고 있다.

**676** 북한으로부터 들어오는 보고는 여전히 높은 수준의 영양실조, 발육장애, 아사를 가리키고 있다. 이런 보고서에서 대두되는 특수한 지역적 및 사회적 양상은 ‘성분’이라고 하는 국가가 지정한 사회 계급에 기초한 차별에 근거하고 있다. 북한은 또한 자국의 기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원을 최대한 이용하지 않고 있다. 차별, 이념적 고려, 이동의 자유 제한, 언론의 자유 제한, 결사의 자유 제한, 의사 결정 과정에서의 대중의 참여 부족 등은 식량권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지속적인 개선의 여지를 없애버린다. 이와 같은 요인들이 존재하는 한 시장에서 식량을 구할 수 있게 되더라도 기아를 멈출 수는 없을 것이다.

**677** 북한에서 대규모 기아 사태가 발생하기 전인 1983년, 노벨상 수상자이며 기근 및 그 원인에 대한 전문가인 아마르티야 센(Amartya Sen) 박사는 이렇게 말하였다. “기아는 먹을 음식이 충분하지 못한 사람들 중 일부에게 발견되지만, 먹을 음식이 충분하지 못하다 해서 무조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sup>1008</sup>

1008\_ Amartya Sen, *Poverty and Famines: An Essay on Entitlements and Deprivation* (Oxford, Clarendon Press, 1983).



678 기아 문제를 식량 가용성에만 초점을 맞추게 되면 왜 그 문제가 발생했으며, 이 상황이 재발할 수도 있음을 간과하기 쉽다. 이런 취지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한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일 만하다.

기근은 식량의 부족, 기아, 사망이라는 3단계로 되어 있는 장기적인 정치적·사회적·경제적 억압의 과정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이 과정의 정점은 마지막 단계인 질병과 사망이 일어나기 훨씬 전에 온다. 이 과정이 사람들이 죽기 전에 멈춘다 하더라도, 그것 역시 기근이다. 둘째, 기근의 정의를 내릴 때 피해자에게만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된다. 기근의 과정이란 집단의 한 부분에 이익이 편중돼 집단의 나머지가 손해를 보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sup>1009</sup>

679 공청회의 전문가들 및 위원회가 수집한 다양한 증언들은 이런 통찰이 북한에도 적용됨을 확실히 보여주었다.

- 도쿄 공청회에서 이시마루 지로 씨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북한을 조사한 나의 경험으로 나는 북한이 절대적인 식량 부족 사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북한의 기근은 식량에 대한 접근성 문제이다”<sup>1010</sup>

680 식량에의 접근은 식량을 통제하는 권력과 그런 통제권이 없는 집단 사이의 관계의 문제이다. 이 관계의 핵심에는 인권이 존재한다. 북한에서 민주적,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권리가 진보하지 않는 한, 주민들은 굶주림과 기아의 위기에 처하게 된다. 고도의 중앙집중적인 결정권이라는 맥락에서 식량의 배분, 외국으로부터의 식량 구입, 국가 예산 배분, 국제 기구 및 국제 시민단체와의 상호작용, 이 모든 것이

1009\_ 이 논쟁은 본래 Amrita Rangasami “Failure of exchange entitlements theory of famine: a response,” *Economic and Political Weekly*, vol. 20, No. 41 (1985), p. 1748에 의해 발전되었다., Jenny Edkins, “Starvations and the Limitations of Famine Theorising,” *Institute of Development Studies (IDS) Bulletin*, vol. 33, No. 2, (2002), p. 14에서도 찬성의 의미로 인용되었다.

1010\_ 도쿄 공청회, 2013년 8월 29일, 오후(01:35:17).

소수의 관료 집단에 의해 결정된다. 이 관료들이야말로 주민들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의 행태를 책임져야 할 것이다.

## 8. 수감자의 식량권 침해

681 조사위원회는 북한 정권이 정치범수용소 및 기타 구금시설 내 수감자들의 식량권 침해에 대해 고의성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sup>1011</sup> 북한 내 수감자들의 굶주림은 매우 일상적이며, 북한 정권은 의도적인 식량권 제한을 통해 수감자들에 대한 통제와 징벌을 행해 왔다. 수감자 통제 수단으로써의 식량 배급량 조절은 문건에도 드러나 있다. 구금시설 측에서는 수감자들의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기아가 수감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경험적 결과를 축적할 수 있었다. 북한의 수감자들의 식량권 침해는 북한의 식량 상황과는 상관없이 일상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sup>1012</sup>

## 9. 조사위원회의 주요 조사결과

682 북한의 식량권, 기아로부터의 자유, 생명권 침해는 부족한 식량과 생필품 부족이라는 한정된 범위에서만 논의될 성격의 문제가 아니다. 북한 정권은 무엇보다도 정권 유지를 최우선순위에 두고, 북한 주민을 소모품으로 여기며 식량을 북한 주민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1011\_ 정치범수용소의 상황에 대한 더욱 자세한 설명은 IV장 E.3과 IV장 E.4 참조.

1012\_ IV장 E 참조.

**683** 굶주린 주민들로부터 식량을 몰수하고 탈취한 후, 타 집단으로의 재배급은 일정한 방식을 따르고 있다. 식량에의 접근과 그것의 분배과정은 출신 '성분'에 따라 차별적으로 이루어진다. 또한 평양 등 지역에 따른 특권도 존재한다. 하지만 이 차별적 과정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고려는 배제되어 있다. 조사위원회는 지속되고 있는 어린이들의 만성적인 영양실조와 이에 따른 장기적 영향에 대해 특히 우려하고 있다.

**684** 북한은 1995년 첫 번째 국제 식량 지원 요청 이전부터 악화되고 있는 식량 상황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 국가통제하의 식량 생산 및 분배 체계는 1980년대 후반부터 그 기능을 상실하고 있었다. 투명성과 책임성, 민주적 제도의 결여를 비롯해 표현, 정보, 결사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조선노동당의 방침 외의 적절한 경제적 해결책의 채택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북한은 주민들에 대한 통제력의 상실을 우려하여 경제와 농업의 구조적 개혁을 회피해 왔다.

**685** 기근 시기 동안 정치 체제의 유지를 위해 이념적 주입이 지속적으로 시행되었고, 그에 비례하여 배고픔과 굶주림은 심각한 수준으로 악화되었다. 군인들을 위한 식량을 비축하고 이미 궁핍한 상황에 처한 주민들에게 하루에 세끼가 아닌 두 끼를 먹도록 하는 공식적인 운동을 비롯하여 고난의 행군이라는 수사적 표현이 주민들에게 국가적 목적을 위해 고난을 견뎌내도록 강제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었다. 정보의 은폐는 북한 주민들이 붕괴한 중앙배급체계의 대안을 찾아 나서는 것을 차단하였다. 이는 또한 이미 제공된 바 있던, 많은 생명을 살릴 수도 있었던 국제적 원조를 지연시켰다.

**686** 주민들에게 적당한 식량을 제공하지 못한 국가의 무능함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주민들의 주요한 방어적 행동 양식, 즉 식량을 찾기 위하여 국경 안팎으로 이동하는 행위 및 비공식 시장에서 거래나 노동을 하는 행위를 범죄화하는 법률과 통제 기제를 효과적으로 유지하였다.

**687** 심지어 최악의 대규모 기아 사태 중에도 북한은 인도주의적 고려에 기반하지 않은 과도한 조건을 부과함으로써 식량 지원의 조달을 지연시켰다. 국제 인도주의 기구들은 인도주의적 원칙에 위반되는 지원 활동에 대해서는 제약을 받는다. 국제 원조 기구들은 인도주의적인 필요성에 대한 적절한 예측과 원조의 분배에 대한 모니터링을 차단 당하였다. 북한은 거주할 곳 없는 어린이를 포함하여 몇몇 가장 취약한 지역과 집단에 대한 인도주의적 접근을 거부하였다.

**688** 북한은 굶주린 주민들을 위하여 가용한 식량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야 하는 국가의 의무를 지속적으로 저버렸다. 심지어 기근이 만연했을 때 식량 구입에 가용할 재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필요한 식량을 구입하여 부족한 생산을 보완하려 하지 않았다. 기아 상황에서도 군사비 지출을 계속 우선시하였다. 그러나 북한의 일반 군사도 적절히 먹지 못하고 있다. 많은 일반 주민들이 굶고 있지만, 최고지도자가 직접 관리하는 재원을 비롯하여 국가 자원의 많은 부분이 사치품의 구매와 개인 승배의 진작에 사용되고 있다.

**689** 북한은 조직적으로 수감자들을 의도적으로 기아에 이르게 하며 이를 구금 시설에서의 통제와 징벌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배급의 감량은 계호원 훈련 과정의 일부이며 감옥 관련 문서에도 기록되어 있다. 이는 많은 정치범 및 일반 주민들이 죽음에 이르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690** 조사위원회는 북한 주민의 식량권에 대한 조직적이며 광범위하고 중대한 침해를 지적하는 바이다. 조사위원회는 식량 상황에 대한 국가 통제 능력을 넘어서는 요인들의 영향을 인정하지만, 국가와 지도층의 결정, 행동, 무시 등이 적어도 수십만 명의 주민들을 죽음으로 몰아갔으며 생존자의 경우 대대로 이어지는 항구적인 육체적·정신적 손상을 초래하였다고 보고 있다.

691 조사위원회는 1990년대에 걸쳐 발생한 사안들이 북한 정권과 간부들에 대한 가장 심각한 기소 사유가 된다고 보는 바이다. 고도로 중앙집중화된 북한 체제하에서 식량의 생산과 분배, 국가 예산의 배정, 인도주의적 원조와 관련된 결정, 국제 원조의 사용 등 식량 관련 모든 결정은 최종적으로 소규모의 간부들에 의하여 결정되었고, 사실상 그들은 그 결정에 직접 영향을 받는 사람들에게 대한 책임성이 없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조사위원회는 본 보고서 제5장에서 언급한 기아에 대한 반인도범죄로 간주한다.

692 1990년대 이후로 상황은 변화하였으나 기아와 영양실조는 광범위하게 지속되고 있으며, 기아로 인한 사망도 계속해서 보고되고 있다. 조사위원회는 적당한 식량권과 기아로부터 자유로울 권리에 대한 침해를 지속하면서 대규모 기아 상태가 되풀이되는 원인을 제공하는 법률과 정책을 포함한 구조적인 문제에 대하여 우려하고 있다.

## E. 자의적 구금, 고문, 처형, 강제실종과 정치범수용소

693 조사위원회는 자유권규약의 제6조(생존권), 제7조(고문과 학대, 비인간적이고 치욕스런 대우로부터의 자유), 제9조(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 제10조(수감자의 인권), 제14조(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대해서 북한이 인권 보호 의무를 다하고 있는지를 자의적 구금, 고문, 처형, 수용소에 대한 조사결과들을 기초로 판단하였다. 또한 아동권리협약의 제6조(생존권), 제37조(고문과 불법적인 권리강탈로부터의 자유), 제40조(구금 시 처우)를 기준으로 아동의 권리에 대해 조사하였다.

## 1. 임의체포와 강제실종

694 북한의 법률은 국가안보기관들에 조사 과정 및 공판 전 심문 단계에서의 광범위한 수색, 압수, 구속의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형사상의 죄의 혐의로 체포되거나 또는 억류된 사람은 법관 또는 법률에 의하여 사법권을 행사할 권한을 부여받은 기타 관헌에게 신속히 회부되어야 한다는 자유권규약 제9조제3항의 국제적 의무와는 대조적으로, 북한은 구금절차의 관리감독을 재판소가 아닌 검찰소에서만 관할하고 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은 피심자 체포 시 구속영장을 발부 받고 이를 피심자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지속적인 구금의 확정은 체포로부터 48시간 내에 검찰이 요청해야 한다.<sup>1013</sup>

695 북한 법에 제정되어 있는 이러한 요구사항들조차도 실제로는 거의 준수되지 않는다. 한국의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시행한 북한의 구금과 재판 과정에 대한 2012년 설문조사에서는 18.1%의 응답자만이 그들이 체포될 때 구속영장이나 구금을 정당화하는 문서가 제시되었다고 응답하였다.<sup>1014</sup> 대다수는 그들이 체포되는 이유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받지 못했다. 피의자는 종종 체포 사유를 구두로도 듣지 못한 채 체포된다.

- 김광일 씨는 송이버섯 판매를 위해 중국에 출입하였다는 사실이 당국에 발각되었을 때 구속영장 없이 체포되었다. 그는 체포사유를 듣지도, 구속영장을 보지도 못하였다.<sup>1015</sup> 위원회와 면접한 많은 다른 증언자들의 경험도 김씨와 비슷하였다.

1013\_ 북한 형사소송법 제160조, 제180조, 제182조. 또한 자유권위원회에 맞선 북한 대표단의 성명서 참조, CCPR/C/SR.1946 (2001), para. 20에 반영되어 있음.

1014\_ KBA, *2012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p. 202.

1015\_ 서울 공청회, 2013년 8월 21일, 오전.

696 북한의 사법체계하에서 정당한 법적 절차의 부재는 명백한 사실이며, 이러한 부재가 극명하게 드러나는 경우가 국가안전보위부와 조선인민군의 보위사령부에 의해 정치적 측면이 있다고 여겨지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이다.<sup>1016</sup> 경험적으로 북한에서는 어떠한 사건이 정치적이라고 간주될수록 피의자가 제한적이거나 헌법과 형사소송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적합한 법적 절차에 대한 권리를 누릴 가능성이 줄어든다. 정치범 피의자는 늦은 밤에 길거리나 일터에서 체포되어 구금시설로 끌려가고는 한다. 피의자들은 심문 과정을 통해 그들이 왜 끌려왔는지 추측할 수 있을 뿐이다.

- 안명철 씨는 그가 정치범수용소 경비병으로 오랜 기간 일하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본 수감자들 대부분이 그들의 체포사유를 몰랐다고 증언하였다. “수용자들 모두가 밤 시간, 모두가 잠자리에 들었을 때 갑자기 [국가안전보위부 요원들이] 집에 들어와서 체포되었다고 말하였습니다 … 수용소에서는 수감자들 모두가 죄질이 나쁜 사람들 이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알게 된 그 사람들은 그들이 왜 거기에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sup>1017</sup>
- 한 전직 국가안전보위부 요원은 관리자로부터 서면 허가만 있으면 정치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은 사람을 체포할 수 있었다고 확인하였다. 체포사유는 피의자에게 구두로만 전달되었다.<sup>1018</sup>
- 2008년 함경북도 회령시에서 국가안전보위부 요원이 한 증언자의 20세 아들을 체포하였다.<sup>1019</sup> 피해자는 기독교로 개종했으며 중국에 있는 한국계 미국인 목사와의 접촉하고 있었다. 요원은 영장을 제시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그들이 누구인지, 아들을 어디로 데려가는지에 대해 아무것도 물으면 안 된다고 협박하였다. 2년 후, 피해자의 가족은 국가안전보위부의 개인적 연줄을 통해 아들이 국가안전보위부로부터 회령에서 6개월 간 심문을 받았으며, 결국 재판 없이 16호 정치범수용소로

1016\_ 북한 형사소송법 제124조에 따르면, 보위부는 북한 형법이 “반국가, 반민족 범죄”라고 부르는 정치 범죄를 조사하는 임무를 띠고 있다. 조선인민군 보위사령부는 원칙적으로 군인들의 정치 범죄만을 담당하는 곳이지만 실제로는 다른 사건들도 맡고 있다. Ⅲ장 E 역시 참조.

1017\_ 서울 공청회, 2013년 8월 21일, 오후(00:40:59).

1018\_ TLC028.

1019\_ TJH010.

보내졌다는 것을 들었다. 증언자는 아들이 “죽은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을 알고 몹시 괴로워하였다. 그러나 아들을 살아서 다시 볼 희망을 버리고 싶지 않다고 하였다.

**697** 북한 형사소송법 제183조에 따르면 피심자의 가족에게 48시간 안에 체포, 구속의 사유 및 구속장소를 통보해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 요건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앞서 언급한 대한변호사협회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가족들에게 구금 사실을 통지한 비율은 49.4%에 불과하였다.<sup>1020</sup>

**698** 정치범 피의자는 대개 외부와의 연락이 끊긴 상태로 구금된다. 그들은 친구, 동료, 이웃의 눈에서 사라지며, 다시는 소식을 들을 수 없게 되기도 한다. 가까운 가족에게도 체포의 이유나 행방을 알리지 않으나, 가족들은 때때로 뇌물이나 연줄 등 비공식적 경로를 통해 정보를 얻어내기도 한다. 북한에서 정치적인 동기로 체포된 경우 강제실종이 되는 사례가 많은데, 이는 체포 이후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피해자의 생사 및 행방을 알리는 것을 거부하기 때문이다.<sup>1021</sup>

**699** 조사위원회는 정치범으로 체포된 자의 생사에 관한 정보를 알리지 않는 것이 이러한 체계의 의도적 특징이라고 판단한다. 이는 절대적인 복종을 보이지 않는 사람의 경우 당국에 의해 전적으로 결정되며, 당국만이 알고 있는 이유로 인해 언제든지 실종될 수 있다는 사실을 주민들에게 통보하는 것이다.

1020\_ KBA, *2012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3), p. 203 참조.

1021\_ 유엔 총회 47/133호에서 채택된 유엔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선언(이하 강제실종선언)의 서문에 따르면, 강제실종은 “당사국의 요원 혹은 당국의 허가, 지원 혹은 묵인하에 일하는 개인이나 단체에 의한 체포, 구금, 납치 혹은 모든 형태의 자유박탈과 뒤이어 그러한 자유박탈을 인정하기를 거부하거나, 실종된 사람의 생사 또는 행방을 은폐하여 이러한 사람을 법의 보호 밖에 두는” 때에 일어난다. 강제실종협약의 제2조에도 강제실종에 대해 거의 동일한 정의를 내렸으나, 북한은 아직 이 협약을 승인하지 않았다.



## 2. 고문과 굶기기를 통한 심문

700 인민보안부는 경찰서 망과 심문 구류장(‘구류장’)을 마을, 시, 군, 도, 국가 단위로 운영한다. 구금이 일반적인 경우보다 길어지는 경우 피의자는 대기구류소(‘집결소’)에 구금되기도 하며, 특히 중국에서 송환되었을 때 그러한 경우가 많다.<sup>1022</sup> 국가안전보위부에 의해 체포된 정치범 및 피의자는 우선 군(시), 도, 국가 단위의 구류장에 구금된다. 국가안전보위부는 다수의 비밀 심문 구류시설을 유지하는 것이 확실하며, 이들은 완곡하게 “초대소(guest houses)”로 일컬어진다.

701 법적 개선으로 평가 받는 2005년 북한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심문 및 재판 전 구류가 2개월 이내로 제한되었다. 예외적인 경우 이 기한은 검찰소의 승인하에 4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인민보안부에 의해 처리되는 일반 범죄의 경우는 대부분 이 기한의 제한을 따른다.

702 그러나 이러한 기준은 정치범 구금의 경우에는 다르게 적용된다. 주요 정치범 피의자는 심문기관이 범죄 내역과 공범을 완전히 밝혔다고 판단했는지에 따라 수일에서 6개월 이상까지 구금되는 경우가 있다. 이들은 종종 군(시) 단위의 국가안전보위부 심문 구류장, 도 국가안전보위부 구류장, 또는 평양에 있는 국가안전보위부에서 추가 심문을 받게 된다.

703 경미한 정치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최종 처벌수준이 결정되기 전까지 1차 구금기관에서 수개월 동안 구금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는 보안기관 간에 이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많은 경우, 피의자는 국가안전보위부나 조선인민군 보위사령부에서 최종심문을 받게 된다. 피의자가 경미한 정치범죄에만 연루되어 있다

1022\_ 피의자가 집결소에서 어떤 처우를 받는지는 IV장 C.2에서 다루고 있다.

고 판단되는 경우, 피의자는 인민보안부로 인계되며 이 경우 심문절차를 거치는 것을 장려한다.

### (a)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고문

**704** 심문기간 동안 피의자를 제압해 완전한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피의자에게 조직적으로 모욕, 위협과 고문을 가한다. 심문 구류장의 물리적인 구조에 이미 모욕을 주고 위협을 주려는 의도가 적용되어 있는 경우도 많다.

- 중국에서 강제송환된 이후, 김송주 씨는 처음에 함경북도 무산의 국가안전보위부 심문소로 보내졌으며, 이곳에서 그가 “동굴”같았다고 묘사하는 지하감옥에서 구금되었다. 이러한 지하감방은 국가안전보위부 심문소의 공통적인 특징 중 하나이다.
- 이후 김씨는 추가심문을 위해 무산의 인민보안부 심문 구류장으로 이감되었다. 김씨는 감방 출입문 높이가 80cm밖에 되지 않아 40명과 함께 수감된 감방으로 들어가기 위해 손과 무릎으로 기어들어가야 하였다고 설명하였다. 계호원은 그에게 “이 감옥에 들어오면 사람이 아니고 동물이기 때문에 이 감옥에 들어오는 순간 동물처럼 기어야 한다”고 말하였다.<sup>1023</sup>
- 정광일 씨는 그와 다른 정치범 피의자들은 국가안전보위부가 운영하는 함경북도 회령의 지하시설에 수용되었었다고 증언하였다.<sup>1024</sup>
- 임의구금되었던 다른 증언자는 청진의 인민보안부 구류장의 감방문 역시 죄수들이 기어서만 출입할 수 있게 지어졌다고 묘사하였다.<sup>1025</sup>

**705** 북한 형사소송법 제167조(강제적인 심문의 금지)는 피심자에게 강제적인 방법으로 피심자에게 범죄를 인정시키거나 진술을 유도하는 것을 금지한다. 형사소

1023\_ 런던 공청회, 2013년 10월 23일, 1세션(00:31:25).

1024\_ 서울 공청회, 2013년 8월 21일, 오전.

1025\_ TBG005.

송법 제229조(증인의 권리)는 증인이 심문에서 위협이나 강제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706** 전직 국가안전보위부 및 인민보안부 관료들은 조사위원회와의 면접에서, 상부의 일반 지침에는 피의자에 대한 고문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때때로 최고지도자 및 기타 중앙정부기관에서 고문을 사용하지 말도록 하는 일반 방침이 분명히 하달되었다(이는 최고위직에서 고문의 사용에 대해 알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러나 주목을 받는 특정 사건의 경우에는 특정인들을 자비 없이 조사하라는 명령이 최고지도자로부터 하달되기도 하였다.<sup>1026</sup> 전직 북한 관료들은 지휘계통 전반에서 피의자들의 자백을 받아내고 공범을 알아내기 위해 특히 정치적인 사건에서 고문이 사용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는 것을 밝혔다. 구타를 통해 피의자의 자백을 얻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방식이나, 보다 정교한 폭력 방법이 동원되기도 하였다.

**707** 고문은 심문방식의 하나로 확립되어 있다. 동일한 고문수단과 방법이 다른 지역에서 서로 다른 시기에 적용되었다. 관료들은 피의자들이 자백을 할 때까지 구타하는 것이 전적으로 정상적인 것이라고 여기는 경우가 많다. 어떤 심문시설은 보다 정교한 방식의 고문을 행하기 위해 특별히 고안되기도 하였다. 또한 어떤 경우 상급관료들이 하급관료에게 효과적인 고문기술을 가르치기도 하였다. 이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나타낸다.

- 한 전직 국가안전보위부 관료는 증언자가 구금된 국가안전보위부 심문 구류장에 위치한 특별 고문실에 대해 묘사하였다.<sup>1027</sup> 고문실에는 피의자가 익사의 공포를 느낄 때까지 물에 밀어 넣을 수 있게 된 수조가 구비되어 있었다. 또한 벽에는 사람을 거꾸로 매달 수 있게 족쇄가 장치된 시설이 있었다. 그 외에도 여러 고문기구가 구비

1026\_ 전직관료 TJH15, TAP024.

1027\_ TJH015.

되어 있었으며, 그 중에는 피의자의 손톱 밑에 밀어넣기 위한 긴 바늘과 피의자의 코에 붓기 위해 물과 고춧가루를 섞은 혼합물은 담은 단지도 있었다. 이러한 심각한 고문으로 인해 피의자들은 저지르지도 않은 범죄를 시인하는 경우가 많다.

- 다른 도의 국가안전보위부에서 기독교를 믿는다는 혐의로 고문받은 한 여성은, 앞서 말한 국가안전보위부 관료가 말한 것과 비슷한 수조에서 어떻게 자신이 고문을 받았는지를 설명하였다. 그녀는 찬물에 몇 시간 동안 완전히 잠겨있었다고 밝혔다. 까치발을 서야만 코를 겨우 수면 위로 올릴 수 있었으며, 숨쉬기도 거의 불가능하였다. 그녀는 익사할 수도 있다는 공포와 공황에 휩싸였었다.<sup>1028</sup>
- 한 전직 인민보안부 관료는 평양에 위치한 인민보안부 본부의 재판 전 심문기관에서 소형 금속우리(metal cage)를 사용하였다고 밝혔다. 피해자는 우리에게 수 시간 동안 밀어 넣어져 신체에 혈액순환이 되지 않아 몸의 다른 부분이 부풀어 오르게 되며, 녹슨 갈색으로 몸의 색이 변한다. 우리에서 나오게 되면 몸을 급작스럽게 "떠" 더욱 극심한 고통을 겪게 한다.

증언자는 또한 중령(Lieutenant-Colonel) 계급의 상급 심문자에게서 고문기술에 대한 공식훈련을 받은 것을 기억하였다. 상급 관료는 인민보안부 장교들에게 피의자 고문 시 최대치의 고통을 가하기 위해 끈을 이용해 피의자의 혈액순환을 중지시키는 동시에 육체적인 압박을 가하는 자세를 취하게 하는 방법을 가르쳤다.<sup>1029</sup>

**708** 북한 형사소송법 제253조는 원칙적으로 고문 및 기타 불법 수단을 통한 심문을 범죄로 규정한다. 또한 북한은 고문 및 강압적인 수단을 동원한 심문의 피해자는 적절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다.<sup>1030</sup> 피해자들은 고문 사례를 검찰 및 북한 노동당 법무부 및 국가조사위원회 수준에서 수립된 특별 고발기제를 통해 보고할 수 있다.<sup>1031</sup>

1028\_ TLC01.

1029\_ TBG023.

1030\_ 인권이사회, 북한이 제출한 보편적 정례인권검토 국가 보고서, A/HRC/WG.6/6/PRK/1 (2009), para. 36.

1031\_ 관련증언은 전직 관료인 TAP011에 의해 제공. State Report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to the Human Rights Committee, CCPR/C/PRK/2000/2, para. 47참조.

709 그러나 실제로는 가해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공감대가 퍼져 있다. 조사위원회가 보고받은 사례 중 고문 가해자가 책임을 진 사례는 한 차례에 불과하다.<sup>1032</sup> 조사위원회는 고문 피해자들이 국제법상에서 요구되는 적절하고 효과적이며 신속한 보상을 받은 사례를 단 한 건도 수집하지 못하였다.<sup>1033</sup>

### (b) 국가안전보위부에 의한 고문 및 비인간적 대우

710 피의자에 대한 처우는 특히 “반국가적이고 반민족적인 범죄”를 억제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주요기관인 국가안전보위부의 심문 구류장에서 더욱 무자비하고 비인간적이다. 국가안전보위부에 구금된 피의자는 대부분 외부와의 교류가 단절되게 되어 더욱 취약한 상황에 내몰릴 가능성이 높다.

711 피해자는 구류장의 비인간적인 상황에 처하게 되면 살아남기 위해 빨리 자백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게 된다. 심문기간 동안에 피의자는 기아와 굶주림을 야기하는 수준의 배급을 받는다.

712 일부 심문 구류장에서는 수감자들이 농사 및 건축 강제노동에 동원되기도 한다. 이는 정식으로 유죄선고를 받지 않은 자에게 강제노동을 금지하는 국제기준을 위반하는 것이다.<sup>1034</sup>

1032\_ NKDB, *Political Prison Camps in North Korea Today*, 2nd ed.(2012), p. 485 참조(국가국가안전보위부 관료가 고문 및 정치범 살해로 10년형을 받은 사례).

1033\_ 고문 및 기타 인권침해에 대해 적절하고 효과적이며 신속한 보상을 하는 것에 대한 의무는 유엔 총회 결의 60/147호에 의해 채택된 Basic Principles and Guidelines on the Right to a Remedy and Reparation for Victims of Gross Violations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nd Serious Violations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paras 15 ff.. 자유권위원회, 일반논평 제20호, 제7조, HRI/GEN/1/Rev.1 at 30 (1994), para. 15. 참조.

1034\_ IV장 E.4(a)(iii)에 포함된 법적기준 참조.

713 심문을 받거나 노동을 하지 않는 수감자들은 심각하게 과밀 수용된 감방에서 앉거나 무릎을 꿇고 하루 종일 앉아있도록 강요받는다. 그들은 허락 없이 말을 하거나, 움직이거나, 주변을 둘러보는 것이 금지된다. 이러한 규칙을 지키지 않을 경우 구타, 배급제한 또는 강제 육체훈련의 처벌을 받는다. 처벌이 모든 감방의 수감자들에게 집단적으로 적용되는 경우도 많다.

714 국제기준에 따라 남자와 여자는 대부분 분리 수감된다. 그러나 어린이들은 연령에 상관없이 성인과 함께 수용되며, 특히 중국에서 강제송환된 이후 심문을 받는 경우에 그러한 경우가 많다. 어린 아이들은 어머니와 함께 지내도록 허용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어린이들은 성인과 같은 비인간적인 상황에서 구류되나, 가장 가혹한 종류의 강제노동에서는 면제된다.

715 수감자들은 질병의 전염을 용이하게 하는 지저분한 위생상태를 견뎌야 한다. 의료조치는 심각하게 아픈 사람에게만 제공되거나 전혀 제공되지 않는다. 상당수의 수감자들은 굶주림이나 질병으로 죽는다.

- 정광일 씨는 국가안전보위부가 운영하는 함경북도 회령의 지하 심문시설에 구금되었다. 그는 그가 한국인과 거래하는 것에 관여했기 때문에 한국 간첩이라는 혐의를 받았다. 구금된 10개월 동안 정씨는 거의 음식을 받지 못해 몸무게가 75kg에서 36kg으로 줄었다.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정씨는 거꾸로 매달린 채 몽둥이로 맞았으며, 조사위원회에서 면접한 많은 증언자들과 마찬가지로 소위 ‘비둘기 고문’으로 불리는 고문을 당하였다. “손이 등 뒤에서 수갑에 채워지게 됩니다. 그 상태로 매달아 앉지도 서지도 못하게 합니다”라고 정씨는 묘사하였다.<sup>1035</sup> 정씨는 반복적으로 3일 연속 비둘기 고문 자세를 취하면서 극심한 고통을 견뎌야 하였다:

1035\_ 서울 공청회, 2013년 8월 21일, 오전(02:04:50), 김광일 씨가 그린 비둘기 고문에 대한 묘사는 IV장 E.2(c)에 포함되어 있다.

“주시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서지도 자지도 못했습니다. 그렇게 3일, 4일간 매달려 소변을 보고, 배변을 하며, 완전히 탈수상태가 됩니다 … [비둘기 고문은] 모든 고문방식 중에 가장 고통스럽습니다 … [이는] 너무 고통스러워서 차라리 죽는 게 나을 것이라고 느꼈습니다.”<sup>1036</sup> 정씨는 국가안전보위부 검찰소 관료에게 그가 거짓자백을 할 때까지 계속 고문을 받았다고 말했으나 아무 소용이 없었다:

“나는 검찰이 나를 도와줄 것이라고 생각했으나, 검찰이 나가고 조사관이 들어와서 나를 때리고 모욕했으며 거꾸로 매달았습니다. 다음날 검찰이 다시 들어와 ‘정직하게 말할 수 있겠소’라고 물었으며 나는 ‘네, 네, 나는 간첩입니다’라고 자백하였습니다.”<sup>1037</sup>

- 권영희 씨는 남자형제의 실종 및 탈북 혐의와 관련해 함경북도 무산의 국가안전보위부의 심문 구류장에서 일주일 간 구류 및 심문을 받았다.<sup>1038</sup> 심문기간 동안 권씨는 몽둥이로 머리를 맞았다. 또한 100장에 달하는 자아비판서를 쓰도록 강요받았다. 구타로 인해 일종의 종양이 발생해 탈북하여 한국 입국 후 수술로 제거해야 하였다.
- 김은철 씨는 불법으로 러시아에 체류하고, 이 기간 동안 정치적 망명을 신청하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함경북도 무산의 국가안전보위부의 심문 구류장에서 6개월간 구류 및 심문을 받았다. 그는 이곳에서 각목으로 구타당한 이후에 했던 자백으로 인해 15호 정치범수용소로 보내지게 된다. 김씨는 머리 및 전신에 난 심각한 부상으로 인해 계속 고통을 당하고 있다:
 

“1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상처가 있습니다. 내가 남한으로 온 이후 남한 정부가 나에게 의치를 제공했을 때, 그 당시 나는 치아가 없었습니다. 또 내 귀를 보면 알겠지만, 10년이 지났지만 귀가 아직도 아픕니다. 각목으로 맞은 것 때문에 머리에도 아직 통증이 있습니다. 또 아직 흉터도 남아있고, 머리에 전부 10개쯤 있는 것 같습니다.”<sup>1039</sup>
- “X씨”는 함경북도에 있는 국가안전보위부 심문 구류장에서 10일간 심문을 받았다. 그녀는 조직적으로 구타당하며 심문당하였다:
 

“그들은 기본적으로 죽기 직전까지 때립니다 … 심문관이 나의 진술에 만족하지 않으면 나를 콘크리트 바닥에 무릎을 꿇린 다음 때리기 시작하였습니다.”

1036\_ 서울 공청회, 2013년 8월 21일, 오전(02:09:00).

1037\_ 서울 공청회, 2013년 8월 21일, 오전(02:09:45).

1038\_ 서울 공청회, 2013년 8월 24일, 오전.

1039\_ 서울 공청회, 2013년 8월 21일, 오전(01:35:00).

수감자들이 심문을 받지 않을 때는 감방에서 무릎을 꿇은 채 움직이지도 않고, 말하지도 않아야 했다. 말을 하다가 들켰을 경우에는 감방의 모든 수감자들이 앉았다 일어서다 1,000개를 해야 했다. 훈련 중 기절하는 사람도 많았다. 한번은 X씨가 한 동료 수감자가 감방에 움직이지 않고 누워있는 것을 알아챘다. 그녀는 계호원에게 이 사실을 알렸으나, 그들은 머리에서 피가 날 때까지 그녀를 밟고 막대기로 때렸다. 더불어 같은 감방의 모든 수감자들이 3일 동안 음식을 배급받지 못하는 처벌을 받았다. <sup>1040</sup>

**716** 많은 피의자들은 고문, 고의적인 굶주림이나 참혹한 생활 환경이 야기 또는 악화시킨 질병 때문에 심문 구류장에서 죽었다.

- 지성호 씨는 그의 아버지가 두만강을 건너 중국으로 탈북하는 중 체포되었다고 증언하였다. <sup>1041</sup> 2006년 11월 지씨의 아버지는 보위부 요원이 가한 고문으로 인한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다. 그가 생존할 수 없다는 것이 명확해지자, 국가안전보위부 요원은 그를 수레에 실어 집으로 데려왔으며, 그를 돌볼 사람이 집에 아무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집에 버리고 갔다. 나중에 이웃들이 그가 죽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 2011년 8월 국가안전보위부 요원은 증언자의 17세 아들을 함경북도 회령시에서 남한 영화를 시청하였다는 이유로 체포하였다. 그는 심하게 고문당해 왼쪽 발목에 심각하게 골절을 입었으며, 얼굴에도 멍이 들고 큰 손상을 입었다. 국가안전보위부는 가족들이 상당량의 뇌물을 제공한 이후에야 그를 석방하였다. 석방 직후 그는 심문 중의 구타로 인한 뇌출혈로 죽었다. <sup>1042</sup>
- 2001년 증언자와 다른 수감자들은 회령의 국가안전보위부 심문소에서 머리를 벽에 찰는 등의 구타를 당하였다. 같이 구금된 사람 중 한 명은 부상을 입어 사망하였다. 증언자가 알은 대규모 무덤을 파도록 강제당한 것으로 미루어 보아 증언자는 다른 감방에서도 수감자들이 죽었을 것이라고 추측하였다. <sup>1043</sup>

1040\_ 워싱턴 공청회, 2013년 10월 30일.

1041\_ 서울 공청회, 2013년 8월 22일, 오전.

1042\_ TJH028.

1043\_ TBG018.



- 2004년 젊은 여성인 증언자는 중국에서 강제송환되어 함경북도 온성의 국가안전보위부 심문 구류장에 구금되었다. 그녀는 자궁 외 임신으로 심각한 출혈과 고통을 겪었다. 그녀가 의료지원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아무런 조치를 받지 못하였으며, 생리대를 가지고 있는 것조차 허용되지 않았다. 그녀는 구역질 때문에 감방안의 배변구에서 먼 쪽에 앉게 해달라고 요청하였다가 구타를 당하였다. 건강이 심각하게 악화되자 그녀는 다른 수감자가 몰래 숨기고 있던 돈을 이용해 뇌물을 주고 구금에서 벗어났다. 지역 병원의 의사는 그녀가 생존 가능성이 없다고 보았으나, 기적적으로 회복되었다. 증언자는 다른 수감자들이 굶주림과 수인성 질병으로 인해 죽어가는 것을 보았다. 또한 심장병이 있던 한 남자가 가혹한 육체훈련 중 쓰러져 움직이지 않고 누워있는 것을 목격하였다. 간호원들은 나중에 그를 끌고갔으나, 그 후 그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sup>1044</sup>
- 국가안전보위부 요원은 2006년 나이든 여성을 온성의 동일 심문 구류장에서 심문하고 고문하였다. 고문과 굶주림으로 그녀는 지병이던 간질환이 악화되었다. 그러나 그녀의 남자형제를 중국에서 돌아와 국가안전보위부에 출두하도록 하기 위해 그녀는 치료를 받지 못하게 하였다. 15일 후 그녀는 심문소에서 죽었다.<sup>1045</sup>

### (c) 인민보안부의 고문 및 비인도적 대우

717 증언자들은 인민보안부의 심문과정에서의 고문 및 고의적 굶주림에 대해, 특히 중국으로의 비허가 방문 및 기타 정치적으로 민감한 행위에 대해 심문을 받을 때에 대하여 묘사하였다. 이때의 구금환경은 가끔 가족의 방문이 허용되는 경우가 있다는 점 외에는 국가안전보위부 구금상황과 비슷하였다.

- A씨는 북한에 있는 가족 부양 수단을 확보하기 위해 중국을 자주 방문하였다는 이유로 인민보안부에 의해 심문을 받았다. 그는 두꺼운 목재 몽둥이로 구타를 당해 신장에 현재까지 지속되는 부상을 입었다고 묘사하였다:  
“그들은 내 등을 수십 차례에 걸쳐 구타해, 나는 거의 기절해서 더 이상 비명소리

1044\_ TJH032.

1045\_ TJH024.

를 내지도 못하였습니다. 내가 비명을 지르지 않자 구타를 중지하였습니다 … 그들이 내가 자백할 때까지 나를 때리라는 명령을 받은 것 같습니다.”<sup>1046</sup>

- 김광일 씨는 그가 어떻게 보안원으로부터 “비둘기 고문” 자세로 고문을 당했는지 설명하였다.<sup>1047</sup> 이렇게 노출된 자세로 피를 토할 때까지 흉부를 구타당하였다. 또한 그는 “오토바이 고문”과 “비행기 날기 고문”을 당해 기절할 때까지 팔을 잡아당기는 등의 극단적인 고통을 주는 자세를 강요받았다.<sup>1048</sup> 심문을 받지 않을 때에는 수감자들이 감방에서 무릎을 꿇고 머리를 바닥에 둔 자세로 하루 종일 버텨야 하였다. 움직인 수감자들은 구타당하였다. 결국 김씨는 경찰이 기소하려고 하는 범죄들을 거짓자백하였다.
- P씨는 함경북도 온성에서 인민보안부로부터 심문기간에 너무 심하게 구타당해 양 다리가 부러졌다. 그녀는 척추골절도 입었다.<sup>1049</sup>
- 무산의 인민보안부 심문 구류장에서 김송주 씨는 허락없이 말하였다는 이유로 동료 수감자가 어떻게 처벌받았는지를 목격하였다. 계호원은 그의 팔을 감옥 철창 사이의 좁은 틈으로 내놓으라고 명령하였다. 그리고 계호원은 금속제 총기 청소기구로 최대의 힘을 실어 30회 가량 손바닥을 구타하였다. 김씨는 “이 수감자의 손을 보면서 충격을 받았다고” 기억했으며, 상황을 다음과 같이 자세히 묘사하였다:  
 “그는 자신의 손만큼 두꺼운 기구로 맞은 후에 큰 혹이 생겼습니다. 계호원은 수감자에게 감방으로 돌아가라고 했으나 수감자는 [좁은 철창 사이의 틈으로 부은 손을] 빼낼 수 없어서 그냥 쪼그리고 앉아 계속 울었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sup>1050</sup>
- 김혁 씨는 중국에서 강제송환될 당시 16세였다. 국가안전보위부에서 1차 심문을 받은 이후 그는 함경북도 온성의 인민보안부로 넘겨졌다. 그를 심문하는 보안원들은 그의 무릎을 막대로 때렸으며, 고통을 가중시키기 위해 무릎 뒤에도 추가로 막대를 끼웠다. 이후 그는 위에 묘사된 비둘기 고문을 받았다. 김씨는 북한법상 성인의 기준으로 처벌받는 17세가 될 때까지 심문소에 수감되었다.<sup>1051</sup>

1046\_ 서울 공청회, 2013년 8월 22일, 오후(02:48:46).

1047\_ 서울 공청회, 2013년 8월 24일, 오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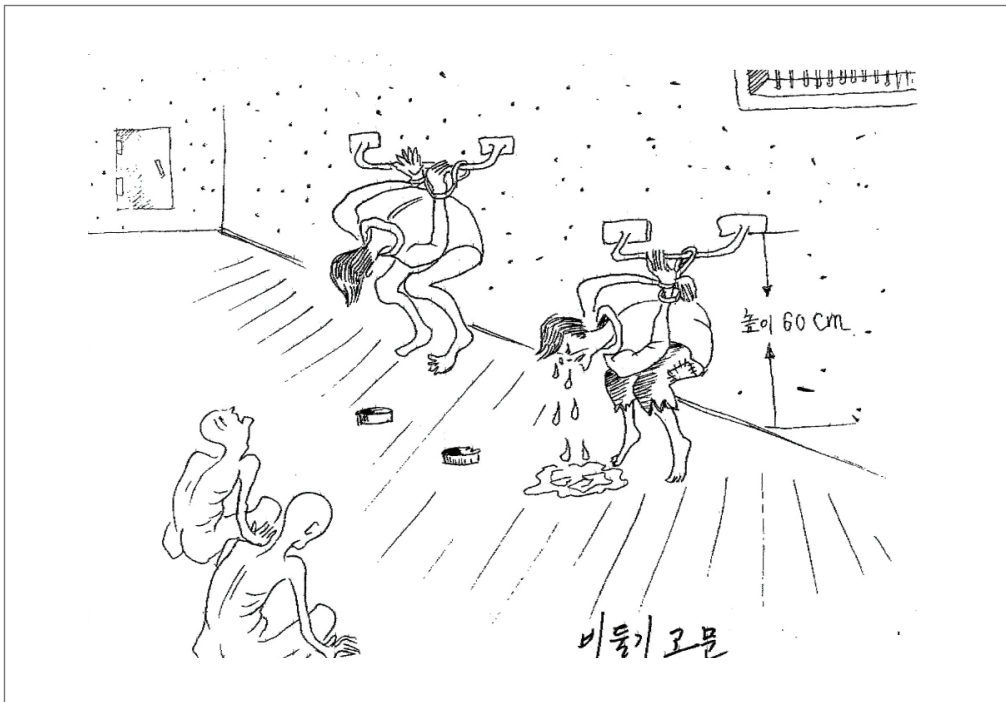
1048\_ 김광일 씨가 제출한 “비둘기,” “비행기 날기,” “오토바이” 고문에 대한 그림이 이 장의 마지막에 있다.

1049\_ 서울 공청회, 2013년 8월 21일, 오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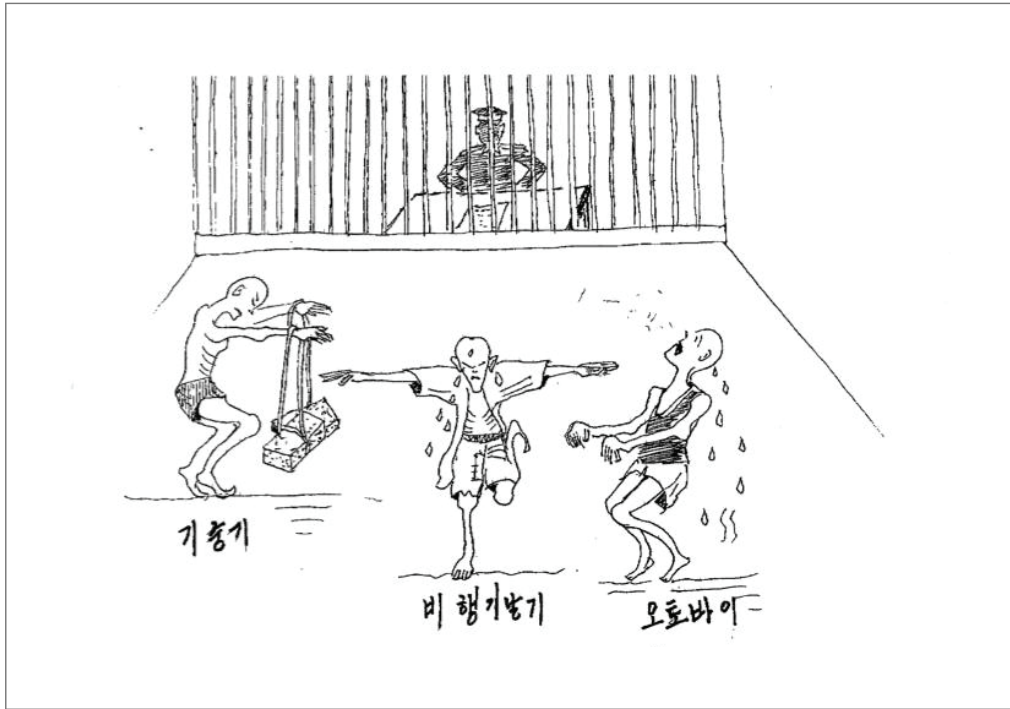
1050\_ 런던 공청회, 2013년 10월 23일, 1세션(00:36:01).

1051\_ 서울 공청회, 2013년 8월 22일, 오전, 상세 비공개 면접에서 제공한 추가 정보 포함.

- 2011년 2월 증언자는 중국에서 송환되었다. 12일간 국가안전보위부에서 구타와 조사를 견딘 후, 그녀는 인민보안부로 넘겨졌다. 인민보안부 심문 구류장에서 두 달간 구류되는 동안 그녀와 다른 수감자들은 다양한 기구들로 구타를 당했으며, 특히 심문 시에 집중적으로 당하였다. 심문 중 기절한 사람들은 기절한 척 한다는 의심을 받아 심문을 다시 시작하였다. 그녀는 보다 관대한 대우를 받기 위해 뇌물을 바쳤으나, 외바퀴 손수레 손잡이, 총신, 나무조각 등으로 계속 구타당하였다. 수감자들은 낮 동안은 강제노동에 종사해야 하였다. 두 남자는 노동 목표량을 채우지 못해 구타당해 사망하였다. 한 여자는 굶어 죽었다. 감방에 수감된 동안, 수감자들은 양반다리를 하고 손을 무릎에 얹은 채 하루종일 똑바로 앉아있어야 하였다. 움직일 경우, 그들은 물구나무서기를 하거나 쪼그리고 앉도록 했으며, 그렇지 않으면 구타를 당하였다. 몇몇 계호원들은 강압적인 환경을 이용해 근처의 들판으로 “심문”하기 위해 데려간 여성 수감자들을 성폭행하였다.<sup>1052</sup>



1052\_ TSH014.



[기중기, 비행기 날기 및 오토바이 고문 - 전 수감자인 김광일 씨가 제공한 그림]

#### (d) 법적 절차 또는 법외적 방식을 통한 처벌 결정

718 심문과정이 끝나면, 피해자들은 심문기관이 작성한 진술서의 정확성을 보증하기 위해 지장을 찍도록 강요당한다. 국가안전보위부의 동일 서류에서는 - 심각한 보복에 대한 위협 하에 - 심문 구류장에서 있었던 일에 대한 어떠한 경험도 발설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719 심문기관은 이 단계에서 또한 피의자를 법적절차를 통해 처벌할 것인지 또는 재판없이 법외적 방식을 통해 처벌할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결정을 내리게 된다. 이러한 결정 과정에서 잘못된 경중에 대한 판단, 피의자의 사회정치적 가족 배경

(‘성분’), 이 사건을 법적 절차 또는 법외적 방식을 통해 처리하는 경우의 정략적 판단이 고려된다.

**720** 경험적으로 국가안전보위부가 다루는 정치적 사건은 정도가 심각할수록 법외적 방식을 통해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의사결정 과정은 강력하게 중앙집중화 되어있고, 정기적으로 도 보위부 및 중앙의 국가안전보위부와 협의를 거친다. 심문하는 보위부가 해당 사건이 너무 중대해 비밀 정치범수용소로 강제실종을 시키거나 즉결처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일반적으로 국가안전보위부 수준의 결정이 필요하다.

**721** 재판소는 한 개인을 정치범수용소로 보내는 결정에는 연루된 사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재판소(법원)를 결정과정에서 제외하는 것은 국제법 위반일 뿐 아니라, 북한 형사소송법 제127조 위반이기도 하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도재판소는 무기노동교화형을 받게 될 수도 있는 반국가, 반민족범죄사건에 대한 관할권이 있다. 종종 중대 범죄로 보이는 주목을 받는 사건들이 재판소로 보내지기도 하는데, 이는 당국자들이 일반 주민에게 재판이나 처형을 통해 눈에 띄는 경고를 보내기 위한 정략적 판단이 고려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에는 국가안전보위부가 관할하는 특별군사재판소가 개입되기도 한다.<sup>1053</sup>

**722** 그러나 대개의 경우 법적 절차를 택하는 것은 중간 정도의 심각성을 띠는 정치 사건들이다. 국가안전보위부 조사부는 그러한 사건을 국가안전보위부 검찰소로 보내 기소와 재판을 준비하게 한다. 정치적 잘못의 심각성에 따라, 국가안전보위부 검찰은 처형, 일반 감옥 또는 단기 강제노동 구금시설 수감 등을 구형한다.

1053\_ 일레로, 장성택의 처형에 앞서 사형선고를 내린 곳은 국가안전보위부의 특별군사재판소이다. “Traitor Jang Song Thaek Executed,” KCNA, 2013년 12월 13일. 또한 <http://www.kcna.co.jp/item/2013/201312/news13/20131213-05ee.html> 참조. V장 E.5(a)도 참조.

**723** 국가안전보위부가 피의자가 경미한 정치적 잘못을 저질렀다고 판단하거나, 해당 사건이 비정치적이라고 판단할 경우는 대부분 인민보안부에 추가심문을 의뢰하게 된다.

**724** 인민보안부가 다루는 사건의 경우에는 다른 규칙이 적용된다: 즉 사건이 심각할수록 사법부를 통할 가능성이 높으며, 덜 심각한 경우 재판소를 우회하게 된다.<sup>1054</sup>

**725** 재판소를 통하는 경우 인민보안부는 검찰소와 협의하는데, 이는 노동교화형이나 적절하고 정략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사형 등을 추진한다.

**726** 상대적으로 경미한 잘못을 저지른 사건일 경우 인민보안부는 피의자를 수감 및 노동단련대에서 수개월에서 2년까지 강제노동을 하게 한다. 일부의 경우, 군단위 국가안전보위부 사무소의 경우에도 상대적으로 경미한 잘못을 저지른 피의자가 연루된 사건인 경우 비슷한 조치를 취하기도 한다.

**727** 이와 같은 비사법적 수감 “판결”은 자유권규약 제14조에 보장된, 권한 있는 독립적이고 공평한 법원에 의한 공정한 공개심리를 받을 권리를 위반하는 것이다. 또한 이는 북한 자체법, 특히 수감은 허용하나 무임금노동 행정처벌을 금지하는 행정처벌법과 양립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비사법적 판결은 형법 제252조에 따라 범죄의 요건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조사위원회는 보안부 지도원들이 형법 제252조 위반에 따라 사법부의 판결권을 불법적으로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 받은 사

---

1054\_ 조사위원회는 인민보안부의 사건처리에 대해 얼마만큼의 자율성을 누리는지 확인할 수 없었다. 서울의 통일연구원에 따르면, 인민보안부에 의해 처리되는 사건의 대부분은 조선노동당의 인민안전위원회에서 회부된 사건이며, 이 기구는 인민보안부의 사건 처리를 지휘한다. Kim, Soo-Am, *The North Korean Penal Code, Criminal Procedures, and their Actual Applications* (KINU, 2006), p. 40 참조.

건을 단 한 건도 증명하지 못하였다.

**728** 국가안전보위부원과 인민보안부원들은 정치적 잘못을 저지른 범인을 찾아 내라는 큰 압력을 받는다. 그들은 피의자에게 지나치게 관대하게 대할 경우 의심과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두려워한다. 결과적으로 부당하게 정치적 잘못을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는 사람들도 처벌받지 않고 비밀기관의 통제를 벗어나는 것은 불가능하거나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경미한 잘못의 혐의를 받는 피의자들은 정치적으로 연이 있는 지인을 통하거나, 최근 들어 늘고 있는 사례인 뇌물제공을 통해 풀려나는 경우가 종종 있다.

### 3. 정치범수용소

**729** 중대한 정치적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즉결처형되지 않는 경우에 공식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정치범수용소로 강제실종된다. 대부분의 피해자는 살아서 수용소를 나갈 가능성이 없는 채로 종신수용된다. 수감자들은 외부 세계와의 모든 접촉이 금지되며, 가까운 가족들에게조차 수감자들의 생사가 전해지지 않는다.

**730** 수용소는 현존하는 정치체제와 북한의 지도부에 정치적, 사상적, 경제적으로 도전하는 단체, 가족 및 개인을 사회에서 영구적으로 제거하는 역할을 한다. 북한의 일반 주민들은 비밀 수용소에서 새어나오는 한정적인 정보로 인해 야기되는 공포로 인해 정치체제에 대한 잠재적인 도전을 강력하게 억지하게 된다. 수용소는 대부분 외딴 산지에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산으로 보내졌다”는 완곡한 표현은 북한에서 국가가 개입한 강제실종과 동의어가 되었다. 몇몇 증언자들은 북한 주민들이 수용소에 대해 알고는 있지만 수용소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지 못해 공포감이 크다고 전하였다.<sup>1055</sup>

- 정진화 씨는 수용소의 존재가 북한 주민들 사이에 알려져 있으며 공포의 대상이라고 전하였다:  
 “모든 북한 주민들은 (수용소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단 수감되면 나올 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잔인하고 잔인한 곳이며, 경찰에게 때때로 구타당한다는 사실로 미루어 보아 안에서의 취급이 얼마나 가혹할 것인지 상상할 수 있습니다.”<sup>1056</sup>
- 김혁 씨도 또한, 수용소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나 수감자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사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수용소의 존재에 대해 알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들은 일단 수용되면 나올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정치범수용소]로 들어가는 정당한 절차가 없다는 것을 알았으며, 하룻밤에 한 가족이 사라질 수도 있고, 그 경우 그 가족이 [수용소에] 보내졌다는 암시를 받습니다.”<sup>1057</sup>

731 당국자들은 북한 내 정치범수용소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필사적으로 부인하고 있다.<sup>1058</sup> 1980년대부터 국제인권단체들이 정치범수용소에 대해 보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범수용소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국가적 기밀로 여겨지고 있다.<sup>1059</sup> 당국자들은 정치범수용소가 외부 세계에 알려지지 않도록 하는데 지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수용소는 군사시설이나 농사시설로 위장되어 있으며, 보안철차를 통과한 선별된 관료들만이 해당 시설을 방문하도록 허용된다. 인권단체에게 수용

1055\_ 서울의 NGO인 북한인권정보센터에 의해 실시된 북한이탈주민 설문에 따르면 75%의 응답자들은 북한에 사는 동안에도 정치범수용소의 존재에 대해 알고 있었다. NKDB, *Political Prison Camps in North Korea Today*, p.16 참조.

1056\_ 서울 공청회, 2013년 8월 22일, 오후(01:07:50).

1057\_ 서울 공청회, 2013년 8월 22일, 오전(00:50:45).

1058\_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 중 북한 대표는 “소위 정치범수용소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며, 반국가 및 기타 범죄에 대한 중형을 선고 받은 사람들을 노동으로 교화시키기 위한 교화시설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을 인정하였다. A/HRC/13/13, para. 45. 참조. 북한 대표가 자유권위원회에 정치범수용소의 존재를 부인하는 발언은 CCPR/C/SR.1945, para. 31.에 반영.

1059\_ Minnesota Lawyers’ International Human Rights Committee 및 Human Rights Watch/Asia의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Minneapolis, Minnesota Lawyers International Human Rights Committee, 1988) 참조.



소가 있는 지역을 방문하도록 허용된 사례는 단 한번도 없다. 기밀내부용어로, 수용소는 은유적으로 “관리소”로, 수감자들은 “이주민”이라고 불린다. 수용소를 관리하는 국가안전보위부의 담당국(제7국)은 “농사국”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의 외교관들은 수용소의 존재를 절대 인정하지 않도록 하는 엄격한 지침의 적용을 받는다는 기밀 증언이 있었다.

**732** 경비병, 석방된 수용자, 수용소 인근의 동네는 수용소에 대한 정보를 유출하면 심각한 보복을 받을 것이라는 협박을 받는다. 가장 걱정스러운 것은 수용소 관리들은 무력분쟁이나 혁명이 있을 경우 수용소의 존재에 대한 일차적 증거를 없애기 위해 모든 수용자들을 살해하도록 하는 명령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이 명령은 최초에는 김일성으로부터 직접 내려졌으며 추후에 김정일에 의해 재승인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 안명철 씨는 전쟁이 발발할 경우, 수용소의 존재에 대한 “모든 증거를 없애기 위해” 경비병이 모든 수감자들을 의무적으로 “쓸어버려야” 한다고 증언하였다. 조사위원회와 비공개 면접한 다른 수용소의 전직 경비병들과 관료들 역시 이 명령에 대해 알고 있었다. 안씨와 다른 증언자들은 또한 명령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며 단기간에 다수의 수감자들을 살해하기 위한 훈련도 행해졌다고 설명하였다. <sup>1060</sup>
- 김은철 씨는 북한을 탈출한 이후 정치범수용소 15호에서 보낸 3년의 수감생활에 대해 공식적으로 발언하기 시작하였다. 당국자들은 연좌제를 동원해 그의 형제를 처형하는 것으로 보복하였다. 이 비극적인 사건 때문에 그의 여자형제는 스스로 생을 마감하였다. <sup>1061</sup>

1060\_ 안명철 증언, 서울공청회, 2013년 8월 21일, 오후 (00:18:10), 증언자 TJH004 및 TJH041과의 비공개 면접. 또한 K와 송윤복의 도쿄 공청회, 2013년 8월 30일, 오후 증언 참조.

1061\_ 서울 공청회, 2013년 8월 21일, 오후.

**733** 정치범수용소 체제의 존재를 감추려는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조사위원회는 1950년대 후반 이후부터 현재까지 광범위한 정치범수용소 시스템이 운용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조사위원회는 정치범수용소를 개인적으로 경험했거나 목격한 수많은 사람들을 면접했으며, 이 중에는 전 수감자 및 경비병들도 있었다. 이들 중 몇몇은 공청회에서 증언을 하였다.<sup>1062</sup>

**734** 더불어 조사위원회는 수용소에 대한 위성사진과 전문위성사진 분석가들의 분석결과를 확보했으며, 이는 관련 시설을 식별할 수 있는 전직 경비병 및 수감자들의 증언에 의해 내용이 보충되었다.<sup>1063</sup> 조사위원회는 이와 같은 사진들을 통해 수용소가 지속적으로 존재할 뿐만 아니라 현재에도 대규모 구금시설이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수용소의 건물 발전 상황에 대한 선명한 사진을

1062\_ 서울 공청회: 신동혁, 2013년 8월 20일, 오후; 김영순, 정광일 및 김은철, 모두 2013년 8월 21일, 오전; 안명철, 2013년 8월 21일, 오후; 지성호, 2013년 8월 22일, 오전; 강철환, 2013년 8월 24일, 오후. 도쿄 공청회: K씨, 2013년 8월 30일, 오후. 런던 공청회: 박지현, 2013년 10월 23일, 2세션.

1063\_ 서울 공청회에서 전 수감자인 신동혁(2013년 8월 20일, 오후), 정광일(2013년 8월 21일, 오전)과 전직 경비병인 안명철(2013년 8월 21일, 오후)은 14호 및 15호 정치범수용소의 위성사진을 제시하고 설명했다. 워싱턴 공청회(2013년 10월 31일, 오후)에서는, 미국의 NGO인 HRNK의 David Hawk 씨와 전문 위성사진 분석가인 Joel S. Bermudez 씨는 18호 및 22호 수용소 관련 증거를 제시했다. 또한 HRNK는 25호 수용소에 대한 최신 위성이미지를 제출했으며, 관련정보는 Committee for Human Rights in North Korea/Digital Globe의 공개 리포트 “North Korea’s Camp No. 25,” 2013에도 포함되어 있다([http://hrnk.org/uploads/pdfs/HRNK\\_Camp25\\_201302\\_Updated\\_LQ.pdf](http://hrnk.org/uploads/pdfs/HRNK_Camp25_201302_Updated_LQ.pdf)).

Amnesty International은 조사위원회에 최신 위성사진 및 14, 15, 16호 수용소에 대한 유관 전문가의 분석결과를 제출하였다. 해당 정보는 “North Korea: New Satellite Images show continued Investment in the Infrastructure of Repression,” 2013 (<http://www.amnesty.org/en/library/info/ASA24/010/2013/en>) 및 Amnesty International, “North Korea: New images show blurring of prison camps and villages,” 2013 (<http://www.amnesty.org/en/news/north-korea-new-images-show-blurring-prison-camps-and-villages-2013-03-07>)에 반영되어 있다. 공청회에서 공개되고 제출된 몇몇의 위성사진과 정치 및 일반 수용소의 개략적 위치를 나타내는 지도는 조사위원회 웹사이트 [www.ohchr.org/EN/HRBodies/HRC/CoIDPRK](http://www.ohchr.org/EN/HRBodies/HRC/CoIDPRK) 참조. 조사위원회가 관리하는 위성사진은 상업위성에서 획득한 것이다. 조사위원회는 미국 및 한국의 정보당국 및 기타 국가들도 수용소에 대한 해상도가 보다 높은 사진을 확보하고 있을 것이라고 전달했다. 해당 사진이 공개되면 수용소의 변화 및 현 상황에 대한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예상된다.

제공하였고, 전 수감자와 경비병들로부터 전달받은 직접적인 설명을 확증해 주었다. 조사위원회의 공청회 중 몇몇 전 수감자 및 경비병들은 위성사진에서 수용소 위치를 확인하고 설명하며, 강제노동, 고문, 처형 및 기타 관련 활동들이 이루어지는 특정 시설들을 식별할 수 있었다.

### (a) 정치범수용소의 위치 및 규모

**735** 현재 북한에는 네 개의 대규모 정치범수용소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의 내부 용어로 수용소를 구분하기 위해 번호가 매겨져 있다.<sup>1064</sup>

- 14호 정치범수용소는 평안남도의 개천시 옆 산지에 150km<sup>2</sup> 규모로 구성되어 있다.<sup>1065</sup> 이곳은 1960년대 이후 등장했으며 1980년대 초 현재의 위치로 이전한 것으로 보인다. 모든 수감자는 종신수용되며, 조사위원회에 공개적으로 증언한 신동혁 씨만이 유일하게 탈출에 성공한 수감자로 알려져 있다. 위성사진에 보이는 바에 따르면, 수용소는 그가 탈출한 2005년 이후 확장된 것으로 보인다.<sup>1066</sup>
- 15호 정치범수용소는 370km<sup>2</sup>의 규모로 평안남도 요덕군의 여러 계곡에 걸쳐 구성되어 있다.<sup>1067</sup> 모든 정치범수용소가 석방 가능성 없이 종신수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sup>1068</sup> 15호 수용소는 완전통제구역 및 혁명화구역으로 구분되어 있는 점에서 다른 수용소와 다르다. 완전통제구역의 수감자들은 사상적으로 교화가 불가능한 것

1064\_ 북한은 일반적으로 시설에 번호를 부여해 관리하나, 정치범수용소(관리소)에 번호를 부여하는 방식은 분명하게 알려져 있지 않다. 번호는 설립연도에 따라 부여된 것이 아니며, 빠지거나 알려지지 않은 번호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1065\_ 14호 수용소 중심의 방위는 북위39.3415 - 동경126.03190이다.

1066\_ 14호 수용소 전직 수감자인 신동혁, 서울 공청회, 2013년 8월 20일, 오후 증언 참조.

1067\_ 15호 수용소 중심의 방위는 북위39.4032- 동경126.50590이다.

1068\_ 아주 드문 경우, 완전통제구역으로 보내진 고위공직자들의 경우 최고위층의 명령에 따라 석방될 수도 있다. 안명철의 서울 공청회, 2013년 8월 21일, 오후 참조. 이러한 사례로 아버지의 성분이 나쁜 것이 밝혀져 14호 수용소로 보내진 김용 중령(Lieutenant-Colonel)이 있다. David Hawk, *The Hidden Gulag*, 2nd ed. (Washington D.C., HRNK, 2012), pp. 51 ff. 참조.

으로 여겨지며 종신수용된다. 혁명화구역의 수감자들은 경미한 죄로 인해 수감되었으며, 출신성분이 아주 좋은 경우가 많다. 과거에는 수용소 당국자들에게 성실히 노동하고 일일 교화시간에 열심히 참여하는 등의 모습을 보이며 일부의 경우 뇌물을 공여함으로써 사상적으로 교화된 것을 증명할 경우, 몇 년의 수감 후 석방될 가능성이 존재하였다.<sup>1069</sup>

- 16호 정치범수용소는 함경북도 명간의 험악한 지형에 560km<sup>2</sup>의 규모로 분포한다.<sup>1070</sup> 이는 평계리 핵 실험장과도 근거리에 위치해 있다. 직접증언에 따르면 이 수용소는 보다 작은 규모로 조성되었던 1970년대 이후 존재해 왔다.<sup>1071</sup> 수감자들은 수용소의 북서와 남동 지역의 두 개의 거주지역에서 수용된다.
- 25호 정치범수용소로도 불리는 구금시설은 함경북도 청진시 근방에 위치해 있다.<sup>1072</sup> 14, 15, 16호 수용소는 각각 수만의 수감자를 수용하나, 25호 수용소의 수감자 수는 수천 명 규모이다. 또한 이 수용소는 주요 구역이 높은 담벼락으로 둘러싸여 있어 중범죄 감옥처럼 보인다는 점에서 다른 수용소와 다르다. 이 곳의 수감자는 정치적 이유로 재판 없이 종신수용되기 때문에 25호 수용소는 정치범수용소로 취급된다. 최근에 25호 수용소가 확대되어 현재는 2006년의 거의 두 배 규모인 980m<sup>2</sup>를 차지한다.

**736** 14호, 15호, 16호 수용소는 국가안전보위부가 관리한다. 25호 수용소도 국가안전보위부가 관리하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737** 조사위원회는 수감자가 알려진 정치범수용소와 비슷한 상태에서 구금되어 있는 아직 알려지지 않은 비밀 교화소가 존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외하지 않고 있다. 특히 일부 증언자들이 조선인민군 보위사령부가 공개되지 않은 장소에서 정치적 이유로 재판 없이 관료나 일반 병사를 수용하는 소규모의 특별 수용소를 운영하

1069\_ 서울 공청회: 김영순, 정광일, 김은철, 2013년 8월 21일, 오전; 안명철, 2013년 8월 21일 오후; 강철환, 2013년 8월 24일, 오후. 몇몇 관찰자들은 혁명화구역의 수감자들이 더 이상 석방되지 않을 것을 우려한다.

David Hawk, 워싱턴 공청회, 2013년 10월 31일, 오후 참조.

1070\_ 16호 수용소 중심의 방위는 북위41.1849 - 동경129.2032이다.

1071\_ TJH041.

1072\_ 25호 수용소 중심의 방위는 북위41.5002 - 동경129.4334이다.

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정보를 제공하였다.<sup>1073</sup>

- 전직 조선인민군 장교인 김주일 씨는 최고지도자 김정일이 1996년 자신이 속한 대대를 방문했을 때를 묘사하였다. 김정일이 군인들이 식량을 공급받지 못하였다는 것을 알아채자, 그는 즉시 대대장의 직위를 박탈하고 재판없이 군 교화소로 보냈다. 김주일 씨는 이러한 교화소들은 조선인민군 시설에 위치하며 조선인민군이 관리하는 구금시설라고 지적하였다. 그는 또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그곳에서 종신형을 사는 사람들도 있다. 이러한 군사감옥에서 풀려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도 더 이상 생존할 수 없는 상태이다. 그들이 저지른 범죄가 정치적인 성격을 띠기 때문에 직업을 가질 수가 없다.”<sup>1074</sup>

**738** 과거에는 다른 정치범수용소가 추가적으로 존재했던 것이 분명하다. 12개 이상의 정치범수용소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오랜 기간에 걸쳐 현재의 체계가 정착되었다. 일부 수용소가 폐쇄되었고, 남아있는 수용자들은 확대된 다른 수용소로 이감되었다.<sup>1075</sup>

- 국가안전보위부는 함경북도 회령에서 1960년대 이후 2012년 중반에 폐쇄할 때까지 22호 정치범수용소를 운영하였다. 당국자들은 수용소의 위치가 중국 국경과 가까워 탈출 가능성이 높고, 수용소의 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수용소를 폐쇄한 것으로 알려졌다.<sup>1076</sup>
- 2009년 또는 2010년에 폐쇄절차가 진행되기 이전, 22호 수용소는 3만 명에서 5만

1073\_ TLC025와 TJH041. 조선인민군 보위사령부가 운영한 평안남도 회령군의 수용소에 관해서는 NKDB, *Political Prison Camps in North Korea Today*, pp. 93 참조.

1074\_ 런던 공청회, 2013년 10월 23일, 4세션(00:34:26)

1075\_ 관련 증언은 안명철 씨의 공청회 이후 추가 면접 및 김혜숙 씨의 비공개 면접에서 제공되었다. TJS004 및 TJH041, NKDB, *Political Prison Camps in North Korea Today*, pp. 68 ff. 참조.

1076\_ Lee Keum-soon, “Human Rights Conditions of the Political Prison Camps in North Korea,” in KINU, *UV Human Rights Mechanisms and Improvement of Human Rights Conditions in North Korea*, 2013, p. 195, p. 206. David Hawk, *North Korea’s Hidden Gulag: Interpreting Reports of Changes in the Prison Camps* (Washington D.C., HRNK, 2013), p. 14. 참조.

명의 수감자를 수용했던 것으로 추측되었다. 조사위원회는 행방이 묘연한 많은 수의 수감자들의 생사를 확인할 수 없었다. 증언자들은 22호 수용소 수감자들에 대한 엇갈린 추측을 제시한다. 일부는 22호 수용자들이 14, 15, 16호 수용소에 분산되었다는 의견을 표명한다.<sup>1077</sup> 다른 사람들은 22호 수감자를 모두 수용했다면 증축이 불가피했을 다른 수용소들의 위성사진에서 그 증거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한다. 또한 이들은 2009년과 2010년에 22호 수용소의 식량공급이 전용되어 많은 사람이 굶어 죽었다는 의혹을 제시한다.<sup>1078</sup>

- 국가안전보위부가 관리하는 11호 정치범수용소는 함경북도 관모산 높은 곳에 위치해 있다. 당초에는 중요한 수감자와 그 가족들을 수용하는 시설로 사용되었다. 이 수용소는 1980년대 말 김일성의 별장이 주변지역에 건축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폐쇄된 것으로 보인다. 남아있는 수감자들은 16호 및 22호 수용소에 분산되었다.<sup>1079</sup>
- (역시 국가안전보위부에서 관리하는) 12호 및 13호 정치범수용소는 함경북도의 온성군에 자리하고 있었다.<sup>1080</sup> 수감자는 지주 가족, 경쟁 사회주의 분파의 지지자 및 친일파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 수용소는 1990년대 초반에 폐쇄되었으며, 남아있는 수감자들은 22호 수용소로 이감된 것이 확인되었다.
- 1960년대 초반 이후 평양 인근의 성호에 26호 수용소로 불리는 정치범수용소가 존재하였다.<sup>1081</sup> 이는 1990년대 초반 전직 정치범 수감자가 그 존재를 공개하고, 국제사면위원회(Amnesty International)가 이를 광범위하게 보도한 이후 폐쇄되었다.<sup>1082</sup>

1077\_ Lee Keum-soon, "Human Rights Conditions of the Political Prison Camps in North Korea," id..

1078\_ 송윤복, 도쿄 공청회, 2013년 8월 30일, 오후 및 David Hawk, 워싱턴 공청회, 2013년 10월 31일, 오후 참조. 또한 David Hawk, North Korea's Hidden Gulag: Interpreting Reports of Changes in the Prison Camps (Washington D.C., HRNK, 2013), p. 20 참조.

1079\_ K씨 및 송윤복, 도쿄 공청회, 2013년 8월 30일, 오후 및 David Hawk, 워싱턴 공청회, 2013년 10월 31일, 오후 참조. 또한 NKDB, Political Prison Camps in North Korea Today, p. 73. David Hawk, The Hidden Gulag, p. 28.

1080\_ TJH041, TJH011 비공개 면접 참조. 또한 NKDB, Political Prison Camps in North Korea Today, pp. 74~77 참조.

1081\_ 도쿄 공청회, 2013년 8월 30일, 오후에 시바타 히로유키 씨는 그의 형제인 시바타 코조 씨가 1960년대 초반에서 1990년대 초반까지 정치적인 이유로 이 수용소에 수감되었다는 정보를 제시하였다. 공청회 증언 이후의 추가 면접에서 안명철 씨 또한 성호에 26호 수용소라고 알려진 정치범수용소가 있었다는 것을 확인해 주었다.

1082\_ Amnesty International, "North Korea: Concern about the fate of Shibata Kozo and his family," 1994년 9월(ASA 24/007/1994) 참조.

739 2006년까지 인민보안부와 그 전신인 사회안전성 또한 국가안전보위부 및 조선노동당의 감독을 받으며 정치범수용소를 관리하였다. 인민보안부 수용소는 현재 수용소와 같은 특징(결혼금지 등)을 공유하지 않으나, 이러한 수용소들은 수용자들이 강제실종을 겪었으며, 재판 없이 수감되어 굶주림 및 강제노동에 종사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 14호 수용소 부근인 대동강 남쪽 독의 평안남도 북창군에 위치한 18호 정치범수용소는 1990년대 후반에 5만 명을 수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18호 정치범수용소는 적어도 일부의 수감자들이 정치적으로 교화될 경우 조기 출소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15호 정치범수용소의 혁명화구역과 비슷하다.<sup>1083</sup> 18호 정치범수용소는 2006년 평안남도 북창의 시설이 폐쇄되기 전까지 점차 규모를 줄인 것으로 보인다. 오늘날 18호 정치범수용소가 있던 자리에는 단기 노동구금시설이 자리하고 있다. 18호 정치범수용소의 생존자들은 대부분 석방된 것으로 보이나, 많은 수의 수감자들은 갈 곳이 없어서 수용소 내에서 계속 살면서 일하는 것을 선택하였다. 18호 수용소의 매우 일부 수용자들은 석방되지 못한 것이 분명하며, 그들은 14호 수용소와 인접한 처마봉(평안남도 개천시) 부근의 새 정치범수용소로 이감되었다.<sup>1084</sup>
- 17호 정치범수용소는 함경남도 덕성에 위치하고 있었으며 인민보안부의 전신인 사회안전성에 의해 관리되었다.<sup>1085</sup> 이 수용소는 1980년대 중반에 1차 폐쇄되었다. 몇몇 증언자의 증언에 따르면 1990년대 후반에 18호 정치범수용소가 ‘심화조’ 사건과 관련하여 새로운 수감자들이 대량 수용되는 것을 처리하지 못해 일시 재개된 것으로 추정된다.<sup>1086</sup>
- 사회안전성은 함경남도 탄천에서 19호 수용소를 운영하였다고 알려져 있다. 이 수용소는 1990년 부근에 폐쇄되었으며 대부분의 수감자들은 석방되었다. 역시 사회안전성

1083\_ 전 18호 정치범수용소 수감자인 김혜숙 씨 및 증언자 TGC004, TSH029, TAP012 면접 참조.

1084\_ 처마봉에 14.6 제곱킬로미터 규모로 새로 건설될 제한구역이 위성사진에 나타나며, 이곳에는 주거시설, 철조망 울타리, 보초소 등이 있다. 이 시설은 14호 수용소의 서쪽에 있으며, 14호 수용소와 경계 일부를 맞고 있다. 전문 위성 분석가 Joseph S. Bermudez Jr., 워싱턴 공청회, 2013년 10월 31일, 오후 참조.

1085\_ TJH004, NKDB, Political Prison Camps in North Korea Today, p. 16. 송윤복, 도쿄 공청회, 2013년 8월 30일 오후 또한 17호 수용소를 언급해, 현재에도 운영 중일 가능성을 시사한다.

1086\_ 하단 IV장 E.3(b) 참조.

이 운영한 함경남도 덕성군의 23호 수용소는 1987년 일반 감옥으로 변경되었다.<sup>1087</sup>

**740** 정치범수용소에 대한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접근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수용소의 종합적인 수용인원에 대한 믿을만한 추정치를 제공하는 것은 극도로 힘들다. 한국 국가정보원에서 1982년에 제공한 추정치에서는 수감자 수를 10만 5천명으로 추정한다. NGO가 위성사진, 1990년대에서 2000년대 초반까지 수용소에 있었던 경비병 및 수감자의 증언 등을 참조해 최근에 제시한 수감자 추정치는 15만~20만 명이다.<sup>1088</sup>

**741** 조사위원회에게 정보를 제시한 증언자들은 정치범수용소의 수감자들이 최근 몇 년간 감소하였다는 것에 대체적으로 동의한다. 통일연구원은 현재 정치범수용소에 8만~12만 명이 구금되어 있다고 추정한다.<sup>1089</sup> 이 수치는 최신 위성사진 분석 및 1차 증언을 바탕으로 추정된 것이며, 18호 정치범수용소 수감자 석방 및 22호 정치범수용소 수감자의 생사불명을 반영한 것이다. 유사하게 비정부 기구인 북한인권위원회(HRNK)는 수용소 인원을 8만~13만 명으로 보는 것을 정확한 추정치로 제시하였다.<sup>1090</sup> 이는 2011년 북한인권정보센터(NKDB)가 제시한 22호 수용소 폐쇄와 22호 수용소에 대한 불확실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최소 13만 500명이라고 제시한 추정치에 부합한다.<sup>1091</sup>

**742** 수감자 수의 급격한 감소는 18호 수용소에 수감되어 있던 대부분의 수감자가 석방되었다는 점을 감안하여 이해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요

1087\_ NKDB, *Political Prison Camps in North Korea Today*, p. 105. 전직 관료인 TBG031이 수용소 존재 확인.

1088\_ NKDB, *Political Prison Camps in North Korea Today*, p. 71; David Hawk, *The Hidden Gulag*, pp. 27 ff. 참조.

1089\_ KINU,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3), p. 148.

1090\_ David Hawk, *North Korea's Hidden Gulag: Interpreting Reports of Changes in the Prison Camps*, p. 36.

1091\_ NKDB, *Political Prison Camps in North Korea Today*, p. 111.



인으로 수감기간 중 극단적으로 높은 사망률과 더불어, 일반적으로 수감자들이 아이를 갖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사실도 포함된다. 즉 추가적인 석방이 없는 한, 수용소 인구의 감소는 새롭게 수감되는 인원의 숫자가 굶주림, 방치, 고된 강제노동, 질병, 처형 등으로 죽어가는 수감자들의 높은 사망률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 (b) 정치범수용소 체계의 변천 및 목적

**743** 북한은 김일성이 대규모 숙청을 감행하면서 1950년대 이후 비밀 정치범수용소 체계를 구축하기 시작하였다.<sup>1092</sup> 이 시스템은 이오시프 스탈린(Joseph Stalin) 통치하에서 굴락(Gulag)이 관리하던 수용소로부터 영향을 받았다. 북한의 정치범수용소는 많은 부분에서 굴락 수용소보다 더 가혹한 수준이다.<sup>1093</sup>

**744** 김일성이 정적과 경쟁 사회주의 분파에 대한 숙청 및 기독교와 천도교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함으로써 통치를 공고화 해 나가면서 수용소의 규모는 급격하게

1092\_ 전직 정치범수용소 관리였던 TJH041과의 비공개 면접. 북한에서 망명한 최고위 관료인 황장엽 씨 역시 최초의 수용소가 평안남도 북창군에 1958년 구축되었다고 증언하였다. NKDB, *Political Prison Camps in North Korea Today*, p. 95~96 참조.

독일민주공화국(GDR) 외교관이 1959년 보낸 외교전문에 다음과 같은 사실이 명시되어 있다: “다른 의견을 제시한 동지에 대한 박해가 최근 증가하고 있다. 그들은 지방, 광산, 수력발전댐 및 수용소로 보내지고 있다.” 1957년에 동독 대사관은 이미 폴란드에서 돌아온 학생들이 군인이 보초를 서는 평양의 수용소로 보내졌다는 내용을 기록하였다. 독일 통일 이후 동독 문서기록소에서 발견한 동독문서 원본을 인용하기 위해서는 Liana Kang-Schmitz, *Nordkoreas Umgang mit Abhängigkeit und Sicherheitsrisiko*, pp. 225~226. 참조. 숙청에 관해서는 III장 D 참조.

1093\_ 약어 굴락으로 보다 더 잘 알려진 Glavnoye upravleniye lagerey i koloniy (Main Administration of Corrective Labor Camps and Labor Settlements)이 관리하는 소련의 수용소의 수감자 상당수는 가족이 때때로 방문과 연락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북한의 정치범수용소는 철저하게 외부와의 연락이 금지되어 있으며, 때문에 광범위한 침해에 취약한 상황에 처해있다. David Hawk, *The Hidden Gulag*, p. 32. 참조. 굴락 시스템에 관한 종합적인 묘사는 Alexander Solzhenitsyn, *The Gulag Archipelago* (1973) 참조.

확대되었다. 일차 숙청 대상자의 상당수가 처형당했으나, 하급관료나 관련자들은 수용소에 수감되었다. 조선노동당과 김일성 사후 김정일의 왕조적 승계를 비롯한 국가 기구에 대한 모든 반대를 막기 위해 1970년대에서 1990년대까지 고위관료를 포함한 그 외 많은 수의 피해자들이 숙청당하였다.

**745** 연좌제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숙청된 자의 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및 자녀(나이와 관계 없이) 등 모든 가족들도 결국 정치범수용소로 보내졌다. 숙청 당시 기혼자인 여성 친척들만이 대부분 처벌에서 제외되었다. 이는 엄격한 가부장적 제도 때문에 그들은 다른 가족에 속한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또한 즉시 강제이혼을 진행하는 경우 배우자들이 수용소를 빠져나올 수도 있었다.

- 1981년에 2살, 4살 난 자녀를 포함한 증언자의 모든 가족은 국가안전보위부의 요원에게 체포되어 12호 정치범수용소로 보내졌다.<sup>1094</sup> 증언자는 자신이 결혼해 다른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수감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며, 가족을 다시는 보지 못하였다. 그들은 김정일 승계에 대한 도전을 방지하기 위해 김일성 가족의 측근이 일으킨 숙청의 희생자가 된 것이 확실하였다. 그 가족은 김정일의 사돈인 김환협의 일가였으며, 김환협은 조선노동당의 고위간부였음에도 숙청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 1997년 인민보안부는 ‘심화조’ 사건으로 알려진 광범위한 조사를 벌여 정치적으로 민감한 가족사를 숨긴 관료를 수색하였다.<sup>1095</sup> 이 사업은 김정일에 대한 충성심이 의심받고 있었던 “보수파” 관료들을 숙청하는데 전략적으로 이용되었다. 많은 수가 추후에 석방되기는 하였으나, 약 2만 명의 피의자들이 재판 없이 18호 정치범수용소로 실종되었다. 뒤이은 숙청으로 수천 명의 인민보안부 관리들이 조선인민군 군보위사령부 및 국가안전보위부에 의해 체포당하였다. 수용소에서 그들은 두드러지게 가혹한 대우를 받는 경우가 많았으며, 많은 수가 구금 중 사망하였다. 한 전직 관료가 전달한 인민보안부 교화국의 통계에 따르면 반숙청 중 수감된 인민보안부 관리 중 소수만이

1094\_ TJH011.

1095\_ TJH004, TJH029, TJH044 증언자가 증언 제공. 또한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 Compilation of North Korean Human Rights Violations (2012), pp. 62, 63 및 68, NKDB, *Political Prison Camps in North Korea Today*, p. 133, 476 및 478의 증언자 증언 참조.

살아남았다.<sup>1096</sup> 김광일 씨는 12호 노동교화소의 경비병들이 식량 배급삭감 및 기타 가혹한 처벌을 통해 특정 수감자들을 죽이기 위한 구분 명령을 받은 것이 분명하다고 증언하였다. 그는 정치범으로 교화소에 들어와 그러한 방식으로 죽은 두 명의 수감자들의 이름을 밝혔다. 그들 중 한 명은 ‘심화조’ 사업으로 구금되었다.<sup>1097</sup>

**746** 지주 및 공장 소유주 등 “계급의 원수,” 남한으로 탈북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 및 친일파 역시 수용소로 사라졌다. 조사위원회는 수용소 제도가 북한의 모든 집단과 개인을 일반 사회로부터 숙청함으로써 수령체제 사상에 대한 복종과 함께 북한의 사회적 구조를 재설계하는데 이용되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목적은 수용소 수감자들이 그들의 모든 시민권을 박탈당하였다고 여겨지는 사실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이러한 의도와 목적하에 그들은 더 이상 북한 주민의 일부로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747** 또한 조사위원회는 “계급의 원수”를 숙청하는 것이 3대 후손, 즉 최초로 잘못을 저지른 사람의 손주까지 확대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수용소에서 아이를 갖는 드문 경우에는 그 아이까지 수감되었다. 여러 세대에 걸쳐 처벌을 하는 사상적 배경은 다음과 같은 김일성의 교시로 알려져 있다. “계급의 원수와 분파주의자들은 그들이 누구든지, 그들의 씨가 3대까지 제거되어야 한다.”<sup>1098</sup> 수용소 경비병과 그

1096\_ TCC014.

1097\_ 서울 공청회, 2013년 8월 24일, 오전.

1098\_ 전직 국가안전보위부 정치범수용소 수감자인 안명철 씨에 따르면, 김일성은 1958년 대항 분파에 대해 진행되고 있던 숙청에 대해 국가안전보위부 관료를 대상으로 한 미출간 연설에서 처음 말한 것이다. Kim Yong-sam with Ahn Myong-chol, *Political Prisoners' Camps in North Korea* (Seoul, Center for the Advance of North Korean Human Rights, 195), p. 52. 참조.

1958년 3월 1일, 주 북한 소련대사는 김일성이 그에게 국가안전보위부 관료를 대상으로 “반혁명분자들의 음모에 대한 투쟁 강화”에 대한 연설을 할 것이라고 말하였다고 일기에 기록하였다. Gary Goldberg가 번역하고 Wilson Center History and Public Policy Program Digital이 출판한 주 북한 소련 대사 A.M. Puzanov의 일기 참조. <http://digitalarchive.wilsoncentre.org/document/115970>에서 확인 가능. 다른 자료원은 김일성이 이러한 발언을 최초로 한 것이 1972년이라고 밝힘. Ian Jeffries, *North Korea, 2009~2012: A*

외 보안 관료들은 기본훈련 중 이러한 교시에 대해 배우게 된다. “김일성의 교시에 따르면 … 수감자의 3대를 제거해야 한다”라고 전 수용소 경비병인 안명철 씨가 기억하였다.<sup>1099</sup> 몇몇 수용소에서는 김일성의 교시를 담은 큰 판을 걸어두어 경비병들이 해당 사실을 잊지 않도록 하였다.<sup>1100</sup>

- 신동혁 씨는 1981년 14호 정치범수용소에서 그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경비병이 맺어준 관계였던 부모 사이에서 태어났다. 그의 삼촌 중 한 명이 한국으로 탈북하였기 때문에 그의 아버지와 가족들은 수용소에 수감되었다. 신씨는 어머니가 수감된 이유는 끝까지 알지 못하였다. 신씨는 연좌제 원칙에 의한 죄의식을 세뇌당하였기 때문에 그의 수감의 기반과 상황에 대해 결코 문제를 느끼지 못하였다고 묘사하였다: “나는 범죄자로 태어났으며 그렇게 죽는 것이 나의 운명이었습니다 … 내가 살았던 곳은 총이 있는 경비병들과 유니폼을 입은 수감자들의 두 종류의 인간만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수감자들은 수감자로 태어나 수감자처럼 살았고, 그것이 우리의 운명이었습니다 … 아무도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지만 우리가 보는 것은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살았습니다.”<sup>1101</sup>
- 김혜숙 씨는 13세 때 하교길에 국가안전보위부 요원에 의해 체포되었다.<sup>1102</sup> 그녀는 18호 정치범수용소로 보내졌으며, 그곳에는 이미 그녀의 가족이 모두 수감되어 있었다. 가족 중 누구에게도 혐의를 알려주지 않았다. 수감자들은 체포의 이유를 묻거나 다른 수감자들과 그에 대해 말할 경우 처형될 것이라는 경고를 받았다. 어느날 그녀의 아버지가 경비병에게 그가 왜 수용소에 수감되었냐고 이의를 제기하자, 그를 다른 곳으로 데려갔으며 그녀의 가족들은 그를 다시 보지 못하였다. 수용된 28년 동안, 김씨는 왜 자신이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굶주림과 강제노동을 견뎌야 했는지 끝내 알아내지 못하였다. 그녀는 부모를 원망하기까지 하였다. 2001년 18호 정치범 수용소가 규모를 감축하면서 그녀도 석방되었다. 한 친척에게서 그녀의 할아버지가

*Guide to Economic and Political Developments* (Routledge, 2012), p. 28; David Hawk, *The Hidden Gulag*, p. 29 참조.

1099\_ 서울 공청회, 2013년 8월 21일, 오후.

1100\_ 안명철 씨와의 비공개 면접.

1101\_ 서울 공청회, 2013년 8월 20일, 오후(00:43:36).

1102\_ 김씨는 공청회에 참여하지 못했다. 조사위원회는 영상회의를 통해 그녀와 면접을 진행했으며, 면접 중 그녀는 보고서에 이름을 실는 것에 동의했다.

6·25전쟁 중 한국으로 갔기 때문에 그녀의 가족이 처벌받았다는 사실을 알아내었다.

- 1975년 증언자의 모든 가족은 체포의 이유나 범죄혐의를 제시받지 못한 채 국가안 전보위부에게 체포당하였다. 이는 지주나 기타 “계급의 원수”의 후손에 대한 남포시의 사업의 일환이었다. 총 300명의 사람들이 열차의 객차에 밀어넣어져 18호 정치범수용소로 보내졌다. 증언자는 2006년 18호 수용소가 폐쇄될 때 석방되었다.<sup>1103</sup>

**748** 정치범수용소 제도는 수령체제의 권력기반을 유지하고 잠재적으로 모든 사상적, 정치적, 사회적 도전이 야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존재해왔으며 계속 존재하고 있다. 많은 수감자들은 그들, 혹은 그들의 가족이 북한의 정치체제, 특히 최고지도자가 비판의 직접적인 대상일 경우 수용소로 보내졌다.

- 안명철 씨는 공공배급소를 관리하던 관료였던 그의 아버지가 다른 고위관료에게 북한의 식량부족이 위에 있는 사람들이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해 비롯된 것이라고 말하였다고 묘사하였다. 그것이 정치범죄라는 것을 깨닫자 그의 아버지는 자살하였다. 안씨의 어머니와 인민학교 학생에 불과한 여동생을 포함한 세 형제자매는 모두 체포되어 정치범수용소로 보내졌다. 그는 중국 국경을 넘어서야 구금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sup>1104</sup>
- 증언자의 삼촌은 가족 중 한 밀고자가 그가 김정일이 최고지도자 재목이 아니라고 말하였다고 비판한 이후 실종되었다. 그에 대해 가족이 들은 마지막 소식은 그가 22호 정치범수용소로 보내졌다는 것이었다.<sup>1105</sup>

**749** 지배층인 김씨 일가의 사생활과 같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정보 등 소위 “국가 기밀”을 폭로하였다는 이유로 가족 전체가 사라지는 경우도 있다.

- 전직 직업 무용수였던 김영순 씨는 후에 김정일의 세 번째 부인이 된 성혜림과 그의

1103\_ TAP012.

1104\_ 서울 공청회, 2013년 8월 21일, 오후.

1105\_ TJH007.

장남인 김정남의 친한 친구였다. 김영순 씨는 그들의 관계가 국가기밀이었던 1969년부터 그들의 관계를 알고 있었다. 1970년에 그녀의 남편이 실종되었고, 1달 후 국가 안전보위부가 그녀를 체포하였다. 그녀는 비밀 구류장에서 성해림에 대해 알고 있는 바에 대해 두 달 이상 구금되어 심문을 받았다. 심문이 완료된 이후, 그녀는 어떠한 재판이나 설명 없이 요덕의 15호 수용소에 1979년까지 구금되었다. 김씨의 부모와 네 명의 자녀(실종 당시 3, 5, 7, 10세) 역시 그녀와 함께 요덕으로 보내졌다. 양 부모와 아들 한 명이 수용소에서 죽었다. 15호 정치범수용소에서 그녀는 성해림이 김정남을 출산하는 것을 도왔다는 이유로 수용소에 보내진 한 여인을 만났다.<sup>1106</sup>

- 2005년 평양의 한 대학교수와 그의 가족 모두가 요덕의 15호 정치범수용소로 보내졌다. 그는 동료에게 김정일이 (백두산에서 태어났다는 공식 자서전의 주장과 달리) 러시아에서 태어났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의 단파방송을 불법적으로 청취하면서 이 정보를 알게 되었다. 이후 시집간 딸 한 명을 제외한 모든 가족이 실종되었다.<sup>1107</sup>

**750** 수용소 수감자들 중에는 “자본주의적인” 외부 영향으로부터 고립시키거나, 국가가 정보를 독점하는 등 당국의 방침에 위협이 되는 행동을 한 사람들도 있다. 과거에는 포로와 6·25전쟁 중 납치된 민간인들 중 그들의 과거에 대해 침묵하지 않거나 본국송환 권리를 거부당하였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도 수용소로 보내졌다(하단 참조). 1950년대와 1960년대에 많은 재일교포들이 귀국했는데,<sup>1108</sup> 이들 중 많은 사람이 외국에서 접했던 체제 전복적인 정보를 퍼뜨릴 수 있을지 모른다는 당국자들의 우려로 인해 정치범수용소로 사라졌다. 1989년 부근 동유럽과 소련에서 공부하고, 베를린 장벽 붕괴 이후 민주주의의 대두를 목격한 젊은이들 중 많은 수도 비슷한 운명을 겪었다.

- 강철환 씨의 친할아버지는 국가 건립에 보탬이 되기 위해 1960년대에 일본에서 북한으로 이주하였다. 1977년 그의 조부는 갑자기 사라졌다. 머지 않아, 강씨(당시 9세)는

1106\_ 서울 공청회, 2013년 8월 21일, 오전.

1107\_ TJH019.

1108\_ IV장 F.1 f 참조.

재판이나 기소 없이 체포되어 15호 정치범수용소로 보내졌다. 강씨의 아버지와 강제이혼을 받아들인 그의 어머니만 처벌받지 않았다. 수용소에서 10년 동안 굶주림과 강제노동을 견딘 후, 그는 아무 설명 없이 석방되었다. 강씨는 조사위원회에게 15호 정치범수용소의 한 구역에는 자본주의 문화에 대해 너무 많이 알고 있다는 이유로 수감된 북송 재일교포들이 수감되어 있었다고 밝혔다.<sup>1109</sup>

- 22호 정치범수용소에서 경비병으로 근무하였던 안명철 씨는 그가 “소련연합의 몰락”이라고 지칭한 것과 관련되어 체포된 많은 수의 새 수감자들이 유입되었던 것을 묘사하였다. 수감자들은 동물운반에 이용하기 위해 설계된 열차칸으로 수송되었다. 안씨는 “6량 정도의 열차가 사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한 열차가 6일 연속 수용소로 와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라고 안씨가 증언하였다.

**751**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정치범수용소로 보내졌다. 일부 개편이 있었으나, 그와 같은 법외적 비밀 정치범수용소 시스템이 단계적으로 철수되고 있다는 징후는 없다. 최근 정치범수용소로 사라진 사람들은 북한을 탈출한 사람들이거나 한국의 관료들 또는 시민과 불법적으로 연락을 주고받거나, 기독교를 믿은 사람들이다.

- 정광일 씨 역시 2000년에서 2003년동안 요덕의 15호 정치범수용소 혁명화구역에 수감되었다. 그는 특권계층인 출신성분으로 중국과의 무역에 관여할 기회가 있었다. 회사의 이익을 증대시키기 위해 그는 중국 브로커를 거치지 않고 남한의 매입자에게 직접 물건을 팔았다. 밀고인이 이와 같은 금지된 접촉 사실을 국가안전보위부에 보고해 정씨가 체포되었다. 그는 그가 한국의 간첩활동에 연루되었다는 거짓 자백을 하는데 동의할 때까지 6개월간 고문을 동반한 심문을 받았다. 15호 정치범수용소에서 3년간의 굶주림과 강제노동을 견딘 후에 정씨는 석방되었다.
- A씨는 2007년 그의 누나가 중국에서 강제송환된 이후 요덕의 15호 정치범수용소로 보내졌다고 증언하였다. 국가안전보위부는 그녀가 몽골을 통해 한국으로 가려던 중 체포되었기 때문에 그 사건이 특별히 심각하다고 간주하였다. 그녀가 기독교를 믿었던 것도 상황을 악화시키는 요소였다. 그녀는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국가안전보위부의 고문을 받자 뇌졸중을 겪었다. 그러나 그녀는 아무런 의료조치 없이 정치범수용

1109\_ 서울 공청회, 2013년 8월 24일, 오후.

소로 보내졌다. “A씨”는 그녀의 건강상태가 나쁘고 수용소의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녀가 수용소에서 죽었을 것을 우려하였다.

- 한 증언자는 그의 아들이 어떻게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한국계 미국인 목사에게서 종교적 가르침을 받는 중국에 반복적으로 방문하였는지 설명하였다.<sup>1110</sup> 2008년 말, 중국에 있는 국가안전보위부 요원이 목사를 감시하면서 그의 아들이 목사와 접촉한다는 사실이 발각되었다. 심문 이후 아들은 정치범수용소로 보내졌고, 그 이후 아무도 그를 보지 못하였다.
- 2009년 7월, 증언자와 다른 세 명은 국군포로인 두 명의 한국 노인이 북한 국경을 넘어 중국으로 탈북하는 계획에 관여하였다.<sup>1111</sup> 그 계획이 발각되었고, 증언자는 국경을 넘을 수 있었지만, 다른 사람들은 체포되었고, 결국 요덕의 15호 정치범수용소로 보내졌다.

**752** 북한 정치범수용소를 규정하는 특징 중 하나는 연좌제에 따른 유죄원칙으로, 모든 가족들을 수감하는 것이다. 이 원칙은 현 북한의 정치체제를 반대하려는 사람들이 자신의 목숨뿐 아니라 가까운 가족구성원들의 목숨까지 희생할 각오를 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견을 억누르는데 특히 효과적이다. 탈북한 증언자들과의 광범위한 면접 기록을 바탕으로, 북한인권정보센터(NKDB)는 832명의 정치범수용소 수감자들의 수감원인을 재구성하였다. 그들이 수용소로 사라진 가장 큰 이유는 직접적으로 그들 개인과 연관된 정치적 이유 때문이었다(48.3%). 경제적, 행정적, 일반적 범죄를 저지른 수감자들(7.1%)과 중국으로 탈북한 수감자들(8.0%)은 소수였다. 그러나 전체 수감자들의 3분의 1 이상(35.7%)이 연좌제 때문에 수감되었다.<sup>1112</sup>

**753** 조사위원회는 최근 연좌제로 인해 정치범수용소로 보내지는 사람의 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징후를 발견하였다.<sup>1113</sup> 그러나 가족 중 한 명의 잘못으로 인해 가

1110\_ TJH018.

1111\_ TJH009.

1112\_ NKDB, *Political Prison Camps in North Korea Today*, p. 128.

1113\_ 한 관찰자는 김정일이 최고지도자가 된 1990년대 중후반 이후 특별한 경우에만 정치적 잘못을 저지른 사람



족이 수용소로 보내지는 사례들이 아직도 존재한다. 이와 같은 집단적인 처벌은 일반 주민 또는 사회의 특정 부분에 경고하기 위해 특별히 가혹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당국자들이 판단하는 사건들에 할당되는 경우가 많다. 가족들이 수용소로 보내지지 않는 경우에도, 직장이나 대학에서 쫓겨나는 등 가혹한 보복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다.

- 2007년 증언자는 탈북하였다. 뒤이어 증언자의 부모가 체포되어 심문당하였으며, 증언자의 탈북과 관련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15호 정치범수용소로 보내졌다. 탈북 이전에도 그 가족들은 귀국자였기 때문에 정치범 피의자로 이미 분류되어 있었다.<sup>1114</sup>
- 2012년 국가안전보위부는 함경북도 회령에서 핸드폰, 카메라, 소형 라디오를 북한으로 밀수한 집단에 대한 대대적인 작전을 펼쳤다.<sup>1115</sup> 그 집단은 북한에 대한 전복 행위를 모의하였다는 거짓 혐의가 씌워졌다. 북한 관영 매체는 밀수 혐의자 중 한 명인 전용철 씨가 김일성과 김정일 동상을 파괴하려는 모임을 구성했다고 자백했으며, 한국 정부와의 연계성을 밝히기 전에는 “죽을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을 보도하였다.<sup>1116</sup> 밀수혐의자들의 가족을 포함한 약 90명이 체포되었으며 정치범수용소로 보내진 것으로 여겨진다. 전씨는 처형된 것으로 알려졌다.
- 김정인의 고모부인 장성택이 2013년 12월 처형된 이후, 보안원들이 그의 친척들을 체포해 정치범수용소로 보냈다는 의혹이 부상하였다.<sup>1117</sup>

의 가족들을 정치범수용소로 보내라는 지시가 국가안전보위부에 내려졌다고 주장하였다. Andrei Lankov, *The Real North Korea*, p. 47 참조. Andrei Lankov, “How Human Rights in North Korea are gradually improving,” *NK News*, 2013년 9월 12일, <http://www.nknews.org/2013/09/howhuman-rights-in-north-korea-are-gradually-improving/> 참조.

1114\_ TJH019.

1115\_ TLC004.

1116\_ “Arrested Terrorist Interviewed,” *KCNA*, 2012년 7월 19일 참조. <http://www.kcna.co.jp/item/2012/201207/news19/20120719-08ee.html> 참조. 전씨의 자백이라고 주장하는 조선중앙통신의 제작영상은 <http://www.youtube.com/watch?v=PI2g-h2zMyM> 참조.

1117\_ “Jang’s Family Hit with Prison Camp Transfer,” *Daily NK*, 2013년 12월 20일 참조. <http://www.dailynk.com/english/read.php?num=11296&catald=nk01500> 참조.

**(c) 전면적 통제, 고문 및 처형**

**754** 정치범수용소의 수감자들은 북한 주민으로서의 권리를 상실한 것으로 여겨진다. 수용소 관리자들은 그들을 전면적으로 통제한다. 전직 수용소 경비병이었던 안명철 씨는 다음과 같이 상세하게 설명하였다:

“관리소에서는 수감자들이 더이상 등록된 공민이 아니며, 때문에 처벌을 내리기 위해 법이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국가안전보위부 요원들이 그들을 살려둘지 처형할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그들의 말 외에는 아무런 기준이 없습니다. [수감자들은] 이미 사회에서 제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sup>1118</sup>

**755** 조사위원회는 정치범수용소에 남아있는 수감자들의 대다수는 석방될 전망이 전혀 없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들은 완전통제구역에 수감되어 있으며, 죽을 때까지 구금된다. 15호 정치범수용소 혁명화구역에 수용된 상대적으로 경미한 잘못을 저지른 수감자만이 정치범수용소에서 수년간 수감된 이후 석방되어 공민으로 복귀될 희망이 있다. 이것이 아직도 유지되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2007년 이후, 15호 정치범수용소에서 석방된 사람들에 대해 알려진 사례가 없다. 일부 관찰자들은 이 수용소에서 추가의 증언자가 발생할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15호 정치범수용소 전체를 완전통제구역으로 변경했을 것을 우려한다.<sup>1119</sup>

**756** 수용소의 물리적 설계 때문에 탈출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수용소는 치사량의 전류가 흐르는 높은 외곽 울타리로 둘러싸여 있으며, 철조망을 통해 추가로 강화되어 있다. 외곽 울타리 주변에는 구덩이 텃과 지뢰밭이 설치되어 있다. 각각의 수용소는 자동소총으로 무장한 경비병들이 상주하는 수많은 경비병 초소와 검

1118\_ 서울 공청회, 2013년 8월 21일, 오후(00:58:40).

1119\_ David Hawk, 워싱턴 공청회, 2013년 10월 31일, 오후.

문소로 둘러싸여 있다. 수감자들은 수용소 안에서 움직임이 엄격하게 제한된다. 그들은 경비병들에게 접근을 허가 받는 경우 외에는 외곽 울타리 주변에 다가가지 못하도록 하는 엄격한 명령의 적용을 받는다.

- 완전통제구역에서 탈출한 유일한 사람으로 알려진 신동혁 씨는 비극적인 우연의 일치로 탈출할 수 있었다. 그가 탈출한 날 저녁이 다가오자 그의 친구와 그는 외곽 울타리 근처에서 장작을 모으는 임무에 배정되었다. 그들은 탈출할 기회를 포착하기로 결정하였다. 그의 친구는 울타리에 먼저 도달하였고, 울타리의 구멍을 통해 기어오르기를 시도하던 중 감전사하였다. 철사에 매달린 친구의 몸이 절연을 시켜 신씨가 기어올라 도망갈 수 있었다. 신씨는 위험한 결정을 하게 된 동기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나는 새로 들어온 수감자에게 외부 사람들은 경비병과 같은 음식을 자유롭게 먹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내가 감전사 할 수도 있고, 총살될 수도 있었지만, 단 하루라도 [수용소] 밖의 사람들이 먹는 것을 모두 먹고 싶었습니다.”<sup>1120</sup>

**757** 정치범수용소 경비병들은 탈주자가 있으면 총살하라는 명령을 받고 있으며, 성공할 경우 보상을 받는다. 경비병과 수감자들은 탈주 시도를 하는 경우는 즉결처형될 것이라고 교육을 받는다. 이 규칙은 체계적으로 적용된다. 수감자가 속한 그룹에서 멀어지려고 하거나 허가 없이 경계 울타리에 접근하는 등의 애매한 징후들을 탈출 시도로 간주해 즉결처형을 실시하는 경우도 있다.

- 안명철 씨의 동료 경비병은 다섯 명의 수감자들을 죽인 후, 보상을 받기 위해 그들이 탈출 시도를 하였다고 거짓 신고하였다. 심문 중 거짓신고 행위가 드러나자 그는 다른 수용소로 보내졌으나 “[다른 경비병들의] 사기를 유지하기 위해” 심각하게 처벌받지는 않았다.<sup>1121</sup>
- 정광일 씨는 탈출 시도와 관련된 두 건의 처형에 대해 설명하였다. 2001년 8월, 한

1120\_ 서울 공청회, 2013년 8월 20일, 오후(01:11:40).

1121\_ 서울 공청회, 2013년 8월 21일, 오후(00:14:35).

남자 수감자가 극심한 굶주림으로 그의 그룹에서 이탈하여 식량을 찾아나섰다. 그룹을 이탈하는 것이 탈주 시도로 간주되어 죽임을 당할 수 있었으므로 그는 몸을 숨겼다. 경비병들이 사흘 후 그를 찾아냈고, 공개적으로 처형하였다.

- 2003년 3월, 다른 한 사람이 지나치게 굶주린 나머지 작업반을 이탈하여 창고에 감자를 가지러 갔었다. 그는 경비병들이 이를 탈출 시도로 간주할까봐 숨으려고 하였다. 경비병들은 수색건을 동원해 그를 쫓았다. 개들은 그를 찾아내 그가 반쯤 죽을 때까지 공격하였다. 그리고 경비병들이 그를 그 자리에서 죽였다.<sup>1122</sup>

**758** 조사위원회는 정치범수용소의 엄격한 규율의 위반, 명령 불복종 및 기타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되는 행위에 대해 즉결처형 및 기타 잔인한 법외적 처벌이 시행되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처벌과정은 전적으로 국가안전보위부 특별심문부 요원에 달려 있었다. 사형을 집행하는 결정도 항소나 기타 법적 검토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 “판결”이 내려지기 전, 피해자는 국가안전보위부 심문부가 행하는 고문을 동반한 장시간의 심문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다.

**759** 처형은 다른 수감자들에게 경고하기 위해 다른 모든 수감자들 앞에서 진행된다. 피해자의 가족과 아이들도 연령에 관계없이 참여하도록 강요받는다. 국가안전보위부 요원은 대부분 일반 경비병으로 구성된 총살집행대가 처형하기 전 처형의 이유를 말한다.

**760** 기타 처벌은 배급 감축부터 추가 강제노동, 독방 수감, 구타 및 불구로 만들기 등 다양한 형태가 있다. 육체적 처벌은 대부분 특별처벌구역에서 이루어지는데, 이곳은 수감자들을 고문하며 심문하는 곳으로 사용되는 곳이다. 때때로 개별 경비병들이 어떠한 공식적인 심문절차 없이 고문과 잔인하고 비인간적이며 모욕적인 처벌을 내리기도 한다. 아이들도 가장 잔인한 처벌에서 예외는 아니다.

1122\_ 서울 공청회, 2013년 8월 21일, 오전.

- 신동혁 씨는 14세 때 14호 정치범수용소의 처벌 구역에서 그의 어머니와 형제가 탈출계획에 대해 논의했던 것을 알았는지에 대해 6개월 동안 고문을 동반한 심문을 받았다. 그는 등에 화상을 입을 때까지 불꽃 위에 매달리는 고문 외에도 다양한 고문을 받았다. 보다 나이 많은 다른 수감자가 그의 상처를 돌봐주지 않았다면 살아남지 못했을 것이었다.<sup>1123</sup>

한 번은 신씨가 강제노동하는 공장에서 실수로 재봉틀을 떨어뜨렸다. 그는 벌로 오른손 셋째 손가락을 절단당하였다:

“경비병은 층별 관리자에게 내 손가락을 자르라고 명령했고, 나는 무릎을 꿇고 그러지 말아달라고 빌었으나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내 손 전체가 잘릴 것이라고 생각했으나, 손가락 하나만 잘렸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나는 손이 아니라 손가락 하나만 잃게 되어서 경비병에게 정말 감사하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sup>1124</sup>

- 안명철 씨는 22호 정치범수용소에서 병든 수감자가 빨리 일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그의 상관인 용접기로 그를 때려 죽게 만든 사건을 기억해냈다. 그 사건에 대한 조사가 끝난 후, 그의 상관은 처벌받는 대신 포상으로 대학을 다닐 수 있게 되었다.<sup>1125</sup>
- 강철환 씨는 요덕의 15호 정치범수용소에서 수감자들을 비좁은 공간(sweatbox)에 구금시키는 방식으로 별한다고 말하였다. 주 출입구의 경비병 막사 옆에 위치한 이 처벌 공간(sweatbox)은 나무로 된 작은 상자라 사람이 들어가서 완전히 서지도, 눕지도 못할 만큼 작았다. 수감자들은 쭉그린 자세로 무릎을 꿇도록 강요받았다. 수감자의 엉덩이는 발꿈치에 계속 눌러 결국 멍들어 새까맣게 변하였다. 이 처벌 공간에 오래 있을 경우 혈액순환을 방해해 죽을 수도 있다. 게다가 처벌 공간에 있는 수감자에게는 식사가 거의 지급되지 않는다. 상자에 기어다니는 벌레를 먹고서야 살아남는 경우도 많았다.<sup>1126</sup>
- 한 증언자에 따르면 15호 정치범수용소의 혁명화구역에 구금된 수감자들이 수용소 관리자들을 비판하였다고 보고가 되면 처벌구역으로 보내졌다고 한다. 많은 수는 다시 돌아오지 못하였고, 완전통제구역에 종신수감되었을 가능성이 있었다. 다시 돌아온 사람들은 육체적·심리적으로 끔찍한 상태로 돌아왔다. 증언자는 처벌구역에서

1123\_ 서울 공청회, 2013년 8월 20일, 오후.

1124\_ 서울 공청회, 2013년 8월 20일, 오후(00:57:50).

1125\_ 서울 공청회, 2013년 8월 21일, 오후.

1126\_ Kang Cholhwan, *The Aquariums of Pyongyang*, pp. 95~96. 강씨는 2013년 8월 24일 오후, 서울 공청회 당시 책의 내용이 틀림없음을 증언하였다.

돌아온 한 수감자가 건강상태가 너무 나빠 할당량의 일을 채우지 못하였다고 기억하였다. 경비병은 그 수감자를 야만적으로 구타했고, 이를 후에 죽였다.<sup>1127</sup>

**761** 경비병들은 수감자들이 인민의 적이며 따라서 적대적으로 대해야 한다고 배운다. 또한 그들은 수감자에게 잔인하게 대한다고 하여도 대부분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된다.

- 안명철 씨는 그가 받은 훈련을 묘사하면서 “우리는 6개월간 매우 강도 높은 사상교육을 받으며 그 훈련은 … 수감자들에 대한 적개심을 고취하고 수감자들이 인민의 적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sup>1128</sup> 또한 그와 다른 경비병 동료가 수감자들에게 동정심을 느끼기도 하였으나, 그러한 동정심을 표현하게 되면 관련된 경비병들이 처벌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결코 그러지 못하였다고 말하였다.

- 안씨가 말한 것과 같이 강도 높은 사상교육은 수감자들에 대한 적대심을 고취시키고 수감자들이 인민의 적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 점을 재차 강조하기 위해 그와 다른 경비병들은 무술 훈련기간에 수감자들을 ‘인간 펀치백’으로 사용하게 된다:

“가끔 들에서 일하는 수감자들을 소환하라는 명령이 내려옵니다. 그들은 우리가 [무술] 기술을 사용하게 하기 위해서 소환됩니다. 우리 기술을 이러한 수감자들에게 사용하도록 하는 실질적인 이유는 … 수감자들을 긴장하게 하고 그들이 우리의 적이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한 것입니다 … 우리는 연습할 상대가 없었기 때문에 수감자들을 소환해 그들에게 발차기와 타격연습을 하였습니다 … 우리는 그들이 죽이거나 살게 하거나 정말 신경쓰지 않았습니다.”<sup>1129</sup>

안씨는 탈출을 시도하는 수감자들을 잡기 위해 수용소에 경비견들을 어떻게 포악한 상태로 유지하는지에 대해 설명하였다. 한 번은 경비견들이 어린이 수감자를 위한 학교에서 난폭하게 덤벼들어 세 명의 어린아이를 죽였다. 지휘관은 개들의 풀린 상태에 대해 일단 경비견 훈련사를 호되게 꾸짖었으나, 추후에 다른 경비병들 앞에서

1127\_ TLC008.

1128\_ 서울 공청회, 2013년 8월 21일, 오후(01:09:47).

1129\_ 서울 공청회, 2013년 8월 21일, 오후(00:10:40).

그가 정치범들을 효과적으로 죽일 수 있게 경비견을 잘 훈련시켰다고 칭찬하였다.

- 김혜숙 씨는 18호 정치범수용소에서 겪었던 가장 모욕적인 순간이 경비병들이 무작위로 그녀를 멈춰 세운 후 무릎을 꿇고 입을 벌리라고 했을 때였다고 말했다. 경비병들은 그녀의 입 안에 침을 뱉고 그것을 삼키라고 말하였다. 그녀는 구역질난다는 표시를 조금이라도 하면 심각하게 구타를 당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sup>1130</sup>

**762** 조사위원회는 정치범수용소에서는 경비병과 더불어 일부 수감자들을 이용해 다른 수감자들을 통제하고 감시하도록 하였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수감자들은 작업반으로 조직된다. 이 작업반의 장으로 임명된 수감자들은 규율을 강제할 의무가 있으며, 그러기 위해 그들의 자유재량하에 폭력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수용소 관리부는 식량배급을 더 받거나 경비병에게 보다 관대한 대우를 받기 위해 협력하는 수감자를 대상으로 밀고자 체계를 운영한다. 개별 수감자들은 다른 수감자들의 잘못을 보고하지 않을 경우 심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교육받는다. 그들이 처음 수용소에 들어온 순간부터 이 규칙은 어린이 수감자들에게도 주입되어, 그들의 부모까지도 비판할 수 있게 된다.

- 신동혁 씨는 13세 때 그의 어머니와 형제가 탈출 계획에 대해 논의하는 것을 엿듣고 이를 신고하였다. 이 때문에 그의 어머니와 형제가 모두 처형당하였다. 신씨는 다른 수감자들과 함께 그의 어머니와 형제의 공개처형을 목격해야 하였다. 신씨는 그의 친어머니를 밀고하게 되기까지의 과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나는 당초 모든 구체적인 사실을 경비병에게 보고하는 것이 의무였기 때문에 그들의 [탈출] 계획을 보고하였습니다 … 그것이 수용소의 규칙이었고, 그것이 바로 내가 언제든지 그들의 계획을 경비병에게 보고하는 것이 내 일이라고 생각한 이유였습니다. 그 나이에 나는 그것이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 나는 경비병에게 나에게 포상으로 내가 배를 채울 수 있게 1인분의 요리된 마른 쌀을 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경비병이 그러한 보상을 주겠다고 해서 나는 그들의 계획에 대해 보고하였습니다.”<sup>1131</sup>

1130\_ 영상회의를 통한 비공개 면접.

1131\_ 서울 공청회, 2013년 8월 20일, 오후(00:41:00).

**(d) 성폭력과 가족권 및 생식권 박탈**

**763** 정치범수용소마다 정책이 다른 것으로 보이나, 연좌제로 인해 수용소로 보내진 가족들은 종종 같이 지내는 것이 허락되기도 한다. 그러나 조사위원회는 현재 수용소의 수감자들은 새로이 가족을 이루거나 아이를 갖도록 허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sup>1132</sup> 이러한 정책은 계급의 원수의 씨를 제거하라는 목적에 부합한다. 아주 드문 경우에 수용소 관리자들은 두드러지게 일을 잘하고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모범 수감자들 간의 “결혼”을 주선하기도 한다. 선정된 수감자들은 배우자를 선택하는데 아무런 의사표시를 할 수 없다. “결혼한” 쌍은 함께 살도록 허락 받지는 않으나 일 년에 며칠 성적인 접촉을 위해 함께 지내게 된다. 몇몇의 경우는 이로 인해 아이를 낳기도 한다. 그러한 관계로 태어난 아이들도 수감자가 된다.

**764** 허가되지 않은 관계로 임신한 여자는 강제낙태를 하게 되며 고문이나 처형 등 추가의 처벌을 받게 된다.

- 신동혁 씨의 부모는 14호 정치범수용소의 모범 수감자였기 때문에 경비병들에 의해 “결혼”이 주선되었다. 신씨는 11세까지 어머니와 함께 살았으나, 그 이후 다른 막사로 이감되었다. 그의 아버지는 수용소의 다른 곳에 살아 거의 보지 못하였다. 신씨는 수용소에 가족이라는 개념은 없다고 느꼈다:  
“우리는 모두 수감자들이었고, 내가 그들에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 그리고 그들도 부모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으며, 그래서 나는 내 부모에 대해 어떠한 애착이나 감정도 느끼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sup>1133</sup>
- 안명철 씨는 김일성이 수감자들의 3대를 멸해야 한다고 지시하였다고 밝혔다. 이것이 임신이 철저히 금지된 이유였다. 그는 또한 “정치범 수감자들의 미래세대가 존재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수용소가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수용소 관리원들은 노동자(수

1132\_ 인민보안부에서 운영하는 18호 정치범수용소는 이러한 관행에 적용되지 않는다. 18호 수용소에서는 노동과 복종기록이 좋은 경우 특정 나이(남자 30세, 여자 28세)의 수감자는 배우자를 골라 결혼할 수 있다.

1133\_ 서울 공청회, 2013년 8월 20일, 오후(00:46:36).



감자)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결혼을 허락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결혼하지 않은 여자 수감자가 다른 수감자의 아이를 낳을 경우 가혹한 처벌이 반드시 뒤따랐다: “아이의 아버지가 동료 수감자일 경우 총살당하며, 그 여자는 가장 가혹한 탄광으로 보내집니다.”<sup>1134</sup>

- 2007년에서 2010년까지 요덕의 15호 정치범수용소의 혁명화구역에 구금되었던 한 정치범 수감자는 허가 없이 임신한 여성이 강제낙태를 당한 것을 목격하였다. 그녀의 요덕수용소 수용기간도 연장되었다. 다른 경우는 임신 말기의 낙태로, 주사를 통해 조산을 유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증언자는 피해자가 죽은 태아를 출산하는 것을 돕도록 강요받았다.<sup>1135</sup>
- 증언자는 임신 중 18호 정치범수용소로 보내졌다. 임신 말기가 가까워 올 때, 경비병이 그녀를 발로 차 조산을 하게 되었다. 그녀의 아이가 태어나자, 경비병들은 그녀에게서 우는 아기를 빼앗을 때까지 구타하였다. 그녀는 너무 괴로워서 의식을 잃었고, 그녀가 깨어났을 때 아기는 죽어있었다. 시체가 충분히 모아서 한 무덤에 던질 수 있게 될 때까지 아기의 시체를 다른 시체들과 함께 저장소에 모아두었다. 고통과 출혈이 지속되는 중에도 증언자는 다음 날부터 노동을 해야만 하였고, 할당량을 채우지 못한다는 이유로 구타당하였다.<sup>1136</sup>

**765** 조사위원회는 수감자들이 복종해야 하는 환경과 비처벌(impunity)의 일반적인 분위기가 결부되어 경비원과 일부 특권있는 수감자들에 의해 성폭행이 흔하게 일어나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일부 여성 수감자들은 위력으로 성폭행 당한다. 다른 경우에는 가혹한 노동을 피하거나 식량을 더 받기 위해 성적인 관계를 강요당한다.<sup>1137</sup> 이러한 경우도 일반적으로 성폭행으로 간주되는데, 왜냐하면 그들의 관계가 상호합의에 의한 것이 아니며 가해자가 수용소의 강압적인 환경을 이용하기 때문이다.<sup>1138</sup>

1134\_ 서울 공청회, 2013년 8월 21일, 오후(00:31:45).

1135\_ TLC018

1136\_ TSH019

1137\_ NKDB, *Political Prison Camps in North Korea Today*, p. 492.

1138\_ 강압적인 환경이 성폭행을 증가시키는 것은 국제형사재판소(ICC) 규정에 드러난 성폭행에 대한 공식적인 해석과 구 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ICTY) 항소부의 법제에 특히 잘 드러나 있다. Kunarac, Kovac, and

766 다른 종류의 고문과는 달리, 이와 같은 성폭행은 수용소 규칙으로 용납되지 않는다. 국가안전보위부 요원과 경비병들은 수감자들과 친밀하게 지내거나 성적으로 관여하지 말도록 하는 엄격한 명령의 적용을 받는다. 그러나 성폭행의 경우, 가해자가 단순히 퇴직되거나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특히 임신을 한 경우 가혹한 노동을 하도록 재배치되거나 비밀리에 처형당하는 경우가 흔하다.<sup>1139</sup> 임신한 피해자는 예외 없이 낙태를 당하거나 출산하는 직후 아이가 살해된다.

- 안명철 씨는 고위 국가안전보위부 요원은 일반 경비병들과 달리, 여성 수감자가 임신되지 않는다면 그들을 성적으로 학대해도 처벌받지 않는다고 증언하였다. 임신을 한 경우, 관료는 퇴직 당하고, 여성은 가혹한 광산으로 보내지거나 비밀리에 처형당한다. 그가 속한 단위의 지휘관이 한 여성을 성폭행하였으며, 그 여성은 임신을 하게 되어 아이를 출산한 적이 있었다. 어머니와 아기는 처벌구역으로 보내졌으며, 그곳에서 아기는 개 밥그릇에 던져졌다.

안명철 씨는 경비병에 의해 성폭행 당한 후 22호 수용소의 고문 처벌 구역으로 보내진 어린 소녀의 사례를 기억해내었다. 그녀는 불타는 난로 고리를 가슴에 누르는 고문을 받았다. 뒤이어 그녀는 광산에서 가혹한 노동을 하도록 재배치되었고, 그곳에서 사고로 두 다리를 잃었다.

안명철 씨는 또한 경비병들이 배고픈 수감자들과 가학적이며 성적으로 학대하는 게임을 벌였다고 증언하였다. 한번은 22호 정치범수용소의 한 국가안전보위부 요원이 의자에 앉아 낚시대에 돼지 비계를 끼워 벌거벗은 여성 수감자들이 개처럼 기어 고기를 따라다니면서 튀게 만들었다. 그 국가안전보위부 관료는 낚시줄을 수감자가 잡지 못하는 높이로 올렸다가 다시 내려 여성 수감자가 다시 시도하는 것을 즐겼다.<sup>1140</sup>

Vokovic, IT-96-23& IT-96-23/1-A [ICTY 항소부], 2002년 6월 12일 판결, para. 129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는다는 성폭행의 특징이 가해자가 "위력을 이용하지 않고 강압적인 환경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역시 나타난다는 점을 발견함] 참조. 범죄요소, 국제형사재판소 로마규정 당사국총회, 제1차 회기, 2002년 9월 3~10일, 제7조제1항 사목, 제8조제2항 나목(22), 제8조제2항 마목(6) 참조.

1139\_ NKDB, *Political Prison Camps in North Korea Today*, p. 487~488.

1140\_ 서울 공청회, 2013년 8월 21일, 오후. 마지막 두 사례는 조사위원회가 공청회 이후 수행한 추가 면접에서 묘사되었다. 안씨는 NKDB, *Political Prison Camps in North Korea Today*, p. 236, 289에도 같은 증언을 하였다.

- 김혜숙 씨는 18호 정치범수용소의 광산에서 일하는 여성들이 야간근무를 하러 오고 가는 길에 경비병과 남성 수감자들이 그들을 노렸기 때문에 야간근무를 하는 것을 두려워하였다고 묘사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처벌이 두려워 단 한 명도 공개적으로 경험을 이야기하지 않았다. 그러나 많은 여성 수감자들이 충격적인 경험에 대해 그녀에게 비밀리에 이야기하였다.<sup>1141</sup> 다른 증언자도 18호 수용소의 경비병들이 십대 소녀들을 대상으로 삼았다고 증언하였다.<sup>1142</sup>
- 11호 수용소의 전직 경비병은 수용소 관리원들이 정기적으로 수용소에 방문하는 최고위 관리가 여성 수감자들을 성폭행 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묘사하였다. 관리가 여성을 성폭행하면, 피해 여성은 죽임을 당하였다.<sup>1143</sup>

### (e) 굶주림, 강제노동 및 질병

767 15호 정치범수용소의 혁명화구역에 수감된 소수의 수감자들을 제외하고, 수용소 수감자들은 사상적으로 교화가 불가능하다고 여겨진다. 그들은 석방될 가능성도 없다. 대신 그들은 최저의 비용으로 최대의 경제적 이익을 끌어내기 위해 굶주림과 가혹한 환경에서의 강제노동 과정에서 서서히 죽임을 당한다. 전직 수용소 경비병이었던 안명철 씨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정치범수용소의] 수감자들은 인간 대우를 받지 못합니다. 그들은 절대 석방될 수 없으며 … 그들의 기록은 영구적으로 말소됩니다. 그들은 가혹한 노동으로 수용소에서 죽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수감자들을 적이라고 생각하도록 훈련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들을 사람으로 여기지 않습니다.”<sup>1144</sup>

1141\_ 김혜숙 씨와의 비공개 면접.

1142\_ TSH029

1143\_ TJH041

1144\_ 서울 공청회, 2013년 8월 21일, 오후(00:16:40).

**768** 전 수감자인 신동혁 씨도 같은 결론에 도달하였다. 조사위원회에서 증언하면서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북한의 독재자들은 우리가 죽어야 하며, 살아야 할 가치가 없고, 그들이 단지 우리의 목숨을 연장해주고 있으며, 우리가 그들을 위해 생산하고 일하는 도중에 죽을 수 있도록 살려두는 것입니다.”<sup>1145</sup>

**769** 정치범수용소의 수감자들은 차마 입에 담지 못할 가혹행위와 고난을 경험한다. 그러나 과거 수감경험이 있는 자들이 강조한 가장 고통스러운 경험은 심각한 굶주림과 매일 굶어 죽지 않기 위해 분투해야 한다는 것이었다.<sup>1146</sup> 수감자들은 곧 굶어 죽을 정도의 양과 질 및 종류에서 턱없이 부족한 배급을 받았다. 굶주림을 야기하는 수준의 식단 때문에, 정치범 수감자들은 해골과 같이 두드러지는 외형을 지닐 정도로 야윈다. 매년 많은 수의 수감자들은 굶주림과 영양부족으로 인해 펠라그라(pellagra)와 같은 질병으로 죽는다. 펠라그라에 걸리면 피부가 벗고 정신과 소화기관이 무너지며, 정신이 쇠약해진다. 수감자들은 벌레, 설치류, 야생식물 등을 사냥하고 채집하거나, 경비병이나 농장의 가축들을 위한 음식을 빼돌리는 방법을 찾아내는 경우에만 오랜 기간 생존할 수 있었다.

**770** 조사위원회는 수감자들을 굶주리게 하는 것이 단순히 북한에 퍼져있는 식량부족에 의한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정책에 기반한 것이라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이는 북한의 식량사정이 훨씬 안정적이었던 때에도 이어지는 수용소의 특징이었다. 조사위원회에서 면접한 전직 경비병들과 다른 보위부원들도 수감자들을 고의적으로 굶주리게 하는 것을 통해, 그들을 쇠약하게 함으로써 통제하기 쉽게 하고 고통을 가중시킨다고 밝혔다.

1145\_ 서울 공청회, 2013년 8월 20일, 오후(01:39:05).

1146\_ 수감자들의 굶주림에 대해서는 IV장 D.9 참조.

- 김영순 씨는 그녀의 가족이 70년대에 요덕의 15호 수용소에 수감되었을 때 옥수수 와 소금만을 배급 받았다고 묘사하였다. 그녀의 아버지는 굶어 죽었다. 김영순 씨는 노동시간에 늦으면 배급이 깎이기 때문에 항상 일하러 뛰어갔다고 말하였다. 뼈가 부러졌을 때에도 배급을 깎이지 않게 하기 위해 뛰어갔다. 배급량이 너무 작아서 그녀의 가족들은 뱀과 설치류를 잡아서 어린 아이들이 살 수 있도록 하였다. 김씨는 다음과 같이 기억하였다:  
“아이들은 배가 볼록합니다. [우리는] 아이들을 먹이려고 뱀과 쥐를 요리했으며, 쥐를 잡은 날은 그게 별식이었습니다. 우리는 모든 살아있는 것들, 나는 것, 기는 것 등 찾을 수 있는 모든 종류의 고기를 먹어야 하였습니다. 들에서 나는 모든 풀을 먹어야 했습니다. 그것이 수용소의 현실이었습니다.”<sup>1147</sup>
- 강철환 씨는 그가 정치범수용소에서 보낸 10년간 굶주림과 영양실조로 죽은 300명 이상의 사람들을 물었다고 증언하였다. 식량 배급은 한 달에 한 번 이루어졌으며, 그가 수감되었던 1980년대에는 북한의 식량사정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은 반달치도 안 되는 옥수수 낱알을 받았다:  
“그 시기의 경제적 사정은 꽤 안정적이었기 때문에, 식량[국가의 식량사정이]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치범에게는 한 달에 한 번 주먹만큼의 옥수수 낱알을 배급할 뿐이었습니다 … 15일이 지나면 우리는 음식이 떨어져서 살기 위해 풀을 베어 죽을 끓여야 하였습니다. 몸이 좋은 남자, 건강한 사람들도 3개월이 지난 후에는 영양실조에 시달렸습니다. 우리는 단백질을 얻기 위해 쥐, 뱀, 개구리, 지렁이 등을 눈에 보이는데로 먹었습니다 … 수용소에 들어온 이후 첫 3개월, 그 3개월이 중요합니다 … 나는 그 3개월 동안 영양실조가 발생해 거의 죽을 뻔 하였습니다. 그러나 나보다 먼저 있었던 아이들이 들에서 쥐를 잡아 주어 나를 살렸습니다 … 엘리트, 지식인, 고위직에 있었던 사람들은 [쥐를] 먹지 않아서 첫 번째로 죽습니다. 그러나 수용소 밖에서 어렵게 살던 사람들과 아이들, 본능에 충실한 사람들은 살아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sup>1148</sup>
- 14호 수용소에서 1982년에 태어난 신동혁 씨는 그가 구금된 기간 동안 음식이 충분한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항상 굶주렸다고 증언하였다. 수용소 수감자들이 동물을 기르고 쌀농사를 지었으나, 이러한 음식은 먹을 수 없었으며, 그들에게 주어진 미약한 배급만을 먹을 수 있었다고 하였다. 신씨는 매일 400g의 옥수수죽만을 배급받았으며, 살기 위해서는 풀이나 쥐 같은 다른 식량이 될 만한 것을 찾아야 했

1147\_ 서울 공청회, 2013년 8월 21일, 오전(00:31:50).

1148\_ 서울 공청회, 2013년 8월 24일, 오후(03:31:30).

다고 기억하였다.<sup>1149</sup>

- 1990년대의 기근 이전에도 김혜숙 씨의 일곱 가족은 한 달에 말린 옥수수 4.5kg만을 배급 받았으며, 18호 정치범수용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다른 식량을 구해야 하였다.<sup>1150</sup> 기근이 있는 동안, 식량 배급은 더욱 줄어들어 강제노동에 전일로 종사하는 어른들만이 배급을 받았다. 그녀의 할머니는 굶어 죽었으며 그녀의 어머니는 기력이 쇠약해진 채로 먹을 수 있는 야생초를 구하려다가 가파른 절벽에서 떨어졌다.
- 정광일 씨와 김은철 씨는 15호 수용소에 2003년부터 구금되었고, 하루 세 번 120g의 옥수수죽만을 배급 받았다. 특별한 날에는 죽에 돼지고기가 한 조각 들어 있었다. 일을 잘 하지 못하면 배급은 반으로 줄었다.<sup>1151</sup>

**771** 수용소 정책으로 복종하지 않은 수감자들에게는 단기간에 굶어 죽을 수준으로 식량 배급을 줄인다. 조사위원회에서 면접한 과거 수감자들은 일을 잘 하지 않는 다거나, 몸이 좋지 않거나 다쳐서 일을 할 수 없거나, 수용소의 규칙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한 벌로 배급을 반으로 줄이는 일이 잦다고 증언하였다. 전직 관료는 배급 감축이 경비병의 훈련 중 제공받는 서면 지시사항에 꼼꼼하게 설명되어 있다고 밝혔다.

**772** 수감자가 경비병의 남은 음식이나 동물 사료, 수용소에서 생산된 음식 등을 가져가는 방식으로 굶주림에서 벗어나면, 이는 즉결처형을 포함한 극도로 가혹한 처벌을 받게 된다.

- 신동혁 씨는 7세쯤 된 여자아이가 곡식 몇알을 주머니에 숨겼던 것을 설명하였다. 한 경비병이 그녀를 잡아 각목으로 너무 심하게 구타해 그 상처로 인해 죽었다: “일주일에 두 번 정도 [경비병들이] 한 명을 골라 이 사람이 무언가를 훔치거나 숨겼는지 조사를 하였는데, 그녀는 너무 운이 없어서 그 조사 대상으로 지목되었습니

1149\_ 서울 공청회, 2013년 8월 20일, 오후.

1150\_ 비공개 면접.

1151\_ 서울 공청회, 2013년 8월 21일, 오전.

다. 그리고 그녀의 주머니 속에는 곡식이 조금 있었고, 경비병은 이것이 어디서 났냐고 물었습니다. 그녀는 경비병에게 길에서 주웠다고 말했습니다. 경비병은 내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고, 내가 가르친 걸 어겼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경비병이 쓰던 각목으로 너무 심하게 맞아서 기절하였고, 우리는 아이를 아이 어머니에게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 다음날 아이가 학교에 오지 않아 우리는 그녀가 죽은 것을 알았습니다.”<sup>1152</sup>

신씨는 또한 경비병들이 보지 못하게 수감자들이 풀이나 바닥에 떨어진 음식 찌꺼기를 은밀하게 먹어야 하였다고 말하였다:

“우리가 바닥에 떨어진 찌꺼기를 주울 때 경비병들이 우리를 보지 못하는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가끔은 바닥에 떨어진 찌꺼기를 먹어도 되는지 경비병에게 물어봐야 했습니다. 거기에는 쥐가 정말 많고 많았습니다 … 수감자들은 돌진해서 그것을 잡지만, 경비병들이 있는 경우 우리들 중 가장 일을 잘하는 일꾼이 나서서 경비병에게 쥐를 잡아서 먹어도 되는지 물어야 했습니다. 경비병이 기분이 좋으면 허락을 했으나, 쥐를 잡도록 허락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 경비병 몰래 쥐를 잡은 경우 바지에 숨기기도 하였습니다.”

- 김은철 씨는 15호 정치범수용소의 한 동료 수감자가 들에서 감자를 훔쳤다는 이유로 다른 수감자들 앞에서 처형당한 것을 기억하였다.

김씨는 또한 요덕의 15호 정치범수용소의 처벌구역에서 남은 음식을 훔쳤다가 잡힌 사람은 독방에 감금되고 극도의 굶주림에 시달리게 하는 수준의 배급을 받았다고 증언하였다:

“일단 그곳에 들어가면 나올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독방에 들어가게 되면 구타를 당하고 한끼에 30g만을 배급받으며, 몸이 차가워져 급격히 쇠약해지게 됩니다. [들어갈 때] 50kg이었던 사람이 [독방을 나왔을 때] 20kg으로 몸무게가 줄었습니다.”<sup>1153</sup>

- 18호 정치범수용소에 구금되었던 증언자는 소화되지 않은 곡식을 찾기위해 소똥을 주웠다. 경비병은 그녀를 잡아 머리를 발로 찼다. 그녀는 머리에 깊은 상처를 입었고 치아도 몇개 잃었다. 그녀는 동료 수감자가 훔친 옥수수를 입안에 숨기려고 하였다가 맞아 죽었던 것을 설명하였다. 다른 수감자가 시체의 입을 열어 옥수수를 꺼내려고 하였다가 그도 야만적으로 구타당하였다.<sup>1154</sup>

1152\_ 서울 공청회, 2013년 8월 20일, 오후(00:30:29).

1153\_ 서울 공청회, 2013년 8월 21일, 오전(01:48:10).

1154\_ TSH029

**773** 조사위원회는 의도적인 굶주림을 견디는 것 이외에도, 수감자들은 생존에 필요한 기본적인 요건들을 제공받지 못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겨울에 기온이 영하 20도까지 내려가는 경우가 있으나, 그들은 유리창이나 효과적인 난방시설이 없는 오두막이나 단순한 막사에 수용된다. 담요, 비누, 생리대 및 기타 위생용품과 조리 도구도 드물게 제공되거나 전혀 제공되지 않는다.

**774** 수용소는 아주 초보적인 의료시설만을 제공하며, 의료 용품이나 자격을 갖춘 사람이 없고, 심하게 아픈 사람들에게 죽을 장소를 제공해주는 것과 별반 다를바 없는 열악한 수준이다. 위생 상태가 나쁘고 의료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염병이 돌 경우 굶주리고 지친 수감자들 중 많은 수가 죽는다.

- 안명철 씨는 배고픈 수감자들이 병을 옮기는 종류의 쥐를 잡아서 먹었기 때문에 전염병이 퍼져 수용소의 수감자 200명이 죽은 것을 설명하였다. (추위가 가장 심하고 비축식량이 고갈될 때인) 겨울과 이른 봄에 많은 수가 죽었다.<sup>1155</sup>
- 신동혁 씨는 유리창이 뚫린 창이 있는 작은 집에서 얼어붙는 겨울을 지내야 했다: “돌풍이 많이 안으로 불어들어왔고, 겨울에는 정말 추웠던 것으로 기억합니다.”<sup>1156</sup>
- K씨는 11호 수용소의 수감자들은 짐풀로 지붕을 만들고 땅을 파서 만든 진흙 오두막에서 산다고 묘사하였다.<sup>1157</sup>
- 김혜숙 씨는 아무런 산전관리 및 건강관리를 받지 못한 채 두 아이를 수용소에서 낳았다. 산중에서 홀로 먹을 수 있는 약초를 채취하던 중 그녀는 첫 아이를 낳았고, 그녀는 자신의 거주구역으로 겨우 돌아가 갓난아이를 거적과 이파리로 덮어 두었다.<sup>1158</sup>
- 과거 수감자에 따르면 18호 정치범수용소는 약품이나 의사가 없었다. 심하게 아픈 수감자들은 특별 “노동부서”로 모은 후 죽도록 내버려 두었다. 수감자가 죽어도 즉시 매장하지 않았다. 대량 매장을 할 수 있을만큼 시체가 충분히 모일 때까지 시체

1155\_ 서울 공청회, 2013년 8월 21일, 오후.

1156\_ 서울 공청회, 2013년 8월 20일, 오후(00:34:50).

1157\_ 도쿄 공청회, 2013년 8월 30일, 오후.

1158\_ 비공개 면접.



를 저장소에 보관하였다. 쥐들이 종종 이 시체들의 살점을 물어뜯었다.<sup>1159</sup>

**775** 정치범수용소는 각각 공장, 농장, 광산, 벌목장을 운영하며, 석탄, 군복, 소비재 등을 생산한다. 또한 수감자가 먹는 양 이상의 식량도 생산한다. 특히, 고기와 같은 양질의 음식은 경비비용이나 판매용으로 쓰인다. 도로와 철도 연결을 통해 수용소 내에서 생산된 물품들이 수용소 외부의 일반 경제권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한다. 생산시설들은 수감자들에 대한 적절한 복지와 생존과 관계없이 최저의 비용으로 최고의 경제적 이익을 끌어내기 위해 관리된다. 모든 수감자들은 강제노동에 동원된다. 그들은 일반적으로 일주일 내내 하루에 12시간 이상 일하며, 심하게 아플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중요한 공휴일이나 시설관리 기간에만 강제노동에서 면제된다(또는 근무시간을 줄인다).

**776** 수감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노동은 일부 수용소의 경계에 위치한 광산과 벌목장이다. 수감자들은 그곳에서 기초적인 도구들만 갖고 특히 위험한 환경에서 일해야 한다. 수감자들의 열악한 건강상태와 안전장치가 갖춰지지 않은 등의 이유로 치명적인 노동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777** 수감자들은 일일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구타당하고 연장근로를 하게 되며, 식량 배급이 삭감된다. 한 작업반의 수감자들이 집단 처벌을 받는 것도 아주 흔하다. 이 때문에 수감자들의 작업반장은 동료 수감자들이 완전히 지칠 때까지 몰아가게 된다. 그들은 종종 뒤쳐지는 동료 수감자들을 구타하기도 한다.

**778** 15호 정치범수용소의 혁명화구역에서는 노인 수감자들이 더 이상 일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식량배급은 일반보다 적은 양만 받는다. 그러나 완전통제구역의

1159\_ TSH029.

수감자들은 죽을 때까지 일해야 한다.

**779** 5세 이상의 어린이들은 농사나 청소와 같은 강제노동에 종사하게 된다. 더  
 불어 그들은 국가안전보위부 요원으로부터 수 시간의 기초적인 교육을 받는다. 아이  
 들은 15세 또는 16세부터 강제노동 시스템에서 전일제로 일하며, 광산일과 같은 가  
 장 힘든 노동에서도 면제되지 않는다.

- 14호 수용소에서 태어난 신동혁 씨는 어린이들이 아주 적은 교육만을 받고 대부분  
 의 시간에는 농사나 다른 잡일에 동원된다고 묘사하였다. 그는 수용소 관리원들이  
 “우리를 [쟁기를 끄는] 동물과 같다고 생각하였고, 그 때문에 우리에게 아무것도 가  
 르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고 느꼈다.<sup>1160</sup> 15세가 되자, 그는 대동강에 수력발  
 전소를 짓는 일을 돕도록 배정되었다. 한 번은 세 명의 성인과 다섯 명의 어린이가  
 콘크리트 벽이 무너져 깔렸다. 일꾼들은 계속 일해야 했고, 근로시간이 끝난 뒤에야  
 시신을 처리할 수 있었다. 16세 이후에 신씨는 운이 좋게 돼지우리에서 일하게 되었  
 는데, 돼지우리는 비밀리에 동물 사료에 접근할 수 있어서 훨씬 더 선망하는 직책이  
 었다.<sup>1161</sup>
- K씨는 11호 정치범수용소를 해체하던 중 농사에 쓰이는 작은 낫을 하나 발견하였  
 다. 그는 국가안전보위부 요원들에게서 이러한 도구가 교육은 최소한도로 받고, 들  
 에서 강제노동을 하는 5세 정도의 어린 아이들이 쓰는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충  
 격을 받고 안타까워하였다.<sup>1162</sup>
- 김혜숙 씨는 15세부터 18호 정치범수용소의 광산에서 일해야 했다. 보통 3교대로 일해  
 야 하지만, 생산량을 최대로 늘리기 위해 하루에 16~18시간 동안 일하였다. 남자들은  
 곡괭이와 삽으로 석탄을 캐고, 여자들은 주머니, 양동이, 석탄수레 등을 통해 석탄을 지  
 상으로 수동으로 날랐다. 그녀의 남편과 남자형제는 광산 사고로 죽었다. 김씨는 광산  
 에서 강제노동을 한 많은 사람과 마찬가지로 아직까지 진폐증을 앓고 있다.<sup>1163</sup>

1160\_ 서울 공청회, 2013년 8월 20일, 오후(01:39:50).

1161\_ Blaine Harden with Shin Dong-hyuk, *Escape from Camp No. 14* (New York, Penguin Books, 2012), p. 77.

1162\_ 도쿄 공청회, 2013년 8월 30일, 오후.

1163\_ 비공개 면접.

- 같은 광산에서 일한 또 다른 증언자는 모든 수감자들이 하루에 1톤의 할당량을 캐거나 날라야 한다고 말하였다. 어떤 사람들은 할당량을 채우기 위해 결국 하루에 20시간을 일하게 되었다. 증언자는 광산에서만 일년에 200명의 사람들이 죽었다고 추정하였다.<sup>1164</sup>

## (f) 수감 중 사망과 사망자 존엄성의 존중 결여

780 정치범 수감자들은 공민의 지위를 박탈당한 것으로 여겨졌다. 그들의 시신은 수용소 밖의 가족에게 결코 보내지지 않으며, 문화적 전통이나 사망자에 대한 존엄을 고려하지 않는다. 수용소 밖에 가족이 있는 경우에 그들은 일반적으로 사망 사실을 통보 받지 못한다.

- 안명철 씨는 사망한 수감자를 위한 지정된 매장장소나 한국식 무덤이 없다고 설명하였다. 대신, 그들은 시신을 집단 매장지의 얇은 구덩이에 가져다 놓는다:  
“시신을 겹겹이 묻기도 합니다. 우리가 땅을 파다가 뼈를 찾은 적도 있었고, [감옥] 광산이 있는 경우 이를 둘러싼 언덕이나 산이 일종의 공동묘지가 됩니다. 정치범 수감자를 위한 공동묘지와 같은 것은 없습니다 …”<sup>1165</sup>
- 강철환 씨는 그가 요덕의 15호 수용소에 있었던 10년 동안 300구 이상의 시신을 묻었다고 기억하였다.<sup>1166</sup> 수감자들은 재사용하거나 교환하기 위해 시신에서 옷을 벗기는 일을 지정받았다.<sup>1167</sup> 결국에는 수용소 관리원들은 매장지로 쓰였던 언덕을 불도저로 밀어버린 후 옥수수밭으로 바꾸었다:  
“기계가 땅을 갈아 엎자, 사람 살점이 매장지에서 다시 나타났습니다. 팔과, 다리와 아직 양말이 신겨있는 한쪽 발 등이 불도저 앞에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나는 공포에 질렸습니다. 한 친구는 구토를 하였습니다 … 경비병들은 얇은 구덩이를 파고 몇몇 수감자들을 시켜 표면에 보이는 모든 시신과 신체 일부를 그곳에 던져놓도

1164\_ TAP012.

1165\_ 서울 공청회, 2013년 8월 21일, 오후(01:18:00).

1166\_ 서울 공청회, 2013년 8월 24일, 오후.

1167\_ Kang Cholhwan, *The Aquariums of Pyongyang*, p. 101.

록 명령하였습니다.”<sup>1168</sup>

781 조사위원회가 면접을 한 전직 경비병과 수감자들은 죽음이 수용소의 삶에서 항상 존재하는 특징이라는 점에 동의하였다. 수용소의 전반적인 비밀주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수의 수용소 수감자들이 처형되고, 노동을 하던 중 죽고, 굶주림과 질병으로 죽었는지를 추정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그러나 수용소의 참상에 대해 외부에 알려진 한정된 정보로 추정해 보았을 때, 조사위원회는 최소한의 추정치를 적용하여도 수용소 제도가 확립된 55년 이상의 기간 동안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수용소에서 사망하였을 것이라는 사실을 발견하였다.<sup>1169</sup>

#### 4. 일반 감옥 체계에서의 중대한 침해

782 국가안전보위부에서 운영하는 정치범수용소 외에도 북한은 광범위한 일반 감옥 체계를 유지한다. 이러한 감옥의 존재는 일반적으로 인정되어 있으며, 형법이 법적 근거가 된다.<sup>1170</sup>

1168\_ Kang Cholhwan, *The Aquariums of Pyongyang*, p. 102.

1169\_ 정치범수용소의 끔찍한 생존조건과 20%를 넘기도 하는 일반 수용소의 연간 평균 사망률을 고려하면(하단 VI장 4.a 참조), 정치범수용소 수감자의 연평균 사망률은 보수적으로 추정해도 최소 10%일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이는 북한 일반 인구의 실제 사망률보다 10배 높은 수치이다. 세계보건기구의 최신 통계에 의하면, 일반 인구의 사망률은 1%다(1,000명당 10명). World Health Organization, “South Eastern Asia Region: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statistics summary (2002 - present)” 참조. <http://apps.who.int/gho/data/view.country.7400> 참조. 1982~1990년의 수감자 100,500명과 1991~2005년의 수감자 150,000명, 2006~2013년의 100,000명에 추정 연간평균 사망률 10%를 적용하면, 최근 31년간의 사망자 수만 395,500명이 된다. 이는 30년 동안 약 400,000명이 사망하였다는 북한인권위원회의 추정치에 부합한다. HRNK, “Founding Document,” <http://www.hrnk.org/publications/founding-document.php> 참조.

1170\_ ‘집결소’를 유일하게 처벌장소로 사용하는 것은 형법에 분명한 근거가 있지 않다.

783 일반 감옥은 대부분 인민보안부의 교화국에서 관리한다. 이들은 검찰소의 감독하에 있다. 중대한 범죄의 범죄자는 일반 감옥(‘교화소’로 불리며, 문자 그대로 “교정 및 교화 시설”로 번역된다)에서의 수감을 선고 받는다. 보다 덜 심각한 범죄는 수개월에서 2년까지 “노동단련대”에 수감되는 처벌을 받는다. 또한 청소년 범죄자들과 길에서 생활하는 아이들을 위한 다양한 종류의 교화 및 폐쇄시설들이 있다.<sup>1171</sup>

784 북한이 유엔 자유권위원회에 2001년 제출한 바에 따르면 구금시설은 세 곳에 있으며 각각 1998년 말 기준 1,153명, 1999년 말 기준 3,049명, 2000년 말 기준 1,425명을 수감하고 있었다.<sup>1172</sup> 2005년에 북한은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2005년 3월, 단 40명의 여성만이 유죄판결을 받고 수감 중이라고 보고하였다.<sup>1173</sup>

785 증언과 기타 획득한 정보를 기반으로, 조사위원회는 이러한 숫자들이 크게 축소된 것이며 북한의 감옥 체계를 완전히 설명하지 못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현재 운영 중인 교화소의 숫자와 몇몇 시설의 수감자 수에 대한 정보에 따르면 일반 감옥의 수감자들은 7만 명 이상이라는 것을 시사한다.<sup>1174</sup>

786 북한은 교화소가 수감자들을 노동을 통해 교화시키는 시설이라고 주장한다.<sup>1175</sup> 또한 북한은 관련 규제를 엄격하게 적용해 교화소에 침실, 화장실, 식당, 작업장, 교육공간, 도서관, 진료실 및 기타 시설뿐만 아니라 자연 및 전기 조명, 환

1171\_ IV장 C 참조.

1172\_ CCPR/C/SR.1944, para. 26.

1173\_ 북한이 다음의 보고서에서 고려된 이슈와 질문에 대한 답한 내용은 다음 참조,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 Working Group 33rd session, CEDAW/PSWG/2005/II/CRP.2/add.3, p. 8.

1174\_ 알려진 일반 감옥의 목록은 하단의 (a), 단기 강제노동 구금시설 수는 (b) 참조.

1175\_ Human Rights Council, *Report of the Working Group on the Universal Periodic Review: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HRC/13/13 (2009), para. 45. 이러한 원칙은 북한 형법 제31조에도 명시되어 있다.

기 및 난방 시설을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교화시설 관리원들은 특별한 훈련을 받았으며 수감자들을 고문하거나 모욕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하루의 근로시간은 8시간이며, 일의 양과 질에 따라 보수를 받는다. 수감자들은 책, 잡지, 신문을 볼 수 있고, 영화와 텔레비전을 보고 라디오를 들으며, 게임과 스포츠를 하고, 가족들의 방문과 연락을 받을 수 있다.<sup>1176</sup> 북한은 또한 여성 수감자들은 그들의 생리적인 상태에 따라 적절한 가벼운 노동이 부여된다고 주장한다.<sup>1177</sup>

787 외부 방문자에게 보여지는 모범 감옥에서는 일정 수준까지는 이러한 기준에 따르는 생활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교화소를 직접 경험한 과거 수감자 및 관리원들로부터 수집한 수십 건의 증언을 바탕으로 조사위원회가 판단한 바에 따르면, 절대 다수의 수감자들의 현실은 매우 다르다. 의도적인 굶주림, 강제노동, 비인간적인 생활환경, 고문과 즉결처형의 방식 등 설사 여러 측면에서 그 위반 수준이 조금 덜 심각하다고 할지라도, 정치범수용소의 방식과 매우 유사하다.

#### (a) 노동교화소

788 노동교화소의 많은 수감자들은 강력범죄 및 경제범죄 등 일반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다. 범죄에 비해 과도한 형기의 노동교화형 판결이 내려지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가혹한 판결 경향은 정치적으로 중요한 기념일에 부분사면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일부 상쇄된다. 이를 통해 많은 수감자들은 조기 출소를 하게 되고, 정부의 관대함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된다.

1176\_ CCPR/C/SR.1944, para. 28.

1177\_ 북한이 다음의 보고서에서 고려된 이슈와 질문에 대한 답한 내용은 다음 참조,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 Working Group 33rd session, CEDAW/PSWG/2005/II/CRP.2/add.3, p. 7.

789 교화소 수감자들의 상당수는 자신의 권리 행사를 이유로 수감되었다. 허가 받지 않고 국경을 건너 중국으로 가려고 한 사람들은 특히 출신성분이 나쁘거나 재범자인 경우 교화소에 수감될 수 있다. 기독교가 북한에 퍼지자 출신성분이 좋은 경우에도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이 노동교화형을 선고받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교회 지도자, 활발히 활동하는 선교사 및 다른 주목 받는 범죄자들은 계속 정치범수용소로 보내진다.<sup>1178</sup>

### (i) 교화소의 규모와 위치

790 교화소의 이름, 위치, 설립시기 등은 상대적으로 잘 알려져 있다. 정치범수용소와 마찬가지로 교화소에는 번호가 부여되어 있다:

- 함경북도 전거리 12호 노동교화소는 가장 대규모이며, 기록이 가장 풍부한 일반 감옥이다. 수감자의 많은 수는 가까운 중국에서 강제송환되었거나 국경 주변의 기독교 교회와 접촉을 한 사람들이다. 교화소에는 2009년부터 별도의 건물에 수용되어 있는 1,000명의 여성 수감자를 포함해 약 3,000~4,000명의 수감자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12호 교화소는 구리광산과 벌목회사, 농장 등을 운영한다.
- 평안남도 개천시의 1호 노동교화소는 약 2,000명의 남녀 수감자를 수감하고 있다. 이 교화소는 의류와 섬유를 생산하는 공장을 소유하며, 생산품의 일부는 인근 국가들로 수출된다.
- 4호 노동교화소는 평양 거주민들과 일부 군인을 위한 구금시설의 역할을 주로 담당한다. 약 4,000명이 수용된 주요 시설은 평안남도 강동군 삼등리에 위치해 있다. 교화소는 평양에 몇몇 기지들이 있다. 형산기지는 때때로 외부 방문자들에게 보이기 위한 모범 교화소의 역할을 한다. 그러나 나머지 교화소 단지는 과밀수용 상태이다. 2008년에 총 단지에는 수용능력의 4배인 약 12,000명의 남녀 수감자들이 수용되어 있었다. 이 교화소는 탄광과 여러 공장들을 운영한다.

1178\_ 상단 IV장 A 참조.

- 황해북도 사리원시의 6호 노동교화소는 세 구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도림에 있는 한 구역은 외국 방문자에게 보여진다. 이 교화소에는 강제로 농사일과 의류와 신발의 생산에 동원되는 3,000~4,000명의 수감자들이 있다.
- 함경남도 함흥시의 9호 노동교화소는 이미 일제시대에 건립되었다. 이 ‘교화소’는 남자 교화소(수감자 약 1,500명)와 여자 교화소(수감자 약 50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교화소는 탄광과 함께 재봉틀과 가축을 생산한다.
- 평안남도 증산의 11호 노동교화소는 산악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이 교화소는 작은 거주 건물로 구성되어 있고 농업, 가축, 소금 생산 등의 경제활동에 집중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3,000~5,000명의 남녀수감자가 수감되어 있다.
- 함경남도 영광군 오로 22호 노동교화소는 2006년 노동단련대에서 정규 일반 감옥으로 변경된, 보다 작은 규모의 시설이다. 대부분의 남녀 수감자들은 농장에서 강제 노동을 한다.<sup>1179</sup>

**791** 다음의 교화소는 존재가 보고되었으나 정보가 상대적으로 적다:

- 강원도 원산시 척산리에 위치한 88호 노동교화소에는 약 2,000명의 수감자들이 수용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07년 이후 이 교화소는 여성 수감자들도 수용한다.
- 평안북도 동림군의 2호 노동교화소
- 평안북도 신의주의 3호 노동교화소
- 자강도 강계시의 7호 노동교화소
- 평안북도 천마군의 천마 노동교화소
- 강원도 천내군의 용담 노동교화소<sup>1180</sup>

**792** 조사위원회는 이 외에 외부세계에 알려지지 않은 다른 교화소가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

1179\_ 조사위원회는 과거 수감자들의 증언과 북한이 인정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러한 교화소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었다. 교화소에 대한 추가 정보는 NKDB, *Political Prison Camps in North Korea Today*, pp. 59 참조. 알려진 교화소 목록은 David Hawk, *The Hidden Gulag*, pp. 19, 83 ff 참조.

1180\_ NKDB, *Political Prison Camps in North Korea Today*, pp. 59 ff.



## (ii) 수감 전 불공정한 재판

793 보안원들이 때때로 재판 없이 노동교화소에 수감시키는 사례들이 보고되어 있다. 일반 감옥의 대부분의 수감자들은 재판에 회부된 후, 일정 노동교화형의 판결을 선고 받은 사람들이다. 그러나 이러한 재판은 가장 기본적인 공정한 재판이 보장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수감자들은 임의적인 구금의 피해자로 여겨진다. 기소된 자가 당연히 유죄인 것으로 여겨진다는 점에서 사법제도가 독립적거나 공정하지 못하다는 사실이 사법절차에서 드러났다고 볼 수 있다.<sup>1181</sup>

794 북한 헌법 제164조는 피소자의 변호권이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는 재판이 실질적인 증거 조사 과정을 생략하는 경우가 많다. 피소자는 그들의 죄를 자백하고 뉘우칠 것을 요구 받는다.

795 북한의 최고재판소에서 근무하는 한 고위 법일꾼은 북한을 방문한 외국 대사와 이야기하던 중, 북한에서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유죄추정의 경향에 대해 다음과 같이 요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분의 피소자는 기소 이전에 경찰 심문을 통해 범죄가 이미 드러난 사람입니다. 우리는 법원에 오게 된 사람을 무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sup>1182</sup>

796 형사소송법은 피고측 변호인 선임 권리를 보장하며, 이들은 대부분 국선이다. 그러나 조사위원회에서 증언한 많은 증언자들은 국선 피고측 변호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거나, 판사와 검사에 동조해 피고의 잘못을 심하게 꾸짖었다고 증언하였

1181\_ 법제도에 독립성과 공정성이 부족하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III장 E 참조.

1182\_ United Kingdom All Party Parliamentary Group for North Korea, “Building Bridges not Walls: The Case for Constructive, Critical Engagement with North Korea,” 2010년 10월, p. 23. <http://www.jubileecampaign.org/BuildBridgesNotWalls.pdf> 참조.

다. 최선의 경우 변호인이 관대한 처분을 요청하며, 이는 피고가 성분이 좋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797** 북한 헌법은 재판을 공개하도록 명시한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271조는 “나쁜 영향이 있을 경우”에 재판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다양한 예외를 허용한다. 실제에서는 당국자들에게 의심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하에, 공식적으로 요청 받을 때를 제외하고는 거의 아무도 감히 재판을 방청하려고 하지 않는다.

- 김광일 씨는 함경북도 회령시의 인민재판소에서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았다. 재판은 재판소의 작은 방에서 열렸으며, 변호인 한 명과 두 명의 인민참심원이 참가하였다. 판사는 그가 유죄인지 물으려고 하지 않았다: “북한에서는 결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판사는 [유죄인지 아닌지] 묻지 않으며, 결정만을 내릴 뿐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 사람은 몇 년형, 저 사람은 몇 년형의 선고를 내릴 뿐입니다. 그리고 판사는 절대 유죄인지 아닌지 묻지 않습니다.”<sup>1183</sup> 김씨는 변호인과 재판 전에 접견할 기회가 전혀 없었다. 또한 변호인은 재판 진행 중 그에게 중요한 질문을 하지 않았으며, 그를 변호하려는 시도를 하지도 않았다. 대신 그는 김씨에게 집안에 조종사나 군장교가 있으면 보다 관대한 판결을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며 그들에 대해서 물었다.
- 김혁 씨는 그가 불법적으로 중국의 국경을 넘었다는 이유로 3년형 선고를 받은 재판을 묘사하였다. 김씨는 보안서에서 그가 “비공식 재판”이라고 지칭한 재판을 받았다. 그곳에는 판사, 검사, 변호인이 있었다. 변호인은 김씨와 협의하거나 중요한 의사표현을 하지 않았다. 재판이 거의 끝날 무렵 그는 김씨가 어리고 고아이기 때문에 관대한 처분을 바란다고 판사에게 말하였다.<sup>1184</sup>
- 노동교화형 3년을 선고받고 11호 노동교화소에 수감된 증언자는 재판 내내 머리를 숙이고 있어야 했으며, 그녀에게 읽어주는 범죄혐의에 대해 ‘네’라고 답하는 것만이 허용되었다.<sup>1185</sup>

1183\_ 서울 공청회, 2013년 8월 24일, 오전(00:23:48).

1184\_ 서울 공청회, 2013년 8월 22일, 오전.

1185\_ TBG011.

- 또 다른 사람은 심문 중 검사를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노동교화형 9년을 선고받고 12호 노동교화소에 수감되었다. 재판 중 그의 변호인은 그의 죄에 대해 심하게 비판하였다.<sup>1186</sup>

798 앞서 언급한 대한변호사협회가 실시한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2012년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재판을 거친 응답자의 단 19%만이 재판 이전에 그들의 변호인을 만날 수 있었다. 그 중 단 5%의 응답자만이 변호인이 도움이 되었다고 답하였고, 57%의 재판에서만 검사와 변호인이 모두 참석했었다. 81%의 사례에서 법원은 피고에게 유리한 증인을 소환하지 않았다. 54%만이 북한 형사소송법 제330조의 최후변론을 하도록 허용되었다. 거의 절반에 가까운 응답자들(46%)이 비공개 재판을 받았다.<sup>1187</sup>

### (iii) 비인도적 구금 환경

799 북한 형법 제30조에 따르면 교화소 수감자들은 공민권 일부를 제한받는다. 그러나 정치범수용소 수감자들과 비교해, 일반 감옥이 검찰소의 감독하에 있다는 점에서 일부 보호장치가 있다. 또한 수감자들은 가족들이 수감자를 면회하여 생존을 위해 필요한 음식과 다른 생필품을 건네기 위해서 당국자들에게 뇌물을 주어야 하는 하지만 한 달에 한 번 가족 방문을 받을 수 있다.

800 조사위원회는 북한의 교화소가 일반적으로 심각하게 과밀 수용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화장실은 공동으로 사용되며, 거의 청소하지 않는다. 위생시설은 없으며, 수감자들은 비정기적으로만 씻을 수 있다. 비누나 다른 위생용품을 전혀 제

1186\_ TJH009.

1187\_ KBA, *2012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3), pp. 210 ff. 참조.

공받지 못할 때도 있다. 많은 교화소는 북한의 추운 겨울에도 난방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 수감자들은 자신이 입을 옷과 담요를 가져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 빈대와 다른 해충이 감염된 빨지 않은 헌 옷을 제공받는다.

- 김광일 씨는 전거리 12호 노동교화소에서 수용능력이 14~17명 정도인 감방에 60명 내지 70명이 수감되어 있었다고 묘사하였다. 밤에는 교대로 바닥에 누웠고 감방에 있는 나머지 사람들은 서 있었다. 이 때문에 수감자들은 극도로 피곤해진다.<sup>1188</sup> 2011년까지 같은 교화소에 수감되었던 또 다른 증언자는 가족들에게서 담요를 받지 못한 수감자는 자신의 옷으로 담요를 만들어야 하였다고 말하였다. 감방에는 벌레와 이가 많아 전염병이 쉽게 퍼졌다.<sup>1189</sup>

- 12호 노동교화소의 또 다른 과거 수감자에 따르면 새로 건축된 여성 수용동도 똑같이 과밀수용 상태였다고 한다. 200명 수용이 가능한 시설에는 1,200명의 여성이 수용되어 있었다. 위생상태는 참담하였고, 이와 바퀴벌레가 들끓었다. 겨울에도 여성 수감자들은 남자 경비병의 감시하에 강에서만 씻을 수 있었다. 가족들이 제공하는 수건과 생리대를 빨아서 재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sup>1190</sup>

증산의 11호 노동교화소의 과거 여성 수감자는 여성 수용동에 있는 약 40㎡의 감방에 40명에서 50명의 수감자가 있었다고 설명하였다. 사람들은 똑바로 눕지 못했으며, 자리를 차지하는 것 때문에 싸움이 잦았다. 겨울에 감방은 극도로 추웠다. 수감자들은 한 달에 한 번만 씻을 수 있었고, 모든 사람에게 이가 있었다. 그녀가 수감된 감방에서 매달 최소 두 명이 죽었다.<sup>1191</sup>

**801** 정치범수용소와 마찬가지로, 일반 감옥에서도 수감자들은 강제노동에 동원되어 광산, 공장, 농장 및 벌목장을 운영한다. 이 사업에서 나오는 수익은 교화소에 재투입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수감자들은 제공받는 것 이상의 양의 다양한 음식을 생산한다. 국제법이 정당하게 기소된 범죄자를 교화하기 위한 모든 종류의 비

1188\_ 서울 공청회, 2013년 8월 24일, 오전.

1189\_ TAP016.

1190\_ TBG013.

1191\_ TBG010.

자발적 노동을 불법으로 규정하지는 않으나, 노동교화소 수감자들에게 강제되는 종류의 노동은 대부분의 경우 국제기준에서 정하는 불법적인 강제노동의 형태이다.<sup>1192</sup> 수감자들은 대부분 정식 법원에 정당하게 기소되지 않고, 공평성을 담보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규칙도 따르지 않는 재판에서 노동교화형을 선고 받는다. 수감자에 대한 강제노동은 체계적으로 김씨 일가의 성과와 가르침에 대한 강제 일일 교화시간과 묶여 있다는 점에서 정치적 강압의 일종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그러한 점에서 조사위원회는 교화소 체계가 인권을 보장하면서 수감자들을 교화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이를 억누르면서 정치체계와 지도자에 대한 철저한 복종을 재정립하려는 목적을 가진다는 결론을 내렸다.

802 이와 같은 결론은 노동환경 또한 너무 비인간적이어서 어떠한 정당한 교화의 목적을 지닌다고 말할 수 없다는 점을 통해서도 재확인된다. 수감자들은 굶주림을 야기하는 수준의 식량 배급을 받으면서 일주일 내내 보수 없이 하루에 9~12시간을 강제로 일한다. 일반적으로 기계나 동물을 사용하는 노동(쟁기질이나 석탄 채취)을 복한 교화소에서는 기초적인 도구를 이용해서 사람이 해야 한다. 수감자가 일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거나 사고로 교화소 재산을 손상시킬 경우, 고문과 구타, 독방 감금, 식량 배급의 추가 삭감 등의 비인도적인 처벌을 받는다. 노동 안전이 거의 고려되지 않기 때문에 치명적인 노동재해가 매우 빈번하게 일어난다.

- 과거 수감경험이 있는 한 증언자는 평안남도 강동시의 4호 노동교화소의 석회암 채취장과 금광에서 일하였다. 수감자들은 피로로 너무 지치고 기진맥진해서 노동재해

1192\_ 국제노동기구(ILO) 강제노동에 관한 협약 제29호와 제10호의 해당 기준에 적용하기 위해, 국제노동기구는 다음과 같은 종류의 비자발적 수감 중 노동을 강제노동으로 간주한다: 법정에서 정당하게 기소되지 않은 수감자의 비자발적 노동; 사적 사업을 위한 수감자의 비자발적 노동; 정치적 강압, 교육의 목적 또는 정치적 견해를 견지하거나 표현한 것을 처벌하기 위한 모든 비자발적 노동; 경제발전을 위한 노동력 동원; 노동규율; 파업에 참가한 것에 대한 처벌; 인종적, 사회적, 민족적, 종교적 차별. ILO, "Combating Forced Labour: A Handbook for Employers and Business," 2008, pp. 10와 15참조.

가 매우 빈번하였다. 증언자는 한 번은 광산 사고로 발에 복합골절을 입었다. 마취없이 피부를 꿰맸고 당일에 탄광으로 돌아가야 하였다. 그의 작업반장이 그에게 덜 힘든 노동을 배정하지 않았다면 그는 살아남지 못하였을 것이다.

그는 석회암 파쇄기에 손이나 옷이 걸려 압사한 여러 노동자들을 목격하였다. 공기에 먼지가 너무 많아서 앞이 잘 보이지 않았다. 그들이 비명소리만 듣고 기계로 달려갔을 때 파쇄기에 매달려 있는 난도질 된 시신이 있었다.<sup>1193</sup> 전거리의 12호 노동교화소 구리광산에서 일한 다른 증언자도 매우 유사한 치명적인 압사사고에 관계가 있었다.<sup>1194</sup>

- 오로의 22호 노동교화소에 수감된 경험이 있는 한 증언자는 적절한 도구 없이 농장에서 일해야 하였으며, 맨손으로 인분 비료를 뿌려야 했다.<sup>1195</sup>

**803** 2005년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하면서, 북한은 여성 수감자들은 보수를 받으면서 의류, 신발 가방과 같은 제품을 만드는 작업반에서만 일한다고 주장하였다.<sup>1196</sup> 조사위원회는 교화소의 광산에서 일하는 여성에 대한 정보는 얻지 못했으나, 여성 수감자들로부터 보수 없이 산림과 농장의 중노동에 강제로 동원되었다는 수많은 믿을만한 증언을 얻었다.

- 전거리 12호 노동교화소에 수감되었던 한 증언자는 매일 아침 5시에 기상해야 했다. 그녀는 매일 저녁 10시까지 장작을 모았다. 너무 일이 느린 수감자는 구타당하였다. 수감자들은 한옷만 제공받았으며 맞지 않는 신발 때문에 제대로 걷기가 힘들었다. 일터로 걸어가면서 작업반의 다른 사람들과 속도를 맞추지 못하면, 경비병은 그녀의 목 주위에 밧줄을 감아서 끌고 갔다.<sup>1197</sup>
- 12호 노동교화소에 2011년까지 구금되었던 한 여성 수감자는 농장일에 강제동원되었다. 그러나 농장에서 생산된 것들은 관리원들 몫이었다. 배급받은 식사량이 너무

1193\_ TSH035.

1194\_ TAP016.

1195\_ TBG018.

1196\_ CEDAW/PSWG/2005/II/CRP.2/add.3, p. 8.

1197\_ TBG003.

적어서 그녀는 살기위해 여러 종류의 풀, 야생버섯, 나무껍질을 먹었다. 그녀는 다른 수감자들이 음식을 훔치다 구타당하는 것을 많이 보았다.<sup>1198</sup>

- 12호 노동교화소에 2010년 말까지 수감되었던 다른 여성도 유사한 농장 강제노동을 하였다. 계호원들은 배고픈 수감자가 재배하는 옥수수를 하나도 가져가지 못하도록 항상 감시하였다. 여성 수감자들이 저녁 7시에 일을 마친 후에는 김정일과 김일성의 위대함을 강조하는 긴 교화시간에 앉아있어야 하였다.<sup>1199</sup>

**804** 대부분의 신입 수감자들은 심문 구금시설나 집결소에서 수주에서 수개월 동안 굶주림을 견딘 이후 일반 감옥에 수감되게 된다. 노동교화소에서도 그들은 계속 굶주림을 견뎌야 한다. 교화소에서 배급되는 식사는 수감자에게 할당된 강제노동의 종류나 수감자의 죄에 따라 차이가 있다. 수감자들은 가혹한 강제노동에 동원되지만, 평균적으로 하루에 거친 옥수수죽이나 콩밥을 300g 배급 받을 뿐이다. 이 양은 유엔이 계산한 북한의 성인 최소 열량섭취 권장량의 매우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sup>1200</sup> 따라서 추가 식량공급원을 찾지 못한 사람들은 쉽게 아사 상태에 처하게 된다. 교화소의 많은 수감자들은 월별 면회에 가족들이 가져오는 음식 덕에 생존할 수 있다. 다른 사람들은 설치류나 다른 해충을 잡아 먹고, 풀과 야생초를 먹거나 동물 사료를 빼들려서 먹는다.

**805** 전직 관리원들은 굶주림을 야기하는 수준의 식량 배급을 통해 고의로 수감자들을 쇠약하게 해 통제하기 쉽게 만든다고 확인해 주었다. 이는 또한 수감자들이 강제노동으로 생산한 추가적 식량과 다른 자원들이 그들에게 적절한 식량과 다른 생필품을 제공하는 목적으로 쓰이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는 사실로 증명될 수 있다.

1198\_ TLC023.

1199\_ TSH018.

1200\_ FAO는 북한의 최소 열량섭취 권장량을 하루 1870칼로리로 설정하였다. 관련 정보는 [http://www.fao.org/fileadmin/templates/ess/documents/food\\_security\\_statistics/MinimumDietaryEnergyRequirement\\_en.xls](http://www.fao.org/fileadmin/templates/ess/documents/food_security_statistics/MinimumDietaryEnergyRequirement_en.xls) 참조. 좋은 품질의 옥수수죽 100g은 300g의 열량을 공급한다. 같은 양의 콩밥은 350칼로리 정도의 열량을 공급한다.

- 전거리 12호 노동교화소에 수감된 경험이 있는 김광일 씨는 매끼 80g의 열악한 수준의 음식을 배급받아서 수감자들이 굶주렸다고 증언하였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매우 쇠약해집니다. 그들은 매끼 80g 미만의 음식을 배급받으며, 무언가 잘못을 저질렀거나, 미끄러지거나 하면 그보다 더 적은 양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썩은 오이같이 돼지도 먹지 않을 것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삶은 썩은 오이를 먹으라고 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먹기를 거부하면 처벌을 받았습니다. 어떨 때는 50g 미만의 식사를 주는 벌을 받았습니다.”<sup>1201</sup>
- 김씨는 또한 수감자들이 교화소 안에 있는 뱀을 잡아서 먹을 정도로 필사적이었다고 덧붙였다.
- 12호 노동교화소에 수감된 경험이 있는 김혁 씨는 대부분의 수감자들이 가족들이 가져오는 음식 덕에 겨우 살았다고 진술하였다. 어떤 수감자들은 가족들을 헛되게 기다리다가 굶어 죽기도 하였다. 김혁 씨는 고아였기 때문에 외부의 도움에 기댈 수 없었다:  
 “나는 혼자 살아남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무거나 먹었고, 도마뱀, 뱀, 쥐, 파충류든 뭐든 ... 봄에는 풀을 먹었는데, 잘못 먹으면 독이 올라 몸이 붓고 부풀어올랐습니다. 나는 여러 종류의 풀과 뿌리를 먹었습니다.”<sup>1202</sup>
- 12호 노동교화소의 또 다른 수감 경험자에 따르면 수감자들은 작은 감자 다섯 개를 아침으로 받았고, 옥수수죽 작은 컵과 배추잎이 떠 있는 소금국을 점심과 저녁으로 받았다. 모든 사람들은 극도로 굶주렸고, 급격하게 체중이 줄었다. 음식을 가져다 줄 가족이 없는 사람은 곧 죽었다. 한 번은 한 수감자가 너무 배가 고파서 가족이 보내준 음식을 한 번에 다 먹었다. 그는 음식을 너무 많이 먹는 것에 익숙하지 않아서 구토하였다. 그는 나중에 배가 고프게 될 때를 대비해 토한 것을 주머니에 넣어 담았다. 또 다른 경우에 증언자의 작업반에서는 들판에 종자로 뿌릴 씨를 작은 단지에 담아 두었다. 굶주린 수감자들이 씨앗을 먹을 것을 우려해 계호원들은 그것을 오줌과 말똥에 담가두었다. 그러나 수감자들은 계속 그것을 먹으려고 하였다. 그래서 계호원들은 수감자들이 수인번호를 계속 부르도록 함으로써 아무도 씨를 씹고 삼킬 시간이 없게 하였다. 수감자가 번호를 부르지 못하면 계호원들은 호두 크기의 돌을 수감자 입에 넣어 아무것도 먹지 못하게 하였다.<sup>1203</sup>

1201\_ 서울 공청회, 2013년 8월 24일, 오전(00:05:10).

1202\_ 서울 공청회, 2013년 8월 22일, 오전(00:37:42).

1203\_ TJH009.



- 함흥의 9호 노동교화소의 또 다른 수감 경험자의 증언에 따르면 수감자들은 극심한 영양실조에 시달려 마른 가지에 큰 머리가 달린 것처럼 보인다고 하였다. 수감자들은 살기 위해 쥐를 잡으려고 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매일 아침 8시에서 저녁 늦게까지 날씨에 관계 없이 밖에서 강제노동을 하느라 예전처럼 쥐를 잡을 만큼 빠르지 못하였다. 출신성분이 나은 어떤 수감자들은 계호원에게 뇌물을 바쳐 배급을 잘 받고 쉬운 강제노동에 동원되었다. 그러한 수감자들은 “취식 계급”(dining class)이라는 별명으로 불렸다.<sup>1204</sup>

#### (iv) 고문과 처형

**806** 일반 감옥의 수감자들은 엄격한 규율의 적용을 받으며 계호원에게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한다. 어떠한 명령이라도 복종하지 않으면, 배급 감축부터 불면, 고된 노동으로 재배치, 구타, 작은 독방 구금 등의 다양한 처벌을 받는다. 다른 노동교화소 수감 경험자는 독방구금은 피해자가 눕지도 서지도 못하는 좁은 방에 수감된다는 뜻이라고 설명하였다. 독방구금 기간 동안에는 식량 배급도 하루에 옥수수죽 100g으로 감축된다.

**807** 계호원들은 가끔 수감자들을 그 자리에서 처벌한다. 계호원이나 교화소장들이 자행하는 아주 심각한 육체적 학대도 어떠한 책임규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범죄 때문에 수감된 수감자들은 종종 특별한 처벌을 받는다.

- 전거리 12호 노동교화소 수감 경험자 김광일 씨는 계호원들이 수감자들이 자는 종코를 고는 것과 같은 사소한 이유로 언제든지 수감자들을 구타하고 고문할 권리가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계호원들은 또한 다른 수감자가 밀고한 잘못을 이유로 수감자들을 가장 가혹한 강제노동에 배치하거나 배급을 감축할 수 있었다.<sup>1205</sup>

1204\_ TSH019.

1205\_ 서울 공청회, 2013년 8월 24일, 오전.

- 기독교를 믿었다는 이유로 개천 1호 노동교화소에 수감되었던 증언자는 7년 간의 구금기간 동안 독방에 10차례 갇혔다. 그녀는 교화소 화장실에서 배설물을 치우는 수레를 끄는 일을 배정받았다. 계호원들은 그녀를 모욕하고 훈육하기 위해 수차례에 걸쳐 쏟아진 배설물들을 활게 하였다.<sup>1206</sup>
- 전거리 12호 노동교화소의 다른 수감 경험자는 옥수수 줄기에 흙을 발라 폭우에서 보호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수감자들이 그 기회를 이용해 옥수수를 먹으려고 하자, 계호원들은 그들을 잡아 하루 종일 옥수수 줄기를 입에 물고 있게 하였다. 줄기를 떨어뜨린 수감자들은 심하게 구타당하였다.<sup>1207</sup>
- 비법 월경과 밀수를 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어 12호 노동교화소에 수감되었던 또 다른 수감 경험자는 허락을 받지 않고 동료 수감자에게 말을 걸었다. 계호원은 금속 봉(metal rod)을 그의 입에 박아 넣어 여러 개의 치아를 잃게 되었다.<sup>1208</sup>
- 12호 노동교화소의 또 다른 수감 경험자는 교화소 관리의 눈을 절대 쳐다보면 안된다는 규칙을 어겼다. 그의 증언에 따르면 그는 피를 흘리고 팔이 부러질 때까지 몽둥이로 구타당하고 견어차였다.<sup>1209</sup>

**808** 북한의 교화소는 대부분 철조망과 치명적인 전류가 흐르는 전기울타리가 높은 벽 위에 설치되어 있다. 최근에는 교화소 내부를 감시하기 위해 감시카메라(CCTV)가 설치되었다. 계호원들은 탈출하는 수감자들을 총살할 권한이 있다. 생포된 자들은 극도로 가혹한 처벌을 받는다. 몇 년 전까지 탈출을 시도한 수감자들은 정기적으로 즉결처형 당하였다. 이와 같은 처형이 현재에도 지속되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 12호 노동교화소의 수감 경험자인 김혁 씨는 탈출 시도를 하던 수감자의 처형을 목격하였다. 김씨는 산중에서 작업반과 떨어져 있을 기회가 있었을 때 겨우 처형을 면하였다. 그는 탈출시도에 대한 심문을 받았고, 계호원들은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그

---

1206\_ TBG014.

1207\_ TJH009.

1208\_ TJH010.

1209\_ TAP016.

의 머리를 총으로 때렸다. 그가 단지 길을 잃었을 뿐이라는 사실을 겨우 설득시킬 수 있었다.<sup>1210</sup>

- 12호 노동교화소 수감 경험자는 1997년 탈출시도를 한 사람의 처형을 강제로 지켜 봐야 하였다. 처형이 끝난 이후, 교화소장은 그의 운전수를 시켜 죽은 수감자의 목에 밧줄을 감으라고 하였고 차의 뒤쪽에 줄의 끝을 묶었다. 차는 뒤에 시체를 매단 채 교화소 안뜰을 네 바퀴 돌았다. 모든 수감자들은 이 끔찍한 광경을 보아야 하였고, 이는 탈출을 시도하려는 자에게 경고를 하기 위한 것이었다.
- 2004년에서 2007년까지 증산의 11호 노동교화소에 수감되었던 또 다른 증언자는 탈출 시도를 하다가 붙잡힌 자를 즉결처형하는 것이 교화소 정책이라고 말하였다. 증언자는 이와 같은 수감자들에 대한 처형을 여러 건 목격하였다.<sup>1211</sup>
- 2011년까지 12호 노동교화소에 수감되었던 또 다른 증언자에 따르면 탈출을 시도 하려던 수감자가 그 과정에서 총살당하였다고 한다. 증언자는 생포된 수감자가 즉결 처형을 당하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 그렇게 잡힌 수감자들은 곧 죽게 될 가능성이 높은 가혹한 작업으로 재배치되었다. 각각의 수감자들은 다른 수감자와 짝을 이루어 서로를 감시하도록 하였다. 한 수감자가 탈출 시도를 한 경우, 다른 수감자도 처벌을 받았다.<sup>1212</sup>

#### (v) 성폭행과 강제낙태

809 여성 수감자의 수는 점점 늘고 있으며, 이는 특히 중국으로 탈북했다가 송환된 사람 중 많은 수가 여성이기 때문이다. 남성과 여성 수감자들은 일반적으로 국제기준에 맞게 분리 수용된다. 그러나 남성 계호원들이 여성 수감자를 관리하도록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교화소 관리원들은 계호원과 수감자 사이의 성적 접촉을 용인하지 않으나, 계호원과 수감자들 사이의 권력관계가 계호원들이 처벌을 받지 않고 수감자들을 학대하거나 성폭행하기 용이하게 만든다. 음식물이나 기타 교화소에서

1210\_ 비공개 면접.

1211\_ TBG006.

1212\_ TAP016.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용품들에 대한 대가로 계호원 등이 성행위를 요구하는 것과 같이, 교화소의 강압적인 상황을 이용하는 사례도 성폭행에 포함된다.<sup>1213</sup> 많은 피해자들이 성폭행과 관련된 사회적 낙인을 두려워해 성폭행당한 사실을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북한의 일반 감옥 체계에서 일어난 성폭행 관련 현황을 알아내는 것은 매우 어렵다.

- 김혁 씨는 12호 노동교화소에서 병원 책임자가 여성을 성폭행하는 것을 목격하였다. 또 다른 경우에 그는 계호원이 여성을 성폭행하는 것을 보았다.<sup>1214</sup>

- 같은 교화소에 수감되었던 여성 수감자에 따르면, 계호원들은 그들이 가슴을 만질 수 있도록 여자 수감자 중 예쁜 사람을 철창 옆에 앉혔다. 같은 증언자는 또한 계호원과 성적 접촉에 합의한 몇몇 여성들이 조금 나은 수준의 배급을 받는 등 생존을 용이하게 하는 다른 이득을 얻었다는 것을 알았다. 한 번은 한 여성 수감자가 그와 같은 성적 접촉에 대해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였다. 계호원들은 그녀를 밖에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눈으로 덮힌 채 무릎꿇고 앉도록 하여 그녀가 기괴한 눈사람처럼 보이게 하였다.<sup>1215</sup>

과거에는 임신한 채 교화소에 들어오거나 교화소에서 임신한 수감자들은 임신 말기에도 강제낙태를 당하였다. 일부 교화소에서는 여성 수감자들에게 피검사를 해 임신 여부를 체계적으로 확인하였다. 최근에는 교화소에서 나가 아이를 낳고 가족들이 아이를 돌보게 한 후 혼자 교화소로 돌아 오는 것이 허용되는 사례에 대한 보고가 늘었다.<sup>1216</sup>

- 9호 노동교화소의 관리원들은 의료보조로 일한 경력이 있는 증언자에게 임신 3개월 중인 동료 수감자에게 구충제를 투여하도록 강요해 낙태를 유발하게 하였다. 약이 원하는 효과를 내지 않자, 아편 혼합물을 마시게 해 아이를 낙태시켰다. 낙태된 태아는 교화소에서 키우는 돼지들에게 먹였다.<sup>1217</sup>

1213\_ 강압적인 환경을 이용해 성적 접촉을 하는 것도 성폭행이 된다. IV장 E.3(d)의 참고자료 참조.

1214\_ 김씨의 서울 공청회 이후 추가 비공개 면접에서 제공된 정보.

1215\_ TBG003.

1216\_ NKDB, *Political Prison Camps in North Korea Today*, p. 436.

1217\_ TSH019.

- 또 다른 증언자는 2004년에서 2011년까지 12호 노동교화소에서 동료 수감자가 강제로 낙태당하는 사례에 관여하였다.<sup>1218</sup>

#### (vi) 의료시설 결여, 수감 중 사망과 사망자 존엄성의 존중 결여

810 조사위원회는 북한의 노동교화소에서 매년 수천 명의 사람이 죽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들은 의도적으로 야기된 굶주림, 질병, 사형과 노동재해와 구타로 인한 부상으로 죽는다.

811 굶주림과 그와 관련된 질병이 교화소의 주요 사망 원인이다. 많은 교화소에서, 당국자들은 정기적으로 수감자들의 굶주림 정도를 측정해 누가 곧 죽을 것인지를 예상하도록 한다. 이 방식을 통해 방법론적으로 교화소의 굶주림을 기록하지만, 그러한 굶주림을 야기하는 배경과 관련된 정책을 당국자들이 개선하지 않는다. 대신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라고 판단되는 사람은 작업반에서 제외시킨다. 굶주림 때문에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 있는 사람이 죽지 않게 하기 위한 어떠한 의미 있는 의료조치도 하지 않는다. 병의 말기라고 판단되는 수감자를 석방해 가족들에게 인계하는 경우도 있다.

- 증언자는 함흥의 9호 노동교화소 수감 중 “의료 견습생”으로 일하도록 배치되었다. 이러한 역할 때문에 그는 1999년과 2000년 겨울에 6개월 동안 480명에서 1,200명의 수감자들이 사망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의료진들은 수감자들의 굶주림의 정도를 가능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수감자들의 엉덩이 사이의 공간을 재었다. 목숨이 위태로운 상태로 분류된 사람은 강제노동소에서 데리고 나가 임종방으로 보내졌다. 그들은 평소와 같은 음식을 배급받았고, 약이나 기타 아사하지 않게 하기 위한 아무런 치료도 받지 못하였다. 그들을 돕기 위한 일을 지정받은 수감자들은 스스로 너무 굶주렸기 때문에, 죽어가는 수감자들의 음식을 빼앗으려 하기도 하였다. 죽은 사람

1218\_ TAP016.

들의 시신은 쥐가 시체를 쓸기도 하는 저장소에 모아졌다가, 교화소 용광로에서 한 꺼번에 불태웠다.<sup>1219</sup>

- 김광일 씨는 곧 아사할 사람을 찾아내기 위해 굶주림의 정도를 측정하는 것과 비슷한 일이 12호 노동교화소에서도 이루어졌다고 말하였다:  
 “모든 사람이 영양실조에 걸려 있었습니다. 감옥에서는 옷을 벗긴 다음 엉덩이의 모습을 보고 몸이 허약한지 아닌지를 확인하였습니다. 엉덩이가 벌어지고 처져있으면, 계호원들은 주먹이 엉덩이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지 봅니다. 그것으로 수감자들이 허약한지 아닌지를 판단하였습니다. (사진을 가리키며)서 있는 사람들은 ‘1급 허약’, 그 옆으로 서 있는 사람은 ‘2급’, 세 번째 사람은 ‘3급’을 받았습니다. 그들과 같이 허약하다고 판단되면, 결코 교화소에서 살아서 나갈 수 없습니다.”<sup>1220</sup>
- 조사위원회는 또한 전거리 12호 노동교화소에서 의료 견습생으로 일한 사람의 증언을 입수했다. 그가 교화소에서 보낸 12개월 동안 모든 사람은 영양실조에 시달렸고, 그가 아는 사망건만 178건에 달했다. 그는 밤에 사람을 깨워 그들이 깨어나는지를 확인해야 하였다. 죽기 직전의 수감자들은 집에서 죽을 수 있도록 가족에게 돌려보내졌다.<sup>1221</sup>

**812** 많은 수의 쇠약한 수감자들은 감염질환으로 죽는다. 과밀 수용된 감방의 위생상태는 매우 열악해서 감염질환이 번지기 쉬운 환경이 된다. 정기적으로 전염병이 교화소를 휩쓸어 황폐하게 하였다. 교화소에는 일반적으로 군의관과 그를 돕는 의료교육을 받지 못한 수감자들이 있다. 그러나 의료시설에는 효과적인 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과 약이 부족하기 때문에, 가족들이 제공한 약이 없으면 심각한 병을 얻은 수감자들이 살아남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813** 교화소에서 죽은 사람의 시신은 결코 가족들에게 돌려주지 않는다. 그 대신 시신은 죽은 자의 존엄성이 무시된 채 대규모 무덤에 던져지거나 집단적으로 불태워진다. 가족들은 수감자의 사망사실에 대해 대부분 통보 받지 못하지만, 면회를

1219\_ TSH019.

1220\_ 서울 공청회, 2013년 8월 24일, 오전(00:50:20).

1221\_ TSH036.

하러 왔다가 수감자가 죽었다는 얘기를 들어서 알게 되는 경우가 많다.

- 지현아 씨는 증산의 11호 노동교화소에서 심한 설사를 일으키는 병 때문에 하루에 약 20명이 죽은 사례를 설명하였다. 그들에게는 구워서 가루로 만든 옥수수 외에는 다른 약도 없었다. 시신은 “꽃동산”으로 불리우는 대규모 무덤에 묻혔다. 희생자 중에는 지씨의 가까운 친구도 있었다:  
“그녀는 살이 너무 많이 빠져서 더 이상 일어나거나 자기 손으로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줄 약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죽었을 때, 그녀는 눈을 감지도 못했습니다. 그녀는 눈을 뜨고 죽었습니다. 나는 가슴이 터지도록 울었습니다.”  
지씨는 죽은 친구의 몸에 이름, 생일과 사망날짜를 적은 종이를 넣은 병을 묶어 두어서 나중에 그녀를 알아볼 수 있게 하였다.<sup>1222</sup>
- 11호 노동교화소의 다른 수감 경험자는 살기 위해서 개구리와 쥐와 풀을 먹었던 것을 묘사하였다. 특히 겨울에 많은 수감자들이 굶주림으로 죽었다. 몇 가지의 약초들 외에는 약이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설사와 같은 질병으로 죽었다. 그녀는 이미 5000명이 묻혀 있다는 대규모 묘지인 “꽃동산”에 죽은 사람들을 묻는 일에 배정되었다. 그들이 시신을 묻기 위해 파야 했던 구덩이는 너무 작고 얇아서, 시신을 넣으려면 구부려야 했다. 때로는 시신의 무릎이 흙 위로 튀어나온 적도 있었다.<sup>1223</sup>
- 김광일 씨에 따르면 그가 12호 노동교화소에 있었던 2년 5개월 동안 수백명이 죽었다고 한다. 김씨도 100명이 넘는 수감자들의 시신을 처리하는 일에 관여하였다. 시신은 저장소에 모아졌는데 이곳에서 쥐에게 뜯어 먹히거나 여름의 열기로 부패하기도 하였다. 충분히 많은 시신이 쌓이면 큰 수레로 싣고 산 위에 올라가 불태웠다. 힘센 수감자들은 시신의 처리를 도와야만 하였다. 김씨는 시신이 “쓰레기처럼 탔다”고 묘사하였고, 타고 남은 것은 때때로 교화소 들판의 비료로 쓰이기도 하였다.<sup>1224</sup>
- 한 남성 수감 경험자는 죽은 자를 집단으로 소각하고 남은 재를 비료로 사용하는 것이 그가 풀려나던 2011년까지 12호 노동교화소에서 지속되고 있었다고 확인해 주었다. 그가 시체 무더기를 산으로 가져가야 했을 때, 그는 쥐가 이미 시신의 얼굴 살을 갉아먹은 것을 보았다. 증언자는 최소 매년 800명의 수감자들이 영양실조, 감염

1222\_ 서울 공청회, 2013년 8월 20일, 오후(02:55:10).

1223\_ TBG010.

1224\_ 서울 공청회, 2013년 8월 24일, 오전.

- 질환, 노동재해 등으로 죽는다고 추정하였다.<sup>1225</sup>
- 한 수감 경험자는 전거리 12호 노동교화소에서 1997년과 1998년에 약 500명의 수감자들이 장티푸스로 죽었다고 기억하였다. 또 다른 전직 수감자도 2009년과 2010년 겨울에 장티푸스가 두 번째로 교화소를 휩쓸어 황폐화시킨 것을 경험하였다.<sup>1226</sup> 너무 많은 사람이 죽어서 모든 작업반이 중단되었다. 그녀는 스스로도 장티푸스에 걸려 너무 약해져서 계호원이 그녀를 죽음이 가까운 사람을 수용하는 방으로 던져두었다. 그녀는 그녀가 창문에 얼어붙은 물을 핥아먹었기 때문에 열이 내려서 살아남았다고 생각한다. 그녀가 살아남았다는 것이 발견되자, 그녀는 다시 감방으로 보내졌다. 그녀는 나중에야 약을 받았으며, 이것이 생존하는데 도움이 되었다.<sup>1227</sup>
  - 오로의 22호 노동교화소에 수감되었던 한 여성은 많은 사람들이 굶주림과 구타로 죽었다고 기억하였다. 그들의 시신은 옥수수 창고 중 한군데에 모여져 대규모 무덤에 던져졌다.<sup>1228</sup>
  - 한 전직 국가안전보위부 관료는 강동군의 4호 노동교화소를 방문했을 때 수많은 굶주린 수감자들이 죽도록 방치된 것을 보았다.<sup>1229</sup> 증언자는 너무 놀라서 2010년 국가안전보위부 교화국에 문의하였고, 4호 노동교화소에서 매년 800명 이상의 수감자들이 죽는다는 정보를 제공받았다. 많은 수의 수감자가 평양 근처 출신이라는 사실도 사망자 수를 늘리는 이유였다. 수감자들이 저지른 범죄 때문에 그 가족들이 평양에서 추방되어 먼 지역으로 보내지기 때문이다.<sup>1230</sup> 이것은 가족들이 수감자들을 정기적으로 방문해 음식을 가져올 수 없다는 뜻이기도 했다.

## (b) 단기 강제노동 구금시설

**814**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것이 발각된 사람은 단기 구금시설로 보내지며, 대부분 이 곳에서 한 달에서 일 년까지 수감된다. 예를 들어 중국에서 송환된 사람이

1225\_ TAP016.

1226\_ TSH018.

1227\_ TJH009.

1228\_ TBG018.

1229\_ TGC004.

1230\_ IV장 C.1.(a)(i) 참조.



국가안전보위부 요원에게 중국에서 상대적으로 단기간 체류하였으며, 교회나 한국 국민과의 접촉을 피했다는 것을 납득시키면 대부분 이와 같은 단기 구금시설로 보내졌다. 중국 핸드폰을 사용하거나 외국영화를 보다가 잡힌 좋은 ‘성분’의 사람들도 이 같은 시설에 구금될 수 있다.

**815** 남성과 여성은 국제기준에 따라 분리 수용된다. 일부 시설의 수감자 중에는 어린이도 있다. 그러나 그들은 대부분 가벼운 수준의 노동에 동원된다.

**816** 단기 강제노동 구금시설의 절대 다수는 인민보안부와 지방 당국에서 관리한다. 소수의 단기 강제노동 구금시설만이 국가안전보위부와 조선인민군 보위사령부가 관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817** 가장 일반적인 단기 구금시설은 “노동단련대”로 불린다. 그들은 1990년대에 김정일이 경범죄 교화시설은 도 수준의 지방 당국에서 설립되어야 한다고 지시해 마련되기 시작하였다.<sup>1231</sup> 오늘날 노동단련형을 다루는 형법 제31조에서 그와 같은 시설의 법적 근거를 제공한다.

**818** 2012년의 종합적인 연구에서, 북한인권정보센터(NKDB)는 인민보안부가 관리하는 49개의 노동단련대와 조선인민군 보위사령부가 관리하는 두 개의 시설을 식별하였다.<sup>1232</sup> 이러한 시설들이 모든 군 단위에 설치되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실제 시설의 수는 더 많을 수 있다.

**819** 또한 인민보안부는 노동교양소로 불리는 시설을 주요 도시에서 운영한

1231\_ NKDB, *Political Prison Camps in North Korea Today*, p. 33 참조.

1232\_ NKDB, *Political Prison Camps in North Korea Today*, p. 51 참조.

다.<sup>1233</sup> 심각하지 않은 정도의 “반사회주의 행동” 등 중간 정도 심각한 범죄자들은 이러한 교양소에서 강제노동을 하게 된다. 인민보안부와 국가안전보위부의 대기구류소(‘집결소’) 또한 북한에서 처벌의 장소로 효과적으로 활용되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는 없다.<sup>1234</sup>

**820** 세 종류의 단기 구금시설의 수감자들은 국제법상에서 요구되는 것과 같이 법정에서 기소를 통해 자유박탈형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공통점을 공유한다. 그들의 유죄와 처벌은 당국의 실행부서인 국가안전보위부나 인민보안부에 의해 결정되었다. 노동교양소와 노동단련대의 수감자들이 재판을 거친 소수의 경우가 있으나, 그러한 경우에도 위에 설명한 것과 같은 매우 불공정한 재판이었다.<sup>1235</sup> 따라서 법정에서 합당하게 기소된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수감자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그들은 임의적 구금과 국제법에서 규정된 불법적인 강제노동의 피해자이다.

- 고문을 동반한 심문이 끝나자, 증언자는 불법적으로 국경을 넘어 중국에 갔다는 이유로 국가안전보위부 요원에게 노동단련대 6개월형을 “선고”받았다. 국가안전보위부 요원은 그녀가 중국에서 매우 짧은 시간만을 보냈으며,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중국으로 갔다는 것을 감형의 사유로 고려하였다. 그녀는 다시는 중국에 가지 않을 것이며, 국가안전보위부 심문과정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발설하지 않겠다는 맹세를 담은 서류에 (지장으로)서명을 해야 하였다.<sup>1236</sup>
- 또 다른 여성은 불법적으로 중국에 갔었다는 이유로 어떠한 종류의 재판도 받지 않은 채 함경남도의 노동단련대로 보내졌다. 그녀는 구금기간에 대한 아무런 설명도 듣지 못한 상태에서 4개월 간 구금되었다. 증언자는 수용소 관리자가 아버지의 오랜 친구였다는 우연이 아니었다면 살아남지 못했을 것이라고 설명하였다.<sup>1237</sup>

1233\_ 한국어 ‘교양소’에 대한 보다 정확한 번역은 “교육을 통한 교화소”일 것이다.

1234\_ 보안부 대기구류소(‘집결소’)의 처우에 대해서는 IV장 C.2(d) 참조.

1235\_ IV장 E.1(b) 참조.

1236\_ TBG028.

1237\_ TBG010.

- 양강도 혜산 출신의 젊은 여성인 증언자는 2009년, 한국의 영화를 비밀리에 시청했다는 이유로 친구로부터 고발당하였다. 네 명의 인민보안부 지도원들이 새벽 3시까지 그녀를 심문했으며, 그녀가 “범죄”를 시인할 때까지 얼굴을 때렸다. 그 이후 그녀는 외부와의 연락이 두절된 채 구금당했으며, 자백문을 쓰도록 강요받았다. 9일간 구금된 이후, 그녀는 경찰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끌려갔다. 그녀는 그 “재판”에서 범죄내용과 6개월 수감형을 받았다는 사실을 통보받았다.<sup>1238</sup>

821 단기 강제노동 구금시설은 교화소와 달리, 가족들이 훨씬 빈번하게 방문할 수 있다. 보안도 덜 엄격한 편이다. 이러한 노동단련대에서 탈출을 시도하다가 즉결 처형을 받은 사례는 거의 보고되지 않았다.<sup>1239</sup>

822 그러나 다른 측면에서는 노동단련대에서도 교화소와 마찬가지로 중대한 인권 침해가 이루어지고 있다. 수감자들은 굶주림과 비인도적 환경 아래 강제노동에 동원되고 있으며 노동을 수행하지 않거나 경비병에게 복종하는 않는 경우 가혹한 폭행이 가해진다. 의료시설은 거의 전무하기 때문에 수감자가 아플 경우에는 지역 병원으로 이송된다. 많은 수감자들이 굶주림과 노동으로 인한 질병, 또는 폭행에 의한 부상으로 목숨을 잃고 있다. 사체에 관한 구금시설의 책임과 부담을 없애기 위하여 곧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감자들은 대부분 가족에게 돌려 보내지고 있다. 노동단련대에 관한 여러 증언에 따르면 강제낙태 또한 자행되고 있다고 파악된다.

- 중국에서 송환된 이후 함경남도 함흥의 노동단련대에 구금되었던 Timothy씨는 매 끼니마다 양념하지 않은 쌀밥 다섯 스푼과 콩죽을 배급받았다. 영양결핍으로 마치 “뼈만 남은 듯한” 수감자들은 매일 오전 5시에 일어나 밤 10시까지 강제노동에 동원되었으며 이념 교육 또한 받아야 했다. 김일성의 교시를 제대로 암송하지 못한 수

1238\_ TAP010.

1239\_ TQAP016은 함경북도 국가안전보위부 구금소에서 탈출 시도를 하려다 처형된 세 사람을 목격하였다. NKDB, *Political Prison Camps in North Korea Today*, pp. 283, 352에서는 탈출 시도를 이유로 처형된 사례를 보안부 구류장에서는 찾지 못했으며, 노동단련대에서는 한 건을 발견하였다.

감자의 경우 수감기간이 연장되었다. 한두 달의 구금 기간 이후 많은 수감자들이 죽었다:

“노동단련대에서 나오는 수많은 시체들, 사체들을 볼 수 있습니다. [북한에서] 도주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가장 먼저 죽어서 나옵니다.”<sup>1240</sup>

- P양은 함경북도에 위치한 노동단련대에 구금되어 있는 동안 벌목을 하고 풀을 베었다. 그녀는 수감자들이 굶주리고 있었다고 증언한다:

“우리에게 ... 생명을 유지시켜줄 만큼의 옥수수로 만들어진 음식이 주어졌습니다. 젊은 남성 수감자들에게는 턱없이 부족한 양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일하는 동안 밭에서 지렁이나 뱀을 잡아먹었습니다. 이것들을 산 채로 잡아먹은 사람들은 뱃속에서 이것들이 꿈틀거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sup>1241</sup>

- 노동단련대에 구금되어 있는 동안 강제벌목에 동원된 또 다른 여성 수감자는 얼마나 많은 수감자들이 벌목 중 엎어 나르던 나무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그 아래 깔리게 되었는지 그 경위를 설명하였다.<sup>1242</sup>

- 2004년 신의주 국가안전보위부에서 심문을 받은 이후 노동단련대에 구금된 한 여성은 오전 5시부터 농사와 벌목 작업에 강제동원되었다. 그녀에게 하루에 주어진 식량은 옥수수와 단무지 다섯 조각이었다. 작업 도중 부상을 입은 그녀가 절뚝거리며 다른 수감자들만큼 빠르게 일할 수 없게 되자 경비병이 그녀의 얼굴에 주먹질을 가하였다. 그녀는 치아가 한 개 부러지고 혼절해 버렸다. 그녀가 다시 정신을 차렸을 때엔 혼자 서 있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밭으로 복귀해야 하였다. 아무 일도 할 수 없었던 그녀에게 다시 경비병들의 폭행이 가해졌다. 결국 의사의 진찰을 받게 되었지만, 아무런 약도 처방받지 못하였다.

이 여성의 추가 증언에 따르면 한 동료 여성 수감자는 밭에서 주운 생쌀을 먹다가 붙잡혀 폭행을 당하였다. 폭행당하는 동료를 도와주려 한 증언자 또한 함께 폭행을 당하였다.

설사병은 아주 흔한 질환이었는데, 수감자 한 명은 아무런 치료도 받지 못하여 사망하였다. 죽은 그녀의 몸이 얼마나 앙상했는지 경비병들은 그녀의 몸을 아주 쉽게 옮길 수 있었다.<sup>1243</sup>

1240\_ 서울 공청회, 2013년 8월 22일, 오후(01:57:00).

1241\_ 서울 공청회, 2013년 8월 21일, 오후(01:47:10).

1242\_ TJH028.

1243\_ TGC001.

- 2000년 한 증언자는 함경북도에 위치한 여성 노동단련대에서 6개월간 수감생활을 하였다. 당시 30명에서 40명이 되는 수감자들이 28평방미터 남짓 되는 감방에서 생활을 하였다. 잠은 짚으로 덮힌 바닥 위에서 자야만 하였다. 식량으로는 생옥수수과 소금간을 한 국이 전부였는데, 가족들의 방문과 함께 음식반입이 가능하였다. 구금생활 동안 그녀는 모래주머니와 바위를 운반해야 하였다. 밤에는 다른 수감자들과 함께 강제행군과 달리기에 동원되었고, 이에 불복종한 수감자들에게 폭행이 가해졌다.<sup>1244</sup>
- 혜산의 노동단련대에 구금되었던 또 다른 증언자는 7개월 된 만삭의 20대 임신부가 배 부분을 수십 번 걷어차이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한다. 밤에 동료 수감자들의 도움에도 불구하고 피해 수감자는 결국 유산하였다. 아기는 출산 당시에는 살아있었지만 약 1분 후에 사망하였다. 증언자가 아기의 시체를 천으로 덮어 복도에 두었다. 경비병들이 아이의 시체를 치우는 데까지 1주일이 걸렸다.<sup>1245</sup>
- 또다른 노동단련대에 구금되었던 한 여성도 비슷한 사례를 진술하였다. 임신한 채로 중국에서 강제송환된 한 여성은 피를 흘릴 때까지 배를 걷어차였다. 경비병들은 그녀를 병원으로 이송하였는데, 그녀가 수용소로 돌아왔을때 그녀의 배는 더 이상 부풀어있지 않았고 눈두덩이는 울어서 부어있었다. 이런 점들을 미루어 보아 그녀가 유산하였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sup>1246</sup>

## 5. 사형

823 북한은 여전히 사형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는 북한의 형법 제27조에 명시되어 있다. 북한에서 제공하는 종합적인 통계는 없지만 조사위원회가 수집한 과거 수감자 및 기타의 증언을 통해 상당히 많은 수의 수감자들이 북한에서 처형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대부분의 경우 자유권규약 제6조에 명시되어 있는 사형에 대한 엄격한 조건과 안전보장조치는 지켜지고 있지 않다.

1244\_ TBG017.

1245\_ TSH039.

1246\_ TAP003.

**824** 2004년 개정된 북한 형법 이후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의 수가 감소하였다. 하지만 북한의 사형제도는 자유권규약 제6조가 ‘가장 중한 범죄’로 제한하고 있는 행위보다 훨씬 더 넓은 범위에서 사형을 집행하고 있다. 또한 어떤 부분은 매우 광범위하고 애매하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인권 침해에 쉽게 남용될 수 있다. 북한의 형법 제59조는 반국가적 목적으로 시위에 참여하는 행위에 대하여도 사형을 부과할 수 있다.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 “제국주의의 지배밑에서 우리 인민의 민족해방운동과 조국 통일을 위한 투쟁을 탄압하였거나 제국주의자들에게 조선민족의 리익을 팔아먹은 민족반역행위를 한 자”에 대해 사형을 부과할 수 있다.<sup>1247</sup>

**825** 2007년 이후에는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의 범위가 다시 한번 확대되었다. 2007년 9월(역자주: 10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 수정보충된 형법은 기존의 조항에 새로운 범죄를 추가하는 형법부칙(일반범죄)을 포함하고 있다. 형법부칙(일반범죄) 중 16개 조문에서 최고 사형부과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형법부칙(일반범죄)에 따라, 귀금속 밀수, 밀매죄나 국가재산 고의적파손죄 등 경제범죄에 대해서도 “정상이 극히 무거운 경우”에 사형을 부과할 수 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2007년 형법부칙(일반범죄)이 매우 포괄적인 조항을 포함한다는 사실인데, 이는 만약 범죄자가 여러 가지의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고 갱생할 수 없을 것이라 판단될 경우 사형에 처하는 것을 가능케 한다.

**826** 2009년 인민보안부가 북한 당국을 대표하여 발표한 포고문에 따르면 다양한 종류의 불법 외화거래를 금지하고 있다. 이 포고문은 사형을 포함한 가혹한 형사 제재를 명시하고 있다. 같은 해에 형법 제64조상의 “반국가목적으로 파괴, 암해한” 범죄에까지 사형의 범위가 확대되었다.

1247\_ 북한 형법 제67조 참조.

### (a) 중심지에서의 공개처형

827 북한의 거의 모든 사람들이 처형을 지켜본 목격자인데, 이는 처형이 주로 중심지에서 공개적으로 집행되기 때문이다. 많은 경우, 처형이 집행되는 곳에 거주하는 아이들을 포함한 모든 인구가 집행과정을 지켜보도록 동원되었다. 다른 경우에는 경기장이나 큰 공연장에서 조금 더 선별된 관중들 앞에서 처형이 집행되었다.

828 일반적으로 북한은 집행된 처형에 대한 수치를 공개하지 않는다. 2001년 10월 북한은 자유권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1998년과 2001년 사이에 오직 13번의 처형이 집행되었다고 보고했으며, 마지막으로 집행된 공개처형은 1992년 10월까지 거슬러 올라간다고 밝혔다.<sup>1248</sup>

829 통일연구원이 북한이탈주민들의 증언을 통하여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05년과 2012년 사이 510번의 공개처형이 집행되었다고 한다.<sup>1249</sup> 북중접경지역과 더 떨어진 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적은 수가 탈북에 성공하였다는 것을 감안할 때 정확한 수치는 더욱 높을 것이라 판단된다.

830 북한에서 공개처형은 주로 총살대가 사형수를 여러 번 사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더 특별한 경우에는 피해자는 교수형에 처해진다. 지난 몇 년간 관계자들은 기관총을 수단으로 피해자들을 처형하였다; 이는 처형의 공포감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라 판단된다. 특히 어린 아이들이나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이러한 경험은 주로 매우 끔찍한 것이기 때문에, 자유권규약 제7조는 이들 목격자들 또한 같은 피해자로 보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1248\_ CCPR/C/SR.1944, para. 24.

1249\_ KINU,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3), pp. 105~106.

- 최명화 씨와 김주일 씨는 10살 때 처음으로 공개처형을 목격하였다. 이 두 번의 사례 모두 그들의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공개처형을 보여주기 위해 수업을 중단하고 데려갔다고 한다.
- 최명화 씨는 16살 때 또 다른 공개처형을 보았다. 공장이 부진한 경제실적을 보인 이후 간첩활동을 한 혐의로 한 공장관리자가 처형되었다. 증언자는 공개처형을 보는 동안 두려웠고, 어느 누구나 이러한 처형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였다고 증언하였다.<sup>1250</sup>
- 김혁 씨가 처음으로 목격한 공개처형은 9살 때 청진 정치범수용소 25호 근처에서 집행된 것이었다. 그는 처형이 집행된 이후 발견된 유탄을 가지고 다른 아이들과 함께 놀았던 기억이 있다고 하였다.<sup>1251</sup>
- 이재근 씨는 북한에 사는 30년 동안 최소 10번의 공개처형을 목격하였다고 한다. 그의 작업반 모두가 처형장으로 이동해야 했는데, 약 1,000명이 그곳에 모였다고 한다. 한 사형수의 경우 조선노동당의 간부들을 비난한 죄로 처형되었다고 한다. 이 씨는 사람들을 강제로 처형을 지켜보게 한 이유를 아래와 같이 설명하였다:  
 “그 어느 누구도 당을 거역하거나 김일성의 이념을 거역하는 것을 생각할 수 없도록, 그들은 마치 견학을 보내듯 우리들을 공개처형장으로 데려갔습니다.”<sup>1252</sup>

**831** 1990년대 북한에서는 공개처형이 매우 흔하게 집행되었는데, 이는 김정일이 사회질서와 국가 통제의 와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내린 명령에 따른 것이었다. 당시 많은 피해자들이 살아남기 위해 공장의 물품을 횡령하거나 음식을 훔치는 등의 경제범죄로 처형되었다. 많은 경우 그들은 재판 없이 즉결 처형되었다. 피해자의 시체는 경고의 목적으로 상당시간 처형장에 남겨졌다. 북한의 기근시기는 많은 임의적 처벌이 가해진 시기였다.

- 기근 동안 전진화 씨는 그녀의 고향 함경남도 함흥에서 여러 번의 공개처형을 목격하였다고 한다:

1250\_ 런던 공청회, 2013년 10월 23일, 3세션 및 4세션.

1251\_ 서울 공청회, 2013년 8월 22일, 오전.

1252\_ 서울 공청회, 2013년 8월 23일, 오전.



“사람들은 국가의 재산으로 간주되는 것들과 다른 사람들의 것들을 훔치다가 붙잡혔을 경우 공개적으로 처형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삶이 우리 것이라 느낄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끊을 수 있는 권리조차 없었습니다.”<sup>1253</sup>

- 함흥의 또 다른 목격자에 따르면 많은 사람들이 공장에서 동선을 훔치거나 공공시설물을 훔치는 등 살아남기 위해 자행한 사소한 범죄로 인해 공개처형되었다.<sup>1254</sup>
- 한 남자는 1990년대 이후의 공개처형이 얼마나 더 잔인하게 집행되었는지 설명하였다. 그는 9살 때 1980년대 함경남도 북창에서 처음으로 처형을 목격하였는데, 당시 피해자는 천으로 덮인 나무 뒤에 위치하였다. 따라서 처형시 쓰러지는 피해자의 그림자만이 보일 뿐이었다. 기근 때에는 이러한 관례가 없어졌다. 피해자들은 그저 기둥에 묶인 뒤 총살을 당했고, 지켜보는 모든 이들은 피로 범벅된 피해자의 몸을 볼 수 있었다.<sup>1255</sup>
- 한 여성의 증언에 따르면 그녀는 함경북도의 마을에서 5번의 공개처형을 목격하였는데, 이 중 식량을 얻기 위해 몰래 소를 도살한 여러 농장원들도 포함되었다고 한다. 처형 이전에 그 어떤 재판도 진행되지 않았고, 그저 한 관료의 죄목에 대한 발표가 있는 뒤 피해자들은 머리에 총살을 당하였다.<sup>1256</sup>
- 이 증언자에 따르면 양강도 혜산에서는 매주 20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반사회주의” 행동이라는 명목 아래 공개처형되었다고 한다. 많은 경우 군은 탱크를 이용하여 길을 막고 사람들을 강제적으로 처형장으로 모이게 하였다. 총살대는 피해자들을 첫 몇발로 사살한 뒤, 희생자들의 목, 허리, 그리고 발을 나무 기둥에 묶고 있는 밧줄을 조준사격하였다. 그 결과 신체의 여러 부위가 사방으로 날아갔다.<sup>1257</sup>
- 1999년 7월, 또 다른 증언자에 따르면 조선인민군 보위사령부가 혜산에서 12명의 사람들을 반국가적 행동이라는 명목 아래 처형하였는데, 이 중 시 관리부서의 수장도 포함되었다고 한다. 혜산의 모든 사람들이 이 공개처형을 보기 위해 집결해야만 하였다.<sup>1258</sup>

1253\_ 서울 공청회, 2013년 8월 22일, 오후(00:30:41).

1254\_ TBG017.

1255\_ TJH038.

1256\_ TBG001.

1257\_ TSH038.

1258\_ TAP006.

832 2000년 이후에는 사회적 조건이 개선되고 당국도 통제의 수준을 완화시킬 수 있었기 때문에 공개처형 집행건수가 다소 감소한 것으로 알려진다. 하지만 공개 처형 자체가 폐지된 적은 결코 없다. 2009년 12월 보편적 정례인권검토가 진행되는 동안 북한이 스스로 인정한 바에 따르면 극히 잔혹한 범죄 같은 아주 특별한 경우에는 여전히 공개처형이 집행되고 있다고 하였다.<sup>1259</sup> 조사위원회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그 이후에 더 많은 공개처형이 집행되었다. 다수의 경우 피해자들은 살인, 마약밀매, 국가재산을 훔친죄, 그리고 인신매매(이는 탈북하고자 한 사람들을 자발적으로 도와준 사람들에 대한 부당한 혐의로 씌워진다)라는 명목으로 처형되었다. 공개처형 피해자 중에는 외국영화나 정치적으로 민감한 물품을 들여온 밀수범들도 있다. 이 보고서가 완성되기 직전에 조사위원회에 제기된 주장에 따르면 정치적 목적을 담고 있어 보이는 일련의 처형이 집행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은 김정은의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취임과 그의 권력 공고화 과정과 연계되어 보인다. 공개처형에 대한 김정은의 역할에 대해 질문이 제기되고 있다.

- 2013년 12월, 북한 당국은 김정은의 고모부 장성택을 처형하였다. 장성택은 사망하기 직전까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행정부장이었다. 이번 처형이 일반 주민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집행되지는 않았지만 조선중앙통신에 의해 그 내용이 국내외로 널리 전파되었다. 또한 북한 당국이 알리고자 하는 처형에 대한 내용과 근본적인 사유를 통보 받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공개회의에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하였다고 한다. 북한 측에 따르면, 국가안전보위부 특별군사재판소는 “피소자 장성택이 적들과 사상적으로 동조하여 우리 공화국의 인민주권을 뒤집을 목적으로 감행한 국가전복음모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를 확정하였다.<sup>1260</sup> 전하는 바에 따르면 이번 판결은 “그를 세기의 흉악한 정치적 야심가, 음모가이며 만고역적이라고 격렬하게 비판하였다.”<sup>1261</sup> 장성택은 체포된 지 3일 만에 사형선고가 내려졌다. 그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

1259\_ A/HRC/13/13, para. 88.

1260\_ “반역자 장성택 처형,” KCNA, 2013년 12월 13일. <http://www.kcna.co.jp/item/2013/201312/news13/20131213-05ee.html> 참조.

1261\_ *ibid.*

치국 확대회의에서 체포되는 장면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크게 보도되었다. 김정은 조선노동당 제1비서가 참석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채택된 결정서는 이번 사건이 공정한 절차를 통해 다루어졌는지에 대한 질문을 제기한다. 동 결정서는 판결이 내려진 3일 뒤에 공개되었다. 이 결정서는 장씨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이미 결론을 내렸고 장씨가 “우리들의 당과 혁명에 막대한 해독”을 끼쳤다고 하였다.<sup>1262</sup> 특별군사재판소가 판결을 내린 즉시 사형이 집행되었는데, 이는 사면이나 감형에 대한 권리를 명시하고 있는 자유권규약 제6조 제4항과 판결과 형벌에 대해 상급 법원에서 재심받을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하는 자유권규약 제14조제5항을 위반한 것이다.<sup>1263</sup> 북한 측의 해명을 바탕으로 조사위원회는 이번 장성택의 재판과 사형집행 과정에 있어서 국제인권법의 여러 부분들이 침해됐다고 파악하였다. 만약 이러한 인권침해가 최고위급 관료자들 중 한 명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면 일반 시민들에게 적용되고 있는 법과 정의의 수준이 어느 정도일지 예측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 또한 조사위원회는 조선노동당과 인민보안부 내 장성택의 측근들의 처형과 실종에 대한 정보를 받았다.<sup>1264</sup> 공개처형을 당한 피해자들 중에는 장성택이 부장이었던 조선노동당 행정부의 고위급 관료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2013년 11월에는 국가안전보위부 특별군사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리룡하 당 중앙위원회 행정부 제1부부장과 장수길 행정부 부부장이 처형되었다고 보고되었다. 이러한 보도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당이 “날날이 밝힌 종파적 행위들을 더 이상 방관할 수 없기에 장성택과 그 일당을 제거”했다고 발표된 내용과 일치한다.<sup>1265</sup> 장성택에게 사형을 선고한 판결문에 따르면 리룡하를 구체적으로 장성택의 “충실한 꼭두각시”라고 칭하고 있다.<sup>1266</sup> 최고지도자 김정은의 2014년 신년사도 마찬가지로 당이 “당 내부에 숨어있는 파벌주의자들을 제거하기 위해 단호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 조사위원회가 받은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8월, 10월, 11월 전국의 다양한 곳에서

1262\_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에 관한 보도,” KCNA, 2013년 12월 9일. <http://www.kcna.co.jp/item/2013/201312/news09/20131209-05ee.html> 참조.

1263\_ “반역자 장성택 처형,” KCNA, 2013년 12월 13일. <http://www.kcna.co.jp/item/2013/201312/news13/20131213-05ee.html> 참조.

1264\_ 관련 정보는 신빙성 있는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제출됨.

1265\_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에 관한 보도,” KCNA 참조.

1266\_ “반역자 장성택 처형,” KCNA 참조.

- 일련의 공개처형이 집행되었다고 한다. 전하는 바에 따르면 많은 피해자들이 외국영화와 포르노 관련 자료들을 유통한 죄에 연루되어 처형되었다고 한다. 보고된 공개 처형 중 많은 경우가 확인되지 않은 김정은의 부인 이설주의 포르노그래피 스캔들이 해외 언론에서 널리 보도된 이후 집행되었다고 한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북한 당국자들은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사람들에게 소문을 퍼트리는 것에 대한 단호한 경고를 주고 포르노와 외국영화를 포함한 ‘반사회주의적 자료’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였다.
- 2010년 초반에는 2009년 화폐 개혁에 관여했던 많은 관료들이 처형되었다.<sup>1267</sup> 처형이 집행되던 당시 김정은은 이미 병든 아버지 김정일로부터 국정을 인계 받고 있었다. 통일연구원과 조사된 증언에 따르면 피해자 중 화폐 개혁 당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 계획재정부장이었던 박남기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한다.<sup>1268</sup> 김정은이 참석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만고역적”이라 공개적으로 칭해진 박씨는 보고된 처형 이후 보이지 않았다.<sup>1269</sup> 이는 보고서들의 정확성에 대한 신빙성을 더해 준다.

### 833 조사위원회가 실시한 비공개 면접에 따르면, 목격자들은 최근에 집행된 다른 공개처형에 대하여도 증언하였다.<sup>1270</sup>

- 2013년 3월, 함경북도 청진시 송평구역 부근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한 남자와 여자의 공개처형을 지켜보도록 지시되었다. 어른과 아이들 모두 예외없이 참석해야만 하였다. 관계자가 피해자들이 많은 양의 마약을 생산하고 판매하였다고 발표한 뒤 그들은 폭행을 당하고 기둥에 묶여졌다. 그리고 6명으로 이루어진 총살대가 기관총을 사용하여 그들을 처형하였다. 다른 공개처형도 같은 장소에서 2007년(인신매매죄), 2008년(국가재산절도죄), 그리고 2009년(살인죄) 등과 관련하여 집행되었다.
- 2012년 봄, 평안남도 북창에서는 한 여자가 자신의 연인을 살해한 죄로 처형되었다.
- 2011년 11월, 함경북도 경흥군에서는 마약을 생산하고 판매한 죄로 4명이 처형되었다.

1267\_ 화폐 개혁과 관련하여 IV장 D 참조.

1268\_ 통일연구원, 서울 공청회, 2013년 8월 21일, 오후.

1269\_ “반역자 장성택 처형,” KCNA 참조. 장성택의 처형을 설명하는데 동일한 용어가 사용됨.

1270\_ TBG028, TBG030, TBG032, TLC039, TLC042.

- 2011년 6월, 함경남도 금야군의 주민들은 한 여성이 살인죄로 처형당하는 모습을 강제적으로 보아야만 하였다.
- 2010년, 다시 함경남도 함흥시에서 한 여성은 한국의 영화와 드라마를 판매한 죄로 공개처형되었다.
- 2009년 10월, 함경북도 회령에서는 한 남자가 한국의 당국자들과 접촉한 죄로 공개적으로 처형되었다.

## (b) 구금시설 내 처형

**834** 조사위원회에 따르면 북한의 구금시설 내에서도 많은 숫자의 처형이 집행되고 있다고 한다. 어떤 경우에는 사법적 재판에 따른 처형지만, 다른 경우에는 질서와 제도적 규칙을 유지하기 위한 명목으로, 어떠한 재판이나 사법적 절차 없이 즉결처형이 집행된다. 대부분의 경우 구금시설의 모든 인원이 처형을 지켜볼 수 있도록 참석해야 한다. 공포심을 조장하고 수감자들을 통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인다.

- 정치범수용소의 경비병이었던 안명철 씨의 증언에 따르면 수용소의 관계자들은 누가 도주하려하거나, 수용소의 재산을 파괴하거나, 아니면 통제불능의 사태가 일어났을 때 처형을 집행하였다고 한다: “우리는 다른 수감자들에게 본보기를 세우기 위하여 수감자들 죽이거나 처형하였다.” 처형에 대한 결정은 법에 따른 재판과 관련 없이 국가안전보위부가 수용소 내에 설치한 조사국의 판단에 의해 내려졌다. 수용소의 모든 인원이 지켜보아야만 하였다. 사형집행 사례 수는 수용소마다 상이했는데, 어떤 해에는 무려 2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처형되었다.<sup>1271</sup>
- 김혜숙 씨는 18호 정치범수용소에서 다수의 처형을 목격하였다고 한다. 경비병의 지시를 어기거나, 도주, 또는 남은 음식을 뒤지기 위해 경비병들의 거주공간을 침입한 수감자들이 처형되었다.<sup>1272</sup>

1271\_ 서울 공청회, 2013년 8월 21일, 오후(00:26:30).

1272\_ 화상회의 면접.

- 2007년, 요덕 15호 정치범수용소에서 생활하던 수감자에 따르면 두 명의 남자가 처형되었다고 한다. 그들은 굶주림에 산속에서 음식을 찾고자 그들의 생활공간을 떠났다고 한다. 수용소 관리자들에 의해 큰 수색작업이 벌어진 이후 붙잡힌 그들은 다른 수감자들 앞에서 즉결처형되었다.<sup>1273</sup>
- 함경북도 전거리 12호 노동교화소에서 3개월을 보낸 김혁 씨는 그곳에서 무려 4번의 공개처형을 목격하였다고 한다. 한 피해자는 교화소의 저장소에서 음식을 훔친 죄로, 다른 피해자는 도주하려고 했던 죄로 즉결처형되었다. 두 명의 다른 피해자들은 여러가지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재판을 통해 처형되었다.<sup>1274</sup>

**835** 정치범수용소나 일반 감옥의 수감자들이 특히 비밀리에 집행되는 처형에 취약하다. 그들은 기본권을 잃어버린 것이라 간주되며, 정치범수용소 수감자들의 경우 외부와 아무런 연락도 닿지 못한다. 또한 죽은 수감자들의 시체는 그들의 가족에게 절대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수감자들의 죽음은 쉽게 감추어질 수 있다. 조사위원회가 받은 신빙성 있는 1차 자료에 따르면 정치범수용소와 구류장에서 비밀리에 즉결처형이 집행되고 있다고 한다.

- 1998년 이후부터 전거리에 위치한 12호 교화소에서 많은 수감자들이 비밀리에 처형되었다고 한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나쁜 ‘성분’을 갖고 있거나, 정치적으로 민감한 범죄를 저지른 자들이었다. 또한 몇몇의 피해자들은 수감 환경에 대하여 불평하거나 지시를 따르지 않은 죄로 지목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직접 목격한 목격자의 증언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밤에 한 명씩 다른 방으로 끌려갔는데, 그 곳에서 관리자들과 평양의 인민보안부 관리들이 그들에게 허위 혐의를 씌웠다고 한다. 그리고 곧바로 경비병들이 피해자를 철사로 목을 졸라 죽였다. 수감자들 중 작업반장들에게 죽은 시체들을 치우고 교화소 본소에서 몇 km 떨어져 있는 용광로로 옮기는 임무가 주어졌다. 이러한 살해 행위는 주기적인 간격으로 일어났고, 매번 여러 명의 수감자들이 죽임을 당하였다.<sup>1275</sup>

1273\_ TLC008.

1274\_ 관련 정보는 더욱 자세한 김씨의 공청회 비공개 면접 참조.

1275\_ 이 학살에 대한 내용은 2013년 8월 24일 오전 김광일 씨의 서울 공청회 증언 중 언급된 책에도 있음, 증거

1997년 후반에 폐쇄된 평안남도 태현에 위치한 일반 감옥에서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들을 대상으로 비공개 처형이 집행된 것으로 파악된다. 매주 밤이나 이른 아침에 3명에서 5명의 피해자가 일반 감옥 본관에서 1.5km 떨어진 곳에서 총살당하였다.<sup>1276</sup>

이들 비공개 처형의 배경에는 1997년 김정일이 보안기관에 발표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머리에 병든” 사람을 모두 제거하라는 지시와 연관되어 있을 수 있다.<sup>1277</sup>

- 1993년 2월과 1998년 사이에는 소련의 프룬제(Frunze) 육군 사관학교에서 수학한 250명의 군관계자들이 처형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하는 바에 따르면 이들 중 몇 명은 쿠데타를 계획했으며, 해당 숙청은 조선인민군 보위사령부에 의해 집행되었다고 한다. 피해자들은 보안부 지도원들에 의해 유죄가 확정된 이후 재판 없이 처형되었다. 몇몇 피해자들의 가족들도 정치범수용소로 보내졌다. 당국에 영향력이 있는 몇몇 가족들만이 집단처벌을 면할 수 있었다.<sup>1278</sup>
- 전직 경비병들의 증언에 따르면 정치범수용소 13호에서 비공개 처형이 집행되었다고 한다. 수용소 13호의 한 전직 경비병은 그가 정치범 수감자들을 산속에 있는 비공개 처형장으로 운반하였다고 한다. 피해자들은 다른 경비병들이 망치로 그들의 머리를 때려서 죽이기 전에 자신들이 물힐 무덤을 파야만 했다고 한다.<sup>1279</sup> 안명철 씨는 수용소 근처의 산이 비공개 처형장으로 사용되었다고 밝혔으며 밤에는 그곳에서 나는 총성이 들리기도 하였다고 한다. 또한 그는 그곳에서 공사가 진행될 때 여러 구의 시신이 발견되었다고 증언하고 있다.<sup>1280</sup>

물 S29. 참조 *The Third Way, Prima Facie Evidence: Chonkori Prison* (2012), pp. 76 ff.

1276\_ TSH035.

1277\_ 919명령이라고도 알려져 있는 이 지시는 1997년 9월 19일 발표된 것으로, 그 표현이 *The Third Way, Prima Facie Evidence: Chonkori Prison*, p. 75에 재진술되어 있음. 또한 이 지시는 2013년 8월 22일 서울 공청회에서 [한국] 국가인권위원회의 윤남근 위원도 언급하고 있음.

1278\_ 전 북한 장교들은 비공개 면접을 통해 조사위원회에 자세한 정보를 제공함. 북한의 고위급 관료자였던 북한 이탈주민 황장엽 씨의 회고록, 황장엽 회고록 (한국어, 출판사 Zeitgeist, 2006, 번역 Daily NK)에 따르면 러시아에서 공부한 북한 장교들이 김일성에 반대하여 음모를 꾀했다는 혐의로 조선인민군 군보위사령부에 의해 총살당하였다고한다. 황씨의 통역사 중 한 명은 프룬제 숙청 당시 체포된 뒤 실종되었다. 전 북한 당국자들의 추가 증언들은 Ken E. Gause, “Coercion, Control, Surveillance, and Punishment,” pp. 121, 122을 참조. 또한 Ralph Hassig and Kongdan Oh, *The Hidden People of North Korea: Everyday Life in the Hermit Kingdom*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2009), p. 176 참조.

1279\_ TJH041.

1280\_ 안씨와 비공개 면접.

## 6. 의학 실험

836 조사위원회는 당국 관리자들이 생화학 무기를 실험하기 위하여 실시한 의학 실험에서 정치범 수감자들을 고의적으로 죽였다는 주장에 대하여도 조사를 진행하였다.<sup>1281</sup> 의학 실험과 유사한 주장은 장애인들을 위한 폐쇄 병동에서도 제기되었다.

837 조사위원회는 이러한 심각한 내용의 주장에 대한 정확성을 검증하는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조사위원회는 동 보고서가 완료되었을 당시, 접근 가능했던 정보를 바탕으로는 이와 같은 의학 실험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사실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조사위원회의 엄격한 입증기준에 부응하기 위하여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해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위원회는 향후 조사와 고려의 대상이 되어야 할 주장들에 대하여 기록하는 바이다.

## 7. 조사위원회의 주요 발견 사항

838 북한의 경찰과 보안 요원들은 중대한 인권 침해에 해당되는 폭력 및 처벌을 조직적으로 행사한다. 이는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여 현재의 북한 당국과 이를 뒷받침하는 이념에 대한 어떠한 도전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이루어진다. 여기에 관련된 기관이나 관계자들은 이러한 인권 침해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처벌도 받지 않는다.

1281\_ Stuart Windsor (런던 공청회, 5세션)과 Joseph S.Bermudez Jr. (워싱턴 공청회, 2013년 10월 31일, 오후)의 공청회 증언에서도 이러한 혐의들이 언급된다.



839 구금, 처형 및 실종을 포함한 북한의 중대한 인권 침해는 북한 보안 기관의 다양한 하위 조직이 고도로 중앙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발생한다. 국가안전보위부, 인민보안부 및 조선인민군 보위사령부는 정기적으로 정치범 혐의로 기소된 사람들을 자의적으로 체포하거나 장기간 독방에 감금시킨다. 가족들은 이들의 행방이나 운명에 대해 전혀 알 수 없다. 따라서 정치범으로 수감된 사람들은 강제실종의 피해자가 된다. 피의자를 행방불명 처리해버리는 것은 주민들에게 공포감을 주입하고자 하는 의도적 장치이다.

840 고문 사용은 북한 내 심문 과정에서 고질적으로 일어나는 행태이며, 이는 특히 정치범죄 관련 사건에서 두드러진다. 수감된 피의자들을 고의적으로 굶기거나 비인도적인 환경하에 둬으로써 이들이 자백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죄를 덮어씌우도록 한다.

841 중대한 정치범죄에 연루된 자들은 재판이나 사법 절차 없이 정치범수용소(‘관리소’)로 “사라져 버린다.” 그곳에서 그들은 독방에 감금되며, 가족은 그들의 생사조차 확인할 수 없다. 예전에는 연좌제에 따라 북한 당국이 정치범의 가족 모두(조부모 및 3대를 포함)를 정치범수용소로 보냈다. 이러한 사례는 아직까지 존재하지만, 과거에 비해 감소하는 추세이다.

842 북한의 정치범수용소에서는 고의적 굶주림, 강제노동, 처형, 고문, 성폭행, 처벌에 의해 부과되는 생식권 박탈, 강제낙태 및 영아살해 등으로 인해 수감자의 수가 점차 감소해왔다. 조사위원회는 지난 50년간 이러한 수용소에서 수십만 명의 정치범들이 죽어갔을 것으로 추정한다. 북한의 정치범수용소(‘관리소’)에서 수감자들에게 가해지고 있는 끔찍한 참상은 20세기 전체주의국가의 수용소에서 벌어졌던 비극과 유사하다.

**843** 북한 당국자들은 정치범수용소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지만, 전직 경비병, 수감자 및 수용소 인근 거주자들의 증언을 통해 이는 거짓임이 드러났다. 또한 위성사진을 통해서도 북한의 정치범수용소가 계속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치범수용소와 수감자들의 수는 사망자 및 일부 석방된 사람들로 인해 다소 감소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8만 명에서 12만 명 사이의 정치범들이 아직까지 4개의 대규모 정치범수용소에 수감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844** 북한의 일반 수감 체제에서도 중대한 인권 침해가 이루어지고 있다. 여기에는 노동교화소 및 다양한 단기 강제노동 수감 시설이 포함된다. 수감자의 대다수가 재판 없이 감옥으로 보내지거나 국제법에 명시된 공정한 법적 절차를 무시한 재판을 받은 채 자의적으로 구금된 피해자이다. 또한 많은 일반 수감자들은 사실상 정치범이며, 이들은 국제법에 부합하는 실질적인 이유가 없이 수감되어 있다. 일반 감옥에 있는 수감자들은 고의적 굶주림이나 불법 강제노동에 조직적으로 동원된다. 경비병 및 동료 수감자들에 의한 고문, 성폭행,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자의적인 가혹행위가 광범위하고 처벌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845** 북한 당국은 국가 정책에 따라 종종 심각한 범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치범죄 혹은 기타 범죄에 대한 책임을 물어, 재판을 통해서 또는 재판 없이, 공개적 혹은 비밀리에 처형을 집행한다. 정기적으로 공개처형을 하는 이유는 일반 주민들에게 당국에 대한 공포감을 조성하기 위해서이다. 공개처형은 1990년대에 가장 많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오늘날까지 없어지지 않고 있으며, 2013년 후반엔 정치적 동기에 의한 공개처형이 갑자기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 F. 외국인 납치 및 강제실종

846 강제실종은 정부의 다양한 부서나 지위의 공무원 또는 정부를 대신하거나 정부의 직·간접적인 지원, 동의나 묵인하에 행동하는 조직된 집단이나 사적 개인이 사람들을 체포, 구금 또는 이들의 이들의 의사에 반하여 납치하거나 다른 방법에 의해 이들의 자유를 박탈하고, 관련된 사람들의 운명이나 행방을 밝히기를 거부하거나 이들의 자유박탈 인정을 거부하여, 이러한 사람들을 법의 보호 밖에 두는 것이다.<sup>1282</sup>

847 강제실종선언 제1조에 따르면,

1. 강제실종과 관련된 모든 행위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범죄이다. 이는 유엔헌장의 목적을 부인하는 것이며 세계인권선언에 명시되고 국제적 문서를 통해 재천명 및 발전된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중대하고 명백한 위반이다.
2. 강제실종과 관련된 모든 행위는 실종된 사람들을 법의 보호 밖에 두고 그들과 그들의 가족에게 심각한 고통을 주는 것으로 간주된다. 이는 국제법상 보장된 법 앞에 인간으로 인정받을 권리, 개인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 고문 및 그밖에 잔혹하고,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을 받지 않을 권리를 위반하는 것이다. 이는 또한 생명권 침해 또는 중대한 위협이다.

### 1. 납치 및 기타 강제적이고 비자발적인 실종의 시기 및 유형

(a) 1950~1953년: 6·25전쟁 당시 한국 민간인 납치

848 6·25전쟁 당시 북한은 남한에서 수천명의 사람들을 그들의 자택 혹은 자택 부근에서 북한으로 강제로 데려갔다. 6·25전쟁이 발발한 1950년 6월 25일부터

1282\_ 강제실종선언, 1992년 12월 18일 유엔 총회 결의 47/133호로 채택.

정전협정에 서명한 1953년 7월 27일까지 자행된 38선 이남에 거주하는 군인이 아닌 일반인의 북한으로의 납치와 이주는 민간인 납치에 해당한다. 이러한 납치 피해자들은 주로 전시납북자라 불린다.

**849** 6·25전쟁 당시 붙잡혀 북으로 강제이주된 한국 민간인들의 정확한 숫자는 알려진 바가 없다. 그러나 약 8만 명에서 10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다.<sup>1283</sup> 몇 년의 철저한 조사 끝에, 전시납북자의 생사와 소재를 확인하는 데 전념하고 있는 민간단체인 6·25전쟁 납북인사가족협의회(KWAFU)는 산하 연구기관인 한국전쟁납북사건자료원(KWARI)이 실시한 조사를 바탕으로 총 9만 6,013명의 6·25전쟁 납북자 명단을 작성하였다.<sup>1284</sup> 이 명단은 한국 정부와 납북피해자 가족회가 납치 직후 수집한 납북자들의 세부 정보에 기반한 것이다. 이 명단은 피해자 가족 및 목격자들로부터 얻은 자료와 증언에 의해 보완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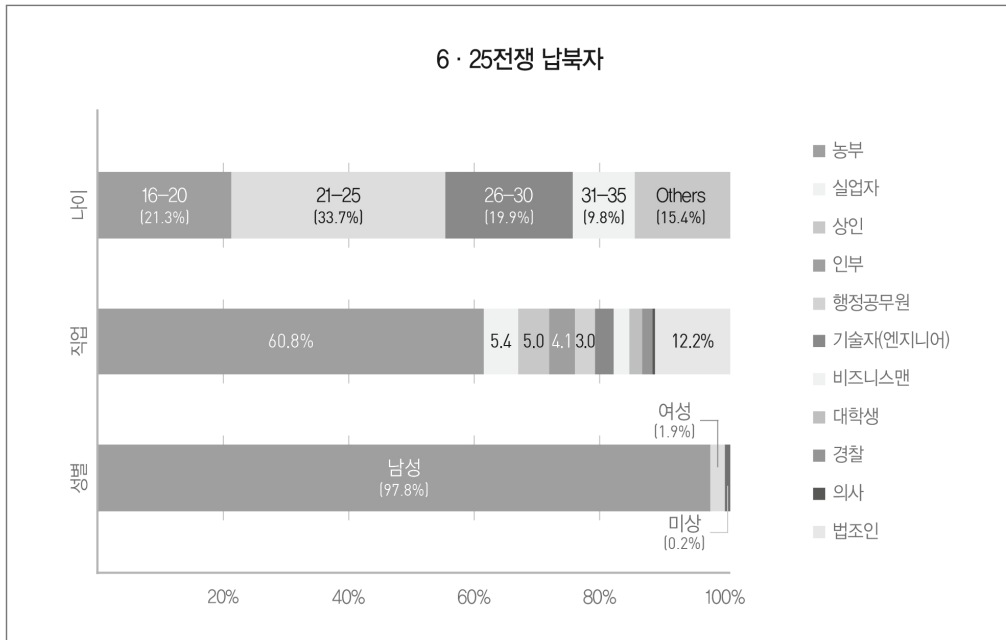
**850** 이러한 납북은 광범위하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는 당국이 정책적으로 사전에 계획하고 자행한 것임을 말해준다. 6·25전쟁 납북인사가족협의회가 제출한 96,013명의 명단에 따르면 이러한 납북은 농작, 건설노동 그밖의 기술적인 영역에서 경험이 있는 청년들을 충원함으로써 사회주의국가의 사회 기반 시설을 건설하고 유지하기 위해 계획된 작전임을 알 수 있다.<sup>1285</sup> 조사위원회에 제공된 아래의 통계는 납북자들의 직업 구성을 보여준다:<sup>1286</sup>

1283\_ 조사위원회 제출: HRNK, 2013년 11월 1일, 79쪽; KINU,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2), p. 488; 국가인권위원회, 서울 공청회, 2013년 8월 22일, 오후.

1284\_ 조사위원회 제출: 6·25전쟁 납북인사가족협의회(KWAFU).

1285\_ 조사위원회 제출: 6·25전쟁 납북인사가족협의회(KWAFU).

1286\_ 한국전쟁납북사건자료원(KWARI),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 6·25전쟁납북자료화보집 (2012), pp. 16~18.



**851** 납북은 조선노동당의 군인들에 의해 자행되었다. 군인들은 조사할 것이 있어 억류될 것이라는 내용을 인지시킨 후 집이나 직장에 있던 민간인들을 데려간 뒤 집으로 돌려보내지 않았다.

- 서울 공청회 당시 김남주 씨는 총무로에서 전기사업을 하던 아버지의 납북에 대해 증언하였다. 사복을 입은 두 명의 남자가 김씨 아버지 가게로 찾아와 아버지를 찾았다고 한다. 아버지가 나타나자 조선인민군 세 명이 나타나 그의 아버지를 데려갔고, 그 후 다시는 아버지를 볼 수 없었다고 한다. 이후 북한 요원들이 김씨의 형들을 잡아가려고 집에 다시 찾아왔지만 다행히 피할 수 있었다고 한다. 김씨는 다음과 같이 조사위원회에 말하였다: “한때는 행복했던 우리 가족이 한 순간에 무너졌습니다 … 60년이 지난 지금도 그 때 겪은 고통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여전히 고통 속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생각하면 눈물이 납니다.”<sup>1287</sup>

1287\_ 서울 공청회, 2013년 8월 23일, 오후(02:55:00).

**852** 또한 실용적인 기술과 전문성을 지닌 다수의 청년들 이외에 의료, 법, 공공 업무(governance) 분야에서 숙련된 전문가들도 납북의 대상이었다. 한국의 안보, 정보 부서에 종사했던 이들도 납북의 대상이었다. 6.25전쟁 납북인사가족협의회에 따르면 납북자들 중 공무원 2,919명, 경찰 1,613명, 법조인 및 변호사 190명, 의사 424명이 포함되어 있다.

- 납북된 경찰의 아들 최광석 씨가 조사위원회에 증언한 바에 따르면 그의 아버지는 납북 대상이 될 것이 두려워 자신의 경찰제복이나 경찰이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모든 물건을 숨겼다고 한다. 이러한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의 아버지는 잡혀갔고, 그의 가족은 다시는 아버지를 볼 수 없었다.<sup>1288</sup>

“아시다시피 저희 아버지는 경찰과 비슷한 보안부서에서 일했습니다. 아버지는 저에게 경찰제복과 관련 서류들을 지하에 숨기라고 하셨습니다 … 제가 지하에서 서류와 제복을 숨기는 동안 아버지를 찾아온 공산당들과 아버지가 나누는 대화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저희 아버지에게 동행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아버지를 붙잡아 간 것입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걸 마지막으로 들었을 때 아버지는 어머니, 그러니까 저의 할머니에게 작별인사를 했습니다. 그 때가 제가 아버지 목소리를 들은 마지막이었습니다.”<sup>1289</sup>

- 박명자 씨는 아마 북한 밖에 생존하고 있는 마지막 납북자일 것이다. 6·25전쟁 당시 그녀가 일했던 병원의 의료진 중 절반 가량의 사람들과 함께 납북된 경험에 대하여 이야기하였다. 박씨는 북한군이 서울대 병원을 장악하고, 함경남도 함흥에 병원을 짓기 위해 병원 의료진의 절반을 납치한 것에 대해 조사위원회에 증언했다: “우리는 산간 지역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우리 - 의사, 간호사, 원무과 직원들 - 는 너무 지쳐있었습니다. 다리는 힘이 다 빠졌는데 그들은 지친 사람은 아무나 밖으로 나오라고 했습니다. 손을 든 사람들은 밖으로 나갔고, 처형되었습니다. 우리는 너무 겁에 질려 그들을 따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다리는 풀리고, 그들은 우리를 계속 때리면서 걸게 했습니다.”<sup>1290</sup>

1288\_ 서울 공청회, 2013년 8월 23일, 오후(03:01:00).

1289\_ 서울 공청회, 2013년 8월 23일, 오후(03:00:00).

1290\_ 서울 공청회, 2013년 8월 23일, 오후(02:13:30).

853 6·25전쟁 납북인사가족협의회가 조사위원회에 제출한 사료들에 따르면 납북은 우발적 침해가 아닌 북한의 중앙 기관들이 노동과 기술을 충당하기 위한 구체적인 목적하에 자행된 것이다. 북한의 자료에 따르면 특정 기술과 전문성을 갖춘 인력에 대한 다양한 요구가 있었다.<sup>1291</sup> 예를 들어 북한이 남한을 급습하기 직전인 1950년 6월 6일 국가안전보위부(Ministry of National Protection)가 조선노동당에 보낸 긴급 문서에 의하면 필요한 인력을 범주화하여 엔지니어, 약사, 의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하였다.<sup>1292</sup> 한국정부의 문서 및 전시에 외국 정부 기관에서 주고 받은 전보에 의하면, 이들 정부가 전시납북에 대한 세부 정보를 인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sup>1293</sup> 예를 들어 기밀해제된 러시아측 자료에 따르면 당시 주목한 러시아 대사가 1950년 8월 17일에 본국으로 보낸 서신에는 서울 시민들을 북한 농장으로 이송시키는 결정을 담고 있는 1950년 7월 17일자 북한 문서가 번역되어 있다.<sup>1294</sup>

854 전시납북의 근본목적은 노동력과 전문기술 확보와 동시에 남한의 역량에 손상을 가하기 위한 것이다. 북한에서 노동력과 전문기술에 대한 필요는 전쟁으로 인해 북한의 자체적 인구 감소, 광복 직후 북한 당국으로부터 박해 받던 주민들의 이탈로 증가하였다.<sup>1295</sup> 광복 후 38선 이북에 북한이 수립된 이후 새로 세워진 사회주의국가는 사유재산을 몰수하고 지주, 지식인 및 종교인들 같이 사회주의국가에

1291\_ 예를 들면, “Regarding Bringing Intellectuals from South Korea” 김일성전집, 제4권, 1946년 7월 31일; “Yeonchun Resident Project Report,” 1949년 8월 5일; “The Demand for Key Technical Personnel,” 1950년 6월 6일; “Special treatment for Experts,” 1960년 6월 27일; “Gang Won Internal Affairs No 3440,” 1950년 9월 5일.

1292\_ “Order issued by the DPRK Ministry of National Protection entitled ‘The Demand for Key Technical Personnel,’” 1950년 6월 6일, 6.25전쟁 납북인사가족협의회(KWAFU) 제공.

1293\_ 예를 들면, “A Secret Telegram to the US from Muccio, the American Ambassador to Korea” 1951년 12월 19일 기록; “A telegram by the American Embassy in Japan,” 1950년 10월 13일 기록; “The 18th Decision of the North Korean Army Committee: Classified Russian Document,” 1950년 8월 17일 기록.

1294\_ 한국전쟁납북사건기록원(KWARI),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 6·25전쟁납북자료화보집 (2012), p. 47.

1295\_ Ⅲ장 참조.

위협이 되는 사람들에게 가혹한 조치를 취하였다. 그 결과 이들 중 많은 사람들이 남한으로 이탈하였고, 이에 따라 노동력 부족이 초래되었다. 또한 납북은 남한에 혼돈과 혼란을 일으키기 위해 자행되었는데, 이는 숙련된 전문가들과 젊은이들의 부족으로 전후 복구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납북을 자발적 망명으로 묘사함으로써 사회주의의 꿈을 전파하기 위함이었다. 전쟁 발발 전인 1949년 8월 5일자 문서는 “남한의 반공산주의 집단을 북으로 데려와 그들을 분열시키고 파괴한다”는 북한의 정책을 보여준다.<sup>1296</sup>

**855** 정전협정에 따르면 1950년 6월 24일 이후 휴전선을 넘어간 민간인들이 귀향을 원한다면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양측 지휘관들은 이를 허용하고 협조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sup>1297</sup> 국제인도법 또한 무력분쟁시 억류된 민간인들을 본국으로 송환시킬 것을 요구한다.<sup>1298</sup> 이런 의무에도 불구하고 1950년 6월 24일 이전에 남한에서 휴전선을 넘어가 전쟁 종결시까지 북한에 체류하던 민간인 중 남한으로의 송환이 이루어진 경우는 한 건도 없었다. 6·25전쟁 이후 북한은 다수의 사람들이 자의로 북한에 왔다고 주장하면서 전시납북을 지속적으로 부인해 왔다.<sup>1299</sup> 예를 들

1296\_ “Yeonchun Resident Project Report,” 1949년 8월 5일, 6·25전쟁 납북인사가족협의회(KWAFU) 제공.

1297\_ 한국정전협정, 제3조59항 1목: 본 정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하는 당시에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의 군사통제지역에 있는 자로서 1950년 6월 24일에 본 정전협정에 확정된 군사분계선 이북에 거주한 전체 私民에 대하여서는 그들이 귀향하기를 원한다면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은 그들이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돌아가는 것을 허용하며 협조한다; 본 정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하는 당시에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사령관의 군사통제지역에 있는 자로서 1950년 6월 24일에 본 정전협정에 확정된 군사분계선 이남에 거주한 전체 私民에 대하여서는 그들이 귀향하기를 원한다면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은 그들이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에 돌아가는 것을 허용하며 협조한다. 각방 사령관은 책임지고 본 규정의 내용을 그의 군사통제지역에 광범히 선포하며 또 적당한 民政당국을 시켜 귀향하기를 원하는 이러한 전체 사민에게 필요한 지도와 협조를 주도록 한다.

1298\_ 북한이 비준한 1949년 제네바 제4협약 제134조에 따르면, “체결국은 적대행위나 점령이 종료된 후 피구금자들이 모두 마지막 체류지로 송환될 수 있도록 보장하거나 본국으로의 송환을 가능하게 하도록 노력해야한다. 똑같은 의무는 국제법상 관례에도 명백하게 확립되어 있다.” 국제적십자위원회 연구 참조, 규칙 128.

1299\_ 예를 들어, 정전협정 당시 북한은 민간인을 납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당신 [유엔군사령부]는 우리



어 2013년 6월 30일, 김정은은 북한 공식 신문인 ‘노동신문’을 통해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전달하였다:

“[6·25전쟁 납북자들은] 현재 꼭두각시 여당 아래 이전보다 훨씬 더 호들갑을 떨고 있다 … 귀순자들의 경우, 그들은 강요를 받은 것이 아니라 그들의 정치적 신념과 재 통합, 그리고 민족양심에 따라 애국영웅적인 시도를 한 것이다.”<sup>1300</sup>

**856** 1956년 국제적십자위원회를 통해 전시납북자들의 생사 확인을 “실향사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북한 측에 요청하였다. 당시 제출된 7,000명 중 337명에 대한 정보만이 제공되었다.<sup>1301</sup> 더 많은 수의 납북자에 대한 정보 요청에 대해서는 “납북”이나 “납북자”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반박을 받았다. 2012년 6·25전쟁 납북인사가족협의회는 현재까지 생사확인이 되지 않은 96,013명의 전시납북자의 명단을 국제적십자위원회에 제출하면서 이들의 생사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하였다. 아직까지 북한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납북 이후 경과된 시간을 감안할 때, 많은 수의 전시납북자들이 살아있을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강제적 또는 비자발적 실종에 관한 실무그룹(WGEID)에도 진정서가 접수되었다. 하지만 북한의 협조 부진으로 실무그룹 역시 어떤 정보도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

군대가 남쪽으로 진격했을 때 우리가 사람들을 북한으로 데려갔다고 하는데: 내가 어제 말했듯이, 우린 그럴 필요도 없었고, 그렇게 하지도 않았다”: 군사정전협정의 회의록, 제10차 회기, 1952년 1월 2일, 유엔총사령부 기록, 한국전쟁납북사건기록원(KWARI),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 한국전쟁납북자료화보집(2012), p. 57; 유엔인권이사회 제13차 회기 북한의 보편적 정례인권검토 당시, 북한측 대표가 “납치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함, A/HRC713/13, 2010년 1월 4일; “조국전선 남조선당국이 ‘전시납북자’ 규정을 단죄” (South Korean Authorities Played for Branding Pro-Reunification Champions as “Wartime South Korean Abductees”), KCNA, 2013년 6월 28일. <http://www.kcna.co.jp/calendar/2013/06/06-28/2013-0628-012.html>; “DPRK insists there were no Korean War Kidnappings,” *New Focus International*, 2013년 3월 29일. <http://newfocusintl.com/Korean-war-kidnappings/> 참조.

1300\_ “Ridiculous [War Abductees] fuss,” *Rodong Sinmun*, 2013년 6월 30일.

1301\_ 조사위원회 제출: 6·25전쟁 납북인사가족협의회(KWAFU).

857 전시납북자들은 북한에 정착한 이후 극심한 차별을 당하고 제대로 대우받지도 못하였다. 특수 기술과 전문성으로 선택되었음에도 자산보다는 적으로 인식되었다. 당국의 이념을 전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자들은 특히 심각한 처벌을 받고 밀착 감시를 받았다. 대부분이 오지의 광산으로 보내졌다. 많은 이들이 강제노동수용소와 정치범수용소로 사라졌다.<sup>1302</sup> 66,000명 가량의 남한 민간인들이 북으로 강제적으로 옮겨진 이후인 1950년 9월 5일, 강원도에 위치한 북한의 내무성은 해당지역 및 시 관할 내무부에 문건을 교부하였는데, 여기에는 완곡어법으로 표기된 “해방된 서울 시민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있었다. 이 문건은 그들을 색출, 심문 및 감시하도록 지시하고 있다. 이 문건에 따르면 각 공장과 광산, 그리고 작업장은 그들의 관할 아래 있는 과거 서울 주민에 대한 “채용 노동자” 명단을 작성하고, 정기적으로 그들을 심문하고 “그들이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하지 않도록 모든 행동을 감시하며, 만일 도망할 경우 바로 체포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지시하고 있다.<sup>1303</sup>

- 조사위원회가 청취한 한 증언에 따르면 훈련된 권투 선수였던 증언자의 삼촌은 신체적 기술 때문에 납북된 뒤 간첩으로 훈련되었다고 하였다. 한국에 남아있는 가족들에 대한 감시가 강화되자 이 권투 선수의 여형제와 두 명의 남형제들은 북으로 귀순하였다. 권투 선수는 남형제 중 한 명과 함께 살았고, 나머지 남형제와 여형제는 북에서 각자의 가족을 꾸리며 살았다고 한다. 그의 대가족은 평양에서 꽤 잘 살았다고 하는데, 이는 권투 선수의 정보원 내 상관인 한국으로 가기 위해 북한을 떠나기 전까지였다고 한다. 이후 권투 선수는 부서 내에 있던 모든 사람들과 함께 처형되었다. 권투 선수와 함께 살던 형제도 처형되었다. 따로 떨어져 가족을 꾸리며 살던 다른 형제는 연좌제로부터 자신의 가족을 구하기 위하여 자살을 시도하였다. 이 형제와 그의 가족 모두가 나중에 죽임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권투 선수의 여형제와 그녀의 딸(증언자)은 오지의 광산 지역으로 보내졌다.<sup>1304</sup>

1302\_ 서울공청회 증언자들, 2013년 8월 23일, 오후; TSH030.

1303\_ “Gang Won Internal Affairs No 3440,” 1950년 9월 5일, 6.25전쟁 남북인사가족협의회(KWAFU) 제공.

1304\_ TSH030.

- 민간인 납북자의 딸이 조사위원회에 증언한 바에 따르면 1977년 또는 1978년에 한국 주민들은 산악지역으로 추방되었다고 한다. 그녀의 아버지가 대학교수로 일하면서 그녀의 가족은 도시에 살았다고 한다. 하지만 1977년 그들은 한국에서 온 다른 가족들과 함께 외진 산속으로 추방되었다. 그녀는 “추방된 이후 우리는 사람보다 못한 취급을 당하였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sup>1305</sup>

**858** 전시납북자들은 북한을 떠나 한국으로 돌아갈 자유뿐만 아니라 남한에 있는 가족 또는 정부 관계자들과 소식을 주고받을 권리조차 허용되지 않았다. 대부분 결혼(남한에서 결혼한 경우 재혼)을 하였고, 가장 낮은 ‘성분’이 됨으로써 몇 대에 걸쳐 그들과 그의 자손들은 교육과 취업의 기회가 박탈되었다. 여러 증언자들은 조사위원회에 그들의 ‘성분’이 “적대 계층”으로 분류되었다고 증언하였다.<sup>1306</sup>

**859** 전시납북자의 딸이었던 한 여성은 그녀의 아버지가 남한출신인 것을 알게 된 그녀의 남편이 이혼을 강요하였다고 한다.<sup>1307</sup>

**860** 한국 민간인 납북은 계획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북한과 외국 자료를 통해 노동력의 필요성과 한국 국민들을 북한에 재정착시키려는 계획-특히 농장 노동자들과 납북자들에 대한 북한의 처우를 확인할 수 있다. 조사위원회에 제출된 증언자들의 증언은 대규모 강제 재정착과 특정 전문가들을 겨냥한 것임을 나타낸다. 조선인민군에 의해 납북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전시 민간인 납치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일성의 지휘 아래 자행되었다는 결론을 더욱 확증한다. 조사위원회는 조선인민군이 김일성의 지시에 따라 당시 전시 상황을 이용하여 민간인들을 북한으로 강제로 데려갔고, 휴전 후 이들 민간인들에게 한국에 돌아갈 기회를 주지 않은 것으로 파악한다.

1305\_ TSH032.

1306\_ TSH030, TBG001 및 서울 공청회 증언, 2013년 8월 23일, 오후.

1307\_ TBG001.

## (b) 1953년: 국군포로들에 대한 본국 송환 거부

**861** 6·25전쟁 정전 당시 약 8만 2,000명의 한국군이 실종된 것으로 추산된다.<sup>1308</sup> 5만 명에서 7만 명 정도가 국군포로(prisoners of war: POW)로 잡혀가 북한이나 북한 동맹국에 억류되어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sup>1309</sup> 스탈린, 김일성, 저우언라이, 그리고 다른 정부고위층의 회담에 대한 소련의 의정서에 따르면 1952년 9월 북한은 3만 5,000명의 한국 국군포로를 억류하고 있었다.<sup>1310</sup> 정전협상 중 김일성은 스탈린에게 북한은 약 7,500명의 한국군인을 전쟁포로로 데려갔다고 인정하였다고 하였다. 김일성에 따르면 그 외에도 그들의 존재가 남한이나 언론에 공개되지 않은 27,000명의 국군포로가 있었다. 북한에서 중국인민지원군을 지휘한 사령관 평덕화이는 같은 회담에서 중국군이 전쟁에 참전하여 4만 명의 한국 국군포로를 데려갔다고 밝혔다.<sup>1311</sup>

**862** 정전의 즉각적인 결과로 1953년 4월과 1954년 1월 사이 한국으로 송환된 국군포로는 8,343명에 불과하였다.<sup>1312</sup> 이러한 수치와 김일성과 평덕화이가 스탈린에게 보고한 수치의 차이를 감안할 때, 조사위원회는 최소 5만 명의 한국 국군포로가 본국으로 송환되지 않았다고 파악한다.

1308\_ 정전 당시 유엔군사령부가 집계하기를 약 82,000명의 한국군이 실종되었다고 함: KINU,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3), p. 541.

1309\_ Heo Man-ho, "North Korea's Continued Detention of South Korean POWs since the Korean and Vietnam Wars," *The Korean Journal of Defence Analysis*, vol. 14, No. 2 (Fall 2002), p. 142; Wada Haruki, *The Korean War* (New York,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2013), p. 289.

1310\_ 소련 기록 "Record of a Conversation between Stalin, Kim Il Sung, Pak Heon-yeong, Zhou Enlai, and Peng Dehuai," 1952년 9월 4일, History and Public Policy Program Digital Archive, Translated into English from the original by Gary Goldberg. <http://digitalarchive.wilsoncentre.org/document/114936> 참조.

1311\_ 한국 포로와 관련된 대화에서는 약 8,000명이 중국군이 억류하고 있는 40,000명 외에 추가로 송환이 되었다는 것인지, 40,000명의 한국 포로 중 8,000명이 중국군에 의해 억류되어 있었던 것인지 불분명함.

1312\_ KINU,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3), p. 541.

863 이들 중 약 500명의 생존자들이 아직 북한에 억류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sup>1313</sup> 한국이나 북한 밖의 다른 곳에 거주하고 있는 국군포로 가족은 400명에 이른다.<sup>1314</sup>

864 국제인도법은 적극적인 적대행위가 종료된 후 전쟁포로를 지체없이 석방하고 송환할 것을 요구한다.<sup>1315</sup> 또한 체결된 정전협정은 포로들의 송환이 언제 그리고 어떻게 이루어져야하는지에 대한 의무를 명시한다.<sup>1316</sup> 정전협정에 서명함으로써 각국이 동의한 바에 따르면:

본 협정이 효력을 발생한 후 60일 이내에 각방은 그 수용하에 있는 송환을 견지하는 전체 전쟁포로를 포로 된 당시에 그들이 속한 일방에 집단적으로 나누어 직접 송환 인도하며 어떠한 저해도 가하지 못한다.<sup>1317</sup>

865 이 협정은 적십자가 어떻게 송환에 필요한 절차를 용이하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자세히 명시하고 있다. 전쟁포로송환위원회가 각종 분쟁과 방식에 대해 중재한다.<sup>1318</sup> 전쟁포로송환위원회가 전쟁포로 송환계획을 완수한 때에는 군사정전위원회가 즉시로 이를 해산한다.<sup>1319</sup> 국제법상 이러한 의무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수

1313\_ KINU,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3), p. 541 참조. 서울 공청회 증언자 유명복, 2013년 8월 23일, 오후(00:20:30). Institute for Unification Education “Issue of Abductees and POWs” 2012에 따르면 약 560명의 국군포로가 생존하고 있음.

1314\_ KINU,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3), p. 542.

1315\_ 북한이 비준한 1949년 제네바 제3협약 제118조, 첫 문단에 따르면: “포로는 적극적인 적대행위가 종료한 후 지체없이 석방하고 송환하여야 한다.” 1899년과 1907년 헤이그조약을 기반으로, 이 의무는 관습국제인도법에도 나타나 있음. *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 Customary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vol.1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5), p. 451 [Rule 128] 참조.

1316\_ 정전협정 제3조제51~58항.

1317\_ 정전협정 제3조제51항 ㄱ목.

1318\_ 정전협정 제3조제56항 ㄴ목.

1319\_ 정전협정 제3조제56항 ㄷ목.

천명의 한국 국군포로를 송환하지 않았을 뿐더러 향후 송환 가능성에 대해서도 명백하게 제시하지 않았다.

**866** 당시 북한과 소련, 그리고 중국의 지도자들이 나눈 대화에 대한 기록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김일성은 그의 수하에 있던 모든 국군포로를 송환하려 하지 않았다. 오히려 북한은 대다수의 한국 국군포로를 조선인민군 부대로 편입시킴으로써 그들의 존재와 행방을 감추었다. 김일성은 스탈린에게 이렇게 편입된 국군포로의 존재를 외부에 알리지 않았다고 보고하였다:

“우리가 제출한 명단에 따르면 우리가 데려간 남성 포로의 수는 총 1만 2,000명이며, 이중 4,416명이 외국인, 그리고 나머지가 남한인들이다. 포로 중 300명은 미국 조종사이며, 이 중 30명이 장교들이다. 약 2만 7,000명의 남한인들이 조선혁명군 부대로 옮겨졌다. 이 전쟁포로들은 언론에 공개되지 않았다.”<sup>1320</sup> (강조)

**867** 조사위원회는 송환되지는 않았지만 이후 탈북하는데 성공한 한국 국군포로들로부터 증언을 확보했다. 2012년 9월까지 80명의 국군포로가 한국으로 돌아왔다.<sup>1321</sup> 관련 증언과 보고서에 따르면 전쟁초기 붙잡힌 국군포로들은 조선인민군으로 편입되기 전 몇 개월 동안 재교육(사상교육)을 받았는데,<sup>1322</sup> “이제 그들은 한국을 해방시키는데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들었다고 한다.<sup>1323</sup>

**868** 소수는 자발적으로 북한군에 입대하였다. 과거 국군포로의 설명에 따르면

1320\_ Kim Il-sung, “Record of a Conversation between Stalin, Kim Il Sung, Pak Heon-yeong, Zhou Enlai, and Peng Dehuai”에 인용, 1952년 9월 4일, History and Public Policy Program Digital Archive, Gary Goldberg 번역, <http://digitalarchive.wilsoncentre.org/document/114936>.

1321\_ KINU,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3), p. 542.

1322\_ TBG015, TJH029.

1323\_ TBG008.

그가 조선인민군에 자발적으로 입대하면서 다친 이들을 위해 병원에서 일을 했는데 그는 더 이상 국군포로로 취급되지 않고 전쟁 이후 북한군과 똑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한다.<sup>1324</sup> 또 다른 과거 국군포로가 조사위원회에 증언한 바에 따르면 억류된 이후 북한군에 자발적으로 입대한 이들의 문서에는 “39번”이라고 표시되었고, 남한 붕괴시 책임 있는 지위를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한다.<sup>1325</sup>

**869** 하지만 대다수의 경우 조선인민군에 (비자발적으로)편입되는 것은 “건설여단”으로 재편성되는 것을 뜻하였다. 이는 전원 국군포로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최북단의 탄광과 공장, 농촌에서 강제노동을 하였다.<sup>1326</sup> 전쟁 당시와 전쟁 이후를 포함한 1956년까지 국군포로들은 이러한 강제 노역장에 위치한 수용소에 수감되었다.<sup>1327</sup> 정전협정 서명 이후, 중국과 소련군에 의해 구금되어 있던 국군포로들은 북한으로 넘겨져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sup>1328</sup>

**870** 당시 이런 상황에 처해있던 각 사람들은 1953년 정전협정 이후 본국으로 송환될 수 있는 공평한 기회를 제공받지 못하였다고 조사위원회에 증언하였다.

- 젊은 나이에 국군포로가 된 뒤 50년 이상이 지난 후에야 탈북할 수 있었던 유영복 씨는 그에게 송환 기회가 단 한번도 제공되지 않았다고 증언하였다. 대신, 그와 600명의 다른 국군포로들은 평안북도의 광산에서 강제노동을 하였다고 한다:  
“우리는 이곳 광산에서 강제노동을 하였는데 우리는 우리가 한국의 국군포로이며 왜 우리가 교환되지 않고 있는지, 왜 우리가 광산에서 일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였습니다. 북한 사람들은 그들도 모르겠다고 답하며 우리는 그저 시키는 일을 해야한다고 하였습니다 … 우리는 이것이 오래 걸릴 것이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남한과 북한의 관계가 개선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장교들 모두 살

1324\_ TJH030.

1325\_ TBG021.

1326\_ TBG007, TBG008, TBG015, TBG021, TJH029, TJH016.

1327\_ TBG021, TBG015.

1328\_ TJH029.

아있었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이 언젠간 우리를 찾고 구하러 올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하지만 50년이 흘렀고 아무도 우릴 찾으려 오거나 구하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그저 우리를 이용했습니다.”<sup>1329</sup>

**871** 다른 사람들은 박해에 대한 공포 때문에 송환되고 싶은 마음이 있냐는 질문에 정직하게 대답하기를 두려워하였다고 말하였다. 한 목격자가 설명하기를 어떤 경우에는 송환의사를 명확하게 밝힌 사람들은 사살되었다고 한다.<sup>1330</sup> 하지만 대부분의 증언자는 송환의사에 대한 질문을 받아보지 못했다고 증언하였다. 한 증언자의 설명에 따르면 누구든지 송환거부에 반대한 사람은 수용소에 묶어 두었다고 한다.<sup>1331</sup>

**872** 1956~1957년, 대부분의 국군포로들이 조선인민군에서 해방되어 민간인이 되었다.<sup>1332</sup> 퇴역에 앞서 국군포로들은 일반적으로 외진 지역의 광산으로 보내졌고 죽을 때까지 그 곳에서 생활하였다.<sup>1333</sup>

- 서울 공청회에서 과거 국군포로였던 유영복 씨가 설명하기를 그는 1953년 7월 정전협정 후 남한으로 송환될 것이라 믿었던 것과 달리 1953년 8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어렵고,” “허리를 휘게하는” 강제노동을 하도록 북한의 광산으로 보내졌다고 한다. 그가 조사위원회에게 한 증언에 따르면:  
“저는 북한에서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47년 동안 북한에서 일했습니다. 그들이 시키는 일은 모두 다 했습니다. 저는 수십 년간 강제노동을 하였습니다. 저는 북한에서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죽기 전에 가족이 살던 고향으로 돌아가 북한이 저에게 한 짓에 대하여 증언하고 싶습니다.”<sup>1334</sup>

1329\_ 서울 공청회, 2013년 8월 23일, 오후(00:08:00).

1330\_ TBG021.

1331\_ TJH029.

1332\_ TBG007, TBG008.

1333\_ TBG007, TBG008, TBG015, TBG021, TJH029.

1334\_ 서울 공청회, 2013년 8월 23일, 오후(00:39:00).



873 광산의 상태는 위험했고 작업 조건 또한 엄격하였다.<sup>1335</sup> 광산의 노예가 된 많은 노동자들이 사고나 광산 먼지로 인한 질병으로 죽었다.<sup>1336</sup> 폭발로 인해 팔 다리나 살이 떨어져 나가고 광산 내부의 붕괴가 노동자들을 덮치거나, 기계로 인해 노동자들이 밟히거나 깔려 죽는 일들이 종종 일어났다.<sup>1337</sup> 사정이 너무 안 좋았고 죽음과 심각한 부상도 매우 흔했으며, 한 증언자에 따르면 “절대 당신의 딸이 광부와 결혼하지 못하게 하라”라는 말이 있었는데, 이는 광부와 결혼하면 과부가 되어 가장의 소득 없이 살 확률이 매우 높았기 때문이다.<sup>1338</sup> 이 증언자는 20%의 광부들이 60세 정년을 맞지 못할 것이라고 추측했다.

- 유영복 씨의 설명에 따르면:  
“광산에서 일하는 것은 매우 원시적입니다. 제가 일하던 광산은 지하 1,000미터 아래까지 내려가야 했습니다. 공기가 나쁘고 작업 자체도 허리가 휠 정도로 중노동이었습니다. 북한 사람들도 그 광산이 가장 노동강도가 센 곳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매우 원시적으로 일했는데, 아무런 장비도 없었습니다.”<sup>1339</sup>

874 그들이 받는 대우에 대하여 항의하거나 한국으로의 송환을 주장한 국군포로들은 감옥이나 정치범수용소로 보내지거나 사라져버렸다.<sup>1340</sup> 이는 건설여단과 광산 내부에 공포감을 조성했으며 작업 환경에 대하여 노동자들이 비판하거나 시위는 물론 파업을 계획하는 것조차 막았다.

- 유영복 씨의 증언에 따르면:  
“그들은 우리들을 광산으로 강제로 데려갔습니다. 당연히 몇몇의 전우나 동료들이

1335\_ TBG021, TJH029, TJH030 및 서울 공청회 증언자 유영복, 2013년 8월 23일, 오후.

1336\_ TJH029, TBG021.

1337\_ TBG021, TJH029.

1338\_ TJH029.

1339\_ 서울 공청회, 2013년 8월 23일, 오후(00:14:30).

1340\_ TJH029, TJH016.

왜 국군포로인 우리들을 집으로 돌려보내주지 않는지 물었습니다. 몇몇은 일어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우리들은 그저 시키는 대로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동료들에게 동조해야 할 것 같은 분위기가 팽배했습니다. 그리고 북한 사람들에게 저항한 사람들은 공개처형을 당하거나 비밀리에 이송되었습니다. 나중에 그들이 정치범수용소로 옮겨졌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불평을 해봤자 회생 양이 되는 것을 안 우리들 대부분은 조용히 하기로 하였습니다.”<sup>1341</sup>

- 탈북에 성공한 또 다른 전 국군포로는 그들에게 불평이란 허용되지 않았고 항의한 사람은 혹독한 처벌을 받았다고 강조하였다. 그는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크게 이야기하였던 동료 오삼준 씨에 대해 회상하였다. 그는 정치범 혐의로 노동교화 15년 형을 선고받았다. 탄광에 다시 나타났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다시 영원히 사라졌다.<sup>1342</sup>

**875** 탄광에서 강제노동을 하던 국군포로들은 특히 인민보안부와 국가안전보위부의 엄격한 감시를 받았다.<sup>1343</sup> 국군포로들에 대한 기관들의 심문(주로 고문이 수반된)은 흔한 일이었으며 그들의 생활 일거수일투족이 알려지고 기록되었다.<sup>1344</sup> 북한 당국은 국군포로들과 전시납북자들의 감독과 탈주 예방을 위해 특별한 신경을 쓴 것으로 보인다. 또한 조사위원회가 청취한 증언들에 따르면 사전의 종합적인 감시로 인해 그들의 도주 계획이 마지막 순간에 국가안전보위부에 의해 발각되고 좌절되었다고 한다.

**876** 전 국군포로 한 명은 그의 여단이 평안북도에 위치한 국군포로 수용소로부터 탈출을 시도하였다고 설명하였다. 몇몇 국군포로들은 사건 당시 사살당했고 나머지는 붙잡혀 재판을 받았다. 재판 전 조사과정에서 증언자는 전기고문과 강제로 손톱을 뽑히는 고문을 당했고, 그 결과 기억상실증에 걸렸다고 한다. 재판 당시 35명

1341\_ 서울 공청회, 2013년 8월 23일, 오후(00:11:00).

1342\_ TJH029.

1343\_ TBG015, TBG002, TBG007.

1344\_ TBG002.

의 국군포로들이 사형을 선고 받았으며, 여단 중 가장 나이가 어렸던 증언자는 20년형을 선고 받았다고 한다.<sup>1345</sup>

**877** 좌절된 탈출시도는 연좌제로 가족들의 죽음으로까지 이어졌다. 조사위원회가 청취한 바에 따르면 함경북도에 위치한 국가안전보위부 구류장에서 여성 한 명이 그녀의 형제가 국군포로들의 탈출을 도우려던 계획이 좌절되자 붙잡혀 심문을 당하고 죽었다고 한다.<sup>1346</sup> 또 다른 증언자는 나이든 국군포로 두 명이 한국으로 돌아가기 위해 중국으로 건너가는 것을 도왔다가 제15호 요덕 정치범수용소(관리소)에 수용된 2명에 대해 증언하였다.<sup>1347</sup> 전 국군포로 한 명이 조사위원회에 밝히기를 그가 탈북한 뒤 그의 아내는 자살을 하였는데, 이는 아마 연좌제로부터 그녀의 아들을 구하기 위해서일 것이라고 하였다.<sup>1348</sup>

**878** 전시납북자들과 마찬가지로 국군포로들과 그의 가족들은 가장 낮은 ‘성분’으로 분류되었고, 그들의 자손들 또한 국군포로들에 대한 차별로 고통을 받았다. 조사위원회가 청취한 바에 따르면 많은 국군포로들과 국군포로들의 자손들이 그들이 겪은 차별에 대하여 진술하였다. 예를 들어 국군포로의 자식들은 고등교육의 기회를 박탈당하였다. 그들은 그들 가족과 마찬가지로 같은 광산에서 일하도록 배치되었으며, 일반적으로 광산에서 최악의 일을 맡도록 강제되었다.<sup>1349</sup>

- 전쟁이 끝난 수십 년 뒤 탈북하여 한국으로 돌아온 전 국군포로는 북한에 있는 그의 자식들이 ‘성분’분류로 인해 번창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었다고 조사위원회에 증언하였다. 얼마나 심했는지 하루는 그의 아들이 “우리는 도대체 왜 태어난 것입니

1345\_ TBG002.

1346\_ TJH024.

1347\_ TJH009.

1348\_ TBG002.

1349\_ TBG021, TBG008, TJH029, TBG015, TBG002.

까?”라고 물었다고 한다.<sup>1350</sup>

- 국군포로의 아들이었던 그가 아버지와 같은 광산에서 일하던 중 경비원과 친해진 뒤 자신의 문서에 43이라는 숫자가 표기되어 있는 것을 보았는데, 이는 국군포로들의 자식들을 표시하는데 사용하는 숫자이다.

**879** 조사위원회에 증언한 국군포로들 모두 탈북을 결정하게 된 우선적인 이유는 북한에서 태어난 그들의 자식들에게 더 나은 기회를 주기 위함이라고 밝힌다. 자식들과 손자들까지 교육과 고용의 기회가 박탈당하는 것은 일상적인 일이었다. 자녀들은 보다 심한 차별을 당했는데, 이는 국군포로 자녀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보다 나은 ‘성분’의 남자와 결혼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졌기 때문이다.<sup>1351</sup> 따라서 국군포로들의 자녀와 손녀들은 그들과 같은 낮은 ‘성분’의 남자와 결혼하는 수밖에 없었다. 이는 차별의 악순환을 영속시키고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될 확률을 높였는데, 이는 가장 낮은 ‘성분’의 남자들이 광산과 같은 어렵고 생명을 위협하는 환경에서 강제로 노동을 하게 되기 때문이다. 어떤 경우에는 자손들이 겪는 차별을 보며 그들의 삶을 개선할 수 없다고 느낀 국군포로들이 자살을 하기도 하였다.<sup>1352</sup>

**880** 국군포로들 중 조선인민군에 자발적으로 입대한 사람들은 조금 나은 대우를 받았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그들도 일반 주민과 마찬가지로 자유에 대한 같은 제한을 받았다.<sup>1353</sup>

- 한 증언자는 1951년 납북된 이후 병원에서 일하는 조선인민군에 동의, 입대하였는데, 그는 국군포로라는 취급을 받지 않고 그의 가족들 또한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았다고 하였다. 종전 후에는 그의 동의 없이 황해도에 위치한 홀동 금광으로 배정

1350\_ TJH029.

1351\_ TJH024.

1352\_ TJH029.

1353\_ TJH030.

되었는데, 지하에서 일해야 하는 직책은 아니었다.<sup>1354</sup>

**881** 전쟁 후 한국에 있는 가족들은 국군포로로 북한에 억류된 가족들에 대한 생사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어떠한 정보도 받지 못하였다. 가족들과 연락할 수도 없었다. 2000년 6월 남북 정상회담 이후 북한과 한국은 국군포로 문제를 이산가족 문제에 포함시켜 남북장관급회담과 남북적십자회담에서 다루기로 동의하였다.<sup>1355</sup> 2006년 2월, 제7차 남북적십자회담에서 양측은 “전쟁시기 및 그 이후 시기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사람들”과 이산가족의 생사확인을 하기로 합의하였다. 북한에 있는 국군포로들과 남한에 있는 가족들 사이의 접촉을 허용하는 이러한 과정은 환영받았다. 하지만 가족들 대부분 북한에 살아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국군포로들과 연락이 닿지 못했다. 몇 가족들에게 단지 몇 시간의 접촉만 허용되었다.<sup>1356</sup> 제2차에서 제 19차 남북 이산가족 상봉행사(2000년~2013년) 중 19명의 국군포로가 북한에 살아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으며, 22명은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105명은 미확인되었다. 겨우 17명의 국군포로만이 이산가족 상봉행사 중 한국의 가족들을 만날 수 있었다. 2013년 5월, 한국의 사단법인 “물망초(Dream Makers for North Korea)”는 국군포로신고센터를 설립하였다. 이 센터는 송환되지 않은 국군포로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밝히고자 한다.<sup>1357</sup>

**882**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국군포로들과 한국에 있는 가족들의 접촉을 허용하지는 약속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여전히 국군포로 문제는 정전협정에 의하여 진행된 국군포로 송환 당시 마무리되었다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그들은 북한에 남아있는 국군포로들은 모두 자발적인 것이라고 주장한다.<sup>1358</sup> 조사위원회에 증언한 전 국군

1354\_ TJH030.

1355\_ KINU,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3).

1356\_ 이산가족상봉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IV장 F 참고.

1357\_ 이 센터의 한국명칭은 물망초이다. 물망초 웹사이트, <http://www.mulmangcho.org/?c=2/21&p=2&uid=1310>.

포로들은 이러한 국군포로들이 자발적으로 남아있다는 북한의 주장을 부인한다.

- 서울 공청회에서 유영복 씨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북한은 여전히 북한에 단 한 명의 국군포로도 있지 않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당신이 남한에 집이 있고, 만약 당신이 남한에 부모와 형제가 있다면, 어느 누가 이렇게 저처럼 믿기 힘들 어려운 작업환경에서 일하며 왜 북한에 남아있고 싶겠습니까? 이건 너무 터무니 없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북한은 국군포로들이 그들이 원해서 북한에 남아 있다고 주장합니다. 북한의 신문에 따르면 [현재 북한에] 약 500명의 국군포로들이 살아있는데, 이들은 모두 70, 80세가 되었습니다. 북한 당국은 이러한 500명의 사람들을 남한으로 보내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 당국은 실제로 그들이 남한으로 탈북하거나 떠나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그들은 도망가는 이들을 붙잡아 처벌하고 처형합니다. 또한 국군포로들의 자식들까지 억압합니다 - 이것은 정말이지 비인도적입니다. 남한정부와 국제사회 모두 이를 이해하고 북한의 인권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sup>1359</sup>
- 추가적으로, 북한에 있는 국군포로들과 한국의 가족들이 영구적으로 재결합하는 문제에 대하여 유씨는 이렇게 호소하였다:  
 “북한에 살아있는 모든 국군포로들은 80세가 넘었을 것입니다 ... 그들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북한에 손자들이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그저 노인 한 명을 북한에서 남한으로 데려온다면, 북한에 가족을 두고온 그들이 어떻게 남한에서 살겠습니까? 따라서 만약 남한 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면 북한에 있는 국군포로들의 모든 가족들을 함께 남한으로 데려와야 할 것입니다.”<sup>1360</sup>

**883** 조사위원회가 청취한 주장들 중에는 유엔군 사령부하의 실종 군인의 생사, 특히 미국의 군인들과 관련한 내용도 있다. 6·25전쟁과 냉전 전쟁포로 및 실종자 가족 연합에 따르면 6·25전쟁 종전시 이루어진 국군포로 교환 당시 살아있었고, 석방된 이들과 함께 구금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던 미군들을 북한 당국이 넘겨주지 않았다고 한다. 이 연합의 주장에 따르면 그 숫자는 900명을 넘으며 4,500명까지도

1358\_ A/HRC/13/13, para. 81 (2010년 1월 4일).

1359\_ 서울 공청회, 2013년 8월 23일, 오후(00:20:00).

1360\_ 서울 공청회, 2013년 8월 23일, 오후(00:51:00).

육박할 수 있다고 한다.<sup>1361</sup> 1952년 9월 소련과 북한 및 중국군 지도자들의 전략회의에 대한 기록을 보면 당시 8,000명의 미군이 중국군에 의해 억류되었으며, 약 4,000명의 외국인을 북한이 억류하고 있었다. 같은 회의에서 중국군의 사령관 펑더 화이는 “많은 외국인 포로들이 힘든 물리적 환경으로 인해 사망하였다”고 인정하였다.<sup>1362</sup> 돌아오지 못한 미군들의 가족들은 북한과 중국, 소련 및 미국에 정보를 요청하였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항의하듯 충분한 협조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한다. 이로 인해 극심한 고통이 야기되었다.<sup>1363</sup>

### (c) 1955~1992년: 한국 국민들의 전후 납북과 강제실종

**884** 한국 국민들의 납북과 강제실종은 6·25전쟁의 정전협정 서명 이후에도 오랫동안 자행되었다. 약 3,835명의 한국 국민들이 6·25전쟁 종전 이후 북한에 의해 체포되거나 납북되었고,<sup>1364</sup> 그 중 3,319명이 1년 반 사이에 한국으로 귀환하였고, 9명은 나중에 탈북하여 귀환하였다.<sup>1365</sup> 516명의 한국 국민들이 여전히 북한에 의해 실종상태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1361\_ John Zimmerlee, 워싱턴 공청회, 2013년 10월 31일, 오후(00:12:00).

1362\_ “Record of a Conversation between Stalin, Kim Il Sung, Pak Heon-yeong, Zhou Enlai, and Peng Dehuai,” 1952년 9월 4일, History and Public Policy Program Digital Archive, NKIDP에게 Gary Goldberg가 번역 제공. <http://digitalarchive.wilsoncentre.org/document/114936>.

1363\_ 워싱턴 공청회, 2013년 10월 31일, 오후. 또한, 조사위원회 제출: Mark Sauter and John Zimmerlee, *American Trophies: How US POWs Were Surrendered to North Korea, China and Russia by Washington's "Cynical Attitude"* (Lexington, Kentucky, 2013).

1364\_ KINU,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3), p. 526.

1365\_ 한국, 통일부.

## (i) 어부들의 납북과 강제실종

**885** 납북자들 중 다수(89%)가 바다 위의 어선에서 붙잡힌 뒤 강제실종되었다. 어떤 경우에는 그들의 배가 북한 영해에 들어갔을 수도 있다. 다른 경우에는 공해나 한국의 영해에서 붙잡힌 것으로 추측된다. 총 124척의 한국 어선과 1,147명의 어부들이 북한에 잡혀갔다.<sup>1366</sup> 457명의 남한 어부들은 여전히 북한에 의해 실종 상태로 남아있다.

**886** 각 어선이 나포된 정확한 위치는 알려져 있지 않다. 하지만 전 북한 보안관계자로부터 전달받은 믿을 만한 정보에 따르면 모든 어선이 비슷한 방법으로 나포되었다고 한다.<sup>1367</sup> 북한의 전 보안관계자들에 따르면 어선과 어부들의 나포는 조선노동당의 해군부대에 의해 지휘되었다고 한다.<sup>1368</sup> 어선들이 나포된 뒤에 선원들은 몇 달동안 조사를 받았다. 대부분 조사가 끝나고 몇몇 선원들은 풀려난 반면, 나머지는 북한에 억류되었다.

**887** 북한의 선박 가로챌이나 나포는 한국에 바로 통보되었는데, 이는 본래 남한의 어선들이 들쭉 짝지어 이동하였기 때문에 두 번째 어선이 정부에 첫 번째 어선의 상태를 알렸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른 경우에는 두 척 모두 사라졌으며, 북한이 수개월 뒤 몇몇의 선원들을 풀어주기 전까지 그 선박과 선원들의 운명은 알려지지 않았다. 예를 들어, 1967년 6월 5일 최원모 씨는 풍복호에 타고 있다 붙잡혔는데, 1967년 9월 16일 8명 중 5명의 선원만이 다른 배를 통해 한국으로 귀환되었다.<sup>1369</sup> 억류된 선원들과 귀환된 선원들을 비교해보면 북한 당국자들이 주로 젊은 선원들을

1366\_ 조사위원회 제출: 한국 정부

1367\_ TLC022.

1368\_ TLC040, TLC022.

1369\_ 최성용, 서울 공청회, 2013년 8월 23일, 오전.



역류한 추세를 보인다. 전 북한 정보원의 증언에 따르면 가장 젊고 똑똑한 사람들을 데려가 사상교육을 시키고 간첩으로 만들었다고 한다.<sup>1370</sup> 그 밖의 다른 역류된 어부들은 다른 산업장으로 보내지기 전에 사상교육을 필수로 받아야 했던 것으로 추정된다.<sup>1371</sup>

**888** 특별한 경우 선박과 선원들의 납북을 확인하는데 매우 오래 걸리기도 하였는데, 이는 납북된 선원이 탈북 후 한국으로 돌아와서야 관련 정보가 알려진 경우이다. 예를 들어, 2013년 8월 탈북하여 한국으로 돌아온 한 어부는 41년 전 25명의 선원들과 함께 사라진 어선 한 쌍의 운명을 처음 확인해주었다.<sup>1372</sup>

- 1970년 나포된 배에 탑승하고 있던 어부 이재근 씨는 서울 공청회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1970년 4월 29일, 북한에서 두 척의 포함이 우리 배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배는 해상경계선으로부터 약 50마일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두 포함은 우리 배쪽으로 다가왔습니다. … 저는 한국의 해군이 다가오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10명의 무장한 북한 사람들이 우릴 향해 총을 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내려오지 않으면 죽인다’라고 우리에게 소리쳤습니다. 선장과 우리들 모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몰랐습니다. 우리는 그저 일어났습니다. 우리 선장은 당시 막 일어서던 참이었습니다. 그들은 선장에게 총을 쏘았습니다. 그들은 단 한가지 지시를 했는데, 만약 우리가 따라오지 않는다면 우리들을 바로 쏘 죽인다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무서웠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이 왜 그러는지, 무슨 일을 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물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시키는 대로 우리는 배에서 내려왔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들이 시키는대로 하지 않는다면 우리를 바로 죽이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이 시키는대로 식당으로 들어갔고 그들은 문을 닫았습니다. 북한에서 온 이 두 척의 포함은 한 시간 동안 우리 배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해상경계선을 넘으려던 순간, 제 생각에는 한국 해군이 우리를 발견하고 공격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배는 이미 38선을 지나 북한의 영해로 들어갔습니다. 그

1370\_ TLC022.

1371\_ TAP014, TLC014, TBG016.

1372\_ 1972년 12월 오대양61과 오대양62가 바다에서 실종.

래서 한국 해군은 우리를 구할 수 없었습니다.”<sup>1373</sup>

**889** 전직 당국자에 따르면, 납북된 선원들 중 가장 젊고 신체조건이 좋은 사람들은 한국으로 귀환되지 않았다.<sup>1374</sup> 그들은 조선노동당이 운영하는 간첩 양성시설로 보내졌다.

- 이재근 씨는 납북된 한국의 어부들 중 간첩 훈련을 받았는데, 그는 조사위원회에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  
“대부분의 경우, 남한에서 납북된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졸업하고, 몇몇은 고등학교 중퇴자였는데, 상대적으로 높은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북한 사람들은 우리들을 감독하고, 지켜보며, 우리들의 체력을 관찰하고 우리가 이후에도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지, 김일성과 지도자들을 보호하는 일을 할 수 있는지 지켜보았습니다.”<sup>1375</sup>

**890** 간첩 양성시설에서 학생들은 ‘주체’와 김일성과 혁명적 행동에 대한 수업을 들었다. 그들은 태권도와 운전, 납치하는 방법, 주거침입, 절도, 몰래 침입하여 죽이는 방법들을 훈련받았다. 수업반의 규모는 작았고, 보통 한 반에 4명까지 인원이 제한되었다. 훈련생들은 같은 반에 있는 3명 외에 다른 훈련생들을 절대 볼 수 없었다; 그들이 훈련교실을 출입하는 시간은 모두 달랐으며 심한 경우 교실과 시설로 가는 동안 안대를 착용하여야만 하였다.

“우리는 간첩 양성시설로 보내졌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설이 왜 필요한지 몰랐습니다. 그들은 만약 우리가 이 시설을 졸업한다면 다른 학교에서 졸업하는 학생들보다 많은 특권과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를 위협까지 했기

1373\_ 서울 공청회, 2013년 8월 23일, 오전(01:31:00).

1374\_ TLC022.

1375\_ 서울 공청회, 2013년 8월 23일, 오전(01:44:00).

때문에, 우리는 이 간접 양성시설을 다니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곳에서 3년 8개월 동안 교육을 받았습니다.”<sup>1376</sup>

**891** 조사위원회가 청취한 바에 따르면 납북자들을 간접 양성시설의 학습과정에 전적으로 참여하게 하기 위하여 여러가지 방법이 사용되었다고 한다. 공포와 무력으로 학생들에게 압박을 가하였다.

- 이씨의 설명에 따르면 그는 산쪽으로 끌려가 수업을 더욱 진지하게 듣고 잘 수행하지 않는다면 죽일 것이라는 목숨의 위협을 받았다고 한다.  
“이 학교를 다니는 동안에 저는 별로 공부하지 않았습니니다. 며칠 동안 별로 집중하지 못하였는데, 어느 날 그들이 저를 데려가며 산책을 가자고 했습니다. 그들은 저를 차에 태워 데려갔는데, 제 생각에는 아마 2시간 정도 산속 깊은 곳으로 이동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차를 세웠을 때 산속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운전자가 그가 갖고 있던 두 개의 총을 보여주며 저에게 ‘당신은 끝까지 반항할 것인가? 무릎을 꿇든지 아니면 이 총알들을 먹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왜 죽어야 하는지 물었고, 그는 ‘만약 당신이 우리 말을 듣지 않는다면 내가 왜 당신을 살려두어야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알겠습니다. 무릎 꿇겠습니다. 복종하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 살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sup>1377</sup>

**892** 예정된 간접활동에 순응하고 말을 잘 듣는 사람들은 당국이 따로 독립 주택에 두고 관리하며 당국의 의도에 따라 활용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간접 양성시설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지 못한 이들은 공장 노동자로 보내졌다. 학교 학생들은 졸업 전에 그들의 납북 사실을 발설하지 않을 것을 맹세해야 했다.

“우리는 납북된 것에 대해 말하지 않는다는 문서에 지장을 찍어 서명해야 했습니다. 만약 납북사실을 사회에서 그 누군가에게라도 발설한다면, 우리는 정치범수용소에 수

1376\_ 서울 공청회, 2013년 8월 23일, 오전(01:35:00).

1377\_ 서울 공청회, 2013년 8월 23일, 오전(01:39:00).

감되었을 것입니다. 졸업 후에 북한 사회에 편입되었고, 우리에게 지시된 것이라면 무엇이든 했습니다.”<sup>1378</sup>

**893** 간첩 훈련에서 선택받지 못한 납북 어부들은 다른 산업에서 일하도록 배정 받고 북한 사회로 진출하기 전에 다른 사상 훈련학교에 송치되었다.<sup>1379</sup> 한 증언자는 조사위원회에 북한이 이들을 “자발적으로 북한에 온 용감한 영웅들”로 묘사한다고 하였다.<sup>1380</sup>

**894** 일단 학교를 졸업하면, 납북자들은 국가안전보위부의 엄격한 감시 아래에 놓였다. 한 증언자는 자신이 일곱 단계의 감시하에 있었다고 조사위원회에 증언하였다.<sup>1381</sup> 남한 출신이라는 이유로 어부들과 그 후손들은 교육과 고용기회가 제한된 적대계층의 ‘성분’에 속하였다.

“남한 사람의 아이이자 아들로서는 고등 교육을 받을 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북한 당국에 충성하고 국가에 헌신한 이들의 자손들만 대학에 진학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 저는 제 아들에게 고등 교육을 받게 하기 위해서라면 목숨까지도 내어줄 것이라 하였습니다. 아들은 남한에서 고려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전기공학을 공부했고 매우 잘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단지 제가 남한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저의 자식들, 제 아들은 양질의 고등교육에 접근할 수가 없었습니다. 북한에서의 생활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런 사실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sup>1382</sup>

1378\_ 서울 공청회, 2013년 8월 23일, 오전 (01:33:00).

1379\_ TAP014, TLC014, TBG016.

1380\_ TBG016.

1381\_ 이재근, 서울 공청회, 2013년 8월 23일, 오전 (01:50:00).

1382\_ 이재근, 서울 공청회, 2013년 8월 23일, 오전 (01:55:00).

## (ii) 북한 요원에 의한 납치

895 북한에 억류된 채 남아있는 516명의 한국 국민들 중 70명은 한국과 다른 나라에 배치된 북한 비밀요원에 의해 납치 당했다. 납북된 이들 중에는 공중납치된 민간항공기에 탑승했던 승객, 한국에서 휴가 중이던 청소년과 시민들, 해외에서 납치된 한국 국민, 군인, 해안경비대원 등이 있었다.<sup>1383</sup> 강제실종된 이들 중 한 사람만을 제외하고는 가족들의 반복된 탄원과 청원을 북한에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이나 한국 정부와의 그 어떠한 접촉도 허용되지 않았다. 조사위원회에 증언한 전 북한 정보요원의 증언에 따르면, 김정일 직할의 정보국인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35호가 한국인 납북과 연관되어 있었다.<sup>1384</sup>

896 또 다른 전직 간부는 한국인 납북 명령이 조선인민군 정찰총국 총국장(3성장군)을 통해 하달되었다고 말하였다. “584호 군 사무국”으로 알려진 한 연구기관의 조안을 토대로 납북 대상을 선정한 것으로 보인다.<sup>1385</sup> 조사위원회는 조선인민군 산하 특수부대의 임무 중 하나가 한국과 일본의 해안을 따라 간첩활동하는 것이었다는 증거를 확보하였다. 비밀 정보원에 따르면 548호 군 사무국이 수행하던 세 가지 임무는 일반적인 침투, 납치, 연안 해역의 정찰이었다. 사상교육과 간첩 양성시설을 통과한 납북 어부들은 이러한 활동의 관련 자료를 해석하고, 임무 수행을 위해 바다로 들어가는 길을 요원에게 안내하는 역할을 하였다.<sup>1386</sup>

897 1969년 12월 11일, 국내 비행 중이던 대한항공 국내선 항공기가 북한의 정보요원에게 공중납치되어 북한으로 비행하였다. 1969년 12월 13일 평양 방송은

1383\_ 한국 통일부, 통일백서(Unification White Paper) (2012), p. 142.

1384\_ TLC040.

1385\_ TLC022.

1386\_ TLC022.

비행기가 두 조종사에 의해 자발적으로 북한을 향해 비행한 것으로 보도했으나, 이는 후에 조종사들이 승선해 있던 한 북한 요원에게 협박당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항공기에는 네 명의 승무원과 46명의 승객이 탑승해 있었다. 공중납치 후 66일이 지나서야 39명의 승객이 풀려나 한국으로 돌아왔다.<sup>1387</sup> 네 명의 승무원과 나머지 7명의 승객은 돌아오지 못하였다. 북한 측은 이들 11명이 자의로 북한에 남았다고 주장하였다. 이 중 승무원 두 명은 대남방송에 이용되었다.<sup>1388</sup> 1992년 8월, 성경희 씨는 평양방송에서 “나의 마음과 몸과 모든 것은 북한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라고 말하였다.<sup>1389</sup> 한국에 귀환된 39명의 승객이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남겨진 이들이 자발적으로 북한에 잔류한 것이 아님이 분명하게 드러났다.<sup>1390</sup> 북한은 적십자사를 통한 그들의 귀환 청원을 거절하였다.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억류된 11명은 비교적 젊고 고도로 숙련된 이들이었다. 그들은 각각 조종, 영화 제작, 카메라 조작, 출판 및 의학 등의 분야에서 일하는 전문직 종사자들이었다.

- 납북된 영화제작자 황원 씨의 아들과 승무원 정경숙 씨의 형제는 서울 공청회에서 조사위원회에 증언하였다. 두 사람은 가족의 납북으로 인한 깊은 상실감과 절망을 호소하였다. 정씨는 조사위원회에 “우리 가족에게 그 사건은 슬픔 그 자체였습니다. 좋은 학교를 나와 훌륭한 직장을 가졌다면 모두 기뻐했었는데 납치를 당하였습니다.”<sup>1391</sup>
- 황인철 씨는 북한에 수 년간 억류된 아버지를 찾기 위해 도움을 요청하였음에도 지속적으로 거절당하고 난 후로는 한국 정부를 더 이상 믿지 않게 되었다고 조사위원회에 말하였다.

1387\_ “1969 KAL기 납북사건” (1969년 대한항공 항공기 납치), 동아일보, 2001년 2월 26일. <http://www2.donga.com/news/print.php?n=200102260483>.

1388\_ KINU,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3), p. 531.

1389\_ “제3차 이산가족 교환방문 평양상봉 소식 종합” (평양에서 제3차 이산가족상봉 갱신), 자유아시아방송, 2001년 2월 25일. <http://www.rfa.org/korean/news/51210-20010225.html>.

1390\_ “억류객 송환 4단계 대책” (억류된 승객 송환을 위한 4단계 전략), 경향신문, 1970년 2월 21일.

1391\_ 정현수, 서울 공청회, 2013년 8월 23일, 오전 (03:55:00).

898 공중납치 되었던 항공기 납북자의 가족들은 그들 가족에 대한 정보를 얻는데 큰 어려움에 직면하였다. 납북자의 가족들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북한과의 관계에서 이 문제가 거론되는 것을 원치 않았다. 한국 정부는 납북된 이들을 이산가족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통지하였고, 다른 많은 이산가족 문제와 같은 맥락에서 대응하려고 하였다.<sup>1392</sup> 황씨는 한국에서는 모두가 통일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납북 문제를 인도주의적 관점보다는 정치적 관점에서 생각한다고 추측하였다.<sup>1393</sup>

899 민간여객기와 승객의 납치는 심각한 국제법 위반이다. 1970년 9월 9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결의 286호를 통해 항공기 납치로 우려를 사고 있던 당사국들에게 승객과 승무원을 즉시 석방할 것을 요구하였다.<sup>1394</sup> 1970년 11월 25일, 유엔 총회 제25차 회기에서 결의 2645호를 채택하여 공중납치 및 승무원과 승객의 억류를 규탄하고, 항공기가 착륙한 국가에 승무원과 승객의 보호와 안전을 제공하며 여행을 재개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촉구하였다.<sup>1395</sup> 1983년 이래 북한도 항공기의 불법납치 억제를 위한 협약의 당사국이므로, 불법납치를 당해 북한 영토에 착륙한 항공기의 승객들이 여행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할 의무가 있었다.<sup>1396</sup> 국제사회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국제범죄에 대한 어떠한 적절한 응답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900 1977년과 1978년 여름, 한국의 해안가에서 다섯 명의 한국 고등학생들이 납북되었다. 1977년에는 두 명의 고등학생 이민교군과 최승민군이 같은 해변에서

1392\_ 황인철, 서울 공청회, 2013년 8월 23일, 오전(03:43:00).

1393\_ *Ibid.*

1394\_ S/RES/286 (1970).

1395\_ A/RES/2645 (1970).

1396\_ 항공기의 불법납치 억제를 위한 협약 제9조 참조. 북한이 1983년 비준한 항공기내에서 행한 범죄 및 기타 행위에 관한 협약 제11조도 같은 의무를 명시하고 있음.

납북되었다.<sup>1397</sup> 1978년 여름에는 군산의 해변에서 김영남군이, 홍도 해변에서 이명우군과 홍근표군이 납북되었다. 이 중 김영남군은 2006년 이산가족 상봉행사에서 가족들과 잠깐동안 재회할 수 있었다.

**901** 전 북한 정보요원은 고등학교 학생들의 납치는 김정일의 명령에 따라 35호에서 자행되었다고 조사위원회에 증언하였다. 이 요원에 따르면, 학생들을 미국과 남한에 유학생으로 보낼 목적으로 북한에 납치하여 교육하였다고 한다.<sup>1398</sup>

**902** 한국 정부는 30명의 한국 군인과 해안경비대원이 납북되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군인들은 비무장지대(DMZ) 혹은 베트남전쟁에서 임무를 수행하던 중 납치되었으며, 해안경비대원은 북측의 한국 해안경비대 공격 도중에 납치당하였다.

**903** 조사위원회는 베트남전쟁 참전 후 전쟁포로로 잡혀 송환이 거부되고 북한에 넘겨진 몇 명의 한국 군인들에 대한 주장을 접하였다. 안영수 씨는 그의 형인 안학수 씨가 베트남 참전 중 실종된 후, 1967년 평양의 뉴스앵커로 모습을 드러냈다가 북한 당국에 넘겨져 1975년 처형당하였다고 주장하였다.<sup>1399</sup> 2009년 한국 정부가 조직한 조사위원회에서는 당초 안학수 씨가 북한에 자발적으로 망명하였다고 추측하였으나, 이후 그가 베트남에서 포로가 되어 그의 의지에 반하여 북한으로 이송되었다는 것을 알아내었다.<sup>1400</sup>

- 안영수 씨는 조사위원회에 라디오에서 들은 형의 목소리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1397\_ KBA,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6), p. 294.

1398\_ TLC040.

1399\_ 서울 공청회, 2013년 8월 23일, 오후(01:04:00).

1400\_ "Vietnam War Soldier is POW, Not Defector to Pyongyang," *The Korea Times*, 2009년 9월 30일.  
[http://www.koreatimes.co.kr/www/news/nation/2009/09/113\\_52798.html](http://www.koreatimes.co.kr/www/news/nation/2009/09/113_52798.html). 참조.



“제 형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습  
니다. 그가 북한에 오게 된 이유와 경위를 말하고 있었는데, 마치 대본을 읽고 있는  
듯 하였습니다. 나의 형뿐만 아니라, 당시 북한에 끌려간 이들이 형이 읽어야 했던  
것과 같은 종류의 대본을 강제적으로 낭독해야 했으리라는 점은 모두가 아는 일입  
니다.”<sup>1401</sup>

**904** 열두 명의 한국 국민이 해외 여행 중 납북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두 명  
은 후에 탈북에 성공한 유명한 한국 여배우인 최은희 씨와 한국 영화감독 신상옥 씨  
였다. 나머지는 서독에서 납북된 여덟 명의 두 가족, 오스트리아에서 온 학생 한명,  
그리고 노르웨이에서 온 교사 한명이다.

**905** 1978년 한국의 여배우 최은희 씨는 홍콩에서 영화산업 관계자들을 만나기  
위해 이동하던 도중 납북되었다. 북한요원에 의해 강제로 보트에 승선한 후, 최씨는  
납치범들에게 설명을 요구했고, 그들은 “최여사님, 우리는 지금 김일성 장군님의 품  
으로 가고 있습니다”라고 답하였다.<sup>1402</sup> 1월 22일 북한에 도착하여 그녀는 김정일  
을 만났고 그가 평양 관광을 시켜주었다고 하였다.<sup>1403</sup> 최씨의 실종을 알고 그녀의  
전 남편이자 유명한 영화감독인 신상옥 씨가 행방을 찾기 위해 홍콩에 갔고, 그 또  
한 1978년 7월 같은 북한 요원에게 납치되었다.<sup>1404</sup> 도착한 신씨에게 김정일은 “나  
는 당신과 같은 재능있는 감독이 북한에 있을 수 있기를 바랐고, 그래서 작전 요원들  
에게 당신을 이곳으로 데려오는 임무를 수행하도록 명령하였습니다”라고 하였다.<sup>1405</sup>  
이는 납치에 개인적으로 연루된 전 북한 간부들이 납치 명령에 김정일이 직접 결재

1401\_ 서울 공청회, 2013년 8월 23일, 오후(01:25:00).

1402\_ 최은희, 신상옥, “조국은 저 하늘 저 멀리” (김정일의 왕국으로의 납치), 상, p. 24, 북한 인권조사위원회에는  
다음과 같이 인용됨. *Taken!: North Korea's Abduction of Citizens of Other Countries* (2011), pp. 14  
and 50.

1403\_ *Ibid.*

1404\_ TBG031.

1405\_ 최은희, 신상옥, “조국은 저 하늘 저 멀리” (김정일의 왕국으로의 납치), 상.

하였다고 말한 증언들과 일치한다.<sup>1406</sup> 북한에서 지낸 기간 동안 신상옥 씨와 최은희 씨는 김정일이 총제작자였던 몇몇 북한 영화 제작에 참여하였다. 이 부부는 1986년 비엔나 영화제 방문 시 미국 대사관으로 들어감으로써 탈출하였다. 이후 그들은 미국에 정착하였고, 신씨는 그 후 고인이 되었다.

**906** 다수의 한국 국민이 유럽에서도 실종되었고, 현지에서 활동하는 북한 요원들에 의해 납북된 것으로 알려졌다. 1971년 4월, 독일 연방 공화국(서독)의 한국 대사관에서 근무하던 유성근 씨와 그의 아내 정순섭 씨, 그리고 두 자녀 유경희와 유진희가 납북되었다.<sup>1407</sup> 1979년 6월에는 고상문 씨가 유럽에서 실종되었는데, 이후 북한은 그가 오슬로에 있는 북한 대사관에 들어와 자신의 의지로 북한에 망명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sup>1408</sup> 1985년 12월에는 오길남 씨와 그의 아내 신숙자 씨, 그리고 두 자녀 오혜원과 오규원양이 독일에서 활동하던 북한요원에 의해 북한으로 유인당하였다.<sup>1409</sup> 오씨는 다른 한국인들을 북한으로 유인하라는 임무를 수행하던 중 코펜하겐에서 탈출에 성공하였으나, 그의 가족들은 여전히 북한에 억류되어 있다. 1987년 8월, 매사추세츠 공과대학 학생 이재환 씨가 오스트리아에서 여름 휴가를 보내던 중 실종되었다.<sup>1410</sup>

1406\_ TLC022, TBG025, TLC040.

1407\_ KBA,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6), p. 296.

1408\_ The Committee for Human Rights in North Korea, *Taken!: North Korea's Abduction of Citizens of Other Countries* (2011), p. 33.

1409\_ A/67/370 [31-38].

1410\_ The Committee for Human Rights in North Korea, *Taken!: North Korea's Abduction of Citizens of Other Countries* (2011), p. 43.

## (d) 한반도에서의 납치 및 강제실종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

907 한국 국군포로 및 납북자의 가족들은 수년 간 사랑하는 가족의 갑작스런 실종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과 상실감에 더하여 자국 정부로부터 받는 차별로 인해 더욱 고통을 겪었다. 한국의 권위주의 통치기(1963~1988년) 중 납북되거나 북한에 의해 강제실종된 이들의 일가 친척들은 감시를 당했고, 국가 교육기관 및 고용에 제한을 받았으며, 좌파 월북자들과 관련되어 있어 신뢰할 수 없다는 취급을 받았다.

- 최성용 씨는 서울 공청회에서 1968년의 한국 청와대(한국 대통령 관저) 공격사건 이후 한국 정부의 우려가 악화되었다고 설명했다:  
“1968년에 김신조에 의한 한국 청와대 습격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전에는 북한으로 납북되었던 어부나 다른 이들이 남한으로 돌아오면 환영받고 보상도 받았으나, 1968년 김신조 사건 이후로는 북한에 체류했던 이들은 모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되었으며, 이 법은 연좌제도 적용되었습니다. 우리는 해외에 나갈 수도 없었습니다. 공무원도 될 수 없었고, 납북자의 가족들은 남한 정부로부터 또 한 차례 희생을 당한 것입니다.”<sup>1411</sup>

908 국가 안보상의 이유로 강제실종된 이들의 친척들을 감시하던 한국의 정책은 1990년대 후반까지 지속되었다. 실종된 이들의 자녀들은 이 정책 때문에 고등교육 및 정부기관으로 고용될 기회의 박탈 등으로 큰 고통을 받았다. 많은 사람들이 조사위원회에 자신이 국가로부터 기본적인 권리를 박탈당했던 좌절감과 절망을 표출하였다. 한 예로, 납북된 한 어부의 딸이었던 증언자는 직업을 잃게 되었는데, 정기적으로 직장을 찾아가 납북자의 딸을 감시하는 경찰로부터 불필요한 주의를 끄는 것이 고용주를 불편하게 했기 때문이었다.<sup>1412</sup> 많은 가족들은 정부의 불필요한 관심을 피하기 위해 거주지를 옮겼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이것이 더 많은 의심과

1411\_ 서울 공청회, 2013년 8월 23일, 오전(00:13:00).

1412\_ TSH024.

경찰의 잦은 방문을 초래할 뿐이었다. <sup>1413</sup>

- 납북자들과 실종자들의 가족들은 조사위원회에 이렇게 말하였다:  
 “경찰은 납북자 가족들을 감시하고 있었고, 누가 오고 누가 가는지 지켜보고 있었으며, 우리가 이동하면, 즉 우리가 이사를 가면, 우리를 방문하고 질문했습니다.”<sup>1414</sup>  
 “경찰이 우리를 도와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이 한 유일한 일은 우리를 감시한 것이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단 한 번도 북한에 납북자에 대해 탄원하거나 항의한 적도 없는 듯 합니다.”<sup>1415</sup>

**909** 남북 간 긴장이 극에 달했을 때, 간첩을 색출하려는 정보기관 요원들의 과도한 의지로 인해 자발적으로 월북하였다는 의심을 받은 이들의 가족들은 더욱 모질게 다루어졌다.

- 베트남전쟁 참전 중 공산군에 의해 북한으로 이송된 한 한국 군인의 가족은 아주 모진 취급을 당하였다. 그 군인의 동생인 안용수 씨는 조사위원회에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형이 납북된 후 얼마간, 우리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말씀드렸듯 저희 아버지께서는 학교 교장선생님이셨으나 은퇴를 하셔야 했고, 강제로 퇴직을 당하셨기 때문에 저희 가족은 잠재적 간첩 가족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지께서는… 강원도 산악지역의 한 공장장으로 보내졌고, 저희 가족의 인권은 침해되었습니다. 저는 구타와 고문을 당하였습니다.  
 당시 국가정보기관에는 지독한 악덕 관행이 있었습니다. 누군가를 간첩으로 만들고, 간첩을 찾아낸 요원들에게는 보상이 주어졌습니다. 이 때문에 간첩을 만들어내거나 조작했고, 이러한 간첩들을 보고한 요원들은 포상을 받았습니다.”<sup>1416</sup>

**910** 한국 김대중 대통령에 의해 실시된 “햇볕정책” 기간(1998~2008년)에는 북

1413\_ 정현수, 서울 공청회, 2013년 8월 23일, 오전(03:55:00); TSH024, TSH026 and TSH027.

1414\_ 정현수, 서울 공청회, 2013년 8월 23일, 오전(03:55:00).

1415\_ 최성용, 서울 공청회, 2013년 8월 23일, 오전(00:53:00).

1416\_ 서울 공청회, 2013년 8월 23일, 오후(01:27:00).

한과의 대화의 초점이 북한과의 경제협력 사업과 평화 공존에 있었기 때문에, 한국 국민의 강제실종에 관한 문제는 외면되었고 김대중 대통령 시기, 남북은 “이산가족”의 범주로 분류되었고, 이산가족이라는 큰 범주로 남북 문제가 흡수되면서 가시적인 단기 해결책이 없다는 것이 확실해졌으며, 이는 가족들에게 더 큰 고통을 주었다.

**911** 이산가족 문제로 남북 및 강제실종 문제가 흡수되어 강제실종 피해자의 가족들이 이산가족 상봉행사에 참여할 수 있게 되기는 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아주 소수의 강제실종 피해자 가족들만이 혜택을 볼 뿐이었다. 2000년부터 2010년까지 18회의 이산가족 상봉행사가 이루어졌다.<sup>1417</sup> 2005년부터는 납북자 가족들도 이산가족 상봉행사에 신청을 하기 시작하였다. 이산가족 상봉행사 신청을 위해서는 가족들이 한국 내의 추천에 참가해야만 하였다. 선정이 되면 적십자사에 생사확인을 신청해야만 하였다. 가족이 생존해 있다는 확인을 받으면, 다음 회차의 이산가족 상봉행사에서 가족을 만날 수 있었다. 강제실종자 가족들은 가족이 헤어지게 된 경위, 또는 남북 문제 전반에 관련된 언급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하에 이산가족 상봉행사 참석을 신청할 수 있었다. 두 실종 어부의 어머니는 이산가족 상봉행사에서 납북되었던 아들 중 한 명을 잠깐이나마 만난 경험이 얼마나 기뻐했는지에 대해 조사위원회에 이야기하면서도, 겁이 질려 많은 것을 말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 한탄하였다.<sup>1418</sup> 이산가족 상봉행사 신청을 한 대다수의 납북자 가족들은 생사확인요청에서 그들의 사랑하는 가족이 이미 죽었거나, 생사확인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912** 한국에서 최근 몇 년 동안의 정책변화로, 실종 피해자 가족들은 단체를 형성하고 경험을 공유하며 그들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되었다. 2003년경부터 가족들은 한국 정부에게 실종자들의 생사확인에 대한 약속과, 정부의 감시나 차별로 인

1417\_ KINU,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3), p. 513.

1418\_ TSH021.

해 당했던 추가적인 고통에 대한 보상의 제공을 요구하였다. 2007년에는 3년 내에 신청하는 가족에게 보상하는 법안이 통과되었다.<sup>1419</sup> 당초 금전적 지불은 공권력으로 인한 어려움에 대한 보상으로 규정하였다가, 이후 위로금(“고통에 대한 보상” - 보상)의 명목으로 바뀌었다. 미화로 30,000~45,000 달러의 피해위로금은 납북자의 납북기간에 따라 가족에게 지급되며, 지급받을 가족의 순위는 법률에 따른다. 2007년에 정부에 접수된 납북 사건 수는 약 400건이었다. 2010년 지급신청 종료 즈음에는 공식적인 납북 사건이 517건으로 늘어났다. 516명의 납북자 가족들이 보상을 신청하였고, 약 1,200명의 개인이 보상을 받았다.

**913** 2010년 한국에서는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이 법률은 전시납북자 가족들을 위한 중요한 명예회복 조치로, “6·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위원회” 설립을 통해 6·25전쟁 중 발생한 납북사건들의 진상과 납북자 및 납북피해자 가족들의 피해를 규명하고, 이들의 명예회복을 도모하였다. 이 법률은 또한 납북자의 생사확인 및 송환(유해 송환 포함), 서신교환, 가족상봉을 위한 정책을 수립 및 시행하도록 하였다.<sup>1420</sup>

**914** 강제실종자와 그 가족에 대한 정부의 태도와 정책의 변화는 북한에 의해 실종된 이들 이 당시 참전과 관련해 공로를 세운 것에 대한 뒤늦은 인정을 가능하게 하였다. 예를 들어 2013년 6월, 최성용 씨는 6·25전쟁 당시 방위부대의 수장으로 복무하고, 이후 1967년 해상 선박에서 납북된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명예 훈장을 수여받았다.<sup>1421</sup>

1419\_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07.4.27).

1420\_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제정 2010.3.26 법률 제10190호) 제3조.

1421\_ 최성용, 서울 공청회, 2013년 8월 23일, 오전(00:07:15).

915 남북 문제는 북한과 한국 모두에게 정치적 현실과 복잡하게 얽혀있다. 양측은 모두 한반도 전체의 인구가 자신에게 속한다고 주장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시 및 전후에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납북 및 국적과 관계없는 전쟁포로 송환거부는 강제실종에 해당한다.

#### (e) 1959-1984년: “지상 낙원 운동” 시기 일본에서 북한으로 이주한 한인과 일본인의 강제실종

916 제2차 세계대전의 이후, 240만명 가량의 한인이 일본에 거주하고 있었다. 1945년 북한은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일본어로는 *Zai-Nihon Chosenjin Sorengokai*, 각각 조총련과 *Chosen Soren*으로 약칭)를 창립하였다. ‘조총련’은 일본에 거주하는 한국인의 대안적 교육과 고용 증진을 위해 일본에 학교, 기업과 대학을 설립하였다. 당시 일본에 거주하던 많은 동포들이 ‘조총련’에 연대감을 표시하였다. 북한이나 한국 중 선택의 기로에 놓여있을 때, 일본에 거주하던 한인들은 재일 북한 국민으로 등록하겠다고 결정하였다. 이들은 “지상 낙원” 혹은 “낙원으로의 귀환” 선전 운동의 대상이 되었다.

917 지상 낙원 운동은 1959년 12월 14일 개시되어 공식적으로는 1984년에 종료되었다. 그러나 1961년경에는 이미 9만 3,340명의 “귀국자” 중 81%가 북한으로 건너간 상태였다.<sup>1422</sup> 당시 이 운동은 인도주의적 활동으로 인식되었고 일본 적십자사와 북한 적십자사가 함께 조직하였다. 9만 3,340명의 “귀국자”들 중 대부분은 일본에 거주하던 한인들이었다. 이들 중 대다수는 38선 이북 출신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들의 가족들은 남한출신이었으며 한반도 분단 당시 일본에 거주하고 있었을 뿐이었다. 이들 “귀국자”들 가운데 6,730명은 일본 국민이었으며 일본에 거주하는 한인

1422\_ Yamada Fumiaki, 도쿄 공청회, 2013년 8월 30일, 오전.

들의 배우자였다.<sup>1423</sup> 1,831명은 “일본인 아내,” 즉 한인 남성과 결혼한 일본 여성이었으며, 추정 불가능한 수의 일본 국적 남성과 아이들이었다.

**918** 당시 지상 낙원이라 일컬어지던 북한은 ‘조총련’에 의해 사람들이 자신의 능력에 따라 일을 하고 그들 필요에 따라 재화와 (교육, 의료와 같은)서비스를 제공받는 곳으로 묘사되었다. 북한은 일본에 비해 많은 광물자원과 식량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으며, 생산성의 측면에서 볼때 곧 많은 분야에서 일본을 추월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북한은 흔히 “노동자의 천국”이라고 불렸다. 당시 일본은 여전히 제2차 세계대전에서의 패배에서 회복하는 중이었고, 불충분한 식량공급으로 많은 이들이 빈곤 속에 살고 있었다. 일본에서 거주하던 한인들의 상당수는 차별로 인해 일본인들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었다. 귀환 운동의 전문가이자 인도주의 운동가인 가토 히로시 씨는 도쿄의 공청회에서 거의 10만 명을 북한으로 이주하도록 유혹했던 “이러한 꿈의 건설”에는 ‘조총련’뿐만이 아니라 일본의 언론매체도 기여하였다고 조사위원회에 설명하였다.

- 카토 히로시 씨가 설명한 바와 같이, 북한으로 넘어갔던 이들은 불행하게도 상황이 매우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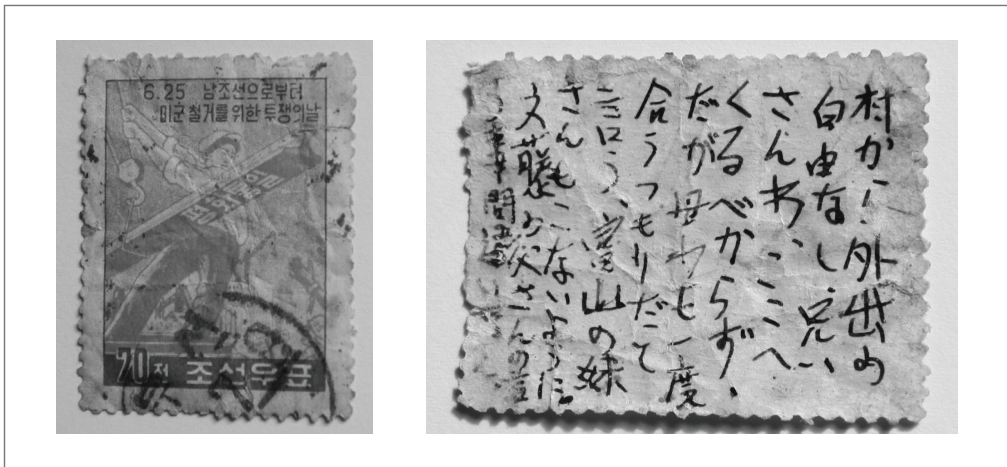
“[그러나,] 현실을 생각해 보면 당시 북한은 6·25전쟁의 폐허에서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노동력, 기술, 생산 시설뿐만 아니라 원자재도 부족한 상황이었으나, 그때 국가가 이런 캠페인을 고안해내어 자국을 ‘지상 낙원’이라 부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언급하였듯이] 이러한 조건때문에, 한인들이 모국이라고 부르던 그곳은 실상 아주 가혹한 현실이 기다리는 곳이었습니다. 당시에는 그 사실을 아무도 알지 못하였고, 지금에서야 많은 사람들이 그때의 현실이 어떠했는지 이해하고 있습니다.”<sup>1424</sup>

1423\_ Kikuchi Yoshiaki, *Kitachousen kikoku jigyou 'soudaina rachi' ka 'tsuihou' ka* (The North Korean Return Home Movement: A Grand Abduction or Exile?) (Chuokoron-shinsha, Tokyo, 2009).

1424\_ 도쿄 공청회, 2013년 8월 30일, 오후.



919 귀국자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가혹한 현실은 단지 기초적인 생활환경이나 수당에 국한된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자신의 삶에 대한 통제권을 잃게 되었다. 도착한 날로부터 그들이 어디에 거주할지, 어디서 일할지, 무엇을 먹을지, 누구와 어떻게 이야기할지에 대한 결정이 명령되었다. 이동에 제한을 받았고, 감시 당했으며, 서로 감시하도록 조장되었다. 일본의 가족들에게 보낸 우편물은 확인 및 검열되었다.



[증거물 T8a, T8b]

920 검열에도 불구하고, 암호화된 모호한 메시지를 통해 북한에서 직면한 그들의 난관과 어려움을 일본에 있는 가족들에게 전달할 수 있었다. 조사위원회에 제시된 한 예로, 한 귀국자는 검열의 두려움 때문에 편지 속에 표현할 수 없었던 솔직한 감정을 사전 협의를 해 놓은대로 우표의 뒷면에 적었다. 화자는 “우리는 마을을 떠날 수 없어요. 형님은 오지 마세요. 어머니께서 보고 싶어하십니다. 도야마에 있는 누이에게도 오지 말라 하세요. 분토의 아버지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옳았습니다.”라고 썼다.<sup>1425</sup>

1425\_ 증거물 8A-T와 8B-T, 도쿄 공청회에서 Yamada Fumiaki 씨 제공, 2013년 8월 30일, 오전(00:29:30).

- 가족 중 유일하게 일본에 남았던 한 증언자는, 가족들이 북한으로 이주하고 난 뒤 유사한 전갈을 받았다고 하였다. 북한의 적극적인 지지자로서 그도 그의 가족들과 함께 북한으로 이주하려 했었다고 한다. 그러나 ‘조총련’에서의 그의 일 때문에 일본에 남아 일을 계속하도록 요청을 받았던 것이다. 그가 그의 딸을 북한으로 보내 가족들의 보살핌을 받기를 원한다는 희망을 표현하였을 때, 그의 가족들은 “부모와 함께 있는 것이 아이들을 위해 더 낫다,” 그리고 “할머니는 (무언가의) 한 조각을 먹고 매우 행복해 하셨다” 등의 아리송한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하였다. 증언자는 그의 가족이 딸을 보내는 것이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것을 메시지를 통해 이해하였다. 이후 직접 북한을 방문하게 되어 그곳에서 가족들을 만났을 때는, 그들이 영양실조 상태와 감시의 두려움으로 말하기를 겁내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sup>1426</sup>

**921** 일본에 있는 가족들은 재화와 돈을 보내달라는 요청이 계속되자 북한에서의 삶의 전망에 대해 우려하게 되었다; 이는 일본에 거주하던 한인들이 북한으로 유입되던 흐름을 멈추게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대응으로 북한 당국은 “귀국자”들과 일본에 있는 가족들간의 접촉을 극히 제한하였다. 북한으로 떠나기 전, 3년 후에는 일본을 방문하여 가족들을 만나게 하겠다고 “일본인 아내들”에게 했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귀국자들은 점점 심하게 감시당하고 고통 받는다고 느끼게 되었다. 그들은 자발적으로 북한으로 이동했지만, 1960년대 중반에 이르면서 대다수가 자신의 의지에 반한 채 그곳에 효과적으로 구금당한 셈이었고, 그들이 남기고 떠난 가족들에게 더 이상의 접촉도 허락되지 않았다.

**922** 귀국자들과 일반 북한 주민들은 서로를 신뢰하지 않았다. 대부분의 “귀국자”들은 청진항에 당도하였을 때 일본과 비교하여 극심히 낙후한 사회기반시설과 생활수준을 보고 속았다는 느낌을 받았다. 북한 주민들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생활하던 “귀국자”들을 의심하였다.<sup>1427</sup> 귀국자들에 대한 의혹은 엄격한 감시와 “적대”계층

1426\_ TSH012.

1427\_ Yamada Fumiaki, 도쿄 공청회, 2013년 8월 30일, 오전(00:32:00); TSH008, TSH009, TSH005, TSH010, TSH011.

‘성분’부여, 그리고 외판 지역으로 격리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일본어 사용은 처음에는 제한되었고 이후에는 아예 금지되었다. 증언자들은 일본어로 말하거나 일본 노래를 부르면 경찰서에 연행되거나 구타 당하는 등의 처벌을 받았다는 증거를 조사위원회에 제시하였다. 조사위원회는 한 증언자로부터 일본 노래를 부르다가 잡혀 의자에 묶여 구타 당하고 복부에 자상을 입은 증거를 입수하였다.<sup>1428</sup>

923 북한에서는 갈등과 이후 재건 시기 동안 고등 교육이 불가능했던 데 비해 많은 “귀국자”들은 일본에 있을 때 향유했던 기회를 통해 고등 교육을 받은 상태였다. 처음에는 이들이 평양이나 인근에 거주하는 것도 허용되었고 주요기관의 고위직에서 일도 할 수 있었다. 도쿄 공청회에서 가토씨는 처음에 재능과 기술로 환영받던 사람들이 나중에는 간첩으로 의심 받아 박해당한 여러 사례를 제공하였다.<sup>1429</sup> 조사위원회는 또한 고도로 숙련된 가치있는 자였다가 이내 특권에서 멀어지고 정치범수용소로 추방된 “귀국자”들의 가족들로부터 직접 증언을 들었다.

- 시바타 코조 씨의 형제인 시바타 히로유키 씨는 그의 형제가 일본 국민들을 자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북한 당국에 탄원하였다는 이유로 정치범이 된 경위를 조사위원회에 증언하였다:

“정확히 20년형을 선고받았고, 이는 매우 고통스러웠습니다. 첫번째 수감 죄목은 일본인 배우자들에게 너무 많은 도움을 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의 형제 코조가 체포된 이유였고, 죄목이었습니다. 그의 20년 수감 기간 중 많은 책임이나 작업을 맡지 않았음에도, 20년형이 끝난 후 추가로 6년을 더 살아야 했습니다. 이 6년 동안, 그는 이미 형을 다 살았기에 곧 풀려날 것이라고 생각하며 기대를 하였습니다. 판사조차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년형이 끝날무렵 갑자기 판사가 간첩활동을 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그에게 추가형을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sup>1430</sup>

1428\_ TSH003.

1429\_ Kato Hiroshi, 도쿄 공청회, 2013년 8월 30일, 오후.

1430\_ Shibata Hiroyuki, 도쿄 공청회, 2013년 8월 30일, 오후(00:51:45).

시바타 코조 씨의 동료 수감자의 증언을 바탕으로, 국제사면위원회(International Amnesty)는 후에 시바타 코조 씨가 승호 정치범수용소(‘관리소’)에 구금되어 있었다고 보도하였다. 국제사면위원회의 조사가 있자 북한은 시바타 코조 씨와 그의 가족 전체가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상황에서 기차 사고로 사망했다고 주장하였다.<sup>1431</sup>

- 강철환 씨의 친조부모는 1960년대에 국가재건을 돕기 위해 일본에서 북한으로 건너갔다. 1977년에 그의 조부는 갑자기 실종되었다. 곧이어 강씨(당시 9세)는 체포되어 기소나 재판도 없이 15호 정치범수용소에 끌려갔다. 강씨 부친과의 강제적 이혼에 동의한 그의 어머니만 무사하였다. 수용소에서 십년 간의 굶주림과 강제노동을 견디고 그는 아무 설명도 없이 풀려났다. 강씨는 15호 정치범수용소 전 구역에 일본에서 온 한인들이 많이 구금되어 있었고, 이는 그들이 자본주의 문화에 대해 너무 많이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조사위원회에 설명하였다.<sup>1432</sup>

#### (f) 1970년대~1980년대: 일본인의 납치

**924** 2002년 9월, 일본의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는 북한 당국과 북한에 납치된 것으로 의심되는 일본 국민의 송환 협상을 위해 평양을 방문하였다. 북한 최고지도자 김정일은 고이즈미 총리에게 북한 요원이 13명의 일본인(7명의 여성과 6명의 남성)을 납치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많은 일본 국민들이 강제로 북한에 의해 납치되었다는 의혹이 일본 내에서 수년 간 계속된 이후에서야 인정한 것이다. 고이즈미 총리의 발표에 나타났듯이 김정일은 “이는 과거의 북한과 특수관계에 있던 이들의 소행이었다”는 것을 인정하였고, “그는 사과를 전하며 유감을 표시하였다”<sup>1433</sup> 김정일과 고이즈미 총리가 자국을 대표하여 발표한 평양 공동 선언에는 “일본 국민의 생명

1431\_ Amnesty International, “North Korea: Concern about the fate of Shibata Kozo and his family,” 1994년 9월(ASA 24/007/1994). <https://www.amnesty.org/en/library/asset/ASA24/007/1994/fr/34cd971d-ebf0-11dd-9b3b-8bf635492364/asa240071994en.pdf> 참조.

1432\_ 서울 공청회, 2013년 8월 24일, 오후.

1433\_ 일본, 외무성, “Opening Statement by Prime Minister Koizumi Junichiro at the Press Conference on the Outcome of his Visit to North Korea,” 보도자료, 2002년 9월 17일. [http://www.mofa.go.jp/region/asia-paci/n\\_korea/pmv0209/press.html](http://www.mofa.go.jp/region/asia-paci/n_korea/pmv0209/press.html) 참조.

과 안전에 관한 현안과 관련하여, 북한 측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며, 비정상적인 양국 관계하에서 발생한 이 같은 유감스러운 사건들이 추후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을 확인하였다”고 밝혔다.<sup>1434</sup> 북한은 고이즈미 총리에게 이러한 인정을 하기 전까지는 북한 당국에 의해 납치되거나 강제실종되었다고 추정되는 이들과의 연관성에 대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었다.

**925** 조사위원회는 납치 임무를 수행하던 부서에서 일했던 전 북한 간부들로부터 증언을 들었다. 조선노동당 35호에서 근무했던 한 전 간부는 “납치와 유괴 등의 일반 정보활동”에 대한 임무를 수행하였다고 시인하였다. 35호 내 한 부서에서는 일본 국민의 납치를 전담하여 처리하였다. 이 전 간부는 1990년부터 근무하였고, 당시 사람들을 “데려오라”던 지시는 김정일로부터 내려졌다고 하였다. 지시가 내려오면 실장이 지시를 이행할 계획을 세웠고, 김정일은 이를 결재하는 방식이었다. 일반적으로 지시는 외국인들로 하여금 북한으로 오도록 설득하는 것이었고, 이것이 불가능할 시 납치하도록 되어 있었다.<sup>1435</sup>

**926** 일본 땅에서의 국민 납치는 주로 교외, 해안 주변에서 발생하였다. 요원들은 바다를 통해 일본에 접근하여 상륙하였다. 홀로 거니는 여성들이 주로 상대하기 쉬운 표적이 되었다. 전 간부는 피해자를 덮치기 위해 사용했던 여러 가지 방법들을 이야기하였다. 그 중에는 피해자를 에워싸고, 목을 조르거나 자루에 넣어 배로 이송하기 전 입을 틀어막거나 또는 입에 마취약에 적신 붕대를 감는 등의 방법이 포함되었다. 조사위원회에 접수된 또 다른 증언은 납치 수법이 간첩훈련의 정규 구성 요소이며,<sup>1436</sup> 간첩들의 50% 가량은 일본어를, 50%는 한국 말씨를 교육받는다고 밝혔

1434\_ 일본, 외무성, “Japan-DPRK Pyongyang Declaration,” 2002년 9월 17일. [http://www.mofa.go.jp/region/asia-paci/n\\_korea/pmv0209/pyongyang.html](http://www.mofa.go.jp/region/asia-paci/n_korea/pmv0209/pyongyang.html) 참조.

1435\_ TLC040.

1436\_ 이재근, 서울 공청회 2013년 8월 23일, 오전; TLC022.

다.<sup>1437</sup> 35호에서 근무하였던 전 간부는 납치된 일본여성 10명을 개인적으로 알고 있었다.<sup>1438</sup>

**927** 조선인민군 정찰총국에 근무한 두 번째 전 간부는 해상에서 일본인을 납치 하는데 관여하였다. 전 간부에 의하면 납치작전은 김일성이나 김정일의 결재가 필요 하였다. 김정일도 납치 관련 주요 기관인 정찰국에 자주 방문하였다. 해상 납치는 일반적으로 자정부터 새벽 3시 사이에 이루어졌다. 북한 선박을 일본 선박과 유사 하게 보이도록 위장하고 (일본어 명문과 함께)일본 해안 가까이에 홀로 떨어져 있는 일본 배에 접근하였다. 배를 공격하고, 가장 어리고 영리한 선원을 납치한 뒤 배는 침몰시키면서 나머지 선원들을 억사시켰다. 북한 간첩들은 기관실 안의 펌프를 분리 하여 한두 시간 내에 배에 물이 차서 가라앉도록 하여 일본 선박을 침몰시켰다.<sup>1439</sup>

**928** 일본인들은 주로 향후 간첩과 테러활동을 위해 납치되었다. 그들은 훈련 중인 북한 간첩에게 일본어와 억양, 문화를 가르치고, 완성도 있는 위조를 위한 일본 신원 확인 서류 연구를 하게 하여 북한 요원들로 하여금 납치한 이들의 신분증을 사용해 일본인 행세를 하도록 하였다.<sup>1440</sup> 한 예로, 1987년에는 두 명의 북한 요원 들이 일본인 여권으로 일본인 행세를 하며 바그다드를 출발, 아부다비와 방콕을 경 유하여 서울에 도착하는 대한항공 858기의 짐칸에 폭탄을 설치하였고 안다만 해 상 공에서 폭발시켜 승선해 있던 115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 두 요원은 자살을 시도했으나 바레인 공항에서 체포되었다. 남성 요원은 사망하였으나, 여성 요원이었 던 김현희 씨는 생존하였고, 그들은 북한 주민이며 대통령 선거와 1988년 서울올림 픽에 혼란을 주고자 김정일로부터 비행기를 폭파하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이후 자백

1437\_ TLC022.

1438\_ TLC040.

1439\_ TLC022.

1440\_ TLC040.

하였다. 타국민 납치에 대한 보고는 납치범들이 그 자신들을 일본인이라 주장했던 사람들임이 드러났다.<sup>1441</sup>

929 35호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작전부, 조선인민군 산하 경찰국은 2009년 공식적으로 조선인민군에 속하는 “경찰총국”으로 통합되었다.

930 2002년 기자회견에서 일본의 고이즈미 총리는 “더 이상 신원미상의 선박이 연루되는 사건은 없어야 할 것”을 주장하였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이 일이 특정 군 당국의 소행일 것이라고 추정한다면 이 문제에 대해 더 조사해 보고 다시는 이러한 경우가 재발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하였다”(강조 추가).<sup>1442</sup> 조사위원회는 이 납치 사건들이 군의 극성 분자들에 의해 수행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는 바이다. 대신 이 사건들은 김일성의 분명한 명령에 이어서 김정일에 의해 수행된 표적 공격이었다.

931 김정일이 시인한 13명의 일본인 납치는 확실히 진실의 전부는 아니다. 일본 정부는 의심의 여지가 있음에도 17명의 일본인(9명의 여성과 8명의 남성)이 납치되었고, 5명이 일본으로 귀환하였다고 하는 것으로 만족을 표시해 왔다. 일본 경찰은 북한으로 납치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약 860건의 실종 사건을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있다.<sup>1443</sup> 일본인 납치 및 북한 인권문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일본 단체인 연합체인 북한반인도범죄철폐국제연대(ICNK) 일본팀은 조사위원회에 북한이

1441\_ 아래 (g) 참조.

1442\_ 일본 외무성, “Opening Statement by Prime Minister Koizumi Junichiro at the Press Conference on the Outcome of his Visit to North Korea.” [http://www.mofa.go.jp/region/asia-paci/n\\_korea/pmv0209/press.html](http://www.mofa.go.jp/region/asia-paci/n_korea/pmv0209/press.html) 참조.

1443\_ 조사위원회 제출: 일본 정부. 본 수치는 사건이 공개되고 비공개됨에 따라 변동이 있음. 현재 수치는 일본 경찰청 웹사이트상에서 찾아볼 수 있음. <http://www.npa.go.jp/keibi/gaiji1/abduct/index.html> 참조.

납치한 일본인 수는 최소 40명에서 최대 100명이 넘을 것이라고 보고하였다.<sup>1444</sup>

**932** 북한의 전면적 협조가 부재한 상황에서 조사위원회는 일본에서 납치되어 북한으로 잡혀간 일본인의 정확한 수를 확인할 수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조사위원회는 적어도 100명의 일본인들이 북한에 의해 납치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바이다. 납치의 이유는 북한 간첩 및 군사 훈련 학교에서의 외국어 교육, 납북자의 전문 기술, 그리고 많은 경우 북한 내 외국인들에게 결혼 상대로 “내어주기” 위해서라고 추정된다. IV장 C에도 명시된 바와 같이 “순수 조선인”의 보호 및 유지 관리는 북한 사회의 주요 특징이며, 혼혈 조선 민족의 생산을 방지하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일본인은 나중에 일본에서 혁명을 일으키자는 관점에서 북한 내 일본인 인구 증가를 촉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다른 사회 집단으로부터 격리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 (i) 일본에서의 납치

**933** 2002년, 일본 고이즈미 총리와의 회담에서 김정일은 13명의 일본인을 납치한 사실을 인정하였다.<sup>1445</sup> 인정 이후, 5명의 일본인들이 자국을 방문하도록 북한의 허가를 받았고, 전원 일본에 남았다. 북한은 납치한 나머지 8명의 일본인은 이후 모두 사망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그 주장을 뒷받침할 어떠한 근거도 제공되지 않았다.

1444\_ 조사위원회 제출: ICNK 일본팀.

1445\_ 이 중 세 사건은 “외국에서의 납치”하에 포함됨.



## 요코타 메구미 씨 - 1977년 11월 15일

934 요코타 메구미 씨는 일본 니가타 현 해안 지역에서 하교길에 납치되었을 당시 13세였다. 2002년, 김정일은 그녀의 납치 사실을 인정하였고, 요코타씨는 이후 29세의 나이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러나 이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시된 사망신고서는 위조된 것으로 드러났으며, 유해 유전자검사에서는 양성반응이 나오지 않았다. 메구미씨는 마찬가지로 10대에 북한으로 납치된 남한의 김영남씨와 혼인한 것으로 보이며, 둘 사이에는 딸 한명이 있다.<sup>1446</sup>

935 요코타씨의 부모인 요코타 사키 부인과 요코타 시게루 씨는 납치피해자를 위해 활동하는 지칠 줄 모르는 운동가이다. 그들은 2013년 8월 도쿄 공청회에서 위원회 앞에 섰다:

“제가 [메구미의] 성장한 모습을 처음 사진으로 봤을 때... 저희는 너무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 처음으로, 저는 사진 속 그녀를 보았으며, 저희는 정말 슬펐습니다. 우리는 지난 20년 동안 그녀를 찾기 위해 사방을 헤매었고, 지금 그녀는 평양에 있는데, 우리는 정말 낙담했습니다. 마침내 그녀를 찾았지만 우리는 여전히 그녀를 구해 낼 수 없고, 그녀에게 미안함을 전했습니다 ...아직도 그녀를 도울 수 없다는 사실에 저는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sup>1447</sup>

## 타구치 예코 씨 - 1978년 6월

936 타구치 예코 씨는 두 명의 어린 자식들을 뒤로 한 채 1978년 6월 일본 도쿄에서 실종되었다. 1987년 11월 대한항공 민항기 폭격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1446\_ 유전자 검사로 요코타 메구미 씨와 김영남 씨의 자녀임이 입증되었다. 검사를 위한 샘플은 각각의 조부모에게서 제공받았다.

1447\_ 도쿄 공청회, 2013년 8월 29일, 오전(01:25:00).

전 북한 요원 김현희씨는 타구치씨에 의해 일본인으로 위장하는 방법을 배웠다고 알려져 있다. 북한은 타구치씨가 30세의 나이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나, 당국은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그 어떠한 신뢰성 있는 증거도 제시하지 않았다.

#### 치무라 (과거 하마모토) 후키에 부인과 치무라 야수시 씨 - 1978년 7월 7일

**937** 치무라 부부는 일본 후쿠이 현 오바마 해안 근처에서 사고 모임을 즐기던 와중 납치되었다. 이 부부는 납치에 관한 인정 이후 2002년 일본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5명의 일본인 중 2명이었다. 그들은 북한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이후 2004년에는 부부의 자녀들 또한 일본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2006년, 일본 정부는 그들의 납치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북한 요원 신광수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하였다.

#### 하스이케 유키코 (전 오쿠도) 부인과 하스이케 카오루 씨 - 1978년 7월 31일

**938** 하스이케 부부는 일본의 니가타 현, 가시와자키 해안에서 납치되었다. 하스이케 부부는 2002년 일본으로 돌아왔던 5명의 납북자들 중 2명이었으며, 자녀들은 2004년에 귀환하였다. 2006년과 2007년, 일본 당국은 부부의 납치와 연관된 것으로 추정되는 세 명의 북한 요원 최선철, 한명일, 그리고 김남진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하였다.

#### 마스모토 루미코 씨와 이치카와 슈이치 씨 - 1978년 8월 12일

**939** 1978년 여름 납치된 것으로 알려진 세번째 부부, 마스모토 씨와 슈이치 씨는 일본 가고시마 현의 푸기야게 해변에서 석양을 보기 위해 떠난 뒤 사라졌다. 북

한은 두 사람이 1979년 7월 결혼하였으며, 각각 27세와 24세의 나이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한다. 다른 피해자와 마찬가지로,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신뢰할만한 증거는 제시되지 않았다. 마스모토 씨의 형제인 마스모토 테루아키 씨는 위원회에 다음과 같이 회부하였다:

“저희 가족은 루미코에 대해 고통스러운 정도로 걱정을 하였습니다.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우리는 그녀가 어디에선가 살아있기를 기도해왔습니다. 매우 오랜 기간 슬퍼하였으나,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어머니와 저의 상처를 헤집고 어제 일어난 일인양 울음을 터트리게 되어, 얼마 가지 않아 더 이상 그 이야기를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노력했지만, 웃음은 억지였습니다. 루미코는 언제나 우리의 뇌리에 남아 있었습니다. 인생을 즐길 수 있는 방법 자체를 잊었습니다. 내가 사랑했던 자매를 잃는 고통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고, 부모님께서 겪으셨을 고통은 단지 상상만 할 수 있을 뿐입니다.”<sup>1448</sup>

#### 소가 히토미 씨와 소가 미요시 부인 - 1978년 8월 12일

**940** 소가 씨와 그녀의 모친은 일본 니가타현, 사도 섬에서 쇼핑하고 귀가하는 길에 납치되었다. 북한은 소가 히토미 씨의 납치는 인정했으나, 어머니인 소가 미요시 부인의 납치는 인정하지 않았다. 소가 히토미 씨는 납치가 인정된 후, 2002년 일본으로 돌아오는 것이 허용되었다.

**941** 북한에서 소가 히토미 씨는 6·25전쟁 이후 자발적으로 남한 기지에서 벗어나 북한으로 간 다섯명의 미군 탈영병 중 한 명인 찰스 젠킨스와 결혼하였다. 1965년 남한 기지에서 탈영한 젠킨스 씨는 그보다 앞서 북한으로 간 세 명의 미국인 래리 알렌 압쉬어(Larry Allen Abshier) 씨(1962), 제임스 요셉 드레스노크(James

1448\_ 조사위원회 제출: Masumoto Teruaki.

Joseph Dresnock) 씨(1962), 그리고 제리 웨인 파리쉬(Jerry Wayne Parrish) 씨(1963)와 근접한 거리에 거주하였다고 보고한다.<sup>1449</sup> 젠킨스 씨에 따르면, 이 네 명은 아주 밀접하게 감시되었으며, 이동의 자유가 심각하게 제약된 상태에서 관리되었다. 이들은 1966년 러시아 대사관에 망명을 신청하여 북한 탈출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한 후, 북한을 떠날 수 있는 기회는 없음을 확신하였다. 그들은 자발적으로 북한에 갔지만, 스스로 포로가 될 수밖에 없었다. 젠킨스 씨와 그 부부의 두 딸은 2004년에 일본에서 소가 씨와 재회할 수 있었다.<sup>1450</sup>

**942** 납치 당시 아직 19세였던 소가 씨는, 도착 후 첫 일년 간 요코타 메구미 씨와 같은 곳에 억류되어 있었다. 밀접하게 감시되고 일본어로 서로 대화하는 것이 금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둘은 매우 가까워졌다.

#### 하라 타다키 씨 - 1980년 6월

**943** 하라 타다키 씨는 1980년 6월 일본 미야자키 현에서 사라졌다. 북한 요원 신광수 씨는 이후 일본에서 하라 씨의 신분으로 위장하였다.<sup>1451</sup> 그는 또한 하라 씨의 여권으로 한국을 포함한 타국으로 이동하였다. 그는 체포되었고 한국에 투옥되었다. 그의 체포 이후, 그는 한국 정부에 하라 씨의 납치와 이송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하였다. 북한은 하라 씨가 1986년 간경화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기자로서 일본인 납치에 관한 많은 정보를 폭로해온 이시다카 켄지 씨는 하라 씨의 납치과정에

1449\_ 다섯 번째 탈영병인 요셉 T. 화이트(Joseph T. White) 씨는 1982년 북한으로 건너왔을 것으로 추정되나, 젠킨스씨는 그를 만나본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여섯 번째 미국 현역군인인 로이 정 씨는 1979년 서독에서 북부 중 미군을 이탈하여 북한으로 망명한 것으로 보고된다.

1450\_ Charles Robert Jenkins with Jim Frederick, *The Reluctant Communist: My Desertion, Court-Martial and Forty-Year Imprisonment in North Korea*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08), p. 171.

1451\_ TSH037.

대해 위원회에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신광수와 협력했던 세 사람은 그의 지시를 따랐으며, 오사카에서 근무하는 하라 타다키라는 요리사를 납치하였고, 규슈에서 다른 북한 간첩과 만나게 하고 그를 가방에 넣어 북한으로 돌아가는 배에 강제로 태워 납북시켰습니다.”<sup>1452</sup>

944 일본 정부는 추가로 네 명의 일본인이 북한에 의해 납치된 것으로 주장하며 그들의 석방 및 송환 방법을 모색하였다.<sup>1453</sup> 북한 당국은 네 명의 일본인이 북한에 입국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쿠메 유타카 씨 - 1977년 9월 19일

945 쿠메 유타카 씨는 일본의 이시카와 현, 우시즈 해안에서 납치되었다. 전직 경비원이었던 우시즈 씨는 북한요원으로 활동하던 한국계 일본인에게서 돈을 벌 수 있다는 핏에 빠졌다. 그 요원은 쿠메씨에게 해안에서 멀리 정박해 있는 배에 고무보트를 타고 돈을 나르는 일을 부탁하였다. 쿠메 씨는 돌아오지 않았다. 경찰은 의심스러운 행동 때문에 그 요원을 23일 동안 구금하였으나, 결국 일본을 떠나기 전 쿠메 씨의 의도가 무엇이었는지를 알지 못해 쿠메 씨의 실종에 그가 책임이 있다는 증거를 충분히 수집하지 못하였다.<sup>1454</sup> 북한은 쿠메 씨가 북한에 입국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1452\_ 도쿄 공청회, 2013년 8월 29일, 오전(00:19:25).

1453\_ 타나카 미노루 씨에 대한 네번째 사건은 아래 “외국에서의 납치”에 속해 있다.

1454\_ Ishidaka Kenji, *Koredemo shira wo kiru noka kitachousen: nijonjin rachi zokuzoku todoku 'shozai no akashi'* (North Korea, do you still deny?: The Abduction of Japanese Continues), 2nd ed. (Tokyo, Kobunsha, 2003).

### 마츠모토 교코 씨 - 1977년 10월 21일

**946** 마츠모토 교코 씨는 일본 도토리 현의 한 편직 학교로 향하는 길에 실종되었다. 한 이웃이 그녀가 두 명의 낯선 이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을 목격하였다. 마츠모토 씨의 샌들이 해변가 근처에서 발견되었고, 이는 그녀가 그 낯선 사람들에게 의해 배로 납치되었을 것이라는 추측을 가중시켰다.<sup>1455</sup> 북한과 일본 간의 회담에서, 북한은 마츠모토 교코 씨가 북한에 입국하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 소가 미요시 부인 - 1978년 8월 12일

**947** 소가 미요시 부인은 소가 히토미 씨와 함께 납치되었다(위 참조). 그러나 북한은 소가 부인이 북한에 입국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 (ii) 외국에서의 납치

**948** 공산주의 및 ‘주체’ 사상에 매료된 일본인들의 한 집단은 1970년대 초 자의로 북한으로 갔고, 이후 외국에서의 일본인 납치에 가담하였다.

**949** 9명의 일본인으로 구성된 요도호(淀號) 그룹은 1970년 비행기를 납치하여 북한으로 비행하였다. 일본 적군파(赤軍派)의 소속인 이 그룹은 1969년 일본 공산당의 소규모 급진 좌파 활동가 그룹이었다. 경찰은 당시 일본의 수상 사토 에이사쿠를 납치하려던 분파의 음모를 폭로하였고, 이는 50명이 넘는 회원에 대한 체포와

---

1455\_ 도토리현 웹사이트, “Rachi higaisha Matsumoto Kyoko san” (납치 피해자 Kyoko Matsumoto), <http://www.pref.tottori.lg.jp/93163.htm> 참조.

이 중 9명의 망명 결심으로 이어졌다.<sup>1456</sup> 1970년 3월 31일, 정신적 지주인 시모미 다카야 씨와 행동대장인 다미야 타카마로의 지휘하에, 도쿄에서 후쿠오카로 향하던 일본 항공(JAL) 351편 여객기를 납치해 승객 129명을 태우고 (후쿠오카와 서울에서 승객을 내린 이후) 북한으로 망명하였다.<sup>1457</sup> 납치한 비행기 “요도호”의 명칭에 따라 이 아홉 명은 “요도호 그룹”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쿠바로 향하려고 하였고, 북한에서 보내줄 것이라고 생각하였으나, 북한에 남게 되었다.

**950** 요도호 그룹의 부인과 애인들은 이후 북한 방문이 허락되었다. 미혼 회원들은 북한에 있던 일본 여성과 결혼하였다. 그룹 회원들과 그 배우자들은 평양 외곽에 목적성을 갖고 건립한 “일본 혁명 마을”에 거주하였다. 공산주의 낙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최소한 3대의 혁명가들이 필요하다는 김일성의 믿음에 따라 그들의 최우선적 과업 중 하나는 자녀를 낳고 차세대 혁명가들을 육성하여 함께 일본에서 혁명을 일으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요도호 회원들과 그 배우자들은 김일성의 지시로 혁명 임무를 수행하기 전에 ‘주체’ 사상과 김일성주의에 관한 광범위한 훈련을 받았다.<sup>1458</sup>

- ‘주체’ 사상에 관심을 갖고 있던 일본인 야오 메구미 씨는 1977년 2월, 몇 개월간 북한을 방문하기 위해 북한으로 건너갔다. 일단 도착하자 그녀는 포로로 붙잡혔고, 요도호 그룹 회원인 시바타 야수히로 씨와 강제결혼을 하여 자녀를 갖게 되었다. 1983년 북한에 포로로 잡혀 있는 사이에 그녀는 김일성의 지시와 조선노동당 제56국의 감시하에 어린 일본 여성을 북한으로 유인하도록 강요받았다. 이러한 지시로

1456\_ The Committee for Human Rights in North Korea, *Taken!: North Korea's Abduction of Citizens of Other Countries* (2011), p. 35.

1457\_ Japan's National Police Agency Report, Focus: The Growing Severity of the International Terror Situation: Movements of the Japanese Red Army and the “Yodo-go” Group, vol. 271, as cited in The Committee for Human Rights in North Korea, *Taken!: North Korea's Abduction of Citizens of Other Countries* (2011), p. 35.

1458\_ 전 북한 요원 TSH059.

야오 씨는 아리모토 게이코 씨를 런던에서 북한으로 유인하였는데, 이는 일본 혁명가를 양성하고자 하는 계획의 일부로서 일본인 납치 피해자 이시오카 토루 씨 또는 마츠코 카오루씨와 결혼시켜 자녀를 낳게 하려는 목적이었다.<sup>1459</sup>

**951** 조선노동당 56국은 자그레브에 있는 북한 영사관에서 유럽공작을 개시하였다.<sup>1460</sup> 자그레브의 부영사였던 김유철 씨는 제56국에서 근무하며 요도호 그룹과 그들 배우자의 활동을 감독하였다. 김 부영사와 요도호 그룹 리더인 다미야는 일본인을 “획득”하고 북한으로 보내 혁명세력에 편입시키라는 김일성의 지시에 따라 외국에서의 일본인 납치를 계획하였다.<sup>1461</sup>

#### 타나카 미노루 씨 - 1978년 경

**952** 미노루 씨는 1978년 유럽으로 망명한 후 실종되었다. 2005년, 일본 정부는 미노루 씨를 납치피해자로 명명하고, 북한에 그의 석방을 요구하였다. 북한은 이러한 요구에 응답하지 않았다.

#### 이시오카 토루 씨와 마츠키 카오루 씨 - 1980년 5월

**953** 교우관계인 이시오카 씨와 마츠키 씨는 유럽에서 북한 요원들에 의해 납치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두 사람은 요도호 회원들과 결혼한 두 명의 일본 여성 모리 요리코 씨와 와카바야시(과거 쿠로다 씨)에 의해 북한으로 유인되었다.<sup>1462</sup> 그들의 납치를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두 사람이 상대적으로 젊은 나이에 사망하였다

1459\_ TSH055.

1460\_ 전 북한 요원 TSH059.

1461\_ 전 북한 요원 TSH059.

1462\_ TSH055.



는 입장을 고수한다. 그러나 북한은 이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신뢰할만한 증거를 제공하지 못하였다.

#### 아리모토 게이코 씨 - 1983년 7월

**954** 아리모토 씨는 야오 메구미 씨에 의해 1983년 북한으로 유인되었다. 아리모토 씨는 1983년 7월, 북한에서 시간제 마케팅 직을 가질 것을 설득한 야오양을 만났을 당시, 런던에 있는 어학원에서의 공부를 마치고 곧 일본으로 돌아갈 예정이었다. 요도호 지도자(북한 체류)의 지도와 우오모토(과거 아베), 키미히로(요도호 회원) 및 북한 요원 김유철(구 유고슬라비아 자그레브 주재 북한 부영사)의 감시하에, 야오 씨는 아리모토 씨가 마케팅 회사 매니저(우오모토 씨와 김씨)를 코펜하겐에서 만날 수 있도록 주선하였다. 네 사람이 레스토랑에서 만난 후, 아리모토 씨는 김씨와 함께 북한으로 이동하였고 다시는 모습을 볼 수 없었다. 아리모토 씨는 기존 납치되었던 일본 남성들의 아내가 될 젊은 일본 여성이 “필요”하자 북한요원들의 표적이 되었다.

**955** 1988년 일본에 있는 이시오카 씨의 부모에게 도착한 편지는 마츠키 씨와 아리모토 씨가 북한에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내용이었다. 편지는 폴란드에서 보내온 것으로 보였으며 아리모토 게이코 씨의 보험 서류에 작성되어 있었다.<sup>1463</sup> 편지에는 그들이 그곳에 있는 이유를 쓸 수 없다는 점과 잘 지내고 있다는 말을 제외하고는 더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지 않았다. 이시오카 씨와 아리모토 씨의 자녀로 보이는 한 아기의 사진이 편지와 함께 동봉되어 있었다. 아리모토 부부는 딸과의 접촉을 위해 수년간 영사지원 요청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북일간 외교 관계가 부재한 상태에

1463\_ TSH033, TSH034.

서 일본 정부는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없음을 시종일관 알렸다.

**956** 2002년 3명의 납치 사실을 인정하면서 북한은 아리모토 씨, 이시오카 씨 그리고 그들의 어린 자녀가 집 안에서 가스 중독으로 모두 사망하였다고 알렸다. 그러나 이는 북한의 상황에서 다소 일어나기 힘든 상황이었다. 주장된 바와 같은 그들의 죽음을 입증할 수 있는 신뢰할 만한 세부 사항이나 증거는 제시되지 않았다. 8명의 납북자가 사망하였다는 북한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모든 납북자의 가족들을 대표하여 아리모토 씨의 어머니인 아리모토 가요코 부인은 그들이 딸과 다른 모든 납북자에 대한 해답을 찾을 것이라고 도쿄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조사위원회에 말하였다: “우리는 납치피해자를 구하기 위한 활동을 멈출수 없습니다.”<sup>1464</sup>

#### 타나카 미노루 씨 - 1978년 6월

**957** 2005년, 일본 정부는 타나카 미노루 씨를 유럽에서 북한으로 유인된 납북자로 확인하였다.

**958** 과거 일본의 효고 현에서 레스토랑 직원으로 일하였던 타나카 미노루 씨는 1978년 6월 일본에서 유럽으로 떠나던 중 실종되었다. 북일 회담에서, 북한은 타나카 씨의 북한 입국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고 진술하였다.

#### (iii) 추가 사례

**959** 조사위원회는 더 많은 일본인들이 납치되었다고 믿을만한 증거가 있다는

1464\_ 도쿄 공청회, 2013년 8월 29일, 오전.

것을 발견하였다.

- 조선노동당 35호에서 근무하였던 전 간부는 일본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납치 인원 보다 한 명 많은 일본 여성 열 명을 개인적으로 알고 지내었다.<sup>1465</sup>
- 직접적으로 한 일본인 납치에 관여한 야오 씨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납치되었을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녀는 조사위원회에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정확히 알지는 못하나, 아마도 일본인 수백 명일 것입니다. 모두가[혁명마을의 요도호 구성원과 그 배우자들] 납치를 수행하였고, 오로지 ‘작업’ 혹은 ‘활동’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사람들은 x라는 사람이 두 건의 작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하였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어떻게 모든 사람들이 그 일을 하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sup>1466</sup>
- 해상에서의 일본인 납치에 관여되어 있던 조선인민군 경찰총국의 한 전직 관리는 조사위원회에 그의 납치가담 사실과 함께 해상에서의 일본인 납치 및 강제실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다.  
1979년 11월, 그 전직 북한 관리는 소수의 선원이 승선해 있는 고립된 선박을 찾아 위장한 배로 일본 연안에 당도하였다. 표적이 된 배에는 여섯 명의 선원이 타고 있었다. 그들은 가장 나이가 어린 선원을 포로로 잡아 북한으로 이송하였고, 나머지 다섯 명은 죽었다.<sup>1467</sup>
- 북한과 관련되었으리라 생각되는 특정실종자문제조사사회(The Investigation Committee on Missing Japanese Probably Related to North Korea: COMJAN)는 일본에서 실종된 470명의 사건을 다루는 한 비정부 조사기관이다. 이 기관의 연구에 따르면, COMJAN은 약 280명의 “가능성 있는” 일본인 납북자가 있을 것으로 보며, 이 중 77명은 “상당한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sup>1468</sup> 조사위원회는 전부는 아닐지라도, COMJAN에서 “납치되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이들은 실제로 납북되었을 것으로 본다. 북한에 연관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사건들에는, 몇 가지 양식을 볼 수 있다. 이 중에는 비슷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엔지니어와 인쇄업자)을 납치하는 경우와, 특정 기간에의 실종, 고아였던 성인, 그리고 특정 지역의 여성을 포함한다.

1465\_ TLC040.

1466\_ TSH055.

1467\_ TLC022.

1468\_ 도쿄 공청회, 2013년 8월 29일, 오후, T3 공개.

**960** 납치된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들 중 일부는 북한에서 목격되었다. 예로, “실종된 인쇄업자” 3명 중 한 명인 히다가 노부오 씨를 닮은 사람을 목격하였다고 한 북한 주민이 신고한 일이 있다. 그는 1967년 도쿄에서 실종되었다. 1966년과 1968년 사이에, 도쿄에서는 세 명의 인쇄기사들이 북한으로 납치된 것으로 추정되었다. 셋은 각각 일본의 다른 지방에서 왔으며, 도쿄에서 홀로 거주하고 있었고 인쇄회사에서 근무하였다. 그들은 잠재적으로 위조 지폐를 생산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쇄 기계류를 다룰 수 있는 지식과 기술로 인해 표적이 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961** 일본인 납북자로 추정되는 경우들 중 더 눈길을 끄는 사건 중 하나는 후지타 수수무 씨이다. 후지타 씨는 1976년 2월 7일 시간제 부업을 위해 집을 나선 후 실종된 한 대학생이었다. COMJAN이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그가 북한 요원들에 의해 한 병원에 구금되었으며, 이후 북한으로 이송되었다고 한다. 전 북한 주민으로부터 제공된 한 사진 속 인물이 바로 후지타 씨인 것으로 추정된다. 전문가 분석에 따르면 실종 이전의 후지타 씨의 사진 속 모습과 해당 사진의 모습에는 유사점이 많다고 밝혀졌다. 일본의 조사관들 또한 전 북한 간첩에게서 후지타 씨를 김정일 정치군사대학에서 목격하였다는 증언을 받았다. 후지타 씨 사건은 현재 강제적 또는 비자발적 실종에 관한 실무그룹에서 조사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까지 북한은 후지타 씨와 관련된 사실을 전면부인하고 있다.

**962** 조선노동당 56국에 의해 북한으로 이송되어 온 일본인 납북자들은 더 넓은 범위의 요도호 그룹이 살던 일본 혁명 마을 주택군에 거주한다.<sup>1469</sup> 35호에 의해 북한으로 납치된 일본 여성은 평양에 거주하였다. 35호에 의해 납북된 몇몇 일본 여성들은 북한 요원의 아이를 임신하여 몇 군데 위치한 감호 기관인 ‘밀봉 초대소’에 보내졌다. 아이들이 태어나면, 요원들 부모의 집으로 보내졌다. 자식의 친모는

---

1469\_ TSH055.

주말에만 아이들을 방문할 수 있도록 허용되었다. 이 여성들은 북한에 있는 한 35호의 감시와 통제하에 놓여져 있다. 이들은 집을 나서거나, 아이들을 방문하거나, 어떤 종류의 활동에라도 참여하기 위해서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sup>1470</sup>

### (g) 1970년대 말: 타국에서의 여성 납치 및 강제실종

**963** 1977년부터, 다른 나라의 외국인들 또한 비슷한 방식으로 북한으로 납치되었다. 납치는 때때로 강제성을 동원하여 이루어졌고, 다른 경우 외국인들을 북한으로 유인하는 방식으로도 이루어졌다. 납치의 목적으로는 간첩과 군사훈련 학교에서의 외국어 교육, 기술적 전문지식, 그리고 많은 수의 납북자의 경우, 한인과의 인종간 결혼을 방지하기 위해 북한 체류 외국인들에게 결혼을 위해 “내어주기” 위함이었다. IV장 C에도 언급된 바와 같이, “순수혈통 조선인”은 북한 사회의 핵심적 특성이며 혼혈 조선인의 출생을 방지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 예를 들어, 미국의 육군 탈영병들에게는 불임으로 인해 남편에게 이혼 당한 요리사들이 제공되었다. 젠킨스 씨에 따르면, 이 요리사들은 “기본적으로 비공식적인 부인이 되어야 하고, 전통적으로 아내가 할 법한 모든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미국인들은 이 요리사들과 성적인 관계를 가질 것을 기대하였으며, 집에서 성적 관계가 없을 경우 미국인 남성의 구타로 이어졌다. 1978년, 압쉬어 씨에게 배정된 요리사가 임신을 하게 되었고, 그녀는 “밤사이에 사라졌다.” “압쉬어 씨의 요리사가 실수로 임신함에 따라, 우리의 지도자는 조직 차원에서 북한 여성을 요리사로 제공해주는 정책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고 판단하였으며, 그리하여 레바논에서 온 네 명의 아랍 여성을 우리의 아내로 보내왔습니다.”<sup>1471</sup>

1470\_ TLC040.

1471\_ Charles Robert Jenkins with Jim Frederick, *The Reluctant Communist: My Desertion Court-Martial and Forty-Year Imprisonment in North Korea*, pp. 60~63, 72.

**964** 한국과 일본에서가 아닌, 다른 국가에서의 납치 기록은 압쉬어 씨의 북한 요리사가 임신한 이후부터였으며, 네 명의 탈영병들은 조선인이 아닌 여성과 짝지어졌다. 이것은 북한으로 납치된 비조선인 여성들의 최소한의 일부는 조선인의 순수혈통에 해가 되지 않도록 북한 내의 외국인들의 (성적)파트너로 쓰여질 목적으로 납치되었음을 의미한다.

### 1978년: 네 명의 레바논 여성의 강제실종

**965** 1978년, 네 명의 레바논 여성들이 북한으로 유인되었다.<sup>1472</sup> 찰스 켄킨스 씨에 따르면, 그들은 네 명의 미군 탈영병의 아내가 될 예정이었다.<sup>1473</sup> 그들은 한 달에 천 달러씩 지불받고 도쿄에서 비서 업무를 하게 될 것이라고 통지를 받았다. 이 중 두 명의 여성은 납치 후 일 년하고 한 달 가량 지나 베오그라드를 방문하였을 때 탈출하였다. 나머지 두 명의 여성은 미국 탈영병인 제임스 드레즈노크 씨와 제리 파리쉬 씨의 부인으로 “주어졌다”. 북한에 남아 있던 납치피해자의 한 어머니는 이들 여성이 있는 곳을 알게 되었고, 그들을 풀어주는 조건으로 협상을 하였다. 켄킨스 씨에 의하면, 이들 중 한 여성은 북한을 떠날 당시 미군 탈영병인 파리쉬 씨의 아이를 임신하고 있는 상태였다고 한다. 이 사실이 그녀와 그 가족에게 많은 어려움을 안기자, 그녀는 아이의 아버지와 함께 하기 위해 북한으로 돌아가는 선택을 하였다.

1472\_ Ishidaka Kenji, *Koredemo shirawo kiruno ka kitachousen: nijonjin rachi zokuzoku todoku 'shozono akashi'* (North Korea, do you still deny?: The Abduction of Japanese Continues'), 2nd ed. (Tokyo, Kobunsha, 2003).

1473\_ Charles Robert Jenkins with Jim Frederick, *The Reluctant Communist: My Desertion Court-Martial and Forty-Year Imprisonment in North Korea*, p. 72.

## 1978년: 마카오에서의 태국 여성 납치

**966** 아노차 판조이(Anocha Panjoy) 씨는 1978년 7월 2일 마카오에서 납치되었다. 북한에서 판조이 씨의 인근 아파트에 거주하던 젠킨스 씨에 의하면, 판조이 씨는 마카오에서 강제로 배에 올라 의지와는 반대로 북한으로 이송되었다고 하였다. 그녀의 실종 3일째 발행된 신문 기사에 따르면, 판조이 씨는 일본인으로 위장하였던 한 남자와 소풍을 나갔다고 하였다. 기사에서 인용된 판조이 씨의 친구의 말에 의하면, 판조이 씨가 소풍에서 저녁 6시 이후에도 돌아오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할 것을 당부하였다고 한다.<sup>1474</sup> 이는 젠킨스 씨가 북한에 도착한 이후 판조이 씨에게서 직접 듣게 된 정보와 일치한다. 판조이 씨는 미군 탈영병인 압쉬어 씨에게 “주어졌다”.

**967** 조사위원회는 2013년 9월 태국 방콕에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판조이 씨의 가족으로부터 증언을 받았다. 태국 정부는 판조이씨의 실종을 납치사건이라고 단 한번도 인정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그녀가 사라진 것은 단순 “실종자” 사건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래도 정부는 북한 당국에 반복적으로 판조이 씨에 대한 정보를 요청했으며, 아직 아무런 회신도 없다고 하였다. 태국의 국가인권위원회는 2014년 1월 판조이 씨의 사건에 관한 보고서를 완결시켰다. 조사위원회는 태국 외교부가 판조이 씨에 대한 조사를 계속하도록 태국정부에 권고하였다.

**968** 조사위원회는 판조이 씨가 마카오에 있는 동안 납치되어 북한으로 이송되었다는 것을 증명할 할만 증거가 있고 충분하다고 판단한다. 이러한 결론에는 찰스 젠킨스 씨의 증언과 판조이 씨도 함께 나온 그의 가족사진 증거물이 결정적이었다.

1474\_ *Macao Daily News*, 1978년 7월 5일.

## 1978년: 마카오에서 납치된 두 명의 중국 여성

**969** 두 명의 중국 여성, 홍링잉(Hong Leingieng, 대체 철자: Kong Lingying) 씨와 소모이춘(So Moichun, 대체 철자: Su Miaozhen) 씨는 아노차 판조이 씨와 동일한 시기에 마카오에서 납치되어 북한으로 이송되었다.<sup>1475</sup> 홍씨와 소씨는 마카오의 귀금속점에서 함께 일하였다. 가족들의 증언에 따르면, 두 여성은 귀금속점에서 일본인으로 보이던 한 남자를 알게 되었다고 한다. 북한 요원이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남자는 두 여성에게 너그러웠고, 저녁식사나 다른 종류의 유희를 위해 함께 외출도 하였다.<sup>1476</sup>

**970** 판조이 씨는 젠킨스 씨에게 자신과 함께 마카오에서 배를 타고 온 두 명의 다른 아시아계 여성들이 있었지만, 말을 걸 수 없게 했었다고 말하였다. 북한에 도착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세 명의 여성은 탈의할 것을 지시받았다. 그들의 옷은 이후 세탁되어 깨끗한 상태로 돌아왔다. 도착 후, 세 여성은 조사위원회에 신분이 알려진 두 명의 고위 지도자들에게 검열을 받기 위해 출세워졌다. 전해진 바에 의하면, 각각의 지도자는 중국 여성 한 명씩을 그들의 차로 태워갔다고 한다. 판조이 씨도 이후로는 그들을 다시는 보지 못했다고 하였다. 과거 북한 요원이었던 김현희 씨는 홍씨에게서 중국어를 배웠다고 밝혔다. 납북되었던 남한의 여배우 최은희(위 참조) 씨도 북한에서 홍씨와 연락하였던 사실을 보고하였다.

## 1978년: 싱가포르에서 납치된 네 명의 말레이시아 여성과 한명의 싱가포르 여성

**971** 남북일본인구출협의회(National Association for the Rescue of Japanese

1475\_ 남북일본인구출협의회(NARKN), <http://www.sukuukai.jp/narkn/updates.html> 참조.

1476\_ *Macao Daily News*, 1978년 7월 5일.



Kidnapped by North Korea: KARKN)에 의하면, 1978년 8월 20일, 네 명의 말레이시아 여성 - 옹 요케(Yeng Yoke, 23세), 시토 타이 팀(Seetoh Tai Thim, 19세), 압 메 령(Yap Me Leng, 22세), 그리고 마가렛 옹 구앗 추(Margaret Ong Guat Choo, 19세)<sup>1477</sup>, 그리고 한명의 싱가포르 여성 다이아나 응 금(Diana Ng Kum)<sup>1478</sup> - 은 싱가포르에서 납치되었다. 일본인이라고 주장한 두 남자는 파티에 보낼 다섯명의 여성을 보트에 태우기 위해 알선소에 의뢰하였다. 19세에서 24세 사이였던 다섯명의 여성은 사라졌고, 보트의 모습은 다시는 볼 수 없었다. 최은희 씨의 주장에 의하면 북한에서 근처에 살고 있는 말레이시아인들에 대해 들어보았다고 한다.

**972** 조사위원회는 북한의 자국민 납치 주장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추적하기 위해 싱가포르 정부와 말레이시아 정부 양쪽에 문의하였다. 싱가포르 정부는 사건자체와 이 사건과 관련된 어떠한 정보도 갖고 있지 않다고 알렸으며, 가까운 친척의 영사 지원 요청 또한 전무했다고 하였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추가적인 정보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 1979년: 루마니아 여성의 강제실종

**973** 도나 뽀베아(Dona Bumbea) 씨는 1978년 이탈리아에서 실종되었으며 북한으로 유인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뽀베아 씨는 이탈리아에서 미술 공부를 하는 중에 그녀에게 미술상이 될 것을 추천한 한 이탈리아 남자를 만났고, 그는 그녀가 홍콩에서 전시회를 열도록 설득하였다. 둘은 홍콩으로 가는 길에 북한을 경유하였고, 도중 이탈리아 남자는 사라졌다. 뽀베아 씨는 북한에 억류되었고 미군 탈영병인

1477\_ *The Star*, 2005년 12월 15일. <http://www.thestar.com.my/story.aspx?file=percent2f2005percent2f12percent2f15percent2fnationpercent2f12876706&sec=nation> 참조.

1478\_ *The Straits Times*, 2005년 12월 17일.

드레즈노크 씨에게 “주어”졌다. 봄베아 씨는 북한에서 사망하였으며, 1981년 태어난 리카도 드레즈노크(Ricardo Dresnock) 씨와 1983년 태어난 제임스 가브리엘 드레즈노크(James Gabriel Dresnock) 씨, 두 아들을 남겼다.<sup>1479</sup> 둘은 “푸른 눈의 평양 시민” (2006)과 “프로파간다가 영화를 덮쳤을 때” (2013)을 포함한 여러 다큐멘터리에 출연했다. 루마니아에 있는 봄베아 씨의 가족은 봄베아 씨의 아들들을 보고 싶어하여도 연락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일체 제한되었다.

**974** 루마니아 정부는 2006년 찰스 젠킨스 씨의 책이 출판됨에 따라 북한에서 봄베아 씨의 생활이 입증되었고, 북한 당국에 봄베아 씨에 대한 정보를 요청하였고 조사위원회 측에 밝혔다. 루마니아 당국의 요구에 대해 북한은 다음과 같은 답변을 하였다: “현 상황에서 루마니아 국민이 납치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어떠한 암시나 증거도 없습니다.”<sup>1480</sup>

## 프랑스 여성

**975** 조사위원회는 또한 신원 불명의 프랑스 여성의 납치 관련 정보를 받았다. 최은희 씨에 따르면, 이 프랑스 여성이 프랑스에서 자칭 아시아계 부호 상속인이라고 주장한 한 북한 요원과 낭만적 관계로 엮여 북한으로 유인되었다고 한다. 그 여성은 남자와 함께 평양으로 갔으나, 남자는 그 뒤 사라졌다. 그녀는 북한의 “초대소”(guest house)에 남겨졌다.<sup>1481</sup> 또한 김현희 씨도 같은 프랑스 여성을 목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젠킨스 씨는 두 사람 모두 참여한 영화제작에서 한 프랑스 여성을 본 것을 상기한다. 그러나 그는 그 여성이 납치되었는지 여부는 알지 못한다고

1479\_ TJH040.

1480\_ 루마니아 상임공관에서 북한조사위원회에 발송된 2013년 12월 19일자 서신.

1481\_ 남북일본인구출협의회(NARKN) 제공.

하였다.<sup>1482</sup>

1. 귀환된 레바논 납북피해자들에 의해 제작된 동시보고서에 따르면, 레바논 여성들이 억류되어있던 같은 캠프에 세 명의 프랑스 여성도 있었다고 한다.<sup>1483</sup>
2. 조사위원회는 다른 외국인, 특히 외국인 여성의 경우 북한에 의해 납치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간주한다. 그들의 귀환에 있어서, 위에 언급된 레바논 여성들은 수용소에 세 명의 프랑스 여성, 세 명의 이탈리아 여성, 두 명의 독일 여성, 그리고 유럽에서 온 한명과 중동에서 온 여성들을 포함하여 28명의 외국인 여성들과 함께 구금되어 있었다고 레바논 매체에 언급하였다고 한다.<sup>1484</sup>

#### (h) 1990년대부터 현재: 중국에서의 납치

**976** 1990년대에 시작된 주민들의 중국으로의 대거 이주에 대한 대응으로,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요원들은 중국 내에서 조직적 납치를 자행하였다. 피해자들은 북한 내 강제실종의 대상이 되었다. 북한 주민들이 중국에서 한국으로 탈출할 수 있도록 도운 중국과 한국 사람들과 함께, 전직 북한관료 및 외부세계와 한국에 민감한 정보를 제공할 만한 사람들은 주요 피해자들 중 일부였다:

- 국경 지역에서 광범위하게 활동하던 한국의 인권운동가 김영환 씨는 지난 15년 간 적어도 여섯 명의 한국인과, 주로 한국계 중국인들이 납치되었을 것이라고 증언했다. 김씨는 또한 납치가 특정 북한 주민들을 표적으로 삼았다고 언급하였다. “적어도 지난 15년간 상당 수의 납치와 테러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북한은 납치 조직을 구축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 이들은 납치를 위해 사람들을 파견하였고 [중국의 주요 도시로] 납치범들은 선양 등의 먼 도시까지 뺏어나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무차별적으로 북한 사람들과 남한 사람들을 납치하는 것이 아니라, 보위

1482\_ TSH054.

1483\_ NARKN.

1484\_ HRNK, *Taken!* report, p. 33 참조 (인용된 증언은 피해자들이 1979년 레바논 신문에 제공한 것).

부(국가안전보위부)나 경찰 등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중요 인물들을 납치하였습니다. 그들은 한때 중요 보직을 맡았던 북한이탈주민들을 표적으로 삼았습니다. 목표물로 삼은 사람이 중요 위치에 있던 사람이 아닐지라도, 중국에서 반정부 활동에 가담한 사실이 발각되면, 납치의 표적이 되었습니다.”<sup>1485</sup>

**977** 조사위원회는 중국에서 북한 국가안전보위부를 위하여 중국에서 납치를 자행한 첩보원들에 유죄판결을 내린 한국과 중국 두 법원의 판결을 각각 입수할 수 있었다. 조직적인 납치와 그 방법에 대한 판결의 자세한 조사결과는 상호보완적이며, 또한 독립적으로 실시한 공청회, 기밀 인터뷰와 진술을 통하여 얻은 정보로도 입증된다.

**978** 첫 번째는 한국 서울중앙지방법원의 2005년 판결이다.<sup>1486</sup> 제시된 결과는 한중 국가안전보위부 첩보원인 한 피고의 증언, 그리고 직접적으로 납치에 가담하였던 전 북한 요원 한 명의 증언에 기초한다. 이는 한국의 김동식 목사의 납치, 과거 일본국적을 가졌던 량추옥 씨와 그 가족, 그리고 북한 주민에 대한 기타 12건의 납치 등 북한이 납치에 대해 세세히 알리는 역할을 하였다. 피고는 유죄판결이 내려졌고,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다.

**979** 두 번째는 중국 지린성의 옌벤 조선족 자치주 중급인민법원의 2006년 판결이다.<sup>1487</sup> 6건의 납치와 1건의 불법 구금을 이유로 두 명의 북한 사람과 네 명의 중국인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판결이다. 판결은 그들이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고위관료의 지시를 받아 납치를 수행했음을 발견하였다. 판결에서 피해자로 언급된 이들은 과거 일본인이었던 량초옥 씨와 한국의 김동식 목사였다. 국가안전보위부 정보원들

1485\_ 서울 공청회, 2013년 8월 24일, 오후(00:20:00).

1486\_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년 4월 21일(2005합43).

1487\_ 판결은 비공개 절차에 기반하며, 이는 법원에서 국가 기밀이 연루되어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었다. 조사위원회는 신뢰할만한 정보원에게서 판결문의 복사본을 입수하였다.

중 북한 사람 두 명은 각각 3년 7개월과 3년 6개월형을 선고받았다. 중국인들은 6개월에서 2년형을 선고받았다.

**980** 판결 내용과 위원회에서 전해들은 추가적인 목격자 증언 및 또다른 입수된 정보들에 의하면, 북한의 입장을 반영하여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요원 및 중국인들의 팀 전체가 치밀하게 조직된 납치를 상당수 수행해 온 것으로 보인다. 그들은 북한 함경북도 회령에 근거지를 둔 국가안전보위부 요원들에 의해 유지되었고 밀착된 작전 지침과 지시하에서 행동하였다. 회령에 ‘곡산’공장으로 일컬어지는 국가안전보위부 “안전가옥”은 작전을 위한 기지로 사용되었다. 함경북도에 주둔하며 작전을 지시한 국가안전보위부 부대 지휘관들이 중국과 한국의 판결 내용에 언급되었다. 독립적으로, 조사위원회는 중국에 주둔하던 한 전 국가안전보위부 요원과 북한 주민의 탈북을 돕는 작전을 수행한 또다른 목격자에게서 동일한 인물들이 연루되었음을 시사하는 정보를 받았다.<sup>1488</sup>

- 2000년 1월, 국가안전보위부 작전팀은 중국 지린성 엔지시에서 김동식 목사를 납치하였다. 김 목사는 중국에서 한국으로 북한 주민들이 도망가는 것을 도왔기에 북한의 표적이 되었다. 국가안전보위부 작전요원들은 그를 함정으로 유인한 뒤, 북한으로 강제이송하여 국가안전보위부 작전요원들에게 넘겼다. 북한에서 김동식 씨는 함경북도 회령의 한 국가안전보위부 지하 심문 감방에 감금되었다. 김동식 씨와 같은 시기 함께 국가안전보위부 지하 감방에 구류되어 있던 정광일 씨는 그가 그곳에서 김동식 씨를 보았고 함께 대화도 나누었다고 조사위원회에 증언하였다. 김동식 씨는 목발을 짚고 있었으며, 고문으로 인한 부상이 있어 보였다.<sup>1489</sup>

통일연구원에 따르면, 김동식 씨는 고문중 지속된 부상으로 인해 2001년 2월 구금중 사망하였다고 한다.<sup>1490</sup>

1488\_ TBG031 and TLC026.

1489\_ 2013년 8월 21일 서울 공청회에서 정광일 씨의 증언과 김 목사의 부상에 관한 추가내용은 정광일 씨와의 비공개 면접를 통해 제공받았다. 관련된 증거는 또한 목격자 EJH003에게서도 받았다.

1490\_ KINU,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6), p. 252; Christian Solidarity Worldwide,

- 1999년 2월, 국가안전보위부 요원이 량초옥 씨와 그 가족 3명을 납치하였다. 주요 피해자는 61세 일본 여성으로서, 그녀는 1960년대에 북한으로 이주되었고, 이후 북한 주민이 되었다. 지상 작전요원들에게 전달된 지시에 따르면, 회령에 있는 국가안전보위부는 수단을 가리지 않고 피해자와 그녀의 가족을 납치하라는 “상부의 지시”를 받았으며, 이는 “량초옥 씨와 그 가족이 일본으로 탈출에 성공한다면 북한에 불명예로 남을 것”이기 때문이었다.<sup>1491</sup>

**981** 아래는 이외에도 1998년부터 2000년의 기간 동안 북한의 국가안전보위부에 의해 치밀하게 계획된 작전에 따라 중국에서 납치된 사람들이다:<sup>1492</sup>

- 1998년 3월, 북한 주민이었던 천성(중국어: Qian Cheng) 씨는 중국 지린성 옌지에서 1998년 북한에 의해 납치되었다. 그는 한국의 정보기관과 협조했다는 혐의로 국가안전보위부의 표적이었다.
- 1998년 8월, 전직 북한 기자였던 최천석(중국어: Zhu Yuan) 씨는 탈북해 한국 국적을 취득했다는 이유로 중국 지린성 옌지에서 국가안전보위부에 의해 납치되었다.
- 류영범 씨는 1999년 1월 중국 지린성 룡징시에서 북한에 납치되었다. 그와 함께 일하던 박범옥 씨는 중국 지린성 안투현에서 한 달 뒤 납치되었다.
- 1999년 2월, 석두옥 씨는 중국 지린성 룡징시에서 북한에 의해 납치되었다.
- 1999년 2월, 박성국 씨는 한국의 정보부를 위해 일한다는 북한의 혐의를 받고 중국 지린성 룡징시에서 납치되었다.
- 1999년 2월, 국가안전보위부원들은 중국 지린성 룡징시 싼허마을로 도망친 조선인 민군 군인 한 명을 납치하였다.
- 1999년 2월, 국가안전보위부원들은 두 명의 조선인민군 군정보사령관과 결탁하여 중국 지린성 룡징시에서 두 명의 군인을 납치하려는 시도에 실패하였다. 그들은 탈

“North Korea: A Case To Answer – A Call To Act,” p. 57, 스투어트 윈저 목사에 의해 런던 공청회 5세션에서 조사위원회에 제출됨(증거물 L4).

1491\_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년 4월 21일(2005고합43).

1492\_ 이러한 사건들은 2005년 4월 21일(2005고합43)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의해 실제로 일어난 것으로 밝혀졌으며, 두 번째 판결은 위와 같이 연벤 조선족 자치주인 중국 지린성의 중급인민법원에서 2006년에 내려졌다.

북하는 이들을 돕고 있었다.

- 1999년 3월, 국가안전보위부원들은 지린성 룡징시에서 황영찬 씨를 납치하였다. 그는 중국으로 탈북하기 이전에 평양의 고위관료였다.
- 1999년 3월, 임인숙 씨와 그녀의 남편 한인찬씨, 그리고 두 딸, 아들, 그리고 8살 손자는 중국 지린성 안투현에서 북한에 납치되었다.
- 1999년 6월, 국가안전보위부의 곡식 절도 혐의를 받던 김창록 씨는 지린성 룡징시 싰허진에서 국가안전보위부원들에 의해 납치되었다.
- 2000년 10월, 북한 요원들은 지린성 옌지에서 중국 국적의 진쨥루(Jin Zhonglu) 씨를 납치하였다. 피해자는 과거에 첩보를 가지고 탈북해 중국 국적을 취득하였다.
- 2001년 4월, 북한 요원들은 진후제(Jin Huzhe) 씨를 중국 지린성에서 납치하였다. 그들은 실제 표적이었던 다른 북한 사람에 대한 정보를 알아내기 위해 그를 두만강에서 익사시킬 것이라며 협박하였다. 요원들이 그들의 실제 표적이 이미 중국에서 한국으로 갔다는 사실을 알았을때, 진후제 씨는 풀려났다.

**982** 조사위원회는 중국에서 사람들을 납치하는 북한의 행동이 비단 1998년에서 2001년 사이에 일어난 납치에 국한되지 않고, 오랜 기간동안 실시되어왔을 것이라고 믿을 만한 근거가 있었다.

- 최고지도자와 그 가족을 보호하라는 지시를 받은 전직 북한 호위사령부원은 1989년 중국으로 탈북했다고 증언하였다. 그가 베이징에 도착한 이후, 한국의 외교관을 가장한 북한 요원들은 그를 북한 대사관으로 유인하였고, 그곳에서 평양으로 다시 강제 이송되었다. 증언자는 이후 완전히 풀려나기 전까지 요덕 15호 정치범수용소에 수년 간 수감되었다.<sup>1493</sup>
- 1995년 7월, 안성운 목사가 납치되었다.<sup>1494</sup> 그는 이후 북한 텔레비전에 나온 것으로 알려졌으며 그 이후로는 소식을 들을 수 없었다.

1493\_ TBG012.

1494\_ 신뢰할 만한 비밀 정보원에게서 서면으로 제출된 TLC026. 사건은 또한 HRNK, Taken! report, p. 30.에도 반영되어 있다.

- 세계기독교인연대(Christian Solidarity Worldwide)가 조사위원회 측에 제공한 정보에 따르면, 북한 주민인 길지만, 김철훈, 김철수 그리고 심성신 씨는 2003년 4월 모두 중국에서 납치된 것으로 전해진다. 2002년에 한국으로 탈북한 진경숙 씨는 2004년 8월 중국으로 방문하던 중 납치되었다. 전 북한 군관리였던 강정 씨와 북한 주민의 탈북을 돕는 것에 가담하고 있던 임영학 씨는 2005년 중국 지린성 옌지에서 납치된 것으로 전해진다.<sup>1495</sup>
- 70개의 NGO를 아우르는 북한자유연합은 73세 여성인 이주임 씨가 중국의 한 병원에서 북한 요원들에 의해 납치되었다고 보고하였다. 요원들은 북한이 6·25전쟁 도중 젊은 여성이었던 이씨를 납치했었기 때문에 사실상 그녀를 표적으로 삼았던 것이었다. 2008년 4월, 42세 조선족 이기천 씨는 두만강 인근에서 북한 요원들에게 붙잡혔다. 이씨는 북한 주민들의 탈북을 돕는 데에 연관되어 있었고, 새로 도착한 북한 주민들을 국경에서 중국 옌지로 안내하고 있었기에 납치되었다.<sup>1496</sup>
- 한 증언자는 중국 지린성 옌지시에서 추씨(전체 성명 공개하지 않음)의 2010년 납치 사실에 대해 조사위원회에 증언하였다. 조선족 남성이었던 추씨 또한 탈북하는 이들을 돕는 데에 가담하였다.<sup>1497</sup> 조사위원회에 제출된 또다른 기밀보고에 의하면 조선족 약 200명 가량이 납치되었을 것이라고 추정하였다.
- 국경지역의 중국쪽에서 북한이탈주민들을 돕고 인근 지역을 자주 방문하는 몇몇 다른 목격자들은 국가안전보위부의 꾸준한 주둔과 납치위협이 있음을 증언하였다.<sup>1498</sup> 한 증언자는 국가안전보위부 정보원으로 밝힌 사람들에게 두 차례에 걸쳐 물리적인 공격을 당하기도 하였다. 그는 두 차례 모두 가까스로 탈출할 수 있었다.<sup>1499</sup> 다른 증언자들은 중국 보안 기관의 가까운 이들로부터 특정 경고를 받아 어떻게 계획된 납치에서 탈출하였는지에 대해 이야기하였다.<sup>1500</sup> 최근 탈북한 한 전직 북한 관리는 국경 지역의 여러 교회에 접근을 시도하였으나, 교회 지도자들이 증언자를 도울 경우 납치피해자가 될 것을 두려워하여 외면당하였다고 보고하였다.<sup>1501</sup>

1495\_ Christian Solidarity Worldwide, "North Korea: A Case To Answer - A Call To Act," p. 57, (exhibit L4) 참조.

1496\_ North Korea Freedom Coalition, "The List' of North Korean Refugees and Humanitarian Workers Seized by Chinese Authorities," 2013, pp. 9 and 20.

1497\_ TLC018.

1498\_ EJH003, TGC004, TJH010, TJH024.

1499\_ TLC026.

1500\_ EJH003, TGC004, TJH024.



- 한 전직 관리는, 태국에 주재하는 북한 관리들이 태국으로의 탈북을 성공한 고위급 북한이탈주민들을 찾아내어 납치할 것을 지시받았다고 이야기하였다.<sup>1502</sup>

## 2. 실종으로 인한 고통, 차별과 박해

### (a) 북한에서 납북자들과 그 자녀들이 겪는 고통과 처우

**983** 강제실종선언은 강제실종을 세계인권선언에 명시된 기본적 자유와 인권의 심각하고 명백한 침해이자 인간 존엄성의 위반이라고 분류한다.<sup>1503</sup> 납북자들은 차별을 포함하여 자국을 떠날 권리 박탈과 같은 많은 추가적인 인권침해를 당하였다.

**984** 북한으로 강제실종된 모든 이들은 특별 감시하에 있으며, 북한 내에서의 이동이 제한되어 있다.<sup>1504</sup> 그들은 모든 사람이 어디에서나 법 앞에 인간으로서 인정받을 권리와,<sup>1505</sup> 고문 및 그밖에 잔혹하고,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를 받지 않을 권리를 박탈당하였다.<sup>1506</sup> 조선노동당과 조선인민군은 각각 다른 납북자 집단을 감시하도록 임무가 주어졌다. 예를 들어, (조선노동당)35호는 직접 납치한 이들을 감시하고, (조선인민군)519국은 한국인이 아닌 외국인 납북자 대다수를 감시한다.<sup>1507</sup> 북한에서 외국인 납북자들을 관찰하고 감시하는 방법에는 모든 소리를 녹음하기 위해 가택을 도청하는 것과, 보조들로 둘러싸인 지역에 구금하는 것, 그리고 감시요원의 동행하에서만 일주일에 한번 집을 나서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 포함된다.

1501\_ TGC004.

1502\_ TBG022.

1503\_ 강제실종선언, 제1조제1항.

1504\_ 자유권규약, 제9조와 제12조.

1505\_ 자유권규약, 제16조.

1506\_ 자유권규약, 제7조.

1507\_ TLC040, TSH054.

(귀국자들과 그들의 일본인 배우자를 포함하여)실종된 한국인들은 북한 사회에 흡수되어 정기적인 감시와 검열하에 놓여있고,<sup>1508</sup> 직장에서나 인민반에서는 더욱 추가적인 감시를 받아오고 있다. 납북자들은 “지속적 감시”하에 있다고 보고되고 있고, 이는 1968년 북한의 미 해군 정보 수집함 USS Pueblu호 억류와 같은 국제적 사건이 발생한 시기에는 더욱 심해진다고 알려졌다.

**985** 북한에서 납북자 가족들에 대한 감시는 납북자들이 탈북하였거나, 탈북할 가능성이 있다는 혐의를 받을 때 심해진다.<sup>1509</sup> 오길남 씨의 경우(위 참조), 그가 독일에서 다른 한국인들을 북한으로 유인하도록 배치된 후, 그의 충성심을 증명할 때까지 오씨의 가족들은 구금되었다. 임무 수행 도중 그가 탈출한 사실이 북한에 보고되자, 그의 아내와 두 딸은 요덕 정치범수용소로 보내졌다.<sup>1510</sup>

**986** 이동에 대한 감시와 제한이 엄격하여, 탈북했다가 북한에 의해 강제실종된 사람들은 중국과 북한의 국경선을 넘었다가 강제송환되었다. 예를 들어, 일본에서 “지상 낙원”으로 이주해 온 일본 여성인 량초옥 씨의 가족은 중국에 있는 그들의 새로운 집을 추적당하였다. 네 명의 가족은 그들의 집으로부터 강제적으로 이송되어 북한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987** IV장 B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북한에서는 ‘성분’ 체제에 기반한 차별이 만연하다. 많은 6·25전쟁 납북자들과 송환되지 않은 국군포로들은 그들의 출신 때문에, 사회에 흡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적대계층으로 분류되어 국가와 북한 주민들로부터 남한 출신이라는 차별로 고통받았다. 예를 들어, 국군포로의 부인은 ‘성분’을

1508\_ IV장 A 참조.

1509\_ TJH005, TJH021, TJH022, TBG016.

1510\_ A/67/370, [31-38].

지키기 위해 당국으로부터 국군포로 남편과 이혼하도록 압력을 받았다. 이후 여자는 경찰관과 결혼하였고, 국군포로는 실종되었다.<sup>1511</sup>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출신을 타인에게 밝히지 않았으며 어떠한 경우에는 가족에게조차 숨겼다. 이러한 국가와 북한 주민들에게서 오는 이중적 차별은 관계의 제한을 가져왔으며, 이들을 특별 감시하에 놓이게 하였고, 이동의 제약 및 교육, 고용기회, 식량과 의료에 대한 제한적 접근만 가능케 하였다.

**988** 납북자들에게는 교육혜택과 고용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으며, 투표권도 행사할 수 없었다. 납북자들은 이러한 점에서 특히 차별받았다.<sup>1512</sup> 그들의 자녀들은 군대에 입대하거나 대학에 진학할 수 없었다.

- 납북 어부 이재근 씨는 북한에서 태어난 그의 아들이 대학에 진학할 수 없게 되자, 아들에게 교육혜택을 누리게 하기 위해 북한을 떠났다 “저는 그들이 아들에게 대학을 갈 수 없도록 하였기 때문에 북한을 떠났습니다. 만약 당신의 자녀를 교육시키지 않는다면, 그들은 성공할 수 없을 것입니다.”<sup>1513</sup>
- 돌아온 국군포로에 의하면 실종된 한국인의 자녀들은 강제로 광산에서 일을 한다고 한다. 그는 또한 조사위원회에 그들이 북한 사회에 흡수되어 공민증을 받게 된다고 할지라도 5년간 투표권이 없다고 증언하였다.<sup>1514</sup>

**989** 강제실종된 사람들의 대부분이 이후 “적대”계층으로 분류되어 지방, 특히 함경북도로 보내짐에 따라 이들이 낮은 지위로 인해 1990년대 기근의 첫 번째 피해자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제한된 자원으로 외진 지역에 살도록 강제된 것은 강제실종된 이들로 하여금 의료시설에 대한 제한된 접근만이 가능하도록

1511\_ TJH029.

1512\_ TBG015, TJH029.

1513\_ 서울 공청회, 2013년 8월 23일, 오전.

1514\_ TBG015.

하였다.

**990** 외국인 납북자들은 주로 평양과 근접한 곳에 억류되었으므로 비록 1990년대의 기근 피해를 면하였고 의료 서비스 또한 제공되었으나, 다른 종류의 고통을 받았다. 북한 사회로 편입되지 못함에 따라 일할 권리가 박탈되었고, 자택을 떠날 수 없었으며 사회에서 자유롭게 이동할 수도, 자녀를 위한 교육 기회를 선택 할 수도 없었으며, 감시자들로부터의 원치 않는 성적 접근 혹은 강제결혼과 같은 성적, 성차에 기반한 침해에 당해야 했다.

**991** 국가는 어머니가 강제실종된 외중에 아이가 태어난 경우 완전한 보호를 보장해줄 의무가 있다.<sup>1515</sup> 이러한 상황에서 모든 아이의 출생은 신고되어 그 아이의 진정한 정체성을 보장해주어야 하며, 친지나 법적보호자에게 고지되어야 한다.<sup>1516</sup> 북한은 이러한 요건들을 위반한 가운데, 납북자들에게서 태어난 아이들을 부모의 국적으로 신고하지 못하게 했을 뿐 아니라, 타국에 있는 다른 가족들에게도 연락을 취할 수 없도록 하였다.

## (b) 실종자의 가족들이 겪는 고통

**992** 납북자의 가족 구성원들은 고문 및 그밖에 잔인하고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취급을 당하였다.<sup>1517</sup> 이들은 진실을 알 권리<sup>1518</sup>를 포함하여 가족생활과 문화

1515\_ 강제적 또는 비자발적 실종에 관한 실무그룹에 의해 채택된 강제실종 피해 여성에 대한 제98차 회기에서의 일반논평, 2013년 2월 14일(A/HRC/WGEID/98/2), 3.

1516\_ *ibid.*

1517\_ 자유권규약, 제7조.

1518\_ 강제실종과 그 지속성에 의해 수반되는 침해와 관련하여 1992년 12월 18일 총회 결의 47/133호에 의해 채택된 강제실종선언 서문과 제17조 참조.

적 관습 등 인권침해에 대한 효과적인 구제를 받을 권리<sup>1519</sup>를 거부당하였다.

### (i) 진실을 알 권리의 침해

993 6·25전쟁이 60년 전에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도 가족들과 연락이 닿지 않거나 그들의 생사를 확인할 수 없는 6·25전쟁 납북자나 귀환하지 못한 국군포로들에게는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이다. 전후 납북자들의 친지들은 생사를 알지 못함으로써 지속적으로 겪는 고통에 대해 조사위원회에 전하였다. 납북 어부의 어머니는 조사위원회에 납북된 그녀의 아들과 소통하지 못하는 슬픔을 묘사하였고, 서신이나 전화통화와 같은 최소한의 것이라도 얼마나 간절히 원하는지를 말하였다.<sup>1520</sup>

### (ii) 가족생활을 영위할 권리의 침해

994 인권법에 의하면 가족은 근본적이고 자연적인 단위로서 국가의 전면적인 보호를 필요로 한다. 가족들이 하나될 수 있도록 하며, 떨어지게 되었을 때 재결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라고 명시하고 있다.

995 남북한의 이산가족 상봉행사 성사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강제실종된 이들 중 아주 소수만이 사랑하는 이들과 일시적으로 재회할 수 있었다.

996 납북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하에서 소수의 6·25전쟁 이후 납북자 가족들이 이산가족 상봉행사에 참석할 수 있었다.<sup>1521</sup> 이산가족 상봉행사 참석

1519\_ 자유권규약, 제2조.

1520\_ TSH021.

을 희망했던 대부분의 납북자 가족들은 그들의 가족의 생사 여부 확인 절차에서 사랑하는 이들이 사망하였거나, 생사를 확인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아야만 하였다. ‘인민위원회’(지역 수준)부터 ‘인민반’(이웃감시제도)까지의 북한의 남한 출신에 대한 높은 감시 수준과 사회 전반의 감시 환경을 고려했을 때, 조사위원회는 북한에서의 생사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어렵지만 받아들여야만 하였다.

**997** 2002년에 일본으로 돌아간 다섯 명의 납북 일본인들을 제외하고, 한국 이외 국가의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강제실종자들이 가족과 연락을 하거나 돌아오도록 허가를 받는 데에 어떠한 조치도 취할 수 없었다. 몇몇의 증언자들은 조사위원회에 그들의 가족생활을 박탈당하는 것으로부터 오는 고통을 호소하였다.

- 85세의 김향태 씨는 그녀 주변의 가족들을 지켜보는 고통과 그녀도 그랬으면 좋겠다는 바람에 대해 이야기 하였다.

“만약 제 남편의 시신이라도 찾을 수 있다면 저는 그 옆에 놓고 싶습니다... 손을 잡고 있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할아버지가 손자의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을 볼 때마다, 아버지에게 사랑받는 아이들을 볼 때마다 저도 저렇게 할 수 있었으면 하고 생각합니다. 제 남편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가 범죄를 저지르고 그에 대한 벌로 죽었다면 이렇게까지 슬프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건 도저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저에게 일어났던 일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제 남편은 예의 바르고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을 잃은 부인은 그녀의 반쪽을 잃은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한 쪽 팔을 잃은 것과 같습니다. 저는 저의 딸의 손을 잡고 남편이 돌아오기를 기다립니다.”<sup>1522</sup>

- 납치된 13살 소녀 요코타 메구미의 어머니 요코타 사키 부인은 조사위원회에 새로운 지도자가 가족에 대한 권리를 이해하고 모든 납치되었던 사람들이 돌아오기를 희망한다고 말하였다:

“김정은도 한 가족의 일원입니다. 그는 아버지입니다. 그도 가족이 있으니 사랑하

1521\_ 조사위원회와 이야기를 나누었던 단 한 명의 증언자가 이산가족 상봉에 참석했다. 하지만 조사위원회는 이것이 납치와 연관된 가족 중 이산가족 상봉에 참석이 가능했던 모든 인원은 아닐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1522\_ 서울 공청회, 2013년 8월 23일, 오후(02:41:51).

는 가족들 중 누군가를 잃는다는 것이 어떠한 기분인지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내가 일본 정부를 통해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러한 잘못된 행동은 양쪽 정부에서 모두 멈추도록 하여 양 정부를 위한 평화가 만들어져야 합니다.”<sup>1523</sup>

### (iii) 문화적 권리의 침해: 죽음에 관련된 문화적 관례 불가능

**998** 6·25전쟁 납북자, 국군포로, 납북 어부들과 귀환자 등을 비롯해 1950년대에 사라졌던 수많은 역사적 납치의 피해자들은 납북 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북에서 사망했을 것이라고 여겨졌다. 납북된 사람들의 가족들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은 슬픔으로 인한 엄청난 고통을 이겨내야 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죽음에 대해 충분히 애도할 기회를 잃었다.

### 한국 사회에서의 죽음

**999** 한국과 일본에서 사랑하는 이들이 사망했을 때 그 날짜를 알고 기리는 것은 근본적으로 문화적 관습과 사후세계에 대한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다. 사망 후에 시신은 가정에서 3일에서 5일 동안 안치되어 친구들과 가족들이 함께 모여 가족들에게 조의를 표하고 애도할 수 있도록 한다. 가족들은 이러한 관습을 행할 수 없었으며 사랑하는 이들과의 작별 인사의 시간을 포기해야 했고, 주변인들과 친구들, 그리고 다른 가족들 역시 그러한 기회를 가질 수 없었다.

**1000** 고인의 시신, 유골, 유해는 고인의 영혼이 평화롭게 쉴 수 있도록 전통적으로 안전한 장소에 안치된다. 가족들은 고인이 편히 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하는 것에 대한 책임감을 갖지만 가족들은 그들의 책임을 이행하지 못했다는 점에 대

1523\_ 도쿄 공청회, 2013년 8월 29일, 오전(02:34:43).

해 죄책감을 갖게 되었다.

**1001** 사후 세계에 대한 종교적인 믿음에 더하여, 한국과 일본, 그리고 일부 북한 사람들은 그들이 사랑하는 사람이 그들이 사망한 날에 가족들과 재회하기 위해 매년 다시 찾아온다고 믿는다. ‘제사’라고 알려진 이 행사를 위해 가족들은 고인이 생전에 좋아했던 음식을 준비하고 고인의 영혼에게 권한다. 고인의 기일을 알 수 없는 가족들은 이러한 중요한 관습을 정확한 날짜에 행할 수가 없어, 해마다 고인과 재회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되었다. 한국 달력은 이러한 관습이 행해질 수 있도록 음력 9월 9일을 ‘중양절’(重陽節 기일)로 정하고 기일을 알지 못하는 가족들이 ‘제사’를 지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중양절에 행해지는 ‘제사’는 널리 알려져 있지 않으며 가족들은 ‘제사’를 정확한 날짜에 지내기를 선호하였다.

**1002** 납북자들의 소재를 파악하고 본국으로 송환하기 위한 개인적인 노력은 여섯 구의 국군포로 유해를 한국으로 송환할 수 있게 만들었다. 납북자의 가족들에게 있어서 유해의 본국 송환은 애도를 가능케 하는 문화적 관습을 실현할 수 있기에 중요한 절차이다.

### (c) 성별에 따른 강제실종의 영향

**1003** 조사위원회는 북한에 의한 강제실종으로 여성과 여자 아이들, 남성과 남자 아이들이 피해자가 되었으며, 실종자의 친인척이 됨으로써 고통받았다는 사실을 인지하였다. 조사위원회는 더 나아가 여성, 여아, 남성, 남아가 성별에 따른 역할, 전통과 문화에 따라 다른 수준으로 고통받았다는 것 역시 인지하였다.

**1004** 전시납북, 국군포로들의 귀환에 대한 거부와 전쟁 이후 어부들의 납북에는



많은 수의 한국 남성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10만명에서 17만명 사이의 남성들의 실종은 오늘날보다 역사와 전통에 성별 역할이 깊이 자리잡혀 있었던 문화에서의 여성들과, 남아, 여아들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 많은 여성들은 갑작스럽게 한 가정의 가장이 되어야 하였다. 그녀들은 실종된 사람들의 친지들이 감시당하고 의심을 받는 상황 속에서 가족의 주요한 수입을 담당하는 사람의 지원 없이 가족의 삶에 대한 모든 부담을 어깨에 짊어지게 되었다.

**1005** 서울 공청회에서 조사위원회는 납북자의 가족들로부터 남편과 아버지들이 사라졌을 때 그들이 마주해야 했던 극도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것을 전해들을 수 있었다. 바다에서 납치되어 실종된 어부의 아들인 남장호 씨는 조사위원회에 아래와 같이 말했다:

“제 생각에 저희 어머니께서는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셨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수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의 형제들은 충분한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초등학교만 졸업하였습니다. 저는 불우한 가정 환경으로 인해 초등학교도 졸업할 수 없었습니다. 집에는 아버지가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어머니는 저희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다른 사람들의 밭에서 고구마와 감자를 훔치셨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집을 털어드리고 싶어 집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게 어머니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상황은 우리에게 너무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머니께서 제일 힘드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sup>1524</sup>

**1006** 조사위원회는 또한 전쟁 후에 그들이 여성이라는 이유로 행해진 여성 납치는 성폭력 행위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 점에서 조사위원회는 야오 메구미 씨에게 유럽에 있는 일본 여성을 납치해 납치된 일본인의 부인이 되도록 하고, 일곱 명의 외국 여성을 납치해 망명한 미군<sup>1525</sup>의 부인으로 “내어주고,” 마카오에서 납치된

1524\_ 서울 공청회, 2013년 8월 23일, 오전(03:05:00).

1525\_ 네 명의 레바논 여성 Anocha Panjoy 씨, Dona Bumbea 씨 및 Soga Hitomi 씨.

두 명의 여성은 북한에서 성적 착취의 피해자가 되도록 했던 특별 지시를 주목하였다. 조사위원회는 이러한 여성들이 북한에 의해 강제실종된 다른 여성들과 함께 성폭력의 위협에 처해온 또는 처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바이다.

#### (d) 아동에 대한 차별

##### (i) 납치된 아이들

**1007** 아동의 강제실종은 강제실종선언에 위배되는 것일 뿐 아니라 극단적인 형태의 아동 폭력이다.<sup>1526</sup> 조사위원회는 납치된 사람들 중의 많은 수는 당시 18세 미만에 불과했다는 것을 유의하고 있다. 이들은 아래를 포함한다:

- 6·25전쟁에서 납북된 사람들 중 수천 명은 당시 어린 아이였다.<sup>1527</sup>
- 1968년 덕수2호 어선에서 납북된 김인철 씨는 당시 고등학생이었다.
- 1977년과 1978년 여름, 다섯 명의 한국 고등학생들이 해변가에서 납북되었다.
- 요코타 메구미 씨는 1977년 11월 15일, 13살의 나이에 일본에서 납치되었다.

**1008** 이 아이들은 실종되지 않을 권리를 박탈당했을 뿐만 아니라 가족생활에 대한 권리, 부모와 분리되지 않을 권리<sup>1528</sup>, 부모에게 양육받을 권리<sup>1529</sup>를 박탈당했다. 조사위원회는 또한 이 아이들은 북한에서 표현의 자유,<sup>1530</sup>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sup>1531</sup>, 사생활의 권리<sup>1532</sup>등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당했을 것이라고 우려하

1526\_ 유엔 아동에 대한 폭력 연구 참조 (A/61/299, 2006년 8월 29일).

1527\_ 조사위원회 제출: KWAFU.

1528\_ 아동권리협약, 제9조.

1529\_ 아동권리협약, 제7조.

1530\_ 아동권리협약, 제13조.

1531\_ 아동권리협약, 제14조.

는 바이다. 이 아이들의 부모들 역시 가족에 대한 권리와, 그들의 자녀들에 대한 권리를 침해당했다.<sup>1533</sup>

## (ii) 남겨진 아이들

**1009** 조사위원회는 북한에 의해 납치된 사람들의 자녀들은 가족을 찾고 유지할 수 있는 권리와 부모로부터 분리되지 않을 권리<sup>1534</sup>를 침해당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 여러 증언자들은 조사위원회에 어린 나이에 부모와 떨어져 끊임없이 부모를 그리워했던 사실에 대해 증언하였다.

• 대한항공 공중납치의 납북자 황원 씨의 아들 황인철 씨는 조사위원회에 아래와 같이 말하였다:

“저는 두 살이었고, 제 여동생은 100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혼자만의 힘으로 우리를 키워야 했습니다. 저는 어머니께 계속해서 아버지의 행방을 물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에 대한 추억이 없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께서 저를 아주 많이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며, 아버지를 많이 그리워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아버지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머니께 아버지의 행방을 물을 때면 어머니는 아버지께서 미국으로 출장을 가셨다고 말씀해 주시곤 했으며, 그제 어머니의 대답이었기 때문에 저는 계속해서 아버지를 기다렸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3학년이 되던 해, 아버지의 남동생인 작은아버지께 아버지가 비행기에서 납치되었다는 사실을 들었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는 항상 아버지를 그리워합니다.”<sup>1535</sup>

**1010** 몇몇 증언자들은 그들의 부모님의 생사를 알고 싶은 갈망과 만약 부모님이 노쇠하여 돌아가셨다면 시신이라도 찾고 싶다는 마음을 조사위원회에 전하였다.<sup>1536</sup>

1532\_ 아동권리협약, 제16조. 북한에서의 아동에 대한 폭력에 대한 정보는 I장 A 참조.

1533\_ 아동권리협약, 제5조.

1534\_ 아동권리협약, 제9조.

1535\_ 서울 공청회, 2013년 8월 23일, 오전(03:35:00).

1536\_ 남장호 씨와 최성용 씨의 서울 공청회에서의 증언 참조, 2013년 8월 23일, 오전.

### 3. 조사위원회의 주요 발견 사항

**1011** 1950년 이래 북한은 국가의 정책이라는 명목하에 타국 국민들을 조직적으로 납치하고 송환하지 않음으로써 대규모 강제실종 사태를 초래하였다. 다른 국가에서 북한으로 납치되어 “강제실종선언”의 정의상 강제실종의 피해자가 된 사람의 수는 아동을 포함하여 20만 명을 훌쩍 넘었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 정확한 피해자 수 추산을 위해서는 북한으로부터 추가적인 정보가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1012** 다른 나라와 더불어 살기 원하는 민족국가가 타국의 주권과 국제법상 외국인의 권리를 무시하는 위와 같은 행위를 저지르는 것은 정상이라 할 수 없다.

**1013** 대부분의 납치와 강제실종은 6·25전쟁 및 1959년에 시작된 일본으로부터의 조직적인 한인 이주와 연관이 있다. 그러나 한국, 일본 및 여타 국가의 수백 명의 사람들 또한 1960년대와 80년대 사이 북한으로 납치되었다. 최근 북한은 자국 주민 및 한국 국민 수 명을 중국에서 납치하였다.

**1014** 북한은 납치 및 체포를 위해 육해군 및 정보 요원들을 동원하였다. 이러한 작전들은 최고지도자 차원에서 승인되었다. 강제실종 피해의 대다수는 북한 당국을 위한 노동력 및 기타 기술 제공을 목적으로 이뤄진 것이며, 일부 피해자들은 간첩 및 테러활동에 투입되었다. 유럽, 중동 및 아시아에서 납치된 여성들은 역시 다른 나라에서 온 남성들과 강제결혼을 당하였다. 이는 이 남성들이 북한 여성들과 접촉하여 혼혈아동을 낳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다. 납치된 여성들 중 일부는 성적 착취를 당하기도 하였다.

**1015** 강제실종자들 중엔 자발적으로 북한 내로 이동한 자도 있으며, 물리적인 강압 또는 거짓 설득을 통해 납치된 자들도 있으나, 어느 경우든 모두 결과적으로

북한을 떠날 권리를 박탈당하였다. 또한 그들은 자유와 북한 내에서 자유롭게 이동할 권리도 박탈당하였으며, 법적으로 인격체로 인정받을 권리도 빼앗기고, 고문 및 그 밖에 잔혹하고, 비인도적인 또는 모멸적인 대우를 받기 않을 권리도 상실하였다. 강제실종된 모든 사람들은 삼엄한 감시하에 관리되고 있으며, 교육이나 취업의 기회를 거부당하고 있다.

**1016** 북한에 의해 강제실종된 한국 국민과 일본 출신 한인들은 그들의 출신 및 배경 때문에 차별을 받고 있다. 그들은 “적대계층”으로 분류되어 외딴 지역의 농장이나 광산에서 강제노동에 투입되고 있다. 이들 중 상당수가 북한에서 낮은 사회적 지위로 인해 1990년대 기근의 타격을 가장 먼저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

**1017** 한국인이 아닌 납치 피해자들은 삼엄한 통제를 받는 구역에 격리되어 북한 사회·경제적 생활에 통합되지 못했다. 그들은 근로권, 거주·이전·이동의 자유를 박탈당했으며, 본인이나 자녀를 위한 교육 선택권도 갖지 못하였다.

**1018** 강제실종된 사람들 중 많은 수는 납치 또는 체포 당시 18세 미만이었다. 이 아이들은 실종되지 않을 권리, 가족생활의 권리, 부모로부터 떨어지지 않을 권리, 그리고 부모의 보살핌을 받을 권리를 박탈당하였다.

**1019** 북한 밖에 있는 가족 및 외교적 보호를 행사하고자 하는 외국 정부들은 이들 피해자들의 운명과 행방에 대한 정보를 일관되게 제공받지 못했다. 실종자들의 가족들은 고문 및 기타 잔인하고 비인도적이며 모욕적인 대우를 받아 왔다. 이들은 진실을 알 권리를 포함하여 인권 침해에 대해 효과적으로 구제받을 권리를 박탈당했으며, 실종된 부모 및 자녀들은 가족생활을 누릴 권리를 빼앗겼다.

1020 북한은 정보 요원이 13명의 일본인들을 납치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국제적 납치 관행을 한 번도 적절히 부인한 적도 없다. 1990년대 이래 북한의 정보 요원들은 중국 영토 내에서 여러 명을 납치한 바 있으며, 이 중에는 중국 및 한국 국적자도 있고, 적어도 한 사례는 과거에 일본 국적을 소유한 사람도 포함되어 있다.

1021 조사위원회의 판단으로는 앞서 언급한 피해자들 거의 전원이 실종 상태로 남아있다. 이들과 이들의 가족에 대한 인권침해가 지속되고 있으며, 이러한 인권 침해로 인한 충격과 고통은 형언할 수 없다.

Chapter V

---

**반인도범죄**

## V. 반인도범죄

**1022** 결의 22/13호는 조사위원회가 “반인도범죄에 해당할 수 있는 침해에 대한 완전한 책임규명 보장의 관점에서” 조사를 이행하도록 하였다.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보고서의 제31항에 따르면, 결의 22/13호에 제시된 바와 같이 “조사는 특히 반인도 범죄를 구성하게 될 때, [중대하고 조직적이며 광범위한 침해]에 대한 제도적이고 개인적인 책임성에 대한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고 하고 있으며 “반인도범죄가 자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상세한 검토와 법적 분석”을 제공하도록 하였다.<sup>1537</sup>

**1023** 조사위원회는 이 측면의 임무 수행에 있어서 사법 기구나 검찰기관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지하는 바이다. 조사위원회는 개인의 형사책임에 대해 최종 판결을 내릴 수 없다. 그러나 조사위원회는 자신의 조사결과가 권한 있는 국내·국제 사법기관이 범죄 수사에 착수할 수 있을 만큼의 반인도범죄가 저질러졌다는 합리적인 근거를 구성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할 수 있다. 본 장에서 조사위원회가 반인도범죄 사실을 발견할 때, 그 발견 사항은 ‘합리적인 이유’의 증거 기준에 기반하고 있다고 이해되어야 한다.<sup>1538</sup>

**1024** 조사위원회는 반인도범죄의 고려사항 중 중대한 인권 침해 양상에 집중하여, 조사위원회의 사실적 발견 사항들은 이 보고서의 IV장에서 밝히고 있듯이 특히 주목할만한 사례들을 확실히 밝혔다.<sup>1539</sup> 이에 따라 조사위원회는 여섯 범주의 피해

1537\_ A/HRC/22/57.

1538\_ 입증기준에 대한 상세한 정보에 대해서는 II장 E 참조.

1539\_ 조사위원회는 다른 형태의 침해 역시 반인도범죄를 수반한다고 명시한다. 특히, 김일성 체제를 통합하기 위해 행해진 숙청과 김정일과 김정은의 승계를 방해하는 요소들에 대한 억압은 관련 기록들과 더 많은 증언자들에 대한 접근이 가능해졌을 때 반인도범죄의 범주에서 주의깊게 조사될 필요가 있다.



자 분석에 초점을 맞추었다.

1. 정치범수용소 수감자
2. 일반 감옥 수감자, 특히 정치범의 경우
3. 종교인들과 기타 체제전복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여겨진 사람들
4. 탈북을 시도한 사람들
5. 기아 상태의 주민들
6. 다른 국가 출신으로 국제납치와 강제실종의 피해자가 된 사람들

**1025** 반인도범죄는 (1) 국제적이고 비인간적인 행위가 (2) 광범위하거나 조직적인 공격<sup>1540</sup>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을 말한다. 조사위원회는 우선 여섯 범주의 피해자 집단을 대상으로 어떠한 비인도적인 행위가 자행되었는지 확인하였다. 그리고 조사위원회는 각각의 여섯 집단에 대한 비인도적인 행위가 왜 주민 인구 전체에 대한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공격의 일부를 구성하는지에 대해 질문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조사위원회는 북한에서 주민을 상대로 일어난 세 가지 특유한 국가적 공격이 근본적으로 반인도범죄를 구성한다는 점을 확정하였다.

- 국가는 북한의 정치체제와 지도자에게 위협이 된다고 여겨지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공격을 자행하였다. 정치범수용소 수감자, 일반 감옥 수감자, 탈북을 시도한 사람, 종교인과 기타 체제전복적 영향을 미친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반인도범죄는 모두 이러한 공격의 한 부분이 된다.
- 국가는 정치체제와 지도력을 유지하기 위해 일반 대중에 대해 고의적으로 굶주림을 악화시키고, 다수의 결백하고 평범한 주민들의 생명을 희생시킴으로써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공격을 주도적으로 시행하였다.
- 국가는 노동력과 기술 확보를 통하여 북한의 위상을 강화하고 한반도의 주도권 경쟁

1540\_ V장 A 참조.

에서 입지를 강화하기 위하여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형태로 수많은 외국인들을 납치하고 강제실종을 자행하였다.

## A. 국제법상의 반인도범죄에 대한 정의

1026 반인도범죄는 인류의 양심에 충격을 가할 정도의 조직적 규모와 수준의 심각한 인권침해를 수반한다. 1945년 뉘른베르크 국제군사재판 협정에서 최초로 언급된 반인도범죄의 정의는 뉘른베르크와 도쿄 재판소, 구유고슬라비아국제형사재판소(ICTY), 르완다국제형사재판소(ICTR), 시에라리온특별재판소(SCSL) 등의 사법체계와 각 국내법원들에 의해 형성되었다. 협상에서 시작하여 점차 국제형사재판에 관한 로마규정을 채택하는 국가들의 행동과 122개국에 의한 사후 비준은 반인도범죄를 보다 명확하고 정교하게 정의 내렸다. 대개 로마규정 제7조와 로마규정에 명시된 범죄의 구성요소는 오늘날에도 실효성 있는 개념으로서 국제관습법상에서 반인도범죄의 정의를 반영한다.<sup>1541</sup>

1027 반인도범죄는 법적 적용 기준이 엄격하다.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a) 개인들은 고의를 가지고 비인도적인 행위를 해야 한다.
- (b) 이러한 비인도적인 행위는 민간인 주민에 대한 광범위하거나 조직적인 공격의 일

1541\_ Antonio Cassese and Paola Gaeta, *Cassese's International Criminal Law*, 3rd ed.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3), p. 105; Julian Fernandez and Xavier Pacreau, *Statut de Rome de la Cour Pénale Internationale*(Paris, Editions Pedone, 2012), p. 419 참조. 로마규정과 국제관습법상에서의 정의가 실제로 상이함을 나타내는 부분에 대해서 언급되었다. 로마규정상에서 반인도범죄가 국제형사재판소 기소가 불가피한 점을 고려할 때, 혹은 여타 국제 혹은 국제관습법이 적용되는 국내법원에서 기소될 때(VI장 B 구역 참조), 조사위원회는 “최소공통분모” 접근법을 취했다. 따라서, 국제관습법보다 더 제한된 부분에 대해서는 로마규정을 적용하였으며 역으로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조사위원회에 의해 설정된 모든 반인도범죄는 로마규정과 국제관습법하에서 모두 범죄의 범주로 속하게 되는 것이다.

부를 구성해야 한다. 로마규정은 또한 그러한 공격이 국가나 조직의 정책에 따른 것이거나 이를 조장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sup>1542</sup>

## 1. 비인도적인 행위

1028 비인도적인 행위에 이르는 유형은 중대한 인권 침해에 해당되는 것과 크게 겹친다. 이 조사의 목적과 관련되는 비인도적인 행위들은 다음과 같다.

- 살해
- 절멸
- 노예화
- 주민의 추방 또는 강제이주

1542\_ 로마규정이 요구하는 정책은 서면 문서 또는 공식 성명에 포함되어 있어야 할 필요는 없다. 그 정책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도 된다 ... 계획·지시 혹은 조직된 공격만으로도 - 즉흥적이거나 혹은 고립된 폭력행위와는 대조적으로 - 이 [정책적] 요소를 충족할 수 있다.” *Prosecutor v. Katanga et al*, ICC-01/04-01/07 [ICC 전심부 I], 2008년 9월 30일 공소사실확인예 관한 결정, para. 396 참조.

국가나 다른 조직의 정책의 필요조건도 국제관습법의 일부를 구성하는지 혹은 로마규정이 새로운 요건을 내놓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다. 국제관습법이 정책의 존재를 필요로 한다는 명제에 반대: *Prosecutor v. Kunarac et al*, IT-96-23& IT-96-23/1-A [ICTY 항소부], 2002년 6월 12일 판결, para. 98 [id., fn 114에 더 많은 참고]. 관련 있는 논거에 대한 개관을 위해서는 William Schabas, *Unimaginable Atrocities* (Oxford University Press, 2012), pp. 128 ff.; Antonio Cassese, “Crimes Against Humanity” in Antonio Cassese, Paola Gaeta, and John R.W.D. Jones, eds., *The 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A Commentar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2), pp. 375~376; Guénaël Mettraux, “The Definition of Crimes Against Humanity and the Question of a “Policy” Element”, in Leila Nadya Sadat, *Forging a Convention on Crimes against Humanity*(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3), pp. 143 ff 참조. 논란이 되는 이 법률문제는 북한에서 범해진 반인도범죄가 체계적인 공격들의 일부를 구성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합리적인 이유들을 발견했기 때문에, 조사위원회의 법적 조사결과에 영향이 없다. 체계적인 공격의 개념은 이미 근본이 되는 정책의 존재를 나타낸다. 북한에서 범해진 반인도범죄가 조직적인 공격들의 일부를 구성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합리적인 근거들을 발견했기 때문에, 논란이 되는 이 법률문제는 조사위원회의 법적인 발견사항에 영향이 없다. 조직적인 공격의 개념은 이미 근본이 되는 정책의 존재를 나타낸다.

- 국제법의 근본원칙을 위반한 구금 기타 신체적 자유의 다른 심각한 박탈
- 고문
- 성폭행, 성적 노예화, 강제매춘, 강제임신, 강제불임, 또는 이에 상당하는 기타 중대한 성폭력
- 정치적·인종적·국민적·민족적·문화적 및 종교적 사유, 성별 또는 국제법상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다른 사유에 근거하여 어떠한 동일시될 수 있는 집단이나 집합체에 대한 박해
- 사람들의 강제실종
- 신체 또는 정신적·육체적 건강에 대하여 중대한 고통이나 심각한 피해를 고의적으로 야기하는 유사한 성격의 비인도적인 행위의 “잔여범주”<sup>1543</sup>

**1029** 비인도적인 행위는 범행 동기를 가지고 범해져야 한다. 로마규정에 의하면, 이러한 동기는 범죄행위자가 비인도적인 행위를 수행할 목적으로 혹은 비인도적인 행위를 규정하는 결과가 사건들의 통상적인 경과에 따라 발생할 것을 인지하고 행동할 것을 요구한다.<sup>1544</sup> 반인도범죄가 범해지기 위해서는 중과실 또는 의도하지 않은 무모함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 2. 조직적이거나 광범위한 공격

**1030** 위에서 열거된 비인도적인 행위들 중 고립되어 있거나 산발적인 사건일 경

1543\_ 로마규정 제7조제1항. Antonio Cassese and Paola Gaeta, *Cassese's International Criminal Law*, pp. 94 ff 또한 참조.

1544\_ 로마규정 제30조 참조. 국제관습법은 또한 범죄자들이 그들의 행위가 비인도적인 행위가 될 수 있다는 위험을 알고 또한 이 위험을 받아들이는 경우까지 미치는 더 넓은 범위의 범행 동기를 인정하는지가 논란의 대상이다 (대륙법 체제에서는 미필적 고의(dolus eventualis); 영미법 체제에서는 의도적 (고의가 있는) 무고함 (advertent recklessness)). 이 견해에 대해서는 e.g. Antonio Cassese and Paola Gaeta, *Cassese's International Criminal Law*, p. 99 참조.

우 반인도범죄에 해당되지 않는다. 대신 민간인 주민에 대해 더 큰 공격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러한 공격은 “무력행사에 한정되지 않고 민간인 주민에 대한 어떤 학대 행위도 포함된다.”<sup>1545</sup> 이 공격은 광범위하거나 혹은 조직적이어야 한다(실제로 공격은 둘 다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1031** “상당한 심각성을 가지고 집단적으로 실행되는 다수의 피해자에 대한 대량의, 빈번한, 대규모 행위”를 수반하면 공격은 광범위하게 된다.<sup>1546</sup>

**1032** 조직적인 공격은 “통상적인 양상을 따르는, 공통된 정책에 근거하고 상당한 공적 또는 사적 자원들을 수반하는 조직화된 행동을 요구하며… 어떠한 형태로든 사전에 형성된 계획 또는 정책이 존재”해야 한다.”<sup>1547</sup> 공격의 조직적인 성질이 성립되는데 고려될 수 있는 지표들은 다음을 포함한다.

- 근본적인 정치적 목적과 연결되어 있는 위반이 존재한다.
- 한 공동체를 파괴, 박해 또는 약화시키려는 이념이 있다.
- 위반을 범하기 위한 조직적인 계획의 정의와 수립에 고위급 정치 및/혹은 군사 당국이 연루되어 있다.
- 범죄가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치적 선전, 사상주입 혹은 심리적 억압이 사용된다.
- 범죄들이 매우 대규모로 자행되고 있고 또한 통상적인 양상을 따르고 있어 그러한

1545\_ *Prosecutor v. Kunarac et al*, IT-96-23& IT-96-23/1-A [ICTY 항소부], 2002년 6월 12일 판결, para. 86; *Prosecutor v. Blagojevic* IT-02-60-T [ICTY 심리부], 2005년 1월 17일 판결, para. 543.

1546\_ *Prosecutor v. Akayesu*, ICTR-96-4-T [ICTR 심리부], 1998년 9월 2일 판결, para. 580. (1998년 9월 2일); *Prosecutor v. Musema*, 판결, No. ICTR-96-13-T, para. 204. (2000년 1월 27일); *Prosecutor v. William Sameo Ruto, Henry Kiprono Kosgey and Joshua Arap Sang*, Case No. ICC-01/09-01/11, 로마 규정 제61조제7항 가목과 나목에 따른 공소사실확인예 관한 결정, 2012년 1월 23일, para. 176 또한 참조.

1547\_ *Prosecutor v. Musema*, ICTR-96-13-T [ICTR 심리부], 2000년 1월 27일 판결, para. 204.

행위가 무작위로 발생한다고 생각할 수 없을 정도이다.

- 상호간에 연결된 비인도적인 행위들의 반복되고 연속된 범행이 존재한다.
- 저지른 범죄를 은폐하기 위한 조직적인 노력을 취하고 있다.<sup>1548</sup>

## B. 정치범수용소에서의 반인도범죄

**1033** 수집한 증언 및 정보에 근거하여<sup>1549</sup> 조사위원회는 북한 당국이 정치범수용소에서 절멸, 살해, 노예화, 고문, 구금, 성폭행 및 기타 중대한 성폭력 그리고 정치적·종교적 및 성차별적 이유에 근거한 박해를 포함하여 반인도범죄를 범했고 현재도 범하고 있다고 본다.

### 1. 비인도적인 행위

**1034** 조사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비인도적인 행위가 범해졌고 현재까지도 범해지고 있다고 본다.

#### (a) 구금

**1035** 국제법의 근본원칙을 위반한 구금은 적법절차의 기본 원칙을 존중하지 못

---

1548\_ Prosecutor v. Blaškić, 판결, No. IT-95-14, 2002년 3월 3일 판결, para. 204; Prosecutor v. Dordević, ICTY 심리부, paras. 1262 - 1380; Prosecutor v. Dario Kordić & Mario Cerkez, IT-95-14/2-A [ICTY 항소부], 2004년 12월 17일 판결, paras. 98 & 179; Prosecutor v. Katanga, 공소사실확인예 관한 결정, ICC-01/04-01/07 [ICTY 전심부 I], 2008년 9월 30일 결정, para. 397 참조.

1549\_ 특히 IV장 E.3 참조.

하는 억류를 포함한다.<sup>1550</sup> 이 원칙들은 자유권규약 제9조 및 제14조에 명시되어 있다. 억류된 사람에게 적법절차 보장의 경미한 불이행은 국제형사법상의 구금에 이르지 않는다. 그러나 사람을 한 번도 독립적 법관에게 회부한 적이 없거나 또는 어떤 범죄에 대해 기소되지 않거나, 재판받지 않거나 혹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지 않은 채 오랜 기간 동안 억류하게 되면 필요한 심각한 수준에 도달하게 된다.<sup>1551</sup> 구금이 국제법에 의해 보장된 수감자의 인권 행사에 기인할 경우를 포함하여, 국제법에 부합하는 정당한 법적 근거 없이 사람이 억류된 경우 역시 국제법의 근본원칙에 위반된다.<sup>1552</sup>

**1036** 조사위원회는 정치범수용소의 수감자들을 구금의 범죄로 인한 피해자들로 본다. 수감자들은 자유권규약 제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한 번도 법관에게 회부되지 않은 채 대개 평생을 수용소에 구금된다. 그들은 자유권규약 제14조제1항이 요구하는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권한 있는 독립적이고 공평한 법원에 의한 공정한 공개심리가 보장된채 기소되거나 유죄판결을 받거나 또는 징역을 선고 받은 적이 없다.

**1037** 게다가 수감자들은 일반적으로 국제인권법상의 사유에 의해 구금되지 않는다. 많은 경우에 그들의 유일한 범죄는 정치적 질문에 대해 자신을 자유롭게 표현하거나, 자신의 나라를 떠나거나 종교를 가지거나 또는 국제법상 그들에게 보장된 다

1550\_ *Prosecutor v. Kordic et al*, IT-95-14/2-T [ICTY 심리부], 2001년 2월 26일 판결, para. 302 또한 참조.

1551\_ *Prosecutor v. Krnojelac*, IT-97-25-A, [ICTY 심리부], 2002년 3월 15일 판결, para. ; Paul De Hert and others, eds., *Code of International Criminal Law and Procedure*(Uitgeverij Larcier, 2013), p. 39; Fernandez and Parcreau, *Statut de Rome de la Cour Pénale Internationale*, p. 432 참조.

1552\_ Robert Cryer and others, *An Introduction to International Criminal Law and Procedure*, 2nd ed.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0), p. 251; Fernandez and Parcreau, *Statut de Rome de la Cour Pénale Internationale*, p. 432; *Prosecutor v. Krnojelac*, IT-97-25-T [ICTY 심리부], 2002년 3월 15일 판결, para. 122 또한 참조.

른 인권을 행사하는 것이었다. 많은 수감자들은 개인적인 혐의로 기소되지 않는다. 그들은 오로지 연좌제에 의해 투옥된다. 일부는 심지어 수감자로 태어난다.

## (b) 강제실종

**1038** 국제형사법은 “강제실종”을 국가 또는 정치조직에 의하여 또는 이들의 허가·지원 또는 묵인을 받아 사람들을 체포·구금 또는 유괴한 후, 그들을 법의 보호로부터 장기간 배제시키려는 의도하에 그러한 자유의 박탈을 인정하기를 거절하거나 또는 그들의 운명이나 행방에 대한 정보의 제공을 거절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sup>1553</sup>

**1039** 수집된 정보에 근거하여, 조사위원회는 북한 정치범수용소의 수감자들을 강제실종의 범죄로 인한 피해자들로 본다. 그들은 그들의 공민권을 빼앗기고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외진 정치범수용소에서 독방에 감금되어 있다. 대부분의 수감자들은 석방의 가망 없이 평생 구금된다. 억류자들의 가족에게는 구금된 가족 구성원의 생사나 행방에 대해 알리지 않는다. 북한 당국은 흔히 구금을 인정하기를 전면적으로 거부한다. 수감자가 사망할 경우, 가족에게 통지하지 않고 또한 매장을 위한 시신수습이 허용되지 않는다.

**1040** 북한법에 따라 검찰소가 일반 감옥에 행사하는 관리감독권으로부터 수용소들은 철거된다. 또한 북한 당국은 유엔 인권기구들에게 수용소에의 접근 및 정보 제공을 지속적으로 거부한다. 당국은 수용소들과 그곳의 수감자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거짓 주장을 한다. 이러한 사항들은 수감자들에게 오랜 기간 동안 국내법과 국제

1553\_ 로마규정 제7조제2항 자문 참조. 그 정의는 국제인권법을 기반으로 하지만 수감자들을 장기간 법적 보호로부터 박탈하는 특정적 고의를 요구하므로 다소 제한적이다. 뉘른베르크 이후, 국제관습법상 비인도적인 행위로서 강제실종에 이르는 행위의 인정에 관해서는 V장 G 참조.



법상 설립된 관리감독 기관들이 잠재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기능으로부터 보호를 박탈하기 위해 수용소들이 설립되어 왔다는 것을 증명해준다.

### (c) 절멸

**1041** 국제형사법은 절멸을 주민의 일부를 말살하기 위하여 계산된, 식량과 의약품에 대한 접근 박탈과 같이 생활조건에 대한 고의적 타격이라고 정의한다.<sup>1554</sup> 따라서 절멸의 범죄는 대규모 살해를 필요로 한다.<sup>1555</sup> 이것은 다수의 사람들을 구금하고 또한 대규모의 피해가 뒤따르도록 생활필수품을 주지 않는 것에 의하여 이행될 수 있다.<sup>1556</sup> 대규모 살해의 범주에 도달했는지를 결정하는 데 있어, 살해들이 시간적이나 지리적 측면에서 분산되어 있어도 같은 전면적 절멸 사건과 연관된 누적된 사망은 집계될 수 있다.<sup>1557</sup>

**1042** 범행 동기의 요건이 충족되기 위해서는 범죄자들이 추구하는 목표가 다수의 사람들의 사망일 필요는 없다. 조사위원회의 의견으로는, 범죄자들은 생활조건이 사건의 통상적인 경과에 따라 대규모의 살해를 초래할 것을 알면서도 이러한 조건들을 계산적인 고의성을 가지고 부과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sup>1558</sup>

1554\_ 로마규정 제7조제2항. 또한 *Prosecutor v. Popovic et al*, IT-05-88-T [ICTY 심리부], 2010년 6월 10일, para. 800; *Prosecutor v. Munyakazi*, ICTR-97-36A-T [ICTR 심리부], 2010년 7월 5일 판결, para. 506 참조.

1555\_ *Prosecutor v. Ntagerura*, ICTR-99-46-T [ICTR 심리부], 2004년 2월 25일 판결, para. 701.

1556\_ *Prosecutor v. Kayishema*, ICTR-95-1 [ICTR 심리부], 1999년 5월 21일 판결, para. 146.

1557\_ *Prosecutor v. Lukic*, IT-98-32/1-T [ICTY 심리부], 2009년 7월 20일 판결, para. 938 참조.

1558\_ *Prosecutor v. Lukic*, IT-98-32/1-T [ICTY 심리부], 2009년 7월 20일 판결, para. 939 참조. M. Cherif Bassiouni, *Crimes against Humanity: Historical Evolution and Contemporary Application*(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1), p. 369; Elias Davidsson, "Economic Oppression as an International Wrong or as Crime against Humanity", *Netherlands Quarterly of Human Rights*, vol. 23, No. 2 (2005), p. 195; Antonio Cassese, "Crimes against Humanity", in Antonio Cassese, Paola Gaeta, and John R.W.D. Jones, eds., *The 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A Commentary*,

**1043** 북한 정치범수용소에 대한 조사위원회의 사실에 입각한 발견사항들은<sup>1559</sup> 절멸의 정의와 일치한다. 수많은 수용소에서, 정치범들에게 부과된 생활조건은 매년 수천 명의 사망을 초래한다. 수용소 체제의 존재 기간 동안 수십만 명이 사망하였다.

**1044** 조사위원회는 정치범수용소의 생활조건이 대량적인 사망을 유발한다고 본다. 수감자들은 지독한 노동을 수행하도록 강요받으면서, 많은 수감자들이 굶어 죽을 정도로 부족한 식량배급을 제공받고 있다. 생존하는 수감자들은 수용소에서 식량을 훔치는 것과 같은 불법적인 수단이자 가혹한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에 자주 의존하면서 그들만의 대응 기제들을 고안하여 생존한다. 사망자 수는 처형, 고문에 의한 사망, 적절한 의료치료의 박탈, 높은 작업 사고 발생률, 주거지 및 적절한 의복의 부족으로 인해 더욱 증가된다.

**1045** 정치범수용소를 관리하는 당국은 대량의 사망이 사건의 통상적인 경과로 발생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 과거 경비병들 및 수감자들이 조사위원회에 제공한 정보에 따르면 수감자들을 일하다가 죽게 하여 수감자들을 점차 없애는데 수용소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과거 정치범수용소 경비병이었던 안명철 씨가 언급한

---

p. 365; Albin Eser, "Mental Elements-Mistake of Fact and Mistake of Law", in Cassesse, Gaeta and Jones, eds., *The 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p. 917 또한 참조. Prosecutor v. Kayishema, ICTR-95-1-T, ICTR 심리부, 1999년 5월 21일 판결, para. 144에서 무모함과 과실도 또한 충분하다고 보나, 이것은 국제관습법의 인정된 상태, 나아가 로마규정의 명시적 표현을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 일부 저자들은 주인의 일부를 말살하기 위하여 생활조건들이 "계산"되어야 한다는 사실이 특정적 목적의 정신적 구성요건을 나타낸다고 주장한다. Christopher K. Hall, "article 7: Crimes against Humanity" in Otto Triffterer and Kai Ambos, *Commentary on the 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de (2008)*, at article 7, para. 95; Evelyne Schmid, "Violations of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in International and Transnational Criminal Law", PhD dissertation, Graduate Institute of International and Development Studies, 2012, p. 111 참조. 그러나 "계산된"이라는 용어는, 비록 이것이 범죄자의 주관적 목적이 아니더라도, 범죄자가 부과하는 특정한 생활조건들이 사건들의 통상적인 경과에 따라 대량적인 살해를 초래할 것에 대한 계산된 평가를 내리는 것으로도 이해될 수 있다.

1559\_ 위를 참조, IV장 E.3.

바와 같이 정치범수용소의 수감자들은 “중노동에 의해 수용소 안에서 죽게 되어있다.”<sup>1560</sup> 이것은 종파분자와 적대계층의 3대가 제거되어야 한다는 김일성에 의해 고안되었고 또한 수용소 관리자들이 받는 지시와 부합한다.

#### (d) 살해

**1046** 국제형사법상 살해의 범죄는 불법적으로 사람의 사망을 야기하는 것을 요구한다.<sup>1561</sup> 범죄자는 이러한 사망 또는 심각한 상해를 야기할 주관적 목적을 가지거나 혹은 사건의 통상적인 경과에 따라 이러한 행위의 결과가 사망으로 이어질 것을 알고 범행을 해야 한다.<sup>1562</sup>

**1047** 즉결 처형, 구타, 영아살해, 고의적 굶주림과 기타 불법적인 수단을 통한 북한 정치범수용소의 수감자 개개인에 대한 고의적 살해는 모두 살해의 범죄에 해당한다.

#### (e) 노예화

**1048** 통상적으로 사람에 대한 소유권에 부속된 어떠한 또는 모든 권한의 행사는

1560\_ 서울 공청회, 2013년 8월 21일 오후(00:16:40).

1561\_ 범죄요소, 국제형사재판소 로마규정 당사국총회, 제1차회기, 2002년 9월3~10일, 제7조제1항 가목; M. Cherif Bassiouni, *Crimes against Humanity: Historical Evolution and Contemporary Application*, p. 365 참조.

1562\_ 로마규정 제30조 참조. *Prosecutor v. Katanaga* ICC-01/04-01/07 [ICC 전심부 I], 2008년 9월 30일 공소 사실확인에 관한 결정, para. 423 또한 참조. 또한, ICTY 및 ICTR에 의해 정의된 국제관습법은 인간의 생명에 대한 위협을 무시하여 심각한 상해를 고의적으로 초래하는 것도 살해에 이를 수 있다고 명시한다. *Prosecutor v. Mucic et al*, IT-96-21-T [ICTY 심리부], 1998년 11월 16일 판결, para. 439; *Prosecutor v. Akayesu*, ICTR-96-4-T [ICTR 심리부], 1998년 9월 2일 판결, para. 589 참조.

노예화에 해당된다.<sup>1563</sup> 강제노동의 추출이 만약 그것이 피해자의 법적 인격을 효과적으로 파괴하는 상황을 동반한 경우, 노예화에 해당될 수 있다.<sup>1564</sup> 관련상황은 구금 혹은 감금, 피해자의 자율성에 대한 통제 정도, 도주를 예방하거나 저지하기 위한 수단 등의 선택의 자유 혹은 이전의 자유 박탈행위, 무력에 대한 두려움, 권력의 남용, 강제노동의 기간·조건 및 강도, 피해자들의 취약성, 학대행위에 대한 복종 및 성생활의 강력한 통제를 포함한다.<sup>1565</sup>

**1049** 조사위원회는 북한의 정치범수용소에서 수감자들의 경험이 노예의 특성을 모두 포함한다고 본다. 수감자들은 평생 고되고 위험한 강제노동의 대상이 된다. 과거 수감자였던 신동혁 씨가 그들의 운명을 묘사했던 것처럼 그들은 마치 “밭갈이 동물들”인 듯 취급된다.<sup>1566</sup> 수감자들은 종종 영양실조와 질병에 너무 쇠약해져서 말 그대로 일하다가 죽기도 한다. 수감자들은 이 상황에서 탈출할 가능성이 없다. 강제노동의 불이행은 즉결처형, 고문과 굶주림을 악화시키는 배급량의 삭감을 포함한 가혹한 처벌로 이어진다. 경비가 삼엄하고 일괄 통제된 이 구역에서 탈출은 거의 불가능하다. 누구든 탈출을 시도하면 즉결 처형되고 있다. 수감자들은 정기적으로 그들에게 고문을 가하고 그들의 성적 권리 및 생식권을 불용하는 수용소 당국의 일괄 통제의 대상이다.

1563\_ 로마규정 제7조제2항 다목; *Prosecutor v. Kunarac et al*, IT-96-23/IT-96-23/1, ICTY 심리부, 2001년 2월 22일 판결, para. 539; *Prosecutor v. Kunarac, Kovac and Vukovic*, IT-96-23-A, 2002년 6월 12일, ICTY 항소부, para. 117; *Prosecutor v Taylor*, SCSL-03-01-T, SCSL 심리부, 2012년 5월 18일 판결, para. 446.

1564\_ 범죄요소, 국제형사재판소 로마규정 당사국총회, 제1차 회기, 2002년 9월 3~10일, 제7조제2항 다목, 각주 10; *Prosecutor v. Kunarac et al*, IT-96-23/IT-96-23/1 [ICTY 심리부], 2001년 2월 22일 판결, para. 541; *Prosecutor v. Kunarac et al*, IT-96-23-A, 2002년 6월 12일, ICTY 항소부, para. 117; *Prosecutor v. Taylor*, SCSL-03-1-T [SCSL 심리부], 2012년 4월 26일 판결, para. 448 참조.

1565\_ *Prosecutor v. Kunarac et al*, IT-96-23-A [ICTY 항소부], 2002년 6월 12일 판결, para. 119; *Prosecutor v. Kunarac et al*, IT-96-23/IT-96-23/1 [ICTY 심리부], 2001년 2월 22일 판결, paras. 542 and 543; *Prosecutor v. Taylor*, SCSL-03-1-T [SCSL 심리부], 2012년 4월 26일 판결, para. 447 참조.

1566\_ 서울 공청회, 2013년 8월 20일 오후.

## (f) 고문과 극도의 비인도적 구금환경

**1050** 로마규정은 고문을 범죄자의 구금하에 있거나 통제하에 있는 자에게 고의적으로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고통이나 괴로움을 가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sup>1567</sup>

**1051** 구유고슬로비아 국제형사재판소(ICTY)가 지지하는 국제관습법상 고문의 정의는 심각한 신체적 혹은 정신적 고통과 괴로움이 존재할 것을 요구하지만 구금이나 통제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대신, 문제되는 행위들은 “정보나 자백을 얻어내거나 피해자 또는 제3자를 처벌·협박·강요하거나 혹은 여하한 이유를 근거로 피해자 또는 제3자를 차별하는 것을 겨냥”해야 한다.<sup>1568</sup>

**1052** 조사위원회는 신체적 고문을 차별적인 정치적·종교적 또는 사회적 이유에 근거하여 붙잡혀 있는 수감자들에게 처벌 및 협박을 하기 위해 널리 사용되는 북한 정치범수용소의 확립된 특징이라고 본다. 그것은 전형적으로 특별히 설계된 처벌 장소에서 수행되고 있다. 또한 경비병들은 인지된 수감자의 법규 위반에 대응하여 현장에서 심각한 고통을 주는 처벌을 부과하도록 허가와 지시를 받고 있다.

**1053** 의도적으로 사람들을 극도로 비인도적인 구금환경들에 처하게 하는 것은 반인도범죄에 해당될 수 있다.<sup>1569</sup> 북한의 정치범수용소의 경우, 전반적인 상황의

1567\_ 로마규정 제7조제2항 마목 참조.

1568\_ *Prosecutor v. Kunarac et al*, IT-96-23-A, 2002년 6월 12일, ICTY 항소부, para. 117.

1569\_ *Prosecutor v. Kaing Guek Eav (Duch), Case 001/18-07-2007/ECCC/Tc* [Extraordinary Chambers of the Courts of Cambodia, 심리부], 2010년 7월 26일 판결, para. 372 참조. 재판소는 족쇄와 사슬을 채우는 행위, 유치장 밖으로 이동시킬 때 눈가림 또는 수갑착용, 심한 매질 및 체형, 몹시 작거나 과잉 수용된 유치장에 구금, 적절한 식량·위생 또는 의료의 부족을 포함한 구금의 상황들은 비인도적인 행위에 이르는 것으로 보았다. *Prosecutor v. Kvočka et al*, IT-98-30/1-T [ICTY 심리부], 2001년 11월 2일 판결, paras. 190 & 1991, affirmed by *Prosecutor v. Kvočka et al*, IT-98-30/1-A [ICTY 항소부], 2005년 2월 28일 판결, paras. 324-325 또한 참조. ICTY는 포로수용소에 만연하는 상황들이 반인도범죄에 이른다고 보았다:

비인도성은 특히 수감자들에게 평생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괴로움에 처하게 하는 고의적 굶주림 정책에 의해 형성되고 있다. 이 심각한 고통이 정치적인 이유를 근거로 수감자들을 협박하고 처벌하기 위해 가해지고 있기 때문에, 조사위원회는 단지 그들의 고의적인 굶주림만으로도 고문의 범주에 이른다고 본다.

### (g) 성폭행 및 기타 유형의 성폭력

**1054** 이제 반인도범죄가 성폭행을 포함하는 것에 대한 반박의 여지가 없다.<sup>1570</sup> 비록 공식적으로 금지되어 있고 가끔 징계조치로 이어지고 있지만, 성폭행은 주기적으로 북한 정치범수용소에서 범해지고 있다. 그것은 일반적으로 수용소 관리자들이 처벌을 받지 않는 정치범수용소 환경의 결과물이다. 그러므로 성폭행은 수용소 주민에 대한 전반적인 공격의 일부를 구성한다. 어떤 경우에는 여성 수감자들이 물리력에 의한 성폭행을 당하고 있다. 다른 경우에는 여성들이 가혹한 노동 임무를 피하거나 혹은 식량을 받기 위해서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강요당하게 된다. 범죄자들이 수용소 환경의 강압적 상황과 그 결과로 초래된 여성 수감자들의 취약성을 이용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도 국제법상 규정되는 성폭행에 포함 된다.<sup>1571</sup>

**1055** 허용되지 않은 임신은 한 여성 수감자들에 대한 강제낙태의 시행은 즉각적인 신체적 위협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생식권을 방해하고 심각한 정신적

“통풍이 안 되는 작은 방에 초과임 수용, 억류자들이 물을 구걸할 것을 요구, 생리적 기능에 있어 그들의 옷에 배설하도록 강요... 억류자들로부터 교도관들의 강압적 돈의 요구를 포함한 끊임없는 질책, 사기 저하 및 협박, 또한 억류자들을 이가 우글거리고 비좁은 시설에 숙박.”

1570\_ 로마규정 제7조제1항 사목 또한 참조.

1571\_ ICTY 항소부의 판례 및 로마규정상 성폭행에 대한 공식적 번역에서 강압적 상황의 이용은 성폭행을 야기하는 요소로 인정되어 왔다. *Prosecutor v. Kunarac et al*, IT-96-23& IT-96-23/1-A [ICTY 항소부], 2002년 6월 12일, para. 129 [범죄자가 “무력에 의존하지 않고 강압적 상황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또한 성폭행 피해자의 특징인 합의를 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면서] 참조. 범죄요소, 국제형사재판소 로마규정 당사국총회, 제1차 회기, 2002년 9월 3~10일, 제7조제2항 사목, 제8조제2항 나목(22), 제8조제2항 마목(6) 또한 참조.

고통을 유발한다. 따라서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강제낙태는 반인도범죄에 이르는 중대한 성폭력의 한 종류로 간주되어야 한다.<sup>1572</sup>

**1056** 차별적인 정치적 이유 및 성차별적 이유로 구금되어 성폭행 및 강제낙태를 당한 피해자들의 심각한 고통과 괴로움은 통상적으로 로마규정 및 국제관습법상에 규정된 고문의 범주에 포함된다.<sup>1573</sup>

#### (h) 박해

**1057** 국제형사법은 박해를 집단 또는 집합체와의 동일성의 이유로 국제법에 반하는 기본권의 의도적이고 심각한 박탈이라고 정의한다.<sup>1574</sup> 그 박탈은 피해자를 차

1572\_ 뉘른베르크 판결 및 ICTY는 강제낙태를 반인도범죄로 인정하였다. *Judgment of the International Military Tribunal, I The Trial of German Major War Criminals, Proceedings of the International Military Tribunal sitting at Nuremberg, Germany 2* (1946), p. 471 [나치당의 친위대가 반인도범죄를 시사하는 범죄조직이었다는 결론에 도달하는 데에 여성 강제노동자들에게 강제낙태의 시행을 고려하면서] 또한 참조. *Prosecutor v. Kvočka et al, IT-98-30/1-T [ICTY 심리부]*, 2001년 11월 2일 판결, note 343; *Prosecutor v. Greifelt et al* [“The RuSHA Case”], V *Trials of War Criminals before the Nuremberg Military Tribunals*, October 1946-April 1949 153 (1949) [“The RuSHA Case”] pp. 109 ff., 160-61 또한 참조. Valeria Oosterveld, “Gender-based crimes against humanity” in Leila Nadya Sadat, *Forging a Convention on Crimes against Humanity*, pp. 98~99 [강제낙태와 로마규정상 반인도범죄로 특정된 강제불임 사이의 유사성에 주목하면서] 또한 참조.

1573\_ 국제형사법학은 성폭행이 고문을 수반할 수 있다고 오랫동안 인정해 왔다. *Prosecutor v. Delalic et al, IT-96-21-T [ICTY 심리부]*, paras. 475 ff; *Prosecutor v. Furundzija, IT-95-17/1-T [ICTY 심리부]*, 1998년 12월 10일 판결, para. 164; *Prosecutor v. Akayesu, ICTR-96-4-T [ICTR 심리부]*, 1998년 9월 2일 판결, para. 687 참조. 연이은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 특별보고관들에 의해 강제낙태는 고문 행위로서 인정되어 왔다. A/HRC/22/53 (2013), para. 48; A/HRC/7/3 (2008), para. 69. 또한 자유권위원회, 일반논평 제28호, CCPR/C/21/Rev.1/Add.10 (2000), para. 11 참조.

1574\_ 로마규정 제7조제2항. *Prosecutor v. Krnojelac, ICTY-97-25-A [ICTY 항소부]*, 2003년 9월 17일 판결, para. 185; *Prosecutor v. Nahimana et al, ICTR-99-52-A [ICTR 항소부]*, 11월 28일 판결, para. 985 또한 참조.

별하려는 특정의 의도를 가지고 행해져야 한다. 로마규정과 국제관습법은 둘 다 정치적 및 종교적 이유를 반인도범죄를 구성하는 박해의 근거로 인정한다.<sup>1575</sup>

**1058** 조사위원회는 북한 정치범수용소의 수감자들을 일반적으로 박해의 범죄로 인한 피해자들로 본다. 그들은 종교 및 정치적 신념 혹은 가족의 사회·정치적 배경으로, 자의적 구금, 강제실종, 고문, 굶주림, 강제노동과 기타 중대한 인권 침해를 수반하는 처벌을 받는다. 심지어 설사 정치범이 석방된다 하더라도 그들과 그들의 가족이 성분제도의 최하층으로 제한되기 때문에 박해는 그들이 일반 사회에 재통합된 후에도 계속된다.

**1059** 여성의 경우, 정치·사회적 배경에 의한 박해가 성차별적 박해와 교차한다.<sup>1576</sup> 그들은 여성이라는 이유로 성폭행과 강제낙태를 포함한 성폭력 행위들의 피해를 입는다. 강제낙태의 경우, 소위 ‘적대계층’의 생식을 막기 위해 여성의 생식 능력은 의도적이고 조직적으로 표적이 되고 있다. 성폭행의 경우, 범죄 고의는 단지 개개인 가해자의 의도에만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다. 비록 그들의 행위가 북한 형법상 범죄행위이고 또한 허가되지 않은 성적 접촉을 금하는 수용소 규칙에 위반하더라도, 그것은 경비병들과 다른 수감자들 사이의 남성 가해자들을 처벌하려는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는 일반적 관행에서도 나타난다.

1575\_ 로마규정 제7조제2항. Prosecutor v. Kvočka et al., IT-98-30/1-T [ICTY 심리부], 2001년 11월 2일 판결, para. 186.

1576\_ 아직 ICTY 및 ICTR 규정에 포함되지 않았던 성차별적박해를 로마규정은 반인도범죄로 소개하였다. 조사위원회의 주장에 따르면, 이 규범은 국제관습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 2. 국가정책에 의한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공격

**1060** 조사위원회는 북한의 정치범수용소에서 자행된 비인도적인 행위들이 상당한 규모와 상당한 정도의 조직을 통해 범해지고 있어, 그것 자체가 정부정책에 의한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공격에 해당된다고 본다. 이에 더하여 정치범수용소 체계는 북한의 정치체제 혹은 그 지도력에 위협으로 간주되는 모든 사람에 대한 더 큰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공격의 핵심요소를 구성한다.

**1061** 정치범수용소는 중심적 정치목표, 즉 종파분자와 적대계층의 3대를 제거하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경비병과 다른 수용소 당국은 이것이 김일성이 직접 결정한 수용소의 목표라고 지시를 받는다. 수용소는 계속해서 이 목표에 기여하면서 또한 그 정치체제 및 그 지도력에 위협이 되는 이를 사회에서 숙청하는데 사용되고 있다. 게다가 수용소의 광산, 농장과 공장에서 수감자들로부터 얻어낸 강제노동력은 최소의 비용으로 에너지 생성 및 보안부대에 식료품 군납을 포함한 정치적으로 중요한 경제 목표 달성에 도움을 준다.

**1062** 조사위원회는 북한 정치범수용소에서 자행되는 비인도적인 행위가 대규모로 일어나고 또한 규칙적인 패턴을 따라서 그것들이 중대한 당국 정책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고 본다. 60년의 기간에 걸쳐 북한에 있는 수많은 정치범수용소에서 수십만 명의 수감자들이 매우 비슷한 패턴의 굶주림, 강제노동 및 기타 비인도적인 행위들을 겪었다. 현재 8만 명에서 12만 명 사이의 수감자들이 정치범수용소에 구금되어 있다. 이것은 대략 북한 주민 200명 중 1명에 해당된다.

**1063** 정치범수용소에서 복무하는 경비병들과 보안 요원들은 수감자들을 더 이상 공민권이 없는 인간 이하의 적들로 여기도록 교육 받았으며, 그에 맞춰 그들은 수감자들을 무참하게 대우할 것을 지시 받는다. 이는 이른바 ‘인민들의 적들’을 향한 적

개심을 불러 일으키는 조선노동당의 선전선동부 및 기타 당국 기관의 활동에 의해 강화된다. 특정훈련에 의한 사상교양과 일반적인 정치선전의 조합이 인간의 통제력을 상실시키는 심리적 환경을 만드는데, 그렇지 않았다면 경비병들이 수감자들에게 이러한 비인도적인 행위를 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1064** 북한은 수용소 체제의 설치 및 확장에 상당한 자원을 쏟아왔다. 국가의 엘리트 보안기관인 국가안전보위부는 수감자들을 감시하고 수용소를 관리하는 책임이 있다. 국가안전보위부 전체가 이 임무를 수행하며, 수천 명의 요원들과 경비병들을 보유하고 있다. 수용소 안에서 일어나는 생산이 경제에 완전히 통합되도록 도로와 철도 연결편이 건설되었다. 조사위원회가 본 인공위성 사진은 수용소의 확장 및 그곳의 시설보안과 기반시설에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북한 당국의 강한 중앙집권적 본성을 고려하면 이러한 대규모 및 복잡한 기관체제는 최고위급에서 승인된 당국 정책에 기초하지 않고 운영되었다고 믿기는 불가능하다.

**1065** 조사위원회는 수용소 체제가 최고위층에서 통제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정보를 직접 받았다. 어떤 경우에 조사위원회는 수용소로 사람들의 실종을 초래하는 명령을 최고지도자 수준까지 추적할 수 있었다. 게다가 사람들을 수용소로 보낼지 결정하는 국가안전보위부는 최고지도자의 지시 및 철저한 관리·감독의 대상이다.<sup>1577</sup>

**1066** 그런 노력은 헛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당국은 정치범수용소의 존재 및 그 안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한 정보가 국제공동체에 이르는 것을 막기 위해 계속해서 상당한 에너지를 쏟는다. 수용소의 존재 및 그 안에 만연하는 환경들의 주요 증거를 은폐하기 위해 북한 당국이 취한 예방책은 전쟁 혹은 혁명의 경우 모든 수감자들을

1577\_ VI장 A 참조.

죽이라는 최고지도자로부터의 명령에 이르기까지 확장되어 있다.<sup>1578</sup>

**1067** 비록 더 짧은 기간과 다른 파괴적 특성을 가졌으나 조사위원회는 20세기 전체주의국가의 수용소를 가장 유사한 사례로 본다. 이런 정치범수용소가 현재까지 북한에 존속하고 있다는 것은 보편적으로 공유된 인권의 권리로서의 가치 모욕이자 반인도범죄이다. 이러한 정치범수용소가 해체되고, 살아남은 수감자들이 더 이상의 지체 없이 석방되도록 보장하는 것은 북한과 국제공동체의 의무이다.

## C. 일반 감옥 체계에서의 반인도범죄

**1068** 수집한 증언 및 정보에 근거하여,<sup>1579</sup> 조사위원회는 반인도범죄가 일반 감옥 체계, 특히 노동교화소와 더 낮은 단계의 다양한 단기 강제노동 구금시설에서까지 자행되고 있다고 본다.

### 1. 일반 수감자들에 대한 비인도적인 행위

**1069** 조사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비인도적인 행위가 범해졌고 현재도 범해지고 있다고 본다.

#### (a) 구금

**1070** 북한의 일반 수감자들은 거의 언제나 국제법의 근본원칙에 위배되는 구금

1578\_ IV장 E.3 참조.

1579\_ IV장 E.4 참조.

의 범죄로 인한 피해자들이다.

**1071** 노동교화소 수감은 보통 재판절차에 기초한다. 그러나 이 절차는 국제법이 요구하는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권한있는 독립적이고 공평한 법원에 의한 공정한 공개심리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단기 강제노동 구금시설에 감금되는 자들은 대부분 전혀 재판을 받지 못한다.

**1072** 많은 일반 감옥의 수감자들은 국제법에 부합하는 실질적인 이유 없이 구금된다. 흔히 그들은 결코 불법화되지 말아야 하는 보장된 인권의 행사로 인해 구금된다. 그들 중에는 북한을 떠날 권리를 행사한 사람, 신앙생활을 하거나 혹은 외국 영화를 시청하거나 국제전화를 통해 정보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행사한 사람들이 있다.

#### (b) 절멸 및 살해

**1073** 많은 측면에서 북한의 노동교화소 수감자들에게 부과된 조건은 정치범수용소에서 발견한 것들과 유사하다. 수감자들에 대한 대우의 차이는 흔히 원칙이 아닌 정도의 문제이다. 강제노동과 고의적 굶주림, 부적절한 의료 및 열악한 위생 조건이 결합된 정책은 매년 수감자 중 수천 명의 사망을 초래한다. 북한에는 보다 인도적인 감옥 체계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능력과 자원이 부족하지 않다. 대부분의 일반 감옥은 식량의 순 생산자 역할을 하지만 여전히 배고픈 수감자들에게는 식량이 주어지지 않는다. 게다가 구금시설에서 수행되는 광업과 제조업의 산출량은 이익을 창출하나, 그것은 구금에 있어 적절한 조건들을 제공하기 위한 혜택으로 사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조사위원회는 구금시설의 비인도적인 조건들이 의도적인 당국 정책의 결과라고 본다.

**1074** 북한의 일반 감옥은 수감자들의 제거라는 일반적 목표를 갖지 않았을 수도 있다. 적어도 법적으로 명시된 일반 감옥의 목적은 노동을 통한 수감자들의 재교육이다. 그러나 적절한 식량과 의료에 대한 고의적 거부를 포함해서 일반 감옥을 관리하기 위해 중앙당국로부터 나오는 정책들이 사건의 통상적인 경과에 따라 상당 부분 수감자의 사망을 초래할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시행되고 있다. 이 정도의 범행 동기 수준은 절멸 및 살해의 반인도범죄가 범해졌다는 것을 규명하기에 충분하다는 것이 조사위원회의 의견이다.<sup>1580</sup>

**1075** 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일반 감옥에서 탈옥을 시도한 사람들에게 대한 즉결처형뿐만 아니라 비밀 처형 사례들을 포함하여, 개별적인 공무상 살해행위가 일어났다.<sup>1581</sup>

### (c) 고문, 성폭행 및 기타 유형의 성폭력

**1076** 국제형사법상 정의된 고문은 북한의 일반 감옥의 일반적 특징이다. 고문은 매우 작은 감방에 독방 감금을 하거나 징계조치로서 극한 수준의 고의적 굶주림과 수감자들을 처벌하기 위한 심한 구타 및 기타 잔혹한 행위들을 가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처벌의 강도를 높이기 위해 수감자들에게 부과된 장기적 굶주림으로 인한 고통은 기타 비인도적 구금환경과 함께 일반적으로 고문의 범주에 해당된다.<sup>1582</sup>

**1077** 일반정책으로써 공개적인 지지를 받지 않았고 감옥 규정에도 반하지만, 성폭행의 빈번한 발생은 반인도범죄의 전반적인 양상의 일부를 구성한다. 정치범수용소에서처럼 성폭행의 사례는 경비병들과 다른 관리자들이 누리는 불처벌과 통제받

1580\_ 또한 V장 B.1 (c) 참조.

1581\_ 세부사항은 IV장 E.5.(b) 참조.

1582\_ 또한 V장 B.1.(f) 참조.

지 않는 권력의 직접적인 결과이다. 임신한 수감자들이 당한 강제낙태는 반인도범죄가 요구하는 법적인 적용 기준을 충족하는 그런 중대한 성폭력의 한 종류이다.<sup>1583</sup>

#### (d) 노예화

**1078** 다양한 종류의 구금시설들간에 강제노동의 조건은 각기 다르다. 북한의 일반 감옥 체계 모든 곳이 국제형사법이 규정한 노예화의 엄격한 법적 적용 기준에 이르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노동교화소, 특히 광산 감옥의 수감자들이 짊어진 강제노동의 종류, 기간 및 강도는 노예화의 범주에 이른다. 이러한 결론에 이르는데 있어 조사위원회는 작업 할당량을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혹은 탈옥을 시도한 자에게 부과된 고의적 굶주림, 비인도적인 생활조건들과 엄격한 처벌 등의 전반적인 맥락을 고려한다. 따라서 조사위원회는 북한의 일반 감옥의 수감환경이 국제적 표준을 충족한다는 자유권위원회에 제출한 북한의 의견을 단호히 거부한다.<sup>1584</sup>

#### (e) 주민의 강제이주

**1079** 국제형사법에서 주민의 강제이주와 같은 반인도범죄는 국제법상 허용되는 근거없이 주민을 추방하거나 또는 다른 강요적 행위에 의하여 그들이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부터 강제적으로 퇴거시키는 것으로 정의되어 있다.<sup>1585</sup>

1583\_ 또한 V장 B.1.(g) 참조.

1584\_ IV장 E.4 참조.

1585\_ 로마규정 제7조제2항 라목 참조. *Prosecutor v Krajisnik*, IT-00-39-A [ICTY 항소부], 2009년 3월 17일 판결, paras. 304 & 305 또한 참조. 강제이주는 오직 피해자들이 국경선을 넘어 옮겨지지 않는다는 사실에 의해 추방의 범죄와 구별된다. *Prosecutor v Krstic*, IT-98-33-T [ICTY 심리부], 2001년 8월 2일 판결, para. 521 참조.

1080 북한 일반 감옥의 수감자들은 개인의 유죄추정에 근거하여 감금된다. 그러나 노동교화소 수감자들의 가족은 특히, 가족이 평양에 거주하는 경우 여전히 연좌제 처벌을 받고 있다. 친족의 범죄로 이러한 가족들은 나쁜 성분의 주민 집단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그들은 평양에서 추방되고, 더 가혹한 사회·경제적 조건을 경험하게 되는 외진 지방 중 한 곳으로 강제이주된다.<sup>1586</sup> 조사위원회는 평양에서 온 수천 명의 수감자를 수용하는 제4호 노동교화소의 큰 규모를 주목하고 있는데, 유죄가 선고된 사람들과의 가족관계에 근거하여 적어도 수천 명의 북한 주민들이 평양으로부터 추방되었다고 본다.

1081 친족의 범죄에 연루되지 않았던 가족 구성원들을 연대 추방하는 북한의 관행은 북한의 공식 법률상의 근거가 없고, 국제법에도 반하기 때문에 조사위원회는 이런 추방이 주민의 강제이주라는 반인도범죄에 해당한다고 본다.

## 2. 국가정책에 의한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공격

1082 북한에서 형사법제도 및 감옥은 단순히 일반 범죄에 대해서만 처벌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들은 정치체제 및 그 지도력에 위협으로 간주되는 이에 대한 당국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공격 등의 필수적인 기능을 담당한다. 실은 북한의 많은 일반 감옥 수감자들은 정치범들이다. 김일성과 김정일이 강조했던 일반 사법제도의 정치적 기능은 현 북한 헌법 및 형사소송법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당국과 법원은 이러한 법에 의해 적대계급을 확실히 반대하고 진압한다.<sup>1587</sup> 희귀 광석 및 다른 수출용 상품 등 감옥에서의 강제노동을 통해 나온 생산품은 정치체제와 그 체제에

1586\_ 세부사항은 IV장 C.1.(a) (i) 참조.

1587\_ 북한 헌법 제8조 및 제162조 참조. 북한 형사소송법 제2조. 형사사법제도의 정치기능에 대한 세부적 논의는 III장 5 참조.

대한 충성심을 필요로 하는 엘리트들을 유지하기 위해 소요되는 중요한 외화벌이를 당국에게 제공한다. 따라서 일반 감옥체계 및 그 운영 방식은 두 가지 중요한 정치적 목표에 기여하는 것이다.

**1083** 일반 감옥 안에서 수감자들이 겪는 비인도적인 행위는 각각의 경비병 혹은 특정 시설에만 해당한다고 추측할 만한 고립된 사건들이 아니다. 조사위원회는 방대한 감옥체계에 걸쳐 비인도적인 행위들이 어느 시점에서나 수천 명의 수감자들을 희생시킬 수 있는 규칙적인 양상을 따른다고 본다.

**1084** 고의적 굶주림 및 강제노동은 전국의 다른 감옥 모두 같은 유형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행위들은 중앙차원에서 하달된 명령을 근거로 한다. 매우 비슷한 유형의 처벌 관행들 및 고문 시설들이 (예를 들어, 매우 작은 감방에 독방 감금) 각각 다른 구금시설에 걸쳐 사용되고 있다. 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북한에서 수천 명의 일반 감옥 수감자들이 매년 굶주림, 탈진, 구타, 예방할 수 있는 작업 사고 및 치료 가능한 질병들로 인해 사망한다.<sup>1588</sup> 특히 감옥에서의 굶주림 수준이 정기적으로 측정되고 있기 때문에 중앙 차원을 포함한 북한 당국은 이것을 인지하고 있다. 그러나 당국은 근본적인 정책을 바꾸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북한 형법 제30조에 의하면 노동교화소 수감자들의 공민권은 부분적으로 정지된 것으로 여겨진다. 이것은 수감자들에 대한 학대를 더욱 조장한다.

**1085** 불처벌의 양상 또한 수감자들에게 가해지는 비인도적인 행위들이 공식 정책으로 인정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형사법제도의 두 개의 주된 기둥인 인민보안부 및 검찰소는 일반 감옥체도를 관리·감독하지만, 북한 당국은 수감자들에 대한 고문, 성폭행, 처형 및 다른 비인도적인 행위에 대해 가해자들을 처벌하려는 적절한

1588\_ IV장 E.4 참조.



노력을 취하지 않고 있다.

**1086** 대신, 북한 당국은 감옥 체계하에서의 위반 사안을 주민과 국제공동체에 감추기 위해 일관된 조치를 취해 왔다. 가족 구성원들이 감금된 친족의 죽음을 발견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감옥 안에서 사망한 자들의 시신을 처분하기 위한 용광로와 공동묘지를 감옥 시설 안에 혹은 가까이 구축하였다. 유엔 인권기구들과 협력할 경우 북한 당국은 구체적인 질문들에 대하여 감옥 체계의 규모와 처리조건들에 대해 극도로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왔다. 또한 북한은 (특정 모범 감옥들에 대한 가끔의 방문을 제외하고는) 지속적으로 감옥에의 방문을 거부해왔다. 감옥 시설을 포함한 북한 방문에 대한 이번 조사위원회의 반복된 요청들은 모두 무시되거나 거절되어 왔다.

#### D. 종교인 및 기타 체제전복적 영향을 끼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반인도범죄

**1087** 수집한 증언 및 정보에 근거하여<sup>1589</sup> 조사위원회는 정치적으로 혹은 사상적으로 체제전복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간주된 사람들은 반인도범죄의 대상이라고 본다.

**1088** 가장 중요한 피해자들 중에는 정부의 통제를 덜 받는 종교 기관 밖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종교인들이 있다. 이러한 종교인들은 주로 기독교인으로, 중국 국경선 지역에서 운영되는 한국어 교회를 통해 종교활동을 하고, 독립적인 공동체를 구성한다.

1589\_ 세부사항은 특히 IV장 A 참조.

**1089** 체제전복적인 영향을 끼치는 집단에 해당하는 다른 자들은 한국 국민과 허가되지 않은 개인적인 접촉 또는 전화접촉을 하거나, 외국 영화, 뉴스, 오락 프로그램을 시청 또는 유포하거나 외국의 텔레비전 프로그램 또는 라디오 방송을 정기 시청·청취한 자들을 포함한다.

## 1. 비인도적인 행위

**1090** 조사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비인도적인 행위가 범해졌고 현재까지도 범해지고 있다고 본다.

### (a) 구금 및 고문

**1091** 당국이 적대국가로 간주하는 국가들에서 유래된 종교, 영화 및 방송과 특히 허가되지 않는 한국과 그 국민들과의 접촉에 대해 당국은 정치적으로 체제전복적이라고 간주한다. 정부는 이런 활동에 참여한 자들을 형법이 칭하는 “반국가 및 반민족 범죄”의 죄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이것은 그들의 행위가 국제인권법에서 보장된 영역 안에 있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잡히면 그들은 자유권규약 제9조를 위반하면서 법관에게 회부되지 않은 채 몇 주 혹은 몇 달 동안 심문의 목적으로 구금된다. 그 후에, 그들은 자유권규약 제14조가 규정한 요건들을 충족하지 못한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을 수 있다.<sup>1590</sup>

**1092** 심한 구타, 지속적이고 의도적인 굶주림 및 기타 유형의 고문은 북한에 체

---

<sup>1590</sup> 종교인들과 기타 체제전복적인 행동에 관여했던 것으로 간주된 사람들이 정치범수용소 및 기타 감옥에서 경험하는 추가적인 반인도범죄에 관해서는 V장 B와 V장 C 참조.

제전복적인 요소들을 전하는 죄로 기소된 사람들에게 체계적으로 부과되고 있다. 그 목적은 자백을 받고 다른 사람들도 죄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이다.

### (b) 살해

**1093** 당국이 특히 중대하다고 간주하는 경우에, 기독교인들 및 외국 영화 또는 자료의 배급자들은 처형된다. 조사위원회는 근원적인 행동이 국제인권법에 의해 보장되고 사형의 적용이 제한되어 있는 자유권규약 제6조의 ‘가장 중한 범죄’ 중 하나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설사 그 처형이 재판의 선고에 근거한 경우에도 이러한 처형은 살해에 해당된다고 본다.<sup>1591</sup>

### (c) 박해

**1094** 기독교인들도 박해의 피해자들이다. 정부의 통제를 받는 교회 밖에서 신앙 생활을 하는 자들에게 가한 폭력과 중형은 그들이 경험하는 당국이 주도하는 차별의 핵심이다. 그들에 대한 박해는 북한의 전반적인 차별환경에 의해서도 비롯되는데, 북한은 선전·교육 시간에 기독교를 비난하고, 종교자료의 수입 및 소유 역시 효과적으로 금지한다. 또한 지하교회에 잠입하고, 정부의 통제를 받는 교회에서 신앙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허락된 몇몇에 대해 감시를 하며,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또한 기독교인들은 성분제도의 적대계급 최하층으로 국한하여 그들이 겪는 차별이 배가 되고 있다.

1591\_ 그것의 부과가 엄밀히 따져 해당되는 국내법에 합치하더라도 국제법에 위배되는 사형 적용의 남용 또한 반인도범죄에 이를 수 있다. *United States of America v. Alstötter et al.* [The Nuremberg Justice Case] 3 T.W.C. 1 (1948), at 1155 참조.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내린 사형에 근거하여 절멸과 박해의 범죄에 대한 책임을 초래한 것으로 보았다.

## 2. 국가정책에 의한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공격

**1095** 조사위원회는 국가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공격이 정치체제 및 북한 지도력에 위협으로 간주되는 주민들뿐만 아니라 종교인들과 기타 체제전복적인 영향을 끼치는 자들에게까지 미친다고 본다. 그들의 행동은 조선노동당 및 그 지도력이 주장하는 정보 및 사상형성의 독점에 도전을 하기 때문에 이들 집단들은 특별히 위협이 된다고 간주된다. 기독교인들의 경우, 국가가 독립적인 기독교 공동체의 재도입을 방지하기 위해 추가적인 정치적 목표를 또한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공동체들은 과거 숙청시기에 모두 뿌리 뽑혔다.

**1096** 당국은 기독교인들과 기타 체제전복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간주되는 자들을 체포 및 억류하고 처벌을 하게 하는 정책집행을 위해 상당한 자원을 쓴다. 정해진 절차로 누군가 중국에서 송환됐을 때, 교회 및/혹은 한국 국민과 접촉이 있었는지, 기독교인인지 체계적으로 가려내고 있다. 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국가안전보위부, 인민보안부 및 조선인민군 보위사령부는 외국 영화의 유입에 대해 합동 엄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고, 또한 최고지도자의 직접 명령에 따라 이 목적을 위한 공동 감시 조직을 설치해 왔다. 국가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국방위원회를 대표하여 주민들에게 외국 영화 및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시청하거나 혹은 배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보안부대에 신고할 것을 요구하는 포고문이 공표되어 왔다. 세관당국은 외국 영화 또는 해외방송을 수신할 수 있는 장치를 찾기 위해 들어오는 상품들을 체계적으로 수색한다. 국가안전보위부 감시 조직은 정교한 기술을 이용해 허가되지 않은 중국 휴대전화의 사용을 감지한다.

**1097** 북한 당국은 통제되는 교회 밖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기독교인들에 대한 처형을 국제사회에게 조직적으로 감추려고 시도한다. 당국 내부 종교의 자유와 다원주의의 예로써 당국의 통제를 받는 적은 수의 교회를 지적함으로써 이를 시도한다.

## E. 탈북을 시도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반인도범죄

1098 수집한 증언 및 정보에 근거하면,<sup>1592</sup> 조사위원회는 중국에서 강제송환된 사람들을 포함하여 탈북을 시도한 사람들에 대한 비인도적인 행위가 범해졌고, 현재 까지도 범해지고 있다고 본다.

### 1. 비인도적인 행위

1099 조사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비인도적인 행위가 범해졌고, 현재까지도 범해지고 있다고 본다.

#### (a) 구금

1100 정해진 절차로써, 국가안전보위부와 인민보안부는 탈북을 하려다가 붙잡힌 사람들 혹은 강제송환된 사람들을 심문할 목적으로 흔히 몇 개월 동안 조직적으로 구금하였다. 이 시기 동안, 억류자들은 일반적으로 자유권규약 제9조제3항에 따라 법원에 회부되지 않는다. 또한 그들은 자유권규약 제9조제4항의 그들 억류의 합법성에 대해 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기회가 없다.

1101 억류자들이 일을 찾기 위해 혹은 중국에 거주하는 친척으로부터 지원을 받기 위해 탈북했다고 국가안전보위부 및 인민보안부의 심문자들을 납득시킬 수 있다면, 그들은 (주로 재판없이) 더 짧은 기간 구금되는 처벌을 받게 된다. 그들은 자국

1592\_ 세부사항은 IV장 C.2 참조.

을 떠날 권리를 행사하는 유일한 방법을 추구하는 것에 대해 처벌 받았기 때문에, 그 처벌은 국제법에 부합될 만한 이유가 없이 부과된 것이다.

**1102** 기독교의 신앙생활을 한 것 혹은 한국 국민들과 접촉을 한 것이 발견되는 자들은 불공정한 재판을 통하거나 별도의 재판없이 일반 감옥 또는 정치범수용소에 구금된다.

### (b) 고문 및 살해

**1103** 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국가안전보위부의 관료들은 송환된 사람들 중 해외에 있었던 동안 기독교 교회 및 한국 국적의 국민들과 접촉을 했던 자들을 확인하기 위해 그들에 대해 심한 구타, 고의적 굶주림 및 기타 고문 수단들을 동원한다. 송환된 사람들은 구금 중 구타와 굶주림으로 사망한다. 많은 경우 범죄자들의 가해가 매우 중대해 사건의 통상적인 경과에 따라 사망으로 이어질 것을 알고 있으므로 그들의 죽음은 살해에 해당한다.

**1104** 국경경비대원들은 허가 없이 북한 국경선을 건넌 사람들을 사살하기 위해 총을 쏘는 것이 여전히 허용된다. 이러한 살인은 살해에 해당한다. 이는 국제법상 위반되는, 일반 주민에 대한 사실상 전면적 여행 금지를 유지시키는데 기여하기 때문에 적법한 국경선 통제 조치로써 정당화될 수 없다. 더욱이 허가되지 않은 국경선 통과 방지라는 목적을 위해 의도적으로 사살하는 것은 극도로 균형에 맞지 않는다. 국제법은 즉각적인 위협으로부터 생명을 절대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죽음을 초래할 수 있는 물리력의 의도적인 사용을 허용한다.<sup>1593</sup>

1593\_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extrajudicial, summary or arbitrary executions, A/HRC/14/24/Add.6 (2010), para. 32 참조.

### (c) 성폭행 및 기타 유형의 성폭력

**1105** 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송환된 여성이 중국에서 임신한 경우 강제낙태를 당한다. 이것은 반인도범죄의 법적 적용 기준을 충족시키는 중대한 성폭력에 해당한다. 또한 송환되어 구금된 여성들에게 부과되는 강제낙태는 일반적으로 고문으로 여겨진다.<sup>1594</sup> 영아살해의 경우, 살해의 범죄가 자행되고 있다. 송환된 사람들을 처리하는 심문 구금시설에 만연하는 불처벌 풍조는 이들 범죄가 쉽게 발생하는 조건을 조성한다. 이러한 불처벌 풍조는 각개 보위원들의 성폭행 및 기타 성폭력 행위들로 이어지며, 이에 대한 처벌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중국에서 송환된 여성들과 관련하여 강제낙태 및 유아살해의 범죄자들은 반드시 한민족의 순수성을 유지하는 것을 강조하는 공식사상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경우 그들은 특히 중국남자와 성관계를 맺어 “순수하지 못한” 아이로 간주된 아이를 임신한 북한 여성들에게 적대심을 보인다. 이러한 이유로 언급된 비인도적인 행위는 또한 인종 및 성차별적 박해가 될 수 있다.

**1106** 북한의 심문 구금시설에서 성적 수치심은 송환된 여성들에 대한 의도적인 전략으로 이용된다. 개개의 보위원들은 처벌받지 않음으로써, 그녀들에 대해 신체적 및 언어적 성희롱 (또한 어떤 경우에는 성폭행)을 자행할 수 있다. 일반적인 관행으로 심문 구금시설에 들어오는 송환된 여성들은 다른 수감자들과 보위원 앞에서 옷을 전부 벗어야 한다. 그들은 완전히 알몸인 상태로 은밀한 부위에 숨겨놓은 돈이 나오게 하기 위한 일련의 쪼그려앉기 동작을 실시하도록 강요당한다(“뽀뽀질”이라고 알려진 관행). 조사위원회는 특히 이러한 관행들이 흔히 같은 피해자들에게 반복적으로 범해진다는 것을 고려할 때, 매우 모욕적이어서 반인도범죄에 해당될 수 있는 중대한 성폭력이라 본다.<sup>1595</sup>

1594\_ V장 C.1(g) 참조.

1107 확립된 정책들과 긴밀히 연관지어, 여성 또는 가끔 남성 보위원은 돈을 찾을 목적으로 피해자의 질 안으로 그들의 손을 삽입하면서 여성들을 수색한다. 이러한 침해적인 몸수색은 일반 보위원에 의해 비위생적인 방법으로 실시되고 있다. 이 수색은 다른 수감자들 및 어떤 경우에는 이성 보위원들이 있는 곳에서 실시되고 있다. 질 수색에 선행되는 알몸 “뽀뽀질”을 포함하는 전반적인 상황은 성적 모욕감을 주는 과정이 되게 한다. 흔히 그것은 보위원들이 개인의 이익을 위해 송환된 사람들이 중국에서 벌었던 어떤 돈도 뺏을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을 달성케 한다. 조사위원회는 사법절차의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 돈을 몰수한 경우에 대해서는 전혀 들은 바가 없다. 따라서 범죄에 대한 증거 수집의 목적으로만 수색이 허용된 북한 형사소송법에서도 이런 수색은 불법인 것으로 보인다.<sup>1596</sup> 그것은 인도적인 방법으로, 필요한 경우와 상황에서만 적절한 교육을 받은 사람에 의한 몸수색만이 허용되는 국제 기준에도 미치지 못한다.<sup>1597</sup> 저항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구타하여 복종시킨다. 국제형사법은 범죄자의 신체 일부를 정당하지 않은 방법을 통해 생식기에 강압적으로 삽입하는 것을 성폭행으로 간주한다.<sup>1598</sup> 조사위원회는 북한 심문 구금시설에서 실

1595\_ 강제적 알몸 노출은 ICTR 및 ICTY에 의해서도 또한 반인도범죄를 야기할 수 있는 비인도적인 행위로 인정되어 왔다. *Prosecutor v. Akayesu*, ICTR-96-4-T [ICTR 심리부], 1998년 9월 2일 판결, paras. 688 & 697 [특히 피해자들을 강제로 옷을 벗게 하여 공공장소에서 운동을 수행하게 하는 것은 비인도적인 행위에 이른다고 보면서] 참조. *Prosecutor v. Kunarac et al*, IT-96-23/IT-96-23/1 [ICTY 심리부], 2001년 2월 22일 판결, paras. 766-774; *Prosecutor v. Kvočka et al*, IT-98-30/1-T [ICTY 심리부], 2001년 11월 2일 판결, para. 190 또한 참조. *Prosecutor v. Kvočka et al*, IT-98-30/1-T [ICTY 심리부], 2001년 11월 2일 판결, para. 180에서 성희롱을 성폭력과 관련된 비인도적인 행위로 인정되어 왔다.

1596\_ 북한 형사소송법 제143조.

1597\_ World Medical Association, “Statement on Body Searches of Prisoners, adopted by the 45th World Medical Assembly held in Budapest, Hungary”, 1993년 10월 참조. <http://www.wma.net/en/30publications/10policies/b5> 참조. 또한 Committee against Torture, CAT/C/HKG/CO/4, para. 10 참조.

1598\_ 범죄요소, 국제형사재판소 로마규정 당사국총회, 제1차 회기, 2002년 9월 3~10일, 제7조제1항 사목, para. 1 참조. *Prosecutor v. Furundzija*, IT-95-17/1-T [ICTY 심리부] 1998년 12월 10일 판결, para. 185; *Prosecutor v. Seasay et al*, Case No. SCSL-04-15-T [SCSL 심리부, 2009년 3월 2일 판결, para. 145; *Prosecutor v. Akayesu*, paras. 688과 686에서 ICTR은 나무 조각을 여성의 질 안으로 찢러 넣는 것이 분명히 성폭행에 해당한다고 본다. 또한 참조.



시되는 송환된 사람에 대한 침해적인 질 내부 수색이 북한 자체의 국내법상 불법일 뿐 아니라 성적 모욕감을 주는 전반적 상황에서 실시되고, 또한 합당한 이유에 의해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을 고려할 때 그것은 성폭행에 이를 수 있다고 본다.

#### (d) 강제실종

1108 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북한의 국가안전보위부와 연계된 정보원들은 중국으로 탈북한 주민들뿐만 아니라 그들을 도와준 중국 및 한국 국적의 국민들도 납치해 왔다.<sup>1599</sup> 국제기구들과 그들의 출신 국가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의 생사는 전혀 공개되지 않았다. 이는 국제형사법이 규정하는 강제실종에 해당된다.<sup>1600</sup>

## 2. 국가정책에 의한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공격

1109 북한이 시행하는 고립의 체제, 정보통제 및 사상주입은 외부세계와의 접촉으로부터 주민을 고립시킬 수 있는 능력과 일치하고 그것의 범주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조사위원회는 탈북한 사람들이 북한의 정치체제 및 지도력에 위협으로 간주되는 주민에 대한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공격의 대상이 된다고 본다. 탈북을 한 사람들은 외부세계와 접촉을 하기 때문에 위협이 되며, 북한 내부 사람들에게 조선노동당과 최고지도자가 강요하는 정통에 도전할 수 있는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

1110 이 정치목표는 탈북하려는 자들을 일반적으로 반국가·반민족 범죄자들로 간주하는 사실에 의해서도 증명된다. 게다가 탈북한 사람들을 처벌하는 정책은 승인

1599\_ 세부사항은 IV장 F.1.(g) 참조.

1600\_ 강제실종의 정의는 V장 B.1.(b) 참조.

받지 않은 국경선 통과를 불법화하고 가혹한 노동교화(징역)형의 대상이 되게 하는 북한 형법에 의해 명백히 뒷받침된다. 이것은 일반 주민들이 자유권규약 제12조제2항에 따라 북한을 떠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합법적인 선택권을 효과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에 해당한다.

1111 최고지도자에게까지 확대되는 당국 관료체제의 모든 단계는 1990년대 탈북 문제가 더 일반화되면서부터 상당한 관심과 자원을 이 문제에 쏟았다. 김정일은 처벌수위에 조절에 관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해 직접 개입하였다. 2009년 말, 병든 아버지의 분명한 후임자로 등장한 김정은은 국경선 봉쇄를 강화하고, 탈북하려는 자들을 돕는 사람들에 대해 더욱 가혹한 처벌을 가하였다. 최근에는 중앙 차원에서 총살정책에 대한 수정(폐지는 아니고) 개입하였는데, 이는 중국이 국경선 부근 총격의 영향에 대해 항의한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국가안전보위부가 중국 영토에서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납치를 지속한다는 사실은 또한 국가 최고위층이 탈북행위를 불법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1112 북한의 고위급 관료 및 당국 방송매체는 주기적으로 탈북한 사람들을 “반역자” 혹은 “인간쓰레기”와 같은 용어로 낙인하고, 따라서 탈북하려는 사람들을 겨냥한 반인도범죄의 범행을 가능케하고, 나아가 이를 부추기는 심리적 환경을 조성한다.

1113 북한은 북한으로 송환된 다수의 사람들을 처리하고 처벌하기 위해 상당한 자원을 투입해왔다. 이것은 중앙집권적 당국정책의 존재에 대한 추가적 증거를 제공한다. 주요 보안기관들(국가안전보위부·인민보안부 및 조선인민군)은 국경선을 봉쇄하고, 국경선을 건넌 것이 발견된 자들을 처벌하기 위해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 국가안전보위부가 2012년부터 전반적인 국경선 통제 과정에 앞장선다는 사실은 북한 지도부가 이 문제에 부여하는 정치적 중요성을 나타낸다. 심문 및 임시 유치시설들은 확장되어 왔고 어떤 경우에는 다수의 송환된 사람들을 수용하기 위해 새로 지어졌다.

1114 인권 침해가 대규모이고 규칙적인 양상을 따른다는 사실 역시 이러한 침해 행위가 당국 정책에 근거하고 있다는 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를 뒷받침한다. 탈북한 다수의 중국으로 탈북한 사람들과 중국의 계속되는 엄격한 강제송환정책을 고려하면 수천 명의 북한 주민들이 송환된 것을 예상할 수 있다. 송환된 거의 모든 사람들은 비인도적인 행위를 당한다. 수색과 초기 심문단계에서 피해자들이 겪게 되는 고문, 성폭력과 구금의 비인도적인 상황은 정해진 절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여러 종류의 보안 기관들과 구금시설들 간에 송환된 사람들의 이송도 정해진 절차에 의해 통제되는 것으로 보인다.

## F. 기아

1115 수집한 증언 및 정보에 근거하여,<sup>1601</sup> 조사위원회는 북한 관료들이 대규모 기아 상태, 아사와 심각한 정신적 및 육체적 피해로 이어지는 것으로 알려진 행위와 결정 및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반인도범죄를 범해왔다고 본다. 근본적인 정책은 당국의 최고위층에서 비롯된다. 대규모의 기아와 이와 관련된 사망이 절정에 달했던 1990년대 하반기부터 이 정책의 여러 특징들이 변화되어 왔지만, 조사위원회는 반인도범죄로 이어지는 몇몇의 요소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계속 우려하는 바이다.

### 1. 비인도적인 행위

1116 조사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비인도적인 행위가 범해졌고, 현재까지도 범해

1601\_ 세부사항은 IV장 D 참조.

지고 있다고 본다.

### (a) 절멸

1117 주민의 일부를 말살하기 위하여 계산된, 식량에 대한 접근권 박탈은 절멸에 해당한다.<sup>1602</sup> 비록 특정된 수치적 한계치는 없지만 ‘주민 일부의 말살’이란 개념은 대규모의 사망이 요구된다.<sup>1603</sup>

1118 절멸의 범죄에 필요한 범행 동기와 관련하여, 다수의 사망이 범죄자들의 주관적 목적일 필요는 없다. 절멸의 범죄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범죄자들이 사건의 통상적인 경과에 따라 대규모의 사망을 초래할 것에 대한 계산된 인식을 가지고, 필요한 식량을 주민에게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충분하다.<sup>1604</sup> 그것이 초래할 위험 혹은 대규모 기아 및 사망을 발생 및 악화시킬 것에 대한 숙지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정을 내리는 단순한 무모함은 반인도범죄로서 절멸의 법적 적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

1119 특히 1990년대 말 북한에서 최소한 수십만 명의 사람이 사망하게 한 식량 부족과 대규모 기아 사태의 근본 원인은 북한의 수립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일련의 정책들에 있다. 북한은 참여 및 선정(good governance) 등의 관련 원칙들은 무시

1602\_ 로마규정 제7조제2항. *Prosecutor v. Popovic et al*, IT-05-88-T [ICTY 심리부], 2010년 6월 10일 판결, para. 800; *Prosecutor v. Munyakazi*, ICTR-97-36A-T [ICTR 심리부], 2010년 7월 5일 판결, para. 506 또한 참조.

1603\_ *Prosecutor Ntagerura et al*, ICTR-99-46-T [ICTR 심리부], 2004년 2월 25일 판결, para. 701; *Prosecutor v. Semanza*, ICTR-97-20-T [ICTR 심리부], 2003년 5월 15일 판결, para. 340; *Prosecutor v. Vasiljevic*, IT-98-32-T [ICTY 심리부], 2002년 11월 29일 판결, paras. 227 & 232.

1604\_ V장 B.1 [절멸] 위를 참조.

한 채, 중공업, 요소집약적 집단농업제도 및 개인의 생계 선택에 대한 엄격한 통제 등에 주력하는 계획경제를 도입했다. 이는 정치적으로 중요한 일에 필요한 불공평한 식량배급, 과대하고 지속 불가능한 안보기관을 유지하는 등의 잘못된 지출우선순위에 기초하고 있다. 북한 당국은 소련, 중국과 기타 사회주의 국가들에 의존하여 북한 자체의 식량생산 및 관련 농업 투입요소의 부족을 계속 만회하면서 이 정책들을 유지해 온 것으로 보인다. 이 정책들의 식량권 및 기타 인권에 대한 침해는 그 후 반인도범죄가 펼쳐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다.

**1120** 북한의 역사에서 식량부족은 반복되는 주제였다.<sup>1605</sup> 소련과 동유럽 사회주의국가들의 붕괴와 시기가 맞아떨어지면서 1990년대 초부터 북한에는 이미 극심한 식량부족과 대규모 기아가 존재하였다. 1991년에 “하루 두 끼 먹기”라는 국가 운동의 공표를 통해 북한 스스로 이를 암묵적으로 인정하였다. 1993년 말 무렵, 도움을 받기 위해 중국이나 남아시아 국가들에 접근한 북한 당국은 이들 국가들이 대규모 기아 및 그 결과로 일어나는 대규모의 사망을 막기 위해 필요한 외부 원조를 제공하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다.

**1121** 기근이 이미 진행 중인 상황 속에서, 관련 북한 관료들은 국제법에 위배되고 대규모 기아를 악화시키는 일련의 결정 및 정책을 채택하였다. 이는 그 뒤에 따르는 아사자의 수를 크게 증대시켰다. 북한에 대한 기록 보존은 언젠가 그 근본적인 동기에 대해 더 넓은 시야를 제공할 것이다. 조사위원회는 수집한 증언 및 정보에 근거하여, 북한 관료들이 일반 주민들을 굶기거나 심지어 아사시키려는 주관적인 목적으로 행동하였다고 볼 수 없었다.<sup>1606</sup> 그러나 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1990년대에 그들이 내린 몇몇의 결정들이 자연스럽게 대규모 기아를

1605\_ III장 참조.

1606\_ 감옥에 구금된 일부 주민은 예외에 해당한다. V장 B와 V장 C 참조.

악화시키고 관련 사망자수를 크게 증가시킬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북한의 정치체제, 최고지도자 및 그를 둘러싼 엘리트들을 보전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었기 때문에 이런 결정들을 내렸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수준의 범죄 의도는 절멸의 범죄를 구성하기에 충분하다.

**1122** 조사위원회는 만약 대규모의 사망이 발생할 경우, 국제 인도주의적 행위자들에게 의도적으로 허위정보를 제공하거나 혹은 국제식량원조가 굶주린 주민들에게 도달되는 것을 막는 것은 절멸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본다.<sup>1607</sup> 북한은 사회권규약 제 11조에 의하여 자신의 재원으로 기아로부터의 해방을 보장하지 못하는 것이 명백할 시, 국제식량원조를 요청하고 이를 가능케 할 의무가 있다. 이 의무를 시행할 책임이 있는 북한 관리들은 이미 다수의 사람들이 죽어 가고 있는 시점인 1995년까지 국제사회에 식량원조를 합심하여 요청하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그에 앞서, 관료들은 심지어 북한 내부에 기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암시하는 허위정보를 제공하였다. 당국은 정치적인 이유로 대규모 기아의 정도를 밝히지 않았다. 김정일은 1996년 한 연설에서 기아가 군대까지 확장되었다고 인정했으며, 이 사실에 대한 공개는 북한의 군사력이 취약한 것으로 보일 수 있다고 내비쳤다.<sup>1608</sup>

**1123** 북한이 결국 국제원조를 요구한 후에, 관료들은 합법적인 인도주의적 또는 안보 고려사항에 의해 정당화될 수 없는 심각한 어려움에 처한 주민들에게 접근을 제한함으로써 그것의 전달과 배부를 지연시켰다. 이러한 당국의 규제에 대응하여

1607\_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s Panel of Experts on Accountability in Sri Lanka (2011), paras. 212 and 251 참조. [http://www.un.org/News/dh/infocus/Sri\\_Lanka/POE\\_Report\\_Full.pdf](http://www.un.org/News/dh/infocus/Sri_Lanka/POE_Report_Full.pdf) 참조. Christa Rottensteiner, "The denial of humanitarian assistance as a crime under international law", International Review of the Red Cross, 1999 또한 참조. <http://www.icrc.org/eng/resources/documents/misc/57jq32.htm> 참조; Sigrun I. Skogly, "Crimes Against Humanity - Revisited: Is there a Role for Economic and Social Rights?,"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Human Rights*, vol. 5, No. 1 (2001), pp. 69~70.

1608\_ 세부사항은 IV장 D.3 참조.

몇몇의 인도주의적 기관들은 인명구조 활동을 중지하였다. 이런 실패의 결과로 국제 식량원조는 필요한 것보다 더 늦게, 그리고 더 적은 양으로 도착하였으며 사망자의 수를 증가시켰다.

**1124** 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북한 관료는 우선사항으로써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자원을 사용해야 한다는 사회권규약 제11조 및 기타 국제법의 조항이 규정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sup>1609</sup> 대신 데이터는 기아가 급속히 번지고 있던 1999년에 북한이 식량의 국제구매를 줄였다는 점을 말해주고 있다. 기근 시기에도 군대를 우선순위로 여겨 상당한 금액의 외화와 국가 예산을 전투기, 공격용 헬리콥터, 미사일과 핵무기 등의 새로운 군사장비에 유용하였다. 또한 북한은 1990년대부터 증가된 몇몇의 합법적 및 불법적인 활동을 통해 창출된 외화벌이를 필요한 식량구매에 충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대신 기아로부터 해방을 보장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었던 상당한 금액의 외화가 핵 확산 방지 조약에 위반하는 미사일 및 핵무기 기술의 개발, 최고지도자의 개인승배 및 생활방식과 그를 둘러싼 엘리트들의 유지에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대규모 기아가 만연한 상황을 고려해 볼 때, 김일성의 묘를 건설하기 위한 엄청난 지출은 불합리하였다. 일반 대중의 기아 완화는 북한의 정치체제의 생존을 보장하는 군사 및 지도부를 위한 지출보다 우선으로 여겨지지 않았다. 조사위원회는 책임있는 관료들이 이것이 기근의 사망자 수를 증가시킬 것을 인지한 가운데 관련 결정 및 정책들을 채택하였다고 본다.

**1125** 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는 책임있는 관료들이 정치적·사회적 출생에 따른 차별 없이 기아로부터 해방될 주민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사회권규약 제2조제2항 및 제11조 상의 국가 의무를 집행하지 않았다고 규명한다.<sup>1610</sup> 책임있는 관료들은 중

1609\_ IV장 D.6 참조.

1610\_ IV장 D.2와 IV장 D.5 참조.

양배급체계를 통해 과거 숙청 및 주민의 강제이주의 결과로써 낮은 성분의 주민들이 집중되어 있는 동북 지방에 대한 식량배급을 막았다. 비록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그곳에서 굶고 있어도 원조기관의 동북 지방에 대한 접근은 거부당했다. 조사위원회는 정치적으로 좀 더 중요한 평양 주민, 조선노동당의 간부단 및 안보기관 등 더 높은 계층에게 식량이 우선적으로 전달되었다는 정보를 받았다. 국제 식량원조는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아닌 엘리트의 이익으로 사용되었다. 병사들 중 굶주리고 있는 일반 사병들에게는 식량이 배분되지 않았고, 군 인사 및 자산은 이러한 목적을 위해 이용된 것으로 보인다. 당국은 이러한 자원 배분이 일반 주민들을 손상시킬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 정치체제와 지도력을 지탱하는 엘리트의 생존 및 지원과 비교, 검토하면 어떤 주민들은 소모용으로 간주되었다.

**1126** 북한 관료들은 주민들, 특히 크게 영향을 받는 중국과 러시아 국경선 근처 동북 지방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일을 대신해, 혹은 친족의 도움을 통해 식량을 구하러 중국 또는 러시아로 가는 선택권을 허용하지 않는 이동제한을 관철하였다.<sup>1611</sup> 국내 이동제한을 풀지 않은 점은 북한 내에서 식량을 찾기 위해 이동하는 주민들에게 영향을 끼쳤다. 이용 가능하고 분명한 대응기제의 거부는 자국을 떠날 권리(자유권규약 제12조제2항) 및 기아로부터 해방의 권리(사회권규약 제11조)를 위반한다. 중국으로부터 강제송환된 북한 주민들을 가혹하게 처벌한 것을 포함하여 전반적인 여행금지를 관철하기 위해 엄중한 조치들이 집행되었다. 국내적으로 또한 국경선을 넘는 이동을 제한하는 정책은 일하기 위해 혹은 친족의 도움을 받기 위해 중국으로 가는 것을 포기시켰기 때문에 무수한 사람들의 굶주림으로 이어졌다. 북한은 북한 주민이 한국으로 가서 그곳에서 가족의 도움을 받거나 일반적인 남북 연대를 통한 도움을 받는 선택을 고려해 본 적이 없다. 관료들은 여행금지의 관철이 이미 굶주리고 있는 주민들에게 끼친 처참한 영향에 대해 확실히 인식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

1611\_ IV장 C.2와 IV장 D.4.(d) 참조.



구하고 정치체제의 붕괴를 막기 위해 그들은 이를 시행하였다. 김정일은 1996년 연설에서 “만약 조선노동당이 사람들이 스스로 식량문제를 해결하도록 놓아두면… 그러면 당은 인기 기반을 잃게 될 것이고 폴란드와 체코슬로바키아처럼 붕괴를 경험할 것이다”라고 논하면서 더 큰 정치적 계산을 밝혔다.<sup>1612</sup>

**1127** 조선인민군 장교들은 병사들의 부족한 배급량을 보충하기 위해 굶주린 병사에게 일반 대중으로부터 식량을 약탈하도록 하였다.<sup>1613</sup> 중앙 차원에서 이 범죄들을 다루거나 그 근본 원인 즉, 병사들에게 식량을 제공하기 위한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당국은 병사들이 굶주린 주민들로부터 식량을 절취하는 것에 대해 용인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민간인 주민들 사이의 굶주림을 악화시키고, 그로 인한 사망을 증가시킨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 (b) 살해

**1128** 책임있는 관리들은 굶주림이 더 많은 죽음을 초래할 것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악화시켰기 때문에, 위에서 묘사한 북한 지도부의 다양한 결정 및 정책은 또한 국제형사법이 규정한 살해의 범죄를 수반한다.<sup>1614</sup>

**1129** 나아가 다수의 사람들은 식량을 훔치거나 굶주림을 피하기 위해 기타 경제 범죄를 범하여 공개처형되었다.<sup>1615</sup> 대규모 기아 상황을 고려했을 때, 생존을 위한 범죄는 사형의 적용을 제한하는 자유권규약 제6조의 ‘가장 중한’ 범죄에 속하지 않

1612\_ 발언의 전체 인용은 IV장 D.4.(a) 참조.

1613\_ 세부사항은 IV장 D.4.(c) 참조.

1614\_ 국제형사법상 살해의 정의는 V장 B.1.(d) 참조.

1615\_ IV장 E.5 참조.

는다. 게다가 이들 대부분의 처형은 재판없이 혹은 자유권규약 제6조와 제14조에 따라 사형집행에 적용되는 공정한 재판의 보장을 충족시키는 재판 없이 즉결로 집행됐다. 이 이유로 기근시기 집행되었던 생존형 경제범죄에 대한 대부분의 처형은 국제형사법이 규정하는 살해에 해당된다.<sup>1616</sup>

**1130** 또한 이러한 처형은 굶주린 주민들에 대한 전반적인 공격이라 할 수 있다. 미시적으로 처형은 주민들이 식량을 약탈해가는 차별정책들에 대해 피하거나 저항하려는 시도를 하지 못하게 하였다. 거시적으로 봤을 때, 잦은 공개처형을 통해 조성되는 공포 분위기는 확립된 질서의 완전한 와해를 야기시키지 않고 또한 굶주린 주민들이 정치체제에 반발하는 것을 포기시키면서 북한 당국이 일반 주민들의 대규모 사망을 발판삼아 정치체제와 그 지도력의 생존을 지지하는 정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요소이다.

### (c) 기타 비인도적인 행위

**1131** 조사위원회는 위에서 설명한 결정, 정책 및 행동은 굶어 죽지는 않았지만 엄청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겪은 수백만 명을 굶주림에 시달리게 했다고 본다. 많은 피해자들 특히, 임신부와 유년시절에 만성적인 영양실조로 성장저해를 겪은 자들은 지속적인 신체적 영향을 받고 있다. 또한 아이들의 지속적인 굶주림은 세대 간 피해로 이어진다.<sup>1617</sup> 조사위원회는 이것이 자연스럽게 굶주림과 그것과 관련된 가혹한 괴로움이 야기될 것을 인식한 상태에서, 다수의 사람들에게 지속적이고 심각한 굶주림을 야기하거나 악화시키는 것은 반인도범죄에 이르는 비인도적인 행위에 해

1616\_ 그것의 부과가 엄밀히 따져 해당되는 국내법에 합치하더라도, 국제법에 위반하는 사형 적용의 남용 또한 반인도범죄에 이를 수 있다. V장 D.4(b) 참조.

1617\_ V장 D.1(a)(i) 참조.

당될 수 있다고 본다.

## 2. 국가정책에 의한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공격

**1132** 조사위원회는 대규모 기아, 사망 및 그것에 기인한 기타 괴로움과 신체적 피해를 악화시킨 결정, 정책과 행동은 심지어 굶주림을 악화시키고 또한 일반 주민의 상당수를 희생시키는 비용을 지불하면서까지 정치체제 및 그 지도력을 유지시키기 위한 당국 정책에 기초한, 민간인 주민에 대한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공격의 요소가 되었다고 본다.

**1133** 이러한 결론을 내리는데 있어서 조사위원회는 반인도범죄를 야기하는 민간인 주민에 대한 공격은 반드시 군대를 사용할 필요는 없다는 점을 상기한다. 이러한 공격은 주민의 학대로 충분하다.<sup>1618</sup> 북한의 경우, 이 학대는 그것이 굶주림 및 이로 인한 사망을 증대시킬 것을 알면서도 장기간 및 중대한 시기에 걸쳐 집행됐었던 당국의 결정, 정책 및 행동의 형태를 취하였다. 이 결정과 정책은 처형과 기타 폭력적인 수단으로 집행되었다. 민간인이 굶주림 및 이와 관련한 강제조치의 주된 피해자였기 때문에 이 학대는 민간인 주민을 겨냥한 것이라 볼 수 있다.

**1134** 조사위원회는 북한의 일반 주민에 대한 공격이 많은 주민들에게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그것이 단지 광범위했던 것만은 아니었다고 본다. 굶주림 상황을 악화시킨 것으로 알려진 많은 당국의 정책들은 당국의 중앙 차원에서만 채택될 수 있었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그것은 또한 조직적이라 생각해 볼 수 있다. 새로운 군사 장

1618\_ *Prosecutor v. Kunarac et al*, IT-96-23& IT-96-23/1-A [ICTY 항소부], 2002년 6월 12일 판결, para. 86; *Prosecutor v. Blagojevic*, IT-02-60-T [ICTY 심리부], 2005년 1월 17일 판결, para. 543.

비 및 북한의 지도부에 대한 지출을 식량 구매보다 우선순위로 매기는 것, 동북 지방에 식량배급을 먼저 중단시키는 것, 혹은 인도주의적 접근을 국가의 일부 지방들에만 허용하는 것과 같은 결정들은 중앙 차원에서만 내려질 수 있다.

**1135** 당국의 근본적인 목표는 주민들을 굶기는 것이 아니었을 수도 있다. 그러나 반인도범죄는 그것에 기저가 되는 국가정책이 민간인 주민을 해치려는 목적에 의한 것이 아닐 경우에도 해당될 수 있다. 조사위원회는 국가정책을 정하는 상위 관료들이 국가정책과 그로 인한 피해 사이의 직접적 인과관계에 대해 인지한다면 반인도범죄가 성립된다고 본다.<sup>1619</sup> 궁극적으로 국가가 다른 목적으로 그렇게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국가 범죄’로서 반인도범죄의 본질은 국가의 숨은 정치적 목표를 추구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그것을 거리낌 없이 범행하는 것이다.<sup>1620</sup> 또한 최고위층

1619\_ 고립되거나 무계획적인 범죄가 발생되지 않도록, 국가나 기타 조직의 정책 요건은 반인도범죄를 “철저히 조직되고 규칙적인 패턴을 따르는” 범죄들로 제한시킨다. *Prosecutor v. Katanga et al*, ICC-01/04-01/07 [ICC 전심부], 2008년 9월 30일 공소사실확인에 관한 결정, para. 396 또한 참조. 이 이유로, 고위급 의사 결정자들에 의해 세워진 국가정책과 현장에서 입혀진 피해와의 관계에 대한 인지 및 공감은 민간인 주민에 대한 공격에 대한 충분한 근거를 제공하지 못 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예컨대 David Marcus, “Famine Crimes in International Law”, *The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97, No. 245 (2003), pp. 247 & 273; David Butler, “Enforced Starvation : Exploring Individual Criminal Responsibility for State-Induced Famines”, *Human Rights Law Commentary*, vol. 3, University of Nottingham, 2007, p. 17 에서 제기한 무모한 정책들까지 미치는 너무 넓은 해석에 대해서 조사위원회는 동의하지 않는다. 이것과 관련해서, Marcus, id., p. 272에서는 또한 “굶주림을 통한 주민을 전멸시키는 계획 혹은 정책이 무모하게 도달될 수 있다는 논거는 타당하지 않다”라고 인정한다.

조사위원회가 제기한 해석에 따르면, 다른 저자들은 민간인을 겨냥한 즉, 굶주림을 초래하는 목적의 정책들만이 반인도범죄에 이를 수 있다는 해석보다 더 제한적인 해석을 선호하는 듯 보인다. Evelyne Schmid, “Violations of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in International and Transnational Criminal Law”, p. 55 참조. 그러나 이 해석은 특히 로마규정 제30조 및 국제형사법상 인정된 범행 동기의 확립된 범주(*dolus directus of the first and second degree*; 1급 및 2급 직접 고의)를 효과적으로 좁히고 그것에 맞지 않는 범행 동기의 요소를 국가정책의 요구에 효과적으로 적용케 한다. 로마규정에도 제시되어 있듯이, 국제형사법은 공격이 국가정책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고 요구한다. 그것은 국가정책이 공격을 해야 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1620\_ 예컨대, 뉘른베르크 판결에서는 비유대인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강제적 노동을 하게 한 정책은 나치독일이 점령한 국가들의 민간인 주민에 대한 공격의 주요 부분으로 간주됐었다. *Judgment of the International Military Tribunal*, *The Trial of German Major War Criminals*, Proceedings of the International Military

이 인식하고 있다는 것은 하층관료 및 개인의 행동으로 국한된 것이 아닌 국가에 의해 개인 범죄자들이 비인도적 행위를 범한다는 점을 확인시켜준다.

**1136** 북한의 경우, 강한 중앙집권적인 국가 관료체제를 거쳐 전달된 보고서들을 근거로, 조사위원회는 중앙 차원에서의 의사결정자들이 대규모 기아와 사망자 수의 정도를 숙지하고 있었다는 정보를 받았다. 또한 김정일도 직접 전국 각지를 방문하였고, 그 기간 중 그는 상황에 대해 알았을 것이다. 게다가 중앙 차원에서 정책을 설정하는 의사결정자들은 그들이 설정한 정책들과 대규모 굶주림 및 그로 인한 사망의 인과관계에 대해 알고 있었다는 결론을 내리는데 정당한 근거들이 있다. 첫째, 전반적인 굶주림의 규모를 볼 때 이러한 인과관계는 명백하다. 북한 고위급 의사결정자들은 인도주의적 기구들의 공개성명과 사적소통을 통해 당국의 정책과 아사 간의 관계를 알게 되었을 것이다.

**1137** 대규모 기아 및 그로 인한 사망을 증대시켜 반인도범죄가 생기게 하는 많은 당국정책들은 계속 존재하고 있다. 특히 주민 내의 특정한 집단에 대한 차별이 지속되고, 어려움에 처한 주민들에게 제공되는 인도주의적 지원에 대한 신뢰할 만한 자료도 제출되고 있지 않으며, 불공평한 지출과 식량배급의 패턴 역시 계속되고 있다. 상당한 수준의 굶주림과 영양실조가 북한에서 지속되고 있긴 하지만, 전반적인 상황은 (적어도 공개되고 있는 자료에 비추어 보면) 개선되었다. 이것은 현재 운용되고 있지 않은 중앙배급체계를 대체하기 위해 주민들이 대응기제로써 형성한 비공식 시장에 크게 기인한 것이다. 상당한 외부 원조와 연이은 풍작은 기타요인이라 볼 수

---

Tribunal sitting at Nuremberg, Germany, Vol.1 (1946), pp. 460 ff. 이 결론을 내리는데, 뉘른베르크 판결은 강제적 노동 정책의 주요 설계자 중 한 사람인 Heinrich Himmler의 진술들을 고려하였다. 강제적 노동 정책은 그 목적이 독일전쟁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을 북돋우기 위한 것이었으나 이 목적을 추구함으로써 비인도적인 행위들이 범해지고 있다는 것에 대한 인식과 승인에 의한 것임을 나타냈다. *Judgment of the International Military Tribunal*, pp. 460과 463 참조.

있다. 그러나 추가 대규모 기아 및 그것과 관련된 반인도범죄의 위험은 계속 존재한다. 조사위원회는 관련 북한 관료들과 접촉이 가능한 양자 및 다자 기관, 공여국 및 기타 기관들은 북한의 의사결정자들에게 이들의 결정이 사람들과 보편적 인권을 향유할 수 있는 그들의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명백히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관련 북한 관료들은 그들의 결정이나 정책이 주민의 대규모 기아를 야기시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채택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반인도범죄에 대한 개인적 책임에 대해 경고 받아야 한다.

## G.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특히 국제납치를 통한 반인도범죄

1138 수집한 증언 및 정보에 근거하여,<sup>1621</sup> 조사위원회는 타국 국민들 즉, 국제 납치의 피해자들과 송환이 거절당한 다른 사람들에게 대해 비인도적인 행위가 범해졌고, 현재까지도 범해지고 있다고 본다.

### 1. 비인도적인 행위

1139 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국제 납치와 송환의 거부로 야기된 강제 실종은 1950년에서 1980년 중반 사이에 일어났다.<sup>1622</sup> 형법규정의 소금적용금지원칙에 따라(자유권규약 제15조 참조), 이러한 행위는 그것이 처음 발생한 그 당시의 반인도범죄 정의에 근거하여 평가되어야 한다.

1621\_ IV장 F 특히 참조.

1622\_ IV장 F.1 참조.

1140 1996년 국제법 위원회의 인류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범죄의 법전초안에서 강제실종을 반인도범죄에 해당하는 비인도적 행위로 처음 명시하였다.<sup>1623</sup> 다만 1998년 채택된 로마규정 제7조2항 자목이 국제형사법상 반인도범죄의 정의를 구체적으로 상술하였다. 그러나 현대적 정의상 강제실종에 해당하는 행위들이 비인도적 행위를 구성하고 따라서 반인도범죄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은 1940년대 말 뉘른베르크 재판 때부터 인정되어 왔다.<sup>1624</sup>

1141 그것들이 강제실종을 수반하는 한, 북한과 그 지도부가 1950년부터 수행한 납치와 송환거부의 사례들은 따라서 반인도범죄를 야기할 수 있다. 이것은 국제형사협회의 소급적용을 구성하지 않을 것이다.

1623\_ 제18조 (i) 참조. 법전초안은 The Yearbook of the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1996, vol. II (Part Two), A/CN.4/Ser.A/1886/Add.1에 포함되어 있다.

1624\_ 뉘른베르크에서는 점령지에서 정적인 당원들의 가족 구성원들에게 그들의 생사에 대해 의도적으로 알리지 않고 그들을 체포하여 독일로 추방하는 관행은 전쟁범죄와 반인도범죄에 이른다고 보여졌다. 이 관행은 아돌프 히틀러가 발명한 악명 높은 “Nacht und Nebel Erlass” [밤과 안개 명령]에 근거되어 있었다. 또한 피고인 Keitel이 반인도범죄에도 이르는 전쟁범죄들을 범한 것을 고려하면서, 국제군사재판소는 밤과 안개 명령이 야기한 가족들에 대한 염려를 특별히 강조하였다. *Judgment of the International Military Tribunal at Nuremberg*, p. 453 read in conjunction with p. 468 참조. *United States of America v. Alstötter et al.* [“The Justice Case”] 3 Law Reports on the Trial of War Criminals 1 (1948), at 1031 ff 또한 참조. 강제실종이 “새로운” 반인도범죄가 아니라 뉘른베르크부터 반인도범죄를 구성하였다는 결론에 대한 지지는 Darryl Robinson, “Defining Crimes against Humanity at the Rome Conference”, *The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93, No. 1 (January 1999), p. 58 [n.76]; Robert Cryer and others, *An Introduction to International Criminal Law and Procedure*, pp. 262~263 또한 참조. 강제실종을 처음 다룰 때, 총회는 조직적인 강제실종의 관행은 반인도범죄의 성질인 것이라고 또한 명확하게 하였다. 유엔 총회, 강제실종협약, A/RES/47/133, 서문 참조. ICTY는 비록 그것들이 그 규정에 명시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더라도 강제실종을 반인도범죄를 일으키는 비인도적인 행위로 또한 인정하였다. *Prosecutor v. Kupreskic*, IT-95-16-T [ICTY 심리부], 2000년 1월 14일 판결, para. 566; *Prosecutor v. Kvocka et al.*, IT-98-30/1-T [ICTY 심리부], 2001년 11월 2일 판결, para. 208 참조. 조사위원회는 비록 몇몇의 저자들이 위에서 언급된 뉘른베르크의 선례들을 분명히 고려하지 않고 있기는 하지만 그들은 로마규정이 기존의 국제관습법을 성문화하지 않았다고 여기는 것에 주목한다. 예컨대 *Antonio Cassese and Paola Gaeta, Cassese’s International Criminal Law*, p. 98 참조.

**1142** 어떤 면에서 국제인권법상의 정의보다 더 엄격한 국제형사법상 강제실종의 정의는 세 가지 요소를 수반한다.

- 국가 또는 정치조직에 의하여 또는 이들의 허가·지원 또는 묵인을 받아 사람들을 체포·구금 또는 유괴할 것
- 그 후 그러한 자유의 박탈을 인정하기를 거절하거나 또는 그들의 운명이나 해방에 대한 정보의 제공을 거절할 것
- 그들을 법의 보호로부터 장기간 배제시키려고 의도할 것<sup>1625</sup>

**1143** 조사위원회는 앞에서 말한 정의에 부합하는 다수의 비인도적인 행위가 북한 당국에 의해 범해졌다고 본다. 대략 8만 명의 민간인들이 6·25전쟁 중 북한군에 의해 납치되었다. 수만 명의 국군 포로들이 석방되고 송환되었어야 하나 그들은 계속 구금되어 있었다.<sup>1626</sup> 그들 중 상당수는 구금과 유사한 상황하에 탄광에서 일하도록 강요당하였다. 1959년부터 9만 3,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거짓 약속을 통해 일본에서 북한으로 이주하도록 유인되었다. 그들이 도착한 후 몇 년 뒤, 그들은 두고 온 가족들과의 어떤 접촉도 거부당하였다. 이들 중 상당수는 결국 북한에 있는 정치범수용소 또는 기타 구금시설에 처하게 되었으며,<sup>1627</sup> 북한을 떠날 권리가 분명히 약속된 수천 명의 일본인들도 있었다.

**1144** 6·25전쟁 종료 이후, 북한 해군은 바다에서 수백 명의 한국 국적 어부들을 체포했고 그 뒤에 그들의 귀환을 허용하지 않았다.<sup>1628</sup> 그들은 자신의 통제하에

1625\_ 로마규정 제7조제2항 자문 참조.

1626\_ 북한이 비준한 1949년 제네바 제3협약의 제118조, 첫 단락은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전쟁포로는 적극적인 적대행위가 종료한 후 지체 없이 석방하고 송환하여야 한다.” 1899년 및 1907년 헤이그 규칙의 시절의 국가 관행에 기반을 하며, 또한 이 의무는 국제 인도주의적 관습법의 일부를 구성한다. 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 Customary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vol. 1 (2005), p. 451 [Rule 128] 참조.

1627\_ 그들은 또한 구금기간 동안 V장 B 및 V장 C에 상세히 묘사된 반인도범죄를 당하였다.



두기 위해 폭력과 부당한 설득을 이용한 특수작전 및 북한 정보원의 계획된 비밀공작을 통해 100명을 훨씬 웃도는 일본, 한국 및 기타 국가들의 국민들을 납치하였다. 그 후 피해자들 중 상당수는 북한 정보원들이 통제하는 “초대소(guest house)”에 구금되었다. 북한은 유럽·중동아시아 및 아시아 기타 지역에서 여성들을 납치하여 이미 북한에 있는 외국인들에게 부인으로 삼도록 하였다. 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1950년에서 1980년대 말까지 북한에 납치된 잠재적 피해자들은 20만명을 넘을 수도 있다고 본다.

**1145** 80명의 국군포로들과 9명의 한국 국적 어부들이 탈북하는데 성공하여 귀국할 수 있었다. 한국의 영화감독 신상옥 씨와 배우 최은희 씨 및 2명의 레바논 납치 피해자들이 탈출에 성공하였다. 6·25전쟁 종료 이후 오로지 6명의 국군포로의 유해가 한국으로 이양되었다. 5명의 일본 납치 피해자들과 1명의 레바논 여성이 귀환하였다. 북한은 8명의 추가 일본인들에 대한 납치를 인정했으나 그들의 생사와 행방에 대한 적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그 외의 모든 경우에 북한은 자유의 박탈에 대한 인정을 완전히 거부하고 이런 이유로 실종된 사람들의 생사와 행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국가들, 국제기구들과 가족 구성원들의 수많은 정보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

**1146** 더 나아가 조사위원회는 책임이 있는 당국이 피해자들을 법의 보호로부터 장기간 배제시키려는 의도를 갖고 행동하였다고 본다. 자유에 대한 박탈을 부인하는

1628\_ 강제실종은 최초로 합법적인 체포에 의해서도 비롯될 수 있다. A/HRC/7/2; Julian Fernandez & Xavier Pacreau, Statut de Rome de la Cour Pénale Internationale: Commentaire article par article (2012), p. 451에 기재된 Working Group on Enforced and Involuntary Disappearances, General Comment on the Definition of Enforced Disappearance, para. 7 참조. 법적 분석을 위해, 관련 어부들이 공해 또는 한국 영해에서 불법적으로 체포됐는지 혹은 그들이 불법적으로 북한 영해를 진입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후자의 경우에, 국제해양법에 따라 체포가 실시된 당시 어떤 상황에서는 그들의 임시 구속이 허용될 수 있다.

것은 고국이 피해자들에 대해 국제법적 보호를 해줄 수 있는 기회 역시 박탈한다.<sup>1629</sup> 또한 그것은 유엔 인권 기구들이 국제법상의 권한에 따라 그들을 보호할 수 없도록 한다. 게다가 북한이 그들의 자유에 대한 박탈을 공식적으로 부인하였다는 사실은 북한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 결여를 고려할 때, 피해자들이 북한 사법제도의 보호를 구하는 것을 소용없게 만든다.

**1147** 납치와 송환 거부 및 이어서 일어나는 강제실종 사례들이 반인도범죄에 해당하는 고의적 비인도적 행위에 이른다는 발견사항에 도달하는데, 조사위원회는 또한 수십 년간 한국, 일본 및 기타 국가들에 있는 가족들이 겪었던 극심한 감정적인 고통을 고려한다. 간절한 친족들이 북한의 책임있는 관료들과 반복적으로 접촉했기 때문에 그들은 이 고통을 인지하였고, 현재도 인지하고 있다. 현재 및 과거 최고지도자는 국제 언론매체와 또한 조사위원회의 공청회를 통해서 전달된 피해자 친족들의 간절한 공개 호소를 인식하지 못할 수가 없었다.<sup>1630</sup>

**1148** 그들이 이유 없이 또는 정당한 법적 절차 없이 구금 혹은 기타 심각한 자유의 박탈을 겪게 만들었거나, 혹은 많은 경우에 아마 아직도 겪고 있기 때문에 조사위원회는 상당수의 피해자들이 반인도범죄의 대상이 되었다고 본다. 이런 자유의 박탈은 정보원들의 구금 장소, 정치범수용소, 일반 감옥 및 광산업 정착지에서 일어났다.

1629\_ 피해 국가들은 국제관습법상 그들의 국민에 대한 보호를 확대할 권리를 향유한다. Ahmadou Sadou Diallo (Guinea v Dem. Republic of the Congo) 582 I.C.J. (2007) [Preliminary Objections], at para. 39 참조. 북한이 1984년에 가입한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36조 또한 참조.

1630\_ 이와 관련해서, 2013년 8월 23일 오전 및 오후 서울 공청회와 2013년 8월 29일 오전 및 오후 도쿄 공청회에서 조사위원회 앞에 출두한 가족들의 증언들을 참조.

## 2. 국가정책에 의한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공격

1149 조사위원회는 타국 국민들의 강제실종은 당국 정책에 의한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공격이고, 정치적 이유에 의해 발생된다고 본다.<sup>1631</sup> 비록 강제실종이 수십 년의 기간에 걸쳐 수행되었지만 공통 요소들이 그것들을 통합시켜 단독의 대규모 공격으로 간주하게 한다.

1150 강제실종은 같은 정치적 목적을 공유하고 있다. 즉, 북한은 한반도를 둘러싼 한국과의 패권 싸움이라고 여기는 상황에서, 북한의 입지를 강화하고 북한으로 우세를 끌어오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된 노동과 기술을 얻으려고 하였다.

1151 또한 모든 국제적 납치는 최고위층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조짐들이 보인다. 당국이 납치와 체포를 위해 그의 육군, 해군, 특수작전 및 비밀정보군을 운용하였다는 점은 최고위층 차원에서 승인되었다는 점을 증명한다. 김일성은 다수의 수감자들

1631\_ 1990년까지 일부 판례는 반인도범죄가 추가적인 필요조건 즉, 국민적, 정치적, 민족적, 인종적, 혹은 종교적 사유에 근거한 공격(차별적인 근거 요건)이 있다고 간주했다. 이 명제에 대한 중요한 법적 권위(weighty legal authority)가 있다. 차별적인 근거 요건은 the International Law Commission's 1954 *Draft Code of Offences against the Peace and Security of Mankind*, the 1994 Statute of the ICTR 또한 the 1993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leading up to the establishment of the ICTY (see S/25704, para. 48) 에 언급되어 있다. ECCC가 1975년에서 1987년 사이에 범해진 범죄들을 고려한다는 사실에 비추어, 그것은 the Statute of the Extraordinary Chambers of the Court of Cambodia (ECCC) 제5조에 또한 언급되어 있다. *KAING Guek Eav alias Duch*, 001/18-07-2007-ECCC/SC (Extraordinary Chambers in the Courts of Cambodia, 항소부), 2012년 2월 3일 판결, paras. 105 and 106 또한 참조. 역으로, ICTY 규정에는 차별적인 근거 요건이 언급되어 있지 않다. ICTY 및 ICTR 1심부는 둘 다 그것이 국제관습법을 구성한 적이 없다고 간주했으나 대신, 그것은 뉘른베르크 헌장을 잘못 해석한 것에서 비롯됐다. *Prosecutor v. Tadic*, IT-94-1-A [ICTY 항소부], 1999년 7월 15일 판결, para. 297; *Prosecutor v. Akayesu* ICTR-96-4-A [ICTR 항소부], 2001년 6월 1일 판결, para. 464참조. The International Law Commission's *Draft Code of Crimes against the Peace and Security of Mankind*의 1996년 판에도 반인도범죄의 정의에 대한 차별적 근거는 역시 필요치 않다. 조사위원회는 정치적 사유 즉, 한반도를 둘러싼 패권 싸움에 북한을 발전시키는 것이 공격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이 법적 문제에 대해 조사위원회는 의견을 표명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을 송환하지 않고 그들의 실종을 외부세계에 비밀로 하려는 결정을 직접 인지하고 이를 지원했다. 6·25전쟁 후의 납치와 관련된 몇몇 관료들의 진술은 김일성 혹은 그의 후계자 김정일이 직접 납치 명령을 승인하였다는 것을 보여 준다. 김정일은 또한 그가 제작 책임자였던 여러 정치 선전 영화를 만들기 위해 이용되었던 영화감독 신상옥 씨와 배우 최은희 씨를 포함한 납치 피해자들과 개인적인 접촉을 가졌다. 한국과 일본에서 온 피해자들은 북한의 매우 민감한 간첩행위와 테러활동에 이용되었고, 이것은 더 나아가 그들의 납치와 실종에 대한 중앙당국의 지원을 보여준다.

**1152** 마지막으로 북한 당국은 수십 년에 걸쳐 북한이 외국인의 강제실종에 관여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가족들과 관련국에게 이를 부인하는 공통된 정책을 펼쳐왔다.<sup>1632</sup> 이 정책은 모든 세대의 실종 피해자들에게 예외없이 적용되었다. 2002년 고이즈미 일본 총리의 북한 방문 중 일본 시민들을 겨냥한 13건의 납치를 인정한 것이 유일한 예외로 남는다. 북한의 보안기관은 피해자가 탈북하여 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강력한 합동 감시와 통제수단들을 활용해왔다. 조사위원회에 보고된 적어도 두 경우에는 중국으로 도망친 피해자들이 그 후 다시 납치되었다.<sup>1633</sup> 이 통제 수단들의 엄중함은 60년에 걸쳐 오직 93명의 피해자들이 실제로 탈출에 성공한 사실에 의해서 증명된다.

**1153** 북한 당국은 국제기구들, 강제실종 관련 피해국가들과 가족들의 문의에 대해 아무런 정보도 제공하지 않거나, 불완전하고 부정확한 정보만을 제공하는 정책도 시행해왔다. 중국에서 북한 주민들과 그들이 도망치게 도와준 외국인에 대한 최근 납치가 증명하듯, 조사위원회는 당국이 국가정책의 도구로서 다른 나라로부터의 납치관행을 부인한 적이 없다는 것을 언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

1632\_ IV장 F.2.(a) 참조.

1633\_ IV장 F.1.(g).

### 3. 강제실종의 반인도범죄의 지속성

1154 외국인에 대한 강제실종은 먼 과거의 범죄가 아니다. 그것은 피해자들의 생사와 행방이 완전히 공개되어야 끝나는 지속적인 범죄이다.<sup>1634</sup> 따라서 자유의 박탈에 대한 인정을 부인하고 피해자들의 생사와 행방에 대한 정보공개를 지속적으로 거부하는 북한 관료들은 그들이 본래 체포, 납치 혹은 구금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어도 반인도범죄에 대한 책임에 처하게 될 수 있다.<sup>1635</sup> 조사위원회는 반세기 이상 전부터 시작된 그들 사건들, 특히 6·25전쟁 시대 사건들의 피해자 상당수는 자연적 혹은 다른 원인으로 사망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 그러나 법적인 관점에서 그것은 중요하지 않고 계속 진행 중인 범죄의 본질을 바꿀 수 없다. 유감스럽게도 강제실종의 경우 범죄가 완전히 공개되기 전에 피해자의 사망사실을 알게되는 것은 흔한 일이다. 만약 실종된 사람이 확실히 사망했으면, 당국은 최선을 다해 실종상황을 설명하고 또한 피해자들의 가족들이 감정적으로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1634\_ 강제실종의 지속적인 성질에 대해 Working Group on Enforced or Involuntary Disappearances, General Comment on Enforced Disappearance as a Continuous Crime (2010), paras. 6과 7 참조.

<http://www2.ohchr.org/english/issues/disappear/docs/GC-EDCC.pdf> 참조. 또한 Simón, Julio Héctor y otros s/ privación ilegítima de la libertad, etc. Causa N° 17.768C (Supreme Court of Argentina), 2005년 6월 13일 판결, paras.56-57 [concurring opinion of Judge Antonio Boggiano, para. 42] 참조.

<http://www.unhcr.org/refworld/pdfid/4721f74c2.pdf> 참조; Juan Contreras Sepulveda y otros (crimen), Corte Suprema 517/2004, Resolución 22267 (Supreme Court of Chile), 2004년 11월 17일 판결, paras. 37-39. <http://www.derechos.org/nizkor/chile/doc/krassnoff.html> 참조; José Carlos Trujillo Oroza, Case No. 1190/01-R (Constitutional Court of Bolivia), 2001년 11월 12일 판결.

[http://gestor.pradpi.org/download.php?id\\_doc=1013](http://gestor.pradpi.org/download.php?id_doc=1013) 참조; Caso de Jesús Piedra Ibarra, Recurso de apelación extraordinaria 01/2003 (Supreme Court of Mexico), 2003년 11월 5일 판결.

<http://www.scjn.gob.mx/2010/transparencia/Documents/Transparencia/Primera per cent20sala/Novena per cent20 per centC3 per centA9poca/2003/23.doc> 참조.

1635\_ 범죄요소, 국제형사재판소 로마규정 당사국총회, 제1차 회기, 2002년 9월 3~10일, 제7조제1항 자목, para. 1. (b). Christopher K. Hall, "Article 7: Crimes against Humanity", in Otto Triffterer and Kai Ambos, Commentary on the 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de (2008) 참조, 제7조, para. 134 또한 참조.

유해를 가족에게 송환해야만 계속 진행 중인 범죄를 끝낼 수 있다.<sup>1636</sup>

## H. 정치적 집단살해죄(political genocide)의 해당 여부

**1155** 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수십만 명의 수감자들이 50년을 넘는 기간 동안 정치범수용소와 기타 장소에서 절멸되어 왔었다.<sup>1637</sup> 3대에 걸친 적대계급과 종파분자를 제거할 의도에 따라, 그들이 했다라는 문제가 아닌 그들이 누구인지라는 문제로 자녀들을 포함한 가족들을 비롯하여 사람들의 집단 전체가 수용소에서 목숨을 잃었다. 이것은 과연 집단살해죄 또는 그것과 유사한 국제범죄에 해당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1156** 국제법은 집단살해죄를 국민적, 민족적, 인종적 또는 종교적 집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자체로서 파괴할 의도를 가지고 범하여진 행위로서 다음의 행위를 말한다:

- 가. 집단의 구성원의 살해
- 나. 집단 구성원에 대한 중대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위해의 야기
- 다. 전부 또는 부분적인 육체적 파괴를 초래할 목적으로 계산된 생활조건을 집단에게 고의적으로 부과

1636\_ Working Group on Enforced and Involuntary Disappearances, General Comment on the Right to the Truth (A/HRC/16/48), para. 6 참조. 작업반은 국제기준에 따라, 사람의 유해가 유전자분석을 포함하여 분명하고 명백하게 확인되어야 한다고 더 나아가 규정한다. 국가 당국은 모든 가족의 참여 없이 그리고 이런 조치들을 대중에게 완전히 알리지 않고서는 유해의 신원확인 절차에 착수하지 말아야 하고 또한 유해를 처분하지 말아야 한다. 그들은 가용자원을 최대한으로 국제적 지원과 협력을 포함한 법의학적인 전문 지식 및 과학적인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1637\_ IV장 E.3.(f)와 V장 B.1 참조.

라. 집단내의 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도된 조치의 부과

마. 집단내의 아동을 타집단으로 강제이주<sup>1638</sup>

**1157** 북한 정치범수용소의 경우, 절멸은 주로 정치적 견해와 당국이 지정한 사회계급에 의해 이루어졌다. 이런 사유들은 국제법상 현대적 의미의 집단살해죄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sup>1639</sup> 그러나 그들에게 육체적 파괴를 초래할 목적으로 계산된 생활조건을 고의적으로 부과하여 주민 계급 전체를 제거한다는 개념은 ‘집단살해죄’와 유사한 개념을 떠오르게 한다. 당국은 또한 일반적으로 수감자들의 생식을 금지시키고 강제낙태와 영아살해를 통해 이것을 조직적으로 집행하여 집단 내의 출생을 방지하고 끊기게 하였다.<sup>1640</sup>

**1158** 이런 범죄들은 “정치적 집단살해죄”(Politicide)라고 묘사할 수 있다. 그러나 비기술적인 의미에서, 몇몇의 옵서버들은 유추에 의해 왜 위에서 상세히 열거된 행위가 집단살해죄가 아닌지 의문을 가질 것이다. 조사위원회는 집단살해죄의 현대적 이해를 가능한한 확대하는 데에 동의한다. 그러나 조사위원회는 여러 사례의 반인도범죄를 발견한 것에 비추어, 여기서 이 이론적 가능성을 탐구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반인도범죄는 매우 심각한 범죄이기 때문에 그것이 관련 국가의 책임을 야기시킬 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범죄가 범해지지 않고 범죄자들에게 책임을 묻게 하기 위한 국제공동체 전체의 단호한 대응을 요구한다고 조사위원회는 강조한다.

**1159** 조사위원회에 제공한 진술에서, 세계기독교연대는 특히 1950년대와 1960년대에 종교집단, 주로 기독교인들에 대한 집단살해죄의 지표들이 있었다고 제출하

1638\_ 집단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 제2조; 로마규정 제6조 참조.

1639\_ 로마규정의 초안을 작성할 때, 쿠바 대표가 정치적 및 사회적 집단까지 정의를 확대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이 제안은 다른 대표단들의 아무런 지지를 받지 못하였다. William Schabas, *Unspeakable Atrocities*, p. 106 참조.

1640\_ IV장 E.3.(d) 참조.

였다.<sup>1641</sup> 북한의 자체 수치들을 근거하여, 조사위원회는 북한 주민들 중 종교신자, 주로 기독교인, 천도교 신자 및 불교 신자들의 비율은 1950년에 24%에서 2002년 0.016%로 떨어졌다고 밝혔다.<sup>1642</sup> 조사위원회는 1950년대와 1960년대에 종교인들을 겨냥한 숙청에 대한 정보 또한 받았다. 하지만 조사위원회는 과연 당시 당국이 조직화된 종교를 극도로 폭력적인 수단을 통해 억압하려 했는지, 아니면 집단으로서 특정 종교의 교도들을 물리적으로 절멸시키려는 의도에 의한 것이었는지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수집하여 결정을 내릴 상황이 아니었다. 이것은 철두철미한 조사를 요구하는 주제인데, 적절한 북한의 기록보존에의 접근 없이는 수행하기가 힘들거나 불가능하다.

## I. 조사위원회의 주요 조사결과

**1160** 조사위원회는 북한의 최고위층에서 수립된 정책에 따라 반인도범죄가 범해졌다고 본다. 근본을 이루는 정책, 기관 및 불처벌 양상이 지속되고 있어 이 범죄들은 계속되고 있다.

**1161** 정치범수용소(‘관리소’) 및 기타 구금시설에 구금된 사람들, 탈북을 시도한 사람들, 체제전복적인 영향을 끼치는 기독교 신자들과 기타 사람들은 반인도범죄의 대상이 된다. 이것은 북한의 정치체제와 지도력에 위협이 되는 것으로 간주되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당국의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공격의 일부로 발생한다. 앞에서 언급한 공격은 ‘성분’에 근거한 차별적인 분류 체제를 포함하여 일반 주민들이 겪는 정치적 성격을 지닌 인권 침해의 더 큰 양상에 내포되어 있다.

1641\_ 세계기독교연대를 대표하여 Stuart Windsor 목사의 진술, 런던 공청회, 2013년 10월 23일, 5세션. Christian Solidarity Worldwide, “North Korea: A Case To Answer, A Call To Act”, p. 63 또한 참조.

1642\_ IV장 A.4 참조.



**1162** 게다가 굶주리는 주민들에 대해 반인도범죄가 자행되어 왔다. 이 범죄들은 보편적인 식량권을 위반하는 결정과 정책으로부터 야기된다. 굶주림을 악화시키고 아사에 영향을 미칠 것을 인지하면서도, 그러한 정책들은 현 정치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북한의 인도주의적 상황에 대한 믿을 만한 정보의 고의적 미제공, 어려움에 처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자유롭고 방해받지 않는 국제적 인도지원에 대한 거부, 불공평한 지출 및 식량배급을 포함한 반인도범죄를 일으켰던 많은 정책들은 계속 존재하고 있다.

**1163** 마지막으로 북한의 노동력 및 기타 기술 보급을 위해 조직적으로 납치되었거나 본국으로 송환되지 않은 한국, 일본과 기타 국가 출신 국민에게 반인도범죄가 범해졌고, 아직도 범해지고 있다. 이 사람들은 계속 진행 중인 강제실종 범죄의 피해자들이다. 그들의 자유 박탈을 인정하지 않거나 혹은 그들의 생사와 행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관료들은 비록 그들이 본래 납치 또는 송환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형사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1164** 북한에서 국제범죄는 국가구조의 본질적인 부분과 연관되어 보인다. 그 체제는 무자비하고 만연하여 현대 국제정세에 이에 부합하는 것이 별로 없다. 이렇게 엄청난 범죄가 지금까지 오랜 기간 동안 계속되었다는 사실은 보편적인 인권에 대한 모욕이다. 이 범죄들은 당장 멈추어야 한다. 이것이 지체없이 이행되도록 보장하는 것이 북한의 의무이고, 북한이 이를 실패했을 경우 국제공동체의 책임이 된다.

**1165** 다음 부분에서 조사위원회는 반인도범죄에 대해 누가 책임이 있고, 어떻게 그들에게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지에 관한 질문을 검토한다.



Chapter VI

책임성의 보장: 특히  
반인도범죄와 관련하여

## VI. 책임성의 보장: 특히 반인도범죄와 관련하여

1166 인권이사회는 조사위원회에게 특히 반인도범죄에 대한 완전한 책임규명 보장을 목적으로 조사를 수행할 것을 요구하였다. 직접적인 기관 책임관련 이슈 뿐만 아니라, 조사위원회는 북한 주민을 반인도범죄로부터 보호할 국제사회의 용인된 의무에 비추어 국제공동체의 책임에 대해서도 고려하였다.

### A. 기관 책임

1167 조사위원회는 북한의 안보 및 사법 기관들뿐만 아니라 당의 지도부 기관들, 국방위원회와 최고지도자의 실효적인 지배와 지도하에 있는 지방 및 중앙 조선노동당 기관들이 반인도범죄에 이르는 인권 침해들을 포함하여 인권 침해에 연루되었고 계속 연루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1168 주요 안보기관들인 국가안전보위부, 인민보안부 및 조선인민군은 즉결처형 및 기타 사법절차에 의하지 않은 살해, 강제실종, 고문, 지속적인 강제구금, 성폭행 및 이에 상응하는 성폭력을 포함하여 중대한 인권 침해 및 그것과 관련된 반인도범죄를 자행하는데 있어 가장 두각을 나타내는 기관들이다. 또한 조선노동당의 지방과 중앙 기관들, 검찰소와 사법부는 인권침해를 수행하는 데에 크게 관여한다.

#### 1. 국가안전보위부

1169 국가안전보위부는 사실상 반인도범죄에 해당하는 모든 조직적이고 광범위

한 중대한 인권 침해에 연루되어 있다. 1972년에 설립되어, 모든 기관들과 모든 사회의 부분에 배치된 거대한 정보원의 네트워크를 포함한 수만 명의 지도원들을 보유하고 있다.<sup>1643</sup> 국가안전보위부는 중복된 임무를 가진 다양한 부서들로 이루어져 있다. 비록 전임관료와 분석가들로부터 획득한 정보들은 그것이 최고지도자로서의 직접보고선을 유지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지만, 국가안전보위부는 공식적으로 국방위원회 산하에 놓여있다.<sup>1644</sup>

1170 북한의 형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듯이, 국가안전보위부는 “반국가·반민족 범죄”라고 공식적으로 불리는 가장 심각한 정치 범죄를 다룰 수 있는 권한을 갖도록 지정된 선두 기관이다.<sup>1645</sup> 또한 그들은 정치적 이견, 해외로부터의 “체제전복적” 정보의 유입, 기독교의 독립적인 신앙생활 혹은 기타 정치체제와 그 지도력에 특히 심각한 위협으로 간주되는 어떤 행위에 대한 확인과 억압에 앞장선다. 국가안전보위부는 직접적인 박해를 피하거나 혹은 그 자체로 인권 침해에 원인이 있는 굶주림으로부터 그들 스스로와 그들의 가족을 구하기 위해 탈북하려는 사람들에게 대해 자행되는 중대한 인권 침해와 반인도범죄에 깊이 연루되어 있다. 고문, 고의적 굶주림, 성폭력과 비인도적인 대우는 심문 구금시설, 특히 중국에서 강제송환된 사람들을 처음 구금하는 심문 시설에서 조직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국가안전보위부는 정치범수용소를 관리하고 상관의 명령에 따라 누구를 정치범수용소에 수감시킬지 결정을 내

1643\_ 전직 국가안전보위부 요원 TBG031는 국가안전보위부 요원들의 수를 10만 명으로 평가하였으나 그 중 오직 6,000명~8,000명이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다른 목격자들은 국가안전보위부가 3만 명 또는 5만 명 이상의 요원들을 보유하고 있음을 명시하였다; Robert L. Worden ed., *North Korea: A Country Study*, p. 277; Ken E. Gause, “Coercion, Control, Surveillance and Punishment”, p. 17; 전직 국가안전보위부 관료들의 진술에 근거하여 한 분석가는 국가안전보위부가 25만 명~30만 명의 유급 정보원들을 보유할 수도 있다고 예상하였다. Andrei Lankov, *The Real North Korea*, p. 49 참조. 전직 국가안전보위부 관료 TLC041는 그가 2,600명의 주민들을 파악하기 위해 35명의 정보원들을 보유하고 있다고 명시하였다. 전체 인구에 추정하면, 이것은 북한 주민 100명당 1명 이상이 국가안전보위부 정보원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1644\_ TAP024, TJH015, TLC041, ECC002.

1645\_ 북한 형사소송법 제124조 참조.

린다. 국가안전보위부의 부서들은 통신에 대한 포괄적인 감시와 해외로부터 텔레비전과 라디오 방송의 수신 혹은 외국 휴대전화 사용의 금지를 집행하는 데에도 책임이 있다. 적어도 1990년대부터 국가안전보위부 요원들은 중국에서 납치에 관여하였고 북한 주민들, 한국과 중국의 국민들, 그리고 과거 최소 한 차례 일본 시민을 납치하기도 하였다.

## 2. 인민보안부

1171 인민보안부는 국내치안, 사회통제와 기본적인 경찰 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인민보안부는 폭동 진압에 대한 역할도 맡고 있다. 인민보안부는 모든 작은 마을/시의 지역에서는 보안서를 운영하고 있고, 시, 군, 도 및 국가적 차원에서는 더 큰 심문 구금시설들을 운영하고 있다. 인민보안부는 20만 명 이상의 상임 직원들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sup>1646</sup> 인민보안부 감찰과는 조사위원회가 반인도범죄를 수반하는 중대한 인권 침해가 범해지고 있는 곳으로 보는 일반 감옥과 단기 노동 구금시설을 관리한다. 2006년까지 인민보안부는 또한 몇몇의 정치범수용소를 관리하였다.

1172 인민보안부는 단지 식량 혹은 일을 구하기 위해 중국으로 불법적으로 탈북한 자들을 추가 심문하고 그 후 그들을 처벌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인민보안부 지도원들이 내린 행정적 결정에 근거하여 이런 사람들은 인민보안부가 관리하는 노동단련대에서 처벌 받으며, 강제 굶주림과 기타 비인도적 대우를 겪게 된다. 인민보안부는 개인 및 가족 정보를 비밀리에 기록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성분(당국이 배정한 사회 계급)에 뿌리 박혀 있는 차별의 근거를 제공하는 공민등록대장을 유지한다. 또한 인민보안부 요원들은 북한 내에서 이동과 거주를 제한하고 추방 명령을 시행한다.

1646\_ Ken E. Gause, "Coercion, Control, Surveillance and Punishment", p. 27.

### 3. 검찰소 및 재판소 체계

1173 검찰소 및 재판소 체계는 인권 침해를 합법화하는 데에 중요한 기능을 갖는다. 조사위원회는 근본적으로 불공평한 재판을 수반하는 법적 절차에서 정치적 범법행위에 대해 사람들을 기소하고 처벌하기 위해 그들이 사용된다고 본다. 국가안전보위부의 일부를 구성하는 군사특별재판소는 가장 이목을 끄는 정치범 사건들을 담당하고 불공평한 재판 후에 사형을 선고해 왔다.

1174 미결수와 기결수에 보장된 북한법상의 제한적인 보호와 권리를 효과적으로 감독하고 집행하는 북한법상 의무를 조직적으로 이행하지 않기 때문에 검찰소는 일반 감옥과 심문 구금시설에서의 위반에 대해 기관 책임을 또한 떠맡는다.

### 4. 조선인민군

1175 조선인민군은 중대한 인권 침해 및 그것과 관련된 반인도범죄에 연루되어 있다. 이것은 군대 내에서 정치경찰의 역할을 하는 보위사령부에 특히 해당된다. 보위사령부는 조선인민군 요원과 직접 연관되지 않은 정치적 범법행위를 처리하는 데에도 관여한다. 비록 2012년에 국경통제의 지휘는 조선인민군에서 국가안전보위부로 이전되었지만 조선인민군 국경경비사령부는 사람들이 북한을 떠날 수 있는 그들의 기본적인 인권을 난폭하게 인정하지 않은 가장 큰 행위자이다. 조선인민군 부대들은 고위층들의 이익을 위해 인도주의적 원조를 다른 곳으로 돌리고 장교들이 일반 주민들로부터의 식량약탈을 용인함으로써 식량권 및 관련 반인도범죄에 관여하고 있었다.

1176 조선인민군은 6·25전쟁 중에 시민들을 납치했고 또한 6·25전쟁의 종결 이후 국군포로에 대한 송환을 거부하여 그들을 “건설 여단”에서 강제노동의 목적으로 이용하였다. 조선인민군의 해군과 특수작전 부대들은 6·25전쟁 후 한국과 일본에서 온 국민들의 강제실종에 관여하였다.

## 5. 조선노동당

1177 지방과 중앙 차원에서 조선노동당의 부서들과 단위들은 인권 침해, 특히 표현과 집회의 자유, 그리고 식량권에 직접 연관되어 있다. 선전선동부가 이행하는 광범위한 사상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당은 주민들의 사상의 자유와 정보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는다. 당은 또한 생활총화, 어린이들과 학생들을 겨냥한 사상학습, 또한 모든 주민들이 참여해야 하는 사상교육 및 자아비판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다. 이웃 감시제도(‘인민반’)는 조선노동당의 통제하에 있는 지방 인민위원회가 관리한다.

1178 당이 운영하는 도 및 지방 인민위원회는 조선노동당의 주요 기관들 및 기타 관련 부처들이 설정한 지시와 정책에 의해 중앙배급체계상의 차별적인 식량배급을 시행해 왔다. 조선노동당 중앙 차원의 정보부는 일본, 한국과 기타 국가의 국민들이 강제적으로 실종되었던 비밀 납치 작전에 관여되어 있었다.

## 6. 중앙기관의 인권 침해 및 반인도범죄

1179 모든 단계에서 조선노동당 전체의 안보 및 사법 기구들과 기관들이 인권 침해와 반인도범죄에 관여하였다는 사실을 통해 이 기관들이 독자적으로 행동한 것이 아닌 중앙 정부의 최고위층에서 비롯된 결정과 상관의 명령에 의해 행해졌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수집한 전체 증언 및 정보에 근거하여 조사위원회가 관찰한 인권 침해를 범하는 다양한 당국 기관들 사이에 고도의 조직화를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결과이다.

**1180** 조사위원회는 또한 당국의 내부 운용방식 및 관련 명령 계통에 있어, 특히 당국이 관여한 가장 치명적인 인권 침해 부분에 대해 고의적으로 및 조직적으로 애매하게 만들어졌다고 본다. 인권 침해를 저지르라는 명령은 주로 구두로만 전해진다. 문서화된 경우, 관련 서류는 단지 일부 선택된 관료들만 이용가능하며, 외부인들에게 누설하지 못 하도록 특별한 보호조치에 의해 보호되고 있다.<sup>1647</sup> 이런 일상화된 예방책 역시 중앙 차원에서 인권 침해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승인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1181** 북한방문과 그 관료들과의 접촉이 거부되어 왔기 때문에 조사위원회는 중앙 차원에서 결정이 어떻게 내려지는지, 어떤 명령 계통을 통해 집행 보안원에게 전달되는지 재구성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 어느 누구도 최고지도자에게 위협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관간 경쟁을 촉진시키며 중앙 의사결정 구조의 지시는 일반적으로 분산되고 중복된다. 더욱이 북한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개인들은 조선노동당, 군사 및 안보 기구들과 기타 공식 국가조직의 주요 기관에서 다수의 지위를 맡고 있다. 따라서 특정 결정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어떤 기관이(개인들과는 대조적으로) 지배하는지 확신을 갖는 것이 어려워진다. 영향력 있는 개인의 숙청과 다른 사람이 지배력 있는 위치에 오르는 것은 공식화 되지 않거나 알려지지 않은 기관 내부에 엄청난 수법상의 변화가 초래된다.

1647\_ 민감한 문서로 간주된 것은 특별 문서 보관 부서들이 그것을 다루었다. 또한 관료들은 번호가 매겨지고 돌려주어야 하는 사본들에만 접근할 수 있었다고 전직 북한 관료들이 조사위원회에게 말하였다. 다른 관료들은 인권 위반과 기타 민감한 행동을 밝히는 문서 정보들이 조직적으로 파기되었다고 명시하였다.

**1182**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위원회는 기본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안정적 결론에 도달할 수 있었다. 이 결론을 내리는데 북한의 헌법, 조선노동당 규약뿐만 아니라 전직 관료들과 북한의 정치체제에 대해 전문가들이 제공한 정보까지 분석하였다.

**1183** 조사위원회는 북한의 의사결정 과정이, 특히 중대한 인권 침해와 반인도범죄가 행해지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매우 중앙집권적이라고 본다. 그것은 최고지도자와 조선노동당과 국방위원회의 주요 기관들을 지휘하는 작은 집단의 사람들에 의해 지배된다. 이들 개인의 상당수는 군의 높은 계급을 맡고, 군사 및 안보 기구들의 주요 자리를 차지한다. 그들 중 몇몇은 최고지도자의 친척들이다. 조선노동당과 국방위원회의 지도부 기관들의 상대적 권력을 비교해볼 때 단정짓기는 어렵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왔다갔다 이동한 것으로 보인다.<sup>1648</sup> 그러나 당과 국방위원회 둘 모두를 이끌어가는 최고지도자의 지배적 역할은 북한의 정치체제에 항상 정착되어 왔다.

**1184** 명목상 당국의 최고기관인 최고인민회의는 앞에서 언급한 기관들이 이미 내린 결정들을 합법화하는 수단으로써 역할을 한다.<sup>1649</sup> 내각 총리는 경제 및 사회정책을 형성하는 데 있어 권한이 제한적이나, 국방위원회가 안보관련기능을 대체한다.

1648\_ 이것의 근본에는 당 또는 군대 둘 중 하나에 그들의 세력 기반을 주로 둔 개인들 간에 권력의 이동이 있다. 목격자들은 김일성하에서는 주로 당이 우세했지만 김정일하에서는 그들의 세력 기반을 군대에 둔 개인들을 향한 권력 이동이 있었다고 일반적으로 주목한다. 김정은의 통치 초기에는 추가 어느 정도 당으로 다시 이동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장성택의 숙청에 대한 전반적인 영향은 계속 이해되어야 하고 군사 인물들로 다시 권력이 이동한 것을 나타낼 수도 있다.

1649\_ 최고인민회의는 조선노동당의 고위급 간부단들의 작은 상임위원회로 인해 통제되고 있다. 북한 헌법 제92조에 따르면, 상임위원회는 1년에 1~2회 최고인민회의를 소집한다. 현 상임위원회 위원장인 김영남은 조선노동당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 중 한 명이다. 상임위원회는 자체 법령을 채택할 권한이 있다. 사형을 선고할 수 있는 몇 개의 새로운 범죄(IV장 참조)를 소개한 “형법부칙(일반범죄)” 2007년 강령은 이런 식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채택되었다.

## 7. 조선노동당의 지도적 기관들

1185 북한 헌법 제11조는 조선노동당의 우월한 위상을 확립하고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로동당의 영도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한다.” 이러한 지배권을 실제로 이행하는데 있어 당은 정책의 집행을 보장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통치와 사회의 모든 분야와 단계에 침투했다. 군사 및 안보 기구, 사법제도 행정과 국영 기업의 의사결정자들은 일반적으로 당 간부단에서 선택된다. 주민 전체는 의무적으로 대중조직에 가입해야 하고 이를 통해 사상 주입 및 정치 선전 활동을 경험한다. 또한 당대표자들은 공식적으로 국가 기관, 특히 안보와 사법 기구의 전략적 관리감독 자리에 배치된다. 당은 또한 도 및 지방 차원의 인민회의를 통제하고 이를 정책과 지시의 시행을 위해 사용한다.

1186 당은 사회의 주민과도 연계되어 있지만, 최고지도자에 의해 중심적으로 통제된다. 이는 당의 유일한 지도력의 보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조선노동당 규약의 표현으로 나타난다. 규약은 모든 당원들에게 최고지도자(수령) 및 그 유일한 지도적 체제를 단호히 옹호할 것을 강요한다.<sup>1650</sup> 김정은의 2014년 신년사에서 그는 당의 하나로 단결된 지도력을 유지해야 할 당위성을 강조하였다.<sup>1651</sup>

1187 조선노동당의 의사결정권은 최고지도자의 신뢰를 받는 비서국, 중앙위원회의 정치국 상무위원회 및 중앙위원회의 특정 부서들에 의해 좌우된다.<sup>1652</sup> 김일성과

1650\_ 2010년 개정된 조선노동당 규약 전문 제4조제1항, 단 하나의 지도체제에 대한 추가 문헌은 제2조, 제5조, 제28조, 제33조, 제40조, 제45조, 제48조 및 제53조 참조.

1651\_ “Supreme Leader Kim Jong-un’s New Year Address.” KCNA, 2014년 1월 1일, <http://www.kcna.kp/kcna.user.article.retrieveNewsViewInfoList.kcmsf#this> 참조.

1652\_ 김일성의 통치 중 그의 아들이자 후계자인 김정일이 이끌었던 중앙위원회의 조직지도부가 특히 영향력이 있었다. 김정일의 통치 말기와 김정은의 통치 첫 2년 동안 김정은의 고모부인 장성택이 당시에 이끌었던 행정부가 특히 영향력이 있었다고 전해진다.

김정일 둘 다 총비서의 직함을 보유하고, 또한 정치국 상무위원이다. 고인이 된 김정일에게 “당의 영원한 총비서”의 직함을 계속 보유하도록 했기 때문에 김정은은 총비서와 기능상 동등한 노동당 제1비서라는 공식적인 직함을 맡았다. 그는 중앙위원회의 정치국 상무위원이다. 더욱이 김정은은 이를 통해 당이 조선인민군을 감독하는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을 또한 맡고 있다.<sup>1653</sup>

**1188** 명목상 당의 최고(지도)기관은 당대회이다.<sup>1654</sup> 당대회는 당중앙위원회의 위원들을 선출하기로 되어 있고 당중앙위원회는 차례로 정치국을 선출한다. 그러나 실제로, 이 기관들은 최고지도자의 권한과 그의 더 큰 정책을 합법화하는 데에만 기여한다. 이것은 당대회가 오직 6번 소집되었고, 그 마지막이 1980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사실에 의해 또한 증명된다. 당중앙위원회의 전원회의는 김정일이 권력을 잡았을 때인 1993년에서 2010년까지 소집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에게 권력이동을 합법화하기 위해서 당의 구조에 어느 정도 새로운 힘을 불어넣은 것처럼 보인다. 특히 당중앙위원회의 정치국은 국가와 당의 핵심 자리들을 김정은에게 이양하는 것을 확인한 2010년과 2012년에 제3차 및 제4차 당대표자회의를 준비하였다. 김정은이 최고지도자가 된 후 가장 중요하게 발표된 권력의 이동으로써, 장성택과 그의 지지세력에 대한 숙청결정은 조선노동당 정치국의 확대회의에서 공식적인 결정으로 제시되었다.<sup>1655</sup>

1653\_ 조선노동당 규약 제22조 참조.

1654\_ 조선노동당 규약 제21조 참조.

1655\_ “Report on Enlarged Meeting of Political Bureau of Central Committee of WPK”, KCNA, 2013년 12월 9일 참조. <http://www.kcna.co.jp/item/2013/201312/news09/20131209-05ee.html>참조.

## 8. 국방위원회

1189 국방위원회는 1972년에 설립되었다. 국방위원회는 김정일이 김일성의 분명한 후계자로 등장하고 권력에 오르자마자 점점 더 두드러진 역할을 얻었다. 김정일은 선군정책의 일부로써, 의사결정권을 주로 군사 및 안보 기구에 세력기반을 둔 관료들에게 이동시키면서 서서히 국방위원회를 강화시켰다. 이는 현행 북한 헌법에 반영되어 있다. 그 헌법은 국방위원회를 국가주권의 최고국방지도기관으로 인정한다.<sup>1656</sup> 조사위원회는 김정일이 처음 맡고, 2012년부터는 김정은이 맡은 국방위원회의 위원장이 북한의 최고지도자로 간주됨을 확인한다.<sup>1657</sup>

1190 국방위원회의 기능은 외부 위협뿐만 아니라 내부 국가 안전으로부터 당국을 방어하는 사안들까지에도 미친다. 따라서 국가안전보위부, 조선인민군 그리고 인민보안부는 모두 국방위원회에 둔다. 국방위원회는 총리를 의장으로 둔 실제 내각보다 상위에 있다. 이 헌법은 국방위원회의 결정 및 지시에 어긋나는 국가기관의 결정 및 지시를 폐지할 권한을 국방위원회에 부여한다.<sup>1658</sup>

## 9. 최고지도자

1191 당과 국방위원회에서 지배적인 역할을 통한 권력행사 외에도, 최고지도자는 또한 자율적 의사결정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조사위원회에 진술서를 제공한

1656\_ 북한 헌법 제106조.

1657\_ 북한 헌법 제100조. 2012년 4월, 최고인민위원회에서 김정은이 제1위원장으로 공식적으로 선출되었다. "Kim Jong-un Elected First Chairman of NDC of DPRK", KCNA, 2013년 4월 13일 참조. <http://www.kcna.co.jp/item/2012/201204/news13/20120413-44ee.html> 참조. 제1위원장이라는 명칭은 고인이 된 김정일이 여전히 영원한 국방위원회의 위원장으로 간주되는 행위의 분명한 결과이다.

1658\_ 북한 헌법 제109조.

전직 북한 관료들은 최고지도자가 내린 명령들은 기타 모든 당 혹은 북한 당국 기관들의 결정을 기각하는 가장 높은 종류의 규범적 명령으로 간주된다고 강조하였다.<sup>1659</sup> 헌법은 규범적인 기초를 제공하면서 최고지도자가 국방위원장의 역할에서 “국가의 전반사업을(즉, 국방과 관련이 없는 사안들을 포함하여) 지도한다”라고 규정한다. 최고지도자는 또한 명령을 내릴 헌법상의 권한도 있다. 이런 명령들은 그 권한면에서 더 우위에 있고 다른 북한 국가 기관의 결정을 폐지할 수 있다.<sup>1660</sup> 김정일의 통치기간 동안 당의 부서와 부처가 직접 최고지도자에게 보고를 제시하는 관행이 전해졌다. 최고지도자가 이를 직접 서명하면 그 내용은 최고지도자의 개인 지시로 간주되었다.<sup>1661</sup>

**1192** 국방위원장의 역할에서 최고지도자는 북한군의 최고사령관의 역할을 맡기도 한다. 더욱이 그는 국방부문의 중요간부를 임명 또는 해임할 권한이 있다.<sup>1662</sup> 김일성, 김정일과 김정은은 이 권한을 수차례 이용하여 개인적인 신뢰와 믿음이 가는 사람들의 지위보장을 위해 국가안전보위부, 인민보안부와 조선인민군의 주요 관료들을 교체하였다. 조사위원회의 조사 내내, 조사위원회는 이런 기관에서 중대한 인권 침해 혹은 반인도범죄에 연루되어 그 관료가 해임된 단 하나의 사례도 확인할 수 없었다. 실제로 북한의 전직 관료들은 반인도범죄를 수반하는 패턴의 부분을 구성하는 중대한 인권 침해가 최고지도자의 차원에서 직접적으로 명령되었던 몇몇의 사례와 운용에 대해 조사위원회 앞에서 진술하였다.<sup>1663</sup> 어떤 경우 국가안전보위부,

1659\_ TAP024, TLC037.

1660\_ 북한 헌법 제103조 및 제109조.

1661\_ 조사위원회 제출: SUB061 (전직 관료로부터). TLC022, TLC040, TGC004, TBG025. 적어도 김정은 통치 초기에 전하는 바에 따르면, 비슷한 보고관행이 계속되었다. Ken E. Gause, “North Korean Leadership Dynamics and Decision-making under Kim Jong-un” 참조.

1662\_ 북한 헌법 제102조 및 제103조.

1663\_ 전직 관료들의 진술TBG025, TBG027, TBG029, TBG031, TGC004, TJH015, TJH044, TLC022, TLC040, TLC041, TLC044, TSH059.

인민보안부 및 조선인민군은 최고지도자로부터 특정 개인들 혹은 집단들을 겨냥하기 위한 임시 체계를 만들 것을 명령받았다.<sup>1664</sup> 상당수의 이런 경우에는, 그 기관들은 중대한 인권 침해를 수반하는 조치의 집행에 관한 상세한 보고서를 최고지도자에게 제출해야 하였다.<sup>1665</sup>

## 10. 조사위원회의 주요 조사결과

**1193** 조사위원회는 북한을 인권 침해와 반인도범죄의 자행이 제도적 틀 안에 단단히 자리 잡힌 것으로 본다. 국가안전보위부, 인민보안부, 조선인민군, 검찰소, 재판소와 조선노동당은 인권 침해와 반인도범죄에 연루되어 있다. 그들은 조선노동당, 국방위원회 및 북한의 최고지도자의 지도력의 실효적인 통제하에서 행동한다.

**1194** 따라서 조사위원회는 북한의 기관에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당국 기관의 최상부와 중앙에서부터 시작되는 근본적인 제도적 개혁이 요구된다고 본다. 인권 침해의 범행이라는 유일한 목적을 달성케 하는 감시, 사상 주입 및 억압의 전체 구조가 분해되어야 한다. 이것과 관련해서 안보 및 사법 분야의 개혁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나아가 그것들의 기반이 되는 의사결정 과정이 보다 투명하고 효과적인 견제와 균형의 대상이 되도록 만들어져야 한다. 또한 조사위원회는 주민들의 기본적인 욕구에 대한 공정한 기준에 근거한 제공이 가능하도록 경제체계가 개혁되어야 한다고 본다. 정책 및 계획을 고려할 때에는 국가의 책임규명, 비차별, 의사결정 과정에의 주민 참여, 취약한 계층의 상태를 우선으로 하는 이용가능한 자원의 최대 사용 및 기타 이 보고서에서 논의한 원칙들의 이행이 가장 중시되어야 한다. 국가가 국제

1664\_ 전직 관료들 TBG031, TLC041, TCC014. IV장 A.2.(c), IV장 C.1.(a)와 IV장 C.2.

1665\_ TGC004, TJH015.

인권법상의 의무들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가는 모든 사람들이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를 향유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것과 관련해서, 극심한 사회경제적 차이와 소수의 엘리트, 그 중 상당수가 반인도 범죄에 직접 연루된 자들에게 이익이 된 불공정한 사회경제적 구조를 처리하기 위한 특별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 B. 개인의 형사 책임

**1195** 국제관습법에 근거하여, 반인도범죄의 금지는 전체 국제공동체를 구속시키는 강행규범(*jus cogens*)의 일부를 구성한다.<sup>1666</sup> 따라서 비록 북한이 아직 반인도 범죄를 그 국내법에 포함시키지 않았고,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의 당사국이 아닐지라도 북한에서 반인도범죄를 범하는 개인들은 국제인권법에 근거하여 책임이 있다.<sup>1667</sup> 조사위원회는 이렇게 심각한 범죄를 범하라는 명령이 명백히 불법이기 때문에 반인도범죄의 범죄자들이 상급자의 명령에 따라 행동하였다는 근거로 그의 형사책임을 면제시켜주지 않는다는 국제법의 확립된 원칙을 또한 상기한다.<sup>1668</sup>

**1196** 조사위원회가 수집한 증언 및 정보에서 반인도범죄를 행하거나, 명령하거나, 요구하거나, 교사 또는 방조한 개인들의 이름이 나타난 경우 이를 어김없이 기

1666\_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Draft Articles on Responsibility of States for Internationally Wrongful Acts, with commentaries", 2001, p. 85; M. Cherif Bassiouni, *Crimes against Humanity: Historical Evolution and Contemporary Application*, pp. 263 ff 참조.

1667\_ 국제법상 금지에 근거한 범죄 혐의자들의 재판은 범죄의 소급적용 금지의 위반을 구성하지 않는다. 자유권 규약 제15조제2항 참조.

1668\_ 로마규정 제33조 참조. 뉘른베르크 군사재판소 현장 제8조 또한 참조; *United States v. Wilhelm List et al*, XI Reports of Trials of War Criminals (1950), p. 1236; *United States v. Erhard Milch*, VII Reports of Trials of War Criminals (1947), p. 42.



록하였다. 조사위원회가 반인도범죄에 연루되었던 특정 부서, 수용소 혹은 기관을 이끈 개인들의 이름을 알아낼 수 있는 경우에도 이렇게 하였다. 해당 정보는 조사위원회의 기밀 데이터베이스에 보호되고 있다. 조사위원회는 범죄 및 기타 위반에 대한 책임을 규명하고, 범해진 위반에 대한 진실규명 혹은 특정 개인 또는 기관에게 유엔 안보리 결의의 대상이 된 제재를 집행할 목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수사를 하는 권한 있는 당국에게 이런 정보에 접근을 제공할 것을 조사위원회의 지원 사무국 역할을 담당하는 인권최고대표에게 허가하였다. 조사위원회는 관련이 있는 증언자들 또는 기타 정보의 출처들이 고지에 입각한 동의를 하고 또한 어떠한 보호 및 운영상의 우려사항들이 정히 다루어진 범위에서만 접근을 허용하라고 인권최고대표에게 부탁하였다.

**1197** 2013년 12월 16일에 조사위원회는 중국의 북한 주민의 강제송환 정책과 관행에 대한 조사위원회의 염려를 요약한 편지를 중국에 전달했다. 조사위원회는 중국 관료들이 이런 사람들의 상세한 정보를 북한 당국에게 제공하는 것에 대한 각별한 염려를 표현하였다.<sup>1669</sup> 조사위원회는 송환과 정보교류가 북한에서 반인도범죄를 범하는 것을 명백히 겨냥하거나 혹은 이것을 용이하게 할 목적을 가진 경우에는 이런 행위가 반인도범죄를 교사 또는 방조한 것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관련 관료들에게 경고할 것을 중국 정부에게 권고하였다.

**1198** 2014년 1월 20일, 조사위원회는 북한의 최고지도자인 김정은에게 이 보고서에 들어 있는 발견사항 전체를 그에게 알리는 편지를 전달하였다.<sup>1670</sup> 조사위원회는 국제형사법상 지휘관 및 상급자의 책임 원칙이라는 최고지도자의 관심에 다가갔

1669\_ 편지는 조사위원회 보고서 부록으로 첨부하였다(A/HRC/25/63). 현 문서에 반영된 상세한 조사결과를 편집하지 않은 채 2014년 1월 20일 중국으로부터 정보와 의견을 받기 위해 제공되었다.

1670\_ 조사위원회 보고서 부록 1(A/HRC/25/63).

다. 이에 따르면 군 지휘관들과 민간인 상급자들의 실효적인 지휘하에 있는 사람들이 범한 반인도범죄를 방지하거나 억제하지 못한 군 지휘관들과 민간인 상급자들은 개인적 형사책임을 질 수도 있다.<sup>1671</sup> 북한의 최고지도자, 조선노동당의 제1비서, 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인 그의 지위들에 비추어, 조사위원회는 김정은에게 조선노동당 및 국방위원회의 주요 기관들과 궁극적으로 최고지도자의 실효적 통제하에 행동하는 국가안전보위부, 인민보안부, 조선인민군, 검찰소, 특별 군사재판소 및 기타 재판소들 그리고 조선노동당의 관료들이 반인도범죄를 범하고 있다는 조사결과를 일깨워주었다. 추가 범죄의 자행을 방지하거나 억제하기 위해, 권력 범위 안에서 모든 필요하고 합리적인 조치들을 취할 것과 수사 및 기소를 위해 관할 당국에게 자행된 범죄 사건들을 제출할 것을 조사위원회는 최고지도자 김정은에게 강력히 권고하였다.

**1199** 현 단계에서 북한에서는 처벌받지 않는 반인도범죄들이 범해지고 있다. 반인도범죄가 당국의 최고위층에서 승인된 결정과 정책에 근거하여 범해진 것을 고려하면, 이는 예측가능한 일이다. 북한에서 근본적인 제도적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조사위원회는 북한의 자체 기관들이 반인도범죄를 효과적으로 수사하고 기소할 의지도 능력도 없다고 본다. 이러한 경우에는 개입하여 범죄자들이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는 것은 국제공동체의 책무가 된다.<sup>1672</sup>

**1200** 조사위원회는 북한에서 오래되었고 계속 진행 중인 반인도범죄를 다룰 수

1671\_ 이 원칙의 법적 요건은 로마규정 제28조에 명시되어 있다.

1672\_ 국가책임에 대한 국제법은 국가들이 국제법의 강행규범(jus cogens)하의 의무의 심각한 위반을 합법적인 수단을 통해 해결하기 위해 협력하여야 한다고 요구한다. 국가책임에 대한 규정 제41조 참조. 이는 국제법 위원회에 채택되었고 2001년 12월 12일 유엔 총회 결의 56/83호를 통해 국가들의 주목을 권고하였다. 반인도범죄의 범죄자들을 법의 심판을 받게 할 한 국가의 의무를 행사하지 못할 경우 국제법의 강행규범(jus cogens)의 위반에 해당된다.

있도록 국제 법원 또는 재판소에 관할권이 지체 없이 주어져야 한다고 본다. 유엔을 통해 행동하고 그것의 보호의무와 일치하는 국제공동체는 북한에서 반인도범죄에 가장 책임이 있는 자들이 국제 재판소에서 기소되고 법의 심판을 받도록 보장하기 위한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

**1201** 둘 중 어느 것도 북한의 동의가 필요 없는 두 가지의 적절한 방안이 예상되어야 한다:

- 1) 안전보장이사회는 로마규정 제13조 나목 및 유엔헌장 제7장에 근거하여 북한의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할 수 있다. 사건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는 것은 확립된 제도적 틀, 절차규칙과 전문적인 직원들이 이미 존재하고 또한 반인도범죄에 대해 가장 책임 있는 자들이 향유한 불처벌을 더 이상의 지체 없이 다룰 수 있다는 실질적인 장점이 있다.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된 경우, 2002년 7월 이전에 행해진 범죄까지 그 관할권이 미치지 않는다. 그러나 2002년 이전에 범해진 범죄들에 대해 가장 책임 있는 자들 중 상당수는 더 이상 살아있지 않거나 재판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sup>1673</sup>
- 2) 그 대신에 유엔은 북한을 위한 특별재판소(ad hoc International Tribunal)를 설립할 수도 있다. 2002년 7월 이전까지의 사법권을 이러한 재판소에게 제공할 수도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북한의 반인도범죄를 완전히 다룰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상당한 자원 투입과 제도적 계획을 요구하여 범죄자들이 법의 심판을 받는 데에 추가적인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다. 구유고슬라비아 및 르완다 국제군사재판소(ICTY 및 ICTR)의 설립으로 이어진 기존의 선례들에 따라,<sup>1674</sup> 안전보장이사회는 유엔헌장 제7장상의 권한을 이용하여 이런 재판소를 설립할 수 있다. 안전보장이사회가 국제형사재판소에 사건을 회부하지 못 할 경우 혹은 특별재판소를 설립하지 못 할 경우, 총

1673\_ 로마규정 제24조 참조. 로마규정은 2002년 7월 1일에 발효되었다. 강제실종의 경우, 비록 그것이 계속되는 범죄이지만 로마규정의 범죄구성조건은 첫 납치 또는 자유의 박탈이 2002년 7월 이후에 발생했어야만 한다고 명백히 요구한다. 범죄요소, 국제형사재판소 로마규정 당사국총회, 제1차 회기., 2002년 9월 3~10일, 제7조제1항 자목, 각주 24 참조. 그러나 조사위원회는 국제 납치와 주로 연관되어 범해지는 구금의 반인도범죄와 국제법의 근본원칙에 위배되는 기타 자유의 심각한 박탈에 적용되는 사법권의 제한은 없다고 주목한다. 이와 같은 근거에서 국제 납치와 관련된 반인도범죄는 국제형사재판소의 사법권에 속할 수도 있다.

1674\_ 안보리 결의 827호(1993년)와 955호(1994년)호 참조.

회가 재판소를 설립할 수 있다. 이것과 관련하여, 총회는 그것의 인정된 잔여 권한, 그 중에서도 “평화를 위한 단합” 결의<sup>1675</sup> 및 개개인 당사국들 모두의 결합된 주권으로써 보편적 사법권 원칙에 근거하여 반인도범죄의 범죄자들을 재판할 수 있다.<sup>1676</sup>

**1202** 조사위원회는 다음의 세 가지의 방안을 고려했으나, 북한에 만연하는 상황에서 그 중 어떤 것도 적절하지 못하다고 본다.

- 1) 반인도범죄가 범해진 다른 상황에서는 국제 및 국내 검사와 판사를 참여시킨 혼성 재판소들이 설립되어 왔다.<sup>1677</sup> 그러나 이런 모델들은 관련된 국가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북한이 이에 대해 동의를 하였더라도, 조사위원회는 북한의 정치적 및 사법적 체제의 상당한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런 혼성재판소에 참여가 지명된 어떤 북한 판사도 고위급 관료들을 피고인으로 포함시킬 형사재판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공정성과 독립성이 부족할 것이라는 입장이다.<sup>1678</sup>
- 2) 북한을 위한 국제 특별검찰 사무소가 안보리 또는 총회에 의해 설립될 수 있다. 이런 검사가 임명되면, 신원이 밝혀진 혐의자들에 대한 기소장을 검사가 어느 재판소에 제출할 것인지가 불명확하다. 이것과 관련하여 재판소가 사법권을 행사할 때까지 증언자 진술과 기타 정보의 획득을 위한 임시방편적인 조치로서 검찰 사무소의 기능은 인권최고대표가 설립하는 문서기록 및 비검찰 조직이 조사위원회와 유사한 작업방식을 따라 수행될 수 있다고 조사위원회는 언급한다.<sup>1679</sup> 이런 비검찰 조직은 또한 국제형사재판소 혹은 특별재판소의 업무를 적절히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 3) 조사위원회는 가장 책임이 중한 자들이 범죄에 연루되는 것을 중단하고, 자행한 범죄 개입에 대한 진실을 모두 다 말하는 대신, 기소를 면할 수 있게 하는 진실화해위

1675\_ 1950년 11월 3일, 유엔 총회 결의 377 A (V)호.

1676\_ 총회는 이미 캄보디아 특별재판소 설립에 역할을 맡았었다. 2003년 5월 13일 유엔 총회 결의 57/228(B)호는 재판소의 설립으로 이어진 2003년 6월 6일 캄보디아 왕립정부와 유엔 간의 합의를 승인하였다.

1677\_ 주목할 만한 예들은 시에라리온 특별재판소와 캄보디아 특별재판소이다.

1678\_ III장 E와 IV장 E.4 (a)에 있는 북한 사법절차의 독립성과 불공평성에 관한 조사결과를 참조.

1679\_ 조사 기간 동안 특히, 북한이탈주민들 및 현대 기술에 의해 용이해진 직접 접촉을 통해 조사위원회는 인권 상황에 대한 직접 정보의 흐름이 꾸준히 북한에서 나오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러나 유엔이 북한과 관련해서 기존의 본부에 기반을 둔 방식에 근거하여 지속할 수 없고, 이런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신뢰를 쌓는 것은 현장에서 관련된 당사자들과의 꾸준한 관계가 필요하다.

원회라는 방안을 고려하였다.<sup>1680</sup> 조사위원회는 반인도범죄가 조금도 수그러들지 않고 범해지는 상황에서는 이런 방식이 대단히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또한 이렇게 중대한 범죄의 주요 범인들을 사면하는 것은 피해자들과 그들의 가족에게 큰 상처가 될 것이다. 더욱이 앞으로 발생할 범죄에 대해 형사책임규명의 가능성이 가질 수 있는 억제효과가 상실될 것이다. 조사위원회는 또한 반인도범죄, 특히 가장 책임이 큰 자들에 대한 사면은 더 이상 국제법이 허용하지 않는다고 본다.<sup>1681</sup>

**1203** 국제공동체는 필연적으로 한정된 수의 주요 범죄자들에 대해 책임규명을 보장할 수 있다. 일단 북한 내에서 근본적인 정치적 및 제도적 개혁을 이 단계에서 수행할 절차가 진행 중이면, 유사한 북한 주도의 과도적 사법절차 역시 병행되어야 한다. 이 단계에서 필요한 정도까지 국제적 지원에 의지하고, 범죄자들의 기소를 이끌기 위해 국내 특별검찰 사무소가 설치되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국내차원의 대규모 진상규명 및 심사 조치들을 포함해서 중위와 하위급의 범죄자들을 폭로하고 그들의 권력을 박탈해야 한다. 이 과정은 어떤 인권을 향유할 권리가 있는지, 또한 자국이 얼마나 많은 방법으로 이를 위반했는지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한 세대 전체의 일반 주민들의 사고방식을 바꾸기 위한 포괄적인 인권 교육운동과 연결되어야 한다.

## C. 국제공동체의 책임

**1204** 유엔의 회원국이 수십 년 동안 반인도범죄를 저질렀다는 조사위원회의 조

1680\_ 조사위원회가 일을 새로 시작했을 때, 아파트헤이트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범죄를 범한 대다수의 주요 범죄자들이 비록 더 이상 정권을 잡지 않고 있었지만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진실화해위원회를 통해 이 방식을 추구하였다.

1681\_ *Prosecutor v Kallon and Kamara*, SCSL-04-15AR72(E), SCSL-04-16-AR72(E) [SCSL 항소부], Decision on Challenge to Jurisdiction: Lomé Accord Amnesty, of 13 March 2004, para. 73; *Barrios Altos v. Peru*, (Ser. C) No. 75 [Inter-American Court of Human Rights], Int.Am. Ct. H.R., 2001년 3월 14일 판결, para. 41 또한 참조.

사결과는 국제공동체의 책임과 관련된 의문들을 제기한다. 조사위원회는 2005년 세계정상회담에 모인 지도자들이 각 개별국가가 자국의 주민을 집단살해죄, 전쟁범죄, 인종청소 및 반인도범죄로부터 보호할 책임이 있다고 재차 확인하였다는 것을 상기한다. 게다가, 세계 지도자들은 국제공동체가 갖는 보완적 보호책임을 유지시킬 것을 약속하였다.

유엔을 통해, 국제공동체는 또한 (유엔)헌장 제7장 및 제8장에 따라 적절한 외교적·인도주의적 및 기타 평화적인 수단들을 이용하여 주민들을 집단살해죄, 전쟁범죄, 인종청소 및 반인도범죄로부터 보호할 책임이 있다. 이와 관련해서 평화적 수단들이 불충분하거나 국가 당국이 자국 국민을 집단살해죄, 전쟁범죄, 인종청소 및 반인도범죄로부터의 보호하지 못할 경우, 우리는 개개의 사례에 따라 그리고 관련된 지역 기구들과 적절히 협력하여 적절한 때에 과감한 단체행동을 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해 취할 준비가 되어 있다.<sup>1682</sup>

**1205** 자국 국민을 반인도범죄로부터 보호하지 않은 북한의 사례에 비추어, 유엔을 통한 국제공동체는 무엇보다도 적절한 외교적·인도주의적 및 기타 평화적인 수단을 이용하여 북한 주민들을 반인도범죄로부터 보호할 책임을 진다. 조직적으로 납치되고 계속해서 강제실종을 당하는 외국인들과 그들이 두고 온 가족들에게도 북한의 반인도범죄가 영향을 준다는 사실은 국제공동체의 책임을 더욱 정당하게 만든다. 이런 사건들 중 몇몇의 경우에는 납치가 타국의 영토주권에 대한 노골적인 위반을 수반한 경우도 있다.

**1206** 조사위원회는 총회, 인권이사회, 경제사회이사회, 인권위원회, 사무총장과

1682\_ World Summit Outcome Document A/RES/60/1, para. 139 참조. 일반 국제법의 강행규범상 의무의 심각한 위반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들이 협력하여야 한다는 국가책임에 관련, 국제법상에서도 이에 상응하는 법적 의무가 나타나고 있다. 2001년 12월 12일 총회 결의 56/83호를 통해 총회가 국가들의 주목을 권고한 국제법위원회의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에 관한 규정 초안” 제40조 및 제41조 참조. 반인도범죄, 전쟁범죄, 인종청소와 집단살해죄는 이런 강행규범의 위반에 해당한다.

인권최고대표가 북한의 반인도범죄의 원인이 되는 중대한 인권 침해를 끝내도록 북한과 관계를 맺기 위해 중요한 평화적인 노력들을 해왔다는 것을 주목한다. 한편, 북한 국내 인권 상황의 의미 있는 개선이 호전적인 대외 입장을 취하는 북한의 경향을 완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채, 안전보장이사회는 한반도에의 참여를 핵확산 방지와 군사 사태에 대해 제한해 왔다.

**1207** 9년간 계속하여 총회는 중대한 인권 침해를 멈추도록 북한에게 강하게 권고하는 결의를 통과시켰다. 그것에 앞서 인권이사회와 인권위원회도 계속되는 중대하고 광범위하며 조직적인 인권 침해를 규탄하는 결의들을 통과시켰다. 이 결의들에 근거하여 사무총장, 인권최고대표와 북한인권특별보고관들은 인권 우려사항들을 더 열거하는 상세 보고서들을 잇따라 제출하였다. 총회와 인권이사회는 가장 최근의 결의들이 투표 없이 통과될 정도로 국제적인 관심과 우려는 커졌다. 특히 투표 없이, 결의 22/13호를 통한 이 조사위원회의 설립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1208** 북한이 총회와 인권이사회로 구현된 국제공동체의 통일된 입장을 거부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취해진 평화적 노력들은 부적당한 것으로 증명되었다. 북한은 총회와 인권이사회 결의들에 대해 “사악한 정치적 목적을 위해 인권을 남용하여 북한의 주권을 침해하고자 하며 또한 위엄 있는 사회주의 체제에 해를 입히기 위한 터무니없는 시도” 그리고 “지나가는 언급조차의 자격이 없는 정치적인 교묘한 속임수”라는 등 다양하게 거부해 왔다.<sup>1683</sup> 더욱이 북한은 이 결의들에 따라 설치된 장치들, 또한 그 점에 대해서 다른 대부분의 유엔 인권 수단들과 협조하는 것 역시 거부하였

1683\_ “DPRK Foreign Ministry Spokesman Flays Hostile Forces’ Adoption of ‘Human Rights Resolution’ against DPRK,” KCNA, 2013년 11월 20일. <http://www.kcna.co.jp/item/2013/201311/news20/20131120-21ee.html> 참조; “UN Human Rights Council’s ‘Resolution on Human Rights’ against DPRK Rejected by DPRK FM Spokesman,” KCNA, 2013년 3월 20일. <http://www.kcna.co.jp/item/2013/201303/news22/20130322-39ee.html> 참조. 과거 결의안들과 관련하여, 비슷한 유형의 표현이 사용되었다.

다.<sup>1684</sup> 나머지 유엔 체제의 계속된 노력들을 지원하기 위해, 조사위원회는 유엔에 대한 이런 노골적인 반항으로 인해 안전보장이사회가 결정적이고 나아가 세심하게 겨냥된 조치들을 취해야 하는 사례를 만든다고 본다.

**1209** 유엔 사무국과 산하기관들로 구성된 유엔 체제가 책임을 떠맡아야 한다. 2013년 12월, 사무총장은 유엔 체제가 주민들이 심각한 인권 침해의 위협에 처한 상황들을 다루는 방법을 개선하기 위해 “인권 우선” 이니셔티브를 시작하였다. 인권 우선은 유엔의 대응과 관련해 보다 일관성 있는 접근법을 약속하고 또한 인권 상황에 대한 솔직한 정보제공을 비롯한 유엔의 정부 간 기관과의 대화 및 관계의 강화를 포함한다.<sup>1685</sup> 조사위원회는 북한의 인권 상황의 심각성이 유엔 체제에 의한 인권 우선 전략의 채택 및 전면적 시행을 정당하게 만든다고 본다.

**1210** 북한 주민들은 너무 오랫동안 고통받아 왔다. 이제는 국제공동체가 그들의 정부가 자행하는 만행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다. 조사위원회는 국제공동체가 반인도범죄에 대한 최대 책임자를 겨냥한 강력하고 책임있는 조치와, 북한 당국에 대한 한층 강화된 인권의 요구, 그리고 민간 차원의 대화 및 남북한 화해를 위한 의제 설정 등에 기반한 점진적인 변화에 대한 지원을 결합한 다차원적인 전략을 통해 그 보호책임을 이행해야 한다고 보는 바이다.<sup>1686</sup> 조사위원회는 이러한 견해를 구체화하여 국제에 대한 일련의 권고사항을 마련하였다. 이 권고사항들은 조사위원회의 보고서에 수록되어 있다.

1684\_ 북한의 유엔 인권기구들과의 협력 부족에 대한 세부 사항은 II장 2 참조.

1685\_ 이 계획에 대한 세부 사항은 <http://www.un.org/sg/rightsupfronti/> 참조.

1686\_ 이러한 측면에서 조사위원회가 인권이사회 결의 13/22호에 의거하여 수립하고 본 조사위원회 보고서에 수록한 국제공동체에 대한 권고사항들은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보고서 제31항과 병행하여 검토해야 한다.



Chapter VII

결론 및 권고사항

## VII. 결론 및 권고사항

1211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가 북한의 정부, 기관 및 당국자들에 의해 이루어졌고 현재도 이루어지고 있다. 조사위원회가 조사한 인권 침해 사례들은 많은 경우 반인도범죄를 구성한다. 이는 단순히 국가의 월권 수준이 아니라 정치 체제의 필수 요소로서, 북한이 주장하는 설립 이상(ideals)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져 있다. 북한에서 벌어지는 인권 침해의 심각성과 규모, 그리고 본질은 현대 사회의 어떤 국가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20세기의 정치학자들은 이러한 종류의 정치 조직을 전체주의국가라고 분류하였다. 이러한 국가는 소수의 권력 집단이 권위적인 지배를 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주민들의 생활의 모든 부분을 장악하며 공포심을 주입시킨다.

1212 북한은 전체주의국가의 많은 특성을 보인다. 한 개인이 이끄는 일당 통치는 현 최고지도자가 “김일성주의-김정일주의”라고 일컫는 정교한 지도 이념에 기반을 두고 있다. 북한 당국은 유년 시절부터 사상을 주입시키고, 공식 이념에 의심을 품는 모든 정치적·종교적 의견을 억압하며, 주민들의 이동 및 타국민과는 물론 북한 주민들끼리도 소통을 통제함으로써 주민들에게 이러한 지도 이념을 내재화시킨다. 성별과 ‘성분’에 따른 차별을 통해 정치 체제에 대한 도전을 만들 가능성이 거의 없는 엄격한 사회구조가 유지된다.

1213 식량접근에 대한 북한 당국의 독점은 주민들의 정치적 충성심을 강요하기 위한 주요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다. 식량은 현 정치 체제의 생존에 유용한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분배된다. 북한 주민들의 당국에 대한 전적인 식량 의존은 최근 세계 역사상 최악의 기근 사례 중 하나로 이어졌다. 북한 당국자들은 최근 들어서야 시장이 더 이상 완전히 통제될 수 없다는 사실을 가까스로 받아들이게 되었다. 그러나, 북한

은 식량권을 실현하는 완전한 개혁이 아닌, 주민들의 굶주림을 불필요하게 야기할 수 밖에 없는 비효율적 경제 생산방식 및 자원의 차별적 분배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1214** 북한 정치체제의 핵심은 감시, 강압, 공포, 처벌을 전략적으로 사용하여 어떠한 반대 의견도 표현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대한 정치안보 기구이다. 공개처형과 정치범수용소로의 강제실종은 북한 주민이 정권에 복종하도록 공포심을 주는 최종 수단이다. 북한 당국의 폭력은 당국 주도의 외국인 납치 및 강제실종으로 외부에 드러나게 되었다. 이러한 국제적 강제실종은 그 강도와 규모와 본질에 있어서 유례가 없는 것이다.

**1215** 오늘날 북한은 정치적, 경제적 그리고 기술적 면에 있어서 급변하는 세계정세 속에 있다. 이러한 변화는 북한 내부의 점진적인 사회적 변화를 위한 기회를 제공한다. 이에 대응하여 북한 당국자들은 해외로부터 유입되는 “체제 전복적인” 악영향을 단속하기 위해 심각한 인권 침해를 행하고 있다. 이러한 외부로부터의 영향은 한국 및 기타 외국의 드라마나 영화, 단파 라디오 방송 및 이동 전화로 대표된다. 같은 이유로 북한 정부는 주민들이 탈북하여 자신의 인권을 행사하는 것을 막기 위해 폭력과 처벌을 조직적으로 사용한다. 중국으로부터 강제송환된 사람들은 대개 고문, 자의적 구금, 즉결처형, 강제낙태 및 기타 여러 형태의 성폭력으로 고통 받는다.

**1216** 조사위원회가 기록한 북한의 오랜, 그리고 현재도 이루어지고 있는 조직적이며 광범위한 인권 침해 사례들은 국제법상의 반인도범죄를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높은 기준에 부합한다. 북한의 인권 침해 가해자들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고 있다. 북한은 인권 침해 가해자들을 기소하여 재판할 국제적 의무를 이행하려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가해자들은 북한 당국의 정책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1217** 북한이 유엔 회원국으로서 인류의 양심에 충격을 주는 범죄를 포함하는 정책을 수십 년간 추구해 왔다는 사실은 국제공동체의 대응이 부적절하지 않았는지 의문을 제기한다. 북한 당국이 자국 주민을 보호하는 데에 명백하게 실패한 만큼, 국제사회는 반인도범죄로부터 북한의 주민들을 보호할 책임이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특히 이러한 책임은 아직까지 미해결된 6·25전쟁의 유산, 그리고 한반도 분단에 있어 국제사회, 특히 강대국들이 한 역할에 비추어 볼 때 반드시 받아들여져야 한다. 이러한 불행한 유산은 돌파구를 찾기 어려운 북한의 인권상황을 설명할 뿐만 아니라 효과적인 대응책이 왜 지금 절실한지를 알려준다.

**1218** 유엔은 북한에서 반인도범죄를 저지른 주요 가해자들에게 책임을 엄중히 물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는 방안과 유엔이 특별재판소를 설립하는 방안 등이 있다. 책임을 규명하는 신속한 조치와 함께, 북한과 인권에 대한 대화를 강화해야 하고, 시민 간 교류를 통해 더 많은 변화를 모색해야 하며, 남북한 화해 의제가 수립되어야 한다.

**1219** 조사결과 및 결론을 바탕으로 조사위원회는 아래와 같은 권고를 하고자 한다.

**1220** 조사위원회는 북한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 (a) 북한의 최고지도자와 조선노동당의 권력에 견제와 균형을 도입하도록 지체 없이 근본적인 정치적·제도적 개혁을 실행한다; 이러한 개혁은 독립되고 공정한 사법부, 다당제, 그리고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에 의해 선출된 지방 및 중앙 차원의 의회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인권 침해에 관련된 장교단 전체를 조사하고, 조선인민군의 역할을 외부위협으로부터의 국가 방어로 제한함으로써 안보분야를 개혁한다; 국가 안전보위부를 해체하고 사회안전성(현 인민보안부)을 투명하고 민주적인 감시하에 둔다. 북한의 저명한 사회 인사로 구성된, 독립된 헌법 및 제도 개혁 위원회를 설

립하여 위의 과정을 지도해야 하며, 이러한 위원회는 적합한 국제 전문가들의 지원을 받아야 한다.

- (b) 북한은 조사위원회가 동 보고서에 서술한 정치범수용소를 포함하여 인권 침해의 존재를 인정하여야 한다; 국제 인도지원 단체 및 인권 감시 요원에게 정치범수용소 및 살아남은 피해자에 대한 즉각적인 접근을 허용하여야 한다; 모든 정치범수용소를 해체하고 모든 정치범을 석방하여야 한다; 추적이 쉽지 않은 모든 실종자들의 행방에 대한 구체사항을 밝혀야 한다.
- (c) 북한의 형법 및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반국가”, “반민족” 범죄라는 애매한 표현을 없애고,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명시된 공정한 재판 및 적법절차를 보장받을 권리를 명시하여야 한다; 국제법상 불법인 고문 및 기타 비인간적 심문에 대한 금지와 처벌에 관한 북한의 형법 및 형사소송법 규정을 시행하여야 한다;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수감자들이 인간적 조건 하에 있을 수 있도록 일반 수감 체제를 개혁하여야 한다; 연좌제로 보복하는 행위를 중단하여야 한다; 수형자의 가족에 대한 강제이전 관행을 즉각 폐지하여야 한다;
- (d) 사형의 선고 및 집행에 대한 일시 중단을 즉각 선포·실시하며, 추후 사형제 규정 및 집행을 부당한 지체 없이 폐지하여야 한다;
- (e) 독립적 신문 및 기타 매체의 설립을 허용하여야 한다; 북한 주민들이 인터넷, 대중매체, 국제 통신수단, 그리고 다른 나라의 대중 문화를 포함한 외국 방송 및 출판물을 자유롭게 접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그리고 조직활동 및 사상교육 강제 참여를 폐지하여야 한다;
- (f) 인권 및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을 보장하는 교육을 도입하여야 한다; 국가적, 인종적 또는 정치적 증오를 부추기거나 전쟁을 선동하는 어떠한 선전이나 교육 활동도 모두 없애야 한다;
- (g) 기독교인 등 모든 종교인들이 처벌, 보복, 감시에 대한 공포 없이 독립적이고 공개적으로 종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 (h) 북한 주민들의 정치적 충성도 및 그 가족의 사회·정치적 배경을 근거로 교육 및 취업 등에 있어 차별을 두는 관행을 종식해야 한다; 이웃감시제도(‘인민반’), 기밀 공민등록자료 및 기타 효과적인 사법적, 민주적 관리를 벗어나 정치적 억압을 목적으로 하는 개인에 대한 모든 감시를 중단하여야 한다; 과거에 했던 광범위한 감시 활동을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주민들의 공민등록자료 열람을 허용하여야 한다;

- (i) 여성들에게 사회생활 및 구직에서 남성과 동등한 기회를 보장하는 것 등을 통해 성 평등을 보장하는 조치를 즉각 취하여야 한다; 여성에 대해 차별적 영향을 미치는 법제, 규율, 그리고 관행을 뿌리 뽑아야 한다; 가정 폭력, 당국자들 및 국가 기관이 행하는 성폭력 및 성별에 근거한 폭력 등 여성에 대한 모든 종류의 폭력에 대응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여성 인신매매에 즉각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여성이 이러한 인권 침해에 취약하도록 만드는 구조적 원인에 대처하여야 한다;
- (j) 북한 주민들이 차별 없이 식량권 및 기타 경제적·사회적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여성과 취약계층, 예컨대 부랑아·노인·장애인의 고충에 특별히 주목해야 한다; 민주적 참여, 선정(good governance) 및 비차별에 기반을 둔 농업·경제·금융 정책을 증진시켜야 한다; 그리고 자유 시장경제 활동, 대내외 무역, 그리고 북한 주민들에게 생계 수단을 제공하는 여타 독립적 경제 행위를 합법화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 (k) 북한 지도부 및 군부와 보안 기관의 과거 지출에 비추어, 군인을 포함한 주민들이 굶주림으로부터 벗어나고 필수적인 최소 기준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국가재정의 우선순위를 재정비하여 자원을 사용하여야 한다;
- (l) 주민들의 식량권 보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을 지체 없이 요청하여야 한다; 국제 인도지원 단체들이 효과적 모니터링 등을 위해 모든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롭고 제한 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인도적 지원을 부적절한 목적으로 불법 전용하는 당국자들에게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
- (m) 북한 일반 주민들에게 사실상 해외 여행을 금지하는 조치를 폐지하여야 한다; 불법 월경을 범죄화하지 말고,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국경관리 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 국경 지대에서의 사살 명령을 중단하여야 한다; 중국으로부터 강제송환된 사람들을 정치범으로 간주하거나 감금, 처형, 고문, 자의적 구금, 고의적 굶주림, 불법 신체 내부 수색, 강제낙태, 그리고 기타 성폭력의 피해자로 만드는 것을 중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당국이 강제적으로 거주지와 직장을 정하고 지정된 거주지 외 국내지역으로 여행할 경우 허가증 발급을 요구하는 제도를 폐지하여야 한다;
- (n) 납치되거나 강제실종된 사람들의 가족들 및 그 출신국에게 그들의 생사 및 (생존 시) 소재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생존자 및 그들의 자손들이 즉시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그들의 가족 및 본국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사망자의 유해를 파악하여 본국으로 송환하여야 한다;
- (o) 주민들이 그들이 가고 싶은 곳으로 여행하거나 이민 가는 방법 등을 통해 이산가

족이 상봉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들에게 우편, 전화, 이메일 및 여타의 통신수단 등 감시받지 않는 연락 수단을 즉각 제공하여야 한다;

- (p) 반인도범죄에 책임이 있는 혐의자들을 기소하여 법정에 세워야 한다; 이 과정을 감독할 특별 검사를 임명하여야 한다; 피해자 및 그들의 가족들에게 자신들이 겪었던 인권 침해의 진실을 포함하여, 적절하고 신속하며 효과적인 배상 및 구제책을 제공하여야 한다; 시민 주도 하에 인권 침해에 대한 진실을 확보할 수 있는 과정을 개시하여야 한다; 성인 및 아동들에게 인권과 민주적 통치에 대한 국내·국제법과 관행에 대한 포괄적인 교육을 제공하여야 한다; 그리고 전환기 사법 조치에 대한 국제사회의 자문 및 지원을 요청하여야 한다;
- (q) 조사위원회의 보고서 및 유엔 총회와 인권이사회의 관련 결의안,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와 인권 협약 기구 및 특별절차 수임자의 보고서에 제기된 모든 종류의 인권 침해를 중단하고 인권 우려사항에 대응하는 즉각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 (r) 강제실종협약, 장애인권리협약,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 그리고 국제노동기구의 핵심 협약을 지체 없이 비준하여야 한다;
- (s) 위에 언급된 권고사항을 이행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와 기타 유엔 기관들의 현장기반 조직과 기술지원을 즉각 받아들여야 한다.

## 1221 조사위원회는 중국과 관련국에 아래와 같이 권고한다:

- (a) 강제송환금지의 원칙을 존중하고, 이에 따라 국제 인권 감시 기구가 북한의 인권 상황이 현저하게 개선되었다고 확인할 때까지 북한으로 어떠한 북한이탈주민도 강제로 송환하는 것을 그만두어야 한다; 국제사회의 보호가 필요한 북한이탈주민들에게 망명 및 여타 항구적 보호조치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들이 중국 사회에 완전히 통합되고, 차별로부터 충분히 보호받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중국에서 살고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어떤 사람과 연락을 취하고 어떤 활동을 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북한 보안 기관에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 북한이탈주민들이 북한에서 온 사람들에게 국적을 부여하거나 기타 보호를 제공하고자 하는 어떠한 국가와도 자유롭게 외교·영사 접촉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 (b) 유엔 난민최고대표사무소 및 기타 인도주의 기구가 동 외교·영사 접촉을 필요로 하는 모든 북한 주민들에게 완전하고 제한 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c) 국제난민법상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고 북한이탈주민들을 인신매매로부터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유엔의 기술지원을 요청하여야 한다;
- (d) 인신매매에 대한 피해자 중심적이고 인권 기반적인 접근법을 채택하여야 한다; 이는 피해자가 자신이 있는 국가에 체류하고, 여기에서 법적 보호 및 교육·직업·의료의 기회 등 해당 국가 시민들과 동등한 공공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를 갖는 것을 포함한다;
- (e) 중국 국민과 결혼하거나 아이를 가진 북한의 여성과 남성의 지위를 정규화하여야 한다; 이렇게 태어난 아동들이 중국 국적을 얻고 출생 신고를 할 수 있으며, 교육 및 보건 서비스에 차별 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 (f) 중국 영토 내에서 북한의 요원들이 납치를 계속하지 못하도록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단속된 납치범들을 기소하고 적절히 처벌하며, 이를 지시한 사람들을 본국으로 인도하여 법에 따라 재판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중국 정부는 북한 최고지도자 및 고위급 관료들에게 북한이탈주민 납치, 중국 국적을 받아야 하는 아동 살해, 강제송환된 탈북 여성들에 대한 강제낙태, 그리고 기타 중국으로부터 송환된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권 침해 문제를 제기하여야 한다.

**1222** 조사위원회는 남북 주민들이 남북한 화해 의제를 위한 단계별 남북대화를 활성화할 것을 권고한다. 남북대화는 친선 스포츠 경기, 학술·재계 교류, 북한 청년들을 위한 장학 및 직업 실습 사업, 학생 간 교류, 적십자 등 시민 단체 간의 교류, 전문가 및 여성 단체 등의 교류, “자매도시” 관계 수립, 궁극적으로 교통 및 통신망 재건 등을 통해 활성화될 수 있다.

**1223** 조사위원회는 북한 주민들이 정보를 교환하고 해외경험을 접할 수 있도록, 남북한 정부 및 시민 단체들이 문화, 과학, 스포츠, 선정(good governance), 경제 개발 등 분야에서 인적 대화 및 교류기회를 촉진할 것을 권고한다. 북한과 관련국들은 국제인권법상 관련 의무와 부합하지 않는 수준으로 여행 및 타국인과의 접촉을 범죄화하는 조치 등 인적 접촉에 대한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여야 한다.



**1224** 조사위원회는 또한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각국 정부, 재단 및 관련 기업들이 시민단체의 활동에 더 많은 지원을 할 것을 권고한다. 북한의 인권 상황을 기록하고 동 실태에 대한 정보를 각국에 방송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 등을 포함한다. 궁극적으로, 적절한 시점에 이러한 재단 및 기업들은 북한의 발전과 주민들의 생활 개선, 인권 개선을 위한 일관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관련 정부들과 협력하여야 한다.

**1225** 국제공동체 및 유엔과 관련하여 조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 (a)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의 인권 실태를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여야 한다. 안전보장이사회는 또한 반인도범죄에 대해 가장 큰 책임이 있는 것으로 드러난 자들을 겨냥한 제재를 채택하여야 한다. 북한 주민들의 비참한 사회·경제적 상황을 감안할 때 조사위원회는 북한 일반 주민들이나 북한의 경제 전체를 겨냥한 안보리 또는 양자 차원의 제재는 지지하지 않는다;
- (b) 유엔 총회 및 인권이사회는 조사위원회보다 앞서 만들어진 북한에 대한 국별 인권 모니터링 및 보고 메커니즘의 활동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이는 유엔 사무총장 및 인권최고대표의 정기 보고서,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북한의 인권 상황 관련 임무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메커니즘은 특히 반인도범죄에 대한 책임규명 임무에 중점을 두어야 하며, 조사위원회의 권고 사항 이행에 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 (c) 유엔 총회 및 인권이사회는 전적인 지원을 받는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특히 반인도범죄에 해당할 정도로 심각한 북한의 인권 침해 사안들에 대한 책임성 규명을 돕는 조직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조직은 조사위원회가 이룩한 자료축적 및 증거수집을 바탕으로 설립되어 데이터베이스를 확장시켜나가야 한다. 또한 이는 적합한 인력이 배치되어 인권 피해자들 및 증언자들을 지속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현장에 기반한 조직이어야 한다. 인권 보고 메커니즘의 업무를 알리고 관련 이해 당사자들이 제공한 정보를 안전하게 보존하는 기능 외에, 이러한 조직은 유엔이 반인도범죄에 대해 가장 큰 책임을 지고 있는 가해자들을 기소하거나 책임을 묻는 기능을 수행하도록 도와야 한다;
- (d)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북한과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간의 협력을 지속해야 하며, 이를 통해 북한에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고 인권 옹호 이니셔티브를 증진시켜야 한

다.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주도하는 전략의 이행과 현재 보고서에 설명된 북한의 국제 납치와 강제실종 문제를 일관되고 지체 없이 다루기 위해 유엔의 모든 인권 메커니즘을 포괄하는 전략 이행을 지원해야 한다. 유엔 회원국들은 이 전략의 이행을 위해 모든 협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 (e)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이 보고서에 명시된 권고 사항들의 이행을 인권이사회 및 기타 관련 유엔 기구들에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 (f) 유엔 인권이사회는 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와 권고사항들로부터 국제사회의 관심이 멀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북한 주민들이 너무나 심각한 고통을 겪었고 아직까지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국제공동체 전체가 공동으로 대응할 책임을 지고 있다;
- (g) 유엔 사무국과 산하기구들은 공동의 “인권 우선(Rights Up Front)” 전략을 조속히 채택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서 이 보고서에 기록된 인권 사안들을 포함한 인권적 우려들이 모든 북한관련 활동에서 효율적으로 고려되고 다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유엔은 북한에서 반인도범죄가 재발하거나 지속되지 않도록 이 전략을 즉시 적용하여야 한다. 이러한 전략으로 유엔 사무총장이 안전보장이사회에 북한 인권 상황을 회부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
- (h) 북한과 역사적으로 가까운 관계에 있는 나라들, 주요 원조 공여국들 및 잠재적 공여국들, 그리고 6자 회담의 틀 안에서 북한과 관계하고 있는 나라들도 모두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인권 상황 개선을 주도할 인권협의체를 만들어야 한다.
- (i) 관련국들은 북한에 식량 지원이나 기타 다른 인도적 지원을 경제·정치적 압박수단으로 활용해서는 안된다. 인도적 지원은 비차별주의를 포함한 국제 인도주의 및 인권 원칙에 부합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지원은 오로지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인도적 접근과 관련 모니터링이 적절히 보장되지 않는 상황 하에서만 중단되어야 한다. 북한에 대한 양자다자 지원을 하는 당사국들은 북한이 적절한 인도적 접근과 관련 모니터링을 보장하게 하도록 함께 노력하여야 한다;
- (j) 북한이 즉각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국제법에 명시되어 있는 모든 의무를 저해하지 않고, 6·25전쟁의 당사자들이었던 유엔과 관련국들은 고위급 정치 회담을 열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고위급 회담의 참여자들은 합의되는 선에서 모든 당사자들이 인권 및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 등 유엔 헌장의 원칙 준수를 약속하는 최종적인 전쟁의 평화적 해결 문서를 비준할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역내 국가들은 협력을 강화해야 하고, 헬싱키 프로세스의 선례를 따르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2014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

---

**발행처** 통일연구원  
**편집인** 통일연구원 북한인권연구센터  
서울시 강북구 4.19로 123  
전화 : 901-2528, 팩스 : 901-2572  
**인쇄처** 아미고디자인  
**인쇄일** 2014년 7월  
**발행일** 2014년 7월





2014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보고서